

MONO1199312603

韓國統計發展史(Ⅱ)

分野別 發展史

1992

統計廳



發 刊 辭



統計는 일찍이 國家의 發生과 함께 國家經營에 必要한 道具로서 발달하여 왔으며 이후 社會經濟 構造가 高度化되 면서 필요한 統計情報의 領域도 계속 擴大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情報化時代에 있어서는 合理的인 意思決定을 위한 基本資料로서의 統計의 役割과 重要性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認識되고 있다할 것입니다

무릇 모든 制度나 文化들이 나뉘대리의 歷史성을 가지고 發展해 왔듯이 우리나라의 統計 역시 歷史와 함께 發展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歷史文獻上에서도 古代로부터 社會集團이나 自然現象에 관한 計數的 記錄 즉 土地나 人口, 產物에 대한 統計記錄이 비록 資料의 正確性이나 多樣性 그리고 時系列上으로 만족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統計記錄은 中世나 近代를 거치면서 더욱 發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統治體制속의 한 요소로서 이러한 統計活動을 위한 組織이나 機構도 存在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桓雄이 무리 3千을 이끌고 太伯山頂에 내려 왔다는 檀君神話의 記錄을 시작으로 하여 扶餘 등 여러 聯盟王國의 戶口 및 人口數 資料에서는 그 당시의 集團規模를 엿볼수 있고, 新羅의 民政文書인 新羅帳籍(815年)은 3年마다 村落別로 戶口, 田畝 및 家畜 등의 現況과 增減을 調査한 것으로 世界的으로도 類例가 드문 記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高麗時代에는 技術官員인 算學職이 定着하게 되고, 國子監에서 教科 科目으로 算學이 採擇되었을뿐 아니라, 計口籍民 制度를 통해 戶口調査가 한층 發展하게 되었고 朝鮮時代에 들어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道別 戶口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戶口總數」, 「王朝實錄」, 「度支志」 등 많은 文獻에서 統計資料가 나타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調査하는 式年 戶口調査가 定着되는 등 制度的으로도 더욱 發展하여 상당한 水準에 到達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甲午更張 이후 開化期에는 소위 近代的 意味의 統計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各種 要覽, 政表 등의 刊行物을 통해 國勢分析 및 部門別 指標 등 研究資料들도 상당수 발표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資料들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統計歷史가 결코 日淺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過去는 現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歷史를 통해서 統計가 어떻게 發展되어 왔는지를 糾明하여 現在 우리 統計의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統計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提示함은 물론, 統計歷史研究資料와 歷史的 史料로 활용 내지 보존토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世代를 위해서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뒤늦게나마 우리 統計歷史에 대한 대강의 輪廓을 잡아 「韓國統計發展史」를 發刊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統計發展史는 I, II 권으로 나누어 編輯하였습니다. 제 I 권에서는 統計歷史를 時代別로 整理하였고, 제 II 권에서는 統計分野別로 發展過程을 整理하였습니다. 그러나 長久한 우리 統計歷史에도 불구하고 過去資料의 蒐集이나 發掘이 現實적으로 매우 어려웠을뿐 아니라 歷史的 研究에 대한 非專門性 등으로 인하여 事實糾明이 未洽하게 된 점을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未洽한 部分에 대해서는 讀者나 斯界專門家의 忠言과 叱正이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숨겨진 統計歷史 資料를 發掘 分析하여 내용을 補完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期待합니다.

그동안 統計發展史 研究에 物心兩面으로 協調하여 주신 關係者 여러분들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1992. 12. 28

統計廳長 閔 泰 亨

① 經國大典 世祖6年(1460)~成宗16年(1485)間에 完成되였으며 朝鮮時代 國政의 基本인 萬世成法(永世不變의 法典)으로 그 속에 戶口·量田이나 啓告式등 申告·報告統計의 制度의 기틀을 규정하고 있음.

經國大典卷之二

戶典

屬衙門內資寺內贈寺司稟寺司監豐儲舍廣
寺算資監齊用監司宰監豐儲舍廣
寺算資監齊用監司宰監豐儲舍廣
寺算資監齊用監司宰監豐儲舍廣

凡經費用橫看及貢案

戶籍每三年改戶籍藏於本曹漢城府本道

本邑○京外以五戶為一統有統主外則每

五統有里正每一面有勸農官則量加戶多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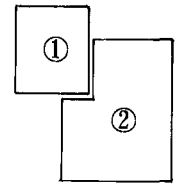
則每一坊有管領

置圖凡田分六等每二十年改量成籍藏於

本曹本道本邑一尺長准周尺四尺一寸

五部戶一萬六千九百二十一	仁祖朝十七年 乙卯式年
口十萬三千三百二十八	京中八道都元戶四十四萬一千八百二十七
英宗朝十年 甲寅十一月初二日本府草記內主	口一百五十二萬一千一百六十五
辰兵火以前帳冊無一見存萬曆丙午以後餘存	二十年 壬午式年
之冊多不完株崇德已卯以後始為撰存故自崇	京中八道都元戶四十八萬一千六百六十
德已卯以後各式年戶口都數過考入 啓	口一百六十四萬九千十二
	二十三年 乙酉式年
	京中八道都元戶五十五萬九千九百十一
	口一百七十三萬八千八百八十八

口一百八十六萬四百八十四	四年 癸卯式年
五年 甲午式年	京中八道都元戶八十萬九千三百六十五
京中八道都元戶六十二萬八千六百三	口二百八十五萬一千一百九十二
口二百四萬七千二百六十一	七年 丙午式年
八年 丁酉式年	京中八道都元戶一百一十萬八千三百五十一
京中八道都元戶六十六萬八千七百三十七	口四百一十七萬一千一百五十六
口二百二十萬一千九十八	十年 己酉式年
顯宗朝元年 庚子式年	京中八道都元戶一百三十一萬三千六百五十二
京中八道都元戶七十五萬八千四百十七	口五百一萬八千七百四十四
口二百四十七萬九千六百五十八	



② 戶口總數 正祖13年(1789)에 편찬되어太祖以來의 戶口統計를 收錄하였는데 특히 仁祖17年(1639)부터는 精確히 3年間격의 式年 戶口統計 時系列을 지니고 있는 世界的 獨步文獻임. 正祖13年(己酉)은 式年 戶口調査의 해로서 이해의 全國各道의 郡縣別 戶口數를 綜合報告書로 편찬한 것임.

萬國政表

通商

仁川釜山元山三港口進出貨物單開國四百九十四年
 乙酉一年進口貨值統計一百七十九萬二千一百九十三
 圓六角一分金銀及銅錢價十六萬二千七百四十五圓六
 角出口貨值統計五十二萬四千三百四十一圓三角三分
 金銀及銅錢價五十八萬五千六百四十七圓七角一分按
 進口貨物惟洋布最夥計值爲九十二萬七千三百四十七
 圓九角四分其次袈裟布計值十二萬六千五百三十一圓
 又其次銅錫鉛鐵計值七萬二千九百五十九圓九角三分
 出口貨黃金居多計值爲四十七萬三千一百一十二圓二
 分其次牛皮計值二十八萬四千六百一十五圓九角又其次
 米豆計值十萬零九百八十萬圓與日本貿易居三分之一
 中國次之英德美又其次也

① 萬國政表

高宗22年(1885年)에 金允植이 作成한 統計書籍으로 朝鮮과 世界各國의 統計를 政治, 宗教, 學校, 財政, 兵制, 土地及人口, 通商, 工業, 錢幣등의 分野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음.

② 增補文獻備考 중 戶口考(卷 161)

隆熙2年(1908)에 朴容大등이 영조때 「東國文獻備考」를 增補한 것으로 일종의 韓國學 百科典書라고 할 수 있음. 大韓帝國 撰集廳刊.

江淮之南

國漢書平帝元始二年 高宗二十一年 樂浪領二十五縣戶合六萬二

千八百二十二口合四十六萬六千七百四十八

國後漢書安帝永初五年 高宗二十八年 樂浪領十八縣 七縣戶

合六萬一千四百九十二口合三十五萬七千五百

國晉書云樂浪有分屬省併之異及夷貊所侵奪只領六縣三千七

百

國漢書玄菟領三縣戶合四萬五千六口合二十二萬一千八百四

十五

國後漢書玄菟領六城戶合一千五百九十四口合四萬三千一百

增補文獻備考 卷一百六十一

六十三

國百濟溫祚王三十七年國內春兩夏大旱漢水東北部落亡入高

句麗者千餘戶相帶之間空無人居

四十二年高麗樂王宮日者曰鴻雁民之象將有遠人來投者乎兩沃

沮仇顯解等二千餘家至斧壤納款置之漢山

國東城王二十一年大旱民飢相食群臣請發倉賑救不許漢山饑民

亡入高句麗者二千餘家重以大疫戶口蕭然

國武寧王二十一年五月大水八月蝗民飢亡入新羅者九百餘家

國武王二十八年侵新羅西鄆虜男女三百餘口而去

國義慈王二年將軍允忠陷新羅大耶城獲一千餘人分居國西州縣

①

②

① 朝鮮統計時報(創刊號)

1936년에 朝鮮統計協會가 發刊한 協會誌로서 統計資料는 물론 各種 分析資料나 統計關聯 雜錄 등을 多樣하게 收錄하고 있음.

② 人口調査結果報告

日帝下 資源調査法에 의하여 1944. 5. 1 現在로 實施된 人口調査 結果報告書로 極秘로 取扱되어 日本의 朝鮮搾取 手段으로 使用되었음. 朝鮮總督府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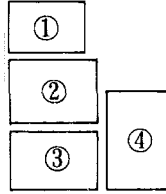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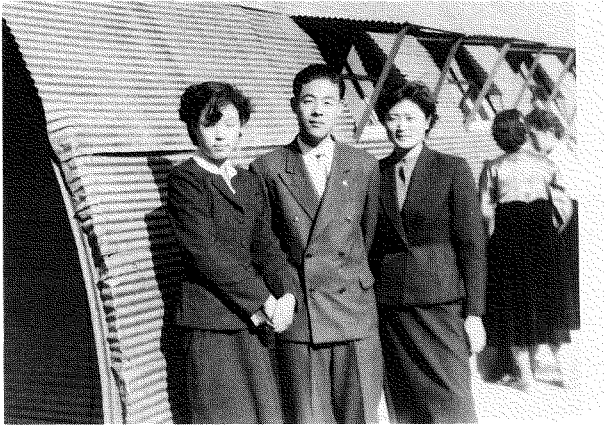


府 道 市 郡 區	世帯		人口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世帯	人口	男	女														
全 國	2,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京 畿 道	1,000,000	5,0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忠 清 道	500,000	2,50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全 羅 道	300,000	1,50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 (Other provinces follow similar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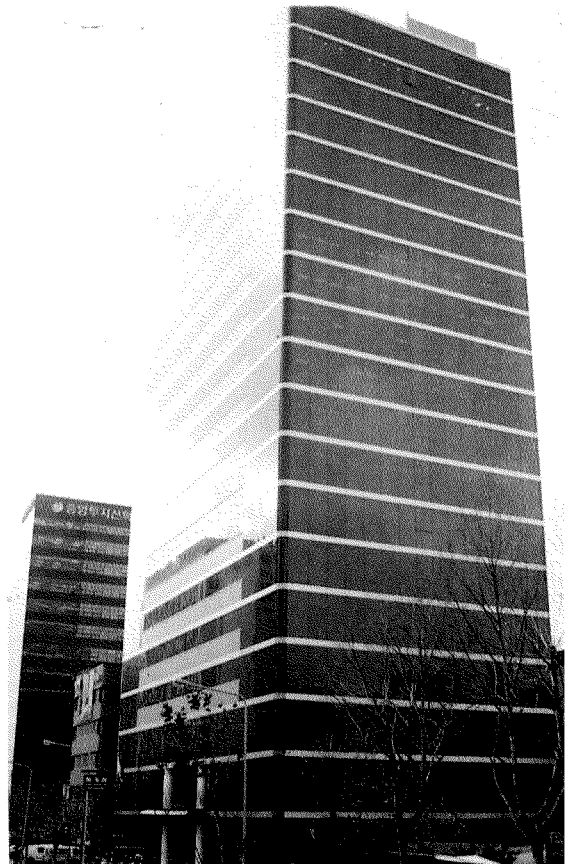
府 道 別 世 帯 及 人 口 概 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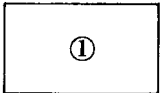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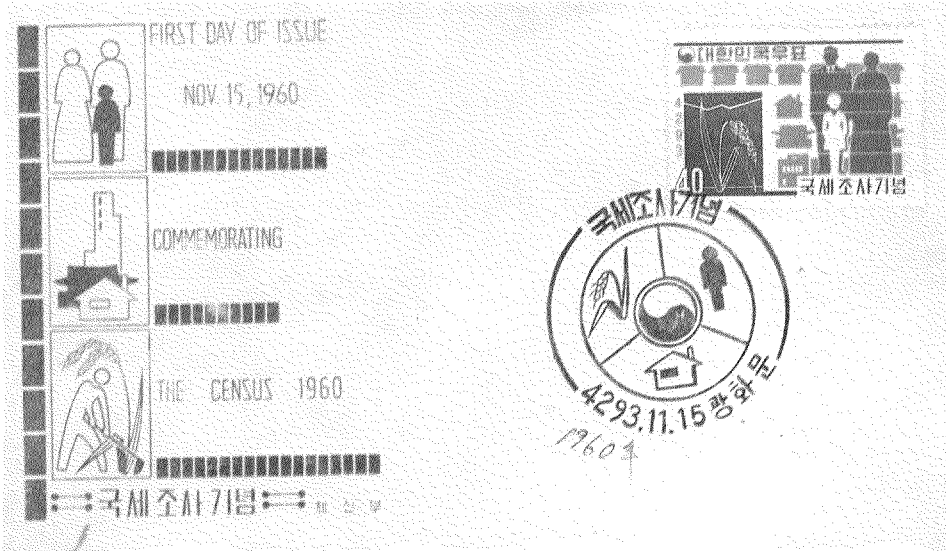
統計廳舍變遷



- ① 內務部 統計局 時節의 콘서트建物(現美國大使館자리)
- ② 內務部 統計局 時節의 國勢調査課(現國立博物館자리, 1955)
- ③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時節의 建物(現統計研修院자리, 1961. 12~1992. 10)
- ④ 現 統計廳 廳舍가 있는 빌딩(江南區 驅逐洞, 199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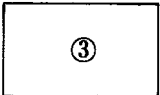


人口住宅總調查 紀念郵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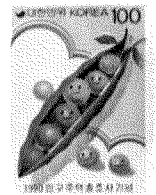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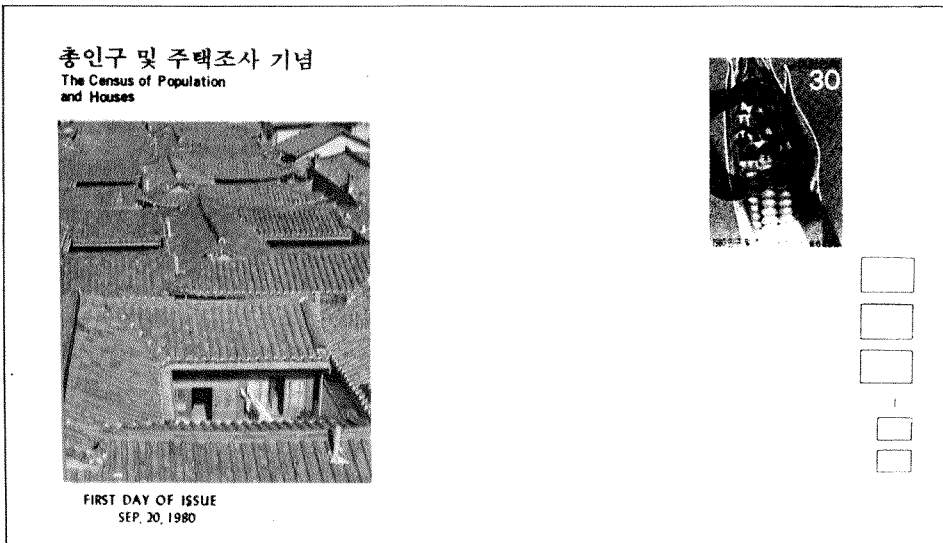
① 1960年 人口住宅 國勢調查 紀念郵票

② 1970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 紀念郵票



③ 198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紀念郵票 및 葉書

④ 1990年 人口·住宅總調查 紀念郵票



目 次

<總說> 時代別發展史要約	11
I. 人口統計	75
1. 人口住宅總調查	77
2. 人口動態統計	90
3. 常住人口調查	97
4. 住民登錄統計	98
5. 人口移動統計	100
6. 人口推計	110
II. 勞動統計	115
1. 日帝時代の 勞動統計	117
2. 解放後の 勞動統計	134
III. 農林漁業統計	157
1. 日帝時代の 農林漁業統計	159
2. 解放後の 農林漁業統計	192
IV. 産業經濟統計	245
1. 日帝時代の 資源調査	247
2. 解放後の 産業經濟統計	258

V. 企業經營統計	301
1. 企業實態統計	303
2. 景氣指標	331
VI. 社會統計	351
1. 地域社會	353
2. 住居生活	361
3. 保健·衛生	368
4. 教育·文化	378
5. 環境·其他	384
6. 社會統計調査 및 社會指標	390
VII. 家計 및 物價統計	397
1. 家計調査	399
2. 農漁家經濟調査	406
3. 物價統計	461
VIII. 金融·財政統計	489
1. 日帝時代の 金融·財政統計	491
2. 通貨金融統計	508
3. 財政統計	520
IX. 國民計定統計	527
1. 國民經濟計定統計	529
2. 對外去來統計	558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587
1. 序 論	589
2. 韓國標準產業分類	590
3. 韓國標準貿易分類	605
4.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	610
5. 韓國標準職業分類	617

<附錄>

1. 統計目錄	635
2. 參考圖表	691

여 백

〈總 說〉

時代別發展史要約

여 백

<總說> 時代別 發展史 要約

1. 近代統計以前史

가. 古代의 統計需要와 統計認識

統計의 任務는 複雜多岐한 社會集團과 自然現象의 現實을 주어진 目的에 따라 計量的으로 簡單 明瞭하게 數字로 表示하여 그 實體를 正確하게 認識시키는 동시에 將來의 趨勢를 豫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古代로부터 人類가 集合하여 社會生活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이루어 있으면 計數에 대한 觀念이 이미 發生하였다고 할 수 있고 粗雜하나마 統計活動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人知의 發達は 統計的 認識을 수반한다. 근대이전의 統計需要需要的의 一次的 對象은 土地와 그 產物, 人民, 兵力 및 租(租稅), 庸(丁賦), 調(貢賦, 戶調)등 各種 統治要件들이다. 그리하여 歷史가 시작되면서 統治機構속에 이에 관한 調查機能을 具備하고 後期에 갈수록 安定的으로 定着시켜왔다. 古來로 土地調査나 戶口調査를 비롯한 各種 統計計數가 後代에까지 持續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나. 古朝鮮

韓國史에서는 특히 上古以來 社會와 國家體制를 구성하면 빠짐없이 人口의 規模와 地域範疇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록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王儉朝鮮

옛날 하느님(桓因)의 아들 桓雄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太伯山頂 神壇樹下

神市」에 내려와 風伯, 雨師, 雲師와 「穀, 命, 病, 刑, 善惡등 擔當」을 두고 人間 360餘事를 다시리다가 態女族과 결혼하여 檀君을 낳으니 그가 王儉으로, 「平壤에 도읍하고 國號를 朝鮮」이라 하였다. 후에 阿斯達(弓忽山 또는 今彌達)로 移都하였다.

(2) 衛滿朝鮮

眞番地에 있던 衛滿은 「무리 천여명」을 모아 동쪽의 패수를 건너 朝鮮에 亡命하여 西邊守令이 되어 奏故空地 上下障에 살다가 「眞番朝鮮과 燕齊의 亡命者 數萬을 이끌고 準王을 축출하여 王儉(城)에서 王」이 되었다. 그리고 兵威로서 이웃 小邑과 眞番, 臨屯을 모두 복속시키니 「方數千里」가 되었다.

다. 列國時代

衛滿朝鮮이 解體되면서 조선영토의 西方에는 한 때 漢이 郡果을 두었으나 東方, 西方과 南方에는 土首 列候國과 大韓諸國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列國時代라 한다.

(1) 西方：郡縣地域

① 「濊君南閭등 28萬口」가 BC128에 寮東을 통하여 萬에 內附하니 滄海郡을 두었다가 BC126에 罰한바가 있었다.

② 樂浪郡과 현도군은 前代의 滄海郡地(後漢書 濊傳)이며 眞番故地(應劭, 徐廣)이던 곳에 두었다.

樂浪君은 前漢書 元始2年(AD2)에 「25縣 62,812戶, 406,748口」였다가 後漢書 永初5年(AD111)에 「18城 61,492戶, 257,050口」에서 晉書 咸寧2年(AD276)에는 「6縣 3,700戶(口는 未詳)」로 되었고, 魏書(北魏) 天平4年(AD440)에 樂浪郡이 되면서 「1縣(永樂) 49戶 203口」가 된다. 이 무렵의 朝鮮은 AD432에 平州

北平郡(2縣, 430戶, 1,836口)의 한 縣으로 朝鮮人을 옮겨서 設置한 곳이다.

현도는 前漢書의 「3縣, 45,006戶, 221,845口」로 출발하여 後漢書에서는 「6城, 1,594戶, 43,163口」가 되었다가 晉書의 「3縣, 3,200戶(口는 未詳)」를 끝으로 없어진다.

(2) 東·北方: 列侯國 地域

夫餘는 長城北方이며 현도북방 千里되는 弱水(西遼河 후에 松花江) 근처이다. 「본래의 濊地인 바 地方이 可히 2千里로 戶는 8萬」이었다.

高句麗(句麗)는 遼東(郡)에서 東쪽 千里되는 곳이다. 「남쪽에 朝鮮과 접하고 地方可2千里로 戶는 3萬」이었다.

東沃沮는 高句麗의 개마대산의 동쪽 「北接扶餘 南接 濊貊으로 方可千里에 5千戶」였다. 東沃沮가 아닌 沃沮에 대하여는 武帝時 현도군을 沃沮城에 두었었으나 나중에는 樂浪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沃沮國은 高句麗의 개모성, 발해의 南海府로 지금의 遼東半島 개평·海城에 해당한다고 한다.

古代列國의 國勢

			規 模
扶	餘		方可 2,000里, 8만戶
東	沃	沮	地方 1,000里, 5천戶
	濊		(조선의 동쪽) 2만戶
高	句	麗	方可 2,000里, 3만戶
馬		韓	각국 100里씩, 54國10余만호(大國 만여戶, 小國수천戶)
辰		韓] 각국 100里씩 12國 4~5만호(大國 4, 5천戶, 小國 6, 7백戶)
弁		韓	

濊는 고구려와 沃沮의 남방, 辰韓의 北方이고 東은 大海에 이르는 곳으로 「今朝鮮之東」이 모두 그 땅이다. 衛滿朝鮮과 濊君 南閔 및 武帝戰役의 故事가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戶는 2萬」이라고 한다. 後代에 東濊라 通稱되었다.

(3) 南方：三韓諸國

準王이 衛滿에게 쫓겨 韓의 金馬郡을 거점으로 韓王이 되었는데 馬韓의 50餘國(54國 또는 55國) 構成은 大國인 경우 萬余家, 小國은 數千家씩 「總數는 10萬餘戶」였다고 한다. 그중에 百濟가 있는 바, 三國史記에서는 東明의 후에 온조가 帶方故地인 河南尉禮城에 都邑하였다고 하고 三國遺事에 의하면 溫祚가 樂浪에 있던 弁韓의 後孫을 이끌고 마한에 와서 百濟를 세웠다고 한다.

辰韓과 弁韓은 住居地域이 잘 구분되지 않으나 각기 12國씩 24國인데 大國은 4~5千戶, 小國은 6~7百戶로 「總4~5萬戶」였다고 한다. 三韓地域은 帶方남쪽의 「古之辰國地로 方可四千里」이다. 馬韓人인 辰王은 月支國(또는 目支國)에서 弁·辰韓도 다스렸다고 한다.

그중, 辰韓의 斯盧(新羅)는 「朝鮮의 遺民」이 山谷間에 모여살다가 6村을 基盤으로 成長하였고 弁韓 加耶地方에서는 9千이 100戶씩 「75,000인」을 통솔하고 있다가 龜旨峰에서 大駕洛(加羅)을 세웠다.

라. 三國 및 南北國 時代

(1) 三國의 戶口數

高句麗는 麗唐戰役이 끝날 때 5部, 76城 69萬餘戶로 全盛時의 都城에는 210,508戶가 있었다고 한다.

百濟는 濟羅(唐)戰役이 끝났을 때 5部37郡 200餘城에 76萬戶를 헤아렸으며 全盛時의 都城은 152,200戶가 있었다.

新羅는 건국초부터 統一期까지 領土와 戶口가 계속 늘어나 可變的이기 때문에 전국규모의 精確한 戶口數가 없었으나 都城規模는 全盛時(憲康王時)에 1,360坊, 55里에 178,936戶가 있었다.

발해는 大祚榮이 營州(大凌河流域)에서 출발하여 高句麗 계루故地인 東牟山에

서 建國할 초기에는 地方2千里에 10餘萬戶였다고 하며 景王(AD870경)代 海東盛國時에는 地方이 5千里에 上京을 비롯하여 5京 16府 62州나 되어 「扶餘, 沃沮, 弁韓, 朝鮮의 海北諸國」을 전부 包括하였다. 後代에 발해가 쇠퇴하면서 백성이 高麗로 歸附한 人口가 많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數萬戶」가 2回, 「數萬」이 2回씩 출현한 것을 비롯하여 3千戶, 170人등 수없이 나타난다. 「數萬戶」「數萬」을 각기 2萬戶로 잡아도 고려도 귀부한 數字는 약 8~10萬戶를 헤아릴 수 있는 실정이다.

(2) 三國의 官制

古代國家設立과 동시에 官制가 形成되면서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것으로 古朝鮮 初期의 風伯, 雨師, 雲師는 軍制를 主穀·主病·主刑등은 農牧·刑罰관계를 담당하는 職分이라 할 수 있고, 後期の 博士, 大夫, 大師나 朝鮮相(大臣), 니곡상(地方長官), 將軍(軍事)등 그밖에 土着語로 되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官名속에 古代 社會의 官制특성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扶餘에 家畜名을 딴 馬加, 牛加, 저가, 狗加 등은 軍事·農牧·貢役·刑罰을 담당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區分된 古代語의 漢字 表記 中央部署라 할 수 있고 馬韓官制에 있는 都尉, 中郎將, 魏率善, 歸義候나 辰韓의 渠師, 臣智밀에 險則, 살해, 邑次등도 軍事·對外關係·戶口租賦등을 담당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 東沃沮에 있는 功曹, 主簿등의 官職도 그와 같을 것이다. 駕洛國의 9千, 9官을 「庶僚之長」 즉 중앙에서 政治를 分掌하는 公廳의 長들이었던 것이다. (三國遺事)

後代의 三國은 律令制가 定着되면서 官制가 發達하게 된다. 高句麗는 9等 또는 12級의 官制를 두었는데 大對盧 (土拙: 1品官)는 摠知國事(總理)였다고 하고 鬱抑(主簿: 從2品官), 조의대형(從畏大夫: 從3品官)등은 徵發과 法制를 管掌하였다.

百濟는 古爾王때 16品官制를 정하면서 中央6佐平중에는 內臣佐平(首相格)과 內頭佐平(財務) 兵官佐平(兵馬事) 등이 있고 中央官署 중 外官(附屬官署)에 해당하는 司軍部(軍事), 點口部(戶口, 戶籍), 網部(財務), 日官(天文氣象)과 都市部

(市場)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聖王때에 나오는 五經博士와 曆博士, 醫博士, 易博士등이 이들 官制를 數教的(統計的)으로 뒷받침하였음은 물론이다.

<신라관등>(삼국사기)

품 계		관 직 명	비 고		
진 골	국 상 급	太輔→上大等 太大角干(大角干)			
	1	이별찬(각간, 서발한)			
	2	이척찬(이찬, 이 간)			
	3	잡 찬(소관, 명 간)			
	4	파진찬(한간)			
6 두 품	5	대아찬(대아간)	시 중		
	6	아 찬(아 간)			
	7	일길찬(일길간, 일기지)			
	8	사 찬(사 간)			
5 두 품	9	급별찬(급별간)	사 랑		
	4	10		대나마(한나말)	
		11		나 마(나 말)	
	4 두 품	12		대 사(한 사)	낭 원 사 외 랑 지
		13		소 사(사 지)	
		14		길 사(길 지)	
		15		대 오(대오지)	
16		소 오(소오지)			
17	조 위(선저지)	사 랑 (史)			

南北時代に 발해의 官制에도 8品階가 있고 中央官制의 政堂省(尙書省), 大內相(令)과 左司政, 右司政 밑에 각 6部씩 12部를 두었는 바 그중에 倉部(財務), 戒部(軍事)와 計部(戶口, 會計)등이 있었다.

記錄이 비교적 풍부한 新羅는 본래 骨品制에서 출발한 17官等を 두었으나 統一前인 眞平王(580年代) 때의 兵部, 調部(租稅, 賦役), 位和部(吏部)와 眞德王(650年代) 때 執事部中待(首相)와 그에 따른 中央官制 整備로 官僚層을 形成하기 시작하였다. 倉部(財務), 工匠府(前의 典祠署; 商工, 建設)를 두었고 統一(南北時代)直後에는 國學設立(AD682), 醫學博士(692), 算學博士(717)를 두게 된다. 新

羅의 調部, 倉部는 泰封의 調位部(大龍部)를 거쳐 高麗의 民官·戶部로 이어졌다.

(3) 統一新羅의 戶口·土地調査 定着

신라의 土地制度는 均田制를 중심으로 각종 公職과 역할에 따라 賜田과 口分田을 따로 支給하여 中央集權의 貴族制의 發達을 보게 되고 地方土臺들도 官僚로 代替하게 되자 古代體制의 解體와 새로운 통치기능이 형성되었다. 그에 따라 8세기 부터는 戶口와 土地產物의 調査도 定例化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景德王代(742~764)에 中央과 地方官制를 中國式명칭으로 大幅 개정하고 地方(10道)에 按撫使를 파견하는가 하면 3年마다 村落單位로 人口, 耕作地, 動植物등을 조사해서 軍丁, 賦役, 租稅에 充당하는 統計 支援의 制度化를 보게 된 것이다.

이무렵 淸州地方(西原京) 4個部落의 民政文書인 戶口帳籍(日本 政倉院所藏)에서는 孔烟이라 부르는 일반 戶를 丁의 數 規模에 따른 9等級으로 구분하고 人口를 男女別, 年令別 및 身分 등에 따라 6等級으로 區分해서 거기에 따르는 家畜, 果樹와 土地의 結數, 部落의 크기(周圍步數) 등을 나타내고 있다.

孔烟(戶)等級: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上中 下下

人口等級: 丁男(丁女), 助子(助女子), 追子(追女子), 小子(小女子), 除公(除母), 老公(老母)

耕地區分: 官謨田, 麻田(以上 國有地), 內視令畝, 村主位畝(以上 地方官職田), 烟烏有畝(民有地) 등

產業種類: 米穀과 牛·馬, 뽕나무, 자작나무등 產物別區分

마. 高麗時代

貴族政治와 官僚職階의 完成期라 할 수 있는 高麗에서는 建國初부터 中央官署에 內史, 門下, 尙書의 三省과 吏(官選) 戶(內務, 財務), 禮(文教), 刑(法), 兵(軍事) 및 工(商工, 建設)의 6部를 두었다. 이중 戶部가 戶口, 賦貢, 錢糧(糧) 등을

담당하는 部로서 新羅의 倉部, 調部, 泰封의 調位部와 고려초에 民官을 거쳐 太祖가 三司와 함께 司度(度支), 金部, 倉部로 하였던 것이다. 成宗14年(995)에 이들을 尙書戶部 또는 尙書度支, 尙書金部, 尙書倉部の 3部로 개편하였다가 文宗時에 戶部로 그리고 高麗末 恭讓王 時에 戶曹로 改稱하였다. 한때는 版圖司, 民曹, 民部라고도 한 바 있는데 그 所屬官吏로 縣宗時에는 主事, 令事와 記官(25人), 計士(2人), 算士(4人) 등이 있었고 文宗時에는 主事(6人), 令史(6人), 書令史(10人), 計士(1人), 記官(25人) 및 算士(1人)등이 있었다.

高麗의 算學職(高麗史 百官志)

官 府 名	計 士	算 士	官 府 名	計 士	算 士
尙 書 都 省		1	將 作 監		1
三 司	2	4	司 宰 寺		2
尙 書 考 功		1	單 器 監		2
尙 書 戶 部	1	1	尙 倉 局		1
尙 書 刑 部		1	尙 藥 局		2
尙 書 都 官	1	1	中 尙 署		1
尙 書 工 部	1		大 官 署		1
御 史 台	1	1	掌 治 署		1
國 子 監	(從9品 算學博士2人)		內 園 署		1
殿 中 省		1	典 廠 署		1
禮 賓 省		1	大 倉 署		2
大 府 寺		1	大 盈 署		1
小 府 監		1			
			合 計	6	32

參照：韓國史大系 4卷 高麗編(王珍社 1975)에 의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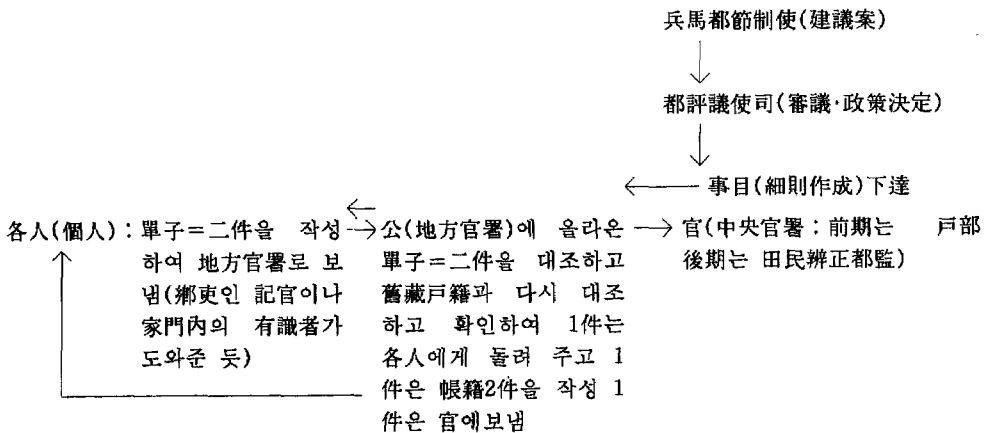
高麗時의 戶口調査는 庶民에게 대하여서는 州郡縣에서 해마다 이를 조사하여 戶部に 보고하고 兩班은 3年마다 戶籍을 작성하되 2部를 만들어 1部는 官衙에 보내어 戶部에서 종합취합하고, 1部는 자기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韓國에서 族譜가 發達한 것은 高麗의 이런 戶籍調査慣行이 뒷받침한 것이다. 調査內容은 戶主와 世系,

同居子女, 兄弟, 姪婿 등 族派와 奴婢 등을 기록하였다. 高麗末의 「李太祖戶籍原本」은 현재 國寶131號이다.

高麗의 戶口調査는 新羅의 民政調査를 한층 制度化한 것으로 이것이 軍賦役과 相關하여 16歲부터 國役に 복무하고 60歲에 免役케 하되 每年 民籍의 戶口를 統計내어(計口籍民) 戶部에 제출해서 그 戶籍에 따라 徵兵·調役을 시키고 人丁의 多過에 따라 賦役을 정했다고 한다. 이무렵의 賤奴는 賦貢義務가 없었다.

이들 調査는 中央의 指針(法制)에 의하여 州郡縣 및 部落單位로 조사하였으며 高麗一代를 통한 全國規模의 調査計數는 宋史에 男女210萬口가 전하고 있으나 이는 「計口籍民」의 對象人口만을 가리킨 것이다. 또 高麗는 後三國을 統一한 이후에도 계속 北方정책을 추진하면서 國토를 넓혀갔으며 발해, 거란, 여진족등의 歸附者가 끊이지 않았고, 또 初期의 遼, 金, 後期에는 元과의 戰役등으로 領土와 人民의 規模가 항상 流動的이었다. 國都인 開城에 대해서는 고려말에 城內民戶가 13萬이었는데 漢城으로 朝鮮이 천도하고 난 후에는 8千餘戶가 되었다는 훗날의 記錄이 전한다(이수광)

戶籍作成의 節次



註) 許興植: 國寶戶籍으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韓國史研究」第16卷 1977)

韓國史에서는 三國時代以來 全國의 戶口 民生實態와 田畝作現況을 確認, 督勵하

기 위하여 地方州郡縣 官吏以外에도 中央에서 計檢使, 檢點使, 計點使, 按撫使, 敬差官등을 派遣하거나 踏險(實査)하게 하는 것이 慣例였는바 高麗에서도 이를 자주 시행하여 現地戶口의 多少와 地方官行幣를 조사하거나 응징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에 의하여 租稅賦役을 調整 또는 免除해 주지도 하였었다.

그러나 高麗末에 와서 舊來의 戶口成籍이나 戶口調査報告의 不實化때문에 道와 州郡縣의 戶口實數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거기에 良民의 고초가 심해지자 이의 改革論議가 활발해 지면서 각 도에 計點使를 보내 戶口를 점검토록 하였다.

한편 都城의 戶數는 20間에 걸치는 家屋은 一戶로 하고 間數가 적은 집은 4~5家を 합쳐서 一戶로 하기로 改定해서 戶口를 파악하도록 하였다.(우왕 元年) 麗末 開城戶口數 13萬은 이때의 戶口數로 추측된다.

바. 朝鮮時代

全國 戶口數의 파악은 朝鮮代에 구체적 記錄으로 남아 있다. 이는 高麗末에 改革主導勢力(이들이 朝鮮을 건국한다)들이 戶口, 量田, 稅制등의 弊害를 改革코자 하는 중에 공민왕 때부터 실시하던 戶牌法(처음에는 水陸軍에만 실시)을 朝鮮建國以後 一般人에게도 시행하면서 더욱 促進되었다. 朝鮮의 戶牌法은 記錄上 太宗, 世祖, 光海, 仁祖 및 肅宗때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모두 庶政改革을 강력히 추진하던 王代이다. 그러다가 舊韓末이 되면 戶牌로 쓰던 骨牌, 木牌가 紙牌로 變形되고 나중에는 門牌달기를 制度化하였다.

朝鮮의 戶口調査제도도 역시 新羅以來의 高麗末 戶口調査制度를 답습하여 太宗, 世宗, 成宗때에 整備된 것이다(經國大典). 이로써 朝鮮의 戶籍制度는 다른 시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착발전하였다. 戶口調査를 每式年(子, 午, 卯, 酉年)別로 실시하되 그 台帳을 그때마다 改編하여 이를 戶曹, 漢城府, 本道·本邑등에 設備케 하였다. 調査體系는 각 戶의 戶長이 戶口單子(호적등본類)에 居地, 職役, 姓名, 年甲(年齡), 本貫 및 4租, 妻와 妻의 年甲, 本貫 및 4租, 率居子女와 奴婢의 年甲을

附記해서 邑, 道, 漢城府를 통하여 申告하면 漢城府는 이를 上啓(報告)하고 史官에게 넘긴다. 이때 5家一統制를 併行하였다.

朝鮮時代 戶口統計(戶口式) 拔萃

			戶 數	口 數	備 考
太祖	2	1393		301,300	西界漏落
太宗	6	1406	180,246	370,365	漢城府漏落
世宗	22	1440	201,853	602,475	漢城·開城漏落
中宗	11	1519	754,146	3,745,481	
仁祖	26	1648	533,720	1,793,701	
孝宗	8	1657	668,737	2,201,098	
縣宗	13	1672	1,205,866	4,720,815	
肅宗	19	1693	1,547,237	7,045,115	
	46	1720	1,559,488	6,799,097	
英祖	23	1747	1,759,692	7,340,318	
	50	1774	1,703,030	7,098,441	
正祖	22	1798	1,741,184	7,412,682	
純祖	34	1834	1,578,823	6,755,280	
憲宗	13	1847	1,587,181	6,751,656	
哲宗	12	1861	1,589,038	6,748,138	
高宗	26	1889	1,569,642	6,510,995	
光武	10	1906	2,765,878	13,023,029	經濟府 統計年報
隆熙	4	1910	2,804,103	13,313,017	"

朝鮮 中央官署의 하나인 戶曹는 戶口, 貢物, 賦役, 田糧, 食糧등을 管掌하였는 바 그에 所屬된 官署로 版籍司, 會計司, 經費司를 두었다.

- 版籍司; 戶口, 田地, 租稅, 賦役, 貢納, 農事, 잡업 및 豊凶調査와 進代(救恤)등 事業을 담당
- 會計司; 京·外의 金錢, 食糧에 관한 收支計算 등을 담당
- 經費司; 京都와 宮庭 및 外事關係의 經費支出 담당

各曹의 構成

史曹：文選司, 考勳司, 考功司
戶曹：版籍司, 會計司, 經費司
禮曹：稽制司, 典享司, 典客司
兵曹：武選司, 乘輿司, 武備司
刑曹：詳霸司, 考律司, 掌禁司, 掌隸司
工曹：營造司, 攻冶司, 山澤司

朝鮮의 戶口와 田制 및 租稅를 담당하는 部署로서는 戶曹以外에 兵曹, 工曹가 一部 機能을 하고 承政院(國王 秘書室) 6房의 하나인 戶典을 관장하는 戶房(左承旨所管)도 있다. 承政院制度는 멀리 古朝鮮, 高句麗의 主簿, 百濟의 內臣佐平, 新羅의 稟主·執事部에서 비롯되어 高麗時 中樞院을 거쳐 世宗때에 承政院으로 된 것이다.

또 地方에서도 6房官屬의 하나로 戶房을 두어 戶典, 戶籍, 田量에 관한 鄉里의 일을 맡아 보았다.

式年(子, 卯, 午, 酉年 : 3年間隔)調查의 制度化와 함께 특히 朝鮮代에는 官職에 算學教授(從6品)이하 算士, 計士, 算學訓導, 會士(從9品)와 別途의 算員(30名)을 두고 計數業務 즉 統計를 맡게 하였었다.

土地調査는 每20年마다 施行하였는데 이는 新羅代以來의 田品制慣行에 따른 것이다. 世宗代의 貢法詳定所, 田制詳定所에서 그것을 研究하게 하였다. 田制에서 年分法, 大同法, 均役法등은 이 時代의 產物이다. 이들 調査는 申告式으로 되어 있고 身分과 收率(田品, 結)에 따라 軍丁과 無關한 女子와 賤·奴等 疎外層이 調査對象에서 除外되거나 漏落된 것이 많아서 오늘날의 全數調査 概念과는 달랐다. 또 後代에 가면 官員行弊도 작용하였다.

2. 近代統計의 導入과 試練

가. 開化와 大韓帝國時代

이처럼 朝鮮時代의 統計는 戶口와 田量(量田)을 비롯하여 前代에 비하면 制度

的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開化期以來對外關係가 政策的 課題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새로운 貿易關稅, 經濟利權에 관한 관심이 高潮되고 또 列強의 挑戰과 近代國家運營 維持를 위해서는 從來의 戶口貢賦나 租稅制度만으로는 여러가지 모순이 노출되어 上下를 막론하고 분쟁·소요가 끊이지 않게 되자 조세제도와 관련한 改革의 必要性이 提高되었다.

壬辰亂前後의 田結數

道 名	宣祖壬辰(1592)前	光海君3年(1611)
京 畿	150,000餘	39,000餘
忠 清	260,000	110,000
全 羅	440,000	110,000
慶 尙	430,000	70,000
黃 海	110,000	60,000
江 原	28,000	11,000
平 安	170,000	94,000
咸 鏡	110,000	47,000
合 計	1,708,000	541,000

1807年(純祖 7) 田結統計表

道 名	元帳付田畝結數	時 起 結	實 結
京 畿 道	112,090結	52,322結	52,107結
忠 清 道	256,528	126,333	120,833
全 羅 道	340,103	216,600	204,760
慶 尙 道	337,128	205,304	201,553
黃 海 道	132,211	73,548	68,548
江 原 道	41,151	11,712	11,569
平 安 道	119,635	85,190	84,910
咸 鏡 道	117,746	—	66,539
合 計	1,456,592結	771,009結	810,819結

「資料」 『萬機要覽』財用篇 2, 田結.

甲申政變때에 官制改革을 試圖하면서 租稅業務所管의 統合論議를 시발로 여러가

지 制度上의 改革過程을 거쳐 오다가 甲午更張때에 戶口調査와 租稅業務를 度支府로 統一시켰다. 이때에 中央部處등 官廳(府, 部, 衙)의 業務分掌規程속에 현대적 意味와 用語로서 統計業務가 明文化되었고(報告課, 文書課로) 隆熙2年(1908)에는 度支部官房內에 正식으로 「統計課」가 설치되었다.

종전까지 日帝官學이 主導한 時代史 區分에서는 日帝에 의하여 主導된 甲午更張을 甲午改革이라고 하면서 開化期의 轉換期로 규정짓고, 韓國史에서도 한동안 通說로 굳혀왔었다. 그러나 開化期의 契機는 文化史的으로는 17, 18世紀의 實學思想에서 그 基礎를 다졌고, 다만 그것의 社會經濟史的 成果는 19世紀 後半들어 더욱 거세어진 開化風潮와 傳統間의 갈등을 겪으면서 外國艦船出現, 書院撤廢, 大院君失脚(1873)에 이은 身分制崩壞, 對外開放, 新文物受容등을 거쳐서 1880年の 官制改革(統理機務衙門, 總理大臣制度), 1884年の 甲申政變으로 表出되었던 것이다. 즉, 1880年代初半에 外國과 修交를 하고 最初의 新聞(漢城旬報), 最初의 民間出版社(廣印社) 出現, 國旗制定, 軍制改編등이 있었고 新式教育機關(通辨學校, 元山學舍) 등도 出現한다. 甲申政變 以後에는 稅制를 戶曹로 統一시키자는 公論이 나 오고 育英公院(洋學), 培材學堂(宣教), 鍊武公院(軍官)을 비롯한 公私立學校들이 세워지고 典圖局 造幣廠과 機器局등도 준공을 보게된다.

朝鮮政鑑, 萬國政表(1886), 算學正義(1867)등은 그 前代의 東國文獻備考(1770), 戶口總數(1789), 萬機要覽(1808), 林園經濟志(1835) 등과 함께 開化期를 전후한 이 무렵의 現況을 나타내는 文獻들이다.

이에 비하여 甲午更張(1894)은 이 開化물결을 타고 東學革命과 淸日戰爭의중에서 實施한 官制改革이 中心이 되고 있다. 즉 甲午更張時에는 당시의 自主的 開化趨勢를 계기로 위로부터 改革하려던 甲申政變에 이어 밑으로부터의 改革壓力인 東學農民革命때문에 行政機構의 近代化와 傳統王朝社會의 改編이 不可避한 矢점에서 開化의 方向을 王權과 官制改革에 중점을 두고 改革作業을 한 것이다. 이때 開化意識에 副應하며 王權과 既存統治層에 타격을 주기위한 附帶的인 庶政改革도 수반되었고 官制名稱과 機構運營에서 「新制度」로 할 것은 대부분 새로운 開化 用語를

導入하도록 하였다.

開化期以來의 各營·衙門을 철폐하거나 格下시켰고 그에 所屬하던 屯田, 驛士, 牧場士등을 度支部로 移管시키고 그대신 새로이 量地衙門을 設置(1898)하여 全國의 土地測量事務를 管掌케 하였다. 이때 測量技師를 美國에서 招聘하였다.

甲午以後 이들의 급격한 改革作業은 國民들사이에서 呼應을 받지 못하여 1年을 지탱치 못하였고 또 이 당시 日本以外에도 한동안은 國內에 남아있던 다른 外勢 즉 露, 美는 물론 비록 退勢하였지만 淸國의 背景도 있고 해서 1896년부터는 制度改革에 상당한 自主性이 發揮되었었다. 開國年號를 建陽으로 고치면서 太陽曆을 使用한데 이어 1897년에는 國號를 大韓帝國으로 고치고 光武年號를 쓰기 시작했고, 1899년에 大韓帝國國制를 頒布하였었다.

統計機能과 關聯하여서 보면 議政府 軍國機務處(總理大臣兼職)에 記錄局을 두어 中央官署의 行政 및 統計事務를 보게하고 잠시後에는 外務, 度支部의 總務局에 있던 記錄(行政과 統計)業務도 廢止 내지 축소하며 이를 記錄局으로 集中시켰다.

官報局에서는 종래의 <朝報>를 改編한 <官報>를 發行하였다.(1894年 6月) 한편 종래 戶曹에 속했던 版籍司는 更張後 8個府(衙門)中 內府(內務衙門의 改稱)의 版籍局이 되면서 戶籍事務만 보도록 함으로써 戶籍을 戶口(內府)와 田地租稅(度支府)등과 떼어 獨立시켰다.

初期의 <各府·各衙門通行規則>에 의하여 각 府·衙門 總務局에 文書課, 往復課, 記錄課와 함께 報告課를 두어 府內各局의 統計案件을 表本으로 만들어 大臣에게 查閱시키고 官報局 官報에 掲載케 하였다. 1896년에는 戶口調查規則과 同細則이 制定되어 戶口를 매년 調查하게 하였으며 戶口調查結果를 비롯한 日氣, 農產作況등 各種 主要統計는 官報에 실리고 있다.

度量衡은 그보다 전인 開國503年(1894) 10月1日字 內務衙門頒令으로 新式才尺斗制로 統一하였고 貨幣도 新式兌換銀本位 貨幣制 兩錢分으로 改革하였다.

이상의 改革過程中에 日本의 勸告, 強壓, 監視 내지 默認등 影響力作用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韓國政府의 自主的 努力이 基層이었다. 그러나 光武年間の 施政努力

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國力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우선 武力을 背景으로 한 日帝는 韓國의 軍事力, 警察力을 무력화하는데 注力했고 그여세로 韓國에 대한 影響力을 점차 深化시켜갔으며 러시아와 一戰을 각오한 뒤에 이 傾向은 더욱 加速化하였다.

1900년이 되면서 日本人의 經濟利權強化가 노골화되고, 新式貨幣(圓錢金本位制)와 日本貨幣의 通用, 日本人의 銀行設立, 日本人學校의 亂立등이 이 時代를 상징한다. 그리고는 露日戰爭과 함께 乙巳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무렵에 韓國政府는 度支部官房內에 <統計課>를 두었다.(1908), 乙巳條約을 맺는 해에 土地調査事業을 日本人測量技士로 하게 하고 1910年(3月)에는 韓國政府에서 土地調査法을 公布함과 同時에 <土地調査局>을 設置함으로써, 本格的인 土地調査事業의 準備에 着手하였던 것이다. 同年 8月 韓日合邦이되자 朝鮮總督府는 이를 <臨時土地調査局>으로 改編하여 이 事業을 引受하였다.

戶口調査는 1890年의 새로운 民籍令公布와 1896年의 戶口調査規則에 따라 內部에 自進申告토록 하여 종전에 3年間隔 調査를 每年 調査하게 하였던 바 1905年以後에는 日本人 警務顧問이, 그리고 1910年以後에는 總督府 警務總監府(後에 警務局)에서 實施토록 하였다. 이 무렵 司法權 移讓과 軍部廢止에 이어 警察權을 日本에 移讓하였다.

나. 日帝時代

1910年 8月 韓日合併이 되자 日本은 武斷政治로써 必要的 政治的 植民地支配體制를 確立시킴과 同時에 이 期間에 經濟支配體制도 整備해 갔다. 日本이 韓國에 있어서 經濟的 착취를 計劃한 것은 1904年以後부터 였다. 合併後의 收奪政策은 土地調査事業과 會社令으로 大別되는 바 前者는 日本人의 土地占有投資를 自由로 하여 所有面積을 넓히려는 意圖였고 後者는 企業의 獨占으로 그들 日帝의 資本主義를 보강하자는 것이 主目的이었다.

土地調査는 韓國을 支配하는 基礎가 되므로 서두를 정도로 韓國經濟侵蝕에 있어서 主要한 骨子였다. 資本主義의 私有權確立이나 近代의인 土地所有權의 法的措置를 根據로 하여 土地의 所在, 價格, 地形등의 調査測量을 施行한 것이 이 土地調査事業인 것이다.

日帝初期 總督府官制

根 據	府本部の 部署						備 考
1910年 10.1 (府訓令 2)	總務官房 祕書課 武官室	總務部 文書課 外事局 人事局 會計局	內務部 庶務課 地方局 學務局	度支部 庶務課 稅關工課 司稅局 司計局	農商工部 庶務課 殖產局 商工局	司法部 庶務課 民事課 刑事課	(總督官房 5部) 文書課: 文書受發, 官印管理, 統計 및 報告 庶務課: 部內文書受發統計及報告資料蒐集
1912年 3.28 (勅令 22)	官 房 祕書課 武官室 參事官室 總務局 外事局 土木局	— 總務課 人事課 會計課 印刷課	內務部 地方局 學務局	度支部 司稅局 司計局	農商工部 農林局 殖產局 ※ 舊殖產局이 農林局이 되고 舊商工局이 殖產局이 됨	司法部 民事課 刑事課	(1官房 4部) ※ 總務部를 官房總務局으로 土木局 신설, 人事局, 會計局을 課로(總務局), 各部의 庶務課設임(殖產局을 農林局, 商工局을 殖產局으로)
1915年 5.1 (勅令 60)	總督官房 祕書課 武官室 參事官室 外事課 總務局 土木局 土木課 營繕課	 總務課 人事課 會計課 印刷所	內務部 第 1 課 第 1 課 學務課 學務課 印刷課	度支部 稅務課 關稅課 司計課 理財課 專賣課	農商工部 農務課 山林課 水產課 商工課 鑛務課	司法部 法務課 監獄課	(1總督官房 4部) ※ 部內 局制設임(단 總督官房의 總務局 土木局과 內務部の 學務局만殘留)

土地調査事業의 核心問題는 一定期限內에 土地의 所有主는 所定の 手續節次를

값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申告한 土地가 正確하게 調查 測量되고 一定한 申告節次를 認定받음으로써 近代的인 私有 權이 確定된다. 결국 소홀이 처리한 土地申告는 많은 農民의 私有土地들을 國有化 (총독부소유)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相當部分의 個人土地가 國有地로 沒收되는 例가 許多하였다. 게다가 이미 1911年 8月에는 森林令으로 國有山林이 거의 다 朝鮮總督府의 所在地가 되었고 土地調查事業이 끝난 1918년에는 林野調查令을 公布 하여 朝鮮總督府 所有林野를 더욱 擴充하여 나아갔다.

日帝 統計機構變遷

統計機構 · 部署	備 考
1918. 5. 27(府訓令 28); 官房總務局에 「統計課, 臨時國勢調查課」추가 財務局에 臨時關稅調查課추가(關稅制度 關稅定率調查)	※ 總務課는 官報, 印刷物, 報告 擔當 • 國勢調查評議規程 제정 (1918. 6. 22) • 統計課에 臺帳備置, 年報 편찬(1918. 9. 4 府訓令47)
1924. 12. 25(府訓令 34); 官房에 祕書課, 審議室, 外事課, 文書課 및 會計課를 듬 (文書課;문서수발, 편찬, 보전, 관인, 관보, 도서, 통계조사 및 감독, 내외사정조사, 각종보고, 인쇄물)	(韓國簡易센서스實施準備):1925
1937. 6. 14(府訓令 38); 臨時國勢調查課→局勢調查課 (國勢調查課;國勢調查, 人口動態調查) (總務課;자원조사, 총동원령관계업무 추가)	• 朝鮮人口動態調查規則(1937. 10.27 府訓令 161)
1937. 6. 14(府訓令 96):總務課, 企劃室, 調查課, 文書課를 總務課로 高침	※ 資源調查法에 의한 人口調查 (同規則制定)
1945. 4. 17(府訓令 18); 官房에 祕書官室, 總務課, 企劃課, 人事課, 情報課, 地方課, 會計課 및 地方官吏養成所를 듬 (企劃課;민정조사, 통계조사 등) 鑛工局에 動員課, 勤勞課를 듬.	※ 總務課;관보, 도서, 인쇄물, 문서수발 등 情報課;보도, 선전 · 국민총력 운동 등 動員課;국가총동원계획, 자원 조사, 군수용기초물자 등 관계 勤勞課;국민동원, 기술자동원, 근로자등록 등

1911年 1月에는 總督府가 會社令을 公布하여 會社의 設置를 許可制로 하여 設置와 廢鎖를 自意대로 處理함으로써 韓國人의 企業活動을 規制하였다. 이것은 韓國人 企業의 위축과 日本人 爲主의 企業獨占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民族企業의 成長은 抑制되어 經濟支配構造가 確固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10年の 合併後, 舊韓國官制에 있던 統計課는 廢止되고 統計調査業務는 總督官房 文書課(總務課)와 警務總監府 庶務課등 總務行政, 警察行政의 一部로 다시금 後退하게 된다. 日帝時代의 「統計課」는 1918年以後 4年餘동안만이었다. 그 대신 日帝는 植民地經營에 必要한 計數上의 把握을 위하여 「報告例」規程을 두고 人口 및 產業을 비롯한 각종 統計를 一般官署와 地方官署로부터 징구하여 最終的으로 總督官房文書課에서 綜合·編纂하였다. 이 경우 人口調査는 總督府 官房文書課와 함께 警務局이 主管이 되어 취급하였다.

日帝下의 總人口調査(國勢調査)는 애당초 1920年 實施를 目標로, 1918年에 總督官房에 臨時國勢調査課를 두고 각종 規程·規則과 國勢調査評議會등을 갖추었으나 1919年 己未獨立萬歲示威로 中止되고 1925年 「簡易國勢調査」부터 시작하여 每5年마다 實施하였다. 이처럼 日帝는 人口力을 國勢指標로 정의하고 있었다. 總督府의 「國勢調査」는 1940年分까지 4차례 계속되었다. 이 國勢調査로 報告例에 의해서 把握하였던 年末常住人口調査數를 補完하여 왔다.

總督府는 1924年 9月 29日에 總督官房庶務部 調査課에 本據를 둔 朝鮮統計研究會를 設立하여 國勢調査事業을 間接的으로 支援하는 團體로 登場시키고 그 機關雜誌로 「朝鮮의 統計」를 刊行케 하였다. 이 團體는 國勢調査를 施行하기 前에 全國을 巡回하면서 國勢調査의 重要性을 啓蒙·宣傳함으로써 本調査實施를 支援하였으나 調査가 끝남으로써 同研究會는 自然消滅되었다.

한편 日帝는 1917年에 總督府農林局에서 農產物生産高調査要領을 各 地方官署에 示達하여 土地調査査定이 된 耕地面積으로부터의 米麥·大豆·粟의 收穫高를 報告토록 하였다. 3.1運動後 政治的으로는 회유政策을 써 感情的 무마를 試圖하는 一環으로 產米增殖같은 政策을 폈으나 이것도 經濟착취方法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이미 1918년에 日本의 資本主義發展에 따르는 米穀의 不足狀態와 그로써 米價暴騰·쌀騷動이 惹起되자 그 突破口를 韓國產 米穀送으로 充當할 計略을 構想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實施한 것이 產米增殖計劃이었다.

統計面에서도 특히 米穀生産量등을 더욱 正確히 하기 위해서 米穀生産高調査·米穀生産費調査·糧穀現在高調査 및 米穀移動調査를 每年 實施하였다. 이 產米增殖計劃은 1920年初부터 實施하여 15個年間 할 計劃이었다.

生産은 많이 늘리지 못하면서도 移出이라는 이름의 收奪은 1920년에 185萬石程度에서 1928년에는 742萬石으로 激增한데다가 1933년에는 870萬石이나 되어 결국 그해 生産量을 반以上을 日本으로 「移出」해 간 것이었다. 產米增殖은 豫定대로 實施되지 않았는데도 不拘하고 移出實績이 豫想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無力한 農民의 甚大한 被害實狀을 調査한다는 명목으로 1931년부터 2年間 5個道에 걸쳐 農家經濟調査를 實施하고 1941~42년에 걸쳐 다시 同調査를 實施하였다.

1930年代에 들어서는 土地調査·產米增殖등 一連의 經濟施策때문에 小作農이 急增하였다. 이 時期에는 勞動者가 增加하는 한편 역시 失業者數도 많이 늘어났다. 總督府內務局은 1930년부터 每年 邑面町 總代(區域長)와 警察官憲을 動員하여 失業者調査를 實施하였다. 30年代 末에는 財務局理財課에서 國民所得推計도 試圖하였었다.

이때는 日帝가 植民地韓國을 據點으로 大陸侵略策을 展開하던 時代였다. 1931年 大陸侵蝕의 전조로 戰爭을 挑發하여 滿洲事變을 일으키고 6年뒤인 1937年 7月 7日에는 中日戰爭을 야기시켜 中國本土中 揚子江一帶까지 侵攻하기에 이르렀고 獨·伊와 同盟樞軸國이 된 이후 1941年 12月 8日에는 眞珠灣 奇襲攻擊으로 太平洋戰爭을 惹起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에 나온 것이 이른바 國家總動員法施行이라는 非常措置였다.

日帝는 그보다 전인 1929년에 資源調査法(令)을 公布하여 모든 部門의 資源調査를 道知事責任下에 申告式으로 調査토록 하였다. 綜合的인 調査結果는 出刊하지 않았으나 部門別 工業資源調査實態는 祕密事項이 아닌한 弘報目的으로 여러사람에

의하여 分析出刊이 허락되었다. 그 調査結果에 관한 協議를 위하여 總督府에서는 몇차례 資源調査委員會를 開催하였으며 日本으로부터 資源局長官을 비롯하여 陸·海軍 및 拓務省의 關係官이 參席하고 會議終了後에는 각기 現地視察을 하곤 하였다.

1938년에 公布한 國家總動員法에 依據하여 1939년에는 臨時國勢調査를 實施하였다. 이 臨時國勢調査는 人口調査가 아닌 經營體를 對象으로하는 調査로서 現在의 總事業體調査에 該當한다. 이 調査結果는 「極祕」로, 配布도 制限되어 있어 現在 韓國에서는 그 報告書가 거의 없다. 한편 1939年 6月 1日字로 國民職業能力申告令施行規則이 公布되어 職業能力所有者 16~50歲의 男子는 每月末 自進 申告도록 함으로써 韓國人들을 強制로 징발하여 軍需工場 및 各 鑛山等地에 強制로 就役시키는 資料로 利用하였다. 1941·42·43년에는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를 3회에 걸쳐 實施하여 이를 補完하였다.

1935년에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長을 會長으로 하고 府島邑面의 統計職員을 中心으로 朝鮮統計協會가 設立되었다. 機關誌로는 年 3回 또는 4회에 걸쳐 「朝鮮統計時報」를 刊行하였다. 이것은 1924년에 創設되었던 朝鮮統計研究會가 主로 上級官署의 統計職員으로 組織하여 比較적 정도가 높은 研究를 하게 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는 第1線職員 및 一般民衆에 目標을 두고 出發하였다. 創立當時의 會員數는 약 6천명에 달하였다.

1944년에는 1929年の 資源調査令에 따라 戰時人的資源 確保를 위하여 느닷없는 人口調査를 實施하였으나 그 結果는 極祕文書로 速報 2권만 내어 놓았을 뿐 곧 그들의 敗戰과 더불어 자세한 資料는 發刊하지 못하였다.

한편 農林關係統計는 朝鮮總督府 農林局이 作成하였는데 주로 朝鮮農會가 이에 協助하였고, 總督府 財務局과 朝鮮銀行은 또 각기 그 所管事項에 관한 業務統計를 작성하였다. 또한 朝鮮商工會議所가 都小賣物價調査를 朝鮮總督府의 指示에 따라 定期的으로 調査하여 報告하였다.

日帝는 總監府와 總督府 時代를 통하여 報告例등 行政統計와 기타 調査資料를

統計年報(1906~1943)와 月報(1911.6~1944.12)에 게재하여 발행하였고 總督府 所屬 및 附屬官署와 其他 公共機關(殖産銀行 京城大學등)에서도 해당분야의 定期·不定期統計 및 研究刊行物을 발간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日帝는 韓國을 植民地로 經營하기 위하여 또는 食糧供給地로, 日本의 商品消費地로, 大陸前進兵站基地로 또는 徵兵·徵用등 人力動員을 위하여 모든 統計를 作成하고 일부는 發表하고 一部는 極秘保安 또는 死藏하고 있다가 廢棄시켰다.

農家 규모별 一戶當 收支狀況(1924)

區分 要項	窮 農	小 作 農	自 作 兼 小 作 農	自 作 農	地 主
面 積	耕作 하지 않는 者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	20정보 이상
		3정보 이하	3정보 이하	3정보 이하	20정보 이하
		1정보 이하	1정보 이하	1정보 이하	5정보 이하
		3단보 이하	3단보 이하	3단보 이하	1정보 이하
戶 數	162,209	88,226	98,628	94,453	6,866
		233,029	263,627	179,016	22,994
		354,399	329,431	172,390	39,455
		298,084	225,605	107,819	52,670
收入(圓)	101	824	1,015	1,237	10,712
		591	595	732	2,236
		333	381	441	954
		215	241	314	467
支出(圓)	106	808	924	1,004	5,130
		596	551	635	1,532
		353	374	401	714
		227	242	297	420
差額(圓)	-5	16	91	233	5,582
		-5	44	97	704
		-20	7	40	240
		-12	-1	17	47

이상에서 記述한 日帝時代 統計需要誘發 事情의 흐름을 다시금 年代記的으로 整理하여 보면

1) 1910年에서 20年代初에 이르는 植民地經營體制 구축의 基礎工作期에는 總督府職制를 비롯한 각종 事務分掌規程, 行政規則의 整備와 報告例의 制定, 土地調査令 및 林野調査令 등으로 支配基礎部門을 대략적으로 實體化함으로써 日本의 商品消費市場, 資源供給地化하였다.

2) 1921년부터 시작되는 20年代(1921~31)에 韓國을 食糧供給地로 삼는 米穀中心의 農業生産體制確立時期에는 米穀을 主로 한 生産費·生産高·現在高 및 移動量의 統計調査로 收奪過程을 더욱 確固히 하였다. 한편 人口에 관한 國勢調査를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맞추어 시작한 것도 이 時期였다.

3) 1931年の 滿洲事變을 契機로 하여 中日戰爭前까지의 期間에는 工業部門에서 日本資本의 軍수산업화를 촉진한 이른바 農工並進期로서 資源調査令을 公布하여 産業內 각 部門의 資源申告를 強行하고 社會·經濟的으로는 資源發掘의 實効性を 높이기 위해 農家經濟調査와 失業者調査를 實施하였다.

4) 1937年 中日戰爭 勃發을 契機로 그뒤 敗戰에 이르는 侵略戰爭期에는 國家總動員令을 發動하여 物動量 調査인 臨時國勢調査와 職業能力申告에 의한 人力申告 및 勞動·技術調査, 그리고 家計調査·臨時人口調査·第3次 產米增產計劃의 樹立 등 軍事目的을 위한 産業資源의 統制, 勞動力動員, 食糧의 供出·輸出을 強行하다가 1945年 8月에 敗戰으로 退脚하여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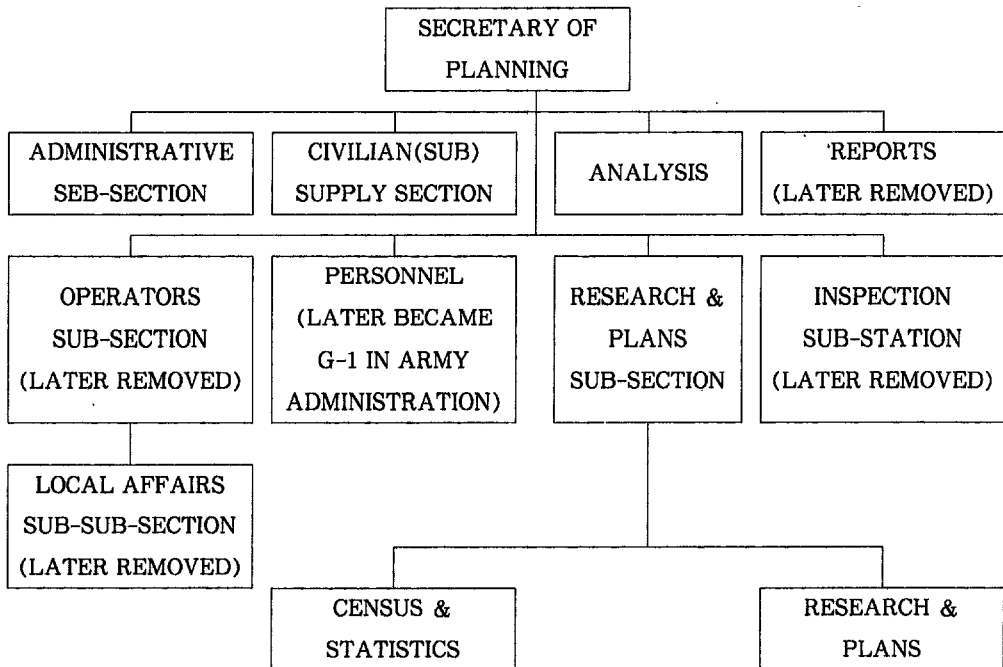
다. 美軍政時代

韓國은 1910年以來 日本의 植民地政策下에서 36年이 경과하는 사이에 日本經濟圈의 그늘밑에서 跛行的 經濟를 형성하여 왔다. 더구나 戰爭末期에 이미 극도의 窮乏상태에 빠진 韓國社會와 그 經濟는 江山이 4번이나 바뀌는 세월에도 여전히 前近代의 패턴을 지속하다가 解放을 맞이 한 것이다.

日帝는 惶忙히 退脚하면서도 故意的으로 秩序와 施設, 文籍·記錄들을 廢毀하고 떠났다. 1941년부터 45년까지의 太平洋戰爭期間중 韓國의 重要資源은 無謀한 戰

時徵發때문에 거의 고갈상태에 빠졌다. 대부분의 土地가 糧穀生産에 흡사되었고 山林의 남벌로 土壤의 流失 및 侵蝕과 樹林의 감소등을 초래하였으며 鑛物資源등은 무참하게 採掘되었고 工場施設은 흡사되면서도 補修 및 代替의 機會가 없이 古物化되어 갔다. 더우기 1943년부터 戰局이 敗亡氣味로 짙어지자 工場의 解體와 古鐵蒐集의 強行으로 일체의 金屬生活用品이 供出되고 交通施設마저 分解하여 造船等 軍用施設 急造에 投入하였다. 石油代用品으로 松炭油를 만들기 위하여 소나무의 伐採에 무자비한 人力動員과 더불어 經濟總資源의 탕진을 招來하였으며 최후에는 貨幣를 남발하고 그 많은 報告例資料를 비롯한 記錄들도 모두 폐각했다. 따라서 日本의 퇴각후에 남겨진 遺産은 아무것도 없었다. 資源과 記錄뿐 아니라 專門人力, 職能層도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統計活動은 거의 無意味한 것으로 보였다. 이것이 解放韓國의 統計事情이었다.

**ORGANIZATIONAL DIAGRAM
PLANNING SECTION
(Feb. 1946)**



資料：駐韓美軍史 Part 3, p.85.

解放直後の 혼란기에는 美軍占領下の 軍政과 過渡政府 期間을 통하여 政治的, 社會的 不安이 계속된데다가 經濟的으로는 日本經濟圈에서 美國, 蘇聯經濟圈으로 兩分 轉移되었고 南北分斷은 人文과 國民經濟力을 不具化함으로써 產業構造는 殘

美軍政時代의 主要統計指標

		1945	1946	1947	1948	1949
人口總數	명	(25,120,174) ¹⁾ 15,879,110	19,369,270 ²⁾	19,886,234	20,027,393	20,166,756 ³⁾
出生(출생율)		-	234,570(1.61)	438,032(2.20)	373,226(1.86)	-
死亡(사망율)		-	173,453(1.19)	178,506(0.90)	186,794(0.93)	-
婚姻(혼인율)		-	16,854(0.12)	43,274(0.22)	34,405(0.17)	-
離婚(이혼율)		-	1,280(0.01)	1,819(0.01)	1,223(0.01)	-
農家戶數	戶	-	-	-	-	2,473,833
人口數	명	-	-	-	-	14,416,365
耕地面積	町	-	-	-	-	2,070,577
米穀生產	石	12,835,827	12,050,388	13,850,000	15,485,716	14,733,726
米·麥·雜·豆·薯	石	18,234,901	18,812,539	20,039,075	22,245,943	23,358,845
水產戶數	호	-	157,907	183,625	170,557	196,435
人口數	명	-	408,369	502,231	521,252	616,366
水產生產高 (이회, 양식, 계조)	M/T	281,178	363,348	361,118	351,369	396,187
서울都賣物價	1947 =100	12	55	100	163	223
年末通貨量	백만원	114	249	495	696	1,221
貨幣發行量	"	88	177	344	434	751
重石生產	kg	-	376	1,199	1,340	1,450
黑鉛生產	kg	-	204	4,200	15,958	45,309
無煙炭生產	M/T	-	253,866	430,224	714,584	980,897
綿紡原絲生產	千근	524	7,954	11,166	10,457	23,051
發電量(이북수전포함)	千Kwh	711,327	676,124	828,760	693,999	654,969
輸出	千弗	-	3,541	26,804	22,260	13,804
輸入	"	-	60,721	232,615	208,003	132,775
(원 조 수입)	(")	(4,943)	(49,496)	(199,899)	(179,592)	(116,399)
對美公定換率	圓	15(10月)		50(7月)	450(10月)	900(6月)

註: 1) 1945年 ()안은 1944. 5. 1현재 임시호구조사 全國人口이고 총 인구수는 南韓人口分임.

2) 1946~48年間은 국민등록수,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美軍政 추정수치.

3) 1949年分은 同年 5月 1日 현재 총 인구조사 결과임.

骸化되어 生産力不在, 生必需品不足, 通貨인플레이션에다 以北 및 海外同胞의 流入 등 人口急增까지 겹쳐 統計活動은 생각할 수도 없게 위축되었다.

이무렵의 統計的 實狀은 駐韓 美軍情報部の 情報報告書에나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軍政當局은 食糧需給, 物價, 集會等 民心動向을 살펴보기 위한 輿論調查를 할뿐이었다. 처음 進駐時에 日帝總督府官制를 그대로 인계하였던 美國은 1946년부터 軍政廳 庶務處에 統計署를 두고 統計에 관한 事務를 맡게 하였고 이것이 南朝鮮過渡政府를 構成하면서 延長되었다.

즉 大韓帝國과 日帝時代를 통하여 內閣官房, 大臣官房 및 總督官房에 있던 文書課, 庶務課系統(日帝末의 總務課)의 行政統計業務는 調查研究署로 되고 舊韓末에 出現하였던 統計課(度支部)와 日帝의 國勢調查課 또는 調查課系統(日帝末의 企劃課)의 調查統計業務는 庶務處統計署로 되어 南朝鮮過渡政府까지 지속되다가 政府樹立 直前に 上記 調查研究署를 吸收하였다.

統計署에는 1室(統計官室)과 庶務, 人口(靜態)·家計 및 管理課를 두었다. 人口動態調查는 당시 保健厚生部로, 또 勞動力調查는 勞動部로 移管하였다.

한편 農林水産統計는 日帝時에 만든 農林統計 報告書式에 의하여 地方邑面에서 각종 農林統計를 作成報告하여 오다가 1947年 6월에 美軍政廳에서 法令第143號를 公布하고 이에 의하여 農業統計委員會를 설치하여 農產物生産量 및 각종 農林統計를 審議決定하게 하였다. 그 執行機關으로서 農林部 調查統計課를 설치하고 그 밑에 各級行政機關에는 統計士, 統計員등 1,928名을 配置하여 獨立된 調查機構를 두었으나 政府樹立과 함께 그 機構를 解體하고 거기에 소속되었던 統計專担員은 地方行政機關에 轉出し켰다.

이무렵 現 韓國銀行의 前身인 朝鮮銀行의 統計活動이 현저하게 된 것은 특기할 일이었다. 또한 解放前後로도 命脈을 維持하여 온 商工會議所와 現 農協의 前身인 金融組合聯合會 등의 民間機關이 당시의 官廳보다도 統計活動에 있어 活潑하였다 고 할 수 있었다.

教育程度別 人口(15歲以上)

(명: %)

	總 數	男 子	女 子
計	(100.00) 10,800,888	(50.86) 5,493,358	(49.14) 5,307,530
不 就 學	(77.14) 8,331,684	(34.43) 3,718,452	(42.71) 4,613,232
小 學	(17.89) 1,932,481	(12.49) 1,348,686	(5.41) 583,795
中 學	(4.39) 474,297	(3.44) 371,454	(0.95) 102,843
專 門	(0.58) 62,426	(0.51) 54,766	(0.07) 7,660
都 市 部	(16.55) 1,788,061	(8.49) 918,470	(8.05) 869,591
郡 部	(83.45) 9,012,827	(42.36) 4,574,888	(41.09) 4,437,939

註 4280(1947) 2~11月間 國民登錄人口, ()안은 %
資料: 統計月報(內務部) 1955年 3月 創刊號

3. 政府樹立과 統計發展의 轉機

가. 政府樹立에서 6.25動亂까지

1945年 8月 15日 日帝의 無條件降服으로 第2次世界大戰이 終結됨으로써 韓國은 36年間の 日帝植民地에서 벗어나 解放되었다.

그러나 解放 직후의 감격과 환희도 잠시, 美蘇兩軍의 進駐에 의한 南北分斷이라는 悲痛狀況에서 극심한 社會秩序의 混亂과 左右對決을 특징으로 하는 美軍政 및 過渡政府 期間을 맞이하였다. 결국 信託統治論爭을 둘러싼 國民的鬭爭, 美蘇共同委員會의 大峙를 거쳐 UN 「臨時」韓國委員會이 UN韓國委員會으로 改稱되어 活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大韓民國은 建國되었으나 政府樹立을 전후한 政治的·社會

的 不安이 계속된데다가 經濟的으로는 戰前 日本經濟圈의 崩壞와 그로부터의 離脫이라는 時代的 變革期에, 產業構造의 기형화와 生産力萎縮, 自立經濟力의 상실 등이 建國前夜의 實情이었다. 거기에는 日人들의 終戰處理費란 名目の 貨幣濫發, 海外歸還民과 以北避難民으로 인한 人口의 社會的 急增,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惡性인플레이션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解放政局下의 生産力不在와 通貨膨脹인플레이션, 社會混亂, 政局混迷, 對決葛藤 같은 遺産을 안고 大韓民國은 出發한 것이다.

1948年 8월에 新政府가 樹立되자 당면과제는 經濟發展의 前提條件인 物價와 通貨價値의 安定이었다. 美軍政時부터 지속되어 온 赤字財政과 紊亂해진 經濟秩序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선 財政面에서 行政機關의 정비, 人員削減, 事務費의 節減, 不急事業의 中斷 등 歲出을 억제하는 한편 稅制改革, 歸屬財產의 合理的 運營 및 處理 등 歲入을 強化함으로써 健全財政을 維持하려고 努力하였다. 이무렵 韓國經濟를 지원한 것은 그나마 美國의 經濟援助였다. 즉 1947년부터 49年 사이에 美國이 GARIOA援助(占領地域行政救護費) 502,028千弗과 ECA(經濟協助處)援助 23,806千弗 등 도합 525,834千弗의 援助가 導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生獨立國으로서의 必要條件인 治安確保, 電力과 食糧增産, 義務教育 遂行 및 國防力 등에 所要되는 財政壓迫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財政赤字를 美國援助資金 이외에도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으로 補填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었다. 이런 與件에서, 建國初期의 統計活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때까지의 統計는 韓國舊來의 慣例에 따라 日帝時 「報告例」規定으로 규격화해서 下部機關에서 上部機關으로 보내어지는 行政報告資料들이었다. 그러나 日帝下에서는 그들의 軍國的 官僚制의 뒷받침으로 強行하였기 때문에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에서 統制·調整하여 統計資料를 수집·편제·공표함으로써 어느정도 計數上의 一貫性 있는 報告統計로 키워왔으나 解放後의 美軍政이 실시되면서 機構를 改編하여 文書課는 調查研究署로 一部는 庶務處 總務課에 統合시키고 官房 國勢調查課는

後身인 企劃課는 庶務處統計署로 擴張되었으나 「報告例」 資料를 制限·調整하는 中央機構가 없어져 地方으로부터의 行政報告는 각기 所管部處까지만 上達되고 利用可能한 統計도 相互矛盾되거나 一貫性이 없는 등 資料의 實際 利用面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政府財政의 脆弱으로 美軍政時에는 農產物生産量 및 各種 農林統計의 作成을 專擔하는 農林部 調查統計課를 設置하였음에도 政府樹立과 함께 그 機能을 發揮해 보지도 못한 채 그 機構는 一時 解體되고 말았다. 한편 1948年 11월에 庶務處 統計署가 公報處 統計局으로 擴張·發展되었으나 豫算上의 어려움으로 4課가 3課로 줄거나 人員面에서도 相當한 減縮을 가져와 實際의 統計調查活動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每 5年마다 實施하는 總人口調査는 新生國 設計에 필요한 人的資源 把握 및 앞으로의 選舉에 對備키 위하여 1年을 앞당겨 1949年 5月 1日을 基準으로 實施하였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新生國의 經濟再建을 위한 基本調査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 이듬해 발발한 6.25動亂으로 特性人口現況은 集計키 못하고 단지 總人口數에 道別, 年齡階級別, 職業別 概況만을 把握하는데 그쳤다.

1949年 9月 1日字 「戶口調査規程」도 6.25動亂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過渡政府下에서 保健厚生부로 移管하였던 人口動態調査는 다시금 統計局所管이 되어 1949年 12月 19日字 「人口動態調査令」 公布와 함께 1948年度分은 조사를 하였으나 動亂으로 자료를 모두 逸失한 채 조사는 중단되었다가 1952년부터 再開하였다.

初期政府機構改編

經 過	年 月 日	改 編 內 容
政府組織法 公 布	1948. 7.17	1院(審計院), 2委員會(考試, 監察委員會), 11部(內務, 外務, 國防, 財務, 法務, 文教, 農林, 商工, 社會, 交通, 遞信), 4處(總務, 企劃, 公報, 法制)
第1次 改正	1949. 3.25	保健部 新設, 外資購買處, 臨時王宮財產管理委(大統領直屬), 管財廳, 臨時外資管理廳 設置

經 過	年 月 日	改 編 內 容
第2次 改正	1955. 2. 7	國務總理 廢止, 復興部 新設, 保健社會部(保健+社會) - 總務處→國務院事務局 公報處→公報室(大統領直屬): 統計局은 內務部로 法制處→法制室(法務部所屬) - 企劃處→復興部 企劃局 外資廳(外資購買處+臨時外資管理廳): 復興部所屬, 管財廳→財務部管 理局, 專賣廳(財務部所屬), 海務廳(商工部所屬), 舊皇室財產管理委員 會 舊皇室財產事務總局

한편 韓國銀行 調查部는 必要한 經濟統計의 作成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도 1949년에 1910年 7月 以來 作成해 오고 있는 物價統計를 1947年 基準으로 改編하여 都小賣物價指數에 加重值를 導入하여 物價統計를 發展시켰다.

1949년에는 오래동안 懸案이었던 農地改革을 實施하는 등 國民經濟의 安定과 成長의 基礎與件을 마련하려던 무렵에 不意의 6.25動亂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 일구기 시작한 韓國經濟의 安定과 成長의 기반은 송두리채 破壞되고 말았던 것이다. 戰爭이 小康狀態에 들어가 戰時中 民間人 被害狀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公報處 統計局은 1952年 3月 31日 現在로 6.25動亂民間人被殺者와 被拉者를 調查하여 休戰會談에 提示할 名單까지 밝혀냈다. 특기할 사항은 戰後人口의 暫定把握을 위하여 建國後 처음으로 年末常住人口調查(1952年末 現在)를 실시하고, 이어서 1953, 54년에는 6.25事變에 의한 재산 등 피해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政府는 國防費와 民間救護라는 莫大한 財政需要를 充當하기 위하여 歲入面에서 租稅以外에 韓國銀行借入金과 援助資金인 對充資金으로 充當하였다.

이런 財政的 어려움 때문에 政府統計調查는 상당부분을 韓國銀行에서 실시하도록 依賴하였다. 예컨대 1950年 1月부터 公報處 統計局은 政府擔當官을 韓國銀行에 轉出し켜 韓國銀行과 合作으로 俸給生活者 89家口와 勞務者 36家口의 生計費 調查를 實施하였으나 6.25事變으로 中斷되었다가 다시금 1951년에 韓國銀行이 단독으로 避難首都 釜山에서 有意標本 60家口를 對象으로 都市家計調查를 시작하였으며 1954年 收復後부터 서울勤勞者家口를 有意抽出하여 1959년까지 調查를 繼

續하였다. 한편 韓國銀行은 1953年 7月부터 1年間 農林部와 共同으로 實施하던 農村實態調査를 韓國銀行이 單獨으로 實施하다가 1958年 1月부터 農家經濟調査로 改編하여 月別 調査토록 하였다.

나. 休戰後의 再建期

1953年 7月 休戰協定이 調印되자 韓國經濟는 防衛力의 強化와 함께 戰災로 인한 生産施設의 復舊와 인플레이션 收拾에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貧弱한 國家財政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戰時中 韓國參戰 便宜로 提供하던 對UN軍 韓貨 貸與金의 누적이 戰時 人플레이션을 激化시켜 韓國經濟와 國家財政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었다. 戰爭이 소강상태에 들고 1953年の 긴급 통화조치를 계기로 韓貨貸與金 상환문제도 상당히 진척되자 戰災復舊와 産業再建에 美國 및 UN에 의한 經濟援助가 本格化하였다. 1953年 8月부터 韓美間에 經濟再建과 財政安定을 위한 會談이 시작되어 同年 12月에는 이에 관한 韓美合同經濟委員會協約이 체결되었다. 이 協約에 의거하여 이제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外國援助를 效率的으로 統合 調整할 수 있게 되었다. 1954年 5月에는 「韓國經濟援助에 관한 大韓民國과 UNKRA(國際聯合國再建團)와의 協約」을 調印하였는데 當時 UNKRA의 위촉으로 韓國經濟再建을 위하여 FAO(世界食糧·農業機構) 專門家가 農業에 관한 調査를 하여 UNKRA資金으로 統計技術을 習得시키기 위하여 數名을 外國에 研修시키거나 數理統計學者를 顧問으로 2年間 派遣하는 한편 農業總調査를 實施토록 建議하였다. 또한 UNKRA의 委囑을 받은 네이산協會(Robert Nathan Associates)는 韓國經濟再建計劃에 관한 네이산 報告書를 作成하면서 利用할 만한 適當한 統計가 없었다는 隘路를 지적하였고 國民所得推計를 當時 財務部·企劃處·韓國銀行의 3個機關이 각기 따로 作成하고 있던 것을 韓國銀行만이 이것을 專擔推計하되 專門人力을 補強토록 권고하였다.

한편 外國援助規模는 1945年 8月부터 1971년까지 約 44億弗이 導入되었는데

그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3億弗이 1953~1961년에 集中導入되어 經濟安定과 産業復興에 기여하였다. 이 當時의 政府歲入중 年平均 43.2%를 對充資金으로 補充하고 여기에서도 모자라면 韓國銀行借入金으로 充當하는 實情이었으므로 統計機構의 擴張은 바랄 수도 없고 既存 機構도 充分한 人力을 補充하여 活用할 餘力이 없었다.

1955년부터는 同年 8月の 500圓對1弗 單一換率의 策定을 契機로 이를 維持하기 위한 前提條件인 國內通貨價値의 安定을 기하고자 經濟施策을 物價安定에 集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解放後 처음으로 經濟安定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구나 1958년에는 前年부터 계속된 農産物의 大豊作과 剩餘農産物을 包含한 美國援助導入이 絶頂에 달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物價下落現象을 나타냈다.

1955년에 統計局이 公報處에서 內務部로 移管된 後 5年마다 慣例로 實施하는 簡易總人口調査를 同年 9月 1日에 實施하였다. 이는 事變으로 인한 南行避難과 越南民의 增加 등으로 人口數의 變動과 移動이 심하였으므로 總人口數와 그 分布의 把握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統計의 母集團資料로서도 必要하였다. 內務部 統計局에서는 또 1955年 簡易總人口調査를 母體로 한 標本設計에 의하여 1956年 11月부터 勞動力調査의 試驗調査를 着手하였던 바 때마침 1957년에 國會에서 統計機能強化를 建議함으로써 豫算과 機構를 確保하여 本調査를 實施할 수 있었다. 또한 1960年度의 人口·住宅 및 農業總調査를 準備함에 있어 1959年 2月에 당시 政府內에 國稅調査委員會를 設치하여 調査의 企劃, 準備, 施行에 關한 諸般機能과 함께 統計要員의 海外研修도 推進하였다. 이 委員會는 總調査를 마치자 1962년에 그 機能은 대부분 統計局 基準課에 移讓하고 解體되었다.

한편 韓國銀行 調査部에서는 1955年度의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査를 실시하고 1958年度에는 1955年基準 都賣物價 및 消費者物價指數의 改編과 UN의 SNA(國民計定推計)方式에 依據한 1953~57年間의 國民所得을 推計하였다. 1960년에는 都市物價調査를 標本理論에 適用하여 改善한데 이어 각종 農業關係調査의 改善도 1960年 農業總調査의 結果에 따라 進展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1955年 韓國銀行에서 담당하던 鑛業 및 製造業體調査는 韓國産業銀行으로 移管시켜서 1958年과 1960年에 産業銀行은 이를 産業總調査로 實施하였다.

한편 UNKRA의 支援으로 統計顧問團(Rice Mission)이 5個年契約으로 1958年 5月에 來韓하였다. 이 Rice Mission은 韓國統計調査 全般에 대한 改善策을 건의 하며 國內에서 시행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評價와 標本調査方法의 適用 등도 지도·자문하였다. 이에 필요한 經費는 ICA資金에 의한 支援이었고 調査統計局廳舍 建築時의 機械室設置와 1960年度 人口·住宅總調査의 資料處理用 IBM機資材(405,000弗)를 비롯한 一般備品·消耗品 購入 등에 필요한 資金도 ICA資金 支援이었다.

戰後 復舊期에 해당하는 50年代의 統計活動은 몇차례의 經濟開發計劃 立案을 자극한 것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네이산報告書의 韓國經濟再建設計劃案(1954)은 당시의 韓國實情에 不適合하였으나 그래도 무엇인가 國家再建에 필요한 靑寫眞은 마련해야 했다. 거기에서 産業發展의 基盤不在에 後進國經濟의 特徵인 展示의 産業施設物의 建設 등은 全體産業構造의 不均衡化와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化를 심화·촉진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戰略産業의 優先順位論爭을 촉발하여 計劃的 開發體制의 導入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1958年에 政府는 復興部傘下에 産業開發委員會를 설치하였고 1959年에는 計劃期間을 前半期 3個年, 後半期 4個年 도합 7個年에 걸치는 經濟開發計劃을 立案하였다. 開始年度는 1960年으로 잡고 同年 1月の 閣議에서 議決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經濟開發7個年計劃案은 이해 4.19의 學生革命으로 實行할 수 없게 되자 다시금 第2共和政에 의해 修正이 加해져서 1961年을 開始年度로 하는 5個年計劃을 立案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以後의 計劃的 開發은 1961年의 5.16軍事革命을 거쳐 새로이 軍事政府에서 構想·推進한 計劃에 따라 實踐을 보게 되었다.

産業開發委員會가 설치되던 1958年은 SNA方式에 의한 國民所得推計가 完成을 본 해이고 産業總調査가 실시된 해이다. 또 Rice Mission이 來韓하여 統計技法,

統計制度上的 改善作業에 각종 勸告·建議案을 提示하였으며 都小賣物價指數 改編作業도 마무리된 해이다. 거기에 1960年度人口總調查를 위한 國稅調查委員會設立도 準備할 때이다.

이렇듯 戰後再建期の 後半에 統計活性化의 機運이 일고 經濟計劃의 樹立必要性은 더욱 촉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年度の 人口·住宅 및 農業總調查와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查 등은 앞으로의 統計活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이들을 母體로 각종 標本調查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4. 開發時代의 統計發展

가. 經濟開發計劃과 統計活動

韓國經濟는 解放前後의 격심한 飢饉을 거쳐 休戰後에는 밖으로부터의 經濟援助와 안으로부터는 각종 經濟安定化施策의 摸索으로 國內經濟의 安定과 產業資本의 蓄積을 이룩할 수 있었다. 58년에 발족한 產業開發委員會의 長期開發計劃 立案이나 59년에 OEC(UN經濟調整官室)를 USOM으로 改編한 것 등은 戰後 마무리의 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經濟再建을 위한 각종 長短期 計劃案을 시도한 것을 看過할 수 없다. 上記 네이산報告書나 產業開發委員會의 再建計劃들은 물론, 비록 단편적이거나 部門別로 長短期計劃을 구상하여 실천코자 하였다. 예컨대 產金3個年計劃(1954~56), 石炭增產 5個年計劃(1955~59), 電源開發 5個年計劃(1949~53 또는 1955~59), 鐵道 5個年計劃(1954~58) 및 農業增產 5個年計劃(1953~57) 등이 그것이며 이 開發計劃 試行이 1950年代를 특징지어 왔었다.

50年代末부터는 援助의 漸減趨勢가 현저해지고 國民經濟는 舊體制의 지속에서 오는 沈滯傾向이 나타났고 거기에 美國의 剩餘農產物의 導入과 豐作으로 인한 穀價의 低落과 農村經濟 疲폐는 방치된 상태였고 한편 消費財產業偏重의 產業構造와 國際收支의 逆調 등이 점차 심각성을 露呈化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政治的 混

迷狀態는 韓國의 社會經濟的 霧圍氣의 脫出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것이 1960年代初의 4.19와 5.16革命을 招來케 한 動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무렵 世界經濟는 다가오는 60年代를 完全雇傭과 技術革新을 통하여 經濟發展政策을 추진하려는 先進國들이 이른바 「開發10年代」를 構想·推進하던 때이다.

韓國의 經濟發展史에 있어서 劃期的인 轉換時點을 設定한다면 經濟發展에 대한 汎國民的인 意慾에 부응하여 近代化를 指向하는 努力이 본격화한 1960年代의 初半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努力이 公式的으로 具顯된 것은 1962년부터 施行된 「네이산」報告書에 나타났던 韓國經濟再建計劃은 당시의 韓國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1959年の 産業開發委員會의 「經濟開發7個年計劃」의 前半3個年計劃은 1960年の 4.19革命으로, 또 다음해 第2共和國 復興部 復興委員會의 5個年計劃은 5.16革命으로 實現되지 못하였음은 前述한 바이다.

그러나 이들 計劃案들은 1962년부터 시작된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의 基礎가 되었다. 第1次計劃은 우리 經濟의 構造的 後進性을 克服하고 國民經濟의 自立的 成長을 위한 産業基盤의 構築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第1次計劃도 立案·發表當時에는 國民의 開發意慾에 副應하기 위하여 서두른 나머지 計劃目標가 너무 意慾的이고 計劃目的도 粗雜하고 非現實的이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더욱이 統計資料의 未備와 計劃作成技法의 未熟 등 問題點이 指摘되기도 하여, 실제로 그 初期인 1963, 64年度의 中間評價는 第1次計劃이 失敗한 것처럼 보였었다. 政府나 計劃實務陣도 서둘러 이 計劃의 修正作業을 하여 이를 補完計劃이라고 하였던 바, 이 補完計劃이 發表되던 1964년부터 開發實績이 目標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는 第1次計劃期間中에 補完計劃은 물론 當初計劃도 초과달성하는 成果를 보였었다. 이때부터 韓國經濟는 「하면된다」는 자신감이 澎湃하였다.

이무렵 革命政府와 제3공화정은 政府機構를 개발체제로 전환하고자 수차례의 改編作業을 하였는데 당시의 개발주역이 1961年 7월에 設置된 經濟企劃院이었고 그 속에, 종전에 內務部에 있던 統計局을 統合吸收하였었다.

이는 經濟發展의 推進에 있어 計劃과 實績評價 및 統計間에 不可分의 關係가 있

음을 認識하고 統計를 改善發展시켜 合理的 土臺 위에서 開發行政을 遂行하고자 한 것이다. 그때까지의 統計活動은 우선 豫算의 제약으로 活動範圍가 極히 제한되었고 體系的인 調整없이 各機關에서 散發的으로 作成하였기 때문에 통계자료간의 一致性 결여와 자료자체의 信賴度가 極히 낮아서 開發行政을 效果的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統計의 體系化와 改善發展을 위하여는 이에 맞는 強力한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要請에 따라 1962年 1月 15日字로 統計法을 制定·公布하였다.

韓國의 統計法은 統計作成 各 機關의 獨自의인 活動을 보장하는 分散的인 統計制度를 骨格으로 하되 各 統計機關間의 調査統計를 調整, 改善하고 또한 發展을 기할 수 있도록, 必要로 하는 모든 措置를 中央統計機構에서 수행케 하는 折衷型을 택하고 있다. 이로써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은 스스로 主要基本統計를 직접 生産할 뿐 아니라 韓國의 모든 統計活動을 적극적으로 助長, 調整, 基準化하여 韓國의 統計의 基盤을 鞏固히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基盤에 立脚해서 開發行政도 支援할 수 있었던 것이다.

經濟開發計劃 期間中 統計需要는 急增하였다. 統計需要의 增加와 함께 시급히 要請되는 것은 각종 統計間의 比較性을 높이기 위한 統計分類의 標準化作業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統計分類는 各 調査때마다 그때 그때의 分類體系下에서 편의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가령 勞動力調査에서의 慣行的 便宜分類나 1960年 人口·住宅總調査에서 「국제조사용」으로 編制하는 등이다. 때마침 통계의 국제비교를 위한 UN의 권고도 접하면서 分類의 標準化를 서둘렀다.

그 결과 1963년에 처음으로 韓國標準產業分類를 制定報告한데 이어 韓國標準職業分類, 韓國標準貿易分類 및 韓國標準傷害·疾病·死因分類, 韓國行政區域分類 등을 制定하였다. 이로써 統計作成에 必要한 各種標識를 標準化하여 各種統計의 分類에 活用케 함으로써 統計의 時間的 또는 空間的 比較를 可能케 하였다.

한편 1965년에는 基準年度를 달리하여 作成하고 있던 各種 經濟指標의 基準年度를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基準年度와 일치시킴으로써 經濟指標間 相互比較性과

活用性を 높이도록 하였다.

國民所得推計는 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 가장 有用하게 利用되는 것이다. 韓國銀行은 1958년에 1953년부터의 國民所得推計를 UN의 SNA(國民計定體系)에 依據하여 作成한 後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더욱 精密하게 作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最初의 產業關聯表는 1958年 復興部 產業開發委員會에서 作成한 1957年 및 1958年表가 있었는데 이는 開發計劃의 豫測을 計量的 數値로 求하는 것을 目的으로 19個 產業部門으로 作成하고 있었다. 그에 이어 1960年の 最終需要를 測定하고 또 產業別 必要生産額은 1958年度 產業關聯表에 의한 逆行列係數表를 이용하여 豫測値를 구해서 發表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들은 利用可能 統計資料의 未備, 計算機器의 幼稚 등 制約으로 試算表水準에 不過하였다.

本格的인 產業關聯表는 1962年 3月 最高會議의 指示에 따라 韓銀調查部에서 1960年度를 對象으로 作成하여 이를 1964년에 公表한 것과 1963年 產業關聯表를 1965年末에 公表한 것이다.

第1次 5個年計劃 立案時 統計資料의 制約과 특히 GNP, I-O表 등 國民計定資料의 不備를 통감하여 第2次 計劃 準備過程에서는 I-O表의 必要性을 提起한 것이다. 第2次 計劃 은 開始年度가 1967年이지만 基準年度는 1965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產業關聯表作成에 있어서도 前記 1960年, 1963年 I-O表에서 1963-65年間の 價格變動과 生産技術의 變化, 計劃期間中の 新産業 出現 등을 감안하여 수정한 延長表를 作成해서 利用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全數調查方法만으로서는 人力·豫算·迅速性 등 增加하는 統計需要를 充足할 수 없으므로 이에 確率標本理論의 導入이 要請되었다. 따라서 勞動力調查의 代替調查인 經濟活動人口調查를 1962년부터 처음으로 確率標本調查方式에 의하여 實施하고 農林部の 作物統計調查, 生産費調查, 農家經濟調查 등도 1960年農業總調查를 母體로 하여 確率標本調查로 實施하였다. 한편 韓國銀行에서 實施하고 있던 都市家計調查는 1963년에 調查統計局으로 移管하여 새로운 標

本으로 調査하게 되었고 이어 1965년에는 消費者物價指數도 韓國銀行에서 調査統計局으로 移管되었다. 이와같은 標本調査方法은 1960年 人口·住宅總調査나 農業總調査의 資料處理過程에서 確率標本集計方式의 導入應用을 經驗하였다. 1960年 人口·住宅總調査와 같은 大量資料를 迅速히 處理하기 위하여 1961년에 처음으로 Punch Card System의 統計機械가 導入되어 統計資料處理의 機械化를 이루면서 統計情報供給의 擴大를 可能케 하였던 것도 特記할 만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調査統計만이 아니라 報告統計의 質도 개선하였다. 대부분이 行政系統를 통한 報告에 의존하는 報告統計는 그 속성상 報告過程에 여러가지 不實要因이 介在할 여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統計의 正確性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中·近代의 地方報告資料는 차치하고라도 日帝時代의 「報告例」 규정에 의한 統計가 植民地統治目的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統計는 통계 그 자체의 目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바 그것이 統計의 眞實性이다. 이 眞實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統計專擔要員에 의하여 統計資料가 수집되어야 하며 그만큼 調査要員의 統計的 資質을 必要로 하고 있다. 근대통계학의 발달과 도입은 이 報告統計에 調査統計 技法을 적용하여 緻密化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60年代에 들어서면서 위에서 言及한 全國을 對象으로 하는 確率標本調査技法이 物價調査나 家計調査 또는 企業體調査 등에 적용되었고 經濟企劃院과 農林部에서 1963年부터 統計專擔要員을 採用하여 全國의 調査地區에 配置함으로써 全國的인 統計調査 組織網을 確保하여 報告資料의 正確性, 眞實性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統計에 관한 諸般與件과 霧圍氣가 高揚되면서 民間統計機構의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1958年初부터는 韓國銀行 調査部 등을 비롯한 統計關聯機關사이에서 統計協會를 創設코자 하는 氣運이 일고 있었다. 이로써 統計活性化를 위한 各界의 意識을 喚起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1958년에 內務部 統計局에서 1959年度에 開催되는 第32次 國際統計協會의 總會에 參席하는 준비과정에서 國內에도 協會와 같은 機關이 必要함을 認識하여 統計局內에다 社團法人 大韓統計協會를 發足시킴으로써 韓國銀行을 중심으로 한 協會準備活動을 여기에 吸收하였다.

初代會長이 兪尙根, 副會長에 陸芝修와 宋正範으로 出發한 「(社)大韓統計協會」는 東京에서 開催된 國際統計協會의 第32次 總會에 當時의 會長 兪尙根 統計局長과 副會長 陸芝修教授 및 幹事인 統計局事務官 高석환을 參席하게 하였으나 그 후 4.19革命과 5.16革命으로 協會活動은 이렇다 할 活動實績을 남기지 못하고 自然消滅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63年 3월에 統計關係機關만이 아니라 學界와 統計關係人士들도 광범위하게 會員制로 包容하는 財團法人「大韓統計協會」를 設置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初代會長 李恩馥) 出發初期에는 統計局內에 設置하였으나 현재는 獨立되어 있다.

한편 國際統計協會에는 1967年 濠洲 시드니에서 第36次 總會가 開催되었을 때에 咸萬準統計局長과 朴弘來教授가 參席하여 처음으로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이 當然職會員(Ex-officio Member)으로 加入하여 現在는 團體會員이 統計廳 以外에 農林水産부와 韓國銀行이 加入하고 있어 個人會員으로도 8名이 加入하고 있다.

한편, 外國과의 統計交流로서는 日本에서 戰後初代 統計局長을 역임한 人士를 포함하여 當時의 統計局長과 基準局長 등이 韓國統計를 見學·視察하였다. 이는 당시의 韓國側 統計局長이던 吳興根氏가 亞細亞財團의 基金支援을 주선하여 추진한 것이다. 吳局長은 또 美國록펠財團係의 人口委員會(Population Council)資金으로 1960年人口總調査를 基礎로 한 人口學的分析論文(Demographic Monograph)을 作成하도록 함으로써 第2次 5個年計劃에 有益한 資料로 利用할 수 있었다.

나. 第2次 5個年計劃과 統計發展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여러가지 苦難과 統計資料의 制約 속에서 창졸간에 立案되었던 데 비하여 第2次 經濟開發計劃은 좀더 충분한 時間的 餘裕를 가지고 作成하여 完決지운 것이다. 이 作業은 第1次計劃期間中인 1964年末부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은 第1次計劃에 대한 反省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의 參與를 유도하고

또 좀더 公開的으로 하여 計劃의 信賴性을 높이고 특히 計劃을 執行할 當事者들이 計劃에 직접 參與함으로써 執行成果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國內研究機關·大學教授 및 各部門 專門家들과 學術用役契約을 체결하는 등 計劃實務者만으로는 解決하기 어려운 基本的인 課題들을 檢討케 하였다. 「韓國經濟의 長期開發展望」, 「産業關聯分析法에 의한 韓國經濟開發에 관한 研究」를 비롯하여 輸出可能性 및 主要商品의 國際市場 分析 등 많은 部門의 研究가 있었다. 예컨대 各 部門別 研究中 특히 鑛工業部門은 鑛工業分科作業會를 構成하여 이를 다시 10個細部産業으로 나누어 各作業班에는 關係部處와 國營企業體의 計劃實務者 및 技術者를 包含시키고 해당 部門의 專門教授들도 많이 參與시켰다. 第2次計劃에는 外國專門家들의 寄與도 있었다. 「USOM」(United States Operatation Mission)의 經濟課가 積極參與했고 「네이산顧問團」과 獨逸政府顧問團이 經濟企劃院에 常住하면서 처음부터 計劃作業에 參與하였다. 그밖에도 各 部門의 著名한 教授들을 外國으로부터 초빙하였는데 특히 「아델만」(Iram Adelman)教授의 總量模型이 第2次計劃의 根幹을 이루었다. 이와같이 第2次 5個年計劃은 國內專門家와 外國專門家の 合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第2次計劃은 總量計劃, 部門計劃, 그리고 投資計劃을 三大根幹으로 하고 있는데 總量計劃은 國民所得計定을 바탕으로 하여 總量目標, 財政, 金融 및 國際收支 등이 包含되어 있고 部門計劃은 全産業을 43個 部門으로 分類한 産業關聯表를 基礎로 生産水準과 投資所要를 推定하여 全體投資計劃의 一貫성과 實現性을 檢討하는데 使用한 것이다. 第2次計劃은 以上과 같은 過程을 통하여 1966年 7月 29日 確定되어 實行에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綜合經濟開發計劃 추진에 必要한 與件達成을 위하여 農漁村高利債整理, 通貨改革, 單一變動換率制實施, 金利現實, 그간 수차에 걸친 稅制改革, 意慾의 輸出目標의 設定과 이를 達成키 위한 舉國的 努力, 農漁村所得增大事業 등을 積極推進하였고 밖으로는 從來의 對美一邊倒의 元朝依存體制에서 벗어나 經濟協力の 對象을 英國, 西獨 및 日本 등으로 多邊化시켰으며 그 內容은 借款 및 外國人直接投資誘致에 注力하여 1970年末 現在 3,432百萬弗(無償援助를 除外한 1963~

1970년까지의 確定分)의 外資를 導入하였다. 그 결과 1960년에 2.3%에 不過하였던 GNP成長率이 1961~1970年 사이에는 年平均成長率이 9.4%라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고 輸出實績도 1960년에는 32百萬弗에 不過하였으나 1970년에는 10億弗를 突破하는 成長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60年代의 高度成長은 主로 輸入對替産業을 中心으로 한 製造業이 主導하였다. 또한 60年代에는 投資率이 急增하였는데 이것은 社會의 安定, 所得增大, 金利引上 등으로 國內貯蓄率이크게 向上되었지만 이보다 果敢하게 導入한 海外貯蓄의 影響도 컸으며 國際收支도 輸出의 急增과 韓日國交正常化 및 越南特殊景氣로 오히려 外貨準備를 늘릴 수 있었다. 工業部門에서는 消費財産業보다 生産財産業의 成長이 越等하여 産業構造는 工業化의 方向으로 현저한 進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比較的 「安定的 條件下에서 成長一邊倒政策」을 推進할 수 있었으나 60年代 後期에 가서는 그동안 生産基盤위에 急速한 成長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야기되는 經濟內部的 不安定 要因과 1967年 以後부터는 政治·社會的 不安要因까지 겹치었다. 이때의 主要爭點이 資源의 非效率的配分·經濟構造의 不均衡 深化 등이었으며 거기에 産業化過程 初期現象인 輸入需要의 增大, 이로 인한 國際收支의 惡化, 超過需要에 따른 「인플레이션」 要因의 加重 등이 經濟安定을 沮害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간중에 있었던 두 차례의 大統領選舉(1967, 71年)에는 이들 爭點이 浮刻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는 京釜高速道路가 開通되었다.

이 당시의 爭點에도 불구하고 韓國經濟는 高度成長을 지속하였다. 이를 先導한 것이 國內統計의 體系整備였던 것이다. 통계법령(시행령, 규칙)을 개정하면서 통계조사체계를 整備하였고 山林廳, 水產廳에 調査統計課가 설치되고 1966, 70年の 人口·住宅總調査도 遂行하였다.

1966年 人口總調査는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投資資源確保에 따른 豫算事情으로 當初 1965년에 實施하려던 計劃을 1年 延期하고 1960年當時 約6萬7千餘個이던 調査區를 3萬9千으로 줄이는 등 隘路가 많았으나 集計過程에서 EDPS를 使用하여 資料處理期間을 短縮시키고 結果表의 內容을 한층 豊富하게 하였다. 이

어 197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는 7萬6千餘의 調査區를 設定하여 調査의 正確性을 기하는데 重點을 두었으며 人口移動에 관한 項目을 補完하였다. 한편 集計過程에서는 IBM360組織의 追加導入으로 過去 센서스에 比하여 結果表의 內容을 더욱 多様하게 하였으며 集計過程의 時間을 한층 短縮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의 農業센서스도 實施하였다.

한편 産業構造를 把握할 수 있는 各種센서스(總調査)가 그동안 여러 機關에 의하여 産業別로 實施되어 왔으나 雇傭面에서 그리고 附加價値面에서 農業部門을 除外하고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던 都小賣部門의 統計가 全無한 狀態였다. 이에 따라 調査統計局은 流通構造改善 및 流通體系의 近代化措置를 위한 基礎資料를 수집하고 流通部門의 經常的인 動態를 把握하는 한편 標本調査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1968年 第1回都小賣業센서스를 實施하였다. 이 센서스는 그後 每3年마다 實施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韓國銀行에서 서울地域에 限하여 有意標本에 의하여 調査하던 都小賣業動態調査를 調査統計局으로 이관시켜 全國規模化시킴과 同時에 標本도 確率標本으로 改編하였다.

1968년에는 第1回 國富統計調査를 調査統計局을 비롯하여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등이 共同으로 實施하였다. 이 調査는 國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하여 資本蓄積의 程度와 開發의 成果를 把握하는 有用한 資料가 되었다. 그後 第2回國富統計調査는 1978년에 實施할 計劃이었으나 調査結果를 第5次計劃樹立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7년에 實施하였다.

또한 그동안 鑛工業에 관한 各種統計는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商工部 등에서 각기 重複作成하기 때문에 利用面에 큰 混亂을 惹起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가령 어느 製品의 生産量은 조사기관 사이에 一致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混亂을 피하기 위하여 1969년에 産業生産指數·鑛工業統計調査를 비롯한 모든 鑛工業關聯統計業務를 調査統計局으로 統合吸收하여 鑛工業構造에 관한 靜態把握을 위하여 每年 實施하는 鑛工業統計調査와 每5年마다 實施하는 鑛工業센서스, 그리고 每月別 動態把握을 위한 鑛工業動態調査로 體系化시켰다.

끝으로 統計計算組織의 確保를 說明코자 한다. 統計情報의 供給能力은 資料處理能力에 따라 크게 制約된다고 할 수 있다. 總調査와 같은 大規模調査에서 많은 資料가 수집되더라도 이를 集計하는데 너무 많은 時間이 所要되기 때문에 資料活用の 時期에 問題가 있을 뿐 아니라 수집된 資料도 大部分 斷面的으로만 集計되어 그 有用성이 낮을 수도 있다. 1960年 人口·住宅센서스와 農業센서스의 資料處理를 위하여 Punch Card System이 導入되었으나 이것은 단지 計算時間을 短縮할 뿐 計算能力의 次元에서는 手集計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1966年 人口센서스의 資料處理를 위하여 電子計算組織 IBM1401을 導入함으로써 EDPS時代가 開幕되었으며 IBM Korea의 設置를 條件으로 곧 IBM360의 導入을 決定하여 앞으로의 電子計算組織의 不意의 故障도 國內의 (株)IBM Korea에서 修理키로 하였다. 따라서 1970年の 人口·住宅 및 農業센서스는 IBM360組織으로 資料處理하였다.

5. 經濟社會發展期の 統計體系

가. 重化學工業化 推進의 背景과 統計 機能

1970年代는 이른바 5個年開發計劃의 第3次(1972~1976) 및 第4次(1977~1981) 計劃期間에 해당한다.

第1·2次 計劃期間(1962~1971)을 통하여 工業化의 촉진,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農業開發基盤의 구축과 유례없는 輸出增大를 달성하여 경제자립의 터전을 닦고 오랜 停滯와 貧困의 歷史를 탈피하여 後進의 굴레를 벗어 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욕적인 經濟開發의 推進過程에서 몇가지 構造的인 問題가 派生되어 이를 效率의으로 解決하면서 70年代에 새로운 次元의 發展을 達成하고자 從前과는 다른 發展戰略을 摸索하며 第3次經濟開發計劃을 입안하였다. 즉 安定基盤위의 成長과, 農村·都市간의 隔差縮小, 重化學工業育成을 통한 產業間

不均衡의 緩和, 國際收支改善을 통한 對外均衡의 確保, 地域間均衡發展의 追求 등이 計劃立案의 主題였다. 그러나 1972년부터 着手한 3次計劃은 그후 당초 예상치 못했던 內外與件의 급격한 변동에 직면하였다. 이는 60年代末 정세의 연장이었다.

말하자면 70년대는 북한 武裝軍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프에블로호 납북사건(1968년 1월), 닉슨의 팜독트린과 美軍7師團의 철수결정(1969)에 이어 북한 김일성이 1970년 11월의 5次黨大會에서의 4大軍事路線에 입각한 전쟁준비 완료선언등 도발적 긴장상태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주국방체제의 시급함에 쫓겨 71년에 방위산업육성발표와 동년 12월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때는 그 같은 해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와 함께 정책적 이슈로 증폭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접촉을 추진해서 72년의 7.4남북공동선언을 끌어내고, 73년에는 북한정권도 실체로 인정한다는 6.23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하였으나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 결국 그것이 72년 10월의 유신헌법선포와 제4공화국 발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당시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73년을 전후한 中東戰爭과 제1차 石油波動을 계기로 나타난 資源民族主義 대두 및 월남의 공산화통일에 의한 자유진영의 무기력화현상을 들 수 있다.

이처럼 70년대 전반은 대외적으로 공산주의 도발과 안보위기 석유파동과 資源難, 그리고 미군철수와 닉슨에 의한 Bretton Woods體制의 붕괴 등이 韓國經濟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편 國內적으로도 經濟施策面에서 8.3措置, 企業公開와 같은 커다란 變化가 일어났다.

따라서 第3次計劃은 이런 內外與件의 격변속에서 상당한 변동과 조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第1次石油波動이다. 1973年 10월에 中東戰爭을 계기로 石油를 武器化한 產油國들은 石油값을 크게 引上하였다. 이에 따라 國內物價의 上昇을 부채질하고 石油輸入을 위한 外貨負擔이 커졌을 뿐 아니라

先進國들의 保護貿易政策으로 輸出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음으로 國內에 있어서 破格的인 緊急措置였던 1972年の 8.3措置였다. 그동안 企業活動獎勵와 借款導入 등으로 많은 不實企業이 發生하여 1969년에 한차례 不實借款企業의 整備를 서둘렀으나 많은 企業들이 여전히 經營難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처럼 政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만연, 高利私債의 企業에 대한 過重한 負擔, 景氣의 沈滯등을 打開하기 위하여 大統領緊急命令을 發動한 것이 8.3조치이다.

1975年 5月 29日에는 이른바 5.29措置로서 企業의 公開를 促進하고 또한 勤勞者財產形成貯蓄制度를 도입하였다.

第3次計劃은 農漁村經濟의 開發, 輸出의 增大 및 重化學工業의 建設에 重點을 두고 年平均成長率을 第2次計劃期間中の 實績 10.5%보다 낮은 8.6%로 設定하여 成長과 安定을 조화시키는 同時에 農漁村, 中小企業部門 및 流通部門 등 低生産性部門의 開發에 力點을 두므로써 部門間的 均衡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3次計劃期間 중에 있었던 내외여건의 惡化로 처음에는 目標達成이 어려우리라고 예상했었으나 긴급조치등 다양한 대응시책을 강구하며 계획기간중 年平均 11.2%의 成長을 기록하여 目標值를 上廻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輸出促進의 強化와 資本導入의 積極化 등으로 韓國經濟로 하여금 輸出主導型 成長패턴을 定着시킨 功過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계부문의 활동이 5個年計劃의 樹立 및 評價에 크게 기여하였다. 5年마다 實施하기로 정착한 총인구조사(센서스) 農業總調查, 産業總調查 및 都小賣業總調查등 定規的인 각종 統計調查가 整備되고 經濟企劃院과 農林水産部를 비롯한 主要機關의 統計機構 擴大·改編은 물론 地方統計組織體系까지 具備하게 되었다. 統計機構와 統計資料蒐集·編制網이 整備됨에 따라 이제는 대체적으로 예산만 주어진다면 웬만한 統計는 生産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었다.

數次에 걸친 鑛工業總調查(센서스)와 建設業統計調查 등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産業관계 통계들이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分散實施함으로써 발생하였던 調査間의 重複, 基準統一困難 등을 해소하고 조사내용의 충실성도 기할 수 있게되자 總

調査(센서스)와 關聯經常調査間의 體系化도 可能하게 되었다. 韓國産業銀行에서 實施하던 鑛工業센서스(1974年)와 建設業센서스(1975年) 그리고 中小企業銀行에서 實施하던 運輸業센서스(1977年)를 調査統計局으로 吸收統合하여 産業構造의 綜合的인 分析을 可能케 함과 同時에 靜態統計와 關聯動態統計의 연계성을 確保하였다. 따라서 鑛工業統計調査, 鑛工業動態調査, 産業生産指數, 生産者出荷指數, 生産者製品在庫指數, 生産能力 및 稼働率調査와 機械受注統計調査등을 調査統計局에서 擔當하게 되었다.

한편 1973年 石油波動으로 인한 不況의 餘波에서 零細民救護對策樹立을 위한 統計資料의 必要에 의하여 1974年 11월에 약 13萬 標本家口를 대상으로 하는 大規模의인 特別雇傭實態調査를 實施하였다. 이 特別調査는 潛在的失業者와 完全失業者를 별도로 把握하여 雇傭發展과 第4次 5個年 計劃樹立을 위한 統計的基礎를 精密化하는데 目的이 있었다.

특히 國際勞動機構(ILO) 권고에 의한 勞動力接近法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勞動力活用接近法을 使用한 것에 그 特徵이 있었다. 所得概念을 導入하여 時間上의 完全失業測定뿐만 아니라 不完全就業의 測定으로 勞動活用對象者의 範圍를 좀더 現實에 適合하도록 資料利用範圍를 넓히고 또한 地域別就勞事業對象家口의 分布狀況도 알 수 있게 하였다. 不況이 심각했던 時期에 행하여진 것 인만큼 失業者는 어떤 種類의 事業體로 부터 解雇되었는지도 알아내고 그들의 失業期間도 確認함으로써 失業者의 勞動市場形態에 관한 分布를 把握할 수 있게 하였다.

1974년에는 또 大規模로 出産力調査를 實施하여 韓國人의 出産力行態와 家族計劃에 관한 포괄적이고 精밀한 統計를 작성하였다. 이 調査에는 國聯人口活動基金(UNFPA)의 지원을 받았다.

1975년에는 統計法을 改正하여 統計作成의 調整對象을 擴大하여 貿易統計, 建築許可統計등 主要行政報告統計도 調査統計와 마찬가지로 統計調整의 對象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때까지 새로운 統計의 作成과 統計調査方法의 改善에 力點을

두었던 統計調整行政의 方向을 國家統計體系의 確立이란 方向으로 轉換하였으며 重要統計 作成의 結果公表는 經濟企劃院長官의 協議를 거치게 함으로써 統計의 公信力을 높이고 나아가 統計의 誤用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6年 4月에는 人口移動調查가 一般統計로 承認을 받았으며 1970年~2000年 까지의 人口推計가 나오기도 하였다.

農業基本統計調查는 종전에 行政系統을 통하여 全數調查하던 것을 農業센서스調查區를 基礎로 한 標本調查方法으로 代替하여 每年 調查하고 있다. 1974년에는 쌀과 보리가 中心이었던 農產物生産費調查에 콩, 옥수수, 고구마를 追加하였다. 그리고 作物統計調查의 播種面積을 標本調查方法으로 代替하였다. 糧穀消費量調查는 1973년에 農家와 非農家를 각각 獨立시켜 農家の 調査는 農家經濟調查에서 並行 調查하고 非農家の 調査는 人口센서스 結果資料를 利用하여 66個調查區를 抽出하여 1200標本家口를 選定하여 調查하였다. 家畜統計調查도 종전에 行政報告에 의하던 것을 1974년부터는 全數調查와 標本調查를 每年 並行 實施하고 있다. 山林基本調查는 1974년에 처음으로 航空寫眞에 의한 第1次 山林實態를 調查하였다.

主要業種의 月間 景氣動向과 展望, 企業經營上의 隘路要因을 分析 把握하여 企業의 經營計劃 및 政策當局의 景氣對應策樹立의 基礎가 되는 月間景氣動態調查가 1976年 8月에 一般統計로 承認을 받아 每月 調查하고 있으며 企業景氣展望調查는 1972년에 처음 調查하기 시작해서 現在는 分期別로 調查하고 있다. 또한 1975년부터는 輸出產業景氣展望調查를 每分期別로 調查하고 있으며 中小企業動向調查도 1973년이래 每月調查로 實施하고 있다. 1975년부터 年2回 調查實施하던 企業金融實態調查는 現在는 每分期別로 調查하고 있다. 企業의 設備投資動向調查가 1975년에 最初로 實施되어 現在 每年 調查하고 있다. 1976年 들어서는 10月에 住居實態調查가 一般統計로 承認받아 現在는 每2年마다 調查하고 있다. 1976년에는 建設業受注統計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國際收支統計와 貿易統計는 1976年 7月에 각각 일반통계로 지정받아 月別로 작

성하고 있으며 外換受給統計도 같은 시기에 일반통계로서 分期別로 작성하고 있다.

나. 開發戰略에서 均衡成長으로

7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정치·경제·사회 각부문에서 開發年代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進路調整을 위한 진통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第一次부터 第三次까지의 5個年計劃이 모두 純粹한 經濟開發에만 重點을 두었다는 反省이提起되자 앞으로는 社會改善을 포함하는 넓은 意味의 社會發展構想을 摸索하였다. 그로써 제시된 것이 第4次5個年계획(1977~1981)이다. 이計劃은 다음과 같이 重點目標을 설정하였다.

첫째, 自立經濟構造의 確立을 위해 農林漁業部門의 成長을 最大化하고 國際收支改善을 위하여 經常收支를 均衡시키고 國內賦存資源을 最大限 活用하고 投資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內貯蓄의 劃期的인 增大 및 社會間接施設의 均衡있는 擴充 등을 설정하였다.

둘째, 社會開發의 促進이다. 社會開發은 國民總和의 經濟的 基礎라는 점에서 4次計劃에서는 經濟開發과 더불어 새롭게 중요한 政策課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용·보건·교육·직업훈련 등을 強化하고 또한 所得分配상태의 改善에도 力點을 두었다.

셋째 能率의 向上과 技術의 革新으로 合理的인 經濟運用의 정착화 및 能率의 極大化로 物的資源의 稀少性を 克服하고자 하였다.

第4次計劃 입안당시에는 70年代 前半期에 있었던 1次石油波動을 비교적 成功的으로 극복한 經驗을 反映하여 對外關係與件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設定하고 있었다. 計劃初期 즉, 1976년에 이은 1977년과 1978년의 輸出好調와 海外建設의 送金擴大로 好況에 들며 오히려 過熱景氣를 겪었다. 그러나 計劃後半期에 第2次石油波動이 일어 났고 先進各國의 產業構造改編이 지연됨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韓國經濟의 成長과 對外貿易量도 압박을 받았다.

成長率面에서 計劃期間동안 年平均 5.5%의 實質成長을 기록하여 目標인 9.2%에 훨씬 못 미쳤으나, 年度別로 보면 計劃初期인 1977年과 1978년에는 各各 10.3%와 11.6%로 計劃보다 높은 成長率을 記錄함으로써 過熱景氣라고까지 표현되었으나 곧이어 극심한 不況으로 轉落하여 1979년에는 6.4% 成長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과거 20年間의 高度成長過程에서 누적된 問題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第2次 石油波動과 10.26事態 이후의 政治社會的 不安이 加勢하였다. 더욱이 다음 해에 있었던 開發年代以來 미증유의 農業凶作을 맞아 198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6.2%라는 負의 成長을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80년을 전후한 사회경제적 급변속에서도 統計分野는 機能面에서나 기술적, 정책적 體制面에서 發展을 지속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第4次 5個年計劃은 지금까지의 成長爲主 開發戰略에서 成長과 衡平의 調和를 특징으로 하여 綜合的인 社會開發로 轉換함으로써 社會衡平의 基調를 다지며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統計分野에서도 經濟統計爲主에서 國民福祉水準과 그 樣態에 대하여 綜合的 體系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社會指標」體系的 開發이다.

社會指標體系的 開發은 人間生活의 質과 관련된 社會狀態를 把握하여 社會開發政策의 成果를 測定하는 手段이 되며 開發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각종 社會的 逆機能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새로운 政策樹立의 機能도 한다.

이 社會指標體系的 開發은 調查統計局과 韓國開發研究院(KDI)이 1975년부터 共同으로 研究事業에 着手하였었다. 이때에는 人口, 社會, 保健, 所得 등 8個部門의 350個項의 國內可用統計를 檢討하면서 體系化作業을 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1979년에는 當장 活用할 수 있는 129個 指標를 公表하였다. 그 이후 1980년에는 151個指標 1981년에는 166個로 해마다 指標數를 擴張해 나아가서 社會福祉의 基本的인 情報機能을 하게되었다.

특히 1981년에는 所得分布에 관한 統計를 作成하기로 하고, 韓國의 所得分布研

究뿐 아니라 여러가지 社會政策的施策을 위한 귀중한 指標를 提供하게 되었다.

統計施策面에서는 統計와 政策施行 또는 社會經濟的 發展計劃間的 연계성과 利用度를 提高시키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統計分析機能의 強化를 統計發展의 課題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統計間的 齊合性이 要求되었다. 社會指標도 그러한 目的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있지만 특히 產業經濟에 관한 統計情報의 系列化 蓄積과 그것의 효과적인 管理體系를 모색하였다. 단순한 통계조사자료의 집계(자료처리등)만이 아니라 그런 자료의 관리기능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의 統計分析機能, D/B化推進效果의 提高에도 기여하였다. 그무렵 調查統計局 機構속에 統計調查官室과 資料管理官室 그리고 調查管理課를 신설하였고(1975. 8. 14字) 이어서 1981年末에는 統計分析課가 설치되었다.

統計情報體系도 改善하였다. 대개 統計情報는 印刷物形態로서 活用하여 왔으나 情報分析能力의 高度化에 따라 統計情報를 收錄하는 磁氣테이프의 活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刊行物이나 磁氣테이프와 같은 것으로는 情報傳達의 手段으로서 大量化된 情報의 迅速한 流通을 要請하는 情報化時代에 따라갈 수 없다. 이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Data Base System)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尙大한 1次統計資料와 함께 이를 加工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Program Package)도 축적시켜 資料의 檢索과 분석을 容易하게 하는 統計資料活用體系를 의미한다. 1980年代 初期에 벌써 經濟動向分析, 景氣豫測, 景氣綜合指數의 算出, 時系列分析, 經濟力集中度등에 活用하고 있다. 統計廳이 發足한 1991년부터는 더 많은 資料를 蓄積함과 同時에 主要統計需要機關에 統計廳의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시킨 端末裝置를 設置함으로써 統計情報의 流通組織網을 廣範圍하게 形成토록 하였다.

가령 1977년부터 鑛工業部門의 企業集中度 分析體系를 開發하였는데 이는 企業體의 雇傭, 出荷, 附加價值, 有形固定資產등에 관한 각종 경제력의 集中度와 品目別 市場集中度를 計量的으로 測定함으로써 產業組織의 效果的發展과 合理的 競爭推進 등 정책수립 資料로 活用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內部資料로 作成하고 있다.

經濟活動은 内外의 景氣動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은 경제통계지표의 동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러가지 景氣調節政策은 敏感하고 正確한 景氣의 진단과 長短期豫測을 할 수 있는 指標를 必要로 한다. 이런 要請에 副應하기 위하여 調査統計局은 1979년부터 韓國開發研究院과 共同으로 韓國의 景氣綜合指數를 研究開發하여 1981年 3월부터 編制公表하였다.

人口統計部門에서도 큰 改善을 이룩하였다. 지금까지는 人口動態申告의 不振때문에 직접조사 자료로서는 각종 人口動態率을 算出하지 못하고 總人口調査 資料에 의한 間接的인 方法으로 推計함으로써 資料의 信賴性이 항상 문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8~79年間의 人口動態特別調査(UNFPA의 資金支援)를 실시하고 이른바 二元推計方式을 利用하여 人口動態率을 計算하고 또 이를 基礎로 韓國人의 生命表를 作成하였다. 종전에는 UN등 國際機關에서 開發한 標準生命表에 準據한 몇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제 韓國人 特性에 맞는 生命表를 개발하게 되었다. 새로운 生命表는 韓國男子의 死亡力패턴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점 등 여러가지 새 事實을 나타내 주었다.

雇傭展望調査는 1976年 7월에 一般統計로 指定받아 1980년까지는 年2회씩 조사하다가 1981년부터 매년 3월말기준으로 年1回 作成하고 있다. 人口移動調査는 과거에 각기 다른 樣式으로 申告하던 轉入, 退去, 復歸, 再登錄申告를 1980年 9월부터 한장의 樣式으로 統合하였다.

韓國經營者總協會에서는 標準者모델賃金調査를 1978年 4월에 一般統計로 지정받아 매년 調査하고 있고 1980년에는 企業體勞動費用 實態調査도 역시 一般統計로 調査하다가 1982년부터 勞動部로 移管해서 實施하고 있다.

에너지총조사(센서스)는 동력자원부에서 1981年 3월에 一般統計로 승인받아 동력자원연구소를 調査實施機關으로 해서 同年에 第1次 總調査를 國內最初로 실시하였다.

調査統計局에서 실시하는 總事業體統計調査는 1981年 6월에 指定統計로 指定받아 5年週期로 당해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調査토록하고 있다. 全產業의 事業

體에 대한 地域別 產業別 事業體數 및 雇傭構造를 파악하여 각종 산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만이 아니라 사업체단위의 각종 통계조사에서 母集團資料등 으로서도 活用되고 있다.

住宅建設景氣展望調査는 1978年 9月부터 分期別로 실시하고 아파트入住實態調査는 1978년부터 每年 실시하고 있다. 또 共同住宅의 住居環境도 1980년부터 每 2年마다 調査한다. 1979年 12月부터는 全國地價統計調査가 실시되고 있으며 都市住宅價格動向調査도 1981年 12月부터 每月調査로 하고 있다.

中小製造業景氣展望調査는 1979年 4/4分期부터 分期別로 調査實施하고 있으며 輸出企業經營實態調査는 1980년부터, 產業技術開發動向調査는 1981년부터, 해마다 調査를 하고 있다. 1980년부터는 環境汚染實態報告와 廢水排出施設調査도 每月 또는 每年 實施하고 있다. 農產物生産費調査는 1978년에 감자, 고추, 마늘을 追加하고 79년에는 참깨, 유채, 팥, 땅콩을 추가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다.

한편 1978년부터는 水産統計 改善方案의 一環으로 漁業基本統計調査와 漁家經濟調査를 農林水産部에 移管하고 漁家經營調査는 1976년에 水産廳에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 移管하여 2年間の 試驗調査를 거쳐 1978년에 調査對象, 業種分類, 標本抽出 및 調査方法등을 改善하여 調査實施하고 있다.

計劃期間中 主要指標의 計劃과 實績比較

	單位	1962		1966		1971		1976		1981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G N P (80年價格)	億 弗	103.2	126.7	137.6	180.6	233.1	287.2	416.1	465.1	668.8	600.7
人 口	千 名	26,136	26,513	29,185	29,436	32,429	32,883	34,345	35,849	38,807	38,723
1人當 GNP (80年價格)	弗	395	477	472	613	719	873	1,212	1,297	1,723	1,551
產 業 構 造	%										
農 林 漁 業		37.1 ¹⁾	36.6	34.8 ¹⁾	34.4	34.0 ²⁾	27.0	22.4 ³⁾	23.8	18.5 ⁴⁾	19.6
鑛 工 業		19.4	16.3	26.1	20.2	26.8	22.4	27.9	28.4	40.9	31.3
SOC 및 其他		43.5	47.1	39.1	45.4	39.2	50.6	49.7	48.6	40.6	49.1

	單位	1962		1966		1971		1976		1981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商品輸出(經常)	億 弗	0.66 ¹⁾	0.54 ¹⁾	1.38 ¹⁾	2.09 ¹⁾	5.5 ²⁾	9.74 ²⁾	35.1 ³⁾	47.3 ³⁾	202.4	208.8
投資率	%	20.1 ¹⁾	12.8	22.7 ¹⁾	21.6	19.9 ²⁾	25.2	24.9 ³⁾	25.5	26.0 ⁴⁾	33.2
國內貯蓄率	%	3.7 ¹⁾	3.4	13.0 ¹⁾	11.8	14.4 ²⁾	15.4	21.5 ³⁾	23.1	16.1 ⁴⁾	22.8
就業者	千名	8,497	7,662 ⁵⁾	10,111	8,423	10,371	10,066	11,792	12,556	14,765	14,048
就業構造	%										
農林漁業		66.1	63.1 ⁵⁾	64.6	57.9	58.4	48.4	37.7	44.6	39.7	34.2
鑛工業		9.4	8.7	10.7	10.8	12.4	14.2	20.5	21.9	26.1	21.3
SOC 및 其他		24.6	28.2	24.7	31.3	29.2	37.4	41.8	33.5	34.2	44.5
失業率	%	22.3	8.2 ⁵⁾	14.8	7.1	5.0	4.5	4.0	3.9	3.8	4.5

註：1) 61年價格基準, 2) 65年價格, 3) 70年價格, 4) 75年價格, 5) 63年就業者

資料：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82.)

다. 經濟社會發展基調와 統計活動

80年代初 政治, 社會的 不安과 農業凶作 등 經濟不況으로 負의 成長 또는 低成長을 기록하던 時期에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이 成案되었다. 4차 계획때 까지 쓰던 「經濟開發」이라는 用語가 「經濟社會發展」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은 70年代의 高度成長에 이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80年을 전후한 시련의 충격은 자못 컸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進路는 福祉社會와 社會正義를 지향하는 社會發展에 重點을 두고자 하였다. 第5次計劃의 基本的인 理念은 「安定」 즉, 經濟安定을 통한 國民生活의 安定과, 「能率」 즉 經濟的인 能率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成長基盤下에 雇傭機會의 擴大 및 所得增大, 그리고 「均衡」 즉 所得階層間, 地域間의 均衡 發展 등 세가지였다.

이와같은 理念 아래 政策의 最優先目標은 物價를 한자리 숫자(10% 以內)로 維持하며 經濟成長은 7~8%線에서 安定시키는 것이었다. 安定 속에 成長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次計劃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不安과 經濟運用에 대한 時代的 靚센서스(一體感)의 缺如 등으로 產業政策上의 生産施設投資擴充計劃이 流

動的이었다. 時代史的으로는 하나의 調整期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1981年의 投資優先順位設定, 제로베이스豫算編成, 韓·美頂上會談에서의 美軍撤收白紙化, 에너지對策協助 등 協力方案 合意, 82年의 獨占規制, 公定去來強化, 金融實名制 推進發表(7.3措置)와 建設工事의 早期着工 등 시책을 전개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한강개발도 이때에 이미 착수하였다. 거기다가 1983年 上半期부터는 國際油價의 鎮定氣勢와 함께 政府의 油價引下措置(83年 2月 6日) 및 不動產投機抑制措置(同年 2月 16日) 등을 계기로 國內經濟가 活性化하기 시작하였다. 下半期부터는 國際景氣도 上昇局面으로 들고 있었다.

이러한 要因들이 서로 작용해서 國內經濟가 예상을 벗어난 빠른 속도로 회복하게 되자 第5次計劃 자체가 成案 당시와는 現實的으로 乖離하게 되었다. 計劃成案當時의 암울함이 사라지자 이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라하여 1983年 중반에 1984~86年에 대하여 修正計劃을 세워 成長率을 上向調整하고 物價의 安定과 國際收支의 效果도 좀 더 改善하고자 하였고 결국 이를 달성하였다. 이른바 당시의 유행어인 세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成長率의 實績을 보면 1982年에는 計劃에 未達된 5.4%였으나 1983년에는 11.9%라는 높은 成長으로 計劃을 上廻하였다. 1984年에도 8.4%의 성장을 보이자 이제는 安定的 成長基調에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韓國經濟의 成長潛在力이 크다는 것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1人當 GNP는 1984年에 이미 2000달러 수준을 초과하였고 그후 1985年間에는 過熱成長도 安定的 氣勢로 더욱 定着하였다.

그러다가 1986年에는 國際原油價와 原資材價格의 繼續的인 下落과 더불어 國際金利도 下落勢가 持續되지 이른바 3低의 힘을 입은 韓國經濟에 有利하게 作用하여 韓國產業의 主軸인 重化學工業이 눈부신 활약을 하여 누구도 豫想치 못한 期待以上인 12.2%의 成長率을 올렸다. 經常收支도 當初目標水準과 比較가 되지 않는 46.5억달러의 黑字를 내고 物價에 있어서도 都賣物價基準으로 -3.7%가 하락하여 物價의 오름세도 잡혔다.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함에 따라 外債殘額도 減少하는

傾向을 示顯하였다.

統計發展에 있어서는 가장 큰 隘路라고 할 수 있는 統計知識과 經驗을 蓄積한 人力問題가 있다. 이러한 隘路를 打開하여 傳門的인 統計職員을 確保하고자 1981년에는 公務員任用上에 統計職列을 新設하였고 이와 더불어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統計學 및 關聯 學問專攻者를 더욱 容易하게 確保하기 위하여 調查統計局의 別定職 公務員制度를 크게 擴大하였다.

한편 統計의 質的 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各種 調查와 標本管理方式을 크게 改善하였다. 家口單位調查의 경우 새로이 新築하는 모든 住宅을 附加母集團으로 하는 標本을 抽出하여 既存의 標本에 追加시킴으로써 母集團의 變動에서 오는 標本偏倚를 極小化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事業體單位의 各種 標本の 경우 事業體 總管理制度를 導入하여 標本事業體의 休廢業 또는 轉業이나 新規 事業體의 設立 등과 같은 母集團 變化에서 오는 標本の 老朽化 現象을 防止함으로써 統計의 精度를 提高토록 하였다. 1981年度 總事業體調查는 既存의 各產業部門別 「센서스」를 補完하고 「센서스」와 經常標本調查를 體系化시킬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하였다.

各種 基礎統計를 加工 綜合하여 推計하는 國民計定統計의 精度를 提高하고 國民計定體系를 新國民計定體系로의 轉換을 위한 基礎統計의 改善方案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基礎統計와 國民計定統計의 乖離現象을 없애고 各種 經濟統計가 體系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各種 國家基本統計는 總量的 成長爲主의 開發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全國統計로 作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地域社會, 地方經濟에 대한 政策需要가 緊要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80년대 후반에 실시할 第6次計劃에 效果的으로 反映하기 위한 준비가 必要하였다. 그것이 地域統計開發事業의 着手였다. 그동안 各市道에서 각기 실시해 오던 地域別 人口 및 經濟活動調查의 精度를 높여야 한다. 우선 失業과 就業에 관한 統計를 地域別 動態統計로 發展시키고자 調查統計局에서 調查票와 標本の 設計 關係職員訓練 등을 강화하여 地方統計의 技術的 支援을 實施하고 또한 既存의 調查體制를 再調整하여 地域統計가 可能토록 하였다. 각 市

道에서 發刊하고 있는 統計年報의 體制를 標準化함으로써 地域統計와 全國統計간의 관련성을 높여 나아갔다. 各 地方自治團體에서 總人口調查의 年度만을 除外하고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常住人口調查는 1983년부터는 과거에 20餘年間 使用하여 오던 「多家口連記式調查票」를 調查票에 1家口만을 調查하는 「單記式調查票」方式으로 改編하고 1986年 調查時부터는 調查時點도 11月 1日로 變更하였다. 死亡原因統計는 1982년에 「1980年度死亡原因統計報告書」를 作成한 이후 每年 年報로 發刊하고 있다.

經濟活動人口調查는 1982年 7月부터 雇傭構造의 變化推移를 迅速히 把握하기 위해 調查週期를 月別로 變更한데 이어 1983年 6월부터는 ILO勸告案을 받아들여 調查票를 全面 改編하고 標本의 固定에서 오는 代表性低下를 防止하고자 그해 10月부터 標本連動交替方法을 導入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勞動經濟動向調查는 1983年 2월에 特殊業種事業體調查를 名稱變更한 것이며 每分期別로 調查하고 있다. 賃金, 勤勞時間制度綜合調查는 1982年 9월에 一般統計로 承認받아 年1回 調查하고 있으며 雇傭構造調查는 1983年 10월에 指定 統計로 指定하여 同年 11월에 시작한 이래 每3年마다 實施토록 하고 있다.

이 조사는 小規模 調查인 經濟活動人口 調查에서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地域別 雇傭構造와 產業間 勞動力 流動狀態를 把握하여 長短期雇傭政策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한 것이다.

漁業經營調查는 1983년에 水產廳長 許可漁業과 定置網漁業의 標本을 全面的으로 再調整하고 一部漁業을 統廢合하는 등 現實性 있게 改編하여 現在 分期別로 調查하고 있다.

都小賣業動態調查는 1982年 1月 29日 一般統計로 承認받아 調查對象地域을 서울에서 全國으로 擴大하여 每月 調查하고 있다.

中小企業銀行에서 실시하던 中小企業實態調查는 1982年 第16次 調查때부터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로 移管하여 每年 調查로 實施하고 있으며 中小企業 生産 및 操業狀況調查는 1982年 下半期부터 每月 調查하고 있다.

서울消費者態度調査는 1983년부터, 每年 2回씩 調査하고 있으며 住居實態調査는 1983年 1月부터 作成을 中止한 無住宅家口實態調査와 統合하여 2年마다 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家族保健實態調査는 1982년부터, 國民健康調査는 1983년부터 每3年마다 實施하고 있다.

韓國銀行에서 作成하고 있는 國民所得計定은 1986년에 UN이 勸告하는 新SNA에 의한 新國民計定으로 이행하여 推計하고 있으며 財政收支調査는 1986년에 처음 83·84年度分을 調査하고 그 이후 每年 調査하고 있다.

라. 産業化, 開放化社會의 促進과 統計座標

5次計劃 後半에 成長活力을 다시 찾은 韓國經濟는 1980年 後半을 榮光스럽게 마무리 짓고 先進國으로의 前進을 위하여 온 國民이 經濟成長에 대한 自信을 되찾게 되었다. 이리하여 21世紀의 先進經濟社會의 長期비전을 提示하면서 1987年 1월에 1987~1991年間の 5個年計劃을 出發하였다. 第6次計劃은 그 基本理念을 先進社會進入을 위한 基盤造成에 두고 이 期間을 先進社會의 實現을 위한 第1段階 實踐計劃期間으로 삼았다. 第6次計劃을 作成한 1986年度가 韓國經濟開發史上 가장 좋은 實績을 올린 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展望을 밝게 해 주어 매우 意慾的인 目標을 세웠다. 物價安定과 國際收支 黑字 속에서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先進社會로 進入하는 것으로 하였다.

第6次 計劃期間中 主要指標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P)}	計劃	實績
經濟成長率(%)	7.5	12.9	7.5	13.0	7.5	12.4	7.0	6.8	7.0	9.3	7.0	8.4
經濟規模 經常, 兆원	—	90.6	—	106.0	—	126.2	—	141.8	—	171.5	—	206.0
85價格兆원	78.8	88.2	84.7	99.6	91.1	112.0	97.5	119.6	104.3	130.7	111.6	141.6
1人當 GNP(弗)	2,331	2,505	2,474	3,110	2,767	4,127	3,065	4,994	3,396	5,659	3,800	6,498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P)}	計劃	實績
輸出 (億 弗)	317	339.1	356	462.4	398	596.5	442	614.1	491	631.2	544	695.8
輸入 (億 弗)	292	297.1	326	385.8	363	482.0	403	568.1	447	651.3	476	765.6
經常收支 (億 弗)	25	46.2	30	98.5	35	141.6	39	50.5	44	△21.8	48	△87.3
總外債 (億 弗)	475	445	479	356	482	312	481	294	473	317	461	393
純外債 (億 弗)	357	325	343	224	324	73	301	30	271	64	237	125
都賣物價 ¹⁾ (%)	△2.0	△1.5	2.0	0.5	2.0	2.7	2.0	1.5	2.0	4.2	2.0	5.4
消費者物價 ¹⁾ (%)	2.5	2.8	3.0	3.0	3.0	7.1	3.0	5.7	3.0	8.6	3.0	9.3
失業率	4.0	3.8	3.7	3.1	3.6	2.5	3.7	2.6	3.7	2.4	3.7	2.3

註：P) 1991의 實績中 GNP는 暫定推計

1) 1985年 基準指數에 의한 變動率

資料：經濟企劃院

第6次計劃의 初年度인 1987年은 國內政治社會面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學生과 在野政治人에 의한 시위와 데모는 1986년부터 격렬화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 들어와서는 격렬의 도를 加重化하고 이런 가운데 6.29宣言을 계기로 政局은 진정되었다. 이어 與野가 合意해서 改正한 憲法에 따라 國民의 直選에 의하여 새 政府가 들어서며 政局安定의 突破口를 찾았다. 이른바 6共和政時代이다. 國內 모든 면에서 自律化運動이 일어나 產業界에서도 勞賃과 勤勞條件을 對象으로 勞動運動과 勞使紛糾가 결렬해져 勞使雙方間에의 自制와 양보를 促求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이런 어려운 逆境 속에서도 計劃目標를 훨씬 웃도는 實績을 올려 1986년에 이어 經濟의 3大目標인 經濟成長, 國際收支, 物價安定을 同時에 成就하는데 성공하였다. 經濟成長率 12.9%와 100億弗에 육박하는 97.8億弗의 經常收支 黑字를 記錄하였다. 物價에 있어서도 都賣物價 2.7%, 消費者物價 6.1%線에서 安定되었다.

1988年中 韓國經濟는 원貨切上和 勞使紛糾 및 賃金上昇 등에도 불구하고 產業의 競爭力向上을 바탕으로 輸出이 꾸준히 늘어나고 設備投資와 民間消費等 內

需도 活氣를 띄어 86年後 連3年째 12% 水準의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1人當 國民所得은 4千弗에 도달하였다. 國際收支는 輸出好調에 따라 貿易收支 黑字가 最近 3年間 每年 30億弗씩 늘어 110億弗을 上廻하고 올림픽開催에 따른 効果도 作用하여 經常收支 黑字規模가 當初 豫想을 훨씬 넘어서는 142億弗水準으로 擴大하였다. 한편 物價는 都賣物價가 前年末對比 2%에서 安定勢를 유지한 반면 消費者物價는 7%水準으로 相當幅 오름세를 나타냈다. 88年 2月 出帆한 第6共和國政府는 그동안의 高度成長過程에서 累積되어 온 不公正과 不衡平을 是正하고 社會構造의 成熟에 相應하는 經濟의 自律化, 開放化를 促進한다는 經濟基調를 採擇하여 持續的인 成長基盤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第6次 經濟社會發展計劃의 修正計劃을 樹立하였다.

韓國經濟는 1989年을 境계로 다시한번 시련을 맞이하였다. 國內經濟活動의 위축과 國際的 開放壓力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지난 3年間 12% 수준의 高率成長을 持續했던 國內經濟가 製造業의 生産活動이 不振하여 實質輸出이 減少하며 89年中 6.7% 成長하는데 그쳤다. 輸出이 不振한 것은 그간의 圓貨切上과 높은 貨金上昇으로 價格競爭力이 크게 弱화된데다 美國 등 主要先進國의 景氣鈍化와 保護貿易主義強化로 貿易環境이 惡화된데 基因한다. 그 결과 貿易收支가 크게 줄어들고 貿易外 및 移轉收支도 海外旅行自由化와 海外送金擴大 등으로 大幅 減少함으로써 經常收支 黑字規模가 51億弗로 크게 減少하였다. 다만 物價는 都賣物價가 國際原資材價格安定에 힘입은 1.1%, 消費者物價의 5.1% 상승수준으로 무난히 한해를 넘기기는 하였다.

1990年度에 들어와 우리 經濟는 危機라고 불릴 정도로 全般的으로 어려운 狀況이었다. 經濟成長은 6.5% 水準으로 낮게 展望되었으며 輸出은 減少를 나타내고 이런 와중에서 現物資產選好心理는 不動產投機로 나타났다. 그 餘波로 傳·月貨金이 急騰하고 勞動運動成果로 나타난 高貨金, 高所得, 高支出의 영향도 작용하여 物價는 月間水準으로 1.2%라는 근래에 보기도문 上昇추세를 보였다. 上半期부터는 中東灣域(걸프)戰事態로 인한 高油價負擔이 加勢하였다.

當局은 무엇보다 勤勞意慾과 企業意慾을 同時에 蘇生시키고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한 一連의 施策을 講究하였다. 그러나 經濟成長面에서는 9% 水準의 높은 成長率을 記錄하였으나 國際收支面에서는 年間 20億달러 水準의 經常收支 赤字로 나타났고, 物價도 都賣物價 7.4%, 消費者物價 9.4%라는 높은 上昇勢를 피할 수 없었다.

6次計劃의 마지막 年度인 1991年을 다 지내야 6次計劃 全期間에 대한 評價가 可能하겠지만 國內生産이나 對外去來는 그런대로 伸張하고 있으나 物價高, 國際收支, 社會間接資本投資 및 勞動力需給 등 부문에서의 隘路現象이 顯在化된 상태에서 90年代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사회의 축진에 따른 政治·社會的, 經濟的, 對應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으며 UR 등 國際化的 압력은 기존의 발전계획 패턴이 限界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서울88올림픽 以後의 發展을 위한 跳躍과 韓國에 대한 內外的 視覺이 엄청나게 변했고 東歐, 共產陣營의 탈바꿈이나 韓國의 UN加入 등이 韓國史로 하여금 國際的 커미트먼트(參劃)機會를 看過할 수 없게 한다. 90年代는 韓國의 社會·經濟的 轉換期에 해당한다.

21世紀를 앞둔 마지막 10年(Decade)은 또 情報化, 超尖端科學時代라는 局面展開로 통계분야가 담당할 當面課題의 再定立을 要求한다. 이점에서 80年代 中盤 以後 長期計劃에서 統計部門이 포함된 것은 특별한 意味를 지닌다.

90年을 전후하여 大規模 總調查(센서스)를 본격화했다. 1987年에 실시한 에너지總調查를 비롯하여 1988年의 國富調查(19年 週期), 1989年의 產業(鑛工業)總調查에 이어 1990년에는 人口 및 住宅總調查, 農業總調查, 山林基本調查 및 漁業總調查를 실시하였고 1991년에는 總事業體調查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80年代末부터 새로 착수한 統計들이 90年代로 이어지고 있다. 事業體 賃金實態調查를 1987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1988年 7月에 都小賣業統計 調查가 指定統計로 지정되어 每年 實施한다. 主要企業의 設備投資計劃調查는 지금까지 一般統計이던 것을 1987年 1月부터 指定統計로 指定하여 半期別로 실시하고 있다. 1987年 1月에는 全國地價統計調查를 國土利用管理法上的 全國地價變動

7次 經濟社會發展5介年計劃 主要總量展望

	單位 Unit	1987	1991	1996	年平均增加率 Average rate of year	
					'87~91	'92~96
					經常 GNP	兆원
經常 GNP	億弗	1,028	2,727	4,926	21.5	12.5
1人當 GNP	弗	2,505	6,316	10,908	20.3	11.5
輸出	億弗	347	710~720	1,300~1,400	15.6	21~14
輸入	億弗	316	805~815	1,300~1,400	20.7	10~12
經常收支	億弗	46	-80水準	50~70	-	-
都賣物價	%	1.4	9.5內外	5水準	7.4	6內外
消費者物價	%	2.6	3水準	2~3	3.3	2~3
總就業者	千명	15,505	18,505	20,637	3.6	2.2
製造業就業者	千명	3,826	5,048	5,975	5.8	3.4
失業率	%	3.8	2.4	2.4	-	-

註：1) 實質成長率

資料：主要經濟指標, 1992. 統計廳

率調查와 統合하여 分期別로 調查하고 있다.

1979년에 처음公表했던 社會指標는 1987년에 人口住宅總調查를 調查區에서 抽出한 약 17,500家口를 대상으로 住宅, 環境과 教育部門을 강화하여 224個 指標를 編制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專門調查員에 의한 自計式, 他計式을 並行하여 調查하였다.

그리고 오랜 宿願이던 統計廳의 發足이 1991年 1月 1日을 기하여 正式으로 出帆하였다. 아직은 첫출발이기 때문에 從來의 調查統計局을 擴大改編 昇格한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계기로 韓國統計는 機構, 體制, 機能面에서 획기적 發展의 基盤을 갖춘 셈이다. 한편 統計情報供給體制 構築의 일환으로 資料銀行(Data Bank)을 開發하였다.

앞으로 地方自治制를 對備하기 위하여 地域間 均衡發展등 多角的인 部門別 基礎統計가 整備되어야 한다. 地域間 發展隔差를 解消하고 經濟活動의 地方分散 등을

포함하여 주민의 經濟活動과 直結되는 所得擴大 施策, 產業再配置計劃이나, 住宅, 保健, 教育 등 福祉政策을 위해서는 地域特性和 그 住民에 관한 統計와 地域別, 產業別 生産統計, 流通統計는 물론 地域(住民)所得과 같은 統計도 作成해야 한다. 이에 따라 統計廳은 第7次 經濟社會發展計劃 기간중 지역통계의 개발과 定着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1988년에 1985~2020年間의 地域(市道)別 將來人口를 推計作成하였으며 地域所得統計는 그동안 一部 市·道에서 自體的으로나 관련 研究機關에의 委囑 등으로 作成해 왔던 바 이를 一括해서 1989年 2월에 一般統計로 指定하여 統計廳 主導下에 推計하고 있다.

韓國의 統計는 體制나 質量面에서 이제 그 完熟期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의 前進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課題를 再強調한다.

첫째로 統計의 正確性은 그동안에도 強調되어 왔지만 計劃樹立의 技法이 보다 精巧해지고 調查研究業務가 高度化됨에 따라 統計의 正確性에 대한 要請이 더욱 切實하게 되었다.

두번째로 統計의 加工·分析機能을 擴大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統計業務가 1次的 統計資料生産을 爲主로 하여 극히 制限된 部門에서만 加工·分析하여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素材形態로서의 統計供給에서 統計의 活用을 極大化하기 위한 方案이 研究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統計需要의 形態가 變化하여 지금까지의 總量的 統計에서 細部的이고 部門的 變化 또는 成長要因分析 등이 可能的 微視的 統計를 要請하고 있어 深層統計調查의 開發과 함께 韓國統計의 情報基軸을 더욱 公高히 함이 重要的 課題로 되어 있다.

I. 人 口 統 計

여 백

I. 人 口 統 計

1. 人口住宅 總調查

가. 國勢調查

人口總調查, 人口센서스를 日帝時에는 國勢調查라 하였고 政府樹立이후에도 한 동안 國勢調查라고 便稱하였었다. 一定時點 一定領域에 居住하는 人間의 總數 즉 人口靜態를 實際로 全部調查하는 것으로 公簿調查人口(戶籍, 住民登錄人口)나 推計人口(動態推定, 央年推計人口등)와 區分된다. 진작부터 農業社會가 定着하면서 歷史時代以來 總人口에 대한 關心의 集約되어 특히 中國에서 始源을 찾고 있으나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샤, 희랍, 로마 등에서도 그 단편적인 人口調查의 例가 있으며 韓國에서도 時代의 變遷과 함께 점차 발전되어 온 歷史記錄이 있음은 前述 하였다.

그러나 近代的인 總人口調查技法은 1790年 美國에서 처음 시작되고 그것이 그들의 憲法에 census란 用語로 정착한 이래 영국·프랑스·포르투갈(1801), 오스트리아(1818), 네덜란드(1830)등이 비교적 早期에 실시하였고 이탈리아(1861), 독일(1871), 러시아(1897)등도 19세기중에 시작하였었다. 東洋에서는 1906년에 中國이 실시한 뒤, 1920년에 日本도 國勢調查라고 비로소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3年定期戶口調查가 종전부터 천년이상 지속되고 있어 온바 새로운 센서스技法이 필요할 즈음에 奴婢制廢止와 함께 1896年の 戶口調查規則을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새로운 民籍法施行과 總督府報告例에 의한 日帝의 査察的 戶口調查로 退化해 버리고 census는 그 후 日本人에 의하여 뒤늦게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日本에서는 開港以來 19世紀後半부터 西洋學門을 수입하다가 1900年前後하여 國際統計會議(萬國會議)등에 參席했을 때 西歐人士의 勸誘도 있고해서 民勢調查 또는 國勢調查를 하자는 論議가 분분하던 차에 1902年 12월에 法律49號로 國勢

I. 人口統計

調査法の制定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後進的 政體(內閣制 1885)와 統治 機構의 脆弱性 및 文民行政經驗의 日淺으로 인한 行政網未熟과 露日戰, 韓日合邦 등 때문에 政治·行政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實施時期를 차일피일하였고 그때마다 가령 1905, 1910, 1915년등 국제적인 센서스年만 되면 統計學社, 統計協會를 비롯한 민간학자들의 수없는 건의, 요청들이 잇따른 결과 1920년에야 第1回 國勢調査를 하게 된 것이다. 巷間의 센서스論議以後 30년, 法制定以後 20년이 지나서이다. 1918年 9月 25日 勅令 358號 國勢調査施行令에 따라 「第1回 國勢調査」를 1920年 10月 1日 零時現在로 實施(施行令 第1條)하기로 하고 全日本領土(帝國版圖)內的 「現在者」에게 ①姓名 ②家口(世帶)에서의 位置 ③男女別 ④出生年月日 ⑤配偶關係 ⑥職業 및 職業上地位 ⑦出生地 ⑧民籍別 또는 國籍別 등 事項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1919年 6月에는 韓國에 대하여도 總督府令 第103號로 國勢調査規則이 制定되어 거기서는 上記 施行令에서 정한 項目以外에 ⑨讀書程度 ⑩日語解得 程度를 追加하고 國勢調査家口票(世帶票)와 地方調査組織도 規定하였다.

總督府訓令(28號)인 國勢調査事務取扱規程에 따라 地方 道廳에 臨時國勢調査部를 두고 監理區와 調査區를 설정하였고 이른바 「國勢調査監理員 및 國勢調査員心得(銘心書)」을 내리고 要計票·照查表(中間集計)등을 記入例와 함께 提示했다.

中央에서는 1918年 5月에 總督官房 總務局에 「統計課와 臨時國勢調査課」를 두고 6月에는 朝鮮國勢調査評議會(幹事: 臨時國勢調査課長)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19年 3月에 勃發한 獨立抗爭示威는 일시적인 소요로 잠잠해 지지 않고 더욱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해외의 獨立運動도 더욱 氣勢를 올려 급기야 漢城, 露領, 上海의 臨時政府가 上海에서 大韓民國臨時政府로 統合出發하는 등의 事態에 직면하자 日帝는 더이상 韓國에서 意圖대로 統治機能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1920年 4月에 臨時國勢調査課가 廢止되었고 內閣에서도 韓國에서는 國勢調査實施가 不可能할 것으로 豫想하여 國세조사 대신 從前에 해마다 시행하던 12月末日 現在の 戶口調査方法에 準하여 國勢調査期日인 10月 1日에 「臨時戶口調査」를 할 수 있는지를 總理名義로 朝鮮總督에 照會하였고(1920. 3月) 總督은 도 戶口調査는 할 수 있다고 回答하였다. 이때의 戶口調査事項은 다음의 3個項이다.

- 1) 府郡別現住戶數 및 現住人口
- 2) 職業別 現住戶數 및 現住人口
- 3) 日本人 人的事項

이에 따른 法律的措置는 그 뒤에 이루어졌다. 「朝鮮의 現象에 비추어 第1回 國勢調查는 시행할 수 없다」는 措置의 必要를 인정하고 (6月の 閣議案) 「第1回 國勢調查는 朝鮮에 이를 施行하지 않는다」는 法律을 確定한 것은 1920年 8月 4日 (法律35號)이다. 이에 의하여 같은 8月중에 朝鮮國勢調查規則 國勢調查評議會規程, 國勢調查事務取扱規程과 國勢調查監理員 및 同調査員心得 등 韓國에 적용할 1920年 國勢調查關係 法制와 機構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그보다 전에 國策조사과를 폐지(1920. 4. 1)하고 난 이후에 사후 처리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日帝의 統治行態)

다만 이무렵에 특기할 사항은 1918년에 總督官房總務局에 國勢調查課와함께 統計課가 설치된 것이다. 1908年 大韓帝國時 度支部에 있던 統計課가 설치된지 10年만에 統計課가 再生한 것인데 總督府官制에서 統計가 종전의 總務課에서 獨立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로서 1922년에는 統計課가 調査課로 되었다가 1924년에는 다시 文書課로 吸收(統計係) 됨으로써 統計課 名稱은 4年餘, 調査課 期間까지 包含하면 6年半동안 지속한 셈이다.

1925년에 韓國에서(文書課는 1928년에 다시 總務課로 된다)國勢調查를 처음 실시할 때는 그 主務部署가 文書課 時期이다.

1925년의 調査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現行法上 10年마다 하게 되어있는 調査週期사이에 5年마다 簡易調査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했다. 그것이 1922年 法律 51號로 改正 明文化한 것이다. 이 國勢調查法의 改正으로 1925年 5월에 施行令, 施行規則, 地方事務取扱規程, 調査員銘心書, 申告用紙樣式 등 각종 勅令, 閣令, 訓令들이 公布되어 1925年 國勢調查의 法制的 根據를 정비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國勢調查는 調査時期마다 이들 法制를 改正하여 整備 또는 擴充시켜 나아가는 것으로 그 뒤, 1930, 35, 40年 國勢調查때마다 適合한 調査體系를 갖추었다.

1925年 5月 總督府令 第66號 「1925年(大正 14年) 簡易國勢調查에 관한 件」에 의하여 同年 10月 1日 午前零時 현재로 「朝鮮內에 現住」하고 있는 자를 대상

I. 人口統計

으로 ①姓名 ②男女別 ③出生年月 ④配偶關係 ⑤本籍 또는 國籍 등을 조사토록 하였다.

그당시 調査區는 普通調査區를 陸上 41,398區, 水面 31區 등 41,429調査區로 區劃하였고 王公殿邸, 陸海軍의 部隊, 艦船, 刑務所 및 走行中인 列車등은 特別調査區로 하였다. 41,590名의 調査員과 92,000圓의 豫算을 投入하였다고 한다. 다만 이때에는 中央에 國勢調査課를 두지 않고 總督官房 文書課에서 담당하되 그 안의 統計係에 臨時職員 14名을 동원하여 府邑面에서 道를 거쳐 報告된 要計表(照查表)들을 檢査集計하여 1930年末에 公表하였다.

1930年과 1935年度 國勢調査時에는 調査區數(一般地域: 普通調査區)가 각기 44,758區와 46,015區였으며 이때에 自計式調査를 試圖하였다고 한다. 集計方法으로서 從前에는 府邑面集計와 道集計를 취합하여 中央에서 檢査集計하던 것을 이때부터 計牌(카드)에 의한 機械集計를 하면서 各 道別로 符號와 穿孔 및 機械分類, 集計에 의한 集中表(原表)를 작성하였다. 1935年度 國勢調査의 總經費는 328,621圓이라고 한다.

1940年度 調査는 그 結果의 상세한 報告가 없다. 「1940年 國勢調査結果 要約」에는 「極秘」表示가 되어 있고 그 첫장에 「本書는 防諜上 公表하지 못하게 됨에 그 取扱에 있어서는 특히 注意할 것」이라고 特記하고 있다. 그리고 調査結果의 全部編纂印刷가 방대하므로 軍務員, 勞務員, 軍需生産 기타 主要企劃方面에 必要한 정도의 要約資料를 提示한다고만 하였다. 調査事項으로는 ①姓名 ②家口上關係 ③男女別 ④出生年月日 ⑤配偶關係 ⑥所屬産業·職業 ⑦指定機能 ⑧兵役 ⑨出生地 ⑩本籍地 및 ⑪民籍 또는 國籍이다(「1940年 國勢調査施行令」). 그에 따라 地方事務取扱規程에서는 道·郡島·府邑面의 調査組織을 規定하고 調査區設定, 調査員의 擔當區指定, 調査員指導, 準備調査, 申告書(調査票)의 交付, 申告書, 調査票 檢査 및 府邑面要計表作成, 申告書, 調査票의 整理와 提出節次를 規定하였다. 附錄으로 調査要綱과 申告書 및 結果表 樣式 그리고 産業分類, 職業分類 項目을 記載하고 있다.

1945年度 國勢調査는 日帝의 敗戰으로 實施치 못하고 그대신 敗戰을 豫상하여 戰時動員을 위한 「資源調査法」에 의거 하여 2전년인 1944年 5月 1日 現在로 人

口調查를 실시한 것이 日製의 마지막 總調查가 되었다.

1937년에는 이를 國勢調查課로 고치고 여기서 國勢調查業務와 人口動態調查를 하게 하였었다(年末常住人口調查와 統計年報 등은 總務課 - 1941年 부터는 文書課에서 취급). 1941年 官制에서는 國勢調查課內에 靜態係, 動態係, 家計係 및 勤勞係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43년 改編에서는 國勢調查課를 調查課로 고치고 여기서 각종 統計의 綜合整理와 報告例業務도 管掌하게 하면서 國勢調查, 人口動態, 勞動·技術統計 및 家計調查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1945年 4月에는 總督官房內의 이 調查課도 폐지하고 1942年부터 있던 企劃室을 企劃課로 고쳐 統計 및 調查業務의 吸收와 民情調查 그리고 각종 重要政策의 企劃·立案과 그 調整 및 監察業務를 보게 하였다(이때 文書課를 다시 總務課로 고친다). 이 企劃課와 함께 統計官室을 두고 庶務, 教養, 符號, 集計, 編纂, 人口動態, 勞動 및 家計의 8係를 두고 運營하다가 終戰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日帝의 國勢調查機關은 그들의 朝令暮改式官制行態와 특히 不安全한 國民總力戰體制 때문에 統計機能 全般과 함께 극히 紊亂해져서 光復以後에 人的 職能的 資源이 全無하고 日帝의 權勢의 官治意識과 여러 慣行만 殘存되어 있던 상태로는 이의 正常化에 상당한 時日이 所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뒤에 이은 1945, 1950年의 總人口調查 空白期를 겪어야 했다.

나. 人口 및 住宅總調查

1960年의 總調查는 世界센서스계획(World Census Programme)에 따라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人口, 住宅 總調查와 農業總調查를 韓國에서도 실시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韓國의 人口, 住宅 總調查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라이스(S. A. Rice) 박사가 주재하는 통계고문단이 1958년에 來韓하였는데, 이 사절단의 역할은 政府內의 統計조직편성과 통계조사활동계획을 樹立함에 있어서 必要한 여러분야에 걸쳐 協調·조언토록하는 것이었다. 라이스 顧問團은 2次大戰以後의 日本統計發展에도 기여한 바가 있었다.

그들의 첫업무는 1960년 人口, 住宅 및 농업센서스의實施를 計劃하고 이 事業

1. 人口統計

活動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韓國銀行이 이미 作成한 農業調查計劃案을 除外하고는 예산문제를 비롯하여 國勢調查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준비와 조사여건 등을 한국의 실정을 勘案하여 별도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안에 의하면, UN 권고에 따라 人口, 住宅 및 農業에 관한 大規模的인 總調查를 實施함에 있어 從來와 같이 內무부통계국, 보건사회부 원호국 및 농림부 농정국에서 각각 분야별로 주관함으로써 야기될 통계간의 重複, 調查經費의 不均衡, 調查體制의 혼란, 統計의 비독립성등 여러가지의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調整할 수 있는 強力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별도 기구로서의 國세조사위원회를 1959년 2월 10일(대통령령 제1449호)에 설치하였다. 同委員會의 주관으로 이듬해인 1960년 12월 1일에 「人口 및 住宅 國勢調查」와 1961년 2월 1일에 「농업국세조사」를 각기 實施하였고, 이들 조사의 評價를 위해 過去에 시도하지 않았던 事後調查도 실시하였다. 이 總調查의 調查結果는 單純集計에 그치지 않고, 人口·住宅調查와 農業조사 相互間의 연관성을 具體的으로 比較·分析하여 政府樹立以後 10年間의 國家發展의 모습을 明確하게 把握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0년에는 특히 住宅調查와 農業調查部門에 대하여 韓國에서 總調查를 처음 실시하였고, 人口部門도 조사구 설정방법, 용어정의 등을 비롯하여, 調查方法上의 諸 문제들을 改善하며 계획段階에서부터 資料處理 및 評價에 이르기까지 近代的 體系를 갖추었다. 본 조사에 앞서 事前調查와 試驗調查를 실시하고 또 標本調查技術에 의해서 事後調查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發展된 總調查를 낳게 한 決定的인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人口資料의 生産以外에도 各種 標本틀(frame)을 設定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66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投資財源 確保等 豫算事情으로, 當初 1965년에 實施하려던 計劃을 1년 연기하여 간이총조사로 실시하였던바 1960년 總調查 당시의 약6만개 調查區를 3만9천조사구로 줄였으며, 住宅에 관한 調查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6년 총조사는 조사계획이나 調查項目의 정의 및 調查員의 訓練 등에 있어서는 前회의 經驗을 살려 좀더 整頓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계과정에서도 전자계산기(EDPS)를 도입하여 자료처리기

간을 단축시켰음은 물론, 결과표의 項目도 한층 풍부하게 하였다. 특히, 총조사 실시를 위하여 強力한 行政力이 動員되었고 과거 총조사에서 조사원을 地方公務員이나 統·班長등을 주로 採用하였던 것과는 달리 民間專擔 調查員을 많이 채용하였으며, 調查員의 訓練方法이나 教育內容도 크게 改善하였다.

당초, 1966년 人口總調查의 特徵은 많은 예산을 비롯한 諸般與件을 參酌하여 人口 및 家口에 관한 基本的인 속성을 나타내는 항목만을 보통조사구에서 全數調查하였고, 이 보통調查區 중 1/10에 該當하는 3,753個 調查區를 標本調查區로 설정하여 標本 調查區에 대하여서는 全數調查項目 以外에 人口에 대한 自然的 속성을 나타내는 出產力項目(15歲以上 婦女子에 대한 總出生兒數 및 1年間의 出生兒數)과 經濟的 屬性을 나타내는 經濟活動項目(14세이상자의 就業與否, 產業, 職業, 從事者의 地位)을 調查하였다. 이때부터 標本理論을 導入하여 調查나 集計過程에서 人力과 時間을 절약하고 오차를 최소한도로 줄임으로써 統計의 生命이라 할 수 있는 신속·정확성을 기하게 되었다.

1970년 總調查는 1925년에 人口總調查를 實施한 이래 第10回次에 해당한다. 1960년 總調查와 같이 세계센서스계획(World Census Programme)에 따른 大規模調查로서 人口·家口이외에 住宅에 관한 調查를 包含하여 실시하였다. 調查方法에 있어서는 1966년과 大同小異하나 총예산 약 10억원을 確保하여 投入할 수가 있었으므로 調查員의 報酬를 증액(1인당 약 5,000원 정도 지급)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고 調查區設定(Mapping)을 1966년보다 強化하였다.

또한 人口의 증가와 함께, 人口의 社會的 移動現象 및 都市集中化가 社會的 問題로 대두됨에 따라 標本調查項目으로 人口移動에 관한 사항을 追加하여 社會·經濟政策樹立 및 施行을 위한 基本統計를 더욱 擴大하였다.

資料處理過程에서도 더욱 現代化된 전자계산기를 도입하여 處理期間을 단축시켰다.

1975년 總調查는 “總人口 및 住宅調查”라는 명칭으로 實施하였으며 出產力關聯事項으로 초혼연령, 經濟活動關聯事項으로 추가취업희망여부를 묻는 項目등을 追加하였다.

「1980년 人口 및 住宅 센서스」에서는 구체적인 教育實態 把握을 위하여 專攻科

I. 人口統計

目 項目을 追加하였고, 大都市 交通問題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交通實態 把握을 위해 通勤(학)여부 및 利用交通手段 등 項目들을 追加하였다.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에서는 以前의 總調查에서 人口, 家口, 住宅 등 基本項目은 全數調查로, 經濟活動, 出產力, 人口移動 등에 관해서는 標本調查로 실시하여왔던 것을 統合하여 全項目을 全數 調查함으로써 표본오차의 최소화를 기하고, 資料集計의 번잡성을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姓氏·本貫 및 宗教別人口分布를 把握하는 항목을 새로이 追加하였다.

14차 人口總調查이자 6차 住宅總調查인 1990年 調查에서는 종래의 國勢調查, 센서스 등으로 실시하던 名稱을 「總調查」라고 개칭하여 실시하였다.

1990年 人口 및 住宅總調查는 人口의 規模, 分布, 家口構成, 生活實態 등 人口와 關聯한 基本的인 特性을 把握하고 住居의 基本設備, 住宅構造 등 住居狀態를 把握해서 人口成長, 人力과 住宅需給, 社會福祉, 地域開發 및 交通對策같은 국가정책 수립이나 學術研究用, 事業用 및 기타의 統計目的에 活用코자 實施하였다.

統計法 第3條와 同施行令 第5條 및 人口住宅總調查施行規則에 의하여 실시하며 人口總調查는 지정통계 제1호(111-11-01)이고 住宅調查는 제2호(111-11-02)로 승인되어 있다.

「1990年度 人口 및 住宅總調查」는 1990年 11月 1日 零時現在로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領域에서 실시하였다. 調查項目으로서는 全數調查項目 33個項目과 標本調查項目 12個項目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全數調查項目

〈人口에 관한 事項〉

①姓名 ②家口主와의 관계, ③性別 ④나이 ⑤出生地 ⑥教育程度 ⑦通勤·通學 與否 ⑧職場 또는 學校(院)住所 ⑨出發·到着時刻 ⑩利用交通手段 ⑪婚姻狀態

〈住居에 관한 事項〉

⑫去處의 種類 ⑬家口區分 ⑭占有形態 ⑮使用房數 ⑯食水の 種類 ⑰炊事燃料 ⑱煖房施設 ⑲文化施設 및 家財 ⑳專用施設 ㉑부엌施設 ㉒化粧室施設 ㉓沐浴施設 ㉔上水道施設 ㉕外壁材料 ㉖지붕材料 ㉗延建坪 ㉘塋地面積 ㉙總房數 ㉚居住家口數 ㉛建築年度 ㉜便益施設數 ㉝居住可能家口數

○ 標本調查項目

〈人口에 관한 事項〉

①1年前 居住地 ②5年前 居住地 ③經濟活動狀態 ④産業 ⑤從事上의 地位 ⑥職業 ⑦初婚年齡 ⑧生存子女數 ⑨死亡子女數 ⑩總出生子女數

〈住居에 관한 事項〉

⑪賃借料, ⑫月平均家口所得規模

한편 調查方法은 당시의 經濟企劃院의 調查統計局 主管下에 市道 및 區市郡, 洞邑面을 통해서 調查員이 調查對象者를 직접 面接하여 調查票를 作成하는 他計式 面接調查方法으로 하였다.

특히 1990年度 總調查의 特徵은 OMR System을 最初 導入함으로써 종래의 記入式 調查票에 의한 在來式 資料入力方式(Key Entry System)에서 調查票 直接入力方式을 使用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穿孔式 資料入力方法이 많은 時間을 소요할 뿐 아니라, 誤打 등에 의한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結果集計와 그 發表가 상당히 늦어져 왔으므로 이를 改善함은 물론, 앞으로의 대규모 調查資料處理方式을 劃期的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광학판독(OMR)技法을 導入하였다. 光學判讀技法(OMR)이란 調查票上의 Mark를 光學的으로 高速判讀하고, 磁氣 테이프장치에 이 데이터를 出力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N7814 OMR機 3대를 도입하였다(NEC 機種). 이 機械는 B5사이즈부터 A4사이즈까지의 다양한 종이를 使用할 수 있기 때문에 調查票 設計時에 세세한 응용실계가 可能할 뿐 아니라, A4사이즈에서는 分當 180枚, B4사이즈에서는 分當 150枚分の 판독이 可能하며, 兩面, 判讀機能까지 갖추고 있어 高速入力を 할 수 있다. 또한 마크判讀에 있어서 濃淡比較, 濃度水準 感知 및 區分判讀이 可能하고 Format Parameter의 採用으로 調查票의 자유로운 設計가 可能하게 되어있다.

1990年 人口住宅 總調查에서는 OMR技法이 처음으로 도입된 관계로, 調查票 마킹(Marking) 不良등에서 오는 試行錯誤를 最少化하기 위하여 一般 調查票를 보조 조사표로 使用하여 여기에 기재된 內容을 OMR調查票에 移記하여 入力하는 方式을 취하였으나, 앞으로 새로운 入力技法에 대한 技術과 이에 대한 認識이 높

I. 人口統計

아지게 되면 조사원이 바로 OMR 조사표에作成하여 判讀하게 하는 方法으로 發展시켜 나아가게 될 것이다.

1990年度 總調査의 특징으로서는 또한 10年週期の Full Scale Census의 性格을 살려 社會保障制度 擴充과 福祉國家 建設을 指向하면서 이에 따른 社會, 厚生, 醫療, 保健 등의 政策開發과 國際比較性도 可能하도록 基本調査 項目以外的 項目도 大幅 受容해 45個項目을 調査한 것이다.

한편, 광역교통행정체계를 樹立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交通에 관한 項目(通勤(學) 與否, 출발·도착시각, 이용교통수단)을 전국에 걸쳐 全數調査하고 또 所得分配에 관한 각종 政策立案에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家口의 平均所得規模를 標本調査하였다. 이외에도 통계와 지역정보를 결합하여 必要한 統計資料를 지도상에 表示하여 나타내는 이른바 統計地域情報網(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을 구축하기에 必要한 資料를 入力하는 등, 1990年 總調査는 向後 2000年代를 向한 센서스 선진화의 발판을 구축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1990年度 總調査의 結果公表는 1991年 4월에 暫定報告書를 낸데 이어 1991年 8月에는 2% 抽出集計 速報를, 同 9月에는 10% 標本集計 結果를 公布하였다. 全數集計는 1992年 12월에, 또 經濟活動集計는 1993年 2월에 集計公表할 豫定이다.

〈總調査人口의 推移〉

1961년 당시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은 4~5%에 지나지 않았고 人口는 年평균 3%란 높은 증가율로 成長함에 따라 經濟成長率은 높은 人口增加率에 잠식당하여 構造的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1962년부터 착수한 경제개발5개년계획 推進과 함께 가족계획사업과 海外移住事業 등 인구억제정책을 병행하여 推進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인구는 1960년 24,989千名에서 1966년 29,193千名으로 절대인구는 4,204千名이 늘어났으나 인구증가율은 2.88%에서 2.70%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人口住宅總調查

年次別 人口總調查 比較

實施年度	1944	1949	1955	1960	1966
○ 調查名稱	簡易國勢調查	第1回總人口調查	第1回簡易總人口調查	人口·住宅 國勢調查	人口센서스
○ 調查의 法的 根據	資料調查法	人口調查法(9.1.27 法律第18號)	人口調查法 및 第1回簡易總人口調查令(大統領令 第1033號)	人口調查法 및 國勢調查令(60.11.3 國務院令 第91號)	統計法(62.1.15 法律 第980號 및 經企院令 第37號)
○ 實施主管機關	朝鮮總督府	公報處統計局	內務部統計局	內務部統計局	經企院調查統計局
○ 調查基準時點	5.1	5.1	9.1	12.1	10.1
○ 調查對象範圍		大韓民國에 居住하는者	左 同	左 同	左 同
○ 調查方法	現住概念	·現住概念으로 ·原則적으로 自計式	左 同	·常住概念으로 ·調查員에 의한 面接調查式	左 同
○ 調查項目數	6	11	12	18	全數8, 標本6
○ 報告書發刊	·人口에 관한 基本表	·速報(男女別, 洞·邑·面 人口) ·其他資料消失	·簡易總人口調查速報 簡易總人口調查(全國編, 市·道編)	·國勢調查結果 人口數速報(61.4) ·國勢調查結果 住宅調查速報(61.6) ·人口·住宅國勢調查速報(0.6%, 62.7) ·人口·住宅國勢調查報告(全國編, 市道編)(63.4)	·人口센서스速報(67.2) ·人口센서스報告(68.12)
○ 主要特徵		·政府樹立後 첫번째 人口센서스 · 최초로 人口移動事項包含		· 처음으로 住宅에 관한 調查實施 · 勞動力概念設定 · 經濟活動 및 出產力事項의 標本集計	· 10%標本調查 並行(經濟活動 및 出產力)

資料：統計資料解說〈表 1〉, 調查統計局

I. 人口統計

實施年度	1970	1975	1980	1985	1990 ¹⁾
○ 調查名稱	總人口 및 住宅調查	總人口 및 住宅調查	人口 및 住宅센서스	人口 및 住宅센서스	人口·住宅總調查
○ 調查의 法的 根據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 實施主管機關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 調查基準時點	10.1	10.1	11.1	11.1	11.1
○ 調查對象範圍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 調查方法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 調查項目數	全數6, 標本9	全數7, 標本9	全數7, 標本11	全數16	全數33, 標本12
○ 報告書發刊	· 總人口 및 住宅調查速報 (71.6) ·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73.11)	· 總人口 및 住宅調查速報 (76.3) · 總人口 및 住宅調查暫定報告(5%, 主要事項, 76.12) ·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1卷全數, 2卷標本, 78.8)	· 人口 및 住宅센서스暫定報告(81.3) · 人口 및 住宅센서스速報(標本項目의 2%集計 82.12) ·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第1卷全數, 第2卷標本, 82.12)	· 人口 및 住宅센서스暫定報告(86.3) · 人口 및 住宅센서스(2%集計, 86.11) ·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第1卷全國 및 市·道編, 第2卷特性編, 87.12)	· 人口 및 住宅總調查暫定報告(91.3) · 人口·住宅總調查(2%集計, 91.6) · 人口·住宅總調查報告(第1卷全國 및 市·道編, 第2卷特性編, 92.6)
○ 主要特徵	· 10% 標本調查(經濟活動, 出產力, 人口移動 및 一部住宅에 관한 事項)	· 5% 標本調查 並行(左同)	· 15% 標本調查 並行(經濟活動, 出產力, 人口移動)	· 모든 項目에 대하여 全數 調查로 實施)	· 10% 標本調查 並行(經濟活動, 出產力, 人口移動)

1) 1990年 人口·住宅總調查 施行計劃, 調查統計局

總調查人口 推移

(單位：千名)

年 度	센서스人口			센서스간年平均 人口增加率(%)
		男 子	女 子	
1955. 9	21,526	10,767	10,760	
1960. 12	24,989	12,544	12,445	2.88
1966. 10	29,193	14,702	14,491	2.70
1970. 10	31,466	15,796	15,670	1.89
1975. 10	34,707	17,461	17,245	1.98
1980. 11	37,436	18,767	18,669	1.50
1985. 11	40,448	20,244	20,205	1.56(1.00)
1990. 11	43,520	21,845	21,675	1.47(0.98)

註：• 1985~1990年間 年平均 人口增加率は 잠정치임.

• 1990年 結果는 잠정치임.

• () 안은 新人口 推計方法에 의한 平均增加率임.

자료：人口住宅總調查,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70年代에 들어서서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國民一般에 小子女觀이 팽배하기 시작해서 人口增加率は 急速히 減少하는 現象을 보였다. 즉 1966年과 1970年사이에 年平均 人口增加率は 1.89%, 1970~1975년에는 1.98%로 나타나 60년 중반까지의 2.70% 수준에 비하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절대 人口數의 增加는 年平均으로 1966~1970年 사이에 56.8만명, 1970~1975年間은 64.8만명씩 증가하여 1970年 10月 1日 現在 總人口는 31,466千名, 1975年 10月 1日 現在의 總人口는 34,707千名으로 나타났다.

1980年 總調查人口는 37,436千名, 1985年 總調查人口는 40,448千名으로 나탄, 1975~1980年間 人口增加率は 1.5% 水準에 그쳤고 1980年代 중엽 이후부터는 더욱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年 總調查人口는 43,520千名으로 暫定集計되었으며, 人口增加率は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낮은 인구증가율을 維持한 것은 1962년부터 실시한 6次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國民所得의 向上을 비롯한 産業構造의 近代化, 敎育 및 保健水準의 向上, 사회보험제도의 擴充 등 諸般經濟社會分野에서 顯赫한 발전과 變化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變化가 人口抑制政策에 有利하게 作用한 結果

I. 人口統計

라 하겠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人口問題는 종래 양적인 側面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急速히 전환하고 있다. 이것이 곧 1970年代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人口分布의 不均衡 즉, 都市化의 急進展, 농촌인구의 減少에 따른 都·農間 人口不均衡 및 産業間·地域間 人口分布의 불균형 문제 등이라 할 것이다.

2. 人口動態 統計

人口統計集團의 變動要因으로서 ①自然的 增加를 規定하는 出生, 死亡 ②配偶關係에서 出生要件을 보는 結婚, 離婚, ③人口의 社會的 變動을 보는 流入·流出(人口移動) 및 ④保健과 관련된 死亡原因과 死産 등을 數量的으로 把握하는 것이 人口動態統計이며 總人口調查 등 人口靜態 統計와 함께 人口統計의 中樞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發展過程은 비교적 後代인 近代에 와서 身分登記制度에 의한 届出行政(出生·婚姻) 또는 保健衛生政策(死亡, 死産, 疾病等)의 發展과 결부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前述한 바와같이 韓國의 傳來 戶口調查에서 身分性이 強하게 反影되고 있는 것도 그 속에 人口動態統計 發生과 같은 人口現象 認識이 內在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合邦을 前後한 人口統計(民籍統計表 1910)의 職業分類에 官公吏와 함께 兩班, 儒生등이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고 여기서 商業·農業이니 工業이니 하는 것도 현대적 의미의 職業이라기 보다 身分性의 表出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가. 日帝時代의 人口動態統計

戶口調查傳統이 없던 日本에서는 1900년 전후해서 近代의 人口統計學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독특한 小票記入方式(人口統計材料小票記入心得: 1908 內閣訓領)을 報告例制度에 導入하면서 身分과는 상관없이 西歐에서 開發한 人口動態要素 把握手段으로서 出生, 死亡, 婚姻, 離婚 및 死産을 보고하게 하였고 한편, 保健衛生觀點에서 死亡統計 및 死亡原因 疾病分析을 試圖하기 시작하자(「死亡原因類別調查報告書」, 1903 등) 人口動態統計調查를 하게 되었다. 그것이 1922년에

나온 「人口動態調査令」이다. 그해부터 이에 의하여 조사하되 그 이전의 戶籍資料를 이용함 1902年分까지 소급한 日本자체의 人口動態統計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습의 직접 적용은 留保한 채 종래의 報告例事項을 일부 補完하여(1923年에 報告例 改正) 合邦當時까지 소급한 出生, 死亡, 死産, 結婚, 離婚 및 配偶關係 등을 각각 따로이 分析한 결과를 발표하였었다. 이때 出生과 結婚, 離婚은 각 道の 人口調査小票規程과 總督府報告例 規定에 따라 府邑面長이 管内實查調査로 年中 申告事項을 年末에 보고하게 하고 死亡, 死産은 報告例와 埋火葬取締規程에 따라 墓地, 火葬場에서 届出토록 하여 이들을 一次 統計表로 작성하면 이를 府·郡·島를 거쳐 道에서 취합하여 總督府에 提出한다. 總督官房 文書課(總務課 國勢調査課 등으로 變轉)에서 이를 人口統計表로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要約하면 별표와 같다.

日帝時 人口動態率(人口動態調査規則施行以前)

		1911	1912	1921	1925	1930	1935
出生	韓國人	277,473	421,500	509,122	712,278	760,602	625,979
	總數	—	—	518,063	722,493	772,270	640,569
	(出生率)	(2.01)	(2.89)	(2.97)	(3.80)	(3.81)	(2.93)
死亡	韓國人	163,235	232,115	337,934	384,673	373,722	421,444
	總數	—	—	345,262	392,497	381,877	430,698
	(出生率)	(1.18)	(1.59)	(1.98)	(2.06)	(1.89)	(1.97)
死産	韓國人	5,243	4,557	3,371	2,796	3,610	3,922
	總數	—	—	4,081	3,450	4,430	4,869
	(出生率)	(0.038)	(0.031)	(0.023)	(0.018)	(0.022)	(0.022)
結婚	韓國人	85,612	121,993	155,591	171,066	197,563	121,246
	總數	—	—	156,342	172,259	199,281	123,416
	(出生率)	(0.619)	(0.837)	(0.896)	(0.906)	(0.984)	(0.564)
離婚	韓國人	5,621	9,058	7,222	7,607	8,894	5,226
	總數	—	—	7,291	7,708	9,077	5,323
	(出生率)	(0.041)	(0.062)	(0.042)	(0.042)	(0.045)	(0.024)

註: 각 比率(出産率등)은 總人口에 대한 百分率(%)임.

1911. 12年은 韓國人에 대한 比率, 기타는 總數에 대한 比率임.

資料: 朝鮮總督府 文書課(혹은 總務課, 調査課등)各年 報告書.

이 表는 다시 말하면 人口動態調査規則이 나오기 이전의 韓國의 人口動態率推移

I. 人口統計

라고 할 것인 바, 이 비율에는 外國人 특히 日本人도 包含되어 있지만 그 規模가 초기의 수만명에서, 1940年代에 가도 60~70만명 선이었기 때문에 比率面에서는 큰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表에서 보면 먼저 1911年과 1912年 사이의 動態率을 外國人을 제외한 韓國人에 대하여서만 보았을 때 出生率(2.01%에서 2.89%로)을 비롯하여 死亡(1.18→1.59%), 結婚(1.619→0.839%), 및 婚姻(0.041→0.062%)이 모두 兩年間に 時系列斷層을 보이고 있다. 1912年 以後부터는 1930년까지 完만한 一定傾向을 유지하는 것과 對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렵은 前述한 戶口統計推移에서 보다시피, 警察의 「戶口찾아내기」때문에 年間 5% 이상씩 人口가 증가하던 때이고 그 경향은 1920年代에나 鎭定(人口增加率 0.5~1.0% 수준)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報告例와 戶口査察 強化로 出生, 結婚, 離婚이 늘려 잡힌 것이 韓國人의 人口動態가 1年사이에 件數面에서 30% 이상이나 늘어날 만큼 急變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死産이 오히려 약간 준 것은 死亡으로 처리했거나 戶籍事業에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아 出生에서도 제외시킨 人口統計上 警察行政의 不徹底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1930年과 1935年사이에 나타나나 이때는 時系列斷層이라기 보다는 時系列反轉으로 人口動態學的 意味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무렵은 日帝의 大陸侵略이 본격화된 滿洲事變(1931)이 背景이 되고 韓國이 兵帖前進基地로 되던 때이다.

1930年 以前에는 出生과 結婚이 급격히 늘었고 그에 따라 死亡과 離婚率도 起伏은 있었지만 꾸준히 늘고 있었다. 出生率이 增加한 것은 總督府와 警察의 戶口調査때문이라고 해도 年間 2%水準에서 3.8%수준이었다는 것은 人口의 自然增加推移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死亡率도 1910年代의 1%수준에서 2%수준으로 계속 증가되어 온 것은 당시의 生殘環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時日이 갈수록 심화되었던가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死産도 1920年代부터는 다소 기복이 있으나 0.0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外國人은 出産·死亡이 1萬名内外, 死産이 7.8백명이나 되어 國內居住人중 人口構成比面에서는 미미한 外國人(日本人 中心)의 出生과 死亡者의 絶對數가 현저한 것은 이들이 주로 都心地의 醫療機關, 行政機關 등과 密接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動態資料가 韓國人보다 잘 把握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結婚率은 해마다 急伸張하고 있으나 아직 1%미만으로 死亡率을 감안하더라도 出生率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離婚率이 1912년에 0.062%나 되어 다른 해의 0.04%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이무렵 1010年代初에 義兵, 獨立運動, 外國留學, 家出·都市進出 등이 주로 남자들로서 이른바 生離別하고 있다가 詐妄 通知나 行方不明者로 規定된 家庭을 離婚處理한 예가 많았지 않았는가고 생각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1930年을 경계로 그 以後의 動態率은 극히 不良해 진다. 出生率은 1925年의 3.80에서 1930年 3.81 및 1935年의 2.93%로 그 傾向이 낮아지고, 死亡率은 1930年의 1.89%에서 1.97%로 늘고 死産者數도 늘어난다. 結婚率은 1930年의 0.984에서 0.564%로 떨어진다.

이 사정은 1930年代부터 日帝下 生活與件의 惡化傾向이 더욱 심화된 것이며 한편 離婚率도 反感한데서 보듯이 行不者 生離別도 줄어들 만큼 住民生活의 舉動도 극히 제약되었을 것이나, 報告例統計制度가 지나는 官·警의 恣意性和 不正確이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報告例統計는 統計資料의 蒐集過程에서 일부는 年末實查로 充當하고 나머지 일부는 警察行政上의 届出에 基礎를 두고 그 集計整理는 地方 府邑面에서 道를 經유하여 總督府로 上達한 것이므로 그 地方警官의 裁量과 住民生活 形편에 左右되는 바가 컸던 것이다. 이를 두고 「地方分査」라고 하였었다. 그러니 이때의 人口動態統計가 제대로 되어 있을 수가 없다.

이 報告例資料를 利用하여 韓國의 民俗을 集中的으로 研究한 善生永助(「朝鮮의 人口問題」1935)도 이무렵의 人口動態統計가 不正確하다고 하였었다. 다만 이 경우의 資料分析에서도 日帝官學의 偏狹되고 歪曲된 視覺이 露出되고 있는 바 韓國의 傳統文化樣式과 人口統計學上의 諸現象은 問題點으로 卑下하고 總督府統治를 美化 弘報하고자 한 合目的性때문에 論理의 비약이 意圖적으로 無謀할 때가 많다. 이제 論調를 따라 1930年代 初의 人口動態資料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① 「平均 婚姻率」이 1930年 以前에는 해마다 增加해 오다가 30年부터 급격히

I. 人口統計

감소되고 있음은 結婚適齡期人口의 上昇, 晩婚傾向과 日帝下의 生活難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②死産(嬰兒死亡率)이 日本人보다 激增하고 있는 것은 「合邦以後 韓國의 文化發展, 交通과 生活向上, 醫療施設整備등이 顯著하였다」고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 경우에 「무엇인가 統計가 正確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무렵 1920年代에 全農家의 44.6%(1924年)가 赤字家計(즉 貧困線以下의 生計)이고 그 뒤로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그보다 10年後(1933年)에는 全體米穀生産의 53.4%를 日本으로 供出하였었다. 그것이 日本의 文化政策이었다. 韓國人은 굶고 貧困生活를 하면서 日本內의 資本主義文明生活를 充當하여 준 것을 總督府下의 生活向上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③당시 月別 死亡統計를 보면 韓國人은 3月을 비롯하여 1~4月 환절기와 7月 혹서에 死亡者가 많고 11月이 가장 적었는데 비하여 日本人은 6, 7月에 집중적으로 죽었다.

④死亡者의 原因別 疾病을 보면 日本人은 呼吸器病이 가장 많고 그에 이어 傳染病이 역시 많은데 韓國人은 消火器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神經系病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傳染病이 적은 것은 日本人의 先天的 體質虛弱性과 衛生觀念의 風土의 不適性 내지 免疫不足性 등이 主要原因이라 할 수 있고 韓國人은 日帝下 生活苦에 의한 粗惡食과 食生活不調(消化者病)를 반영하고 日帝官憲에 의한 意慾喪失, 反抗의 思考와 協調拒否, 나아가 그로 인한 拷問致死들을 神經性病으로 死亡했다고 報告하는 傾向과 有關하다고 볼 수 있다.

日帝前半期の 人口動態統計는 이처럼 不完全한 면과 官制意識의 前提에서 이루어졌다.

韓國에서 본격적으로 人口動態統計를 적용한 것은 1937年 「韓國人口動態調査票 및 送致目錄作成心得」(1937. 11. 1 政務總監 通牒)이 나오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日本에 人口動態調査令이 公布되어 시행한지 15年만이다.

이 規則에 의한 人口動態調査는 지금까지 報告例에 의한 것이 「地方分査方法」이었다면 1938年부터는 이들 規定에 의하여 이른바 「中央集査方法」이라고 하면서 改正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37年 11月 중에 各道 統計主住의 講習會sum이 있

있고 同年 11月 19日字로 報告例中改正을 府訓令 第77號로 通報하였다.

이 규칙에 의한 動態調査는 근본적으로 朝鮮戶籍令과 朝鮮民事令(1912)에 의한 届出調査이다. 다만 在韓日本人은 진작부터 있던 日本 內閣統計局資料에 의하였다.

그러나 말이 届出이지 그것은 戶籍届出義務者를 戶籍에 따라 本籍地의 戶主가 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戶籍官吏(統計主任)가 届(出)書(類) 作製時에 人口動態調査票를 作成提出하였다. 심지어 當事者인 届出對象人도 모르는 사이에 届出되는 것이 一般의이었다고까지 한다.

朝鮮人口動態調査規則에 의하면 人口動態調査票를 써서 府尹 또는 邑面長이 이를 提出해야 한다고 하고(第2條) 「調査票는 本籍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本籍地의 府尹 또는 邑面長이, 本籍地가 없는 者와 本籍이 分明치 않은 者는 届出地의 府尹이나 邑面長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第3條) 이 調査票는 1事件에 1枚의 調査票用紙를 사용하되 朝鮮戶籍令이나 埋葬, 火葬, 火葬取締規則에 의하여 届書(届出書)와 기타 關係書類에 必要事項을 記入하여(第9條) 區(서울) 邑·面→府群島→道를 거쳐 總督府國勢調査課(후에는 調査課로 改稱)로 送致目錄과 함께 提出한다. 이때 調査票 用紙는 統制해서 用途와 殘量도 보고하게 하였다.

調査票는 婚姻, 離婚, 出生, 死亡 및 死産으로 나누어 作成하되 이들을 分類하여 送致目錄에 記載한다. 그 樣式과 規格은 別添表와 같다.

「人口動態調査票 및 送致目錄作成心得」은 調査票와 送致目錄의 作성과 記入要領을 規定하고 있다.

出生에서 嫡出, 庶子, 死生子와 함께 쌍둥이, 棄兒를 구분하고 死亡에서는 配偶關係에 未婚, 有配偶와 死別, 離別 및 死亡原因을 적게 한다. 婚姻調査票에는 夫婦가 될 사람 각각의 本籍地와 婚姻當時의 現住居地를 적고 初婚과 死別, 離別後의 婚姻與否 및 不詳(未詳)을 區分한다. 또 夫婦兩人的 職業도 적는다.

이 調査票에 의해서 集計·公表된 日帝後期 人口動態推移를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I. 人口統計

日帝末期人口動態率(人口動態調查規則施行以後)

	1938	1940	1941	1942	1943	1944
出生 (出生率)	792,975 (3.293)	735,400 (3.204)	796,010 (3,225)	1,012,339 (4.200)	850,757 (3.488)	787,373 (3.134)
死亡 (死亡率)	384,179 (1.595)	412,048 (1.795)	400,953 (1.624)	452,670 (1.878)	492,037 (2.017)	523,641 (2.085)
死産 (死産率)	4,992 (0.017)	4,556 (0.020)	4,203 (0.017)	3,890 (0.016)	3,766 (0.015)	4,185 (0.017)
結婚 (結婚率)	226,510 (0.940)	209,339 (0.912)	238,149 (0.964)	330,422 (1.371)	316,198 (1.296)	359,712 (1.432)
離婚 (離婚率)	8,512 (0.033)	8,731 (0.038)	7,870 (0.031)	8,783 (0.036)	9,537 (0.039)	8,513 (0.034)

註：앞表와 同(全國 總人口에 대한 백분율 %)

資料：朝鮮總督府 各 年度報告書 및 內務部 統計月報(1958)

먼저 出生率이 이 기간을 통하여 3.2% 이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2차대전이 시작된(1941年 12月) 첫해인 1942년에 4.2%로 突出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出生届出을 재촉하던 戶籍官吏의 行패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死産率도 적게 잡혔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이때부터 사망률이 急上昇하고 아울러 結婚率도 1.3%수준으로 惊중 똥다. 이때부터 死亡率이 急騰하게 된 그 사정이 당시의 艱박한 民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징병, 징용 등을 기피하기 위해 서둘러 婚事를 성사시킨 尙간의 사정이 婚姻率 上昇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42年이후는 戰時的 極限狀況에 이미 들어선 것이라고 보면 日帝末期의 人口動態率은 1941年까지를 정상적인 統計時系列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結婚率은 0.96%, 離婚率 0.03%, 그리고 死産은 0.017%水準이었다고 할 수 있고 出生率은 3.2%수준에 出生人口數는 80만명線이고 死亡率은 1.62% 수준에 死亡者數는 40만명線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人口의 自然增加는 年間 40萬名線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戶口統計에서 1941년에 總人口는 100만명의 人口가 늘어나고 있고(國勢調査와의 對比는 40만명 增加) 1942년에는 무려 166萬명이 늘어나고 있다. 당시 人口動態要素 중 이른바 社會增加인 流入, 流出人口가 急増할 要因

은 전혀 없고 오히려 軍徵用, 差出, 日本人의 一部 退脚, 歐·美人 의 追放·脫出 등으로 社會增加는 負의 作用이 더 컸을 때이다.

戶口統計와 動態統計의 比較

	1940	1941	1942
年 末 總 戶 口 數	4,409,950 (4,586,565)	4,558,617	4,782,969
人 口 數	23,709,057 (24,326,327)	24,703,897	26,361,401
人 口 增 加	908,416	994,840 (377,570)	1,657,504
出生人口(出生率, %)	735,400(3.2)	796,010(3.2)	1,012,339(4.2)
死亡人口(死亡率, %)	412,048(1.8)	400,953(1.6)	452,670(1.9)
自 然 增 加	323,352	395,057	559,669

註: 1940年 戶口·人口數의 () 안은 國勢調查資料, 기타는 年末常住人口

여기서 日帝의 人口統計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舊韓末 日帝初期에 舊韓國人口統計를 비판하던 歪曲된 視角을 반성하고 統計技法과 人口學概念에서 近代의이라고 자랑하던 日帝官學의 이 功過를 再吟味해야 할 것이다.

3. 常住人口調查

常住人口調查는 1896년에 制定된 戶口調查規則을 母體로 從前의 式年(3년간격) 調查를 每年調查로 전환 실시한 歷史를 가지고 人口센서스(總調查)와 함께 우리나라 政體통계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1961年 統計局이 經濟기획원 소속이 되면서 이 常住人口調查도 內務부에서 經濟기획원으로 이관되었고, 1962년에는 統計法의 制定公表에 따라 그 명칭이 ‘年末常住人口調查’로 바뀌어 指定統計 제7호로 지정된 한편, 統計法 第3條와 서울특별시 및 各市·道 常住人口調查 實施條例에 의하여 종래 中央에서 調查하였던 것을 地方自治團體로 이관하여 調查時點도 12月 31日에서 12月 1日로 變更하였다. 1965년에는 조사시점을 10月 1日로 變更하고, 名稱도 常住人口調查로 개칭하였다.

I. 人口統計

그러나 同調査는 조사체계의 불비로 調査上 重複과 누락이 많아, 1968년에는 調査結果의 公表를 유보하였고, 1969년에는 調査自體를 중지하기도 하였으나 1971년부터 다시 調査를 재개하였다. 1983년에는 종전에 使用하여 오던 多家口連記式票를 單記式調査票方式으로 變更하였고, 1986년부터는 調査時點을 總人口調査의 기준시인 11月 1日字로 變更하여 實施하여 오고 있다.

常住人口調査는 地域別人口變動狀況(人口數, 年齡別構造, 家口數)을 把握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제반 行政目的의 基礎資料로 利用하고자 實施하는 調査이다.

그러나 常住人口調査는 많은 제약성을 갖고 있다. 즉, (1)常住人口調査는 통반이나 行政里의 경계를 기준으로하여 調査함으로써, 최신지도를 基礎로 하는 調査區設定의 合理性 결여로 調査의 重複과 누락이 많으며, (2)洞職員이나 통·반장들이 別途의 수당없이 調査員으로 動員됨으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타업무와의 중첩으로 효율적인 調査를 기대하기 어렵고, (3)調査項目도 단순히 이름, 性, 家口主와의 관계, 年齡 등에 국한함으로써 統計정보이용상 제한이 따르며, (4)정밀한 사후조사에 의한 評價가 不可能하여 오차측정이 어렵고, (5)집계방식도 전근대적인 수집계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비관을 받고 있다. 아울러 人口數의 많고 적음이 곧바로 地方自治團體의 승격, 行政組織의 擴大, 豫算確保 등과 직결됨으로써 과대 조사의 소지가 많고, 調査方法에서도 調査對象家口를 直接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調査員으로 동원되는 일선 공무원 또는 통·반장이 家口訪問을 사실상 소홀히 함은 물론, 주민등록에 의한 踏상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못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성들은 常住人口調査結果를 사실과 다르게 歪曲시킬 소지가 많고, 人口總調査에도 影響을 줄 우려가 있어 同調査의 廢止 問題를 신중히 검토하여 1991년에는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 常住人口調査의 實施를 중단하였으며 '92년 11월에는 시·도의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4. 住民登錄統計

우리나라에서 住民登錄 制度가 운영된 동기는 社會經濟가 發達함에 따라 人口移

동이 빈번하여짐으로써 호적이 있는 곳(본적지)과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곳(주소지)이 점차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 각종 制度의 施行에 不偏이 잇따르자 본적지 이외의 곳에 주민의 생활과 一致할 수 있는 주소지를 認定하는 制度가 必要하였기 때문이다.

1942년에 한때 寄留令에 의한 기류신고제를 채택했으나 호적과 實際生活과의 괴리문제도 해결못하고 실효성이 없자 이 기류령은 廢止하고 주민등록법(法律 1067號 : 1962. 5. 10)을 制定하게 되었다.

또 住民登錄法은 단순히 호적지와 실제생활지와의 괴리에서 오는 不偏 해소만을 위하여 제정하였다기 보다는 주민의 거주관계와 移動狀態까지 明確히 把握해서 行政의 基礎資料로 活用하는 의의가 있는 制度이다. 그러나 立法 趣旨와는 달리 住民의 申告에 따라 住民登錄表를 作成함으로써 호적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制度上的 약점을 惡用하는 事例가 많아 오히려 公信力이 없는 住民登錄이 되었다.

이와같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시행된 住民登錄이 호적과 연관성이 없이 有名無實 해지자 1968年 6月 29日 字 개정법률 제2016호로 從前의 住民登錄法을 대폭 改正하여 住民의 申告事項中 戶籍과 관련되는 事項은 반드시 호적법에 기준하도록 하고 기타 주민의 제반 申告事項은 相關기관간의 通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아울러 未申告 전출입자에 대한 강제등록을 規定하여 住民登錄이 주소지를 管轄하는 행정기관의 公簿로서 그 公信力을 한층 높이도록 하였다.

現行 住民登錄制度에서는, 住民登錄簿上的 人口를 每月 戶籍法에 規정한 出生·死亡申告에 의해서 수정하고 있으며, 轉出入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 자체에 의해서 수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써 행정구역별 人口數, 出生·死亡數, 轉出入者數 및 移動者數 같은 人口統計資料를 수집하고 있다. 이 외에 住民登錄簿는 選舉人名簿作成, 各種 공과금부과 등 地方行政目的에도 活用되고 있다.

그런데, 住民登錄簿는 개개인의 특정권리와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目的으로도 利用하고 있기 때문에 住民이 歪曲申告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住民登錄人口는 精確한 人口統計資料로는 아직까지 活用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전산망 구축에 라 1992년도부터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부통계로 대체하기 시작한다.

5. 人口移動統計

人口移動統計는 住民登錄法(法律 第1067號: 63. 5. 10)에 의한 轉出入申告書를 基礎로하여 統計廳에서 作成하여 오고 있다. 同 統計는 1976年 4月 10日에 一般 統計(第111-21-05號)로 승인되었으며, 이후 1980年 9月에는 과거에 각기 다른 양식으로 申告하던 전입·퇴거·복귀·재등록신고를 한장의 양식으로 統合하여 使用케 함으로써 일반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資料蒐集의 번잡성을 덜도록 하였다. 人口移動統計도 역시 住民登錄法上의 轉出入申告資料를 기초로 作成하기 때문에 무단 轉出入이나 虛偽申告등 誤差때문에 事實上의 移動과는 차이가 있다.

韓國人の 移動趨勢 (1971~1990)

연도	시 도 내				시 도 간			
	이동자수 (명)	성 비 (여자=100)	이동률 (%)	구성비 (%)	이동자수 (명)	성 비 (여자=100)	이동률 (%)	구성비 (%)
71	2,878,091	105.2	9.2	69.9	1,332,073	115.1	4.3	32.3
72	2,619,367	107.2	8.3	71.0	1,068,571	118.2	3.4	29.0
73	3,435,573	104.9	10.7	70.7	1,424,845	116.4	4.4	29.3
74	3,709,343	105.0	11.3	70.0	1,588,626	115.8	4.8	30.0
75	6,143,486	99.0	18.2	68.2	2,867,954	102.3	8.5	31.8
76	4,620,297	108.1	13.3	68.2	2,152,953	120.4	6.2	31.8
77	5,234,058	107.9	14.8	70.8	2,163,565	123.7	6.1	29.3
78	5,867,479	104.4	16.2	69.8	2,542,797	120.8	7.0	30.2
79	4,974,831	107.2	13.5	67.9	2,349,549	130.6	6.4	32.1
80	5,652,936	103.0	15.0	68.5	2,605,637	117.4	6.9	31.6
81	5,401,067	101.8	14.1	65.9	2,793,449	115.5	7.3	34.1
82	5,806,253	102.1	14.9	67.4	2,810,221	116.6	7.2	32.6
83	6,584,773	100.5	16.6	67.2	3,211,038	110.0	8.1	32.8
84	6,033,834	101.1	15.0	66.7	3,009,404	113.5	7.4	33.3
85	5,753,800	100.8	14.2	66.3	2,925,297	112.9	7.2	33.7
86	5,639,139	100.7	13.8	65.1	3,021,289	112.6	7.4	34.9
87	6,065,385	100.2	14.7	65.2	3,243,365	108.5	7.9	34.8
88	6,616,530	100.3	15.9	66.4	3,352,490	108.9	8.0	33.6
89	6,126,613	100.5	14.5	65.8	3,189,606	106.9	7.5	34.2
90	6,228,081	101.1	14.5	65.8	3,231,128	107.8	7.5	34.2

註: 1) 구성비는 이동자 총수에 대한 비율임
 2) 성비는 여자이동인구 100명당 남자이동인구임.
 資料: 한국이동통계연보

住民轉出入申告書에 의해서 작성하는 1971년 이래의 人口移動統計를 보면 별표와 같다. 이에 의하면 市·道間 人口移動은 1970年 1,332千名에서 1980年 2,606千名, 그리고 1990년에는 3,231千名으로 急增하였다. 人口移動率은(人口 1,000名當 移動者數) 1971年 4.1%에서 1975年 8.5%로 2배이상 增加하는데 이는 경제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추세로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移動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1975년 이후 1990년 까지 市·道間人口移動率은 6~8% 수준에서 비교적 安定된 狀態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대도시인구집중억제정책 및 수도권인구분산정책의 效果에 기인하나, 한편 絕對移動者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市·道間の 移動이 전체 이동자의 30%를 차지한 反面, 市·道內移動은 70% 水準이다. 市·道內移動者數는 1971年 2,878千名에서 1975年 6,143千名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每年 5,000~6,000千名の 人口가 同一市 또는 道內에서 移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解放後 人口動態統計

(1) 人口動態統計調査

人口動態統計는 出生, 死亡, 婚姻, 離婚과 같이 時間의 變化에 따라 一定期間內에 發生한 動態的인 人口變動狀態를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出生, 死亡, 婚姻, 離婚의 네가지 事象(event)은 國民의 身分變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이들 사상의 신고는 國民의 身分登錄과 法的記錄 維持의 必要性에서 강조되었고, 統計目的에 이용한 것은 이러한 法的制度가 確立된 以後에 同制度를 基반으로하여 發展하였다. 호적법은 出生, 死亡, 婚姻, 離婚에 관한 申告期間, 申告義務者, 申告場所, 申告事項, 申告書提出枚數, 失期申告에 대한 罰則, 기타 사무처리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고, 人口動態統計에 관하여는 統計法에 의한 指定統計로서 告示하여, “人口動態調査規則”에 따라 調査하고 있다.

호적신고와 함께 또 하나의 申告義務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住民登錄申告이다.

I. 人口統計

관할지역주민의 轉出入(人口移動)과 出生, 死亡에 관한 事項을 登錄對象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人口動態調查와 직접 관련된다.

1968年 住民登錄法이 改正되기 전까지는, 申告義務者는 戶籍申告와 住民登錄申告, 人口動態申告를 各各 別途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同法의 改正後에는 戶籍申告만으로서 주민등록은 自動적으로 처리되도록 改善하였고, 1970년에는 호적신고와 人口動態申告가 單一様式으로 統合해서 호적신고, 주민등록신고 및 人口動態申告의 3者가 一元化됨으로써 別도 신고에서 오는 國民의 不偏을 덜어준은 물론, 人口動態事項을 效率적으로 把握하여 動態統計의 質的改善에 기여하였다.

이와같이 現行 人口動態統計調查는 호적업무, 주민등록업무와 밀접한 關係를 維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申告書 수집절차나 집계등 統計作成方法에 있어서는 일관된 體制를 維持하여 오고 있다. 즉, 申告書의 蒐集節次를 보면, 住所地에서 申告를 받을 경우에는 신고절차에 따라 住所地의 區·市·邑·面에서, 본적지에서 申告를 받을 경우에는 본적지의 區·市·邑·面에서 각각 관할 郡·市·道를 經由하여 每 翌月末日까지 統計廳에 提出하도록 하고 있다 집계방법에 있어서는 中央集査方法을 採擇하여 統計廳에서만 集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原資料自體의 信賴度가 낮은 狀況에서 分析人力이나 技法이 미비한 地方行政官署別로 集計할 경우, 잘못된 結果值가 地方行政의 資料로 使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排除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統計廳에서는 地方行政系統을 經由하여 送付해온 月別申告書를 蒐集여, 이를 電算處理하고 年間單位로 一括集計方式에 의하여 집계하고 分析作業을 한다.

그러나 그간의 改善努力에도 불구하고, 國民의 申告率이 기대수준에 未洽하였던 관계로 인구동태통계에의 結果는 1980년 이전에는 주로 내부연구자료로만 利用되어 왔다. 申告에 의한 人口動態統計의 미비점을 補完하기 위하여 1963년에 처음으로 “人口動態標本調查”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行政力動員의 취약성, 調查員 및 調查技法上的 문제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期待와는 달리 資料의 信賴性이 낮았으므로 1969년에 일단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정책을 持續적으로 推進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人口動態統計資料가 切實하게 要請되었기 때문에, 1970년부터 調查方法의

改善, 調査員의 교육훈련방법강화, 대폭적인 표본개편 등 일련의 準備作業을 거쳐, 1972년부터 每分期別로 다시 “人口動態標本調査(Continuing Demographic Survey)”를 實施하였고, 1977년부터는 이를 다시 月別 調査로 전환함과 동시에 調査方法과 조사구모를 대폭 改善·擴大해서 이 체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구동태표본조사는 동태사항의 適期把握을 위한 조사주기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調査結果에 대한 確認검증도 역시 必要하기 때문에 1978年, 1979년에는 同一한 標本調査區에서 別途의 獨立된 「重複調査」를 실시하여 調査資料의 신속성을 檢證하는 등 제한된 여건하에서나마 가능한 모든 努力을 하였다. 최근 1987년에는 CDS표본과 별개로 獨立標本 약 55,000 家口를 새로 抽出하여 대규모적인 “人口動態特別調査”를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국민신고율이 向上됨에 따라, 80年 이후부터는 과거 10년간의 인구동태신고사항을 發生年度基準으로 綜合集計하여 이를 人口動態年報에 收錄 公表하고 있으나 아직도 當年신고율이 낮아(최근 80년대 후반에는 出生과 死亡은 95%水準, 婚姻과 離婚은 70%水準), 完全한 人口動態 統計作成을 위해서는 國民意識에 대한 부단한 啓導(統計認識의 向上)와 함께 관련법률과 制度의 改善 등을 계속하고 있다.

〈人口動態率의 推移〉

終戰後 “베이비붐(Baby-Boom) 現象”으로 급등하였던 出生率은, 1960年代에는 가임인구의 增加로 더욱 높아져 인구 1,000名當 出生兒數인 粗出生率은 1959年 27.9에서 1966년에는 31.9로 높아졌다.

60年代에 들어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해온 人口抑制政策의 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粗出生率은 '60年代 후반을 고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60年代初 42.6에서 1970年代에 25.0수준 그리고 1980년과 1990년에는 15.0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減少한 것이다.

사망의 경우, 終戰後 12.6水準이었던 粗死亡率(인구 1,000名當 死亡者數)은 60年代初에 10.3水準으로 감소를 보인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62년 이래의 經濟成長 및 國民生活水準의 向上, 의료 및 보건수준의 발달

I. 人口統計

韓國人 人口動態率 推移

(人口1,000名當)

年 度	出 生 率	死 亡 率	婚 姻 率 ²⁾	離 婚 率 ²⁾
1960	48.1 ¹⁾	12.1 ¹⁾		
1961	} 42.6	} 10.3		
1962				
1963				
1964				
1965				
1966	31.9 ³⁾	8.6 ³⁾		
1967	31.1 ³⁾	8.4 ³⁾		
1968	31.1 ³⁾	8.0 ³⁾		
1969	30.3 ³⁾	8.4 ³⁾		
1970	29.9 ¹⁾	9.5 ¹⁾		
1971	29.3 ³⁾	10.5 ³⁾		
1972	28.2 ³⁾	10.5 ³⁾		
1973	27.1 ³⁾	10.0 ³⁾		
1974	25.3 ³⁾	8.5 ³⁾		
1975	24.7 ²⁾	7.6 ²⁾	8.0	0.47
1976	24.0 ³⁾	7.0 ³⁾		
1977	23.6 ³⁾	7.1 ³⁾		
1978	23.4 ³⁾	7.1 ³⁾		
1979	23.5 ³⁾	6.9 ³⁾		
1980	23.4 ¹⁾	6.7 ¹⁾	10.6	0.62
1981	23.1 ²⁾	6.4 ²⁾	9.5	0.62
1982	22.2 ²⁾	6.5 ²⁾	9.3	0.70
1983	19.8 ²⁾	6.8 ²⁾	9.3	0.75
1984	17.1 ²⁾	6.2 ²⁾	9.0	0.91
1985	16.4 ¹⁾	6.2 ¹⁾	9.4	0.97
1986	15.8 ²⁾	6.1 ²⁾	9.3 ⁴⁾	1.01 ⁴⁾
1987	15.5 ²⁾	6.1 ²⁾	9.2 ⁴⁾	1.07 ⁴⁾
1988	15.8 ²⁾	5.9 ²⁾	9.3 ⁴⁾	1.06 ⁴⁾
1989	15.7	5.8	9.5 ⁴⁾	1.08 ⁴⁾
1990	15.6 ¹⁾	5.8 ¹⁾	9.5 ⁴⁾	1.13 ⁴⁾

資料：1) 장래인구추계(1990~2021), 統計廳, 1991

2) 人口動態結果 및 將來人口推計 調査統計局, 1989

3) 韓國經濟指標, 統計廳, 1990

4) 婚姻・離婚統計 作成結果, 統計廳, 1991

에 起因한다. 특히, 1977년부터 실시한 의료보험제도의 全國的인 擴大와 의료보건 수준의 向上은 韓國人口의 粗死亡率을 1980년의 7.4에서 80년대 후반의 6.0, 및 1990년의 5.8 水準으로까지 낮추고 있다.

이리하여 1960年代 초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인구변동양상(높은 水準의 出生과 死亡)을 보이던 인구구조는 불과 3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수준(낮은 수준의 出生과 死亡)에 接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人口自然增加率도 1960年 3.0%에서 1990년 0.98%로, 人口成長率은 3.0%에서 0.93%로 각기 급격히 낮아졌다.

死亡率의 저하추세는 國民의 平均壽命을 증가시켜서 1960年 52.4세에서 1989년의 70.8세(남자 : 66.9세, 여자 : 75.0세)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출산을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婚姻은 1960년이래 經濟的·社會的 與件이 호전되고 안정화함에 따라 매년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 1960년 이전에 10만쌍 안팎이었던 婚姻件數는 1970년에는 24만쌍, 1980년에는 36만쌍, 그리고 1990년에는 40만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粗婚姻率(人口 1,000名當 婚姻雙數)도 1970년의 7.3水準에서 1990년에는 9.5水準으로 높아졌다.

離婚역시 經濟·社會의 先進化에 따른 의식구조의 變化를 反映해서 1970년에 12千件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24千件 水準, 그리고 1990년에는 34千件이라는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離婚率도(人口 1,000名當 離婚數) 1970년의 0.4水準에서 1980년의 0.6水準, 그리고 1987年 이후부터는 1.0水準을 上廻하고 있다.

(2) 生命表

死亡研究에 관한 代表的 技法中の 하나가 生命表인데 이는 同時出生人口의 生存關係를 일련의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死亡에 관한 全般的인 양상을 제시해주는 同時에 人口集團의 의료보건상태, 人口推計, 그리고 人口와 관련된 社會·經濟的인 政策을 立案하는데 基礎資料로서 널리 利用된다.

우리나라의 生命表作成은 水島治夫의 1920~30年 生命表를 시작으로하여 일련의 生命表들이 作成되었으며, 이때에는 주로 人口動態申告資料를 利用하였다.

I. 人口統計

그러나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死亡申告의 지연과 누락정도가 심각해져 이를 利用한 生命表의 作成은 거의 不可能하고 그 후 1960年代에 총 인구조사 자료를 利用한 間接 추정법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55년 以後의 총조사 자료를 利用하여 여러가지 基本的인 死亡率의 推定이나 生命表를 작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60年代에 作成한 生命表로는 고갑석·김일현을 비롯하여 그 뒤에도 1970년에 들어서서는 더욱 活潑해져 1971年 調査統計局, 1973年 이동우, 권태환 및 1975년 권옥현 이용환 등에 의해 作成되었다.

1970년대말 調査統計局은 전술한 바와 같이 死亡申告資料의 不完全성이 問題를 극복하기 위한 方法으로 1978~79年 2年間 중복조사(Dural Record Survey)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얻어진 資料로 韓國人의 生命表를 作成한 바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韓國男子의 死亡類型이 標準生命表의 類型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골드만(Goldman, 1980)과 코울(Coale, 1980)에 의해서 재차 確認되었다.

한편, 인구동태신고자료의 질이 점차 改善됨에 따라 이들 자료를 利用한 生命表 作成도 活潑하게 이루어졌다. 콜등(Coale et. al, 1980)은 1971~1975년간의 死亡申告資料를 利用하여 生命表分析을 한 結果를 콜-데미니(Coale-Demmey)의 서구모형 생명표의 死亡類型과 比較해 본바, 우리나라의 死亡類型은 여자의 것은 일치정도가 높으나 남자의 것은 40세가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사망수준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여, 오히려 UN(1982)에 의해 作成된 다섯모형중 극동유형을 닮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한국인의 死亡特徵은 最近에 作成한 生命表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80年代에 들어서서 國家政策의 目標가 福祉社會具現으로 옮겨지고 사회전반에 福祉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福祉와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基礎統計로서는 물론이고, 人口의 '質'을 評價할 수 있는 尺度로서 좀더 정확하고 細密한 生命表의 作成이 要求되었다. 이에따라 1990년에 調査統計局에서 人口動態申告資料를 利用하여 1983년, 1985년, 1987년 및 1989년 生命表를 作成하여 1978~79 生命表와 함께 死亡指標의 시계열적 비교까지 可能하게 하였다.

지금까지의 各種 生命表에 의하면 韓國人의 平均壽命은 1955~60년에 男子의

경우 51.1세, 女子의 경우 53.7세로 男女平均 52.6歲가 되어 男女 공히 50歲를 넘었다. 1961년 생명표(김일현)에서는 平均壽命이 57.5歲로(男子 54.5歲, 女子 60.6歲) 되고 있다.

우리나라 平均壽命은 近代化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動과, 國民意識水準의 變化, 醫療·保健水準의 發展과 國民所得의 增加等에 따라 계속 높아져 1978~79년에는 65.9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도 62.7歲가 되어 비로소 남녀 모두 平均壽命이 60歲를 넘고 있다. 그러나 여자와의 平均壽命 差異는 여전히 6~7歲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3년 生命表에서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最初로 70세를 넘어섰고(72.2歲), 1989년 生命表에서는 우리나라 男女全體의 평균수명이 70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生命表에 나타난 주요특징중 하나가 우리나라 男子平均壽命은 여자의 平均壽命에 비해 낮고, 그 격차도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오히려 더욱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추이(1960~1989)

年 度	計	男 子	女 子
1955~60	52.6	51.1	53.7
1961	57.5	54.5	60.6
1966	61.9	59.7	64.1
1970	63.2	59.8	66.7
1978~79	65.9	62.7	69.1
1983	67.9	63.8	72.2
1985	69.0	64.9	73.3
1987	69.9	66.0	74.1
1989	70.8	66.9	75.0

(3) 死亡原因統計

最近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全國民 醫療保障體制로 나아가는 轉換期를 맞고 있다. 또한 社會的으로도 近代化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化, 國民意識水準向上, 醫學·醫療施設, 의료기술의 發達과 國民所得의 增加 等으로 出生率이 持續적으로 저하

I. 人口統計

10大 死亡原因 推移

順位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8	1989
1	고 혈 압 성 질환(10.5)	뇌혈관 질 환(14.2)	뇌혈관 질 환(15.7)	뇌혈관 질 환(15.5)	뇌혈관 질 환(13.5)	뇌혈관 질 환(13.7)	악성신생물 (18.2)	악성신생물 (19.4)
2	뇌혈관 질 환(7.3)	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 질환(8.2)	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 질환(7.2)	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 질환(7.1)	고혈압성질 환(8.5)	고혈압성질 환(8.4)	뇌혈관 질 환(13.4)	뇌혈관 질 환(13.6)
3	기타 불의 의 사고 (7.3)	기타 불의 의 사고 (7.6)	기타 불의 의 사고 (6.5)	기타 불의 의 사고 (6.5)	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 질환(8.3)	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 질환(8.0)	불의의 사 고(11.4)	불의의 사 고(11.9)
4	노쇠(5.4)	고 혈 압 성 질환(5.8)	노쇠(5.1)	교통사고 (5.6)	위의 악성 신생물 (5.8)	위의 악성 신생물 (5.9)	심장병 (8.6)	심장병 (8.4)
5	위의 악성 신생물 (4.5)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4.5)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5.0)	노쇠(5.4)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5.0)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5.2)	고 혈 압 성 질환(7.3)	고 혈 압 성 질환(6.9)
6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4.4)	위의 악성 신생물 (4.5)	위의 악성 신생물 (4.9)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5.3)	간의 악성 신생물 (3.3)	간의 악성 신생물 (3.7)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5.2)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5.5)
7	교통사고 (4.1)	노쇠(4.5)	교통사고 (4.4)	위의 악성 신생물 (4.7)	교통사고 (3.2)	교통사고 (3.5)	결핵(2.6)	결핵(2.3)
8	결핵(3.8)	결핵(3.8)	고 혈 압 성 질환(4.2)	고 혈 압 성 질환(4.0)	기타 불의 의 사고 (3.2)	기타 불의 의 사고 (3.2)	기관지 및 폐렴(1.9)	폐렴 및 기 관지염 (1.9)
9	자살 및 자 상(3.7)	결핵(3.8)	간의 악성 신생물 (3.5)	결핵(3.1)	결핵(3.1)	결핵(3.1)	자살(1.6)	당뇨병 (1.7)
10	만성기관지 염, 폐기종 및 천식 (1.8)	간의 악성 신생물 (3.4)	간의 악성 신생물 (3.6)	결핵(3.5)	만성기관지 염, 폐기종 및 천식 (2.0)	만성기관지 염, 폐기종 및 천식 (1.4)	당뇨병 (1.4)	자살(1.6)

資料：死亡原因統計年報, 1981~1989, 統計廳

하고 있는 反面, 平均壽命은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死亡原因統計는 이러한 시대적 變化에 따른 人口·保健政策의 轉換에 重要な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死亡原因統計는 人口動態(死亡)申告의 누락, 부정확한 死亡原因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作成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60年代 以後 1966年과 1979년에 各各 死因統計를 作成하긴 하였으나, 資料의 누락 또는 미비로 信賴性을 잃어 별로 利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死亡原因統計의 부실은 死亡分類技術의 未熟과 一般國民의 無關心, 死因診斷의 不正確性, 國際死因分類(ICD)의 改善(9次 改正)에 따른 이해부족등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1958~1967년 10년간의 死亡申告率을 보더라도 全國적으로 30~70%에 불과하였고, 死因調査의 大部分이 사후면접조사와 임상진단에만 依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死亡原因의 精確한 分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死亡原因統計가 국민보건 및 醫療分野의 政策樹立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됨에 따라, 그 수요가 날로 急增하였고 死亡에 관한 동태신고자료의 質도 점차 改善됨을 계기로, 1982년 調査統計局에서는 1980년도 死亡原因統計資料를 收錄한 死亡原因統計年報를 發刊하였고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作成하여 오고 있다. 全般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 死亡原因構造를 대체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死因構造를 보면, 1960년대까지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 감염성 질환 등의 順이었으나 1960年代 이후에는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順으로 바뀌었다.

1980年代에 들어 1980年과 1981년에는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기타 불의의 사고, 노쇠, 위의 악성신생물이 5대 死因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교통사고, 결핵, 자살 및 자상 등이 10大死因에 포함되고 있다.

1982년에는 뇌혈관질환에 의한 死亡이 전체 死亡의 14.2%로 가장 많고 폐순환 질환 및 기타 심질환에 의한 死亡이 8.2%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불의에 의한 死亡은 前年과 마찬가지로 3位(7.6%)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 고혈압성 질환은 前年度 1位死因에서 4位死因으로 그 重要性이 다소 낮게 나타나 사인구조의

I. 人口統計

變化를 보였다.

1982년 이후에는 매년 韓國人의 死亡原因構造는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폐순환 및 기타 심질환, 위의 악성신생물,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간의 악성신생물 등 성인병 등에 의한 死亡이 전체 死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10位死因中에 包含되고 있는 死因들로는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결핵 등이었다. 특히, 17位死因 分類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死因構造는 그간의 變化過程을 통하여 순환기계 질환, 악성신생물 損傷 및 중독의 3位死因이 전체 死因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만성 및 非傳染性疾患에 의한 死因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이에 대한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人口推計

人口推計는 死亡, 出生, 移民 등의 水準과 그에 따른 影響을 측정하여 이루어진 特定한 假定을 根據로해서 장래 인구의 크기 및 構造를 관찰·예측하는 것이다.

韓國에서 최초의 人口推計는 1957年の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인구분과위원회에서 아시아지역 각국 人口推計의 一部로서 1955년부터 1980년까지 25년간의 南·北 韓人口를 推計한 것이다. 이때 使用한 資料는 1955年の 標本抽出集計에 의한 資料로서 비교적 높은 死亡力水準을 假定한 관계로 推計値는 1960년 人口총조사結果와 비교하여 볼 때 약 80만의 과소추계양상을 보였다.

1960年代에 1955年度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의 全數結果를 利用하여 1975년까지 20年間의 人口를 推計한 바 있는데(金煉) 이전의 유엔 人口推計에 비하여 보면 死亡率의 급속한 저하와 낮은 出生率의 가정 등을 도입한 것이 特徵이다. 1955年の 年齡階級別 人口構造가 1960年과 다소 차이가 있어, 同推計結果는 1960年 人口총조사의 결과에 비해 약 60만이 과소추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점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약 40만으로 낮아지므로 유엔人口推計보다는 實數에 접근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에는 1960~80年間을 推計한 2편의 研究結果 나왔는데 하나는 1960년 국제조사의 結果를 基礎人口로 하고, 韓國의 人口動態狀況을 參考로 하여 수정한

出生性率을 利用함과 아울러 1930년 이래의 動態申告狀況을 검토하여 作成한 1960년 연령계급별 死亡率과 出生率 등을 기초로 한 組成法(Component Method)을 使用해서 1960~1980년 20년간의 한국장래인구를 推計한 것이며(최인현) 또 하나는 1960년 國세조사 結果의 基本人口와 年齡別人口構造 및 1955년과 1960년 人口총조사간에서 얻어진 연령별 生存率을 死亡率로 利用하여 推計한 것이다.(임태빈)

이들 推計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는 1970年 推計人口가 1970年 總조사人口에 비해 약 146만명이, 그리고 後者는 약 142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以後에도 1964년(Shyrock), 1966年(調査統計局) 및 1969年(Smith)에도 推計資料가 出現하였는데 上述한 각종 추계중에서 出生率은 UN推計(1957)에서 가장 높아 1960~65년에는 40.4%, 1970~75년에는 39.7%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yrock과 Smith(1969) 推計에서는 빠른 속도로 감소(1970~75年間 30% 水準)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死亡率도 이와 비슷한 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推計에 使用한 假定들이 좀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1970~80年代도 韓國의 將來人口推計는 活潑하게 이루어졌다. ①1970年 人口總조사結果를 利用한 1960~2040年間의 人口推計(김대영), ②1978년에 1975年 人口總조사結果를 利用한 1970~2075年間의 人口推計(홍사원), 그리고 ③1981年 調査統計局에서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中 人力部門計劃으로서 1980年 人口總조사結果를 利用한 1976~2050年間의 人口推計와 ④1986년 第6次 5個年計劃 人口부문계획으로서 1985年 人口總조사 結果를 利用한 1985~2023년까지의 人口推計 및 ⑤1988년에 調査統計局에서 계속된 出生率低下現象을 반영하여 수정한 動態資料와, 1985년 總조사人口를 利用한 1985~2023년까지의 人口再推計 등이 그것이다.

1970年 이후의 여러 推計를 비교하면 表와 같이 推計人口와 실제 人口數는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人口動態申告資料의 改善의 結果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I. 人口統計

主要人口推計의 人口動態率

(1) 出生率

	1960-65	1965-70	1970-65	1975-80	1980-85	1985-90	1990-1995	1995-2000
UN (1957)	40.4	39.7	38.7					
김 연 (1962)	36.6	33.6	30.2					
최 인 현 (1962)	39.3	36.2	32.8	31.0				
Shryock (1964)	—	—	31.1	29.5	28.2	26.1	23.6	21.2
調査統計局(1966)	—	—	31.8	30.5	30.6	—	—	—
Smith (1969)	—	—	—	27.0	29.0	28.0	25.0	23.0
김 대 영 (1974)	—	—	27.5	27.5	28.1	27.0	23.0	—
5 차 계획 (1982)	—	—	—	—	23.3	22.6	20.2	16.9
6 차 계획 (1986)	—	—	—	—	19.7	18.0	16.0	14.7
신인구추계(1988)	—	—	—	—	—	16.4	14.4	13.3
統計廳 (1990)	—	—	—	—	—	—	15.6	15.2

(2) 死亡率

	1960-65	1965-70	1970-65	1975-80	1980-85	1985-90	1990-1995	1995-2000
UN (1957)	14.4	13.0	11.5					
김 연 (1962)	10.2	8.5	7.3	7.0				
최 인 현 (1962)	10.8	9.7	7.9	5.9				
Shryock (1964)	—	—	7.3	7.4	4.9	4.6	4.9	5.0
調査統計局(1966)	—	—	8.5	10.0	6.4	—	—	—
Smith (1969)	—	—	—	—	10.0	10.0	9.0	9.0
김 대 영 (1974)	—	—	7.8	7.2	6.7	6.4	6.2	—
5 차 계획 (1982)	—	—	—	—	6.7	6.1	5.6	6.0
6 차 계획 (1986)	—	—	—	—	6.2	5.8	5.8	6.2
신인구추계(1988)	—	—	—	—	—	6.4	5.4	5.3
統計廳 (1990)	—	—	—	—	—	—	5.9	6.1

(3) 自然增加率

	1960-65	1965-70	1970-65	1975-80	1980-85	1985-90	1990-1995	1995-2000
UN (1957)	2.6	2.8	2.7					
김 연 (1962)	2.6	2.5	2.3					
최 인 현 (1962)	2.9	2.7	2.5	2.4				
Shryock (1964)	—	—	2.4	2.4	2.3	2.2	1.9	1.6

6. 人口推計

	1960-65	1965-70	1970-65	1975-80	1980-85	1985-90	1990-1995	1995-2000
調査統計局(1966)	—	—	2.3	2.3	2.4			
Smith (1969)	—	—	—	1.7	1.9	1.8	1.6	1.4
김 대 영 (1974)	—	—	2.0	2.0	2.1	2.1	1.7	
5 차 계획 (1982)	—	—	—	—	1.7	1.7	1.5	1.1
6 차 계획 (1986)	—	—	—	—	1.3	1.1	0.9	0.8
신인구추계(1988)	—	—	—	—	—	1.0	0.9	0.8
統計廳 (1990)	—	—	—	—	—	—	0.9	0.8

註：1)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出生兒數
 2) 死亡率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
 3) 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10

主要人口推計 結果

(單位：千名)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2020
UN (1957)	—	—	31559	36157	41464						
김 연(1962)	24362	27801	31525	35349	41930						
최 인 현 (1962, EPB)	25033	28818	32928	37219	42727						
Shryock (1964, EPB)	—	—	32758	37348	40077	49088	56287	64179	72718		
調査統計局 (1966, EPB)	—	—	31892	35704	40951	45426					
Smith (1969, 미국인구협회)	—	—	—	—	39409	46347	52515	59243	66161		
김대영 (1974, 한국개발연구원)	—	—	—	—	38123	43801	49498	—	57272		
5차 계획 (1982, EPB)	—	—	—	—	—	41209	44261	—	50066		
6차 계획 (1986, EPB)	—	—	—	—	—	41056	43601	45962	48017		
신인구추계 (1988, EPB)						40806	42793	44870	46827	50025	50193
統計廳 (1990, NSO)							42869	44851	46789	49683	50586

I. 人口統計

1991년에는 統計廳에서 1990年 人口총조사 結果의 일부발표로 새로이 1990~2021년까지의 推計作業을 실시하였다. 기초인구는 1990 人口總調査의 2% 표본집계 結果를 使用하고 出生에 대하여는 合計出産率이 1.6 水準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死亡力으로는 平均수명이 男子 75세, 女子 80세 水準까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移民은 每年 20,000名 정도로 가정하였다. 同推計에 따르면 우리나라 人口(연앙人口)는 1990年 42,869千名에서 2021년에는 최대人口인 50,586千名에 이르고 이후부터는 감소하게 되는 負의 人口成長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 勞 動 統 計

여 백

Ⅱ. 勞動統計

1. 日帝時代의 勞動統計

가. 日帝勞動力調查의 特徵

日帝時代의 勞動力關係 調査는 人口統計調査에서 經濟活動部門과 관련되는 調査資料가 있었으나 특히 「報告例」規程에 의하여 各 部門別로 雇傭人動態와 勞動力活用實態를 報告케 하였었다. 가령 內務局 所管의 人口, 土木, 交通이나 農產·殖産局의 農林水産業, 商工鑛業 등 分野는 물론 遞信, 鐵道等 事業場의 從業員 관계자료가 行政報告에 의한 勞動力調査資料로 理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勞動力事情의 一般的 現況에 관한 部門別 斷片的 資料는 될 수 있어도 勞動力의 異動, 勤勞條件이나 勞動時間 및 賃金體系 등에 관한 統一된 單一調査統計는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20·30年代에 들어오면서 外國에서 國民生活水準과 관련하여 勤勞者의 勞動再生産力 및 勤勞條件 등이 勞動問題로서 社會政策的 關心이 高揚되는 趨勢에 따라 日本에서도 失業調査와 함께 單一體系에 의한 勞動力調査가 시도되었다.

그런데 戰時體制下의 軍需人力動員이란 時代的 背景에 의해서 1940年代에는 性格變質을 內包하고 있었던 바 비록 單一體系에 의한 調査라 할지라도 勞動力調査의 基本趣旨인 「勞動問題」로서가 아니라 軍國日帝의 「勞力動員」중심의 主題로 歪曲되어 導入實行하였으며 그것은 종전 「報告例」統計를 延長한 資源調査(1929) 國民職業能力調査(1939)등과 함께 國家總動員法 體制下의 勞動力調査라는 特徵을 지니고 出發한 것이다.

外國의 경우에도 勞動統計는 늦게 出發한 分野로서 19세기 後半에 勞働者의 賃金 및 勞働條件에 대한 관심이 高潮되면서 美國의 聯邦政府機構內에 勞働部(1888

II. 勞動統計

年: 1884년에는 勞動統計局)가 생긴 것을 효시로 20세기 초에 歐美諸國 대부분이 이에 따른 中央政府機構(英國의 勞動部는 1916年)와 勞動統計組織을 갖추게 된 것이다.

日本도 약간 뒤늦게 1922年 法律 第52號로 「統計資料 實地調査에 관한 法律」을 公布하고 그 實施機關으로서 內閣統計局에 勞動課를 新設하였다. 이 法律實行 이후 1924年の 第1會調査를 시발로 1936年까지 3年 間隔으로 5회를 실시하였으나 調査範圍의 限定(工場, 鑛山 후에 交通業追加), 調査項目 및 分類의 一貫性缺如 등으로 效用性面에서 낮게 評價되고 있다. 그러다가 5년만인 1941年에 商店, 事務室도 포함해서 改編實施하였다.

勞力所在調査 資料¹⁾ (1937.10.1 현재)

	家 口 數	勞動堪當可能者 ³⁾
勞 動 可 能 者 ²⁾	1,664,501	2,483,697
1. 勞 動 主 業 者	464,253	642,283
A. 日 傭 勞 動	383,485	536,949
• 農 業 從 事 者	237,749	348,094
• 土 木 建 築 從 事 者	44,424	56,168
• 其 他 日 傭 勞 動 者	101,312	132,687
B. 其 他 勞 動 者	80,768	105,334
2. 其 他 有 業 者	1,200,248	1,841,414
• 農 林 業	1,002,992	1,565,571
• 商 工 業	93,593	124,956
• 其 他 產 業	82,485	122,496
• 無 職	21,178	28,391

註: 1) 土木建築關係 勞動力配給調整上 必要로 調査한 것.

一定樣式調査票(「報告例」)를 府邑面 職員이 調査한 것.

2) 勞動可能者: 18~50歲 男子로 보통노동이 가능한 자, 다만 工場, 鑛山, 炭鑛等 從事者는 除外

3) 勞動堪當可能者(堪動者): 勞動可能者중 動員可能者

資料: 朝鮮總督府 內務局 1938

나.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

(1) 調査體系

日帝는 太平洋戰爭期間 중에 勞務動員 賃金規制 및 기타 計劃의 樹立과 運用, 즉 勞務動員에 必要한 勞動力 現況資料를 蒐集함으로 이른바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를 實施하였다.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는 前述한 1922年 法律 第52號 「統計資料實地調査에 관한 法律」을 1941年 勅令 第378號(「1922年 法律 第52號를 朝鮮·臺灣 및 樺太에 施行하는 件」)와 同 第380號 「勞動技術統計調査令」에 따라 韓國에서도 실시키로 하고 同 實行規則(1941. 5.28 總督府令 第147號)에 의하여 每年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年次調査로 出發하였다.

이 調査의 法的根據와 그 實行規程들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i) 「統計資料實地調査에 관한 法律」(1922年4月19日 法律52號)
- ii) 1922年 法律52號를 朝鮮·臺灣 및 樺太에 施行하는 件 (1941年4月2日 勅令 第378號)
- iii) 「勞動技術統計調査令」(1941年4月2日 勅令 380號)
- iv)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施行規則」(1941年5月28日 朝鮮總督府 府令 第147號)
- v)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施行細則」(1941年5月28日 朝鮮總督府 訓令 第63號)
- vi) 「勞動技術統計調査令 第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學歷과 資格에 관한 試驗 및 檢定指定」(1941年5月28日 朝鮮總督府 告示 第760號)
- vii)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規則別表 第1號樣式中 指定製品別從業勞動者數의 指定製品」(1941年5月28日 朝鮮總督府 告示 第761號)

上記 諸法令 規程에 따라 韓國에서 실시한 勞動技術統計調査의 體系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2年 法律 第52號에 基礎하여 每年 6月10日 現在로 勞動 및 技術統計에 관한 實地調査를 實施한다. 이에 의하여 1941, 42 및 43年分을 調査하였다.

둘째, 調査는 官營에 屬하지않는 事業體의 事業主, 勞務者 및 技術者를 對象으로 調査하는 것이다. 즉 아래의 各號중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이다.

- ① 5人以上の 勞務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5人以上の 勞務者를 使用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工業事業體(土木建築事業體를 除外) 또는 鑛業事業體의 事業

II. 勞動統計

主

- ② 延人員300人 以上の 勞動者를 使用하는 土木建築事業體의 事業主
- ③ 每年 6月10日現在 5人以上的 勞動者를 使用하는 運輸事業體의 事業主
- ④ 6月10日現在 勞動者以外的 勞務者 10人以上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體로서 工業事業體, 鑛業事業體, 運輸事業體, 農業事業體, 水產業體와 船舶, 娛樂興行業體 또는 接客에 관한 事業體가 아닌 事業所·店舖의 事業主
- ⑤ 6月10日現在 30人以上的 勞動者를 雇傭하는 事業體의 勞動者
- ⑥ 勞動者以外的 勞務者 10人以上을 雇傭하는 事業體의 勞務者
- ⑦ 25人以上的 勞務者를 雇傭하고 잇는 事業體의 技術者

모든 調查對象者는 이 調查에 應하고 申告할 義務가 있는 바 여기서 事業主 勞動者 技術者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事業主〉

事業體를 事實上 管理하는 者이다.

〈勞務者〉

他人에게 被傭되어 勞動에 從事하는 者(주로 家事에 從事하는 者는 除外)

〈勞動者〉

勞務者중 使換, 給仕, 警備 및 寫眞工, 印刷工, 電話交換, 物品販賣, 作業現場以外의 運搬配達에 관한 勞動, 其他 이와 類似한 勞動에 從事하는 者 以外의 者이다.

〈技術者〉

事業體에서 現在 技術에 從事하는 者(現技術者) 過去 技術에 從事한 일이 있는 者(元技術者)나 內閣總理大臣이 指定한 學歷을 保有한 者 및 內閣總理大臣이 指定한 自格에 관한 試驗이나 檢定에 合格한 現技術者 또는 元技術者가 아닌 者(技術能力者)이다.

셋째, 調查機關은 總督官房 國稅調查課內에 勞動係를 두어 實務를 執行케하고 지방에는 道와 府郡島 및 邑面에 指導員을 두어 調查員과 副調查員(勞務者가 50人以上일인 사업장에 대한 追加調查員)이 實查를 擔當케 한다. 指導員, 調查員 副調查員은 名譽職으로서 道知事 추천으로 總督이 任命한다.

넷째, 調查 및 集計方法으로서는 그 무렵의 國勢調查와 마찬가지로 應答者 스스

로가 記入하는 自計主義를 채택하되 調査員은 調査開始 1個月前부터 準備調査를 하여 事業體名, 所在地 勞務者·技術者數 등을 事前調査하고 이에 의하여 準備調査簿와 對照한 調査對象 一連番號와 業種, 業體名 등을 기입한 조사표에 조사대상자가 記入토록 하였다.

朝鮮勞動技術調査事務進行 一覽表

	調査員 및 副調査員	復 · 邑 · 面	郡	島	道
指導員, 調査員, 副調査員의 任命					每年5月25日까지 任命하고 곧장 本部에 報告
勞務者 및 技術者 調査의 範圍指定	每年 6月5日까지 調査員은 副調査員의 擔當 範圍를 指定				
準備調査		每年 5月10日 現在로 5月20日까지			
調査票用紙 其他 印刷物의 交付	事業票는 每年 6月9日까지 事業主에 交付	1部를 豫備保存하고 其他는 每年 6月5日까지 調査員에 交付	道로부터 交付받은 即時 1部를 豫備를 위하여 保存하고 其他는 即時로 邑面에 交付		每年 4月下旬까지 本部로부터 受領하여 1部를 豫備 保存하고 其他는 即時로 府郡島에 交付
實 查	每年 6月10日 現在로 6月15日까지 完了				
調査票의 檢査	每年 6月16일부터 府邑面에 提出할 때까지 檢査	6月 21日까지 道郡島에 提出할 때까지 檢査	邑面에서 受領하여 道에 提出할 때까지 檢査		府郡島에서 受領하여 本部에 提出할 때까지 檢査
調査票의 提出	每月 6月20日까지 府邑面에 提出	道知事, 郡府, 島司가 定한 期間까지 要計票 等과 같이 道郡島에 提出	道知事が 定한 期限까지 要計票 等과 같이 道에 提出		各要計票 等과 같이 每年 7月말까지 本部에 提出

調査票記入이 끝나면 조사표류를 府·郡·島와 道를 經유하여 總督부에서 檢受하

II. 勞動統計

여 集計하는 이른바 中央集查方法을 택함으로써 地方의 中間集計나 조사자료의 無斷利用을 嚴禁시켰다. 中央에서 集計할 때 一部(事業票, 技術票)는 手分類로 하고 勞務票는 機械分類 集計하였다. 集計結果는 調査한 다음해 3月末까지 製表作業을 끝내었다고 한다.

다섯째, 이 調査의 範圍는 工業事業體, 鑛業事業體와 運輸事業體 및 事務所·商店(販賣·保管業과 農水鑛工 金融機關의 會社·事務所등)으로서 工業事業體에는 工場과 가스·電氣·水道事業, 船舶解體業 및 土木建築業이 包含되며 運輸業에는 私鐵과 旅客·貨物自動車 및 航空運輸業도 包含한다.

다만 여기서는 農林水産活動을 하는 勞動力人口가 包含되어 있지 않은 바 이들 부문까지 包含시킬 때의 經費負擔이나 調査技術上的 問題도 있었겠지만 당장의 戰時資源 確保에 緊急을 요하는 近代産業에 限定시켰다는 것이 당시의 狀況論理였다.

여섯째, 調査時期로서는 매년 6月10日 現在를 調査基準日로 實施하도록 하였으나 1941년에 한하여서는 처음하는(準備事務등) 사정은 8月10日을 基準日로 하였다. 日本에서는 1936년까지 10月10日에 調査하였는 바 이는 國勢調査期日인 10月1日에 맞추어 冬期·夏期같은 實施調査에 不適合한 時期를 피하고 人口移動이 비교적 적은 時期를 택한 것이었으나 厚生部(省)의 賃金關係調査(5月)나 各級學校 卒業生의 就業決定時期(6月경)등을 勘案하여 1940년부터 6月10日을 調査基準日로 定하였다. 그것이 1941년에 朝鮮에서도 실시케 되자 6月10日이 그대로 基準日로 된 것이다.

(2) 調査事項

이 調査에서는 調査各體가 事業體, 勞務者 및 技術者의 3個로 나누어지는 관계로 調査票도 事業票, 勞務票 및 技術票의 三種으로 나누고 있다.

〈事業票〉

- ① 事業體의 所在地
- ② 事業體의 名稱
- ③ 事業體의 種類

- ④ 勞務者의 現在數
- ⑤ 1個年의 解雇 勞務者(日日勞務者 除外)數
- ⑥ 1個年의 勞務者賃金支拂總額

〈勞務票〉

- ① 姓名
- ② 男女別
- ③ 出生年月日
- ④ 卒業 또는 修業 國民學校所在地
- ⑤ 配偶者有無
- ⑥ 教育程度
- ⑦ 職名
- ⑧ 職歷
- ⑨ 賃金
- ⑩ 就業時間
- ⑪ 民籍(日本人, 朝鮮人)

〈技術票〉

- ① 姓名
- ② 男女別
- ③ 出生年月日
- ④ 現技術者, 元技術者 또는 技術能力者別
- ⑤ 職名
- ⑥ 教育

위 각 票의 調査事項·目的 등에 대하여 簡單하게 解說을 하여 둔다.

○ 事業票

• 單位의 標識

調査事項중 「事業體의 名稱」은 單位의 標識를 表示한 것으로서 이들 事業體의 重複과 漏落을 防止하는 한편 檢査(Editing)나 再檢査(Reediting)를 할 때의 便宜

II. 勞動統計

를 圖謀하기 위한 것이다. 즉 調查의 正確을 期하기 위한 것이다.

- 基礎的 調查事項

調查事項의 「事業體의 所在地」를 調查함으로써 勞動事情의 差異를 明確하게 하는 것이며 「事業의 種類」는 產業別로 본 勞動事情의 差異를 알게하며 「勞動者의 現在數」에 의하여 事業規模에 따른 勞動事情의 相違를 反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勞動條件에 관한 調查事項

調查事項中 「1個年の 解雇勞務者數」, 「1個月의 勞務者賃金支拂總額」은 모두 勞務者調查의 중심사항을 이루는 것으로 勞動條件에 관한 사항을 事業主가 스스로 申告한 것이다. 즉 각 產業別로 勞務者에 대한 勞動條件의 差異와 賃金 및 勞務者의 移動狀態를 觀察하는 資料가 된다.

- 勞務票

- 單位의 標識

名人의 「姓名」을 調查하는 것은 事業票에서와 같다.

- 勞務者의 屬性에 관한 調查事項

勞務票의 ①姓名부터 ⑥教育程度까지는 모두다 勞務者의 個別적 屬性에 관한 調查事項이다. 이들 調查事項과 勞動條件에 관한 調查事項을 關係시켜 각 勞務者의 屬性에 따른 勞動條件이 어떻게 相違한가를, 「男女別」과 「出生年月日」은 勞務者의 性別, 年齡別 構成과 勞動條件의 關係를 나타내고 「卒業 또는 修業國民學校所在地」는 勞動者의 社會的 移動關係를, 또 「教育程度」는 勞動賃金과 각각 상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다.

- 勞動條件에 관한 調查事項

職名, 經歷, 賃金 및 就業時間 등은 이 調查의 核心이다. 그중에 賃金은 단순히 각 勞務者가 一定한 勞動時間에 받는 賃金의 比率 즉 賃金率이 아니고 最近의 給料日에 現實的으로 受領한 賃金·手當·特勤手當 賞與金 등을 合算한 賃金所得이다. 또한 이것을 就業時間과 관련시켜서 1日 또는 時間當 賃金도 產出할 수 있다.

以上은 事業票와 상호 관련시켜서 그들 日帝의 戰時體制下에서 社會政策勞動施

設 産業經營上의 基本資料를 얻고자 한 것이다.

○ 技術票

- 單位의 標識

勞務票와 同一하다.

- 勞動者의 屬性에 관한 調査事項

「男女別」, 「出生의 年月日」은 모두 勞務票에서 말한 것과 同一하다. 「現技術者, 元技術能力者의 別」은 그 方法에 따라 「職名」과 關係시켜 技術者의 産業別分布의 狀態를 알 수가 있으며 「教育」에 의하여 각 産業別로 본 技術者의 教育種別 普及 狀態를 明白하게 한다.

以上の 調査事項이 지니는 意義와 目的은 現代的 雇傭統計, 事業體統計 및 産業統計가 지니는 意義와 目的은 現代的 雇傭統計, 事業體統計 및 産業統計가 지니는 意義와 大體로 同一하다고 하겠으나 一部는 近代化 産業構造에 있어서의 意義와는 많은 相異點을 內包하고 있다. 그 理由의 하나는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戰時下의 人力動員이란 見地에서 이 調査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다. 朝鮮勞動統計調査

日帝는 敗戰直前인 1945年 4月17日字로 總督府機構를 改編하면서 그중에 勞力動員관계 業務를 鑛工局으로 集結시키면서 鑛工局에 勤勞課와 動員課를 두었었다. 이때 勤勞課의 所管事項은 國民總動員, 技術者動員 및 勤勞者登錄 등 業務였었고 또 같은 鑛工局內의 動員課에서는 國家總動員計劃과 資源調査를 비롯하여 각종 軍需用 基礎物資統制에 관한 事項을 分掌하였었다.

이에 맞추어 官房企劃課에서 실시하던 勞動·技術統計調査도 勤勞統計調査로 바꾸어 日帝의 勤勞動員計劃을 統計面에서 支援하였다.

이 調査는 勤勞統計調査令에 근거를 두고 그 施行規則과 細則을 總督府의 府令과 告示로 規定하였던 바 年次調査와 月別調査로 區分하였으나 실제로는 年次調査 한 번만 하고 말았다.

II. 勞動統計

事業種類別 工場數와 그 所屬勞務者 및 技術者數

(總 事 業 體)

	事業體數	勞 務 者 數						
		總 數	男				總 數	內地人
			總 數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全 鮮	12,598	484,690人	401,564人	24,263人	364,606人	12,695人	83,126人	2,216人
官 營	111	29,455	24,601	1,221	22,656	724	4,854	166
民 營	12,487	455,235	376,963	23,042	341,950	11,971	78,272	2,050
京 畿 道	3,414	98,653	73,269	2,373	70,438	458	25,384	339
忠 清 北 道	193	5,420	4,298	76	4,214	8	1,122	4
忠 清 南 道	380	9,443	6,674	259	6,415	—	2,769	19
全 羅 北 道	514	11,760	8,586	162	8,433	1	3,164	8
全 羅 南 道	756	15,153	9,716	333	9,376	7	5,437	40
慶 尙 北 道	1,185	21,544	16,343	358	15,983	2	5,201	14
慶 尙 南 道	1,336	37,112	24,723	1,355	23,347	21	12,389	183
黃 海 道	541	18,392	16,435	1,132	14,974	329	1,957	70
平 安 南 道	1,157	49,785	42,366	1,371	40,681	314	7,419	74
平 安 北 道	763	37,961	35,389	744	27,107	7,438	2,672	28
江 原 道	527	21,762	19,843	568	19,250	25	1,919	24
咸 鏡 南 道	928	75,415	70,415	8,981	59,281	2,153	5,000	828
咸 鏡 北 道	793	52,835	48,996	5,330	42,451	1,215	3,839	419

資料：第1回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查結果(1941.8.10 현재) 朝鮮總督府.

調査範圍와 對象은 勞動技術統計調査 때와 마찬가지로 工業, 鑛業 및 交通事業體이며 事務所·商店을 「其他事業體」로 포괄시켰다. 이때 日傭勞務者와 臨時的 勞務者도 포함시켜 年次調査인 경우 종업원의 現在數와 함께 과거 1年間의 異動, 新規採用과 日傭·臨時勞務者의 延人員을 조사하였을 뿐아니라 從業員 중 3個月以上 勤務하지 않는 者도 조사하게 하였다. 調査體系(地方調査員)와 調査時期(6月10日~7月10日)도 勞動技術調査와 대개는 같았다. 다만 調査應答者는 事務所 單位로만 하고 勞務者, 技術者에게 물었던 個人調査票는 폐기하였다. 月次調査는 年次調査範圍의 非官營事業場 중 道知事가 指定하는 業種을 調査하게 하되 7月末日 調査부터 實施하려다가 敗戰으로 中止되었다. 이 調査令의 實施와 함께 朝鮮勞動技術統計調

의 總 數)

		現 技 術 者 數			元 技 術 者 數			技 術 能 力 者 數		
女		總 數	男	女	總 數	男	女	總 數	男	女
朝鮮人	外國人									
80,864人	46人	9,048人	9,027人	21人	193人	193人	-人	592人	591人	1人
4,688	-	856	851	5	9	9	-	71	70	1
76,176	46	8,192	8,176	16	184	-184	-	521	521	-
25,044	1	1,623	1,620	3	52	52	-	116	116	-
1,118	-	64	62	2	3	3	-	-	-	-
2,750	-	139	139	-	9	9	-	7	7	-
3,156	-	107	107	-	1	1	-	4	4	-
5,397	-	143	143	-	3	3	-	11	11	-
5,187	-	190	190	-	5	5	-	3	3	-
12,206	-	465	464	1	15	15	-	11	11	-
1,887	-	408	402	6	6	6	-	2	2	-
7,344	1	864	862	2	26	26	-	70	70	-
2,602	42	466	465	1	16	16	-	51	51	-
1,895	-	517	517	-	4	4	-	3	3	-
4,171	1	1,934	1,934	-	18	18	-	191	191	-
3,419	1	1,272	1,271	1	26	26	-	52	52	-

查의 關聯規則·規程은 폐지하였고 勞動統計調査는 光復後 美軍政廳에서도 그대로 인계하였었다.

라. 國民職業能力申告

이는 엄밀한 意味에서 統計調査는 아니나 日帝의 모든 行政力이 報告 또는 申告에 의한 統制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報告例」規程과 같은 效力을 가지는 이 申告規程도 統計業務 範疇로 보고 여기서 설명하여 두려고 한다.

國民職業能力 申告令은 國家總動員法 第21條 및 第31條에 의하여 16歲以上 50歲未滿의 男子 중, 「厚生部(省)에서 指定하는 職業從事者」(要申告者)로 하여금 그

II. 勞動統計

職業能力을 申告케 하고 또 檢査에 응하겠끔 規定한 勅令(第5號, 1939年1月6日 公布)이다. 여기서 말하는 職業이나 專攻學科 내지 技能者 養成課程에 관한 履歷은 厚生部大臣이 별도로 告示하게 하고 있다. 이때 朝鮮에 적용한 職種은 鑛山·化學·土木 및 氣象등의 技術者와 鑄物工·製鐵工·分析工같은 모두 134個이다.

申告事項은 姓名, 出生年月日, 本籍, 住所, 兵役, 學歷, 職業 및 그 經歷과 機能等級程度 給料額 配偶關係 및 總動員業務從事 希望 등이며 要申告者(調查對象者)은 이들 事項의 변경사실을 就業地(또는 居住地)의 管轄職業紹介所長에게 申告하거나(申告令 第4條), 地方長官 또는 職業紹介所長의 檢査를 받게(第8, 9條)하고 있다.

申告令의 厚生部, 地方廳 職業紹介所 役割을 朝鮮에서는 總督府, 道廳 및 府郡島가 하게 하였다.

이 申告令에 의하여 朝鮮總督府에서는 「國民職業能力申告令施行規則」(1939.5.15 府令 第77號)을 公布하고 職業能力申告者에게 申告手帖(手帳)을 交付하며 要申告者를 統制管理하였다.

또 이에 의한 實務指針인 「國民職業能力 登錄事務取扱規程」(1939.5.15 府訓令 第28號)에서 모든 申告事項은 「登錄카드」로 보관하되 府郡島에서는 每月末現在로 「就業場臺帳」을 만들어 整理하여 두고 登錄者現況을 別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道知事에게 報告하고 道知事는 이들 統計를 集計하여 그달 25일까지 總督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즉 이 國民職業能力申告도 登錄만으로 마치고 臺帳이나 統計集計는 하되 統計表 公表의 規定은 없는 것이다.

이 登錄資料를 얼마나 엄격히 관리하였는가는 事務取扱規程에서 표현한 바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즉 1) 登錄事務 또는 申告나 檢査에 임하는 직원은 檢察을 게을리하면 안되고(第2條), 2) 知得事項을 누설하지 말 것(第3條)은 물론 3) 登錄카드, 諸帳簿, 諸統計表는 비밀히 취급하고 엄격히 간수해야 한다(同 第3條)고 하였다. 또 4) 登錄카드의 記入要領도 住所, 職業등을 符號로 表示하고 5) 所定の 基準에 따라 이들 카드를 分類하여 格納(遮斷保管)하도록 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 國民職業申告·登錄制度는 1944년에 申告令(2月)과 施行規則(5月)이 改正되있는 바 이때는 그 모든 登錄書·申告書에 ㉞表示가 붙어 있으며 家口에 관한 包括的

인 사항과 특히 科學技術者와 技能者에게 특별히 별도 申告書를 작성하게 하였다. 당시 한국인 중에 몇 안되는 人材도 이렇게 調査해서 그들 戰爭需要에 充當하였던 것이다.

마. 失業調査

日帝下의 韓國에서 失業調査를 처음 실시한 것은 「報告例」規程에 의하여 1930年 5月 1日에 調査한 것이다. 이때는 失業者數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 府(市)와 특별히 指定된 面地域에서 실시하였다. 즉 從前 報告例에 의한 人口統計調査의 市部와 3천명 이상의 人口密接地域에 관한 調査에서 그 속에 失業에 관한 項目을 추가하여 調査시킨 것이다.

그뒤 1932年부터는 調査地域을 擴大해서 全國에 걸쳐서 실시하였다고 하나 그것도 1934年부터는 調査對象人員을 대폭 줄였었다.

調査方法으로서는 여전히 별도의 失業統計를 담당하는 關係이나 調査員을 두지 않고 府邑面 職員과 警察官으로 하여금 一定區域을 擔當시켜 實施調査하게 하였다. 이 경우에도 人口調査의 「戶口數 잡아내기」의 延長으로서 日帝 官吏와 警察의 恣意性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가령 地方官吏와 警官으로서도 調査區域內 全地域에서 實地調査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몇몇 任意의 一部地域만 調査한 것을 가지고 推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全國 勞動力人口의 全數調査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標本理論에 의한 어떤 誤差推定같은 것도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마구잡이식 失業統計調査이고 이것을 가지고 대체적인 畵像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만족하였었다.

調査時點도 5月1日(1930年), 11月15日(1931年), 6月末日(1932, 33年), 10月1日(1934年以後)같이 해마다 一定하지도 아니하였다.

調査對象으로 잡은 有業者나 失業者의 範圍는 俸給(給料)生活者와 勞動者(日傭과 其他勞動者를 區分)에 한정시켰으며 특히 學生을 포함한 無職者, 雇主(事業主), 自營業者, 高所得俸給者(당시 月收200圓以上) 및 外國人은 除外하였다. 女子는 애당초 조사에서 除外시켰다. 여기서 有業者란 就業者를 持稱했다.

II. 勞動統計

失業者의 定義는 就業한 能力과 意思를 지니고 있음에도 就業機會를 못가진 것으로 하고 老弱者, 傷病不具者등 就業에 不適한 者는 失業에 包含시키지 않고 任意 不就業者와 同盟罷業·工場閉鎖때문에 就業하고 있지 못한 者는 除外시키고 있다. 또 그전에 就業해 본 적이 없이 그때까지도 不就業狀態에 있는 者도 失業者로 看做치 않는다.

失業統計推移(1932~1937年間)

調 查 時 期	1932 (6月末)	1933 (6月末)	1934 (10月1日)	1935 (10月1日)	1936 (10月1日)	1937 (10月1日)
年 初 總 人 口	20,259,872	20,560,725	20,748,690	21,015,389	21,832,292	21,982,561
韓 國 人	19,751,635	20,037,273	20,205,591	20,449,796	21,248,864	21,373,572
日 本 人	508,237	523,452	543,099	565,593	583,428	608,989
調 查 人 員	1,419,971	1,367,443	1,079,689	1,100,357	1,129,650	1,170,476
韓 國 人	1,366,259	1,278,541	993,550	1,002,847	1,025,565	1,051,100
日 本 人	53,712	88,902	86,139	97,510	104,085	119,376
有 業 者	1,253,422	1,233,065	982,192	1,018,573	1,053,154	1,112,803
韓 國 人	1,202,747	1,146,858	898,631	923,633	950,866	994,660
日 本 人	50,675	86,207	83,561	94,940	102,288	118,143
失 業 者	166,549	134,478	97,497	81,784	76,496	57,673
韓 國 人	163,512	131,683	94,919	79,214	74,699	56,440
日 本 人	3,037	2,695	2,578	2,570	1,797	1,233
失 業 率 (%)	11.7	9.8	9.0	7.4	6.0	4.9
韓 國 人	12.2	10.3	9.6	7.9	7.3	5.4
日 本 人	3.6	3.0	3.0	2.6	1.7	1.0

註) 年初總人口는 前年末人口數임(中國人과 其他外國人은 除外).

失業率은 調査人員에 대한 百分率 임(%).

따라서 失業者調査는 俸給 및 賃金生活者 중에 調査當時에 上記 「失業狀態」에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日傭勞務者도 과거 1個月間에 절반(15日)이상을 「就業하였다고 認定」될 때는 失業者에서 除外시켰다. 이때 「失業狀態」라는 定義가 調査者(地方官吏와 警察官)의 主觀的 判斷에 依存하는 바가 많았고 특히 日傭勞務者로서 月 「보름」이상을 취업하였다고 「認定」하느냐 마느냐도 그들의 판단이 크게 作用하였다고 보아 당시의 失業率을 과소평가하는데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37年 民籍別 地域別 失業者分布

	合 計	給料生活者	日傭生活者	其他勞動者
韓 國 人	56,440(5.4)	8,122(5.1)	28,887(5.2)	19,431(5.8)
府	15,329(7.5)	3,588(6.9)	7,256(7.6)	4,485(8.1)
邑	3,778(3.8)	903(4.1)	1,647(3.2)	1,228(4.9)
面	37,333(5.0)	3,631(4.2)	19,984(4.9)	13,718(5.4)
日 本 人	1,233(1.0)	944(1.0)	166(1.2)	123(1.3)
府	1,023(1.7)	814(1.7)	177(2.0)	92(1.4)
邑	145(0.4)	87(0.4)	30(0.8)	28(1.8)
面	65(0.2)	43(0.3)	19(0.4)	3(0.2)

資料：失業調査 1937年分 朝鮮總督府

失業者 調査票 様式(主務：社會課, 報告期限 10月末日)

報告例 第327號		失 業 者 表								昭和 年十月一日現在 官署名			
府邑 및 郡島名	調査人員	給料生活者				日傭勞動者				其他勞動者			
		有業者	失業者	失業率	調査人員	有業者	失業者	失業率	調査人員	有業者	失業者	失業率	
內地人													
朝鮮人													
內地人													
總計 朝鮮人													
計													

資料：朝鮮總督府 1936年度 「報告例」別冊甲號

무엇보다 調査對象 人員數가 멋대로 늘었다 줄었다하고 있는 바 가령 1932년에 1,420천명을 조사하다가 1937년에 1,367천명으로 줄고 1934년에는 1백만명정도만 조사하고 있다. 이 기간중 총인구는 계속年間 20~80만명내외로 늘고 있었다. 따라서全體人口(韓國人과 日本人)에 대한 調査人口의 比率로는 1932년의 7.0%에서 1937년에는 5.1%로 조사인원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여 나아갔다. 즉 官員이 편한대로 조사했고 더우기 그들의 失業定義에 따라 失業統計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人員 그 자체를 대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II. 勞動統計

반면 日本人에 대한 失業統計調査는 1934년에 일시적으로 1천여명이 준때도 있었지만 1932년의 53천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1937년의 12만명이 될 때까지 5年間に 日人調査對象人員을 약 122%(즉 2.22倍)를 증가시켰다. 이 사이에 韓國人은 오히려 18%가 줄었다. 그 결과 韓國人의 失業者數는 그들의 定義에 따라 1932년의 163,512명에서 1937년의 56,440명에 불과하게 되어 1/3水準으로 준 것이 되었다.

그래도 韓國人의 失業率은 5.4%이다. 이 당시 日本人의 失業率은 1.0%로 나타나 있고 失業人員數는 1,233명이다. 말하자면 한국에 있던 日本人 失業者들이 공식적으로 1천명을 넘었다는 것이며 그 중에도 특히 邑面地域에 남아 있던 日人 失業者 약 2백여명이다. 이들 日人 失業者들은 오히려 日人 官憲의 비호아래 浮浪행패가 자심하기도 했지만 반면 調査對象 人員의 7~8%에 해당하는 韓國人 失業者는 당연히 日本官憲의 要視察人物이거나 生의 意慾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무리로 轉落했을 것이다.

더우기 失業統計의 調査對象에서 제외된 人物들 자체가 日帝의 犠牲當事者였다.

이 失業統計는 1935년까지는 總督府 學務局에서 調査發表한 것이고 1936년부터는 同 內務局에서 담당하였다. 失業統計를 內務行政으로 다스린 것이다.

바. 賃金統計

일제시대 조선의 임금관련통계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勞動分野가 다소 경시되어 왔고 또한 산업근대화도 늦어 工業, 鑛業, 交通業등으로 흡수되는 노동자의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賃金關聯統計도 빈약하였다.

당시 賃金關聯統計를 조사하는 기관으로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 등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의 경우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년」의 '賃銀'통계표에 各種 목수, 미장이, 石工, 人力車夫등 32종의 업태별로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의 임금이 지방 8府별로 조사하여 수록되어 있다. 한편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1930년 7월호에 실린 '賃銀 및 指數表'를 보면 熟練勞動者를 업종별로 5종으로 나누고 未熟練勞動者를 업종별로 10종으로 나누어 임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月中平均賃金を 수록하고 있다.

이 당시 임금관련통계는 京城을 중심으로한 地域別 賃金統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임금통계에는 1911년(明治44年) 이후의 京城等 全國主要都市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나누어 職業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임금을 조사, 지역별 임금통계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연초제조직 및 農作夫등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男·女의 性別 賃金を 조사하였다.

賃金統計의 단위는 圓으로 하되 임금의 조사기준은 직업별 특성에 따라 日給, 月給, 年給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 바 日給의 비중이 95%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이 당시 임금지급기준은 오늘날과는 달리 日給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행에서는 1925년(大正14年) 11월부터 매월 발간하는 「조선은행 통계월보」에 ‘各地勞動賃’이라고 해서 14개 業態別 임금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경성상공회의소는 1927年(昭和2年)부터 매년 발간하는 「경성상의통계연보」의 ‘京城勞動賃銀表’에 조선인과 일본인 및 중국인으로 나누어 職業別 월평균임금통계를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釜山商工會議所에서는 ‘釜山港 勞銀表’를 「부산상의 월보」에 수록하여 매월 발간하였으며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인천지방의 職工賃金を 28개 직업별로 조선인, 일본인 및 중국인 등으로 나누어 「인천상의 월보」에 수록하였다.

당시의 賃金指數로서는 京城地域의 임금지수만이 작성되었을뿐이다.

賃金指數는 주로 직업별로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등으로 나누어 어느 특정연도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당해연도의 賃金指數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1910年(明治43年) 이후의 시계열을 가지고 있다.

당시 임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및 경성상공회의소 등을 들 수 있는데 대체로 임금통계조사기관과 일치하고 있다.

조선은행에서 발간한 「조선경제연감 1948년」을 보면 1910年(明治43年) 이후의 京城賃金指數를 월별로 산출하여 발표하였는 바 임금지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

II. 勞動統計

다.

① 조사대상: 주로 京城 및 京城근교의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큰공장을 표준으로 하여 (소규모공장은 대공장이 있는 한, 조사하지 않았음) 各業鍾別 代表의 工場이라고 인정되는 공장 5개 이상을 조사한다.

② 조사시기 및 기준년도: 1910년 7월부터는 1910년 7월을 기준지수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1940년 1월부터는 1937년 6월을 기준지수로 하여 작성하였다.

③ 조사대상직종: 1910년 7월 기준지수의 경우 18개 職種, 1937년 6월 기준지수의 경우 10개 業種의 52개 職種

④ 조사대상임금: 18세 이상의 보통기술자 月實收賃金を 실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으로 하고 임금의 산출은 基本賃金외에 식비, 작업성적에 의한 지불금, 특근료, 시간외 근무료, 기타 매월 소정된 지급금 등을 가산하고 현물지급은 그 현물을 동 월의 도매가격으로 평가하여 貨幣賃金에 합산, 다만 분기말의 위로금, 傷病醫務金이며 일시적 현물지급은 제외한다.

⑤ 지수산출방식: 단순산술평균법

조선은행에서는 이외에도 1939年(昭和14年)부터의 매월 京城物價指數와 賃金指數를 서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京城物價 賃銀指數 月別對照'표를 「조선은행 통계월보」에 수록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0年(昭和5年)부터 勞動의 熟練程度에 따라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매월 조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임금지수를 「조선총독부 조사월보」에 수록 발표하였다. 이때 숙련노동자의 임금은 5개 업종별로,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은 10개 업종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편 경성상공회의소에서도 1927年(昭和2年)부터 20개 직업별로 나누어 경성노동임금지수를 작성하여 「경성상의 통계연보」에 수록하여 발표하였다.

2. 解放後의 勞動統計

가. 經營活動人口 調査

(1) 意義와 沿革

勞動에 관한 統計라 하면 勞動者賃金, 勞動移動, 勞動保險 등 勞動에 관한 一切의 廣範圍한 統計를 포함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家口를 調查單位로 하는 經濟活動에 관한 統計調查와 事業體를 調查單位로 하는 就業者에 관한 統計調查로 區分한다.

그러나 經濟活動에 관한 人口統計라 하여도 그것이 여러가지 統計調查의 結果에서 作成할 수 있으며, 就業者에 관한 統計도 여러가지 統計의 結果에서 作成할 수가 있다. 經濟活動에 관한 統計資料는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 뿐만 아니라 人口총조사에서도 얻을 수가 있으며, 就業者에 관한 統計資料는 鑛工業총조사, 賃金調查 등에서 얻을 수 있다.

人口의 經濟的 特性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資料를 提供해 주는 것이 人口총조사이다. 그러나 人口총조사는 每5年마다 實施하는 것이므로 經濟活動人口의 短期的인 變動을 捕捉할 수 없다. 그러므로 人口의 經濟的인 特性, 즉 經濟活動에 參與한 勞動力의 總量과 그 構成의 短期的인 變動을 측정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처음으로 體系의인 勞動力調查를 勞動接近方法에 의해 實施하여 왔다. 이 調査는 層化二段任意抽出法에 따라 抽出된 4,400家口에 대해 每月末 1週間을 調查期間으로 하여 그 期間中の 實際的인 活動狀態를 調査해왔다.

그리고 이 期間에 14歲 以上을 調査對象으로 하고, 調査期間中 1時間以上 就業한 者를 就業者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調査는 各市·邑·面의 行政機關에 從事하는 職員이 實施하여 調査實施上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標本設計의 不適合性 등에서 나타난 統計資料의 信賴性이 欠如함에 따라 1962年 5월에 「勞動力調查」를 中斷하였다. 그러나 統計局이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된 이후 1962年 8月부터 名稱을 「經濟活動人口調查」로 改稱하는 한편 調査項目의 概念을 定立하고 새로운 標本抽出로 調査區에 統計調査員을 配置하는 등 調査方法을 改善함으로써 經濟活動人口를 正確하게 把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부터는 標本の 크기를 크게 늘리는 한편 調査頻度を 分期別에서 月別調查로 改編하였다.

II. 勞動統計

1983년부터는 새로운 標本改替方法을 導入하여 統計의 偏倚를 防止하였다.

(2) 調查의 法的 根據 및 調查機關

本調查는 統計法 第2條의 規定과 經濟活動人口調查規則(經濟企劃院令 第20號, 1962年 9月 19日)에 依據하여 統計廳에서 實施하고 있다.

(3) 調查의 範圍 및 對象

調查期間을 基準으로 하여 大韓民國領域中 休戰線附近에 거주하는 人口를 除外하고 全國에 常住하는 人口中 滿15歲 以上者를 對象으로 調查하며 現役軍人, 戰鬥警察, 刑이 確定된 矯導所 收監者 및 外國人은 調查對象에서 除外하였다.

(4) 調查事項

姓名, 家口主와의 關係, 性別, 年齡, 配偶關係, 教育規程, 活動狀態, 就業與否, 一時休職 및 그 理由, 1週間의 求職與否, 就業可能性與否, 就業意思의 有無 等

(5) 調查對象期間 및 週期

- ① 調查對象期間……15日이 包含된 每月 1週間
- ② 調查實施期間……對象期間다음 1週
- ③ 調查週期…… 每月1回

(6) 調查方法

標本調查區內에 常住하는 15歲 以上者에 대하여 對象週間의 經濟活動狀態를 勞動力接近方法(Labour Force Approach)에 따라 面接方法(Interview Method)으로 調查하고 補助調查票는 應答者 自身이 記入하는 自計式方法으로 한다.

(7) 標本抽出 및 層化

(가) 標本抽出

人口총조사 調查區中에서 각 市道 섬地域의 調查區와 施設單位調查區를 除外한

나머지의 146,900 普通調查區를 1987年 9月30日 現在의 行政區域에 의한 洞邑面別로 調查區番號 順序로 100家口以上이 되도록 2個 또는 3個의 調查區를 統合하여 1個의 1次抽出調查區로 設定하였다. 이 調查區에서 961個(市部 730個 郡部 231個)를 系統抽出하였다.

選定된 調查區에서 1985年 人口총조사 總家口의 1/306에 該當되는 約 32,000家口를 2次로 抽出하는 이른바 層化 2段系統抽出方法을 擇하였다.

(나) 層化方法

1次抽出單位調查區를 主된 特性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6個集團으로 層化하였다.

集團別 層化特性

集 團	產 業 特 性
1	1次産業 > 2次産業 > 3次産業
2	1次産業 > 3次産業 > 2次産業
3	2次産業 > 3次産業 > 1次産業
4	2次産業 > 1次産業 > 3次産業
5	3次産業 > 1次産業 > 2次産業
6	3次産業 > 2次産業 > 1次産業

各 集團에서는 다시 主된 住宅의 特性에 의하여 아파트調查區, 一般住宅 調查區 및 其他調查區로 再分類하였으며 아파트調查區에 限하여 主된 煖房施設에 따라 中央煖房과 其他煖房으로 다시 分類하여 層化資料로 하였다.

(8) 推定方法

月別 調查結果에서 어떤 特性Y를 갖는 人口數의 推定에 利用된 公式은 다음과 같다.

$$\hat{Y}_h = \sum_i X_{hi} (\sum_j y_{hij} / \sum_j X_{hij})$$

$$\hat{Y}_h = \sum_i \hat{Y}_h$$

\hat{Y} = 特性Y를 갖는 推定人口數

X = 15歲 以上 推定人口數

y = 標本에서 調査된 15歲 以上 人口數

II. 勞動統計

s = 特別을 나타내는 添字

h = 月을 나타내는 添字

i = 地域을 나타내는 添字.

j = 標本調查區 나타내는 添字

(9) 集計 및 結果公表

調査員이 作成한 調査票는 指導員을 經由하여 統計廳으로 發送되어 集計하여 그 結果는 「韓國統計月報」에 收錄 公表하며 또한 每年1回 「經濟活動人口調査結果報告」를 發行한다.

나. 地域別 經濟活動人口調査

地域別 開發計劃, 勞動力의 產業別 및 地域別 配分을 위한 資料를 얻기 위하여 內務部에서는 1969년부터 一般統計 123歲로 釜山市 및 各道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實施하였다. 같은 目的으로 서울特別市도 1970년부터 一般統計 136號로 同種의 統計를 自體機關에서 實施하였는데 모든 調査內容은 統計廳에서 實施하고 있는 經濟活動人口調査概念과 거의 同一하며 年 2回 實施하고 있다.

다. 雇傭構造調査

이 調査는 1983년에 指定統計 第111-11-18로 統計廳에서 小規模 標本調査로서 는 把握못하는 地域別 雇傭構造와 商業間 勞動力流動狀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처음 試圖한 것으로 3年마다 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經營活動人口調査와의 差異點은 標本數를 約 5倍 擴大한 점과 勞動力接近法(Labour Force Approach)과 所得接近法(Gainful Approach)을 混合 通用한 것이라 하겠다.

(1) 調査範圍 및 對象

- 調査範圍……全國의 約 150,000標本家口

- 調査對象……調査週間을 基準으로 標本家口에 常住하는 15歲 以上の 人口

(2) 調査事項

經濟活動人口調査項目과 거의 같으나 失業事項에서 最著給與水準을 調査한 것과 勞動力 流動事項에서 1年前의 居住地 活動狀態, 職場繼續維持與否, 失職前職의 產業, 職業, 從事上의 地位 및 勤務한 事業體의 規模를 把握하고 있다.

(3) 調査基準

- 調査對象週間……調査該當年度의 11月 15日이 包含된 1週間
- 調査實施週間……調査對象週間의 다음 1週間

(4) 調査方法

地方行政機關을 통하여 臨時調査員에 의한 面接調査(他計式)를 한다.

(5) 標本設計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設計要領에 依據 層化하였으며 第1次로 調査區 第二次로 家口를 뽑는 層化二段系統任意抽出法을 擇하였는데 그 標本規模는 다음 表와 같다.

雇傭構造調査 標本調査區 및 標本家口

區 分	母 集 團		標 本		抽出率(%)
	調査區數	家 口 數	調査區數	家 口 數	
全 國	145,410	953,061	2,281	141,945	1.49
市 部	100,656	673,305	1,649	107,185	1.59
郡 部	44,754	279,756	632	34,760	1.24

라. 經濟活動人口特別調査

經濟活動人口調査는 勞動力의 通常의 狀態 및 不完全就業者와 潛在失業者에 관한

II. 勞動統計

資料를 파악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補完하기 위하여 1967년부터 年2回 經濟活動人口特別調查를 實施하였다.

(1) 調查의 對象

調查의 對象이 되는 家口를 經濟活動人口調查의 對象家口數보다 倍로 확장하여 約 1,000家口를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標本家口抽出은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 抽出된 各 調查區에서의 對象家口 5,000家口 및 새로운 5,000家口를 選定하였다.

(2) 調查項目

調查項目에는 經濟活動人口調查의 調查項目 16個 以外에 平常時經濟活動(일의 종류 및 時間), 所得 및 賃金에 관한 2個項目을 追加하고, 就業者의 과거 1年間에 있어서의 通常的 就業狀態를 파악하여 不完全就業者 및 潛在的 失業者를 統計的으로 찾아내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3) 調查週間

調查週期는 年2回였으며 經濟活動에 參加하는 人口가 가장 많은 6月과 가장 적은 12월에 實施하였다.

마. 事業體勞動實態調查

1964년까지는 保健社會部가 事業體 및 勤勞者의 地域, 產業 및 規模別 分布狀態와 勤勞者의 地位, 年齡, 性別 등 就業狀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調查하였는데 1964年 勞動廳이 發足하여 이 調查事業을 承繼하여왔다. 1968년에 指定統計 144-11-01로 指定되어 每年 繼續實施하고 있다.

(1) 調查範圍 및 對象

○ 調查範圍……全國의 全產業, 但 國家 또는 地方行政機關, 軍警察, 國公立教育

機關은 調查에서 除外한다.

- 調查對象…… 調查基準日 現在 勤勞者 5人 以上の 全事業體.

(2) 調查基準 및 調查期間

- 基準時點…… 每年 4月 30日 現在
- 調查期間…… 每年 5月 1日 ~ 5월 31日(1개월간)

(3) 調查方法

- 勤勞者 30人 以上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體는 自計式調查를 原則으로 한다.
 - 新規事業體 및 30人 未滿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體는 勞動部 地方事務所 職員이 事業體를 訪問하여 面接調查 즉 他計式調查에 의한다.

(4) 調查事項

所在地, 名稱, 開店年月日, 事業의 種類, 常傭勤勞者數, 職業, 地位, 性, 年齡, 月給與額 等

바. 每月勞動統計調查

勞動部는 雇傭, 賃金, 勞動時間 및 勞動者移動을 把握하여 勞動政策資料로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1968年에 指定統計 144-11-02로 指定되었다. 1970年에는 勞動者移動調查와 每月勤勞者賃金統計調查를 統合하여 每月勞動統計調查로 改稱하였다.

1970年 標本을 처음으로 設計하고 그 後 5차례('72, '76, '78, '82, '87)에 걸쳐 標本을 改編하였다.

(1) 調查範圍

- 地域…… 全國
- 産業…… 産業·狩獵業, 林業 및 漁業을 除外한 全産業

II. 勞動統計

(2) 調查對象

常傭勤勞者 10人 以上 事業體에서 抽出한 3,300個 標本業體를 對象으로 한다.

(3) 調查基準 및 期間

基準日은 每月 給與計算期間이며 調査는 基準期間의 翌月 1일부터 25일까지 實施한다.

(4) 資料蒐集方法

事業體에서 直接 調査票를 作成하여 勞動部 管轄地方事務所에 提出하는 自計式 調査를 原則으로 한다.

(5) 調查事項

- 事業體의 一般事項(住所, 名稱 등)
- 賃金引上에 관한 事項
- 常傭勤勞者의 移動事項
- 常傭勤勞者의 出勤日數와 勤勞時間
- 常傭勤勞者의 月給與額
- 日傭 및 臨時勤勞者 給與

(6) 標本設計

500人 以上은 全數調査를 하며 其他는 事業體規模別(10~29人, 30~99人, 100~299人, 300~499人)로 層化하고 이 中에서 事業體의 業種과 數에 따라 比例 系統 抽出하였다(全數調査事業體를 包含하여 3,300事業體를 調査함).

하고 이 中에서 事業體의 業種과 數에 따라 比例 系統 抽出하였다(全數調査事業體를 包含하여 3,300事業體를 調査함).

사. 賃金統計

(1) 職業別賃金調査

1968년에 指定통계 144-11-03으로 實施하고 있는 本調査는 賃金 勞動時間 및 朝鮮 등을 職種, 産業 및 地域別로 把握하여 賃金政策에 利用할 目的으로 調査하는데 全産業(農林漁業 除外)을 對象으로 10人 以上の 3,300個標本業體를 每年6月 給與計算期間을 基準으로 年1回 調査한다. 標本은 「每月勞動統計調査」와 同一하다. 調査事項은 事業體에 관한 事項, 勤勞者 個人에 관한 事項의 2個調査票를 利用하는데 그 內容은 賃金引上額, 初賃給 및 採用人員과 個人에 관한 性, 年齡, 婚姻狀況, 學力, 職種, 職位, 技術機能程度, 勤續年數, 經歷, 勤務日數, 勤勞時間, 月給與額 등을 調査한다.

(2) 사업체임금실태조사

勞動部 勞政局은 1989년부터 一般統計 144-21-28號로 最低賃金制 雇傭對象인 事業賃金狀態를 把握하여서 最低賃金水準資料를 얻기 위한 調査를 年1回 實施하기로 하였다. 이 調査는 農林漁業, 鑛業, 製造業, 電氣業, 建設業, 都小賣業, 運輸, 倉庫業, 金融業, 서어비스業의 8,329個 標本事業體에 대하여 勞動組合에 관한 事項, 賃金引上에 관한 事項 등의 事業體에 대한 調査와 勞動組合可入與否, 雇傭形態, 月間勤勞時間, 賃金基準 등의 個人에 대한 調査를 한다.

(3) 賃金·勤勞時間制度 綜合調査

1982年 一般統計 144-21-14로 年1回 30人 以上 全産業企業體中에서 2,000 標本事業體를 抽出하여 調査를 한다. 이 調査는 賃金 및 勤勞時間에 관한 諸制度를 把握하여 賃金體系 및 勤勞時間制度改善을 위한 資料를 蒐集하는 것으로서 調査事項은 時間, 日, 月給 등의 定額制, 定額 및 都給의 複合制, 都給制, 週給制 등의 賃金形態, 昇給, 賃金引上 및 賞與의 決定方法, 賃金體系 등의 賃金制度關係와 正常勤勞時間, 週休 以外の 休日賃金割増率, 年次有給休暇, 勤勞形態 등의 勤勞時間制度關係를 調査한다.

II. 勞動統計

(4) 賃金引上實態調査

韓國生産性本部는 賃金引上展望 및 賃金分析을 위하여 每年1回 農林漁業을 除外한 從業員 50人 以上の 全産業事業體에서 500個標本을 抽出하여 面接 또는 郵便調査에 의하여 調査한다.

그 調査項目은 主要生産品目, 上場與否, 從業員數, 日平均勤勞時間 職種別 平均賃金引上率, 人相의 決定過程 賃金構成比, 職種別平均引上率, 職種 및 學力別 新入社員의 賃金, 職級 및 學力別 月平均給與額, 年間賞與金支給額, 賃金引上의 吸收對策, 週休制實施方法 등이다. 이 調査는 1977年 一般統計 328-21-04로 承認된 以後 現在까지 每年 實施하고 있는데 調査對象地域을 工團으로 한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5) 標準者모델賃金調査

大韓商工會議所는 1978年부터 製造業體의 賃金を 性, 學歷, 職種, 職級別로 把握하여 賃金標準을 設定하기 위하여 一般統計 343-21-04로 每年1回씩 調査하고 있다.

(가) 調査對象……全國 2,100個 標本製造事業體

(나) 調査事項……職種, 學歷, 性, 勤續年數, 生産技能職, 生産職 및 事務職, 幹部 職에 대한 모델設定에 必要한 諸般事項과 基本給, 諸手當, 賃金引上原則 등을 調査한다.

(6) 賃金引上動向調査

韓國經營者總協會는 1976年부터 一般統計 339-21-01로 賃金調査動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勞動部의 事業體勞動實態調査의 從業員 100人 以上 企業體에서 650個業體를 層化單純抽出하여 每年 5月末基準으로 年1回 調査를 한다.

그 調査項目은 職級 및 學歷別 初賃金水準, 賃金調整方式 및 時期, 産業別賃金引上率, 賃金引上決定要因, 賃金引上에 대한 企業의 評價 및 企業對策 등이다.

(7) 新規人力採用動態 및 展望調査

韓國經營者總協會는 1974년부터 個別企業의 新規人力採用 및 計劃을 調査하여 人力需要豫測을 把握하고자 農林漁業을 除外한 全産業中 從業員 50人 以上을 雇傭하는 事業體에서 1,308個 標本을 層化系統 抽出하여 每年 3月 1日을 基準으로 實施한다.

1979년에 一般統計 339-21-05로 承認받아 每年 繼續調査하는데 調査項目은 計數調査로서 採用實績과 採用計劃은, 判斷調査로는 景氣變動이 新規採用에 미치는 影響, 採用規模를 늘리게 된 理由, 採用規模를 줄인 理由, 從業員數를 줄인 職種, 從業員數를 늘린 職種, 從業員數를 規模, 産業, 職種, 技術, 技能, 學歷, 內需·輸出別 등이다.

아. 雇傭展望調査

(1) 企業體 勞動費用實態調査

韓國經營者總協會에서 1980년부터 使用者가 勤勞者를 雇傭하여 發生하는 諸費用의 種類 및 金額 등을 調査하여 勞動費用의 國際比較 및 企業의 賃金政策 등의 資料를 얻는 目的으로 처음 實施하였는데 1983년부터는 勞動部에 移管되어 一般統計 144-12-15로 承認을 받아 每月 1回씩 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調査對象은 全國 農林漁業을 除外한 全産業을 對象으로 하는데 國家, 軍, 警察, 國公立教育機關은 除外한다. 그리고 常傭勞動者 30人 以上 事業體中에서 1,600個 標本業體를 抽出하여 現物給與費 및 現金給與, 退職金, 募集費, 賞與, 教育訓練費, 福利費 등의 項目을 調査한다.

(2) 勞動經濟動向調査

勞動部 職業安全局이 1981년부터 勞動力 受給의 變化가 企業의 雇傭, 勤勞時間 등에 미치는 影響을 파악하기 위하여 每月勞動統計調査의 對象標本事業體 3,300個에서 從業員 30人 以上을 雇傭하고 있는 1,700個 事業에 대하여 年4回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II. 勞動統計

調査事項은 生産動向과 對應策, 雇傭動向, 雇傭調整의 實施狀況 等이다.

이 調査는 1983年에 一般統計 144-21-16으로 承認받아 現在에 이르고 있다.

(3) 勞動力 流動實態調査

1971年 一般統計 144-21-02로 承認받은 이 統計調査는 勞動移動實態를 學歷, 職種, 勤續年數, 年齡階層 및 地域別로 分析하여 人力需給, 保險料率 算定 등 基礎資料를 얻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事業體調査票, 入職者調査票 및 離職者調査票로 3分하여 勤勞者의 轉出入, 入職經路, 再就業者의 休職期間, 離職事由 等을 10人 以上の 全事業體中에서 3,700標本을 對象으로 年1回 調査하고 있다. 標本統計는 每月勞動統計調査와 同一하다.

(4) 公務員總調査

公務員 個個人에 대한 人的事項을 調査·集計하여 公務員의 人事管理, 厚生福祉 등 制度改善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고 總務處에서 1969年 5月20日에 最初로 實施하였으며 1978年 6月29日 經濟企劃院 指定番號 第562號로 指定되었으며 1983年 3月 14日 一般統計 第112-21-02號로 承認받아 每 5年마다 實施하고 있다. 調査基準日 現在 在職中인 全公務員을 對象으로 調査對象者가 直接記入하여 總務處에서 集計한다.

調査對象은

(가) 調査事項

人的事項, 學歷, 自格, 兵役 등

(나) 任用事項

採用, 經歷, 昇進, 教育訓練 賞罰 등

(다) 厚生福祉

報酬, 住宅, 家族, 福祉施設 등이다. 結果公表는 每 5年마다 公務員 統計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5) 科學技術研究活動調査

(가) 意義 및 沿革

國內의 科學技術에 관한 研究開發活動 現況을 把握하여 國家科學技術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키위해 1963년에 經濟企劃院 技術管理局에서 研究機關實態 調査를 最初로 實施하였으며 1967年 4월에 科學技術處가 創設되면서 同業務를 移 管받아 實施하였다. 1978년에 開催된 第20次 UNESCO總會에서 各 國別로 相異한 用語定義, 分類 및 發表에 따라 야기되는 國際比較信賴度를 向上시키기 위해 採擇한 科學技術統計의 國際標準化에 관한 권고 事項을 이 調査에 反映시켜 作成하였다. 1982年 7月16日 一般統計 第113-21-01호로 承認, 현재 每年 調査 實施하고 있다. 1983년에는 유네스코 권고안에 따라 調査事項 및 用語도 再定立했으며 1984년에 研究院에 상근·兼職을 區分한 調査를 追加, 前 調査事項에 대해 電算化했으며, 1987年 企業體의 研究開發活動에 대한 集中度 公表를 追加했으며 1988년에는 研究院의 상근상당研究員數 調査를 追加하였다.

(나) 調査對象

1) 調査對象分野

• UNESCO의 “科學技術統計의 國際標準化에 관한 勸告案(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on Science and Technology)”에 의한 自然科學(이학), 工學 및 技術, 醫學 및 農學分野

2) 調査對象機關

① 自然科學分野의 試驗研究機關

- 國·公立 試驗研究機關
- 政府出捐研究機關 및 其他 非營利法人試驗研究機關

② 自然科學分野의 學科를 保有하고 있는 高等教育機關

- 大學(校) 및 專門大學

③ 病床數 80以上の 醫療機關

- 綜合病院

④ 從業員 100以上の 企業體 단, 100人 以上の 企業體라도 附設研究所를 設立·運營中이거나 技術開發準備金을 積立·使用하고 있는 企業體는 包含한다.

II. 勞動統計

調 查 對 象 分 野

區 分	範 圍
自 然 科 學 (理 學)	天文學, 細菌學, 生化學, 生物學, 植物學, 化學, 컴퓨터學科, 昆蟲學, 地質學, 地球物理學, 數學, 氣象學, 鑛物學, 自然地理學, 物理學, 動物學, 其他 同類의 科學
工 學 및 技 術	化學, 土木, 電氣, 機械工學等 이들 工學의 細部專門分野와 같은 純粹工學, 木材生産, 測地學, 工業化學 등 應用科學, 建築工學, 食品生産에 屬하는 科學技術, 시스템分析, 아금학, 鑛山學, 纖維工學 등의 專門技術 또는 相互關 聯分野
醫 學	解剖學, 齒科學, 醫學, 看護學, 產科學, 眼科, 整形, 藥學, 物理療法, 公共保健 및 其他 同類의 科學
農 學	農業經濟學, 畜產學, 水產學, 林學, 園藝學, 獸醫學, 및 其他 同類의 科學

— 本 調查에서 入文·社會科學 및 國防分野는 除外

(다) 調查對象期間

人員, 資本金 등은 매년 12月 31日 基準으로 하며 總賣出額, 研究開發費 등은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期間을 基準으로 한다.

단, 事業年度가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가 아닌 機關의 경우에는 翌年 4月 1日 以前에 完了된 事業年度를 基準으로 한다.

(라) 調查事項

1) 共通事項

- ① 研究開發關係 從事人員의 현황
 - 職責別
 - 年齡別
 - 勤務形態別(상근, 兼職 與否別)
 - 姓別
 - 勤務研究員의 專功別·學位別 現況
 - 兼職研究員의 專功別·學位水準別 現況
- ② 研究開發 遂行方法
- ③ 研究開發 遂行組織의 現況
- ④ 研究開發 現況

- 自體使用研究開發費 現況
 - 費目別
 - 性格別
 - 財源(負擔)別
- 外部機關에 支拂한 研究開發費 現況(代償機關別)

2) 機關別 調查事項

- ① 大學(校) 및 專門大學
 - 組織의 形態
 - 學問分野
 - 外部로부터 받은 研究開發費 現況
- ② 研究機關 및 醫療機關
 - 組織의 形態
 - 分野
 - 總從事員數
 - 試驗研究機關의 性格
 - 國·公立試驗研究機關의 總歲出 豫算
 - 試驗研究機關의 所屬主務部處(廳, 市, 道)現況
 - 政府出捐研究機關에 대한 政府出捐金支援 現況
- ③ 企業體
 - 企業의 形態
 - 資本金
 - 總賣出額
 - 總從業員數
 - 標準產業分類에 의한 企業體의 業種
 - 主要 生産製品(또는 提供서비스)

(마) 用語解説

1) 研究開發活動

- 科學技術分野의 知識을 蓄積하거나 새로운 適用方法을 찾아내기 위하여

II. 勞動統計

蓄積된 知識을 活用하는 組織的이고 創造的인 活動으로서

－ 事物, 機能, 現狀等に 關하여 새로운 知識을 獲得하거나 既存 知識을 活用하여 새로운 方法을 찾아내기 위한 創造的인 努力 및 探究

－ 研究開發過程에서 直接 必要的 試驗, 測定, 分析, 機械, 機具, 裝置의 購入, 設置 및 建設, 動植物의 育成, 文獻調查 등의 活動

－ 研究開發活動部署運營을 直接 支援하기 위한 庶務, 會計 等の 支援活動

2) 研究開發活動 例示

가) 試作品(Proto-type Model)의 경우

○ 試作品은 새로운 技術을 이용하여 製品生産 및 商業的 生産에 앞서 만들어진 見本品 또는 模型으로서 生産하고자 하는 製品의 基本特性 등을 獲得하기 위한 試驗用 模型을 말하며,

○ 試作品의 設計·製作·試驗의 過程中 研究開發活動은 試驗이 失敗하여 補完하는 過程을 包含하여 試驗이 成功的으로 끝난 순간까지로 하고, 非研究開發活動은 試驗이 成功的으로 끝난 순간이후의 活動으로 한다.

나) 工業化中間試驗(Pilot Plant의 設計, 建設, 試驗)의 段階의 경우

○ 工業化中間試驗段階는 “새로운 製品生産 또는 生産工程關係技術을 實用化하기 위하여 研究開發活動部署 또는 工場 등에 小規模의 試驗工場을 建設하여 試驗하는 過程”으로서

○ 小規模試驗工場의 設計, 建設, 試驗過程中 研究開發活動은 試驗이 失敗하여 補完하는 過程은 包含하여 試驗이 成功的으로 끝난 순간까지로 하고, 非研究開發活動은 試驗이 成功的으로 끝난 순간이후의 活動으로 한다.

3) 科學技術投資

○ 科學技術投資는 科學技術研究開發活動調查結果와 의한 總研究開發費와 다음에서 定義하는 行政支援事業費(또는 其他行政支援投資)를 합한 金額이다.

－ 行政支援 事業費

科學技術關係豫算(支出額基準)中에서 直接 研究開發活動에 投入되지 않은 金額이다.

- 예) • 科學技術處, 工業進興廳, 農業進興廳 等の 科學技術行政費
 • 國立試驗研究機關豫算中 研究開發活動에 投入되지 않는 部門 等

4) 科學技術關係豫算

○ 科學技術(人文·社會科學除外)分野에 있어서의 研究開發活動 등 科學技術振興을 直接的으로 支援하기 위해 該當年度에 投入된 中央行政機關의 豫算으로 한다.

단, 이와 同一한 目的의 中央行政機關의 豫算이지만 他目的의 豫算과 重複되어 있어 現實的으로 明確한 算出 및 確認이 困難한 金額을 除外한다.

- 國立試驗研究機關의 運營豫算總額
- 政府出捐研究機關에 대한 政府出捐金 金額
- 其他 科學技術振興을 直接的으로 支援하기 위한 科學技術行政費와 振興費로서,
 - 科學技術處, 中央氣象臺, 國立科學館 豫算總額
 - 商工部, 教育部, 工業振興廳, 農村振興廳 等の 豫算中에서 上記와 同等 費用이라고 判斷되는 金額

科學技術投資의 構成

研 究 開 發 費			
國 民 負 擔	行 政 負 擔		
	外國	A	B
			科學技術關係豫算
		B	行政支援 事業費
民 間 負 擔	政 府 負 擔		
科 學 技 術 投 資			

- A : ○ 地方自治團體所屬 試驗研究機關의 研究開發投資
 ○ 國公立大學(校) 및 專門大學의 研究開發投資
 ○ 國公立病院의 研究開發投資
- B : ○ 國公立試驗研究機關의 研究開發投資

II. 勞動統計

- 政府出捐研究機關의 研究開發投資

- 特定研究開發事業費

5) 財源別 研究開發費

- 政府·公共機關

國內의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公立 高等教育機關 및 醫療機關에서 負擔한 研究開發費

- 民間部門

國內의 企業體(政府投資機關 包含), 私立 高等教育機關 및 醫療機關, 個人 및 民間部門에서 負擔한 研究開發費

- 外國部門

外國政府, 國際機構 等 外國으로부터 提供된 研究開發費

6) 性格別 研究開發費

- 基礎研究費

特定한 應用 또는 社用을 目標로 하지 않고 自然現狀 및 觀察可能한 邪物의 基礎가 되는 새로운 科學的 知識을 獲得하기 위하여 주로 행해지는 實驗實績 또는 理論的 研究를 遂行하는데 投入된 金額

- 應用研究費

주로 特殊한 實用的인 目的과 目標下에 새로운 科學的 知識을 獲得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獨創的인 研究를 遂行하는데 投入된 金額

- 開發費

研究와 實驗的 經驗에 의해 獲得한 知識을 活用하여 새로운 材料·製品과 裝置의 생산, 새로운 工程·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設置 其他 이미 生産되었거나 設置된 것을 實質的으로 改良하기 위한 體系的 活動을 遂行하는데 投入된 金額

7) 費目別 研究開發費

經常費: 人件費와 其他 經常費를 합한 金額

- 人件費

— 研究開發關係從事者에 대한 人件費(賞與金, 退職金, 보너스 및 各種 手當 包含)로서 寄與金, 保險料, 所得稅 등을 控除하기 以前의 總金額, 단, 守衛, 警備

員, 清掃員 등과 같이 研究開發活動을 間接的으로 支援하는 人員에 대한 人件費는 其他 經常費로 分類한다.

－ 兼職人員의 경우는 研究開發活動部署와 他部署間의 勤務比重에 따라 適切하게 配分한 金額中 研究開發活動 遂行에 따른 人件費

－ 研究開發活動遂行(例: 收穫研究開發事業等)過程에서 課題遂行에 따른 人件費

－ 高等教育機關의 경우에는 國·公立大學研究補助費 支給規程에 의한 研究補助費, 育成會 및 大學(校) (또는 專門大學)에서 支給하는 研究手當等은 人件費에 包含함. 단 學生 教授 및 指導에 따른 教職員의 人件費는 除外한다.

○ 其他經常費

－ 研究開發活動部署에서 使用한 金額 및 其他 研究開發活動에 直接 社用한 金額中 資本的支出과 人件費를 除外한 金額으로서,

－ 原材料費, 事務室 및 實驗室用 備品購入費, 刊行物購買料, 圖書費, 建物 賃借料, 旅費, 公共料金 등의 費用

－ 守衛, 警備員, 清掃員 등과 같은 研究開發活動을 間接的으로 支援하는 人員에 대한 人件費

資本的支出: 機械, 機具, 裝置 등 土地, 建物 등 및 其他 資本的 支出을 합한 金額

○ 機械·機具·裝置 등

研究開發活動部署에서 直接 使用하기 위한 것이거나 研究開發活動에 直接 使用하기 위한 研究機器·機具·機械·裝置의 購入 設置金額과 同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를 延長시키거나 該當 固定資產의 價値를 現實的으로 增加시키기 위한 修繕費 등

○ 土地·建物 등

研究開發活動部署에서 直接 使用하기 위한 것이거나 研究開發活動에 直接 使用하기 위한 土地의 買入費, 建物 的 建築(또는 購入·增築, 補助構造物의 設置 등), 船舶·車輛等(補助構造物 包含)의 購入費 및 同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를 延長시키거나 該當 固定資產의 價値를 現實的으로 增加시키기 위한 修繕費 등

○ 其他 資本的 支出

多量의 圖書購入費 등 資本的 支出로서 機械·機具·裝置 등 및 土地·建物等에 包

숨되지 아니한 金額

8) 研究開發關係從事者

○ 研究員

研究開發活動部署에 從事하는 學士以上 學位所持者 또는 同等以上の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자로서 研究開發課題를 直接 遂行하는 者(研究開發活動部署에서 行政·經營·管理等의 業務를 遂行하고 있으나 過去에 研究員으로서의 經歷을 保有하고 있는 者 包含). 高等教育機關의 境遇는 專任講師以上の 教職員과 附屬研究所 등 研究開發活動部署에 從事하고 있는 學士以上の 學位 所持者 또는 同等以上の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者로서 研究開發課題를 直接 遂行하고 있는 者

○ 常勤相當 研究員數

“一定期間동안 常勤으로 勤務하는 한 사람을 表示하는 測定單位”로서 兼職 研究員構를 常勤에 相當하는 研究員數로 換算하여, 常勤 研究員數를 합한 研究員數

〈計算方法 例示〉

5名의 研究員(常勤 2名, 兼職 3名)을 假定했을때 兼職研究員中 2名은 그들 勤務時間의 1/4을 1名은 1/2을 研究開發에 使用했을때,

常勤相當研究員數: $2 + 1/4 + 1/4 + 1/2 = 3$ 名

* 小數点 以下는 반올림

○ 聯句補助員

研究開發活動部署 從事者中 研究員이 아닌 者로서 研究員의 研究開發活動을 補助하기 위하여 研究員의 指示에 따라 實驗·檢査·測定 등의 業務를 遂行하는 者. 高等教育機關의 경우 研究開發活動部署에서 從事하고 있지는 않으나 研究員의 指揮·監督下에 實驗·檢査·測定業務의 遂行 등 研究開發活動을 補助하는 者는 聯句補助員으로 한다.

○ 其他 技術 및 技能職從事者

研究開發活動部署서 從事하는 者中 研究員 및 研究補助員이 아닌 者로서 研究員의 指揮·監督下에 研究開發活動과 關係된 技術支援業務에 從事하는 者

○ 其他 研究開發支援業務從事者

研究開發活動部署에 從事하는 研究員, 研究補助員, 其他 技術 및 技能職從事者

가 아닌 者로서 經理, 會社, 行政 등의 支援業務에 從事하는 者

(바) 結果公表

科學技術年鑑 및 科學技術研究開發活動調查報告에 每年 收錄·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여 백

Ⅲ. 農 林 漁 業 統 計

여 백

Ⅲ. 農林水産業 統計

1. 日帝時代의 農林漁業 統計

가. 農業統計刊行物

조선총독부의 제통계간행물에 나타나 있다. 이 때는 各 府郡의 調査計數를 道에서 집계하고, 각 道의 보고가 총독부에서 집계되는 이른바 「報告例」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며, 직속관서의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기도 한다. 道府郡, 기타 관서에서는 총독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발간되기까지 자체에 관계되는 계수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총독부 자료보다 발표시기가 빠르거나 상세한 부분까지 취급한 것도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시대의 農業關聯 統計書의 種類와 變化過程을 보면 그 작성배경 및 총독부의 정책의도에 비추어 대체로 다음 세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狀況充足用 統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령,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의 상당 부분을 일본의 미곡문제 해결을 위해 이출하고 그 결과 조선에서 발생한 식량부족문제를 米이외의 대체식량을 개발함으로써 해결하려고 작성된 「朝鮮에 있어서 米이외의 식용작물」(총독부식산국, 1921, 23, 25)이나 소작쟁의가 격증하면서 식민지 지배체제가 그 근저로부터 흔들릴 위험에 처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선소작년보」(총독부농림국, 1937, 1938), 「조선농지관계회보」(총독부 농림국, 1939), 「조선농지년보」(총독부농림국, 1940) 등의 제통계서에서 보듯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발생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된 통계가 있고, 둘째로는 日帝가 수립한 식민지 경영계획에 따라 추진한 여러 사업의 준비·시행·평가와 관련하여 작성된 통계, 예컨대 「조선산미증식계획의 실적」(총독부농림부, 1933~38),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권업모범장, 1907~1916) 등이 있다. 셋째로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 예컨대

Ⅲ. 農林漁業統計

「통계년보」(한국통감부, 1906~1908 ; 총독부, 1909~1942), 「농업통계표」(총독부, 1923~28 ; 식산국농무과, 1929~1940), 「朝鮮의 농업」(식산국, 1921~32 ; 농림국, 1933~41 ; 농림국농정과, 1942) 등이 있다.

첫째와 둘째의 범주에 속하는 제통계는 특정의 통치목적에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책 통계라 할 수 있으며, 셋째 범주의 제통계는 일상적인 행정사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행정통계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식민지 권력기관의 행정사무는 정책의도의 관철에 봉사하는 것이고 정책의도도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통하여 전개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논할 수는 없지만, 첫째와 둘째 범주의 통계 즉 정책통계는 대체로 그 정책 수행기간의 길이에 따라 통계의 지속 기간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행정통계 즉 셋째 범주의 통계는 일제 말기까지 지속적이었다. 그와같은 사실은, 농업과 관계된 통계 간행물과 발행기관 별 발행년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農林漁業統計

(1) 개 요

농림어업통계는 농림수산업의 생산력이 어느정도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된다. 토지나 노동력 및 기타 생산수단을 파악하기 위한 생산요소와 그 결과로 나타난 생산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농림어업통계가 정비된 것은 1940년 12월에 농림수산업 제111호에 의한 「농림수산업 조사규칙」의 공포에 의한다. 이 규칙의 제정과 함께 「농림수산업 기본 조사요강」, 「농작물 수확 조사요강」, 「양잠업 조사요강」, 「어업 조사요강」, 「농림수산업 조사규칙의 보고양식」 등을 공포하여 농림어업통계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생산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생산수단이나 노동력 조사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자원조사나 생산력 조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통제경제를 위한 물자동원 계획, 특히 비료나 미백 등의 배급 또는 공출 할당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약간의 보완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총독부 시내의 농림어업 통계는 기본적으로는 통감부 통계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새로이 조사를 요하는 사항이

증가하거나, 종래부터 조사해 온 내용이나 조사방법을 변경한 것이 많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0년경에 이르러서야 항목의 다양화와 조사방법의 체계화를 꾀하게 된 것이다.

농림어업통계의 조사방법은 대체로 양식을 지정하여 정해진 사항을 말단 행정기관인 군·도에 조사시키고, 다시 이를 취합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른바 報告例에 의한 統計調査다. 다만 조사를 요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農業統計表」나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집계되는 일부조사는 특정기관 및 단체의 사업성과 보고서의 결과를 취합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농림어업통계의 조사방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조사원(때로는 리동장이 되기도 함)이 屬地主義 조사를 한다는 점이다. 속지주의란 곧 행정구역 단위의 조사를 말하며, 수도작 수확량의 예로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조사하는 것이지 그 지역 사람이 생산한 쌀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출입 경작에 의한 약간의 차이는 무시된다.

이렇게 볼 때 농림어업통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도 1930년의 國勢調査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분류체계가 없었으나 1930년의 국세조사에 의한 산업분류에서 농업은 농경(농작, 원예), 축산(양축, 착유, 양계 및 양봉), 기타 농경, 잠업(양잠, 잠종제조), 임업(산림업, 목탄제조, 기타 임산물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생산물의 차이에 따른 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농림어업통계를 크게 기본통계, 작물통계, 임업통계, 어업통계, 농림수산물 수출입 통계 등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며 인삼 및 엽연초 등 전매작물은 작물통계에 포함시켰으며, 양잠(사육사업 및 상묘생산 포함) 및 양봉은 편의상 축산통계에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2) 基本統計

1) 耕地面積

日帝는 舊韓國政府에서 이미 근대적 측량법에 의하여 실시하던 量田事業(高宗 31年, 光武2年 등)을 승계하여 합방 직전인 1910年 4日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8년부터는 다시 林野調査事業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일제가 중점을 두고 조사한 것은 토지소유권 조사였으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査定이 완료

Ⅲ. 農林漁業統計

된 소유자는 187만여 명이고 그 토지면적은 487만여 정보(1정보는 99.147아아르 임), 경지면적으로는 433만여 정보였다. 이렇게 토지대장이 정비됨으로써 1919년경부터는 경지면적의 총량적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토지대장의 정비는 기존 경지면적 통계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그 하나는 면적 단위의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항목의 추가, 보완으로 나타났다. 면적의 단위로 종래에는 통상 畓에서는 斗落, 田에서는 日耕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통계표에 집계할 때는 각기 지역별로 환산기준을 정하여 정보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1914년부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지면적을 조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조사항목의 변화 과정을 보면, 畓田의 합계는 통감부 때부터 파악하였으나 1910년부터 畓, 전이 구분되고 특히 1918년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火田調查가 실시되어 총 경지면적이 畓·田·火田(이전에는 田에 포함)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1919년부터 토지대장 미등록 경지면적의 추정조사가 畓, 전, 화전으로 구분 실시되어 경지면적이 총체적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914년부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畓에 대해서 1모작, 2모작 구분조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畓 및 전에 대한 自作地와 小作地 상황을 조사하여 경지면적을 집계한 「農業統計表」에 공표하였다.

2) 農業人口 및 農家戶數

農業人口 및 農家戶數에 대한 조사는 통감부 시대에는 조선인 농업자만 조사하였으나 1910年 이후부터는 戶數 및 人口 모두 日本人, 조선인, 支邦人, 기타 외국인의 4가지 분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통계로서의 성격보다는 人口動態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불완전한 농업통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13년 10월 각 도에 통첩을 발하여 동년 9월말 현재로 계급별 호수, 농가와 경지와 관계 혹은 경지의 자소작별 면적 등을 조사하게 하였다.(관통첩 제272호에 의한 「農事調査의 件」) 이에 의한 조사사항은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별로

- ① 자작답전 및 소작지 면적
- ② 지주, 자작, 소작 및 자소작 농가호수

- ③ 경지소유 면적별 농가호수
- ④ 경작면적별 농가호수
- ⑤ 경지 소유주의 거주지별 호수 및 면적

등으로 보고양식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조사는 당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사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나 1913년 이후의 農業統計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농가의 구분을 세분화한다.

농가호수는 農業者 戶口數를 말하며, 농업자란 경지소유자 및 경작자(임·목·축업 제외)를 포괄하여 사용하였으며 兼業農家は 경종, 양축, 양잠 외에 산림업, 수산업, 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거나 地主 또는 家主를 兼하고 있는 경우를 통칭하였다. 이러한 전점업별 농가호수 통계는 1913년부터 구분하여 집계한다.

地主 및 自小作別 농가호수는 1913년의 조사 이후 계속되어 농업통계의 구분으로 정착되었으며, 특히 1916년부터는 지주를 甲, 乙로 나누었다. 갑종 지주란 소유지를 전부 소작 주는 경우이며, 을종 지주란 대부분 소작이고 일부 자경하는 지주를 말하였다. 1918년부터 火田面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1925년부터는 火田戶數를 兼火田民과 純火田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겸화전민이란 熟田을 경작하며 겸하여 화전식 경작법을 이용한 경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였다.

다. 作物統計

(1) 作物의 生産

水稻를 비롯한 각종 작물에 대한 통계는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수확을 올리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價額을 갖는가가 기본이 된다. 물론 각 작물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소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각 작물에 대한 조사는 위의 3가지 즉 栽培面積, 收穫高, 生産價額이 작물별 조사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특히 작물 중에서도 미곡과 면화 및 양잠(잠사)의 생산에 대해서는 寺內 총독이 부임과 동시에 발표한 「勸農方針」에서 강조할 만큼 식민지 생산통계의 중요 조사항목이었다.

1916년에는 총독부가 각도에 「農業生産統計 作成에 관한 건」을 시달하였는바 그 조사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물의 경작면적(재배면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조사의 사정에 의한 경지면적에 의해서 그 중에 포함된 규반, 잡종지, 기타 경작불능한 면적을 공제하되 재배면적의 산출방법으로,

① 부·군·도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평탄부, 중간부(평탄부와 계곡부의 중간), 계곡부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전과 답 각 3필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측에 의한 면적 계산을 한 후, 불경작 면적이 토지조사 사정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평탄·중간·계곡 각 지역의 답·전별 평균을 계산하며,

② 一面내의 답·전 면적 중에서 평탄부·중간부·계곡부에 각각 속하는 면적을 개량적으로 산출하고 앞에서 계산한 불경작면적 비율을 곱하여 총불경작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토지대장의 총면적에서 공제하여 재배면적으로 하며,

③ 재배면적은 경지면적중 불경작지를 제외한 총경지면적을 계상하도록 하며, 만일 직접 재배면적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그 지역의 斗落數를 조사하여 그 지역의 斗落數 환산율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물의 수확고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① 각 리동장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호별 조사하도록 하여 이를 취합한 다음에 전체 수확고를 산출하도록 하며,

② 동시에 면에서는 별도로 적당한 표준을 선정하여 답·전의 상·중·하 3등급에 대해서 1개면 3개소 이상, 1개소 10평에 대한 坪列을 실시한 후, 상·중·하, 답·전별로 1단보당 평균수량을 산출하여 전체 경지면적에 곱한 수량을 총수확고로 하며,

③ 위의 두가지 조사결과를 비교·심사하여 수확고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위의 상·중·하 등급 구분은 토지조사 사정에 의한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坪列에 의한 실수확고 조사는 미곡, 대맥, 대두, 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들 4가지 곡류는 소작관계가 많으므로 반당 수확량을 예측하는 자료로서 小作料 納入 정도를 坪列 성적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1918년에는 실제로 각도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農業技術官을 중앙에 소집하여

계통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의 상당수를 보완하였다. 1917년에는 火田에 대한 작물의 재배면적과 수확고 조사방법이 논의되고 시달되었다.

① 각 도는 가능한 한 속히 대체적인 見取圖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면적을 산출하며, 이러한 지도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면별로 斗落, 日耕, 結數의 총수를 조사하고 면내 3개소를 측량하여 斗落, 日耕, 結數와 면적과의 관계를 산정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재배면적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② 수확고 조사는 區長으로 하여금 호별조사를 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보통 경지와 비교하거나 또는 면에서 3개소를 선정하여 수확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장의 보고와 비교 검토한 다음에 수확고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919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부족식량의 공급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물의 實收統計를 강화하라는 정무총감의 지시로 생산통계의 보고양식을 시달하였다.(農業의 生産統計에 관한 件; 1919. 11)

이에 의한 조사사항은 경지면적 및 미곡, 미곡 우량품종, 두류, 잡곡, 특용작물, 채소, 과수 우량품종에 대한 재배면적(과수원은 樹數)과 수확고였다. 또한 1920년에는 재배면적의 누락을 방지하고 실수확고를 엄밀히 조사하기 위한 조사요령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① 재배면적은 토지조사 결과에 의한 지적을 기초로 하여 규반, 기타 잡종지가 공제된 토지대장 기재면적에 의하되, 경지정리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질 지목으로 계상하고, 수해로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토지대장의 정리가 부실한 것은 실제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화전 이외에 신규 개간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 것은 재무제와 연계하여 가급적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② 도에서 실시한 규반, 기타 불경지 포함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재배면적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더라도 단보당 수확고를 산출하여 호별조사 결과를 검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③ 특히 도에서 불경지 포함정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산율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즉 지세가 대개 평탄부로 인정되는 곳에서는 답·전 공히 100

Ⅲ. 農林漁業統計

분의 7, 중간부에서는 답·전 공히 100분의 10, 계곡부에서는 답의 경우 100분의 15와 전의 경우 100분의 20이었다.

④ 작물의 실제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계에 의한 면적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면적을 추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확고에 대해서도 농가 각호에 대해서 조사하되 반드시 일정면적에 대한 수량 및 소작료 수납상황을 실시하여 수확고 결정에 참작하도록 하였다.

특히 混作이나 間作 또는 輪作에 대해서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재배면적 계산방법이 1920년의 농업기술관 회의에서 협의되었다.

① 混作의 경우는 각 작물의 작부면적 비율을 목측하여 이를 근거로 경지면적(토지대장 기재면적)을 안분하도록 하였다.

② 한 포장에 2가지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고랑이나 株間으로 재배면적을 산출하거나 단작과 비교하여 당해 작물의 이용면적이 최소되는 비율 만큼 감한 수치에 토지대장 면적을 곱하여 그 작물의 재배면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③ 밭고랑에 심는 대두는 한 고랑의 길이 3칸을 1평으로 환산하도록 하였다.

생산통계의 조사체계는 도의 농업기술관, 도·군·면의 관계직원(통계주임 및 주무·기술원), 리·동의 조사원(때때로 이·동장이 됨)으로 하달되며 조사요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의 체계로 통계지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1927년에는 도·군에 대한 농산물 생산통계 강습회의 개최를 지시하여 면직원에 대한 강습은 農會가 주관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조사항목의 변화 상황을 作物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米 穀〉

미곡에 관한 생산통계는 水稻와 陸稻로 구분되어 재배면적, 수확고, 단보당 수확고를 기본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수도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 구분한 것을 粳米와 나미로 집계하며, 육도에 대해서는 1936년부터 구분하였다. 1912년부터는 품종별 식부면적과 수확고를 별도의 통계로 집계하였다. 품종별 통계는 신품종 등장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12년에는 早神力, 穀良都, 多摩錦, 都, 日出, 1917년에 關山, 1920년에 龜尾, 1922년에 웅정, 中神力,

石山租, 伊勢珍子, 早生大野, 小田代, 1924년에 辯度, 1931년에 多賀鶴, 早生旭, 畿內早 22號, 銀坊主, 大場神力, 山口神力, 赤神力, 陸羽 132號, 복방주 등이다.

〈麥〉

기본적으로 답작 및 전작별로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1926년부터 포함)에 대한 식부면적, 수확고, 단보당 수확고를 조사하였다. 또한 별도 통계로 1912년부터 大麥과 小麥에 대한 우량품종별 재배면적 및 수확고가 조사되었다.

〈豆 類〉

豆類에는 기본적으로 大豆 및 小豆에 대해서 재배면적, 수확고, 1단보당 수확고, 가액을 조사하였으며, 1915년에 녹두가, 1916년에 낙화생이, 1922년부터는 채두 및 완두가 추가되어 기타 두류와 함께 7종류의 작물이 조사되었다. 또한 별도 통계로 1912년부터 대두 우량품종별 재배면적 및 수확고를 조사하였다.

〈雜 穀〉

잡곡에는 조, 피, 기장, 수수, 옥수수, 귀리에 대한 작부면적, 수확고, 단보당 수확고, 가액 등이 조사되었으며, 1913년부터 메밀이 추가되었다.

〈特用作物〉

특용작물은 섬유작물과 섬유작물 이외로 크게 구분하여 섬유작물인 면화, 대마, 저마(모시) 및 들깨와 담배는 통감부 시대에 이어서 계속 조사하였다. 면화는 육지면과 재래면으로 구분되어 재배면적, 수확고, 단보당 수확고와 가액을 조사하였다. 그밖의 섬유작물은 작물별로 수확고만을 조사하였는데 1911년에는 왕골, 1919년에는 닥나무, 1925년에는 청마, 1933년에는 황마와 아마를 추가하였다. 섬유작물 이외로서 들깨로 시작되어 수확고만이 조사되었으며, 1916년에는 참깨, 1925년에 아주까리, 구기자, 제충국, 박하, 1933년에 아미종자가 추가되었다. 인삼과 담배는 專買作物으로서 취급되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별도로 구분 작성되었다. 인삼 통계는 1913년부터 추가되었다.

〈고구마 및 감자〉

Ⅲ. 農林漁業統計

고구마와 감자는 1912년부터 재배면적, 수확고, 단보당 수확고, 가액을 조사하였는데 1934년까지는 채소로 분류하였으나, 1935년 이후부터 독립하여 집계되었다.

〈채 소〉

채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1912년부터 무우와 배추에 대한 재배면적, 수확고, 단보당 수확고, 가액이 조사되기 시작하였으며 통계에 등장한 것이 타작물에 비하여 늦다. 그후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마늘, 곤약, 고추, 미나리 등 11개 종류의 작물은 1931년부터 등장하였다.

〈果 實〉

1913년부터 사과, 배, 포도에 대한 樹數, 수확고, 가액을 조사하였고, 1931년부터 복숭아와 감을 추가하였다. 또한 별도 통계로 사과와 배에 대한 우량품종별 주수 및 수확고를 조사하였다.

〈綠肥作物 및 堆肥〉

녹비에 대해서는 1913년부터 청예대두와 자운영에 대한 재배면적 및 수확고를 조사하였으며, 1925년에 벧칠산이 추가되었다. 퇴비는 1915년에 추가되어 수확고 및 가액이 조사되었다.

(2) 農産物의 加工

농산물의 가공은 개념적으로도 농업에 속하는 것인지 공업에 속하는 것인지가 명료하지 않아 때때로 공업조사나 상업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총독부 시대의 농림어업통계, 특히 「農業統計表」에서 제시한 농산물의 가공에 관한 통계는 몇 짚 가공품으로 새끼, 명석, 가마니에 대한 생산고와 가액이 1933년부터 조사되었으며, 그밖의 가공품은 輸出入 統計에서 나타난다. 다만 농산품을 공업적으로 가공한 전분, 밀가루, 각종 기름(식용), 打棉, 綴棉 등을 비롯하여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가공품을 농산물의 가공으로 보아야 하느냐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가공품에 대한 통계로는 畜産物로부터 시작하여 林産物과 産物은 1911년부터 통계로 작성되었다.

라. 家畜 및 養蠶統計

(1) 家畜

가축은 농가로서는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즉,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목적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나 사육자의 수 및 그 형태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그보다는 頭數를 파악하는 것이 총독부 시대의 가축통계에서는 우선의 과제였다. 따라서 「農業統計表」나 「統計年報」에는 전국적인 사육호수 또는 사육업자수 따위를 알 수가 없다.

가축사육호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조사하여 도에서 발간한 産業統計 또는 農業統計書에 기재하였다.

① 牛에 대해서는 전북, 경북, 황해도, 평남, 평북, 함북의 각 통계서에서 조사되어 있으며

② 馬는 경북, 평남, 함북에서

③ 豚은 전남, 경북, 황해도, 평남, 함북에서

④ 家禽은 전남, 경북, 황해도, 평남, 함북에서 각각 조사되어 있다.

가축 및 가금의 수는 「農業統計表」에서 전국적인 통계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소, 말, 노새, 나귀, 산양은 초기부터 조사되었으며, 1912년에는 면양이 추가되고, 1914년에는 돼지와 닭이 추가되어 총 8개 가축 및 가금이 망라되어 있다. 소에 대해서는 1911년부터 자웅을 구분하였고, 1912년부터는 畜牛에 대한 출산, 폐사, 도살 등의 숫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乳用牛는 별도 통계로 작성되어 두수, 착유량, 착유장 수, 가액이 기본적으로 조사되었고, 1914년부터는 조선종과 외국종의 구분을 실시하여 그 후 1926년부터는 외국종을 다시 세분하여 홀스타인, 에이셔, 기타 등에 대한 우수 조사를 추가하였다. 돼지와 닭에 대해서도 1914년부터 재래종과 개량종에 대한 구분을 하여 頭數를 조사하였다.

그밖에 保護牛로서 種壯牛에 대해서는 통감부 시대부터 계속되나 1913년에는 道有種壯牛에 대한 年令別, 體尺別 두수를 조사하다가 1916년부터 체척 및 연령 분포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1911년부터 家畜市場數가 조사되고, 1916년에는 畜

Ⅲ. 農林漁業統計

牛賣買數가 추가되었다.

양축을 위한 牧草生産은 전국적인 통계는 없으며, 다만 황해도, 평북, 함북지방에서 간헐적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畜産物 加工品으로는 아교에 대해서만 수량 및 가액이 조사되었으나 1916년에 鳥獸肉통조림이 추가되었고, 1918년에는 햄과 베이컨이, 그리고 1930년에는 소세지, 버터, 골분, 血粉이 추가되었다.

(2) 養蠶

양잠업에 관한 통계적 조사는 桑田面積, 養蠶戶數, 掃立卵量, 등이 기본이 되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중에서 상전면적과 養蠶호수는 「總督府統計年報」에 게재되어 있으며, 養蠶生産統計는 「農業統計表」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상전의 단보당 면적의 환산을 위하여, 식재한 뽕나무에 대한 예정 段別統計에는 식재 연수에 따라 초년제인 경우는 1,600본을 1단보로 하며 2년째는 1,200본을, 3년째는 800본을, 4년째는 400본을, 5년 이후는 200본을 1단보로 하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養蠶生産統計의 조사항목을 보면, 家蠶生産에는 춘잠, 하잠, 추잠별로 호수상정 면적, 掃立枚數, 산견액을 기본적으로 조사하였으나, 1925년부터는 하잠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하잠과 추잠을 합쳤다. 또한 이전까지 산견액의 단위는 石으로 하고 있었으나 1935년부터는 톤으로 바뀌게 되었다. 작잠의 生産統計는 사육림 면적이 기본적으로 조사되었고, 1911년부터 춘잠과 추잠별로 사육호수, 방향충수, 산견액 등이 조사되었다. 桑苗의 생산은 잠업취제소 업무성적에서 비롯되나 「農業統計表」에서도 생산인원과 생산고가 게재되어 있다. 蠶種製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조인원과 제송매수(춘잠용, 하추잠용)가 조사되었으며, 家蠶絲 生産통계에는 제로지수, 가미수, 생산액이 조사되었다.

마. 林業調查

(1) 林野調查事業과 林野面積

임업에 관한 통계는 임업 및 제탄업에 종사하는 임업과 수·임야면적과 목재의 축적량 또는 식재상황, 산림의 생산량인 벌채면적 및 목탄 기타 생산물의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 중에서도 임야면적에 대한 조사는 임업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조건이 된다. 다만 임야면적은 농경지와 같이 대인조사 또는 屬人調査를 실시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다. 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인 산림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시 소유자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한 소유자가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산림을 소유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일제는 조선을 합병하기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森林調査를 시도 하였으나 구체화된 것은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인 1917년에 비로소 그 계획을 樹立 실시하고, 1918년 5월 「朝鮮林野調査令」을 제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임야 조사사업의 방법이나, 과정은 대체로 토지조사에 준하여 임야조사 및 測量-査定-不服申請의 재결이라는 단계로 실시하였다. 즉 府尹이나 面長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소유자 및 경계를 조사 測量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하면 보고를 받은 道知事는 소정의 査定基準에 의거하여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한 후 이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1935년에 이르러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되었다.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와 같이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임야에 관련된 통계조사를 충실히 할 목적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國有林野의 창출 극대화 및 日人林業家를 보호 육성하게 한 바가 크다. 따라서 林業에 관한 통계는 총독부 초기부터 임야조사사업 이전까지 조사항목이나 방법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임야면적 통계는 통감부 시대부터 국유림, 사찰림(구체적으로는 사원에서 관리하는 임야), 사유림의 기본 체제를 가지면서 1913년에는 林野概算面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17년부터는 임야개산면적에 대하여 要存國有林 不要存國有林 및 구분미정 국유임야, 사유임야의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保安林面積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1920년부터는 林相區分의 세분류로 成林地, 稚樹地, 無立木地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체계가 1933년부터는 林野面積에 대하여 소유별로는 국유(요존에

Ⅲ. 農林漁業統計

상, 불요존), 공유, 사찰유, 사유의 구분이며, 임상별로는 임목지(침엽수림, 활엽수림, 침활혼유수림, 죽림), 신생지, 미임목지, 화전, 개간적지, 방목적지, 채초적지 등의 이용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체계를 갖추었다.

(2) 造林 기타

조림에 대해서는 1911년부터 국유림 경영과 아울러 민유림의 조림상태에 관한 사업별, 식재면적, 식재본수를 조사하였고, 地方經營造林의 실적도 동일한 사항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紀念植樹의 식재 보수가 1911년에 추가되었다. 이는 國費經營 樹苗圃 통계와 함께 수목에 대한 장려품종의 식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업생산물인 목재생산에 대해서는 총량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으며, 다만 營林廠事業이 집계되고, 그 세부항목은 用材, 薪材, 木炭, 枝葉, 柴草, 竹材, 부산물가액으로 분류되었다.

삼림피해에 대해서는 화재, 병충해, 도벌, 오벌, 풍해, 수해, 설해, 기타 등이 집계되었으며, 1933년부터 砂防事業의 실적이 집계되었다.

바. 漁業統計

(1) 水產業者

어업에 있어서도 수산업자와 어선 및 어망 등의 주요 생산수단, 그리고 어획고 등의 통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어업통계의 기본이 된다.

먼저 수산업자는 어업의 범위를 어떻게 定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므로 1911년부터 집계하는 水產業者 戶口 및 人口의 세분류 항목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1911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수산업자 호수에서 어업, 양식업, 수산물제조업, 수산물판매업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것은 수산업자 인구에도 같은 형식을 취한다. 그후 1913년부터는 수산업자 호수에도 이러한 업종별 분류방식이 採用되어 오다가 1933년에는 戶口, 戶數, 人口가 통합되어 水產業者 戶口-戶數-人口의 체계를 갖추어, 업종별 구분에는 어로, 양식, 제조로 단순화하였다.

(2) 漁船과 漁網

어선은 水產業者用 船舶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船舶이 해당된다. 총독부시대에는 조선형과 일본형의 船舶이 있었던 바, 이를 규모 별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통계였다. 따라서 수산물을 제조 운반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상업용 船舶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총독부통계연보에서는 1913년에 어업, 양식용, 수산물 제조, 판매용을 모두 수산업자용 船舶으로 크게 묶어 분류하였다가 1914년부터는 본래대로 어업 및 양식용, 수산물 제조운반 및 판매용 船舶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船舶에 이어 중요한 생산수단은 漁具이며, 여기에는 現在漁具의 地方別 統計가 집계되었다. 어구로 집계된 종류는 抄網類, 掩網類, 戰網類, 敷網類, 旅網類, 建網類, 受網類, 釣具類, 潛水器, 捕具藻 등이 포함된다.

(3) 漁獲高 등 기타

漁獲高는 어업 종류별과 漁獲品 종류별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1911년에는 朝鮮海에 한정된 出漁船 및 漁獲高가 집계되다가 1913년부터 전해역으로 확대하여 조선해역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1912년부터 어획고 어류별 통계가 추가되고, 1933년에는 다시 漁獲高 種類別이 추가되었다. 특히 日本人의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설치하여 日本人 출어단체(1911년), 日本人 통어단체(1913년), 日本人 어업단체(1920년) 등의 변화를 거쳤고, 日本人의 출신 지방별 어업단체가 별도로 집계되었다. 養殖業에 관한 統計는 1918년에 新設되어 水產養殖의 名稱하에 養殖個所, 養殖面積, 收穫高가 별도항목으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 수산관계로 監業이 있으나 이는 염업조사성적에서 1913년부터 집계하였다.

사. 農林水產物 輸出入統計

농산물(농산품 및 가공품)의 수출입 통계는 「農業統計表」에는 1911년부터 등장하고 있으나, 무역통계 일반에서는 그 이전부터 집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당시의 수출입이 船舶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서 주요 항구에 설치하였던 稅關이 발간한 「貿易統計」에는 당해 항구를 통한 상품의 가액이 표기되어 있다. 세관의 발표가 무역통계로서는 제1차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총독부 통계연보에서도 결국은 이를 기초로 재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貿易統計에 관한 調査項目이 지정되어 세관장 또는 지서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첩을 시달하여 소정양식에 따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는 하였다.

조선총독부 농업통계표에 집계된 농산품 및 가공품 수출입 통계에서 품목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통계를 보면, 1911년부터 수출된 품목은 미곡, 대맥, 소맥, 대두, 소두, 수수, 들깨 등의 곡물과 담배, 인삼, 면화, 잠견 등의 특용작물이 주요 농산품이었고, 소, 우지, 모피, 피혁(주로 우피) 및 비료원료(우골, 건어 등) 등의 축산물·수산물 일부와 청주, 간장 등 가공품이었다. 특히 미곡에 대해서는 玄米, 中白米, 精米, 碎米 등으로 구분되었다. 사과와 밤 등 과실도 중요한 수출품이었으나 1917년부터 등장하였다.

수입통계에서 집계한 품목은 1911년부터 미곡, 두류, 낙화생, 참깨, 곡물 종자 밀가루, 기타 곡물가루, 양파, 고구마, 기타 채소, 채소통조림, 밀감통조림, 사과, 기타 과실, 과일통조림, 차, 커피, 고무, 식초, 된장, 간장, 면류, 연유, 버터, 조수육통조림, 설탕(조당 및 정당), 청주, 맥주, 포도주, 위스키, 담배(엽연초, 엽권연초, 지권연초, 각연초 등), 감초, 주정유지류(유채유, 아마유, 대두유 등), 면사(면직류), 마사류, 모피, 골각, 피혁류 등이었다.

이러한 무역통계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貿易統計表에서 본 朝鮮産業의 상황」(1918)에서 수출입 품목을 크게 나누어 산업상황과의 연관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보면 특히 산업발달에 의해서 농산품의 수출과 농산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의 농림수산물 무역구조가 원료 농산물은 수출하고 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1차상품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 食糧 및 流通統計

食糧統計調査는 食糧作物의 需給에 대한 調査이다. 食糧需要는 公給에서 輸·移出高 및 移越出高를 公제함으로써 산출되기 때문에 食糧統計調査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供給調査이다. 食糧供給調査는 生産高調査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生産高調査는 食糧政策 특히 米穀政策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이 조사결과가 生産政策 또는 價格政策의 基礎資料로 活用되어 왔기 때문이다.

朝鮮에서의 食糧統計調査는 主要食糧作物인 米, 大麥, 小麥, 大豆, 栗 등에 대하여 주로 생산고조사를 중심으로 착수하였다. 생산고조사는 일찌기 舊韓國時代부터 비롯된다. 1908년 農商工部가 실시한 農業統計調査에서 주요식량작물에 대하여 植付面積 및 收穫高를 조사한 것이다.

이때는 農商工部가 한성부윤 및 각 관찰사가 혼령하여 실시한 農業統計調査이다. 이 조사에는 농업종사자 戶口조사, 주요식량작물의 作付面積 및 수확량, 牛馬頭數, 양잠농가호수 및 상전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生産高調査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 매년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다.(韓國中央農會, 1908) 그리고 1909년에는 度支部가 각 재무서에 혼령 각 재무서는 面洞里長 또는 농사정통자를 대상으로 주요농산물생산고조사를 실시하였다. 美, 大麥, 小麥, 大豆, 小豆, 栗, 棉, 罌粟 등에 대한 생산고조사로서, 大·小麥은 각 道, 각 郡에 걸쳐 빠짐없이 조사되어 전국 총생산고로 인정 가능하나, 小豆, 栗, 棉, 罌粟은 조사가 제외된 지역이 있었다.(韓國中央農會, 1909)

(1) 米穀生産高調査

한편 總督府는 1916년에 「農業生産統計作成에 관한 件」을 발표, 농작물 作付面積 및 收穫高 조사를 위한 조사방법 및 조사표준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米, 麥, 大豆, 栗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였다. 그 뒤 1927년 「農產物生産統計의 調査方法改善에 관한 件」에 의해서 조사방법을 다소 변경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매년 「總督府統計年報」를 통하여 公表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고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調査가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朝鮮米가 日本米價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朝鮮米은 合邦以前부터 日本에 輸出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뒤 1912년부터 15년간은 특히 日本의 米價暴騰과 쌀 騷動惹起를 계기로 朝鮮米의 日本移出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米의 對日輸出은 1910년 11萬石에서 1919년 280萬石, 1926년 521萬石으로 急增하였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日本政府는 朝鮮米의 移入에 대한 對策의 하나로서 1928년 2월부터 米穀法第2條를 朝鮮에 시행하였다. 米穀法(1921년)은 원래 日本에서 米價의 하락방지와 農村구제를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輸入稅의 增減 또는 免除를 통하여 米價를 最低米價, 最高米價를 설정하여 미가가 그 최저미가 이하로 하락하면 米穀을 매상하고, 또 최고미가이상으로 상승하면 매상한 米穀을 매도하여 미가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이후 米價維持를 위하여 日本 農林部는 1932년 米穀法을 개정하여 朝鮮米 日本移入을 月別로 平均化하려고 하였고 한편 1933년 3월에는 기존의 米穀法을 대체하여 米穀統制法을 제정하여, 이해 10월에 이 法의 일부를 朝鮮에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法은 農家를 보호한다는 名目으로 최저가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가격을 각각 설정, 米價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시도하면서도 朝鮮에 있어서는 이러한 최고, 최저가격의 설정과 米穀의 매상에 적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米穀生産費調査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米價政策의 展開과정에서 精確한 米需給 調査가 요구되었다. 종래의 조사방법에 의한 생산고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1936년 새로운 조사방법에 의한 米穀生産調査를 착수하였고, 또 이와 함께 米穀現在高 및 米穀移動 狀況도 조사함으로써 日本 國內 米穀需給安定 위주의 米穀需給調査를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의 調査方法 및 調査機關등은 다음과 같다.

생산고조사는 수도작황조사, 제1회 예상수확고조사, 제2회 예상수확고조사 및 실수확고조사 등 4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수도작황조사는 8월 15일 현재의 수도작황에 대한 조사이며, 調査員이 담당조사지구를 순회하면서 수도작황을 조사하고 또 농가의 의견을 듣고서 과거 5개년간의 중간작황을 기준으로 調査區域의 增減비율을 결정한 후 일정한 標準에 따라 良好, 약간 良好, 보통, 약간不

良, 不良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第1回 豫想收穫高調査는 作付面積 및 豫想수확고를 조사하며, 작부면적은 조사원이 미리 地籍略圖地稅名寄帳 등을 참조하여 담당 조사지구를 순회하여 水稻·陸稻別 작부면적을 결정한다. 이를 豫想수확고 조사표에 기입한다. 豫想수확고는 작황을 조사, 그 良否에 따라 上·中·下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농가등의 의견을 듣고서 각 등급별로 1坪當 豫想수확고를 추정, 이를 수도 육도별, 上·中·下별의 작부면적(段步)을 곱하여 豫想수확고를 산출한다. 제2회 豫想수확고 조사도 이에 준한다.

實收穫高 調査는 작부면적, 수확고 및 1段步當 수확고를 조사한다. 작부면적조사는 제2회 豫想수확고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입한다.

수확고는 조사담당지구내를 순회, 그 作況의 良否에 따라 작부면적을 수도·육도별로 上·中·下 등급으로 구분기입한다. 실수확고조사의 특징은 작황의 上·中·下별로 표준치를 선정, 坪세를 수정하기도 한다. 실수확고의 調査期日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에 따라 벼의 刈取時期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立毛일때 坪세를 하여 조사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調査垣은 1府邑面에 平均 8명을 배치한다. 조사원은 府邑面, 학교, 농회직원, 각 府邑面內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道知事가 囑託하여 선정한다. 그리고 조사원은 府尹 또는 邑面長의 지휘를 받으며, 그 담당조사지구내의 調査事務에 종사한다. 또 필요한 府, 郡, 島에는 指導員을 1명 둘수 있다. 지도원은 府郡島, 곡물검사소, 농회 등의 직원 중에서 道知事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원의 사무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정확한 조사를 도모한다.

作 況 標 準

區 分	作 況
良 好	1割이상 增收가 예상되는 경우
약 간 良 好	3分이상 1割미만 增收가 예상되는 경우
보 통	3分미만 增收減收가 예상되는 경우
약 간 不 良	3分이상 1割미만의 減收가 예상되는 경우
不 良	1割이상 減收가 예상되는 경우

이와 같은 조사방법에 의하여 집계된 조사결과는 調査種類別로 보고기한내에 道知事가 總督府에 보고함으로써 總督府에서 전국통계가 집계, 발표 되는 것이다.

(2) 米穀現在高 調査

米穀現在高調査는 調査期일에 있어서 각종 米의 現存하는 數量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米穀의 配給上 매우 필요한 것이며, 또 米穀現存量의 많고 적음에 따라 米價가 좌우되기 때문에 米穀정책의 기초자료로서도 극히 필요한 것이다.

현재고에는 時期的 현재고 외에 場所의 현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 또는 항구에 現存하는 현재고로서 米價변동의 자료로, 또는 日本과의 거래자료로 이용된다. 그러나 현재고조사는 日本, 臺灣과 마찬가지로 時期別로 전국에 존재하는 米곡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고조사는 年6회에 걸쳐 실시하며, 조사기일 및 보고기한은 表와 같다.

조사는 產地別種類別, 所在場所別로 실시하며, 산지별종류별조사는 朝鮮米·日本米·臺灣米 및 外國米로 구분하여 각각 粳, 玄米, 白米별로 조사한다. 또 所在場所別 調査는 ①창고영업자의 창고, ②운송영업자·운송취급영업자 또는 은행의 창고, ③농회·산림조합·금융조합·府邑面·수리조합·産米改良組合 또는 구매조합 등의 창고, ④미곡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창고, 헛간 기타 저장장소 등에 대하여 현존하는 米곡을 조사한다.

府邑面に 米곡현재고 조사원을 두며, 조사원은 1府邑面當 1.5명이다. 조사원은 곡물검사소, 府邑面の 직원 또는 府邑面に 거주하는 자 중에서 道知事の 囑託으로

결정된다. 조사원은 府尹 또는 邑面長의 지휘를 받아 담당조사지구내에서 조사사무를 담당한다.

調査期日 및 報告期限

調 査 回 數	調 査 期 日	報 告 期 限
제 1 회	3.1현재	3.10
제 2 회	5.1현재	5.10
제 3 회	7.1현재	7.10
제 4 회	8.1현재	8.10
제 5 회	9.1현재	9.10
제 6 회	11.1현재	11.10

註：調査期日의오전 零時 현재 현존하는 미곡을 조사한다.

또 府郡島에 미곡현재고 조사지도원을 배치하며, 이 지도원은 미곡생산고조사지도원으로 충당한다.

조사원은 담당조사지구내에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바로 정리집계하여 府尹 또는 邑面長에게 보고하고, 府尹 또는 邑面長은 이 내용을 검사, 이를 府·邑·面計로 정리집계하여 府尹은 도지사에게, 邑面長은 郡守 또는 島司에게 보고 한다. 보고 받은 군수 또는 島司가 이를 검사하고, 다시 郡·島計로 정리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사, 道計로 정리집계하여 보고 기안내에 總督府에 보고한다.

(3) 米穀移動調査

미곡이동조사는 미곡의 需給狀況調査의 자료가 되며, 또 米穀自治管理法이 시행 되는 경우에 統制米穀을 割當決定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米穀의 移動數量을 道를 구역으로 하여 당해 道에서 輸出, 移出 또는 搬出되는 미곡 및 당해 道에 輸入, 移入 또는 搬入되는 미곡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사항은 수출입미곡수량, 이출입미곡수량, 반출입미곡수량에 대하여 각각 產地別, 種類別 및 搬入地 또는 搬出地別로 조사한다.

여기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米穀 輸移出될때 他道の 항구를 통하여 이동하는

Ⅲ. 農林漁業統計

경우로서, 원래의 道에서는 경유하는 항구가 소재하는 道에 搬出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 항구소재지 道에서는 원래 道로 부터 반입한 것으로 조사하며, 또 이 미곡을 반입한 道는 이를 輸出 또는 移出한 것으로 조사한다는 점 등이다.

조사를 위해서 곡물검사소지소에 미곡이동 조사원 및 지도원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해조사지구내에서 調査業務에 종사하도록 한다. 미곡이동조사원이 조사지구내에서 조사를 완료한 때는 즉시 정리집계하여 穀物檢査所를 경유, 總督府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는 종래 조사원이 없을 때의 조사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종래 매년 실시하던 생산고 조사는 청취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새로운 조사는 記帳調査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새로운 조사와 종래의 조사를 비교하면 새로운 조사에 의한 생산고는 종래보다 25.8%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종래의 米生産高調査는 조사방법상의 문제로 실제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現在高調査에 대하여 살펴보면, 米穀의 年度初 供給量에서 現在高 및 輸出高를 공제하면 그 때까지의 消費量을 계산할 수 있다. 또 그 이후의 소비량·이월량 및 수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면 移出豫想量도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朝鮮에서 1937년 3월 1일 現在 現在高調査結果가 802万9千石일때, 이를 근거로 消費量을 계산하고, 移出高를 추정한다. 이와같이 現在高調査에 의하여 소비량의 추이를 할 수 있고, 또 장래의 移出量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米價政策上 매우 중요한 조사자료로 이용하였다.

生産高比較(1936年)

單位：千石，%

區 分	水 稻	陸 稻	計
新調査結果 (A)	19,174	236	19,411
舊調査結果 (B)	15,210	218	15,428
A-B	3,964	18	3,983
B/A	26.1	8.5	25.8

資料：菱本長次, 「朝鮮米の研究」, 千倉書房, 1938.

消費量計算(1937. 3. 1)

單位：千石

區 分		數 量	備 考
供給	合計(A)	19,985	
	移越高	495	
	生産高	19,411	
	輸移入高	79	
需要	合計(B)	11,392	
	輸移出高	3,363	
	現在高	9,029	3월1일 현재
消費量(A-B)		8,593	1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의 消費量

移出高推定

單位：万石

區 分	數 量	備 考
(1) 3월이후예상소비량	341	年間추정소비량 1,200万石에서 과거 소비량 859万石을 공제
(2) 3월이후 需要高	391	(1)과 次年度예상이월고 50万石의 합계
(3) 3월이후예상移出高	412	現在高 803万石에서 (2)를 공제
(4) 2월까지 移出高	334	
(5) 年間豫想移出高	748	(3) + (4)

자. 生産費調査

(1) 概 要

생산비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은 1933년부터이며 생산비는 米穀에 한정하여 조사화되었다. 미곡생산비조사는 농업경영상의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될 뿐 아니라, 米穀統制法(1933년 3월)에 의한 公定價格決定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朝鮮米에 대해서는 公定價格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미곡문제는 日本과 密接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朝鮮米生産費調査는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또 장차 公定價格의 적용을 대비하여 1933년부터 생산비조사는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이듬해인 1934년에는 더욱 확장, 실시되었다. 이와같은 米生産費調査는

Ⅲ. 農林漁業統計

行政機關을 통하여 조사·작성되는 行政調查로서 米價政策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다른 통계조사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한편 米生産費調查는 이러한 行政機關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외에 農事試驗場, 朝鮮農會, 各道 등에 의한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조사도 있었다. 1920년, 1921년에 全羅南道の 小作地生産物의 생산비가 조사된 바 있다. 道內 각 지바으이 小作地를 대상으로 水稻, 大麥, 大豆 및 陸地棉등에 대하여 생산비가 실황에 의한 達觀調查가 실시되었으며(全羅南道, 1923), 또 1920년, 1921년에는 朝鮮農會의 農家經濟調查에서 水稻에 대하여 생산비조사가 행해진 바 있다. 그리고 1922년에는 總督府 農村振興課의 農村振興을 위한 基本調查에서도 전국각지의 10數個부락을 대상으로 米生産費調查가 실시되었다. 좀더 규모가 큰 조사로는 1925년, 1926년의 벼 1石當生産費調查이다. 各道別로 畓에 대하여 濕畓(보통답)과 乾畓(천수답)으로 구분하여, 地主, 自作農, 小作農 각 40명(道別로는 각각 평남 4명, 평북 6명, 기타 각도 3명씩)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벼 1石當生産費를 조사, 발표하였다.(朝鮮總督府, 1929)

이 외에도 「함경북도 산업통계서」에 農家收支狀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米穀生産費調查結果를 발표하고 있으며, 또 朝鮮農會에서도 1934년부터 優良營農調查를 실시, 稻作收支계산에 경영비를 조사, 발표하는 등의 조사도 있다.

이상과 같은 斷片的인 調查는 生産費 調查자체에 調查目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의 일부분으로 生産費調查가 포함된 것이며, 또 調查方法도 청취 등에 의한 達觀調查水準이었기 때문에 調查結果가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調査였다. 따라서 全國的인 규모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3년에 착수된 總督府의 行政系統에 의한 米生産費調查이다. 이 조사는 전국 조사지역에 調査員을 상주시키면서 朝鮮米生産費調查要綱에 의거, 연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2) 生産費調查의 內容

朝鮮에서 미곡생산비조사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18년의 農業技術會議席上에서 비롯된다. 이 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열린 회의에 勸業模範

場으로부터 「米穀生産調査의 方法 및 調査標準에 관한 件」이 제출, 검토된 후 미곡생산비조사에 관한 指示事項이 결정됨으로써 다음해 1919년부터 각 道를 통하여 미곡생산비조사가 착수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道는 道內 3개소 이상이 주요 米產地에 대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中間畝를 선정, 自作農·小作農·地主別로 생산비를 조사할 것.

② 自作農에 대해서는 매매지가, 公課, 水利費, 농사비·농구비등, 종자대, 비료대, 노임, 벼收量, 副收入을, 小作農에 대해서는 종자대, 비료대, 농사비·농구비등, 노임, 소작료공제후 벼수취량을 그리고 地主에 대해서는 매매지가, 공과수리비, 소작관리비, 소작료를 각각 조사 사항으로 할 것.

③ 생산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것

自作農 : $[(지가 \times 이자율) + 공과 + 수리비 + 농사비 + 노임 + 종자대 + 비료대 - 부수입] / 벼收量$

小作農 : $(노임 + 종자대 + 비료대 + 농사비 - 부수입) / 소작료 공제후 벼수취량$

地主 : $[(지가 \times 이자율) + 공과 + 수리비 + 소작관리비] / 소작료$

세분小作의 경우 : $[(지가 \times 이자율) + 공과 + 수리비 + 소작관리비 - 부수입] / 소작료$

④ 조사는 모두 1毛作地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⑤ 토지에 대한 利率은 年 8%로 할 것

⑥ 調査書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總督府에 보고하고, 1919년부터 實行할 것

이상과 같은 調査標準에 의한 이 조사는 總督府 農務課에서 각 道에 지시하여 수년간 계속되었다. 調査를 위하여 1년에 1회 郡의 담당자가 조사농가를 방문, 조사사항을 질문하고, 기억을 살려서 답변한 것을 集計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기에 불충분하였으며, 조사표준이나 방법 등도 각 調査地域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1930년 7월 殖産局長이 각 道에 대하여 「米穀生産費調査에 관한 件」을 통첩, 생산비조사방법 및 조사표준을 제시하여, 각 道의 주요미곡산지 2개소를 선정, 자작농, 소작농 및 지주별로 좀더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 통첩에 의한 조사는 1930년 産米부터 1932년 産米까지 실시되었다. 1933년에 日本에서

Ⅲ. 農林漁業統計

米穀統制法이 제정, 시행되고 公定最低米價로 매상하게 됨으로써 朝鮮에서도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1933년부터 米生産費調査가 체계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전국을 4개의 조사지구로 구분, 각 지구마다 다시 水利組合地와 天水畝地로 나누는 등 전체 18개 조사지역을 선정, 각 지역별로 자작농, 자격겸소작농 및 소작농 각각 2戶씩 총 108戶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에 조사원을 상주시켜, 農林省의 生産費調査標準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玄米1石當 생산비는 20圓 98錢으로 예상한 만큼 저렴하지 않아 1934년 1월 日本議會에서 많은 비판이 야기되었다. 당시 1933年產 玄米1石當 生産費는 日本 22.17圓, 臺灣17.25圓이었다.

이에 總督府는 1934년 4월 조사 담당자 171명, 經費 26만 8천여圓을 확보, 5만 石 이상의 米穀을 생산하는 전국 145개 郡을 조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당 6戶 합계 870戶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조사규모를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朝鮮米穀生産費調査要綱을 발표, 생산비조사 방법을 정비하고, 또 內閣에 米穀生産費調査會를 설치(1934.4), 總理大臣의 감독을 받아서 朝鮮및 臺灣에서 실시하는 미곡생산비조사에 관한 사항 및 조사결과를 審議決定하도록 하는 등 생산비조사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조사체계가 確立하였다. 따라서 1934年產米부터 연속적으로 이와같은 방식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요령은 다음과 같다.

(3) 米生産費調査方法

米穀生産費調査會는 同年 5월 14일부터 수 회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5월 21일의 제3회 총회에서 調査要綱을 결정하게 되었다. 1934년부터 朝鮮 및 臺灣에서 실시하는 미곡생산조사결과는 同研究會가 審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미곡생산비의 調査要綱을 발표하였다. 즉 各道의 調査地域에 調査員을 배치하여 11월말까지 記帳을 완료, 12월 상순에 總督府에서 집계한다. 미곡생산비조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自作農 또는 小作農에 대하여 道知事의 추천을 받아 總督府가 선정한다. 또 調査項目은 ①種子代, ②肥料代 ③勞賃, ④畜力費, ⑤諸材料費, ⑥農會費, ⑦農具費, ⑧租稅公課, ⑨部落協議費 또는 이에 준하는 병충해驅除費, ⑩土地資本利子, ⑪小作料, ⑫벼收納料 등이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水

稻에 대하여 조사하며, 그 생산비는 조사한 각 농가의 벼 1石生産費를 平均하여 산출한다. 이 要綱에 根據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조사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調査地域

생산비조사는 전국 145個所의 조사농가 870호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지역 145個所는 최근 5년간 米穀生産高가 5만石 이상을 기준으로 경기도 17개소, 忠北 16개소, 忠南 13개소, 全北 16개소, 全南 19개소, 慶北 17개소, 慶南 16개소, 황해 12개소, 평남 7개소, 병북 9개소, 강원 7개소, 함남 4개소, 함북 2개소를 지정 하고, 조사대상농가호수는 각 道에서 선정하여 總督府에 보고한다.

1933年産 米生産費 (玄米 1石)

單位：圓

費 目	自作農	自作兼小作農	小作農	平 均
種子代	0.32	0.34	0.34	0.33
勞賃·畜力費	6.94	7.33	7.18	7.15
肥料代	3.29	3.49	2.96	3.25
諸材料費 其他	0.61	0.77	0.92	0.77
農舍費	1.07	0.96	0.99	1.01
農具費	0.43	0.43	0.45	0.44
租稅·公課	2.66	1.57	0.74	1.65
土地資本利子(小作料)	5.11	7.31	8.98	7.13
製玄費	0.50	0.50	0.50	0.50
費用合計	0.983	22.70	23.06	22.23
副收入	1.25	1.27	1.22	1.25
差 生産費	19.68	21.43	21.84	20.98

資料：麥本長次, 「朝鮮米の研究」, 千創書房, 1938.

調査地域은 水利安全畝調査地區와 水利不安全畝調査地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地區別個所數는 각 道內의 水利安全畝과 水利不安全畝의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또 水利安全畝地 및 水利不安全畝地의 지정은 郡別로 面積比率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水利安全畝調査地는 당해 郡내에서 水利安全畝위 平均段當收量에 가까운 水利安全畝地帶에서 선정하고, 水利不安全畝調査地도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Ⅲ. 農林漁業統計

(나) 調査農家

調査員은 조사농가 6호를 담당하고, 이 농가들을 1日 2巡廻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選定標準은 米作을 主業으로 하면서 段當收量이 中間水準인 농가로 하고, 自作兼小作農의 경우는 自小作農別 調査戶數는 全國의 自小作別 농가비율에 준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자작농 145戶 자작소농 290戶, 소작농 435戶 計 870戶로 하고, 각 調査地에서의 調査農家數는 자작농 1戶, 자소작농 2戶, 소작농 3戶 計 6戶로 하였다.

(다) 調査項目

생산비의 조사범위는 直接生産費와 間接生産費를 포함고 있으며, 調査項目은 ①種子代, ②肥料代, ③勞賃, ④富力費, ⑤諸材料費, ⑥農舍費, ⑦農具費, ⑧租稅公課, ⑨部落協議費 또는 이에 準하는 費用(水利費 또는 病蟲害驅除豫防費 등), ⑩土地資本利子, ⑪小作料, ⑫벼檢査手數料, ⑬副收入, ⑭벼收量 등이다. 여기서 ①~⑫項目은 支出, ⑬·⑭項目은 收入이며, 項目別 調査範圍 및 評價方法 등은 다음과 같다.

i) 種子代

종자대는 選種當時에 있어서 농가의 庭前價格에 의하여 평가하고, 단지 購入한 種子原料에 대해서는 購入費用에 기타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算定한다.

ii) 肥料代

肥料代는 購入한 비료에 대해서는 그 購入代金에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선정한다. 購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市價가 있는 것은 施肥當時의 市價로, 市價가 없는 것은 별도로 정하는 肥料成分 價格에 의해 각각 評價한다.

iii) 勞賃

勞賃은 日産勞動 및 季節雇勞動에 대해서는 賃金 및 實物給與平價額의 합계한 金額으로 하고, 自家勞動 및 이에 준하는 勞動 그리고 年雇勞動에 대해서는 作業當時에 있어서 當該地方의 통상 日雇勞賃에 의하여 이를 評價한다.

iv) 畜力費

畜力費는 使役當時에 있어서 당해지방의 同種類의 家畜의 통상 賃借料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지 임차한 家畜에 대해서는 그 賃借料에 實物給與評價價額을 포함하

여 산정한다.

v) 諸材料費

諸材料費는 購入한 것은 그 購入代金에 기타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購入하지 않은 것은 그 중에서 市價가 있는 것은 市價에 의하고, 市價가 없는 것은 그 評價額(原料費, 勞賃 등에 의하여 評價)에 의하여 산정한다. 諸材料는 選終用材料, 病蟲害驅制豫防用材料, 器具機械用材料, 屨包裝材料, 기타 이에 준하는 用途로 사용되는 材料 등에 한정된다.

vi) 農舍費

農舍費는 農舍(住宅, 納屋, 作業場, 肥料舍, 倉庫 기타 工作物)에 대해서는 減價償却費와 修繕費를 합계한 金額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하고 農舍敷地(乾場 기타 農舍附屬地)에 대해서는 類地의 賃借料에 의하여 評價하는 地代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賃借한 農舍 또는 農舍敷地에 대해서는 그 賃借料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한다.

減價償却費는 각 農舍에 대하여 당해 年에 있어서 評價額을 維持可能年數로 나눈 액으로 하고, 修繕費는 통상의 年間修繕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米作負擔比率은 각 農舍 또는 農舍敷地가 米 생산에 제공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vii) 農具費

農具費는 朝鮮總督이 지정한 農具(甲農具)와 이 이외의 農具(乙農具)로 구분하여 評價한다.

甲農具에 대해서는 減價償却費 및 修繕費를 합계한 金額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하며, 賃借한 것에 대해서는 그 賃借料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乙農具에 대해서는 當該年에 新調한 것은 이에 소요된 비용 및 그해의 修繕費를 합계한 金額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하고, 當該年以前에 新調한 것은 당해연도의 수선비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甲農具의 減價償却費는 當該年에 新調한 농구에 대해서는 그 新調에 소요된 비용을 그 농구의 유지가능년수로, 당해년도 이전에 新調된 것은 당해년도에 있어서 그 新調에 요하는 예상비용금액을 新調農具의 유지가능년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또 修繕費는 통상 연간 수선에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하며, 米作負擔比

Ⅲ. 農林漁業統計

率은 각 농구의 米生産에 제공된 비율로 계산한다.

viii) 租稅公課

租稅公課는 1년간에 징수된 조세 기타 공과 金額에 米作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地稅 및 그 부가세
- ② 家屋稅 및 그 부가세
- ③ 雜種稅
- ④ 戶稅, 戶別稅, 學校費賦課金 또는 學校組合費
- ⑤ 水利組合費
- ⑥ 農會費

이상 각 항목별 米作負擔比率은, 첫째 ①의 租稅 및 ⑥의 農會費 중 地稅割에 대해서는 米作조수입의 米作 및 裏作조수입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둘째, ②, ③ 및 ⑤의 조세공과에 대해서는 가옥 기타 課稅物件이 米生産에 제공되는 비율에 따라 정한다. 셋째, ⑥의 농회비 중 會員割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米作조수입의 농가총조수입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넷째, ④의 호세, 호별세, 학교비부과금 또는 학교조합비에 대해서는 操作조수입에 총조수입에 대한 비율 및 畓資産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을 당해 府邑面에서의 호세, 호별세, 학교비부과금 또는 학교조합비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의한 부과금액과 자산상황에 의한 부과금액과의 비율에 의하여 加重平均한 비율로 정한다.

ix) 部落協議費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部落協議費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은 部落協議費 또는 農事實行組合, 農事改良組合, 기타 조합의 조합비로서 부과되는 비용 중에서 米作을 위한 水利費 또는 병충해 구제예방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x) 土地資本利子

토지자본이자는 類地의 통상소작료의 평가액(定租이외의 경우는 類地의 통상 소작료에서 산출한 평가액의 米作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租稅公課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xi) 小作料

소작료는 實納小作料의 평가액(納入費用)에서 장려금액 또는 장려비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미작부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實納小作料 및 장려비의 평가는 벼수확종료당시 농가의 庭前價格에 의하며, 또 미작부담비율은 미작조수입의 미작 및 裏作粗收入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地主로부터 비료 또는 종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실납소작료의 평가액에서 공제하여 금액을 실납소작료의 평가액으로 간주한다.

xii) 벼檢査手數料

벼검사수수료는 조사농가가 생산한 벼에 대하여 穀物檢査所의 벼검사를 받는 경우에 징수되는 벼 石當檢査手數料에 벼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xiii) 副收入

부수입은 수확종료당시 농가의 庭前價格에 의하여 산정한다.

xiv) 벼收量

벼수량은 乾燥調製通程度에 따라 정하며 容量을 기준으로 한다.

(라) 調査基準

미곡생산비조사는 水稻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생산비는 조사대상농가이 벼 1石當 生産費를 平均하여 산정한다.

조사대상농가의 벼 1石當生産費는 앞의 조사항목별 비용의 합계액에서 副收入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벼收量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또 玄米1石當生産費는 현미 1석당 생산에 소용되는 原料벼의 생산비, 현미조제비(포장비포함) 및 현미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에서 搗精時에 발생하는 副收入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와같은 조사를 위하여 각 조사지역에 調査員 1명을 배치하여 6호를 담당하도록 하고, 각 조사농가에 帳簿를 배부하여 조사원이 作業 또는 비용의 발생이 있을 때 마다 記帳하며, 각 작업의 종료시에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總督府에 보고한다. 매년 11월 30일까지 記帳을 완료하여 조사내용 일체를 보고하면, 總督府(農務課)에서 12월 上旬集計整理함으로써 미곡생산비조사는 완료되는 것이다.

(4) 米穀生産費의 調査結果

36개 조사지역의 108호 농가를 대상으로한 1933년도의 미곡생산비는 段當 33

Ⅲ. 農林漁業統計

圓 27錢, 段當玄米收穫量 1石5斗8昇 6合으로서 玄米1石當 생산비는 20圓 98錢 이었다.

1934년의 생산비조사는 전국 145개 조사지역에 자작농 1호, 자작겸소작농 2호, 소작농 3호씩 합계 870호의 농가를 대상위로 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 설치된 「米穀生産費調査會」에서 자작겸 소작농계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자작겸 소작농 중에서 自作地가 7割이상인 농가를 自作農, 小作地가 7割이상인 농가를 小作農에 포함시키고, 여기서 제외되는 214石當 생산비를 산출한후, 이를 玄米換算率에 따라 玄米로 환산한 다음, 여기에 玄米調製費를 추가하여 玄米 1石當, 생산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조선미생산비는 27圓1錢, 玄米段當收穫量은 1析 5斗 2昇이었다.

1935년의 생산비조사는 전국 145개 조사지역에서 조사지역별로 自作農 2호, 小作農 합계 870호의 농가를 선정, 각 농가의 벼1石當 생산비를 산출한 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농가의 것은 제외하고 玄米 1石當生産費를 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전년보다 農舍費, 勞賃 등은 감소하고 비료대, 토지자본이자 또는 소작료 등은 증가하였지만 段當收量이 1割이상 증가하여 결국 玄米1石當生産費는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朝鮮總督府와 日本農林省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생산비는 公表되지 않았다. 즉 農林省에서는 總督府가 調査한 생산비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總督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년에 前年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비조사를 실시, 玄米 1石當生産費를 22圓 62錢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1934년에 비해서 4圓 39錢 즉 16% 감소한 결과이다.

1937년의 생산비조사에서는 조사지역수, 조사방법 등은 종래와 차이없지만 石當 生産費調査結果에 대해서는 日本農林省과 總督府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公表되지 않았다. 1937年産米는 보기 드문 풍작이어서 段當收量은 당상히 증가하였지만 비료대, 노임, 제재료비, 토지자본이자 또는 소작료 현미조제비 등은 전년보다 현저하게 증가, 따라서 玄米1石當生産費도 결국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總督府의 주장에 대하여, 農林省에서는 凶作이었던 前年에 비하여 段當收量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玄米1石當生産費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던 것이

다.

이후 생산비조사는 조사방법에 있어서 큰 변동없이 실시되었으며, 1940년부터는 종래의 米穀외에 보리, 밀, 조, 옥수수, 콩, 팥 등의 雜穀에 대해서 확장, 解放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몇년간의 조사결과로 판단할 때, 朝鮮에서의 米穀生産費는 日本의 그것에 비하여 4,5圓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1934년의 94錢에서 1936년의 2圓 11錢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段當生産費는 朝鮮에서 훨씬 낮은 편이나 段當收量이 적기 때문에 결국 1石當生産費는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日帝下の 米穀生産費調査는 米價政策의 기초자료로 活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사자체는 빠른 속도로 擴張, 발전되었다. 1933년의 18개 지역, 108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生産費調査가 다음해에는 145개 지역 870호의 농가로 擴大된 것도 이와같은 米價政策上的 政策的 要請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的 要請이 조사된 결과에 대하여 日本農林省과 朝鮮總督府간의 의견대립을 야기, 조사결과의 公表를 유보하는등 생산비조사의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生産費調査結果(玄米 1石)

單位：圓

年 度	朝 鮮 (A)	日 本 (B)	A - B
1933	20.99	22.17	1.19
1934	20.01	27.95	0.94
1935	未發表	26.79	-
1936	22.62	24.73	2.11
1937	未發表	26.43	-

資料：菱本長次, 「朝鮮米の研究」, 千倉書房, 1938.

2. 解放後의 農林漁業統計

가. 農業總調查

(1) 調查目的 및 沿革

農業總調查는 農業事業體(農家)를 對象으로 농업에 관한 基本事項을 직접 調查하는 統計調查를 말한다. 이 調查의 목적은 첫째, 農業事業體 構造의 현황과 변동 추세를 把握하여 農業政策과 農業綜合開發計劃 및 地域開發計劃의 樹立에 필요한 基礎政策資料를 제공하고 각종 農業統計의 개선을 위한 基準을 設定하는 것이며, 둘째는 국제적으로 相互 비교할 수 있는 農業統計資料를 蒐集하여 세계의 農產物 生産과 分配 등을 파악함으로써 食糧問題의 해결과 營農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調查이다.

이 調查는 西紀年度의 끝 자리가 0이 되는 해에 定期調查를 실시하고 끝자리가 5가 되는 해에 簡易調查를 실시한다.

世界農業總調查(센서스)는 UN/FAO 前身인 I.I.A(萬國農事會)의 提唱으로 1930년에 52개국이 참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940년에는 第二次 世界大戰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戰後 UN/FAO 勸告에 따라 1950년에 78개국이 參加하여 실시하였으며, 그後 1960년에는 94개국, 1970년에는 116개국, 1980년에는 125개국, 1990년에는 128개국이 각각 참가하여 여섯차례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50년 世界農業總調查에 참가하기 위하여 諸般準備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6.25動亂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1960년에 처음으로 調查日 基準으로 耕地 300坪 이상을 直接 耕作하는 家口를 調查對象으로 88개 項目을 里長 및 篤農家 25,681명을 動員하여 調查하였다.

1970년 農業總調查는 調查日 基準으로

- ① 耕地 10a以上 直接 耕作하는 家口
- ② 高等園藝 特用作物 各各 3a 以上, 果樹 苗木 各各 7a 以上 栽培하는 家口

- ③ 소, 젓소, 고기소를 各各 1마리 以上 飼育하는 家口
- ④ 돼지, 면양, 산양을 3마리 以上 飼育하는 家口
- ⑤ 토끼 40마리 以上, 家禽 30마리 以上 飼育하는 家口
- ⑥ 꿀벌 5통 以上 치는 家口
- ⑦ 누에씨 12g 以上 소잡하는 家口
- ⑧ 複合經營한 農業收入이 1萬원 以上 되는 家口
- ⑨ 家口員中 年間 農業勞動日數 90日以上 同一人이 繼續 30日以上 賃金農業勞動에 從事한 家口

를 調査對象으로 131個의 調査項目을 國民學校 教師 25,762명을 動員하여 調査하였다.

1975년 簡易農業調査는 75개 項目을 統計公務員을 動員하여 農業基本統計調査의 4,993標本調査區에서 調査하였다.

1980년 農業總調査는 142個項目을 調査對象으로 하여 里長, 새마을지도자, 篤農家 20,350명을 動員하여 調査하였다. 調査對象은 1970년 農業總調査時 定義한 對象中에서 “複合經營한 農業收入 1萬원 以上되는 家口”를 “複合經營한 年間 農業收入이 規定한 各號別 收入보다 많은 家口”로 고치고 “賃金農業勞動에 從事한 家口”의 定義는 삭제하고 다른 號의 定義는 同一하였다.

1985년 簡易農業總調査는 98個項目을 統計公務員을 動員하여 農業基本統計調査의 2,011個 標本調査區에서 調査하였다.

1990년 農業總調査는 調査日 基準으로 農家定義에 해당되는 家口를 대상으로 182個 項目을 里長, 새마을지도자, 篤農家 22,353명을 動員하여 調査하였다.

(2) 調査事項

調査項目은 UN/FAO에서 권장하는 項目에 準하여 우리 實情에 맞게 農業事業體調査와 農業地域調査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項目을 調査한다.

(가) 農業事業體調査

i) 農家

① 位置 및 營農主體의 性格

III. 農林漁業統計

② 營農形態別

③ 專兼業別

④ 畝作作業別

⑤ 營農後繼者

ii) 農家人口

① 年齡別 性別 및 學歷別

② 就業形態別

iii) 農耕地

① 田畝別 面積

② 境地所有形態別 面積

③ 境地利用形態別 面積

④ 灌溉施設別 面積

⑤ 牧草地의 面積

iv) 作物

① 一般作物의 收穫面積

② 施設作物의 施設面積과 收穫面積

③ 果樹의 栽培面積

v) 家畜 및 家禽

① 性別 年齡別 飼育頭數

② 飼育頭數

③ 蠶 生產量

vi) 農機具의 機種別 保有臺數

vii) 文化用品의 保有現況

(나) 農業地域調查

i) 地域概況

① 農家口數 非農家口數 轉出入農家口數 人口數

② 官廳~事業體까지의 거리

③ 共同施設現況 農工團體

ii) 地域經濟與件

- ① 生産販賣의 組織과 저장 加工施設狀況
- ② 營農形態別 部落數
- ③ 共同管理動力 農機械臺數
- ④ 부락진입 간선도로사항

iii) 調査對象

農業事業體의 調査對象은 農家와 準農家이며 地域調査의 調査對象은 道の 郡部를 대상으로 邑面의 行政里單位로 調査하며 서울特別市 直轄市와 道の 郡單位 市는 調査에서 제외하였다. 農業事業體의 調査對象은 다음의 定義中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家口 또는 準農家이다.

- ① 調査時點 현재 耕地(논, 밭, 수원지) 10a 以上 직접 耕作하는 家口
- ② 施設作物 3a 以上 果樹나 苗木은 각각 7a 以上 재배하는 家口
- ③ 한우, 젓소, 고기소 1마리 以上 飼育하는 家口
- ④ 돼지, 면양, 산양, 사슴, 여우, 밍크 등 3마리 以上 飼育하는 家口
- ⑤ 토끼 및 家禽 40마리 以上 飼育하는 家口
- ⑥ 꿀벌 5群 以上 치는 家口
- ⑦ 위의 各 項目 規模 以上の 年間 農業收入이 40萬원 以上으로 農業을 계속하는 家口

(3) 調査方法

한 調査區에 1명의 調査員을 配置하여 農家를 일일이 방문 면접하고 所定の 調査表設問에 따라 問答式 他計式으로 調査하였다. 그리고 調査區는 一般調査區와 特別調査區로 區分하여 1990년 人口住宅總調査를 위해 設定한 調査區를 기초로 하여 一般調査區는 農家 80家口內外, 特別調査區(도시 山間 도서지대)는 50家口內外를 1個 調査區로 設定하였다.

(4) 調査結果의 公表

調査項目中 農家口에 特別農家人口 韓肉牛, 乳牛, 돼지, 닭의 飼育家口와 飼育마리수에 대하여 1991년 6월에 速報, 綜合結果報告書는 各道編 全國編으로 1992년

에 發刊公表한다.

나. 農業基本統計調查

(1) 調查目的 및 沿革

農業基本統計調查는 農業經營의 基本要素인 農耕地의 用途別 面積 農家 및 農家人口의 變動상태를 計劃的으로 파악하여 農地의 開發利用을 促進함과 동시에 農業經營의 合理化를 圖謀할 수 있는 農業政策을 수립하고 또한 그 施策效果를 評價함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調查는 政府樹立 以前부터 行政系統을 통하여 매년 12月末을 基準으로 農業을 生業으로 하는 家口를 대상으로 國籍別, 專兼業別, 業態別, 耕地規模別 農家數와 國籍別, 性別, 年齡別, 農家人口 그리고 耕地는 登錄地 未登錄地 田畝面積을 行政統計로 作成하여 왔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田畝의 面積을 平野部, 中間部, 山間部, 溪谷部, 海岸部, 島嶼部로 구분하여 地帶別 面積을 調查하였으며 1961년부터는 農業總調查에서 規定한 農家定義에 따라 調查對象으로 삼았다.

1974년부터 標本調查로 代替하였다. 이 標本調查는 1970년 農業總調查를 위하여 設定한 25,762個의 調查區를 이용하여 多目的 標本設計를 한 것이다. 推定值의 精度를 높이기 위하여 4個의 地帶階層과 6個의 調查區 規模階層의 層化指標에 따라 道單位에서 24個 階層으로 層化하여 各 階層에서 1/10의 抽出率로 2,576個의 標本調查區를 추출하였다. 地帶階層은 都市와 農村을 區分하기 위하여 調查區內의 全家口數에서 차지하는 農家口의 比率이 30% 미만은 都市地帶, 30%~70%는 準都市地帶, 70%~90%는 準農村地帶, 90% 以上은 農村地帶로 層化하고 또한 調查區를 設定할 때, 80家口 內外로 묶었으나 地理的 與件으로 조사구의 크기가 각기 상이하여 農家 20家口 미만에서 20~40, 40~60, 60~80, 80~100, 100家口 以上 등 6個 階層으로 層化하였다.

12월말 調查에는 新正連休로 인하여 調查에 많은 애로가 있어 農家口와 農家人口는 12월 1일로 調查基準日을 변경하였다. 耕地面積은 作物統計의 播種面積調

査를 위하여 標本設計한 面積調查單位區에서, 밭면적은 보통 밭, 수원지로 구분하고 논면적은 1毛作畚, 2毛作畚 耕地整理畚의 灌溉施設別 面積을 調查하였다. 그리고 12月末 基準으로 調查할 때에는 降雪로 現地調查가 不可能할 때가 있어 1975년에 實施한 人口住宅總調查區中 農家口가 있는 49,970個의 調查區를 이용하여 道單位에서 層化하고 各階層에서 1/10의 抽出率로 4,997個의 標本調查區를 任意抽出하였다. 이때의 標本設計는 1974년의 방법과 같다.

1980년부터는 業態別 農家口와 논면적에서 1毛作·2毛作面積, 耕地整理畚面積 調查를 除外하였으며, 1982년에는 1980년 人口住宅總調查區와 農業總調查區를 基準으로 標本設計를 다시 하여 1983년과 1984년에 試驗調查를 거친 후 1985년부터 새로운 標本에서 農家口와 農家人口를 調查하게 되었다. 이때 새로 抽出된 調查區는 有意抽出調查區 234個, 任意抽出調查區 1,884個(市部 392, 郡部 1,492)로 하였다. 그리고 耕地面積은 1986년에 作物播種面積調查를 위하여 새로 設計한 調查單位區에서 1987년부터 新標本으로 調查하였다.

(2) 調查概要

(가) 調查對象

전국의 農家와 農耕地를 대상으로 한다. 農家は 標本調查區內에 居住하는 農家を 대상으로 하며 그 定義는 農業總調查에서 規定한 것과 같다. 農耕地는 전국의 耕地를 地番順으로 약 2ha 크기로 묶은 1,125千個의 調查單位區中에서 標本으로 抽出한 37,126個 調查單位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調查事項

農家に 관한 사항으로는 專兼業別, 耕地規模別 農家を 調查하여 農家人口는 性別, 年齡別, 就業別 農家人口를 調查한다. 그리고 農耕地에 관한 사항에는 논, 밭, 수원지로 구분하여 調查하고 있다.

(다) 調查方法

農家口, 農家人口의 調查는 標本으로 抽出된 調查區內의 全家口를 訪問하여 農家와 非農家を 區分하고 農家に 대하여서는 調查票設問에 따라 面接聽取調查方法으로 調查하고 耕地面積은 標本으로 抽出된 面積標本調查單位區의 要圖를 가지고

Ⅲ. 農林漁業統計

그 單位區를 巡廻하여 耕地의 增減變動狀況을 實測調査한다. 다만 集團의으로 2ha 以上の 規模로 增減(區劃整理 工業團地造成 流失埋沒 干拓 개간 등)이 있는 것은 標本地區와 關係없이 地方行政機關의 協助를 받아 全數調査한다.

(라) 調査結果의 公表

調査한 結果는 速報로서 油印物로 公表하고 「作物統計」와 「農林水産統計年報」에 收錄한다.

다. 作物統計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이 調査는 作物別 播種面積과 生産量을 把握하여 土地利用의 改善, 農産物의 需給 및 增産計劃과 價格安定 農業經營改善 등에 관한 農業政策의 樹立에 그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 統計는 政府樹立 以前부터 行政報告에 의하여 行政統計로 작성하여 왔다. 즉 地方의 邑面生産係職員이 里洞別로 各筆地를 踏査하여 作物別 作況의 上作, 中作, 下作, 災害 收穫皆無로 구분하여 그 面積을 調査時期別로 集計하고 調査員의 主觀에 의해 里洞에서 各 作物의 作況別로 代表가 될 4~5個의 標本筆地를 有意選定하여 達觀調査 및 坪列調査方法으로 作況別單位當收量을 容量으로 推定하고 이를 作況別播種面積에 곱하여 作況別 收量을 산출한 후 다시 이를 合하여 各里洞의 收穫量을 산출한다. 이렇게 推計한 里洞別收穫量을 合하여 邑面의 收量을 산출하고 이를 市郡 및 市道를 거쳐 中央에 報告하면 이를 集計하여 全國의 生産量을 산출하였다.

作物의 播種面積調査와 10a當收量調査는 다음 表와 같이 行政調査方法에서 標本調査方法으로 代替改善하여 왔다.

作物別 標本調査 方法 實施年度

區 分		標本調査方法 實施年度	
		10a當 數量	식부面積
미	곡		
논 벼,	벼	65	74
맥	류		
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밀	66	76
서	류		
봄 감 자, 고 구	마	66	74
가 을 감	자	-	74
두	류		
콩, 녹 두, 기 타 두	팥	74	74
잡	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	79
채	소		
김장 배추, 김장 무, 고추, 마늘	야채	75	79
양	과	79	79
과	실		
사 과,	배	87	79
특 용 작	물		
유 채, 참 깨, 땅	콩	85	79
뽕	밭	-	79
시 설 작	물	-	79
기	타	-	79

(4) 播種面積과 耕地面積의 경우 1971년부터 準備作業을 착수하여 1973년까지 2個年間に 걸쳐 耕地面積과 播種面積調査를 위한 標本設計를 완료하여 1974년부터 標本調査方法으로 代替調査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71년 10월까지 市郡駐在 統計公務員의 指導를 받아 道面産業係職員이 邑面單位에서 土地台帳 農地小票 地籍圖를 이용하여 耕地를 地番順으로 約 2ha 크기로 묶어 標本設計用紙에 移記하였다. 이와 같이 묶은 調査單位區는 全國에서 約 1,136千個가 되었다.

1971년 11월부터 1972년 7월까지 標本設計用紙와 地番圖를 가지고 筆地別로

Ⅲ. 農林漁業統計

踏査하여 田畝의 地目階層 2毛作可能與否 水理安全與否 등의 性質階層, 作物栽培 形態階層 등을 確認調査하여 그 내용을 1972년 8월부터 12월까지 “面積標本設計 카드”에 移記하여 提出하였다. 道에서는 1973년 1월부터 5월까지 邑面單位로 層化指標(田, 畝, 2毛作 水理安全畝 普通作物, 果樹, 菜蔬, 特殊作物)에 따라 이 카드를 層化하고 層化分類한 각 階層에서 任意抽出方法에 의해 1/25의 抽出率로 全國에서 約 45千 標本調査單位區를 抽出하였다.

1974년부터 4월과 7월 年 2회로 논벼, 밭벼, 감자, 고구마, 콩, 팥의 播種面積을 標本調査方法으로 實施하였다. 한해의 調査內容을 검토한 바 調査回數만 늘리면 모든 作物의 播種面積을 標本調査方法으로 代替改善이 가능하게 되므로 1975년부터 4월, 5월, 7월, 9월로 年4회로 늘리어 麥類, 果樹, 菜蔬, 特用作物 및 기타 作物의 播種面積을 試驗調査하였으며 1976년부터 麥類播種面積을 標本調査로 改善하고 3個年間の 試驗調査結果를 기초로 이미 公表하였던 值數를 1955년까지 소 급수정하여 公表하였다. 그리고 雜穀, 其他豆類, 菜蔬, 果樹, 特用作物 및 기타작물과 벼의 新品種 등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4個年間 試驗調査를 實施하고 1979년부터 全作物의 播種面積을 標本調査方法으로 代替하였으며 이미 公表하였던 1975년까지의 數値는 試驗調査한 結果로 修正公表하였다. 급격히 增加되는 施設作物을 위하여 3월에 耕地面積과 같이 調査하였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調査回數를 年4회(5월, 7월, 9월, 11월) 調査하였고 1985년부터는 年6회(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調査하여 왔다. 그리고 벼의 新品種面積調査의 보다 正確을 期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식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8월에 한번 더 調査하도록 하였다.

1973년에 設計한 標本은 개간, 간척, 農地專用 등으로 耕地面積의 增減이 있어 母集團의 變化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1/25의 일률적인 抽出率로 全作物에 대하여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標本の 老朽化로 標本交替의 必要性이 있어 1984년부터 1985년까지 全國 各 市郡의 地籍圖를 복사하고 全國 農耕地를 現地踏査하여 작성한 全國 1,093千個 調査單位區를 基礎로 標本設計에 착수하였다. 調査單位區의 田畝比率에 따라 作物과 中 種류가 다양하므로 田畝比率에 의해 層化하였다. 이 方法은 畝比率 100%인 1毛作, 2毛作으로 區分 1, 2層으로 하여 1/50로

標本을 抽出하고 畝比率 70~100%는 主作物이 普通, 菜蔬, 特作, 果樹로 구분 3, 4, 5, 6層으로 하여 標本을 1/40로 抽出하고 畝比率 30~40%로 主作物이 普通, 菜蔬, 特作, 果樹로 구분 7, 8, 9, 10層으로 하여 標本을 1/24로 抽出하였고 畝比率가 30% 미만도 作物區分에 따라 11, 12, 13, 14層으로 하여 標本을 1/20로 抽出하였다.

위의 같은 方法으로 1986년 10월까지 全國 1,093千個의 母集團單位中에서 約 37千個의 標本調查單位區를 抽出하여 1986년 11월과 1987년 4월에 新標本의 調查値와 비교 검토한 후 1987년부터 新標本으로 交替調查하였다.

(나) 米穀의 경우 行政調查로 植付面積 單位當收量 收穫量을 調查하며 別途로 1952년부터 1956년까지는 米穀優良品種別 植付面積을 調查하고 1957년부터 1964년까지는 品種別 植付面積 單位當收量 生産量을 調查하였으며 1965년부터 米穀單位當收量의 標本調查 代제로 1965년부터 1973년까지는 品種別面積만 行政調查로 把握하였다. 作物播種面積이 標本調查로 代替됨에 따라 1974년부터 統一系 新品種과 普通品種으로만 調查하였다. 그리고 米穀의 粳別植付面積만 1973년까지 調查하였다. 1959년에 美國經濟協助處(USOM)의 勸告에 따라 經濟復興特別基金으로 標本調查에 의한 논벼 單位當收量의 試驗調查를 實施하였다. 全國의 논을 母集團으로 하여 水理安全, 水理不安全, 山間, 中間, 平野地帶 등으로 層化한 후 4段任意抽出(1次: 40個 邑面, 2次: 40個 里洞, 3次: 200個 筆地, 4次: 400個 圃區)方法으로 標本圃區를 選定하고 특별히 訓練시킨 市郡 農事계장과 邑面職員을 동원하여 凹形坪例方法으로 1坪을 例取, 乾燥, 脫穀, 調製, 秤量하는 實測調查를 하였다. 이 調查結果 全國平均 논벼의 白米 10a當收量이 282kg으로 나타나 行政統計는 214kg으로 約 24.1%가 過小評價되고 있었다. 또한 이 試驗調查부터 처음으로 內容을 重量으로 調查하고 72%의 精穀換算率(從前은 1955년 農林部와 FAO間 協定된 換算率은 74%)을 適用하여 白米生産量으로 推定하였다. 이처럼 行政調查와 標本調查간에 큰 差異가 發見되어 政府는 駐韓統計顧問團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4個年間 試驗調查를 實施한 結果 全國平均 25.6%나 行政統計가 과소평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結果를 基礎로 과거의 公表된 數値를 1955년분까지 수정하여 公表하는 한편

Ⅲ. 農林漁業統計

1965년부터 논벼, 밭벼를 막론하고 벼의 10a當收量調査는 道를 母集團으로 標本設計를 하여 標本調査方法으로 1965년~1973년까지는 10,800個圃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23,000個圃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20,000個圃區, 1991년부터는 15,000個圃區에서 調査하였다. 그리고 1973년부터 米穀의 單位當收量調査는 對日請求權資金으로 導入한 製玄機, 玄米選別機, 水分測定器, 玄米千粒重計算器 등을 사용하여 粗穀을 製玄하고 1.6mm以上の 玄米重量을 調査하여 檢査品 2等品 基準으로 한 規格으로 玄白率 92.9%(9분도米)로 換算하여 白米收量으로 公표하였다. 이 밖에 1961년부터 논벼의 收量增減要因을 分析하기 위하여 1m²當株數, 株當有効이삭數, 이삭당 完全粒數를 調査하였으며 1962년부터 「미터法」實施로 面積은 ha, 10a當收量은 kg, 生産量은 M/T으로 發表하였다.

(다) 麥類의 경우 1962~1964년까지 3個年間 農家經濟調査의 調査農家を 대상으로 面接聽取調査方法에 의한 준비조사를 實施한 결과 역시 行政調査에 의한 數値가 過少評價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5년에 全國을 母集團으로 標本設計하여 보리와 쌀보리는 80個 邑面의 160個 里洞에서 1,600個 筆地 3,200個圃區를 調査하고 밀과 호밀은 80個 邑面 160個 里洞 800個 筆地 1,600個圃區를 調査한 결과 보리는 46.7%, 쌀보리는 45.7%, 밀은 45.6%, 호밀은 42.9%로 각각 과소평가되었다. 이리하여 1966년부터 麥類의 單位當收量調査는 道를 母集團으로 하는 標本調査方法으로 轉換하였다. 그리고 試驗調査한 單位當收量과 邑面職員이 調査한 麥類播種面積調査法中에서 標本으로 뽑아 現地確認調査한 바 보리는 95.3%, 밀은 99.4%로 과소평가되고, 쌀보리는 131.9%, 호밀은 114.7%로 과대평가된 資料 및 糧政局에서 修正統一한 精穀換算率(보리는 74%에서 67%, 쌀보리는 85%에서 77%, 밀은 82%에서 100%, 호밀은 75%에서 100%)을 감안하여 1955년까지의 面積單位當收量 生産量을 수정 公表하였다. 또한 1982년부터 보리는 65%, 쌀보리는 72%로 精穀換算率을 變更하였다.

(라) 서류의 경우 1964년과 1965년에 全國을 母集團으로 標本設計한 農家經濟調査의 調査農家 1,200家口에서 播種한 서류播種面積에서 標本을 추출하여 坪掘調査方法으로 調査한 結果 고구마는 2個年平均 44.0%, 감자는 25.0%로 各各 과소평가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基礎로 1955년까지 서류生産量을 수정 公表하는

한편 1966년부터 麥類와 같이 道를 母集團으로 標本調査方法으로 대체 개선하였다.

(마) 기타작물의 경우 1975년부터 1977년까지 고추, 마늘, 김장배추, 김장무우의 單位當收量에 대하여 試驗調査를 實施하고 1978년부터 道를 母集團으로 하는 標本調査方法으로 代替하고, 양파는 1979년부터 標本調査方法으로 改善하였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조는 京畿, 옥수수, 사과, 배는 慶北에서 10a當收量을 試驗調査하였으며, 1977년부터 1978년까지는 主生産地에 대해 조, 옥수수, 수수, 사과, 배의 10a當收量을 試驗調査하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全國을 母集團으로 조, 옥수수, 피, 메밀, 녹두, 강남콩, 땅콩, 참깨, 유채, 들깨,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밀감 등의 10a當收量을 試驗調査로 實施하였으며, 1989년부터 1985년까지는 一部作物을 除外한 10個 作物에 대해 試驗調査를 實施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985년부터 각 道를 母集團으로 참깨, 유채, 땅콩의 10a當收量을 標本調査로 對替하고 사과, 배는 1987년부터 標本調査로 對替하였다. 標本調査로 把握하지 않은 作物은 行政調査로 10a當收量을 調査하고 있다.

(2) 調査事項 및 調査時期

田畝의 播種面積을 調査하여 作物別 田畝의 利用率을 計算하고 作物別로 單位當收量과 水稻의 豐凶要因을 分析하기 위해 1m²當株數 株當有效穗數 穗當完全粒을 調査한다.

播種面積은 年7회에 걸쳐 標本單位區內에 播種되어 있는 作物을 調査하고 있다. 1回調査(4월 5일~4월 15일)는 麥類, 마늘, 양파, 유채, 과수 등 2回調査(5월 10~5월 20일)는 봄감자, 논벼묘판, 도마도, 딸기, 오이, 팽이버섯 등 3回調査(6월 20일~6월 30일)는 고추, 참깨, 땅콩 등 4回調査(7월 10일~7월 20일)는 米穀, 서류, 豆類, 雜穀 등 5回調査(8월 25일~8월 30일)는 논벼의 品種(統一, 一般), 6回調査(9월 20일~9월 30일)는 가을감자, 特用作物, 김장용채소, 가을감자 등 7回調査(11월 15~11월 30일)는 翌年度產 麥類, 마늘, 양파, 유채를 調査한다.

그리고 單位當收量調査는 作況調査, 豫想收穫量調査, 實收穫量調査 등 세번에 걸쳐 實施한다. 이 調査 역시 作物別 生育期間이 서로 다른 관계로 作物에 따라

Ⅲ. 農林漁業統計

調査時期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調査時期는 다음 表와 같다.

作物別 單位當收量 調査時期

作物	작	況	豫想收穫量	實收穫量
米 穀		8.15~8.20	9.15~9.20	9월~10월
麥 類		5.5~5.10	—	6월
감 자		—	—	5월~6월
고 구 마		—	—	9월~11월
콩, 팔		—	—	9월~10월
마 늘, 양 파		5.5~5.10	—	5월~6월
고 추		7.25~7.30	8월, 9월	8월~10월
유 채		—	—	5월~6월
참 깨, 땅 콩		—	—	9월~10월
김장무우, 배추		10.20~10.30	—	10월~11월
사 과, 배		—	—	9월~11월

(3) 調査方法

(가) 播種面積調査는 標本으로 抽出된 調査單位區의 要圖를 作成하여 그것을 가지고 調査時期마다 現地를 踏査하여 筆地別로 目測 또는 實測에 의해 모든 作物의 播種面積을 田畝別로 區分 調査한다.

(나) 單位當收量調査는 調査圃區로 任意抽出된 지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調査한다.

(1) 米穀의 作況 및 豫想量調査는 1m²當 株數 株當莖數 穗當粒數를 調査하여 10a當收量을 推定하고 實收穫量調査는 3條坪例方法으로 3m²를 例取, 脫穀, 調製, 乾燥시킨 후 1/4의 試料를 採取 製玄하고 玄米를 選別하여 1.6mm 以上の 玄米를 秤量하고 玄白率 92.9%로 換算하여 10a當收量을 推定한다.

(2) 麥類의 作況調査는 目測에 의해 推定하고 實收穫量은 調査圃區地點을 중심으로 3m²當 畦長內의 麥類를 例取 脫穀, 調製, 乾燥시킨후 秤量하고 大麥, 裸麥, 麥酒麥은 精穀換算率을 適用하여 精穀으로, 밀과 호밀은 脫穀으로 10a當收量을 推定한다.

(3) 콩, 팥, 땅콩, 참깨, 유채의 實收穫量은 調査圃區地點을 중심으로 3m²當 畦長內의 콩과 팥을 例取, 脫穀, 調製, 乾燥시켜 10a當收量을 推定한다.

(4) 서류의 實收穫量은 調査圃區地點을 중심으로 3m²當 畦長內의 감자와 고구마를 坪掘하여 생서로 10a當收量을 推定한다.

(5) 菜蔬類(김장배추, 무우는 生重量, 고추, 마늘, 양파는 乾燥重量)의 作況은 目測에 의해 推定하고 實收穫量은 調査圃區地點을 中心으로 3m²當 畦長內의 채소를 採取秤量하여 10a當 收量을 推定한다.

(6) 사과, 배의 實收穫量은 標本筆地에서 成果樹中에서 5樹를 標本으로 선정하여 果實重量을 實測調査하여 10a當收量을 調査한다.

(7) 行政調査作物은 地方行政機關을 통하여 10a當收量을 調査報告받아 標本 調査播種面積에 곱하여 實收穫量을 推定한다.

(4) 調査結果의 公表

調査 結果는 調査時期別로 公表하고 「作物統計」와 「農林水産統計年報」에 收錄한다.

(가) 家畜統計調査

家畜의 性別, 年齡別, 用途別頭數 및 飼育家口數의 統計를 地域別로 飼育規模와 家畜飼育狀況을 調査하여 畜産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 調査는 畜産局에서 매년 12月末 基準으로 邑面職員이 각 里洞別로 調査하여 行政報告에 의해 파악하여 오다가 1967년 돼지값 파동으로 統計의 正確性을 期하기 위해 1968년부터 調査統計課에서 擔當하도록 하고 飼育마리수의 변동이 심한 돼지와 닭은 분기별로 年4回, 소, 고기소, 젓소는 6월, 12월, 其他家畜은 12월에 조사하였다.

1974년부터 소, 돼지, 닭 등 主要家畜에 대해서는 「農業基本統計調査」의 調査區에서 標本調査하게 되었으며, 말, 산양, 면양, 토끼 등 기타가축에 대해서는 畜産課에서 매년 12월말 基準으로 行政報告에 의해 調査하였다. 또한 統計의 精度를 높이기 위하여 소는 10마리이상 사육가구, 고기소와 젓소는 1마리이상 사육가구, 돼지는 20마리이상 사육가구, 닭은 2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全數調査하여 標

Ⅲ. 農林漁業統計

本調査値와 합하여 家畜統計를 作成하였다. 1975년부터 調査員의 業務量過多로 연2회(6월, 12월) 調査하고 또한 닭에 대해서 用度別 사육마리수와 계란생산량, 그리고 닭고기 消費量을 調査하게 되었으며, 多目的調査를 위해 새로 標本設計한 「農業基本統計調査」의 調査區에서 이를 調査하였다.

그 후 1979년에 發生한 돼지가격 파동의 영향으로 연2회 調査하던 돼지, 닭에 대해 연4회 分期別로 調査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2년에 새로 標本設計된 「農業基本統計」의 調査區에서 1983~1984년 2년간에 試驗調査를 거쳐 1985년 簡易農業總調査에서부터 이 새로운 標本을 對象으로 家畜統計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게 되었으며, 또한 統計 精度提高를 위해 한우(고기소)는 20頭以上, 젓소 10頭以上, 돼지는 100頭以上, 닭은 2,000首以上 飼育하는 農家は 全數調査하여 標本調査値와 合하였다. 이후 소값 파동에 의해 1986년부터 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4회에 걸쳐 調査하게 되었다.

라. 農林業生産指數

(1) 作成目的 및 沿革

農林業生産指數는 1次統計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加工統計로서 農林業의 生産構造 變動을 計數的으로 산출하여 현실적인 生産動向을 파악하기 위해 生産統計擔當官室에서 작성하였다. 1963년에 指數 작성에 착수하여 1964년에 처음으로 1960년을 기준으로 하여 指數를 작성하였다. 5년마다 基準年度를 변경하는데 基準年 以後 1년씩을 합하여 3개년 廣礎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1960~1965년의 基準年度는 1959~1961년이며, 1986~1990년의 基準年度는 1984~1986년이 된다. 그 후 1975년 基準年度부터는 소, 젓소, 돼지의 연도별 生産量을 年平均 母數×增殖數×弊死率에 의해 계산하게 되었으나 1985년 基準年度부터는 (금년말 마리수-전년말 마리수+도축한 마리수)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산하고 있다. 1984년 이전의 指數는 1984~1986년을 基準年度로 한 1985년의 指數를, 1979~1981년을 基準年度로 한 1985년의 指數로 나누어 接續比率을 산출한 후 이를 舊指數에 곱하여 연결시켰으며, 個別指數는 이러한 接續方法을

쓰지 않고 비교년도의 生産量을 基準年度(1984~1986) 生産量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2) 品目の 選擇

「農林水産統計年報」에 수록된 全品目과 生産量을 推計하고 있는 主要品目の 生産總額과 比較하여 그것의 1/10,000이상에 해당하는 生産額의 品目を 指數작성 品目으로 선정하였으나 農林水産物 加工業과 서비스업은 제외하였다. 다만 林業의 경우 生産額이 生産總額의 1/10,000이상인 品目이라 하더라도 여러 品目を 합해 기타로 되어 있는 品目 중에서 比重이 낮은 品目は 제외하였다. 채택된 品目を 類別로 보면 農業品目으로서 米穀, 麥類, 豆類, 서류, 雜穀 등의 食糧作物, 菜蔬, 果實, 特用作物, 藥用作物, 專賣作物, 양송이, 벗짚 등과 家畜, 畜産物, 蠶 등의 畜産 및 蠶業이며, 林業品目으로서는 用材, 竹材, 林業燃料 기타 林産物 등이다.

(3) 生産額과 加重值 및 指數의 算出

農業生産額의 경우 耕種에 대해서는 「農林水産統計年報」에 수록된 3개년 平均 生産量에 農協中央會調查部에서 조사한 農産物販賣價格의 3개년 단순산술 平均價格을 곱하여 산출하며, 畜産에 대해서는 畜産局에서 推計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林業生産額은 山林廳에서 연례적으로 조사하는 「林産額調査」 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生産額에 대해 1984~1986년 3개년 平均 粗生産額의 品目別 構成比를 農業生産加重值로 이용하며 林業生産加重值는 「林産額調査」에서 1984~1986년 3개년 平均生産額에 의해 산출한다. 그 다음으로 라스파이레스식을 이용하여 個別指數, 類別指數, 農業 및 林業生産指數를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農林業生産指數를 작성하며 그 결과는 「農林水産統計年報」에 게재, 公表한다.

마. 山林基本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山林基本調査 作成은 매 연도말 현재의 林野面積과 林木蓄積을 조사하여 山林政

Ⅲ. 農林漁業統計

策의 樹立資料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每年 12월 31일 현재를 翌年初에 山林廳 林政局 林政課에서 調查하고 있다.

이 調查는 일찌기 日帝의 침략과 더불어 1910년부터 1916년까지 林籍調查에 의한 實態調查를 실시한 바 있고, 1917년부터 해방시까지의 行政統計調查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해방이후 美軍政期에는 實際調查는 없이 日帝時代의 자료를 行政統計方式에 의거 매년 실시해 왔다.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農林部는 남한이 山林資源을 推定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山林資源調查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따라서 1962년부터는 實際現地調查를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1970년에는 航空寫眞에 의한 第1次 山林實態調查를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1차 治山綠化事業과 工業化로 인해 林地 및 林相이 급속히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1980년에 제2차 山林實態調查를 실시하였다.

이후 山林廳은 매 10년마다 山林資源 現況을 조사하여 正確한 山林基本統計를 작성하고 山林基本計劃樹立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1990년에 제3차 山林實態를 조사하였다.

(2) 調查對象 및 調查事項

전국의 山林에 대하여 所有別, 所管別, 地種別, 林地別, 林相別, 齡級別 林野面積과 林木蓄積을 對象으로 調查를 실시하고 있다.

調查事項은 ① 所有 및 所管 ② 林地 및 林相 ③ 齡級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所有는 國有林, 民有林으로 구분하고 國有林을 山林廳所管의 營林署 林業試驗場, 林木育種研究所 및 道所管國有林과 貸付 國有林, 他部處所管의 國有林으로 세분하고 民有林은 公有林과 私有林으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地種은 林木生産을 목적으로 하는 施業地와 保安林, 採種林, 試驗林 및 開發制限區域인 施業制限地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林地 및 立相은 立木地(喬木의 鬱廢度 30% 이상인 林分 또는 1ha當 1,200本 이상의 침엽수 維樹가 1,600本 이상의 활엽수 維樹가 고르게 生育하고 있는 林分)와 無立木地로 크게 구분하고 立木地는 다시 針葉樹가 75% 이상인 針葉樹林, 濶葉樹가 75% 이상인 濶葉樹林, 針葉樹나 濶葉樹가 25% 이상 75% 미만의 林地인 混濬林, 그리고 대나무의 生立木數가 75% 이상의 林地인 竹林으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無立木地는 다시 地被와 樹冠의 總 被覆度가 50% 이상인 未立木地, 地被나 樹冠의 總 被覆度가 50% 이하인 荒廢地, 傾斜度 20° 미만의 山林이 불법 개간된 耕作地인 開墾地, 그리고 道路 岩石地 其他 放牧地 등과 같이 林木育成에 쓰이지 않는 除地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齡級은 I 齡級으로부터 IV 齡級까지 각각 1~10년생, 11~20년생, 21~30년생, 31~40년생, 41~50년생, 51년생 이상으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調查方法 및 結果의 公表

山林基本調査는 市·郡·區 및 營林署의 管理所를 최초 調查單位로 한 行政統計 調查方法에 의한다. 즉 調查年度中 林野面積과 林木蓄積의 增減要因을 조사하고 이를 前年年末 統計値에 加減하여 年度末 현재의 統計를 確定한다.

이렇게 하여 수집·조사한 統計의 結果는 「林業統計要覽」에 掲載 公表한다.

바. 全國山林實態調查

(1) 調查目的 및 沿革

일정 時點의 全國의 山林實態를 正確히 파악하여 계획적인 山林綠化의 基盤造成과 山林行政의 科學化를 위한 山林政策資料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山林廳 林業試驗場 資源調查部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1964년 6월 農林部는 UNSF/FAO와 산림조사사업을 위한 運營計劃書에 합의하고 이에 의거 同年 11월 9일 UN韓國山林調查業機構를 발족하고 강원도 및 경상북도 일부지역 國有林 약 120만 ha를 대상으로 山林調査를 실시하였다. 이 조

사에는 임업용 항공사진이 최초로 촬영되었으며 자료분석에도 FACOMⅢ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근대적인 山林調査方法이 최초로 사용되었고 통계학적인 調查計劃과 資料分析方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실정에 맞는 山林調査方法이 정립되었다.

전국적 규모의 제1차 山林實態調査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전국 844만 ha (비행금지구역 및 소도시지역 제외)를 순수한 국내기술진에 의해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山林資源現況을 파악함으로써 山林資源 조사업무에는 물론 각종 山林政策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山林事業의 계획 및 確認業務에 效率的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78~1981년에 걸쳐 第2次 全國山林實態調査를 실시하였으며 1985년부터 1990년 현재까지 제3차 山林實態調査가 진행되고 있다.

(2) 調查對象 및 調查事項

이는 山林基本調査에서와 同一하게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所有別, 所管別, 地種別, 林地別, 林相別 및 齡級別 林木面積과 林木蓄積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調查方法 및 結果의 公表

調查對象地域은 全國林野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市·道·營林署別로區分, 전국은 총 蓄積을 신뢰도 95%에서 推定誤差 5% 이내로 하며, 市·道·營林署別로는 추정 오차율이 20% 이상이 되는 市·道·營林署에 대해서는 보조표본점을 추가배치하여 推定誤差率을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林相區分은 1 : 15,000항공사진상에서 立木地는 林種別, 林相別, 經級別, 齡級別 및 鬱廢度別로, 無立木地는 未立木地, 荒廢地, 開墾地, 除地 등으로 구분하고 사진상에서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現地對照하여 확정한다. 항공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일부지역은 타기관에서 촬영한 1 : 20,000~1 : 5,000사진을 이용하고 잔여 지역은 現地調査를 실시한다.

林相圖作成은 國立地理院에서 제작한 1 : 25,000지형도 綜合陽版을 기초로 하여 사진상에 구분된 내용을 圖化機로 基圖上에 移寫하여 林相原圖를 작성한다.

林地所有區分은 市·道·營林署에 비치 보관중인 林野圖를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고 이를 縮尺 1 : 25,000으로 조정 인화하여 關係臺帳에 의거 소유경계를 구분하고 이를 林相原圖上에 옮겨 林地所有境界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수집 조사된 統計의 結果는 「林業統計要覽」을 통해 公表한다.

사. 林産額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林産額의 調査 作成은 每年度中の 林産物生産量과 價額을 조사하여 山林政策의 樹立과 國民總生産 算出資料로 活用하기 위한 것으로서 山林廳 林相局 林政課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用材 13個品目에 대하여 數量 및 金額을 조사하였고 해방후부터 휴전이 성립하는 동안의 混亂期인 1945~1953년은 一部 品目만 조사하였다. 195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50~55個品目에 대하여 數量 및 金額을 調査하고 있는데 이는 1976년 1월 27일 一般統計 제134-21-06으로 承認된 바 있다.

(2) 調査品目 및 調査範圍

林産額調査의 品目은 총 11종 51個品目으로 구체적으로는 用材, 竹材, 燃料(木炭, 장작, 지엽, 기타의 4개로 구분), 農用資材(綠肥, 推肥, 飼料의 3개로 細分), 種實(밤, 대추, 호도, 잣, 도토리, 낙엽송, 은행, 유등, 동백, 비자, 산딸기, 소나무류, 기타의 13개로 세분), 버섯(송이, 목이, 느타리, 표고, 기타의 5개로 세분), 樹脂(생송지, 칠액, 기타의 3개로 세분), 탄닌원료(오배자, 오리나무구과, 기타의 3개로 세분), 섬유원료(갈지, 닥나무, 산닥나무, 싸리나무껍질, 기타의 5개로 세분), 藥用(산수유, 황벽나무껍질, 약초, 기타의 4개로 세분), 기타(굴참나무껍질, 죽순, 산나물, 떡갈나무잎, 멧게잎, 다람쥐, 造林, 養苗, 기타의 9개로 세분) 등이다.

위의 品目들은 區·市·郡 管理所를 최초의 生産量 調査單位로 하며 市·道·營林署 林業試驗場, 林木育種研究所別로 調査 集計하고 있다.

調査範圍는 生産地別 乾燥形態別로 크게 구분되는데 生産地別 調査範圍는 다시 山林內에서 생산되는 것(燃料, 農用資材, 藥草, 藥用中 其他 산나물), 山林內外를

Ⅲ. 農林漁業統計

불문(前記 品目を 제외한 전품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세분하고 乾燥形態別 調査範圍는 다시 乾燥狀態로 조사하는 품목(표고, 목이, 燃料, 대추, 잣, 섬유원료, 藥用), 非乾燥狀態 또는 自然狀態로 조사하는 것(前記品目 이외의 전품목)으로 세분한다.

(3) 調査方法 및 結果의 公表

林産額의 調査方法은 數量調査와 金額調査가 있는데 數量調査는 品目別로 生産時期부터 出荷時期까지 조사하되 分期別, 月別, 旬期別로 조사한다. 調査品目은 山林廳 林政課에서 조사하는 行政統計 活用品目(用材, 竹材, 木炭, 밤, 송이, 갈져, 표고, 굴피, 생송지, 其他樹脂, 멩게잎, 떡갈잎, 다람쥐, 落葉松種實, 소나무種實, 造林, 養苗 등 17개 品目)과 一線 區·市·郡 管理所에서 조사하는 現地調査品目(行政統計 活用品目を 제외한 34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調査單位는 미터법에 의한 計量單位로 조사하는데 品目에 따라 m²단위 조사품목(用材), kg단위 조사품목(種實, 버섯, 섬유원료, 수지, 탄닌원료, 약용, 굴참나무껍질, 죽순, 산나물, 기타), 상자단위 조사품목(떡갈나무잎, 멩게잎), M³/T단위 조사품목(燃料, 農用資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林産額 金額調査는 ① 市·道 營林署單位로 1개품목 1개단가를 적용해서 生産者가 1차 賣渡하는 價格調査, ② 自然消費品目은 生産費 基準으로 政府勞動單價 適用하여 調査, ③ 市·道別로 品目別 生産量 80% 이상 점유하는 市·郡을 選定하여 市·道 營林署에서 調査, ④ 生産부터 出荷終了時까지 月別로 日程을 정하여 調査, ⑤ 떡갈잎, 멩게잎, 송이 등과 같이 出組 等에서 獨占 蒐集하는 品目은 蒐集機關의 引受價格을 適用하는 등의 方法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수집 조사된 統計의 結果는 「林業統計要覽」에 掲載·公表하고 있다.

아. 漁業總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漁業總調査는 漁業의 生産構造 就業狀況 및 漁民의 生活狀態 등을 計數的으로

把握하여 農水産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 提供하고 國際相互間의 比較分析資料로 使用하여 各種 水産統計의 標本設計에 必要한 基本資料를 提供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에 漁業센서스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처음 실시한 이래 매 10년마다 西紀年度의 끝자리가 0인 해에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1일을 基準時點으로 정하였다. 또한 끝자리가 5인 해에는 簡易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197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제1회 漁業센서스는 UN/FAO의 권고에 의해 704명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실시하였다. 이 때의 조사대상은 조사실시 前 1년동안에 판매를 목적으로 海面 및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의 採捕 혹은 養殖業을 1개월 이상 경영한 사업체, 그리고 가구수나 가구원이 他人이 경영하는 漁業事業體에 고용되어 종사하고 있는 가구를 對象으로 하였다.

198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제2차 漁業센서스에서는 1,528명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調査對象은 조사실시 前 1년 동안에 海面 및 內水面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水産動植物의 採捕, 採藻, 養殖業을 1개월 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調査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11월 15일을 기준으로 256개의 「어업기본통계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법에 의해 簡易漁業센서스를 실시하였다.

1990년 12월 1일을 基準으로 實施한 제3차 漁業總調査는 2,637명의 調査員을 動員하여 調査하였다. 그 調査對象은 調査實施 전 1년동안에 海面 및 內水面에서 販賣를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의 採捕, 採藻, 養殖業을 1個月 以上 經營한 家口와 調査實施 전 1年間に 1個月 以上 直接自己漁業을 하지 않고 他人이 經營하는 水産動植物의 採取나 養殖業을 하는 事業體에 고용된 漁業從事者가 있는 家口를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2) 調査事項

事業體에 관한 사항은 經營組織, 漁業의 種類, 使用漁船, 養殖施設, 漁業活動 및 漁業狀況 등을, 漁家에 관한 사항은 形態別 家口(漁船使用), 養殖別 家口, 專兼業別 家口, 文化用品 및 자재보유현황 漁家口의 轉出入 등을, 漁家人口에 관한 사항

은 家口員에 대해 性別, 年齡別, 學歷別, 從事分野別 人員 영어승계자등, 수산연관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漁業施設規模에 대해 제1종, 제2종, 제3종, 소규모 漁港 등을, 수산물유통 및 보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통시설, 製氷冷凍, 보급시설 등을, 수산제조가공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경영상황, 생산능력, 從業員實態 등을 調査한다.

(3) 調査方法和 結果의 公表

한 調査區에 1명의 調査員을 配置하여 漁家口와 事業體를 訪問하여 面接調査方法으로 調査하며 그 調査結果는 “漁業總調査報告書”를 發刊하여 公表한다.

자. 漁業基本統計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漁業家口, 漁業人口, 漁業從事者, 漁業의 形態, 漁船保有現況 등을 조사하여 漁業센서스조사 기간중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이 조사는 1948년부터 매년 水産廳에서 地方漁業協同組合을 통해 조사해 오다가 1971년 7월부터 종래의 水産業基本統計調査에서 어업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시켜 표본조사방법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이때의 조사방법은 調査員에 의한 他計式 面接調査 방식이었다. 또한 어업센서스에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1970년 어업센서스에서 조사구 704개를 모집단으로 하고 어업센서스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標本設計를 하였다. 그리하여 層化指標로써 동해안 116調査區, 남해안 462調査區, 서해안 126調査區로 분류하고 각 해안별로 任意系統抽出 방법으로 동해안 30개, 서해안 30개, 남해안 50개의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여 조사하였다.

그후 1978년 농수산부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조사 업무는 수산청에서 수산통계관실로 이관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100가구 내외를 기준으로 설정한 1980년 어업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여 市郡別, 海岸別로 層化하여 256개의 標本調査區를 任意系統抽出하여 조사하였다.

(2) 調査對象 및 調査事項

이 조사의 조사대상은 첫째, 어업센서스의 調査區 및 調査結果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標本抽出한 調査區의 모든 漁家, 둘째, 家口主나 家口員이 조사실시전 1년 동안에 판매 목적으로 수산물을 採捕하거나 양식업을 경영한 적이 있는 가구, 셋째 他人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 있는 家口 등이다. 이들을 對象으로 조사하는 사항은 漁家, 漁家家口員, 漁業從事者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업센서스의 해당 조사사항과 동일하다.

(3) 調査方法 및 結果의 公表

調査員이 調査對象 漁家を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他計式面接方式으로 조사하며 그 조사결과는 「漁業水産統計年報」에 게재 발표되고 있다.

차. 漁業生産高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이 調査는 漁業生産의 動態를 파악하여 수산정책의 樹立과 수산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調査로서 1964년 1월 1일부터 水産資源保護令에 의거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8년 4월 12일 農林部の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조사는 農林水産部 農水産統計官室로 이관하였다.

1972년까지는 水産業協同組合 單位組合에서 작성한 업무통계상의 委販量에 일정비율의 非委販量을 가산하여 一般海面漁業生産量과 淺海樣式漁業生産量을 파악하였으며, 內水面漁業生産量은 行政系統을 통계 全數調査하였다. 또한 捕鯨, 漁業, 遠洋漁業의 생산량은 行政情報에 의해 파악하였다. 그 후 1973~1978년에는 漁業生産量調査規則에 의하여 委販量과 非委販量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委販量은 水協 共同魚市場과 水協中央會 산하 共販場의 委託販賣量과 水協中央會에 보고되는 系統販賣된 漁獲量을 조사하였고, 非委託販賣量은 漁村契를 통해 全數調査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一般海面 및 淺海養殖漁業의 非系統生産調査를 全數調査에서 標本調査로 대체하기 위하여 標本設計를 한 후 1980년부터 2년간의 試

Ⅲ. 農林漁業統計

驗調查에서 標本調查로 대체하기 위하여 標本設計를 한 후 1980년부터 2년간의 試驗調查 끝에 1982년부터 標本調查 방식으로 生産量調查를 하게 되었다.

(2) 調查對象 및 調查事項

調查對象은 첫째, 海面 및 內水面漁業에 의한 生産量과 生産額, 둘째, 관공서, 학교, 훈련소 등에서 試驗研究 목적으로 獲得한 漁獲物을 판매하였을 경우의 生産量과 生産額 등이다.

조사사항으로는 海面漁業의 경우 어획량과 어획금액 및 1kg당 年平均價格, 淺海養殖業과 內水面養殖業의 경우 收穫量과 1kg당 年平均價格, 內水面漁業의 경우 어획량과 1kg당 年平均價格 등이다.

(3) 調查時期와 調查方法

生産高調查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조사하며 生産額 조사는 年1회 실시하는데 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遠洋漁業의 경우 항해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漁撈體別, 月別로 원양어업자의 自計式 申告에 의해 조사한다.

(나) 一般海面漁業의 경우 系統販賣된 漁獲量은 地區別水協 또는 계통판매업무를 취급하는 業種別水協에서 業種別, 魚種別, 日日漁獲量을 판매전표나 장부를 근거로 월별로 조사 집계하여 系統販賣되지 않은 어획량은 표본어가에 日計簿를 비치시켜 非系統販賣量과 그 금액을 어가로 하여금 직접 기록케 하여 自計式으로 조사한다. 또한 漁獲金額의 경우 계통판매 가격은 어종별로 1kg당 年平均價格을 이용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계통판매되지 않은 어획물의 가격은 日計簿上의 실제 판매가격의 어종별 1kg당 年平均價格을 이용한다.

(다) 淺海養殖業은 일반해면어업에 준한다.

(라) 內水面漁業, 養殖業의 경우 새마을 양식사업에 의한 養殖量은 새마을 양식계장이 매월 그 생산량을 조사하고 그외의 것은 免許·許可·申告 어업자가 매월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수치이다.

(4) 結果의 公表

조사결과는 「어업생산량통계」와 「농림수산물통계연보」에 수록 공표한다.

카. 農業 觀測調查

(1) 調查目的 및 沿革

農業觀測은 農産物의 供給과 需要, 價格 그밖에 農業에 關聯된 諸般事情에 대한 未來의 事項을 豫測하여 農民들로 하여금 合理的인 營農計劃을 樹立하여 시행하는데 指針이 되도록 弘報하고, 農業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 利用하고 農産物需給과 價格의 安定을 期하여 適正價格을 維持하므로써 生産者나 消費者를 同時에 保護할 수 있음은 勿論 國家的으로 資源의 浪費가 없는 能率的인 農業發展에 寄與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1962년 5월 當時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指示覺書에 의하면 農林部 農業經濟課에서 農業觀測事業을 시작하여 擔當機關의 設置 觀測要員의 確保, 觀測要員의 海外訓練 등 同事業의 準備作業을 着手하였으며 農業觀測 審議委員會 規程을 制定하여 1962년 6월에 閣令으로 公布하였다. 그러나 觀測에 必要한 正確한 基礎統計의 부족, 高度의 觀測技術의 確保困難 등의 이유로 農業觀測의 실질적인 업무인 計量的 豫測業務를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어서 1965년 8월에 農協中央會로 동사업을 위촉하게 되었다. 이를 委囑받은 農協은 專門家의 招聘, 외국 農業觀測資料의 入手研究, 國內統計資料의 整備와 觀測技法의 發展 등으로 실질적인 觀測業務의 기틀이 잡혔으며, 1966년에는 農業觀測事業實施에 필요한 기획을 樹立하여 1967년 2월에 農林部 農家經濟調查員에 의하여 農家經濟 標本農家 1,182家口를 調查對象으로 처음 15개 作物에 대하여 農家植付意向調查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 일부 作物 生産의 地域的 特殊性이 결여되어 本調查를 위한 標本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았으므로 1968년에 전국 主產地農家를 모집단으로 한 137개 調查區를 선정하여 여기에서 確率抽出方法으로 2,055家口의 標本農家를 추출하여 1969년부터 耕種作物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觀測要員의 資質向上, 觀測技法의 발전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기존 統計의 不正確性 때문에 農業觀測調查結果를 公表하지 못하였다. 1973년부터는 經濟作物 중심으로 農業觀測을 실시

Ⅲ. 農林漁業統計

하였다.

1974년부터 主要統計調査가 標本調査 방법으로 대체됨으로 기존 통계가 整備되고 統計의 正確性이 提高 됨으로써 農業觀測調査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農業觀測에 필요한 주요통계는 정부에서 작성하고 또한 외국에서 訓練을 받고 觀測事業을 담당할 수 있는 人的資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1974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6년에 農協으로부터 國立農業經濟研究所에 農業觀測事業이 이관되어 觀測類型的 整頓과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1978년 農水産部 職制 개정으로 國立農業經濟研究所가 廢止되고 農水産部 農業統計管室로 農業觀測業務가 이관되어 作物의 植付意向調査, 植付面積調査, 作況調査, 豫想收穫量調査 등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항목은 夏期作物에 논벼의 新品種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등 7개 작물을 冬期作物은 보리, 쌀보리, 밀, 마늘, 양파, 유채 등 7개작물이었고 김장용으로 무우, 배추를 조사하였다. 표본은 農水産統計出張所 職員의 業務量과 調査結果의 正確도를 높이고 또한 다른 統計調査 등을 감안하여 多目的 標本家口와 個別標本家口로 구분하여 標本設計를 하였다. 多目的 標本家口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作物을 農家經濟調査地區 3,375家口에서 여러 작물을 조사하였고, 個別標本家口는 地域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채, 땅콩, 양파 등은 12월에 실시하는 農業基本統計調査時 파악하였던 자료에 의하여 각각 2,000家口씩을 뽑아 조사하였다. 그리고 需要 및 價格에 대한 觀測은 1980년부터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 政策課題로 위촉하였다. 農水産部の 위촉을 받아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 觀測業務를 위하여 農業觀測事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農業觀測事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정리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觀測을 위해 이용된 방법은 計量經濟學的 分析方法과 專門家の 直觀에 의한 判斷方法이었다. 計量經濟學的 분석은 時系列分析技法과 因果分析法을 이용했는데 主로 수요함수, 공급함수, 가격변동 등의 분석에 사용했으며, 그리고 直觀的 판단법은 計量經濟學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 1981년 9월을 觀測時點으로 1981년 9월부터 1982년 6월까지의 단기관측 품목은 농작물중에서 쌀, 보리, 감자, 고구마, 고추, 마

늘, 양파, 참깨, 김장배추, 김장무우, 땅콩, 사과, 배, 감귤, 감, 밤 등 16개품목, 축산물 5개품목, 수산물 9개품목이었다.

(2) 調査時期와 調査方法

고추, 마늘, 땅콩, 고냉지무우, 배추, 유채는 植付豫定面積에 대하여 각기 播種 5개월~6개월前과 播種 3개월~4개월前, 播種 1개월~2개월前으로 구분하여 3回 調査하고 논벼, 맥류, 감자 등은 播種 5개월~6개월前과 播種 1개월~2개월前으로 구분하여 農民들의 植付意思를 2回 調査한다.

標本農家를 調査時期마다 訪問하여 他計式 面接調査方式으로 調査한다.

(3) 調査對象

고추, 마늘, 양파, 고냉지무우, 배추, 유채는 事業局課에서 정한 生産地에서 標本으로 抽出한 農家를, 논벼, 콩 등의 작물은 農家經濟調査 標本家口를 調査對象으로 調査한다.

(4) 調査事項

夏期作物은 논벼,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이며 冬期作物은 보리, 쌀, 보리, 맥주보리, 밀, 마늘, 양파, 유채인데, 고냉지 및 김장용 무우, 배추와 함께 전년도 植付面積과 當年 植付豫定面積 및 植付豫定面積의 증감사유를 調査한다.

(5) 調査結果의 公表

調査結果의 精度 氣象與件에 따라 作況의 變化가 심한 品目에 대한 위험성, 流通上 商人들의 問題 등으로 아직까지는 內部資料로만 利用하였으나 漸次的으로 더욱 研究發展시켜서 刊行物로 發表할 계획이다.

타. 糧穀消費量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한국의 양곡통계는 정부수립이후 지속발전하였고 특히 60年代의 開發體制를 지

늘, 양파, 참깨, 김장배추, 김장무우, 땅콩, 사과, 배, 감귤, 감, 밤 등 16개품목, 축산물 5개품목, 수산물 9개품목이었다.

(2) 調査時期와 調査方法

고추, 마늘, 땅콩, 고냉지무우, 배추, 유채는 植付豫定面積에 대하여 각기 播種 5개월~6개월前과 播種 3개월~4개월前, 播種 1개월~2개월前으로 구분하여 3回 調査하고 논벼, 맥류, 감자 등은 播種 5개월~6개월前과 播種 1개월~2개월前으로 구분하여 農民들의 植付意思를 2回 調査한다.

標本農家를 調査時期마다 訪問하여 他計式 面接調査方式으로 調査한다.

(3) 調査對象

고추, 마늘, 양파, 고냉지무우, 배추, 유채는 事業局課에서 정한 生産地에서 標本으로 抽出한 農家를, 논벼, 콩 등의 작물은 農家經濟調査 標本家口를 調査對象으로 調査한다.

(4) 調査事項

夏期作物은 논벼, 콩, 땅콩,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이며 冬期作物은 보리, 쌀 보리, 맥주보리, 밀, 마늘, 양파, 유채인데, 고냉지 및 김장용 무우, 배추와 함께 前년도 植付面積과 當年 植付豫定面積 및 植付豫定面積의 증감사유를 調査한다.

(5) 調査結果의 公表

調査結果의 精度 氣象與件에 따라 作況의 變化가 심한 品目에 대한 위험성, 流通上 商人들의 問題 등으로 아직까지는 內部資料로만 利用하였으나 漸次的으로 더욱 研究發展시켜서 刊行物로 發表할 계획이다.

타. 糧穀消費量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한국의 양곡통계는 정부수립이후 지속발전하였고 특히 60年代의 開發體制를 지

Ⅲ. 農林漁業統計

나며 體系化에 박차를 가했다.

糧穀消費量調査는 農家口 非農家口의 糧穀消費實態를 파악하여 糧穀需給計劃, 食生活改善, 食糧需給豫測, 食糧生産日標의 設定과 食糧問題研究등 農業政策樹立上 필요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 調査는 1962년에 農林部 糧政局의 주관하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 때에는 1960년 인구주택國勢調査 資料를 기초로 전국을 30개 계층으로 層化한 다음 農家 426호, 非農家 294호 등 총 720호의 標本을 任意 選定하여 조사하였다.

그후 1969년부터는 經濟社會構造의 變化와 與件의 變動을 감안하여 調査結果의 精度를 높이고자 1966년의 簡易人口住宅國勢調査 結果資料를 利用하여 全國 60個 標本地區를 任意選定하고 그중 農家 1,140家口 非農家 660家口 合計 1,800家口의 標本을 層化3段確率比例抽出法으로 標本을 뽑아서 調査한다.

1970년 1월1일부터 統計의 專門化方針에 따라 糧政局糧政課에서 實施하던 糧穀消費量調査를 農政局調査統計科로 그 業務를 移讓하고 調査의 精度를 높이는데 注力하였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農家와 非農家の 標本을 各各 分類하여 農家の 경우는 農家經濟調査 標本인 2,500家口에서 調査하고 非農家は 1970年人口住宅센서스 資料를 基礎로 하여 大都市, 中都市, 小都市, 農村地域別로 60個層으로 層化하고 各層의 1個 邑面洞을 抽出한 후 1개의 人口住宅센서스 調査區를 標本抽出하였다. 그리고 調査區에서는 20家口씩을 確率比例抽出方法에 의하여 총 1,200家口를 選定하여 調査하여 왔다.

또한 糧穀을 原料로 消費하는 製造加工業體를 대상으로 調査하는 製造加工部門 糧穀消費量調査는 食糧局 糧政課에서 斷片的으로 各 業體로부터 申告를 받아 調査해 오다가 1973년부터 農林統計官室에서 처음으로 試驗調査를 實施하였다.

1977년부터는 農家經濟調査의 標本을 再設計 擴大함에 따라 農家の 對象 家口數는 3,375家口로 擴大하였으며, 1978년에는 非農家標本을 改編하여 1,812家口로 擴張하였다.

1975년부터 라면, 빵, 기타면류 消費量의 試驗調査를 시작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들깨, 무우, 배추, 其他 牛乳 等の 消費量을 試驗調査하여

지금까지 內部資料로 利用하고 있다.

1973년 처음으로 試驗調查가 實施된 製造加工業體의 調查는 職員의 不足 등으로 1974년과 1975년에는 調查하지 못하고 1976년부터 再試驗調查를 시작하였으며, 1978년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實施한 鑛業 및 製造業體 센서스資料를 基礎로 製造加工部門調查의 精度를 높이기 위해 標本을 設計하여 1979년부터 從業員 5人以上 業體 719個, 從業員 5人未滿 業體 284個, 呂面洞을 選定하여 調查하였다. 그리고 小麥粉 用途擘 消費量을 推定하기 위하여 標本代理店 700個, 小麥粉 小賣店 700個를 대상으로 調查하였다.

家口部門에서는 每日 消費된 量을 調查하기가 곤란하므로 項目中 一部를 1981년부터는 購入된 時點에서 消費한 것으로 看做하는 方法에 의하여 調查하였으나 季節的 消費量을 把握할 수가 없으므로, 1987년부터는 이 調查方法을 從前 調查方法으로 환원하였다.

1980년 人口住宅센서스 資料와 農業센서스 資料를 利用하여 1982년부터는 1,760 家口를 對象으로 하여 調查하는 한편 製造加工部門의 糧穀消費量을 鑛工業센서스 資料를 基礎로한 標本調查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1988년에는 家口部門(農家와 非農家) 糧穀消費量調查와 더불어 糧穀의 大量消費處인 飲食店, 病院, 社會福祉施設등의 消費量調查와 民間部門 再考量을 調查하기 위하여 道정공장, 糧穀商의 在庫量을 調查키로 하였으며, 이로 인한 業務量의 增加 등으로 標本數를 非農家 624個, 農家 400個로 各各 減少시켰으며 1988년에는 農家 經濟調查의 標本 再設計로 620家口로 增加하였다.

그리고 農家와 非農家の 家口部門에 대한 在庫量調查는 糧穀 및 主要食品消費量 調查와 併行해서 調查하였으며 現在 調查中인 家口部門 糧穀再考量 調查를 補完코자 1984년 8월 31일부터 一般倉庫 391個所, 임도정공장 623個所, 都賣商 9個所, 小賣商 1,107個所, 蒐集商 38個所를 對象으로 在庫量을 調查하였으나, 一般倉庫에서는 民間糧穀을 保管하지 않으므로 同年 11月の 調查에서 除外하였다.

1981년에 設計한 標本은 老朽化되고 그동안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伸張과 國民食生活의 急速한 變化로 1989년에 새로 標本을 設計하였으며 從前의 糧穀위주의 調查方法을 보다 더 正確性을 기하는 한편 肉類, 과일 및 加工食品의 消費量도 包含

Ⅲ. 農林漁業統計

調査하도록 하였다.

非農家口는 1985년 人口住宅調査區의 特性을 利用하여 住宅種類, 煖房施設, 취사 연료, 家口主의 職業 등으로 層化하여 155個의 調査區를 確率比例系統으로 抽出하고 各調査區에서 4個의 家口로 總 620家口를 標本으로 抽出하고 農家는 從前과 같이 620家口를 調査하였다. 그리고 1987년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實施한 鑛工業統計調査資料를 利用하여 5인이상 加工製造業은 741個, 在庫量調査는 임도정공장 118개, 都賣業體 807개, 小賣業體 32,106개, 家口以外部門의 量穀 및 主要식품조사는 음식점 200개, 복지시설(고아원 장애자 기타) 871개, 병원 50개를 標本으로 뽑아 調査하였다.

조사원의 業務量 과다와 調査值의 信憑性 저하 調査上의 애로점이 있어 家口以外部門의 糧穀 및 主要食品調査는 1991년 5월부터 調査에서 제외하고 있다.

(2) 調査事項

米穀, 麥類, 薯類로 나누어 主食으로 소비하는 糧穀과 醬類, 製餅, 製菓, 기타 등을 제조하는데 소비한 糧穀을 조사한다. 즉 종류별, 용도별 糧穀消費量, 糧穀種類別 保有量, 사료 및 판매용등 식량용 외의 糧穀消費量 등과 家口員 外食회수 등을 조사한다.

(3) 調査時期와 方法

매년 조사년도의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의 1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매일 조사하여 조사방법을 自計式과 他計式面接調査方式을 병용하고 있다.

(4) 調査結果의 公表

매년 「農家經濟統計年報」에 수록 발간하고 있다.

파. 農水產物流通統計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農水産物 流通統計調査는 신선식품인 청과물, 식육, 계란, 어패류, 등의 出荷段階에서 小賣段階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마다 流通構造, 流通量, 價格 및 消費量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農水産物價格의 상승은 국내물가 상승의 先導的 役割을 하고 그 주요원인이 合理的인 流通構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우기 農水産部門의 流通은 他部門과는 달리 去來方法에 따라, 流通量에 따라 價格이 시시때때로 변하여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流通物量도 변한다. 또한 去來單位도 천차만별이고 品質도 확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主要農水産物의 流通量을 調査하여 時期別 去來動向 및 價格變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통개선 및 가격 안정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경제안정에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다.

農水産物流通에 대한 통계조사는 일찌기 여러 단체에서 각기 實施해 왔는데 農協中央會는 1963년 3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大都市의 共販場을 상대로 50여개 品目の 搬入量을 조사해 왔다. 1963년에서 1968년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調査物價格 및 搬入量調査」를 발간하였고, 1966년부터 1970년의 調査結果를 同名의 책으로 발간, 1976년에서 1978년의 調査結果를 「5大都市 農産物價格 및 搬入量調査」로 발간하는 한편, 1970년에서 1978년까지의 조사결과로 「10大都市 主要農産物 都賣價格動向」을 발간하고 이후 매년도 「10大都市 農産物價格便覽」을 발간해 오다가 1985년이후 「農産物價格便覽」을 발간해오고 있다.

畜協中央會는 그 전신인 畜産振興會시절인 1978년 10월부터 40개 農産家畜市場과 서울의 3개 都賣市場을 대상으로, 이후 1979년부터는 전국 470개 家畜市場의 生産 去來狀況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4개품목에 대해 조사하여 「畜産進興」誌를 통해 발표하여 오다 현재 月刊 「畜産進興」, 季刊 「畜協調査季報」, 年刊 「畜産物價格 및 需給資料」에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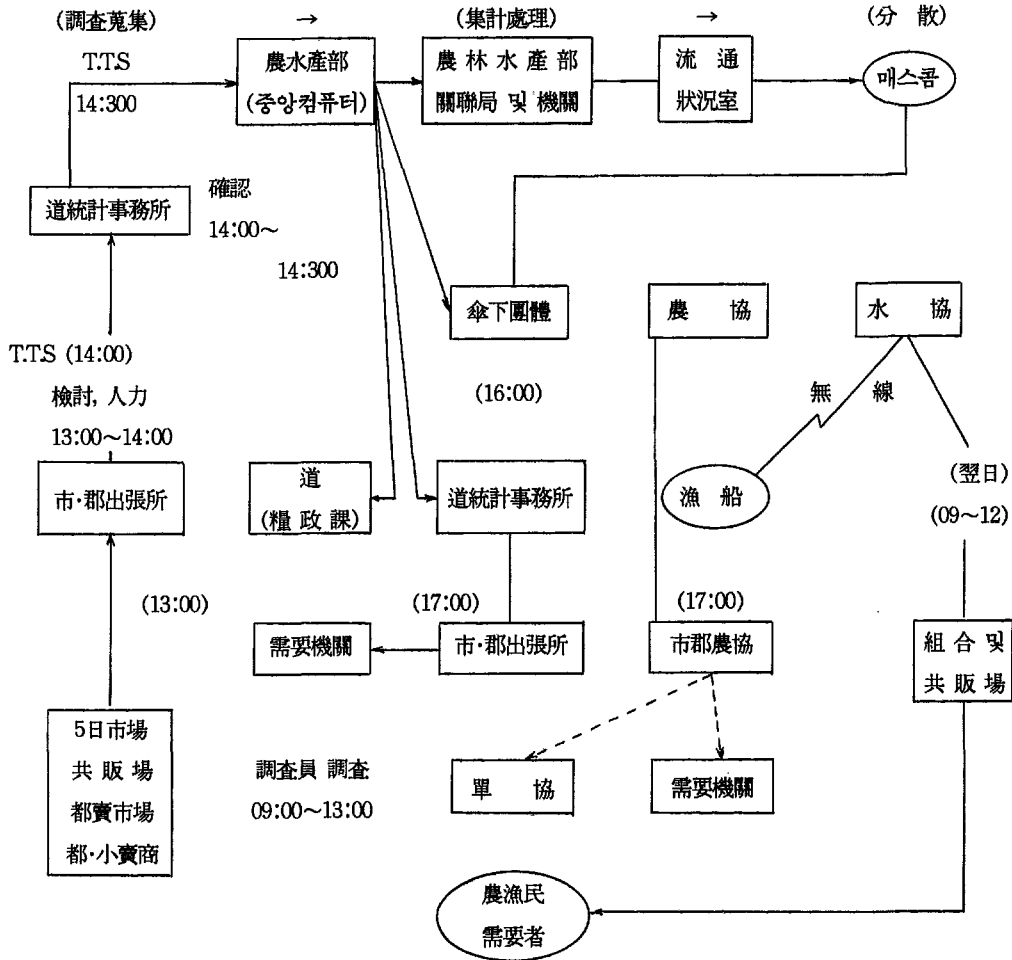
水協中央會에서는 1966년을 시작으로 100여개의 수산물에 대해 82개 조합의 全數調査를 통해 위판장별, 어종별, 월별, 계통판매고 및 금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水協調査月報」, 「水産物 系統販賣高統計」를 통해 발표해 왔다.

水産廳에서는 1966년부터 16개의 주요어항, 9개의 主要都賣市場에서 30여개의 선어류에 대해 消費地出荷量, 生産地消費量, 都賣市場出荷量을 조사하여 「水産統計

III. 農林漁業統計

年報」에 발표해 왔다.

價格情報蒐集 및 分散體系



農水産部에서는 1977년부터 試驗調査에 착수하여 全數調査方法으로 5개 품목의 農水産物 流通事例 試驗調査를 실시하였으며, 1978년에는 유통통계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16개 품목의 농수산물 유통사례 試驗調査를 全數調査 方法으로 실시하였다. 全數調査 方法으로 調査하기 때문에 業務量 과중으로 사실상 調査가 곤란하므로 1977년부터는 標本調査 方法으로 18의 農水産物 流通試驗調査를 標本調査 方法으로 실시하였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14개 품목의 農水産物 流通試驗調査를 標

本調査를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각 流通段階마다 流通構造, 流通量을 조사하는 것은 현 인원과 業務量을 감안할 때 사실상 調査가 불가능 하므로 1983년부터는 電算室에 電子計算機 IBM4341(2MB)로 용량이 증가함을 계기로 主要 農水産物의 가격만 본격적으로 調査하기 시작하여 統計利用機關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農林水産部, 農協中央會, 畜協中央會, 水協中央會 및 農水産物流通公社에서 84개 품목, 142개종류(농산물 41개품목 70종류, 수산물 30개품목, 39종류, 畜産物 13개품목, 33종류)를 流通段階別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분담조사 하였다. 1987년에는 조사는 農, 畜, 水協 및 農水産物 流通公社에서 하고 農水産部에서 입력을 하고, 分散은 농어민에게는 農, 畜, 水協에서, 기관은 農林水産部에서 하도록 업무를 조정하였다.

1988년에는 기존 조사품목에 화훼류를 추가하여 92개품목 168개 종류를 조사하고 있다. 調査地域別로는 產地價格을 農産物 94개 主要團地部, 水産物 22개 產地水協, 畜産物 96개 產地會員組合, 그리고 消費地都賣 15개 主要都市, 消費地小賣 9개 主要都市 및 主要都市의 法定都賣市場과 公판장에서 경락(公판)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機關別 調査項目으로는 農協에서 쌀등 19개 農産物에 대한 產地價格, 쌀등 29개 農産物에 대한 消費地 共販價格을 조사하고 畜協에서 소등 11개 畜産物에 대한 產地價格, 쇠고기등 4개 畜産物에 대한 消費地價格을 조사하고 水協에서 조기 등 25개 水産物에 대한 委販價格, 고등어등 25개 水産物에 대한 共販價格을 조사하고 農水産物流通公社에서 쌀 등 57개 農水産物에 대한 消費地 都賣價格, 쌀 등 30개 農·畜·水産物에 대한 消費地 消費者價格, 배추등 16개 農産物에 대한 경락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價格情報 수집 및 분산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調査機構

각 機關別로 담당해오던 調査統計業務는 업무의 중첩, 非效率性이 나타나면서 1983년 3월 農水産部訓令 제550호에 의해 그 業務와 機能이 조정되었다.

즉 資料蒐集에 있어서 產地와 都賣市場의 流通情報는 農産物, 畜産物, 水産物에 대해 각각 農協, 畜協, 水協이 담당하되 수집된 자료는 각 지방의 農水産統計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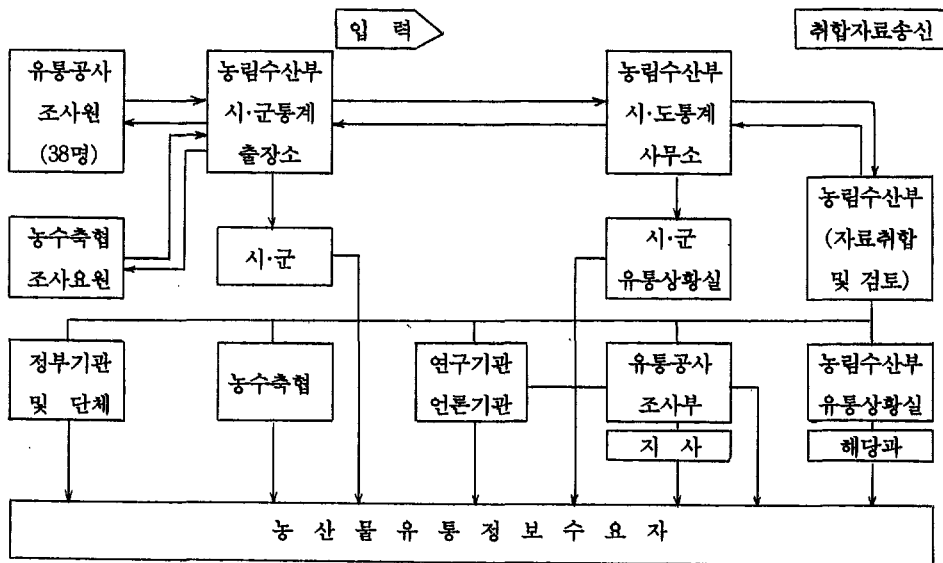
Ⅲ. 農林漁業統計

와 統計事務所를 통해 農水産部の 電算室에 입력되어 農水産部에서 처리하도록 되었고 小賣市場의 경우는 農水, 畜産物 모두 農水産物流通公社에서 담당하여 조사 결과를 농수산부에 보고하게 하였다.

(3) 調査內容

각 調査機關 즉 農林水産部, 農協中央會, 畜協中央會, 水協中央會 및 農水産物流通公社에서는 84개품목, 142종류(농산물 41개품목 70종류, 수산물 30개품목 39종류, 축산물 13개품목 33종류)를 流通段階別로 각 機關의 特性에 맞춰 분담하여 조사해 오다가 1988년에 이르러 기존 조사품목에 화폐류를 추가하여 92개품목 168개 종류를 조사하고 있다.

農水産物 流通情報蒐集 및 分散體系圖



調査地域別로는 產地價格은 農産物 94개 主産團地部, 水産物 32개 產地水協, 畜産物 96개 產地會員組合 그리고 消費地 都賣 15개 主要都市, 消費地 小賣 9개 主要都市의 法定都賣市場과 共販場에서 競落(共販)價格을 조사하고 있다.

農協은 都賣價格調査時 穀物類는 양재동 糧穀市場에서, 청과·채소류는 가락시장에서, 產地價格調査는 해당지역 會員組合販賣場, 5일시장 또는 기타시장에서, 그리

고 競落價格은 農產物共販場(서울, 가락, 중터, 청량리, 영등포, 부산, 충무, 대구, 북대구, 광주, 동광주, 대전, 창원 등 13개 공판장)을 통해서 상품, 중품의 등급 기준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畜協은 韓牛, 乳牛, 돼지, 계량, 偶有, 산양, 흑염소, 토끼, 오리 등 11개 畜產物에 대한 產地價格을 암·수와 중량, 성장단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에 대해 각각 都賣價格, 消費者價格을 조사하고, 畜產物需給資料는 소, 돼지의 許可와 禁止된 도축수, 주요 都賣市場(畜共, 宇成, 協進)에서의 쇠고기, 돼지고기의 競落頭數, 서울의 쇠고기 돼지고기의 1日 供給現況, 그리고 牛乳處理와 加工狀況에 대해 調査하고 있다.

水協은 水協系統組織의 판매사업장(共販場, 委販場, 直販賣場), 부산공동어시장 외에도 원양어류, 국내반입, 매취, 수집, 알선판매, 직출하, 직수출, 어촌계의 共同販賣 상황을 地域別, 共販場別(청량리, 가락동,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진주, 인천, 여수)로 그리고 魚種別(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로 각각 販賣量과 販賣金額을 조사하고 나아가 當該地의 消費量, 加工量, 外地出荷量과 出荷內譯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農水產物流通公社는 쌀등 59개 農產物에 대한 消費地 都賣價格, 쌀 등 30개 農·畜·水產物에 대한 消費地 消費者價格, 배추등 16개 農產物에 대한 競落價格을 조사하고 있다. 都賣價格調査는 관내지역에서 조사품목의 거래량이 가장 많거나 그 지역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都賣市場을 선정(주거래시장에서 3개상회 조사)하여 조사하고 流通調査의 전 조사품목을 매일 조사하여 5일 간격으로 산출평균하여 반순별 평균가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市場別, 產地別로 매일 10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무우, 배추, 사과, 배, 감자)에 대해 전국 1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춘천, 강릉, 청주, 대전, 전주, 목포, 제주, 마산, 울산)에서 담당조사원이 專門取扱都賣商人을 대상으로 聽取調査한 搬入物量의 평균치와 市場管理事務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流通量을 算定, 調査하고 있다.

서울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農水產物의 경락가격 또는 1차 都賣價格을 매일 調査하고 8개 도매회사(농·수

Ⅲ. 農林漁業統計

협공판장포함)시세표를 참고하여 農·水·畜産物의 주간 평균가격과 관련 상품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4) 結果公表

農協에서는 流通量의 調査統計를 農林水産部 전산실에 입력하고 月刊「農産物價格動向」과 年刊「農水産價格便覽」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畜協은 조사내용을 각 지방 統計事務所를 통해 농림수산부에 입력하고 내부적으로는 「流通日報」를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週別로 KBS방송, 農水畜産新報, 畜産新聞을 통해 발표하고 月刊「畜産振興」季刊「畜協調査季報」그리고 年刊「畜産物價格」및 「需給資料」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水協은 해당지역의 지구별, 업종별, 수협, 수협공판장,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農林水産部에 제출하고 조사결과는 分期別로 經濟企劃院長官의 公表協議를 거쳐 발표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격월간 「水協統計月報」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農水産物流通公社는 조사내용을 農林水産部에 보고하고 都賣價格은 그래프를 사용하여 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主要農産物都賣買價格動向」을 통해 발표하고 搬入量에 대해서는 「農水産物流通調査月報」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는 「農水産物價格月報」, 「農水産物價格動向」을 발간하고 「日日市況表」, 「週間動向」등 유인물과 자동응답전화 및 각 방송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農水産物流通情報중 價格情報은 완전 電算化되어 있어 매일 需要機關이나 農漁民, 消費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 農林水産物 貿易統計

農林水産物의 貿易統計는 政府를 비롯한 各界의 政策樹立과 貿易分析 및 國際收支의 調査資料로서 活用되어 國民경제의 발전 즉 輸出의 振興과 輸入代替産業의 발전으로 國際收支의 改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을 통해 급성장해 왔다. 1960년대 이후의 韓國經濟의 고도성장은 賦存資源의 빈약과 國內市場의 협소 등으로 對外指向的 工業化 戰略과 특히 정부의 輸出主導型 成長政策에 따른 각종 支援策과 資本導入 輸入原資材에 크게 의존하면서 높은 신장률을 유지해 온 것은 用役과 商品輸出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商品構造用에서 1960년대 초까지는 주로 1차 상품인 水産物, 鑛産物, 食料品 및 原料를 수출하는 초기단계의 輸出類型으로 1961년에 1차 산물이 73%나 차지하였으나 그후 1980년에 들어서면서 수출품목이 10%이하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차례의 석유파동에서 본 바와같이 대외적인 여건이 불리해져서 輸出의不振과 輸入의 硬直性으로 인한 무역과 國際收支의 압박과 經濟成長의 둔화에서 農林水産物이 輸入代替産業으로서 뿐만 아니라 外貨獲得事業으로서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農林水産物の 貿易統計는 財務部 稅關局의 貿易統計年報(1964년~1969년)와 關稅廳의 貿易統計年報(1970년)에 수록된 統計를 제1차 자료로 하여 政府 各 部處와 關聯機關에서 제2차 資料로 필요에 따라서 집계하여 왔고, 1967년에 비로소 農協 中央會에서 農林水産物 貿易統計만을 다룬 「農林水産物 貿易統計」를 발간하였다. 이는 당시의 무역통계가 大群集計를 위한 中分類以上에 그쳤으므로 少量으로 많은 품목이 거래되고 있는 農林水産物貿易에 있어서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고 한국표준무역분류 중에서 農林部가 선정한 農林水産物の 전품목에 걸쳐서 國別, 品目別로 정리한 것이다.

1971년에 제2집(1965년~1970년간 統計)을 내놓았고, 제3집(1968년~1972년간 統計:品目別), 제4집(1970년~1972년:主要國別)을 내놓았다. 그리고 農水産部 貿易課에서는 프린트물로 1973년에서 1977년까지 「農林水産物貿易統計」가 집계되어 행정자료로 내부에서 사용된 바 있다.

韓國 農林水産輸出組合에서는 「輸出統計資料」를 매년 발간하여 1989년 현재 제 14호에 이르고 있으며, 畜協中央會에서는 1980년부터 1985년에 걸쳐 「海外家畜 및 畜産物統計」를 발간하였는 바, 이는 미국 農務省, 海外農業局에서 발간한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Livestock and Meat Situation」, 「Poultry and Egg Situation」등 각종

Ⅲ. 農林漁業統計

측산관계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번역한 것으로 그 내용은 주요국별, 가축두수, 축산물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가격 등을 담고 있다.

또 農協中央會에서는 1983년도의 「農業統計要覽」에 이어 1987년에는 「農業經濟統計要覽」을 발간하여 農林水産物の 貿易統計로 게재 하였으며 同年 10월에는 農産物 輸入開放이 國內農業에 미칠 效果를 염려하여 1980년~1986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品目別解説, 貿易動向, 國內 및 海外需給動向을 두편에 걸쳐 수록하였다.

1989년에는 「1989년 貿易動向(商工部 發行)」과 1989년 「貿易統計年報(關稅廳 發行)」에서 水産物 輸出·入實績을 발췌한 행정업무용 자료인 「水産物輸出入 實績」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農林水産物 貿易統計」는 자체가 「貿易統計年報」에서 발췌한 관계로 資料의 範圍, 統計地域, 統計計上時期, 品目分類, 國別分類, 價格, 數量 등의 기본원칙은 모두가 일반 貿易統計와 동일하였다. 그 내용은 ①農林水産物の 主要國別 輸出入狀況 ②農林水産物の 地域別 輸出入 實績比率 ③農林水産物 輸出入의 總括 ④農林水産物の 國別 輸出入實績 ⑤農林水産物の 品目別, 國別 輸出實績 ⑥農林水産物の 品目別, 國別 輸入實績 등으로 일반 貿易統計에 비해 年月別, 財源別, 型態別, 港口別, 稅關別, 其他關聯事項이 제외된 극히 부분적인 統計였고 다만 韓國 標準貿易分類 중에서 農林部가 選定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農林水産物 貿易統計上에 統計內容의 一貫性, 持續性, 政府部處間의 集計上의 差異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 발행하고 있는 「農林水産統計年報」, 「畜産物價格 및 需給資料」, 「水協統計月報」 등의 統計誌에는 農林水産物の 貿易統計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조합에서 발행하는 「輸出統計資料」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농수산물의 통조림에 대해 지역별, 제품별, 창구별, 업체별, 제품별, 지역별 수출실적을 망라하고 있고 林産物 및 果實類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輸出實績을 나타내고 있어 農林水産物の 貿易統計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거. 農産物生産調査

(1) 調査目的과 沿革

農産物の 價格政策 및 農業經營改善등 農業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할 目的으로 調査한다.

1954년부터 農家經濟實態調査와 같이 시작되었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는 지대별과 규모별의 指標를 감안하여 平野部, 中間部, 山間部의 3개층으로 구분하여 전국에서 16개 부락을 有意選定하고 각 지구에서 記帳能力이 있는 農家を 零細農에서 4농가, 小農에서 3농가, 中農에서 2농가, 大農에서 1농가, 計 10개 농가씩 160 標本農家を 有意選定하고 이를 대상으로 논벼, 보리, 쌀보리, 밀에 한하여 조사하여 왔으며 그 調査結果은 公表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有意標本調査方法이 調査者의 주관이 개재되어 客觀性을 보장할 수 없고 推定誤差등 統計處理가 불가능하며, 또한 標本數가 母集團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어 信賴性이 낮았고 調査方法 및 調査內容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허다하였다. 그리고 1953년 9월 7일 農家經濟調査 항목중 일부 내용의 公表로 內務部長官과 農林部長官이 일시에 파면된 사건으로 인하여 對外公表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61년 7월 1일 標本設計를 駐韓統計顧問團과의 共同研究로 현대통계이론에 입각한 層化3段確率比例抽出 方法으로 전국에서 1,200가구를 標本으로 抽出하여 農家經濟調査와 同一農家에서 조사하였다. 本 調査의 初創期 調査方法 및 統計的 分析 方法을 개발한 실무자(申潤琬, 李信坤 등)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經濟統計擔當官室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經濟統計調査의 흐름을 정립하고 精度높은 統計를 作成함으로써 그 이후의 農業統計整備에 기여하였다.

農家經濟調査의 標本設計를 1973년, 1977년, 1982년, 1986년에 새로 하였기 때문에 새 標本에서 調査하였다. 1973년에 農家經濟調査와 같이 電算處理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74년부터 컴퓨터에 의해 다각적으로 資料를 處理하였다.

自作地의 토지용역비 계산은 調査作物의 調査開始 시점에서 地價를 조사하여 그 地價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1973년까지는 地價에 10%의 利子率을 적용하였으며, 1974년부터는 은행금리의 인하와 農村의 地價가 급등했기 때문에

Ⅲ. 農林漁業統計

地價의 5% 利率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計算方式은 都市化로 인하여 도시근교 農地의 地價가 農業外的 요인에 의하여 급등함에 따라 現實的인 賃借料와 計算上의 賃借料가 地域別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어 1983년부터는 1983년부터는 實際去來가 이루어진 인근토지의 賃借料를 적용한 推定賃借料에 해당 식부지에서 1년간 생산한 작물 總粗收益에 대한 調査作物 粗收益의 負擔比率을 적용하여 計上하고 있다. 副産物生産費는 1973년까지도 副産物價額을 산출하여 基礎生産費 산출시 부산물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副産物生産費(부산물 평가액/주부산물가액×생산비)를 산출하여 基礎生産費에서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노동시간 환산은 1978년까지는 노동시간 환산기준에 따라 男子成人 1.0, 女子成人 0.8로 환산하였으나 1979년부터 여자노동능력 환산에서 여자성인을 100%로 환산계산 하였다. 예를들어 18세 여자의 1시간 노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年度別 勞働能力 換算方法〉

1987년까지	1979~1982년
1시간×60%=0.6시간	1시간× $\frac{60}{80}$ =0.75시간

年度別 勞働能力 換算基準

성별	10세~14세	15~16	17~19	20~55	56~60	61~65	65세이상
남자	30	60	80	100	80	60	30
여자	20	60	80	80	60	60	20

1983년부터는 연령별,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는 노동능력 환산표를 단순화하여 남녀구별없이 18세~65세까지의 정산인의 노동능력을 100으로 보고 그외는 연령, 남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원이 적절히 판정, 환산하였다.

租稅公課金 및 諸負擔金은 1982년까지 生産費를 구성하는 하나의 비목으로 조사하였으나 原價性이 없다는 판단과 외국의 사례에 따라 1983년부터는 생산비에서 제외하였고, 1982년까지 제재료비에 포함시켜 調査하던 유류비는 農業의 機械化에 따라 비중이 커지고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983년부터 營農光熱費라는 별도

비목으로 분류하고 加溫材料, 전기료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1983년 일부 비목의 명칭을 바꾸어 살충제, 살균제 등의 비용인 防除費를 제초제 등의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농업용 약제의 비용이란 의미로 농약비로 개칭하였고 諸材料費는 諸材料중 種苗, 肥料, 農藥, 光熱材料를 제외하는 개념에서 기타 諸材料費로, 農舍費는 영농과 관계되는 시설물만을 調査토록 하는 뜻에서 營農施設費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資本用役費의 利子率은 1961년에는 14.76%, 1962년에는 11%, 1963년에는 9%를 적용하다가 1964년이후 1982년까지 년 12%로 하여 월별 소계액을 산출하여 왔으나 1983년부터 유동자산의 경우는 시중은행금리(현행 10%)를 적용한 후 借入金의 平殘概念을 도입하여 1984년 보리生産費까지 적용하고 1984년 水稻生産費부터는 10%의 利子率을 適用 實勢化 하였다.

大農具, 營農施設物, 水利構築物 등의 감가상각비는 1987년까지 年 償却額에 自家農業用 使用比率과 調査作物 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自家農業用 使用比率은 사용시간(기간)을, 調査作物 負擔比率 使用面積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와같은 산출방식은 調査와 計算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상각 대상물과 전혀 관계 없는 면적이 포함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에 利用程度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1988년부터는 年償却額에 調査作物 負擔比率을 곱하여 계산하고 調査作物 負擔比率은 大農具는 私用時間을, 營農施設物은 使用面積, 空間, 時間을 水利構築物은 이용면적과 程度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다.

調査作物은 米麥外에도 1974년에 콩, 옥수수, 고구마의 生産費를 試驗調査하고, 1975년에는 김장배추, 김장무우를, 1978년에는 감자, 고추, 마늘을 1979년에는 참깨, 유채, 땅콩을, 1983년에는 양파나 맥주보리에 대한 試驗調査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内部資料로서만 이용하여 왔으나 앞으로 統計法에 위한 협의를 거쳐 公表할 計劃으로 있으며 그동안 쌀, 보리와 함께 조사 公表하여 온 밀은 재배면적 적감과 農家所得源으로서의 중요도가 미약하여 1987년산부터 調査結果의 公表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새로 標本設計한 農家經濟 標本調査農家에서 調査를 시작하였다.

農村振興廳은 1977년부터 농업경영담당관실에서 70個品目에 대한 生産費를 分析하여 「農畜產物 標準所得」이라는 보고서를 每年 발간하고 있고 農水產物流通公社

Ⅲ. 農林漁業統計

調査部에서는 1979년부터 備蓄農産物인 감자, 고구마, 땅콩, 고추, 마늘, 양파, 가을 무우, 가을배추, 참깨에 대한 生産費를 調査하였다. 畜協中央會 調査部는 1979년부터 肉牛 韓牛 돼지 산란계를 대상으로 畜産物의 生産費를 調査하여 그 結果는 「畜産物 生産費 調査報告」로 毎年 發表하고 있다.

(2) 調査對象 및 方法

農林水産部の 農産物 生産費調査는 農家經濟調査와 동일한 체계로 실시하고 있다. 즉 農家經濟調査의 標本農家인 310개 지구 3,100호 농가중에서 米穀등 조사대상 農作物을 경작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自計式 方法으로 조사한다. 다만 農家經濟調査가 年初, 年末의 회계년도를 조사기간으로 하는데 대하여 生産費 조사는 調査作物의 前年度 收穫期 이후부터 當年度 收穫期까지 1년간을 水稻作의 경우에는 전년 12월 1일부터 當年 11월 30일까지, 麥類作의 경우에는 前年 8월 1일부터 當年 7월 31일까지가 된다.

(3) 調査事項

農業經營의 生産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生産過程이 對象領域으로서 農家經濟調査와 生産費調査와의 관계와 같다. 生産物 生産費調査는 목적으로 하는 生産物의 生産를 위하여 소비한 資材(비료, 농약, 동력연료 등)나 料金(賃借料등)을 종류별로 數量과 價額을 기재하고 또한 투하한 勞動時間에 대하여 가족 또는 고용인력별로 각각 농가가 기장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들 費用의 要素別로 분류되고 집계된다.

현재 生産費調査는 基礎項目으로 經營耕地, 植付地, 生産量을 조사하고 있다.

경영경지는 農家에서 作物의 生産을 위하여 경영하는 農地를 自作地와 借用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地目別로 논, 밭, 수원지로 세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植付面積에서도 또한 같다. 다만 植付地의 面積調査는 土地臺帳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生産量은 主産物과 副産物로 구분하며 主産物은 農산물검사 표준품을 원칙으로 한다.

生産費의 構成要素는 生産費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經濟價値를 말하는데 農林

水産部の 生産費 구성비목은 技術的 性質에 의한 分類와 農가의 内部經濟的 關係에 의한 分類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技術的 性質에 의한 분류로는 種苗費, 肥料費, 農藥費, 營農光熱費, 其他 諸材料費, 水利費, 農機具費, 營農施設費, 畜力費, 努力費, 土地用役費, 資本用役費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費目에는 구체적으로 生産物이 生産과정에 따라서 계상하는 세부비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공통으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農家の 내부경제적 關係에 의한 生産費의 分類이다. 農産物의 生産費는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原價計算에 해당되지만 公業제품과는 달리 生産物의 生産過程에서 農가내부의 生産要素가 순환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評價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農家の 내부적 關係에 의한 生産費目은 純費, 自給費 그리고 內給費로 분류하고 있다. 純費란 農가경제가 調査作物의 生産을 위하여 외부경제로부터 구입 획득하여 소비한 물재나 용역의 經濟가치로써 費用이라는 면에서 보면 農家經濟의 외부에 지불되는 비용이다. 生産費調査에서 純費의 내용은 減價償却費와 購入支拂費로 구분한다.

自給費는 農가의 내부경제에서 볼 때 그 經營내부의 다른 生産部門에서 生産된 生産財(中間生産財)를 해당 조사작물의 生産을 위하여 소비한 물재나 용역을 말한다. 費用이라는 면에서 보면 農가내부의 그 물재나 용역을 生産한 부문에 지불되는 비용이다.

內給費는 農가가 生産의 원천으로 소유하고 있는 生産要素에 대한 經濟적 가치를 말한다. 즉 農家は 勞動力(가족노동력), 資本(고정자본, 유동자본) 및 土地(자작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生産要素를 調査作物의 生産에 제공한 경우 그 消費價値로서의 비용이다.

農林水産部の 生産費 調査에서는 自給費로서 자급물재나 용역의 價額評價는 원칙적으로 巽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自家勞動은 雇傭勞賃으로 평가하여 所有토지의 용역비는 賃借料를 이용하고 資本用役費는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4) 生産費의 種類와 計算

生産費 計算이란 農産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經濟價値(화폐적 가치)를 精穀 80kg당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生産物 一定單位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生産活動에 쓰여진 經濟價値라고 하여도 그 종류가 많으므로 이를 각각 해당하는 費目으로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대체로 生産費 構成項目이 분류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生産費를 계산하여야 한다.

먼저 生産費의 計算單位로서 農林水産部の 계산단위는 生産物 單位當 生産費와 單位面積當 生産費를 계산하고 있다. 농업은 토지를 生産手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면적 단위당으로 계산된 投下費用 혹은 生産量 收益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生産費의 計算時間이다. 生産費 계산은 對象計算이기 때문에 農産物의 生産의 종료(수확)되지 않으면 계산은 완료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調査對象의 生産期間이 生産費의 計算期間이 되며 農林水産部の 生産費 계산에서도 調査期間의 單位를 生産物의 生産期間에 합치시키고 있다.

生産費의 종류로서는 基礎生産費와 一般的인 生産費의 概念間의 차이를 두고 있다. 一般的로 生産費의 定義는 商品(농작물)의 一定單位를 생산하기 위하여 消費한 經濟的 희생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農林水産部の 農産物 生産費 계산에서는 資材費와 勞力費 그리고 減價償却費를 기본으로 하는 費用合計를 「基礎生産費」로 하여 본래 의미의 生産費로 지칭하고 있다. 이 기초생산비에 토지용역비(地代)와 자본용역비(資本利子)를 합하여 「生産費」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生産費는 經營費와 內給費를 합한 것으로도 표현된다. 한편 위에서 말한 生産費에서 부산물 생산비(부산물가액의 의미)를 공제한 生産費를 「副産物生産費控除 生産費」로 별도의 분류를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生産費 調査에는 生産費 계산과 대비한 經營費를 게재하고 있다. 여기서 經營費란 生産費를 농가의 내부경제적 관계에서 분류하였을 때 純費와 自給費를 공제한 經營學上의 生産費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農家經濟調査에서 말하는 農業經營費와는 概念이 다르며 다만 生産費와 관련된 分析地標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의 농산물 生産費調查에서 生産費와 관련된 분석지표로서 所得分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生産過程에서의 收益性 指標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結果公表와 利用

農林水産部の 農産物生産費調查는 매년 農家經濟調查報告書와 함께 「農産物生産費 調查結果報告書」로 발간하여 公表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農林水産統計年報」에도 게재된다.

農産物 生産費調查는 정책당국의 農産物 價格決定을 위한 基礎資料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農家經濟分析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農家經濟調查와 같이 動態的인 農業經濟의 상황이 수시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調查의 專門化가 끊임없이 요구되며 이용자 또한 調查要領을 숙지하고 조사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너. 農林水産關係 報告統計

地方幸作機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事業局課 또는 各廳에서 調查統計 이외에 行政統計와 業務統計를 報告받아 業務推進에 利用되고 있다.

(1) 農林水産部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농어촌 부업추진 상황보고	기보	읍·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시·도사업)계획확정보고	연 보	시·군
저소득농가 자립시범사업 추진상황보고	기 보	읍·면
주요농작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보고	연 보	농촌진흥청 농산물원종장
주요농산물원 원종 및 원종 파종 실적보고	연 보	시·도
방조제 수축사업 시행승인 및 추진상황보고	월 보	"
훈증 소독 상황보고	기 보	시·군
비료(규산질, 석회)공급 상황보고	기 보	읍·면

Ⅲ. 農林漁業統計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농약판매업등록 및 부정농약단속 상황보고	연 보	시·군
농조구역의 시설관리 및 농지개량운영 상황보고	"	"
농지조성사업 진단보고	월 보	"
환지처분실적(농지개발)보고	반 년 보	"
종묘상 등록실적 및 종묘사원 임면 상황보고	기 보	시·도
농지전용 허가사항보고	기 보	"
환지업무추진 상황보고	월 보	시·군
화훼류 재배 현황보고	연 보	읍·묘
과수묘목·임자별 생산가능량 조사보고	"	시·군
다년생식물 재배허가 상황보고	기 보	시·도
상묘생산예정량 및 잠실실태보고	"	읍·면
농지개량사업 사업자답사 기본계획수립 시행인가 및 준공보고	즉 보	시·도
답이작 사료작물 파종실적4 및 생산이용 상황보고	반 년 보	읍·면
종묘생산지역 고시 결과보고	즉 보	시·군
양곡 가공지령 상황보고	"	시·도
원예특용작물 개발사업계획 수립보고	연 보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가 및 추진상황보고	월 보	시·도·시·군
국유농지개량시설 부지 증감보고	연 보	시·군
10ha미만 농지 확대개발추진 현황보고	반 년 보	시·도
확정 측량계획보고	연 보	시·군
전검정 신청 현황보고	반 년 보	"
특용원예작물 재배계약체결 및 수매상황보고	연 보	"
원예특용작물 개발사업진도 평가보고	기 보	읍·면
종묘업(과수, 채소, 버섯)허가 상황보고	즉 보	시·도
부정축산물 및 유류가격단속 상황보고	기 보	시·군·구
가축 인공수정 사업보고	반 년 보	시·군
새마을기계 화영농단육성 상황보고	기 보	"
사료검사결과 및 사료절감 추진실적보고	"	시·도·농촌진흥청
가축질병진료 및 예방주사검진 실적보고	연 보	시·군·구
채소종자 유통단속 및 무환수입종묘토원추천 실적보고	기 보	시·군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시설 현황보고	연 보	"
양곡매매업소 단속결과보고	월 보	시·군·구
조작비 집행실적 및 자금소요액 보고	"	시·군
양곡매출 상황보고	기 보	"

2. 解放後의 農林漁業統計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양곡수불상황 및 재고일람표 보고	기 보	시·군
양곡가공 과부족 정산보고	" "	" "
정부양곡 포장재료 수불상황보고	월 보	" "
수입양곡 선별인수 상황보고	즉 보	" "
농지이용 및 유희지 상황보고	연 보	읍·면
양곡의 사고발생 및 처리내역보고	기 보	시·군
양곡관리 특별회계 내부거래보고	반 년 보	시·도
하추곡 구매자금 정산보고	" "	시·군
농업기반조성 사업자금집행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 상황보고	월 보	시·도
농조 저수지 저수 상황보고	월 보	시·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연도말 검정 및 결산보고	연 보	시·도
미강 생산배정 및 착유 실적보고	기 보	시·군
농지개량 조합직제 및 정원보고	연 보	시·도
한해대책용 관정양수장비보유 현황보고	" "	시·군
미완공 간척사업 연도발 실행검정보고	" "	시·도
대규모 양곡공장변경 상황보고	즉 보	" "
양곡가공 부산물 처분내역조시 보고	연 보	시·군
양곡가공 성적보고	기 보	" "
개발농지·영농실태보고	반 년 보	" "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 및 불미무리 전사업비 조정결과보고	연 보	" "
성실 영농추진 실적보고	" "	읍·면
경지정리사업(시공)진척상황보고	월 보	시·도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 "	" "
뽕밭실태조사보고	연 보	읍·면
관정양수기 점검 정비결과보고	반 년 보	" "
가축 전염병발생 상황보고	즉 보	시·군
농수산물 산지유통 추진상황보고	월 보	" "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 실적보고	기 보	시·도·시·군
복합영농 시범사업계획 및 진도사업	" "	읍·면
정부대여(교환)양곡 회수실적 보고	반 년 보	읍·면·동
축산업 등록허가업체 가축사육 실태보고	월 보	시·군
식용유지 생산실적보고	기 보	" "
중돈업 등록업체 정기실태 조사보고	반 년 보 (3.15, 9.15)	시·군

Ⅲ. 農林漁業統計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양돈업등록(허가)업체 돼지생산 및 사육계획보고	연 보 (11.10)	시·군
한(육)우 입식지원사업 사후관리실태조사	반 녀 보	읍·면·동
종계사육 및 종란생산계획보고	연 보	시·군
종계업 정기실태 조사보고	반 녀 보 (3.15, 9.15)	"
병아리 생산계획보고	연보(11.10)	"
병아리 생산실적보고	순 보	"
부화업 정기실태 조사보고	반 녀 보 (3.15, 9.15)	"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추진 실적보고	기 보	읍·면
벼병충해 방제계획보고	연 보 (10.31)	시·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공정계획 및 집행상황보고	기 보	군
고냉지채소 및 주산단지순별 분산파종 및 출하계획	연 보 (2.28)	"
품질불량농약 단속조치 상황보고	기 보	시·군

(2) 山林廳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합판 생산시설현황 및 생산실적보고	연 보	시·군·구
수렵면허장 발급 및 수렵위법행위자 단속상황 보고	"	시·군·구관리소
산림병충해발생 및 방제상황보고	월 보	"
외재 입항 상황보고	월 보	세 관
국유림 조림사업실적 및 예산비행 상황보고	즉 보	시·군·구관리소
토석채취 허가사항 및 채취실적보고	연 보	"
표고 재배사업계획 및 종균접종 실적보고	"	시·군
분기별 표고생산계획 및 건조장시설 상황보고	"	시·군·구치산사업소
지정 및 해제(수형목, 채종림, 보안림, 사방지)보고	"	"
조림 및 사방사업용 종자채취 보고	"	시·군
전년보호림 보호수 현황보고	반 녀 보	"
사업허가(사방지대, 보안림내)상황보고	연 보	시·군·구치산사업소
채종림 내종자 결실예찰 조사보고	"	시·군관리소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상황보고	"	"
임업기술교육 및 상담소운영 실적보고	"	"
국유 임산물 매각 상황보고	기 보	시·군·구관리소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수입류, 야생조수 인공사양 실적보고	연 보	시·군
임도시설·현황보고	"	시·군·구관리소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상황보고	기 보	"
국유재산종유 및 규모별 대부사용허가 상황보고	연 보	"
국유림, 분수림설정 상황보고	기 보	시·군·구
국유재산 대부료징수 상황보고	반 년 보	시·군·구관리소
영림계획 작성진도 상황보고	기 보	시·군·구관리소
산업비림 확보 상황보고	연 보	시·군·구
조수 수출(입)허가 상황보고	월 보	시·도
영림계획 작성사업 계획보고	연 보	시·군관리소
조수 보호사업 실적보고	연 보	시·군관리소
유해조수 포획허가 상황보고	"	시·군
불법건조물 사후관리 결과보고	"	"
()년도 방계계획 수집자료보고	"	시·군관리소
산림용 고품복합비료 수급계획보고	"	시·관리소, 임업연구소, 임목육종연구소
조림명령 실행실적 및 조림비 반환 실적보고	"	시·군
영림계획 작성상황, 실행상황 및 연도별 사업계획보고	"	"
사방계획 예정지 보고	"	치산사업소
가로수 식재계획 대 실적 및 가로수 활착 상황보고	"	시·군·구
농촌 임산연료수급 및 생산계획 보고	"	시·도
임산연료 채취실적보고	기 보	읍·면
목재이용 실적보고	연 보	"
국유재산증감 및 이동상황보고	반 년 보	시·군, 영림서 시·군·구관리소
보전임지, 전용허가(취소, 변경)상황보고	연 보	시·도

(3) 農村振興廳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잠기시험용건 채집 결과보고	반 년 보	잠업시험장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실적보고	월 보	시·도가축위생시험소
농고와 산학협동 실적보고	연 보	시·군농촌지도소
부업훈련 실적보고	"	"

Ⅲ. 農林漁業統計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농촌지도 활동보고	반 년 보	시·군농촌지도소
영농기술훈련 진도보고	월 보	"
단말장치이용 상황보고	기 보	연구소, 시험장
토양 검정결과보고	연 보	시·군농촌지도소
포충망에 의한 멸구, 매미충류의 발생보고	순 보	"
복합영농기술지도 실적보고	기 보	"(주산단지)
벼관찰 포병해충발생 상황보고	순 보	시·군농촌지도소
예찰포 벼 병해충발생 상황보고	순 보	시·군농촌지도소
기본 예찰 조사일보	일 일 보	"
보리(밀)관찰포 병해충발생 상황보고	순 보	"
보리(밀)예찰포 병해충발생 상황보고	"	도·농촌진흥원
사과, 배 주요병해충 예찰 조사보고	순 보	시·군농촌지도소 (주산단지)
순회관찰에 의한 벼 병해충발생 상황보고	주 보	시·군농촌지도소
농민후계자선발 및 사후지도 및 실적보고	반 년 보	"
원예 및 특용작물 병해충발생 상황보고	순 보	군농촌지도소 (주산단지)
도열병 월동 및 이삭도열병 조기판단조사보고	"	군농촌지도소 (기본예찰소)
취수장염 농도 조사부	" (4월~6월)	시·군농촌지도소

(4) 水産廳

통 계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투용자사업 추진상황보고	월 보	시·군
수산제조업 허가 및 신고상황보고	기 보	"
부정수산제품 및 제조업단속 상황보고	연 보	"
부정어업단속 상황보고	월 보	"
해면어업허가 및 신고처분 상황보고	반 년 보	"
해면어업 면허처분 상황보고	기 보	"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어업권변동상황보고	반 년 보	"
어업용보급 수산물처리 가공시설처리 상황보고	연 보	"
어선등록 및 건조(개조)발주종업 제한변경허가 상황보고	기 보	"
부실 양식어업권 정비결과 보고	연 보	"

2. 解放後의 農林漁業統計

동 제 명	보고주기	최종작성기관
내수면 연구소(개발시험장)업무보고	반 년 보	내수면연구소 및 개발시험장
새마을 영식계 설립, 해산 상황보고	연 보	시·군
수산 증식시설관리 상황보고	"	"
어항시설(관리, 피해)상황보고	"	"
어로시설관리 상황보고	연 보	시·군
공동운반선 예산집행 실적보고	기 보	경기도
공동운반선 운항 실적보고	월 보	"

여 백

IV. 產業經濟統計

여 백

IV. 産業經濟統計

1. 日帝時代의 資源調查

가. 資源調查의 概要

日本에서 資源調查法令이 制定된 것은 1929年이다. 바로 30年代를 바라보며 日本軍國主義의 挑躍을 위한 資源政策面에서의 統制體制를 구축할 시기라고 보고 設定한 것이다.

당시 국제적으로는 中國에서 장개석 國民黨勢力的 浮上에 이어 伊太利, 獨逸의 파시스트, 나치黨 세력이 대두되고 美國(후버大統領 就任), 英國(勞動黨집권)등에서도 정치변혁기에 들고 있었다. 급기야는 1929年 「월」街의 去來所 파탄을 계기로 大恐慌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韓國에서도 1926年의 6.10萬歲運動에 이은 羅錫疇의 殖産銀行, 東拓投彈義舉와 1927年의 新幹會 發足, 그리고 上海臨政의 機構改編(國務委員·主席制)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은 光州學生運動(1929)으로 번졌다.

그래도 日帝는 대대적인 産業博覽會開催와 漢江鐵橋竣工(1927) 및 蔚山 서울의 飛行場 建設(1929) 등으로 躍進日本の 旗幟를 내 보이며 對外關係에서도 列強의 世界秩序整備過程에 참여하려고 中國內 排日運動을 빌미로 軍事介入(清島上陸)을 도발하면서 英美와 軍縮會議 또는 海洋軍備制限會議에 參與하는 한편으로 國內의 總動員體制를 構築하여 나아갔다.

말하자면 資源調查關係 法令은 이를 위한 事前整備作業이다. 1929年 4월에 法律 第53號로 法이 制定되고 그 施行은 그해 11月の 資源調查令(勅令 第329號)에 의하여 12月 1日부터 하기로 하면서 朝鮮 등에서도 施行토록 하였다(勅令 第327號).

資源調查法은 7條 附則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는 이 法의 目的이나 趣旨같은

IV. 産業經濟統計

것이 없이 「政府는 人的 및 物的資源의 調査를 위하여 必要할 때는 個人이나 法人에 대해서 이에 관한 報告 또는 實地申告를 命할 수 있다」(第1條)는 것이 바로 調査의 근거이다.

이를 근거로 軍需統制에 必要하다면 모든 것에 앞선 優越的 位置에 있는 것이다. 즉 「當該官吏나 吏員은 人的 및 物的資源의 統制運營計劃을 設定하고 進行하는데 必要한 資源調査를 위해서, 必要한 場所에 들어가서 檢査를 하고 調査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關係者에게 대하여 質問할 수 있다」(同 第2條), 만약 이 규정에 의해서 명령받은 報告와 實地申告를 하지 않거나 虛偽報告·申告하든지 當該官吏의 職務執行을 拒否, 妨害하면 罰金刑에 처하고(第5, 6條) 이 調査의 祕密을 누설하면 體罰까지 가한다.(第7條)

이 調査는 어느 時期에 한번 하거나 回次를 나누어 報告, 申告調査를 한 것이 아니라 必要에 따라 部門別로 一定時日을 정해 놓고 持續的으로 실시한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施行되고 있던 「報告例」規程과 併行하되 그보다 더 特化統制시킨 것으로서, 報告나 申告形式이 「報告例」體制의 延長線上에 있다.

母法에 이미 制定된 資源調査令에서 內閣總理大臣이 資源調査法 施行을 統轄토록 格上시킨 것이나 이 調査는 中央部處중 人的 物的資源 관계로 한정시켜 日本政府의 資源局이 이를 직접 擔當하는 實務部署로 한 것이 特化樣態를 나타낸 것일 뿐이다.

資源調査令의 「別表」에 의하면 外務(在外國 日本人관계), 內務(自動車 港灣 등), 大藏(貿易), 文教(技術者), 農林(農地, 農家, 農產物), 商工(工場, 鑛山), 遞信(船舶, 通信), 鐵道(鐵道 輸送) 및 拓務(植民地 관계) 등 部(省)에 限定되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이 정도면 日本領土內 모든 人的, 物的 資源은 모두 包括統制할 수 있는 셈이다.

報告事項이나 註記(摘要)는 물론, 調査期日과 報告期日을 규정한 것도 日本 특유의 「報告例」規定스타일이다. 특히 調査 및 報告期日은 調査對象의 季節性과 頻度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5, 7, 10, 11日 등에 보고시킬 때는 初1日에, 3, 6, 9, 12月에 해당하는 것은 末日로 되어 있고 가령 內務部の 職業紹介所 實績이나 財務部(大藏省)의 輸出入 實績같은 것은 每月末에 하게 하였다.

이 法令의 가장 特徴的인 것은 報告나 申告에 의한 調査는 규정하되 公表에 관한 것은 아무런 言及이 없는 것이다. 즉, 報告·申告된 調査資料는 現況把握 政策的 動員에나 쓰인 것이지 統計作成 分析報告書 發刊 등의 規定이 必要없는 것이다. 하기는 調査票들의 樣式 자체가 統計表 形式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이 資源調査法에 의한 結果는 單行本이나 定期刊行物로 된 특정 보고서가 없는 실정 이므로 당시의 이들 資料를 발굴하는 것이 또한 今後의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이 資料調査法令에 의한 報告·申告調査는 上記 部署別 內容에 따라 許多하지만 韓國에서 調査할 때 따로히 部門別 規則을 制定하여 실시하였다. 가령

- ① 朝鮮工場資源調査規則
- ② 朝鮮鑛業資源調査規則
- ③ 朝鮮海事資源調査規則
- ④ 朝鮮電氣供給事業資源調査에 관한 件
- ⑤ 朝鮮港灣資源調査規則
- ⑥ 朝鮮自動車資源調査規則

등이 그것이다. 1944년에 실시한 人口調査規則도 이 資源調査法에 근거하여 實施 하였다. 以下에서 위 各 項의 調査들을 약간씩 說明키로 한다(人口調査는 前述參照).

나. 朝鮮工場資源調査

이 調査는 前述한 바와 같이 法律第53號 資源調査法에 따라 朝鮮總督府令 120 號(1929年 12月 1日)에 의한 朝鮮工場資源調査規則으로 總督府 殖産局에서 1930년부터 朝鮮에서도 實施한 것이다.

이 調査는 原則적으로 報告 또는 申告命令에 의한다. 人的資源을 비롯하여 工業, 鑛業, 會社, 港灣, 遞信, 交通 등의 모든 資源을 年末現在로 作成하여 報告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特殊한 業務上의 祕密에 屬한 事項이나 設備에 대하여는 報告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 以外의 事項은 報告 또는 申告를 하지 않을 때에는 罰金刑과 體刑에 處한다고 嚴한 罰則規定이 있다.

IV. 産業經濟統計

調査對象은 原則的으로 5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할 수 있는 設備를 갖고 있거나 5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하는 工場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調査對象의 規模를 달리하고 있다. 즉 金屬, 木工, 紡織 등 製造加工用 機械器具의 製造, 醫療機器製造, 兵器航空機附屬品 製造, 酒精, 缶詰 製造 등의 工場은 15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할 수 있는 施設을 갖고 있거나 15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하는 것만 對象으로 하였다.

또한 機械재봉틀, 合金, 볼트·너트, 原動, 自動車, 兵器, 車輛, 船舶, 工業藥品, 비누, 皮革, 통조림 등을 製造하는 工場은 30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할 수 있는 施設을 갖고 있거나 調査當時 30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하고 있는 業體를 對象으로 하였다. 또한 麻織物, 毛織物, 電線, 鐵道軌道, 車輛, 航空機, 유리, 人造肥料, 砂糖 등을 製造하는 경우는 50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할 수 있는 設備를 갖고 있거나 常時 50人以上의 職工을 使用하고 있는 工場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綿絲, 絹絲, 毛絲 등의 紡績, 綿織物, 시멘트, 人造絹絲, 紙 등을 製造하는 業體는 100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었거나 常時 100人以上의 職工을 使用하는 경우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한편, 調査記入事項은 工場名, 所在地, 主要事業名 從業員數, 雇傭日數 등의 基本項目外에 生産, 出荷, 在庫額 또는 量, 燃料 및 動力使用額, 機械設備, 原動機, 敷地面積 등과 原料, 半製品까지 把握하여 近代 製造業統計調査 項目을 방불케하고 있다.

調査節次는 前年度調査(12月末 現在)를 2月末까지 完了하여 市·郡·邑面長이 道知事에게 提出하고 4月 15일까지 總督府 殖産局에 提出하였다. 그러나 工場의 開業, 休業 또는 廢業에 관한 報告는 8月 15일까지 總督府에 提出하였다.

統計上의 目的以外에는 使用할 수가 없다고 規定되었으나 人的 및 物的資源의 統制運用計劃의 設定 및 遂行에 必要할 때에는 此限에 不在함이라고 하였으니 「統計目的」이란 이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며 下部機關이 事前 發表할 경우는 朝鮮總督의 承認을 얻도록 하는 統制를 規定하였다.

그리고 官公立工場과 朝鮮鑛業資源調査規則의 適用을 받는 事業을 하는 工場은 以上の 規定에 拘束받지 않는다.

常時 5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하는 工場 또는 5人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以前에 5人以上의 職工을 雇傭하였고 設備을 아직 保存하는 工業主는 工場資源調査規則에 따라 每年 調査票를 提出하여야 한다. 즉, 規則第1條에 該當하는 工場의 工業主는 調査票 第1號甲, 第2號甲 및 第3號甲에 該當事項을 각각 記入하여 다음 해의 1月末까지 그 工場所在地를 管轄하는 府尹, 郡守, 島司에게, 또 第2條 該當工場의 工業主는 調査票第1號乙, 第2號乙 및 第3號乙의 該當事項을 각각 記入하여 다음 해의 2月末까지 府尹, 郡守, 島司에게, 또한 第4號, 第5號, 第6號 및 第7號의 각 3通을 다음해의 2月末까지 道知事에게 直接 提出하고 府尹, 郡守, 島司는 工業主로부터 提出된 調査票의 각1통씩을 2年間 保存하고 남은 2通을 2月末日까지 道知事에게, 道知事는 그 調査票의 1통에다 一括하여 番號를 記入하여 4月15日까지 總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 朝鮮鑛業資源調査

朝鮮鑛業令 第1條에서 規定하는 鑛業을 行하는 鑛業權者로 하여금 다음에 該當하는 者는 鑛山마다 每年 調査票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해당事項을 調査記入하여 翌年2月末日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하도록 하였다.

- (1) 朝鮮鑛業令 第1條2項에서 規定하는 鑛物製鍊事業을 하는 鑛山으로서 3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設備을 가지거나 또는 常時 3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者
- (2) 石炭의 採掘事業을 하는 鑛山으로서 50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設備을 가졌거나 또는 常時 50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者
- (3) 銅鑛, 鉛鑛, 亞鉛鑛, 鐵鑛 또는 硫化鐵鑛의 採掘事業을 하는 者로서 20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設備을 가지거나 또는 常時 200人 以上の 鑛夫를 使用하는 者
- (4) 錫鑛 또는 망강鑛의 採掘事業을 하는 者로서 5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設備을 가지거나 또는 常時 50人以上의 鑛夫를 使用하는 者

鑛業權者는 上記 調査票外에 別途樣式에 따라 作成한 作業場平面圖를 添附해야

(朝鮮工場資源調査用)

(나) 調査票 第二號 乙

◎第 號	一般工場調査期間				季節作業工場調査期間				工場番號※		
	自 年 月 日 至 年 十二月末日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生産番號※		
◎※欄	工場名					主要事業					備考
	工場所在地										
	品 目	生 産 額				在 庫 額(期末現在)					
	分 類 細 目	數 量	單 位	價 額	數 量	單 位	價 額				

昭和 年 月 日提出
工場主
住所及氏名
父八名
捺印

없다고 하였으나 人的 및 物的資源統制運用計劃의 設定 및 遂行에 必要할 경우에는
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 규정도 유명무실한 것이다.

라. 朝鮮海事資源調査

汽船을 所有한 者는 總噸數 500톤以上과 總噸數 20톤以上 500톤 未滿의 汽船

IV. 産業經濟統計

朝鮮鑛業資源調查 調查票

調查票 第一號

登 番 錄 號 ● 官 名	第 號	自 年 月 日 至 年十二月三十一日					
	鑛 山 名	主 要 事 業		事業開始年月			
	鑛 山 所 在 地						
	鑛 區 數	鑛 區 總 坪 數					
	鑛 區 所 在 地						
	年 作 業 總 日 數	一 日 ノ 作 業 時 間					
	年 生 產 額	分 類	細 目	數 量	單 位	額 價	備 考
價 額 合 計							

昭
和
年
月
日
提
出

工
場
主
名
及
住
所
八
名
父
姓
二
捺
印
並
立

을 所有한 者를 구분하여 각기 별개의 樣式에 따라 船舶의 用途, 船體, 機關, 設備, 積載力等を 每年 12月末日을 基準으로 報告書 各 2通을 作成하여 翌年 2月末日까지 朝鮮總督府 遞信局長에게 提出하도록 하였다.

新造, 購入 其他事項에 따라 새로히 國籍을 取得한 總噸數 20톤 以上の 汽船을 所有한 者는 國籍取得時의 狀況에 따라 報告書를 遞信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船舶의 國籍取得이 7月1日以後인 경우에는 上記 12月末日 現在로 作成해야

하는 報告書作成은 必要치 않다.

汽船에 대해서는 500톤以上과 100톤以上, 500톤 未滿을 區分하여 달리 작성한 船圖를 添附한다.

報告書記載事項에 顯著한 變更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報告提出한다. 船圖上의 變更도 마찬가지이다.

總噸數 20톤以上의 船舶이 沈沒했거나 行方不明時에도 그 事實 및 發生年月日을 報告하여야 한다. 解體했거나 外國人에게 讓渡했을 時에도 마찬가지다.

總噸數 20톤以上의 船舶所有者 또는 賃借人은 第4號 書式에 따라 船員數, 給與, 兵役關係等에 대해 每年 12月末日 現在에 準하여 報告한다.

上記 船舶의 所有者, 賃借人은 每年 4回 卽 1月20日, 4月20日, 7月20日 및 10月20日까지 다음 사항을 各各 報告한다.

- (1) 船名 및 總噸數
- (2) 所有者, 賃借人 및 期間傭船者의 住所 및 姓名 또는 名稱
- (3) 그 月 1日正午 現在의 船舶位置 및 狀態(航行, 碇泊, 繫船, 入渠 等の 事實)
- (4) 前 3月間의 船舶運航事項

a. 起點港, 終點港, 主要寄港地名 및 그 入出港月日

b. 檢査, 入渠, 繫船等の 運航障害의 有無, 그 期間 및 場所

總噸數 20톤以上의 汽船으로 定期航海를 營利하는 者도 그 내역을 每年 10月末을 기준으로 淸新國장에게 報告한다.

國際運輸業을 營爲하는 者는 第5號 樣式에 따라 每年 12月末日에 끝나는 1年間의 貨物 및 旅客의 國際運輸狀況을 翌年 3月末日까지 報告한다.

또한 外國人에게 總噸數 數千噸以上의 日本船舶을 讓渡, 賃貸, 使用貸, 擔保提供 또는 船舶의 全部로 運送契約의 目的으로 한 者는 契約成立後 1個月以內에 그 事項을 報告한다.

마. 朝鮮電氣供給事業資料調査

電氣供給事業을 經營하는 者도 별도로 提示하는 調査票樣式(報告書) 製1號 및

IV. 産業經濟統計

第2號樣式에 定하는 바에 따라 從業員 및 發電에 使用하는 燃料使用額에 對해 每年 12月末日 現在를 基準으로 報告書를 作成하여 翌年 2月 15日까지 朝鮮總督府 遞信局長에게 提出하도록 하였다.

바. 朝鮮港灣資源調查

다음과 같은 施設의 1에 該當하는 設備를 經營하는 者는 每年 12月末日 現在의 狀況을 基準으로 報告書를 作成하여 翌年 3月末日까지 그 地方을 管轄하는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1) 防波堤, 防砂堤 및 導水堤
- (2) 繫船岸壁, 棧橋, 浮棧橋 및 物揚場
- (3) 上屋 및 倉庫
- (4) 貯炭場 및 貯木場
- (5) 危險物積置場
- (6) 野積場其他空地
- (7) 石炭 및 石油의 積載設備 및 給水·給水施設
- (8) 繫船浮標
- (9) 乾船渠, 浮船渠 및 船架
- (10) 港內鐵道
- (11) 運河其他水路
- (12) 小船船溜
- (13) 通 船
- (14) 水門 및 閘門

國家가 管理하는 前項의 設備에 對해서는 그 管理官廳이 每年 12月末日 現在를 基準으로 한 調查票를 作成하여 翌年 3月末까지 그 地域을 管轄하는 道知事에게 報告한다.

道知事는 위의 報告調查票 및 其他調査에 따라 每年 12月末日 現在를 基準으로 翌年 5月末日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한다.

사. 朝鮮自動車資源調査

自動車を 所有한 者는 다음 第1號樣式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아래 各號의 事項에 따라 每年 8月末日 現在의 狀況을 基準으로 各 3通의 報告書를 作成하여 9月末日까지 道知事에게 提出한다.

- (1) 車輛番號
- (2) 所有者의 住所 및 姓名 또는 名稱
- (3) 運轉路線 또는 運轉區間
- (4) 駐車場所
- (5) 最初使用年月
- (6) 車輛의 種類
- (7) 車輛의 型式
- (8) 積載量
- (9) 馬力數
- (10) 構造裝置

氣筒의 內容積 600cm³ 以上の 原動機를 備置한 自動車轉車의 所有者는 每年 8月末日 現在의 狀況을 基準으로 各 3通의 報告書를 作成하여 9月末日까지 道知事에게 提出한다.

- (1) 車輛番號
- (2) 所有者의 住所 및 姓名 또는 名稱
- (3) 車輛型式
- (4) 氣筒의 內容積
- (5) 構造裝置

道知事는 第1,2號樣式의 報告書를 受理했을 時는 이를 정리하여 各 2通을 10月 15日까지 朝鮮總督에서 提出한다.

또한 道知事는 別도의 樣式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自動車運轉手 免許證을 所持하는 者에 대해 每年 12月末日 現在 狀況을 基準으로 報告書 3通을 作成하여 翌年 3月末日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하게 한다.

IV. 産業經濟統計

道知事에게 提出하는 報告서는 管轄警察署를 經由하나 軍用自動車 및 自動車轉車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2. 解放後의 産業經濟統計

가. 産業統計

(1) 沿革

1955年 韓國銀行調查部가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查」라는 名稱으로 처음 實施한 이래 1958年에 韓國産業銀行, 1960年에 商工부와 韓國産業銀行이, 그리고 1963年과 1966年의 調査는 經濟企劃院과 韓國産業銀行이 實施하였다. 1962年에는 指定統計 111-11-05로 되었다. 1968年에도 經濟企劃院과 産業銀行이 共同으로 實施하였는데 1973년부터는 經濟企劃院이 鑛工業센서스라는 名稱으로 實施하였고 1983년부터는 다시 産業센서스로 名稱을 再變更하여 앞으로 5年마다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國家基本統計가 됨으로써 産業에 관한 全數調査로서 널리 利用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센서스用語가 總調査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이 名稱도 産業總調査로 變更되었다.

이 統計調査는 人口 및 物價統計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歷史적으로나 統計技術面에서 가장 앞선 國家統計인데 그동안 數個機關으로 主管團體가 바뀐것은 統計調査機構나 統計人的資源面에서 不可避하였던 事情때문이다. 1950年代初에는 韓國銀行에 局單位의 莫強한 機構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統計人的資源도 豊富하였다. 그리고 韓國銀行調查部 自體가 經濟統計全般을 取扱하는 한편 國民計定計算으로 基礎資料의 充當을 위해서도 이들 資料를 確保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1955年의 調査만해도 不備한 資料와 條件下에서 實施된 最初의 試圖였으므로 調査項目도 生産, 雇傭 및 給與에 限定되어 그 結果를 利用하는데 充分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1958年의 調査에서는 國際聯合의 技術指導書 勸告內容에 따라 多少의 進展을 보았으며, 1960年의 調査도 거의 같은 內容의 調査였으나 많은 發展을 보였다. 1963년에는 國際聯合의 勸告案을 參考로 하여 資料의 最大限 補完과 그간의 調査

經驗을 살려서 調査企劃부터 實地調査에 이르기 까지 完璧을 期하여 많은 成果를 올렸다. 1966年以後의 調査는 지금까지의 成果를 새로운 조사영역의 확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調査目的

國民總生産에서 접하는 막중한 비중에 비추어 産業構造間의 均衡的 發展과 國民所得, 生活水準 및 勞動生産性의 向上, 그리고 完全雇傭, 輸入物資의 國產代替등 工業國을 指向하는 經濟開發計劃樹立의 벤치마크(Bench-mark)資料를 얻음과 동시에 經濟政策의 施行效果를 측정하여 이를 補完하고 其他 經濟分析에 필요한 기초資料를 얻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3) 調査時期 및 回數

鑛工業센서스 施行規則의 調査時期 條項에 따르면 센서스는 1963年을 基準年度로 하고 5年마다 1回씩, 調査機關의 長이 定하는 時期에 實施한다. 다만, 調査機關의 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調査回數를 增加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年 또는 3年마다 調査를 實施하여 왔으나 특히 第1次 및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 樹立과 補完을 위해 1963年과 1966年에도 實施하였다.

(4) 調査範圍 및 調査對象業體

(가) 調査範圍

鑛業 製造業, 電氣, 水道 및 가스業

(나) 調査對象事業體

12月末現在로 全國 5人以上の 企業規模事業體는 全數調査를 하며 5人未滿事業體는 標本調査를 한다. 다만 軍이 直營하는 事業體, 公共職業輔導所 및 矯導所의 作業場, 公共團體 및 學校에 속하는 實習場, 試驗所, 研究所 등의 實習場 및 非賣品 製造業體는 對象에서 除外한다. 具體的으로는

- 1) 調査基準시 現在의 從業員數가 5人以上이라든가
- 2) 調査實施年의 12月中 操業日의 平均從業員數가 5人以上 또는
- 3) 休業中이거나 季節的인 事業體로서 年中 操業日數가 90日(3個月) 以上이

IV. 産業經濟統計

고 그 操業期間中 平均從業員數가 5人以上이었던 事業體
를 調査對象으로 하는 것이 慣行이다.

그러나 塩業事業體는 年中操業日數가 90日未滿이라도 操業期間中의 平均從業員
數가 5人以上이면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한편 除外되는 事業體는 다음과 같다.

- 1) 調査基準日現在 設立中이거나 新設工事中の 事業體
- 2) 國軍, 國際聯合軍 및 外國의 外交機關이 直轄하는 事業體
- 3) 公共職業輔導所의 作業場
- 4) 公共團體 및 學校에 속하고 있는 實習場, 試驗場 및 研究所

(5) 調査事項

- (가) 事業體名과 所在地
- (나) 本社名과 所在地
- (다) 組織形態
- (라) 資本金 또는 出資金額
- (마) 主要生産品名과 生産額
- (바) 從業員數
- (사) 年間給與額과 福祉厚生費
- (아) 月別操業日數
- (자) 年間主要生産費
- (차) 出荷額과 其他收入額
- (카) 內國消費稅額
- (타) 年初 年末在庫額
- (파) 完成品出荷額과 在庫額
- (하) 有形固定資産, 動力施設 등

(6) 調査方法

他計式面接調査를 하나 電氣·가스·水道事業體와 大規模事業體는 自計式에 의
한 報告(郵便調査方法)에 의하여 資料를 蒐集한다.

(7) 從業員 5人未滿의 零細事業體에 대한 標本設計要領

- (가) 基本資料의 蒐集……1983年 調査에서는 同年 10月 1日에 實施한 3,054개 동, 읍 및 면별로 從業員 5인 未滿의 鑛業 및 製造業體에 屬한 99,876개 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였다.
- (나) 基本資料의 整理……市道別 産業中分類로 事業體 分布를 把握하고 事業體數의 크기에 의한 洞邑面別 度數分布表를 作成하며 事業體數의 크기에 의한 洞邑面別 總和로 整理하였다.
- (다) 標本抽出……231개 동읍면에 6,392개 事業體를 295개 標本 洞邑面에서 4,877個事業體, 總 526개 洞邑面에서 11,269個 標本事業體를 層化二段任意抽出하였다.
- (라) 零細事業體에 대한 調査項目……從業員數, 給與額, 出荷額, 生産費, 附加價値, 有形固定資産 및 年間操業日數 등 7個 項目이다.

나. 鑛工業統計調査

이 調査는 1967年에 最初로 經濟企劃院과 韓國産業銀行이 共同으로 實施하다가 1968年에 指定統計 111-11-10으로 指定한 後 1969年부터는 經濟企劃院에서 每年 實施하고 있는데 西紀年度로 끝자리가 3과 8인 해에는 鑛工業총조사를 實施하므로 本調査는 必要없게 된다.

따라서 鑛工業統計調査는 5人未滿 零細業體가 調査對象에서 除外되며 調査項目에서 若干 差異가 있을 뿐 調査對象, 調査方法 등은 거의 鑛工業센서스와 同一한 調査다.

다. 鑛工業動態調査

(1) 沿 革

1954年에 韓國銀行이 産業生産指數를 編制할 目的으로 最初로 實施하였는데

IV. 産業經濟統計

1962년에 韓國産業銀行으로 移管되었고 1970년에 經濟企劃院과 共同으로 實施하다가 同年 指定統計 111-11-12로 指定된 後 부터는 經濟企劃院 單獨으로 每月 調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韓國産業銀行 調查部도 自體로서 鑛工業生産動態調查를 실시하였던 바 이에는 鑛工業標本調查, 鑛工業生産量調查, 鑛工業生産者販賣價格調查 等の 調查가 있었다.

1958年, 1960年, 1963年 및 1966년에 4회의 鑛工業총조사를 實施한바 있는 韓國産業銀行은 총조사시기 사이의 中間年の 補完資料를 얻으며 鑛工業部門의 短期的 變動狀態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1962年 3月부터 鑛工業標本調查를 實施한 것이다.

1963年 10月부터는 鑛工業生産品の 生産者販賣價格水準을 파악함과 동시에 金融調查인 生産動態調查의 時系列 比較上 價格變動의 影響을 제거하기 위하여 디플레이터(deflator)로서의 鑛工業生産者販賣價格調查를 實施하였다.

1966年이 되어서는 鑛工業事業體의 主要製品 및 使用原材料를 物量面에서 파악하여 生産動向의 主要指標인 鑛工業生産指數의 編制에 필요한 鑛工業生産量調查를 실시하였다.

(2) 調查期日

每月別로 調查하며 各月 初日부터 末日까지의 1個月間을 調查基準期間으로 하고 各月末日을 調查基準日로 하여 每翌月初에 조사한다.

(3) 調查範圍 및 對象

鑛業·製造業 및 電氣業에 대한 從業員 10人 以上の 事業體의 約 9,500個 標本 業體를 調查한다. 但 두부, 탁주,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製造業體는 5人 以上 業體를 包含시켰다.

(4) 調查項目

(가) 物量調查

品目別 月初在庫量, 生産量 再投入量, 出荷量 過不足補整量 및 在庫量과 原材料
使用量, 月末在庫量 雇傭 및 給與 月末從業員數, 月中延勤務人員數, 月中給與額,
月中延勤務時間數, 月中操業日數 등

(나) 金額調查

品目別 月初在庫額, 出荷額, 過不足補整額, 月末在庫額, 雇傭 및 給與, 月中操業
日數 등

(5) 調查基準日……每月末日

(6) 標本抽出

(가) 調查對象事業體 選定方法

事業體를 從業員數를 基準으로 하여 第1層(100人以上 業體)과 第2層(100人 未
滿 業體)으로 層化한 後 100人 未滿인 第2層의 事業體를 다시 出荷額 크기에 따
라 第2-1層(出荷額이 큰 業體)과 第2-2層(出荷額이 작은 業體)으로 再層化하
여 從業員 및 出荷額規模가 큰 第2-1層 및 第1層業體는 모드 全數調查를 하며
出荷額規模가 작은 第2-2層의 事業體는 出荷額 내림선順에 의해 系統抽出하여
擴大倍率(乘數)이 適用되는 標本調查業體로 한다.

(나) 標本の 크기 決定

$$n = \frac{C^2(1-p)^2}{1 + \frac{1}{N} \cdot \frac{C^2(1-p)^2}{CV^2}}$$

n : 標本事業體數

N : 標本調查層의 事業體數

C : 標本調查層의 變異係數

P : 切捨點 CV : 0.05(5%)

(7) 資料蒐集方法

他計式 및 自計式 調查方法을 竝行하는 標本調查이다.

라. 産業生産指數

1957年 8월에 韓國銀行이 生産活動의 短期變動分析 評價와 GNP推計 勞動生産性指數 및 景氣豫告指標作成 등을 總體的인 生産活動水準과 그 變動을 파악할 目的으로 처음으로 編製하다가 1962년에 鑛工業動態調査를 韓國産業銀行에 移管함으로써 指數業務도 여기서 編制하게 되었다.

(1) 沿革 및 目的

1957년에는 1955年을 基準年度로 하는 暫定産業生産指數를 1954년까지 遡及하여 編成하였던 바 이 暫定生産指數는 生産統計에 관한 基礎資料가 不備했던 當時의 條件에 따라, 加重値算定の 基準으로서 從業員數를 採擇한 程度의 試案에 不過했다. 이것은 1960年 5月에는 1958年에 실시한 鑛工業센서스結果資料를 利用하여, (1958年 基準年度) 加重値算定基準을 附加價値에 의하는 등 暫定指數가 內包하고 있었던 많은 欠陷을 개선한 新産業生産指數를 作成公表한데 이어서 1962年 7月の 基準年度를 1960年으로 하는 第3次 改編指數. 1967年 3月の 1965年 基準 第4次 改編指數에 이어 1970년에는 經濟企劃院과 韓國産業銀行이 共同으로 指數를 編制하는 過渡期를 經由한 後부터 經濟企劃院(統計廳) 專擔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指數基準年을 5年마다 變更하는 方針에 따라 改編하여 왔다.

(2) 指數品目

1985年 基準指數品目은 總生産額의 1/5,000以上(156億원)을 차지하는 品目中 資料蒐集이 容易하고 概念定義가 明確한 品目を 우선 選定하였으며 半製品일 경우는 1/5,000以下の 品目이라도 完製品과 合쳐서 條件을 充當할 경우에는 補完 選定하였다. 그리고 特殊分類指數編制를 위하여 比重으로는 條件을 充足못하여도 寒天, 어묵, 人蔘茶, 毛皮製品 등을 補完選定하였다.

(3) 加重値

1985年 鑛工業統計調査의 生産額 粗附加價値, 出荷額 年末 및 年初在庫額資料

産業大分類別 加重値 및 品目數

	加重値(%)	品目數(個)	代表度(%)
總計	100.0	666	85.5
鑛業	2.93	16	93.5
製造業	90.48	649	84.2
電氣業	6.59	1	100.0

를 基礎로 하여 算出하였는데 電氣業은 韓電決算資料를 그리고 輸出은 通關메이스 統計를 補充使用하였다.

(4) 指數算式

基準時點固定加重算術平均法(Laspeyres算式)

$$Q_0^t = \frac{\sum P_0 q^t}{\sum P_0 q_0} = \frac{\sum p_0^i \cdot q_0^i \left(\frac{q^t}{q_0^i} \right)}{\sum P_0 q_0^i} \times 100 = \frac{\sum W_0^i \left(\frac{q^t}{q_0^i} \right)}{\sum W_0^i} \times 100$$

Q_0^t : 指數

p : 單位當附加價值

q : 生産量

첨자₀ : 指數 및 加重値의 基準時點

첨자_t : 指數의 比較時點

첨자_i : 代表品目系列

(5) 産業生産關聯指數

統計廳에서 月別로 調査하는 生産動態調査 資料에 依據 産業生産指數를 編制하고 있는데 이와 關聯하여 作成하는 指數로 生産者出荷指數, 生産者製品在庫指數가 있으며 또한 類似한 건으로 生産能力 및 稼動率指數가 있는데 이 編制方法은 省略한다.

마. 機械受注統計調査

統計廳은 景氣指標作成을 위한 基礎資料의 必要性和 設備投資動向을 把握할 目

IV. 産業經濟統計

的으로 1979年 一般統計 111-21-08로 機械受注調査를 每月 實施하고 있다.

(1) 調査範圍 및 對象事業體

(가) 調査範圍……設備用機械 製造業

(나) 對象事業體……從業員 200人 以上の 106個 事業體(代表度는 約 60%)

(2) 調査事項

需要者 및 機種別受注額과 機種別 販賣額을 調査하며 受注項目으로서는 製造名, 機種, 需要者事業體名 需要者分類, 受注額 受注數量, 新規 및 改修區別 豫定納期 등을 調査한다.

바. 에너지 總調査

動力資源部는 에너지經濟研究院으로 하여금 1981년부터 3年마다 에너지 總調査를 一般統計 151-21-04 實施하여 需要部門別 에너지消費實態와 供給段階別 에너지흐름을 把握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總調査는 에너지消耗가 큰 事業體 등 一部는 全數調査에 依하였지만 全産業의 事業體를 標本에 依하였기 때문에 綜合標本調査라고도 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① 産業部門의 鑛業, 製造業, 農水産業 및 建設業과 ② 輸送部門의 運輸業 및 自家用車, ③ 商業部門의 都小賣業 飲食宿泊業 金融保險·用役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④ 家庭部門, ⑤ 公共部門의 公共行政 電氣가스 및 水道業, 通信業 그리고 ⑥ 大型建物部門의 6個部門을 에너지 수요부문으로 해서 調査한다.

에너지源別로는 石炭類, 石油類, 가스類, 電力 薪炭 및 其他에너지의 6個種類를 調査한다.

에너지利用器機別로는 産業部門의 熱使用設備, 電力使用設備, 營農 및 重裝備設備를, 輸送部門의 車輛 및 輸送手段을, 商業 및 公共部門의 熱使用設備, 冷房形

態, 電力使用設備 輸送手段을 그리고 家庭部門의 煖房設備, 煉炭使用設備, 石油使用設備 및 炊事使用設備를 調査對象으로 한다.

(2) 調査事項

에너지使用量

(3) 標本抽出

1990년에 實施한 總調査의 標本은 各部門別로 最近에 實施한 各種總調査에서 얻은 資料를 母集團으로하여 層化任意抽出하였다. 部門別로 에너지使用량이 큰 事業體의 一部는 全數調査를 하였는데 部門別 標本抽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가) 農林水産部門

1) 一般農業

1989年 12月 1日基準 農業基本統計에 의하여 農漁家를 母集團으로 하고 標本은 1985年 人口 및 住宅總調査의 郡部 普通調査區에서 195個의 調査區를 抽出하고 各標本調査別로 5個씩의 標本農家를 抽出하였는데 全國標本數는 975農漁家였다.

2) 特殊農漁業

家口에서 把握할 수 없는 特殊 業種은 部門別로 事業者團體, 組合, 企業體 등을 689個 選定하였다.

(나) 鑛工業部門

1987年 鑛工業統計調査의 事業體中에서 從業員 5人以上의 1,929鑛業事業體와 54,389製造業體를 各各 母集團으로하여 에너지 消耗率이 높은 事業體順으로 一定한 範圍內까지는 全數 그 以下 事業體는 標本抽出(Cut off Sampling) 하였는데 그數는 鑛業이 200個業體 製造業은 4,300個業體를 各各 抽出하여 調査하였다.

(다) 其他事業部門

其他事業部門의 業體도 鑛業 및 製造業部門의 標本抽出과 同一한 方法으로 다음과 같이 標本을 抽出하였다.

1)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IV. 産業經濟統計

1986年 總事業體統計調查(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이 實施)의 971個事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115個事業體를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2) 建設業

1988年 建設業總調查(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實施)의 7,032個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500個業體를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3)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1986年總事業體統計調查의 995,355事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5,000個標本을 業種別로 層化하여 系統抽出하였다.

4) 運輸 및 通信業

1989年 運輸業 統計調查(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實施)의 7,152個 事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陸上, 水上, 航空 保管, 自家用 및 通信業의 業種으로 層化하여 運輸保管業 2,600個, 自家用 2,800個, 通信業 43個를 各各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5)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1986年 總事業體統計調查의 292,466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業種別로 層化하고 2,242個 標本을 系統抽出하였으며 公共서비스部門은 總務處 및 內務部資料에 의하여 150個標本을 抽出하였다.

(라) 家口部門

1985年人口 및 住宅總調查(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實施)의 普通調查區中에서 750個 標本調查區를 第1段階로 抽出하고 이中에서 9,750家口를 標本으로 뽑았다. 그리고 郡部에서 2,548家口, 市部에서 7,202家口로 各各 選定하였다.

(家口의 推定方法)

各市道の 市部·郡部別 特性 X에 대한 값의 合計推定值를 X_{gh} , 市道別合計推定值를 X_g 라하고 全國推定值(X)는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X_{gh} = F_{gh} \sum_i x_{ghi} = F_{gh} \sum_j \sum_i x_{ghij}$$

$$X_g = \sum_h x_{gh}$$

$$X = \sum_g x_g$$

X = 特性X에 대한 값의 合計推定值

x = 特性X에 대한 標本의 값

F = 乘數(1989年 12月 常住人口調查 家口數/調查家口數)

g = 市道 添字

n = 市郡, 郡部 添字

i = 標本調查區 添字

j = 標本家口 添字

사. 鐵鋼統計調查

韓國鐵鋼協會는 1976年 一般統計 第374號로 鐵鋼材의 需給動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會員社로부터 申告에 의한 調查를 하여오다가 1977年부터는 同調查를 指定統計 350-11-01로 指定받고, 全鐵鋼製造業體를 對象으로 每月 自計式方法으로 調查하여 있다. 調查事項은 銑鐵, 鋼半製品, 普通鋼, 鑄鐵鋼, 特殊鋼業의 生産量, 用途別受注, 鑄鐵材輸出, 燃料 및 用水量, 粗鋼, 壓延鋼材, 鋼管, 鑄鍛鋼業의 生産量, 2次製品生産量 原材料受給 鐵鋼材輸入量과 雇傭 및 給與에 관한 事項을 調查한다.

아. 電氣機械·器具 製造業實態調查

韓國電子工業振興會에서는 電子·電氣製品生産 및 出荷에 대한 需給動向 把握과 同業體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하여 1977年부터 指定統計 351-11-01로 電子製造業體 500個業體와 電氣製品製造業體 250業體를 對象으로 每月 調查하고 있다.

調查事項은 製品의 生産, 出荷 및 在庫, 雇傭 및 資本金 作業日數 및 稼動率 生産能力, 輸出, 主要原資材 등이다.

資料蒐集은 每月末現在로 自計式 郵便方法에 의한다.

자. 建設業 統計

(1) 建設業統計調查

IV. 産業經濟統計

(가) 意義

建設業이란 建築, 土木工事 및 이와 關聯된 構築物 등의 新築, 增築, 改築 등 建設活動에 주로 從事하는 綜合 및 專門職別 業體의 産業活動을 말한다.

이와같은 建設業體는 取得 免許別로 建設部長官 免許業體(土木, 建築 및 特殊免許業體), 動力資源部 免許業體(電氣工事業體), 遞信部長官 免許業體(電氣通信公社 免許業體), 地方自治團體 免許 및 登錄業體(專門建設業體 및 各種 設備登錄業體)로 區分하고, 또한 建設業을 綜合建設業과 專門建設業으로, 綜合建設業은 다시 建築工事와 土木工事로 大分한다.

建設業은 住宅 및 産業施設의 構築에서부터 土木開發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固定資本 내지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을 그 生産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각 産業으로부터 中間投入財 或은 原資材를 購入하게 되므로 木製品, 邑業제품, 鐵鋼, 金屬製品, 電氣製品, 시멘트製品, 판유리, 내장타일 및 합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産業에 影響을 준다. 특히 工事의 種類와 工程에 따라 多量한 建設裝備가 必要하고, 人件費 節約과 工期短縮을 위하여 最新裝備의 購入이 增加하고 있어 機械工業發展에도 寄與하는 綜合産業의 性格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通常의으로 建設業을 부추기는 方法을 使用하는데, 이와같은 建設業의 경기동향과 構造變動 및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同 部門의 統計가 매우 必要한 資料가 된다.

(나) 沿革

建設業統計調査는 1968年 및 1970年度 두번에 걸쳐 韓國産業銀行에서 實施하였으나 本 業務를 經濟企劃院(統計廳)으로 이관, 1972년부터 1973年 基準으로 試驗調査를 實施한 후 1974년에 第1回 建設業統計調査를 實施하였고 그 이래 每年 作成하여 公표하고 있다. 특히 1985年 基準調査부터는 政府의 유사통계 統合計劃에 따라 統計廳에서 電氣通信公社 및 各種 設備工事を 擔當하고 大韓建設協會는 綜合建設業體를, 專門建設協會는 專門建設業體를 各各 調査하며 資料處理는 統計廳에서 一括處理하여 統計資料를 公표하고 있다.

(다) 調査의 法的根據

本調査는 1974.11.13일자 指定統計 第111-11-14호로 指定, 現在 매년 實施

하고 있다.

(라) 調査의 範圍 및 對象

産業上의 調査範圍는 韓國標準産業分類上의 建設業이며 調査對象事業體는

- 1) 建設部長官 免許業體(一般免許 및 特殊免許業體)
- 2) 動力資源部長官 免許業體(電氣工事業體)
- 3) 遞信部長官 免許業體(電信, 電話 工事業體)
- 4) 地方自治團體長의 免許業體(專門職建設業體)
- 5) 國稅廳 事業者 登錄業體중 建設業部門 工事業體(零細建設業體)

의 13,000個所이다.

(마) 調査 事項

- 1) 事業體 概況(事業體名 및 所在地, 組織形態, 資本金 및 總賣出額, 免許種類)
- 2) 雇傭 및 給與(從事上 地位別 從業員數, 職種別 年間給與額)
- 3) 既成額 및 工事費用(既成額, 工事費用, 發注者供給 原材料費, 納付附加價值稅)
- 4) 年初 年末 在庫額(原材料, 燃料, 貯藏品別 年初在庫額 및 年末在庫額)
- 5) 有形固定資產(有形固定資產種類別 年初總額·年間取得 및 増改築額·年間處分 및 損害額·年末總額)
- 6) 主要建設機械 保有대수(블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등 28종)
- 7) 建設工事實績內譯(工事地域, 工事名, 工事種類, 發注者, 契約種類, 契約·着工·竣工 年月, 當年度契約額 및 이월공사액, 當年度 既成額, 當年度收領額)

(바) 結果公表

建設業統計調査 報告書에 수록공표하며 暫定集計結果는 調査實施年度의 7月경에 發表한다.

(2) 建設業受注統計調査

이 調査는 1975. 1月부터 1976. 6月까지 試驗調査를 거쳐 1976.7.26일자 指定

IV. 産業經濟統計

統計 제111-11-15호로 指定, 同年 7月부터 매월 調査實施하고 있다.

(가) 調査範圍

建設部長官이 每年 고시하는 建設工事 도급한도額을 순위상 大規模順으로 상위 170개사를 對象業體로 한다. 그러나 免許取消, 廢業 등의 變更事由가 發生한 경우에는 도급한도額 차순위업체를 調査對象業體로 追加 選定하여 交替한다.

(나) 調査事項

- 1) 國內外別, 發注者別 및 公종별 월중건설공사 수주額(개별공사 전별)
- 2) 自己(直營)工事計劃額
- 3) 發注者の 原資材支給 計劃額

(다) 調査期間

每月 末日을 調査基準日로 하여 每月 1日~18日에 實際 調査를 한다.

(라) 結果公表

익월말 建設業 受注動向 속보를 發刊하며 韓國統計月報에 每月 收錄하여 公표하고 있다.

(3) 建築許可統計

(가) 作成沿革

1955년부터 1970년까지는 韓國銀行에서 支店 所在地의 100個都市와 서울을 包含하는 全國 主要都市 統計를 作成하였다. 한편 建設部에서는 1962年 建築法 制定以後 全國을 範圍로 하여 調査를 實施하여 오다가 1975.12.12일자 一般統計 제 128-22-05로 承認받았다.

(나) 作成方法

建築許可統計는 直接調査結果인 1次的 調査統計의 資料가 아니고 建築主가 當該地域 區·市·郡에 建築許可申請 및 許可書 書式에 따라 建築許可申請을 하면 記錄事項중 用途別·資材別 延建築面積의 集計表를 區·市·郡에서 作成, 市·道를 經유하고 建設部에서 이를 綜合·集計하여 作成한다.

(다) 調査對象範圍

- 1) 建築法 第5條의 建築許可分

2) 建築法 第8條의 협의分

3)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住宅建設事業 협의分

이는 區·市·郡提出分 以外에 建設部長官 承認分인 公共(住公) 아파트 建築事業承認分과 各 市·道知事 승인분인 민간아파트 建築事業 承認實績도 包含하며 新築뿐만 아니라 일정規模 以上の 改築분도 包含하는 것이다.

(라) 調査項目

1) 用途別, 工事種別, 構造別 建築許可 棟數 및 延面積

① 用途別: 住居用, 農林水産業用, 鑛工業用, 商業用, 公共用, 文教用, 社會用, 其他

② 工事種別: 新築, 增築, 改築, 大修繕

2) 住居用 建築物의 경우에는 建築許可 棟數와 延面積의에 세대수를 追加로 調査하고 있음.

(마) 結果公表

統計廳의 韓國統計月報에 每月 수록·公표하고 있으며 建設部의 建設統計편람에 매년 收錄하여 公표하고 있다.

(4) 建築着工統計

(가) 作成沿革 및 對象

本 統計는 1975.3.28일자 指定統計 제128-12-01로 指定하여 每月 作成하고 있다. 調査對象은 大韓民國 領土內에서 着工하는 모든 建築物이다.

(나) 調査事項

1) 建築物着工統計調査

- 建築主
- 建築物의 用途
- 建築物의 構造
- 工事種別
- 延面積
- 層數

Ⅳ. 産業經濟統計

○ 대지면적

2) 住宅着工統計調査

- 住宅의 形態
- 住宅의 種類
- 住宅의 面積
- 住宅의 戶數
- 住宅의 事業主體

(다) 調査方法

1) 建築物의 建築主는 建築工事を 着工한 後 7日 以內에 市長·郡守에게 着工申告書を 提出한다.

2) 着工申告書を 接受한 市長·郡守는 그 기재사항을 確認한 後 建築物着工統計調査票를 作成한다.

3) 市長·郡守는 作成된 着工統計調査票를 익월 5日까지 道知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4)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및 道知事는 送付된 着工調査票 및 建築物着工申告 總括表를 익월 10日까지 建設部長官에게 送付한다.

다. 運輸·通信統計

(1) 運輸業 統計調査

(가) 作成沿革

1964年 및 1969年 2회에 걸쳐 中小企業銀行에서 實施하였으나 1977年에 經濟企劃院으로 本 業務를 이관하여 第1回 運輸業統計調査(1976年 基準)을 實施하였으며 1978.12.23日字 指定統計 第111-11-16으로 指定 每年 調査實施하고 있다.

(나) 調査範圍

1) 調査上の 範圍

運輸 및 倉庫業(韓國標準産業分類 規定)의 약12,000개소

2) 調査對象事業體

가) 육상운수업체

- ①지하철 ②시외철도 ③시내버스 ④시외버스 ⑤고속버스 ⑥전세버스
- ⑦택시 ⑧노선화물 ⑨일반화물 ⑩특수화물 ⑪용달화물 ⑫장의차 ⑬여객자동차 정류장 ⑭화물자동차 정류장 ⑮유류도로 ⑯차량임대업 ⑰육상하역업

나) 수상운수업체

- ①내항여객 ②내항화물 ③외항여객 ④외항화물 ⑤내륙수상여객 ⑥내륙수상화물 ⑦수상임대하역 ⑧수로안내업 ⑨선박청부업 ⑩선박임대업

다) 항공 운수업체

- ①항공운송업 ②항공운수보조 서비스업

라) 운수관련 서비스업체

- ①화물운송대행업 ②선박중개업 ③여행알선업 ④포장·검수 및 유사 서비스업 ⑤보통창고업 ⑥냉장창고업 ⑦위험물창고업 ⑧농산물창고업 ⑨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관 및 창고업

3) 調査單位：運輸業을 經營하는 事業體

※ 運輸業部門의 營業所, 修理工場, 支社, 事務所 등은 原則적으로 事業體(本社)에 包含되지만 運輸業體가 經營하는 運輸活動 以外的 他産業 部門의 經營活動에 從事하는 事業體는 除外한다.

(다) 調査項目

1) 事業體 概況

- ① 事業體名 및 所在地
- ② 資本金 또는 出資金
- ③ 組織形態
- ④ 事業形態

2) 裝備保有現況

가) 육상여객 및 貨物業體

IV. 産業經濟統計

① 엔진기관별 차량대수(소유형태 및 經過年數別로 區分)

② 톤수별 貨物車輛臺數

③ 總稼動臺數

④ 總運行日數

나) 수상운수업체

① 船材別, 經過年數別 隻·톤수

② 機關別 保有 隻數

다) 運輸關聯 서비스업(倉庫業體)

① 保管所·倉庫 保有現況(面績數)

② 기종별, 經過年數別 作業裝備臺數

라) 하역업체

經過年數別 하역장비대수

마) 시외철도 및 지하철업체

차종별 經過年數별 차량대수

바) 유료도로업체

차종별, 經過年數別 車輛臺數

사) 航空運輸業體

經過年數別, 기종별 航空機臺數

3) 年間實績

가) 수송총인원

나) 수송총거리

다) 수송톤수

라) 보관, 하역 및 利用實績

4) 雇傭 및 給與

가) 종사상의 地位別 상용·수시별 종사원수

나) 職種別 年間 給與額

5) 運輸收入 및 費用

가) 運輸收入

나) 貸貸收入(有形固定資産別)

다) 運輸費用(비목별)

6) 有形固定資産

가) 有形固定資産種類別 年初 總額 및 年間 取得額

나) 有形固定資産種類別 年間 處分 및 損害額

다) 有形固定資産種類別 減價償却額 및 年末 在庫額

7) 建設假計定

가) 年間 增加額

나) 年末 殘額

다) 年間 減少額

라) 年間 增減額

(라) 調査期間 및 方法

1) 調査期間

調査對象年度의 12月 31日 基準이며 實際調査는 익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2) 調査 方法

버스 및 會社 택시부문은 市·道組合을 통한 自계식 調査이며 其他部門은 調査員에 의한 타계식 調査이다.

(마) 結果公表

運輸業統計調査 報告書에 每年 收錄·公表하고 있으며 暫定集計 結果는 調査實施年度 8月경에 나온다.

(2) 自動車運輸實績報告

(가) 作成沿革

國內 自動車運送事業은 1912년에 택시를 시작으로 하여 1913년에 버스, 1926년에 貨物運送事業을 開始하였다. 統計調査로서는 1951년부터 業種別 運輸實績을 作成하였으며 1975年 7月 29日 一般統計 第130-22-01로 承認, 現在 每月 作成하고 있다.

IV. 産業經濟統計

(나) 調查對象

事業用 自動車에 의하여 運送하는 모든 旅客 및 貨物에 대한 市·道別 業種別 運輸事業體와 運輸實績

1) 旅客 運輸實績(人員, 인·km)

가) 高速버스(運送人員 및 인·km)

나) 市外버스(運送人員 및 인·km)

다) 市內버스(" ")

라) 傳貫버스(" ")

마) 택 시(" ")

2) 貨物 運輸實績(톤수, 톤·km)

가) 노선화물(輸送톤수 및 톤·km)

나) 區域貨物(" ")

① 一般區域貨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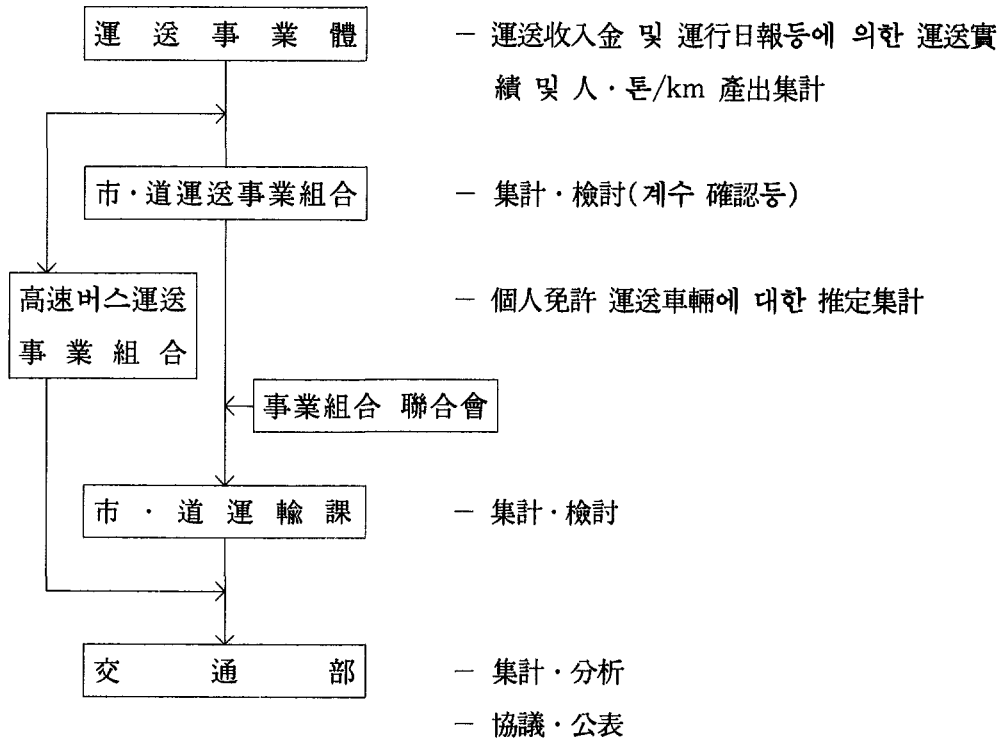
② 特殊貨物

③ 용달화물

(다) 調查事項

自動車 運輸事業法上의 運送事業者로서 全國버스自動車 運送事業組合 聯合會, 全國택시自動車 運送事業組合 聯合會 및 全國貨物自動車 運送事業組合 聯合會산하 각 市·道 事業組合에 加入되어 있는 事業體, 全國高速버스 運送事業組合에 加入되어 있는 事業體 및 個人免許를 받은 事業者가 運送하는 모든 여객 및 貨물 운수 실적

(라) 作成方法



(마) 結果公表

交通統計연보에 每年 收錄·公表하고 있다.

(3) 登錄船舶統計

(가) 作成沿革

本 調査는 1964年 4月 24日 交通部例規 第37號(船舶登錄事務 取扱要綱)에 의하다가, 1980年 10月 11日 海軍港灣廳例規 第21號(船舶登錄事務取扱要領)에 의하여 作成되었다. 그러다가 1984年 6月 4日 海軍港灣廳 訓領 第240號(船舶登錄事務 取扱要領)에 根據하고 있으며 1975年 7月 29日 一般統計 第146-22-06號로 承認받아 시행하고 있다.

(나) 調査對象

船舶法 施行規則 第2條에 該當되는 船舶을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다.

(다) 調査事項 및 結果公表

IV. 産業經濟統計

1) 調查事項

船質別, 用途別, 톤수별, 船齡別, 船舶隻數 및 톤수

2) 結果公表

每年 海運港灣統計연보에 收錄, 公表하고 있다.

(4) 郵便總調查

(가) 意義 및 沿革

郵便事業을 둘러싼 環境은 나날이 급변하고 있으며 電氣通信과 민간사송업체의 發達로 인하여 우편의 領域이 縮小되고 있으며 利用者들의 慾求는 점차 多樣化, 高度化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提供하고 經營上의 優위를 確保하여 郵便事業을 活性化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要求되며,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며 우정 사업 經營計劃, 특히 마아케팅 전략, 우체국사 建設, 機械化 및 運送網改編 등에 있어서 基礎的인 資料를 提供하고자 1988年 11月 11日 一般統計 131-21-03號로 作成承認, 遞信部에서 每3年마다 作成하고 있다.

(나) 調查內容 및 對象

1) 基本調查 設計

郵便總調查는 郵便利用 性向 및 移用者 輿論調查, 通商郵便 利用實態調查, 소포 우편물 重量別 統計調查, 그리고 接受郵便物 利用實態調查의 네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郵便利用性向 및 利用者 輿論調查

가) 調查方法

- 標準化된 設問書 利用
- 個人訪問(집배원 이용)
- 留置調查

나) 母集團

調查當日 全國에 배달된 通常郵便物 및 小包郵便物

다) 標本의 크기

- 通商郵便物 : 10,000통
- 小包郵便物 : 標本抽出된 10개의 小包區에 배달된 小包物量 全體

라) 標本抽出方法

○ 대상집배구의 選定

- 對象郵便物を 選定하기 앞서 對象 집배구를 먼저 選定
- 한 집배구당 50통의 郵便物を 標本抽出
- 1987年의 地況調書を 分析하여 배달국별 대달물수의 加重値에 따라 總200個의 집배구를 배달국에 할당
- 대상집배구의 選定은 배달국에 집배구가 1개 할당된 경우에는 市内 1區, 2개 以上인 경우에는 배달국 全體 집배구를 等間格으로 標本 抽出해 檢으로써 選定
- 小包는 10개의 小包區를 무작위로 選定

○ 對象郵便物の 選定

對象集配區에서 調查當日 配達되는 郵便物중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標本抽出

標本郵便物 抽出要領

구 분	집 배 구 별 표 본 수	표 본 추 출 요 령
普通通常	45통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지역내 우체국에서는 매 10 번째 우편물을 표본으로 추출 - 기타 시소재지는 매 4번째 우편물 - 군소재지 이하는 처음부터 45번째까지 추출하되 전체우편 물량이 45통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特殊通常	5통	- 처음부터 5번째까지 추출 - 5통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小 包		- 조사대상 집배구에 배달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전수조사

3) 通常郵便 利用實態調査

郵便利用 性向 및 利用者 輿論調査를 위하여 標本으로 抽出된 郵便物을 對象으로 하며 標本으로 抽出된 郵便物을 調査項目에 따라 反復 分類하여 調査票에 記載한다.

4) 小包郵便物 重量別 統計調査

書記官(局) 以上에 限하여 자국에서 接受되는 國內 및 國際 小包郵便物을 對象으로 調査한다.

5) 接受郵便物 移動實態調査

가) 調査對象

調査當日 接受된 郵便物 全體(普通通常, 特殊通常, 小包)

調査郵便局別 調査對象郵便物 및 調査要領

調 査 郵便局別	調査對象 郵便物	調 査 要 領
集 配 局	- 自局에서 수집(接受)한 郵便物	- 自國配達分만 발체 調査하여 調査票II에 記載
集 配 母 局	- 自局 및 管内 無集配局에서 수집 (接受)된 郵便物 - 管轄集配局에서 到着된 郵便物	- 自局配達分(調査票 I 的 自局欄에 記載) - 管内集配局 配達分, 同一 直締結局 管内 다른 集配母局 및 그 管内集配局 配達分 (調査票 I 的 其他局欄에 記載) - 自局을 管轄하는 直締結局 配達分(調査票 I 的 其他局欄에 記載) - 自局을 管轄하는 直締結局이 아닌 다른 直締結局으로 發送하는 郵便物(調査票 I 的 該當局別로 記載) * 郵便자루 締結 또는 파속하지 않고 自局을 管轄하는 直締結局으로 發送되는 郵便物은 記載對象에서 除外
直 締 結 局	- 自局 및 管内 無集配局에서 수집 (接受)된 郵便物 - 管内集配母國에서 郵便자루 締結 또는 파속되지 않은 상태로 到着된 郵便物	- 自局配達分(調査票 I 的 自局欄에 記載) - 同一直締結局 管内局 配達分(調査票 I 的 其他局欄에 記載) - 다른 直締結局 앞으로 發送되는 郵便物 (調査票 I 的 害黨郵便局欄)

나) 調査方法

運送網 改編에 따라 集配局, 集配母局, 直締結局(中心局 包含)別로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調査한다.

다) 用語解説

• 集配局

郵便物 接受, 配達業務를 擔當하는 郵便局

• 集配母局

直締結局 下部에 수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管内 集配局으로부터 送付된 發送郵便物の 1次區分 機能을 擔當하는 局

• 直締結局

地域內 郵便物 발착구분과 運送의 核心機能을 遂行하거나 物量過多로 郵便物の 連結上 郵便자루를 直締結해야 하는 局

(다) 調査內容

<區 分>	< 調 査 內 容 >
郵便利用性向 및 利用者 및 輿論調査	- 發送人 및 受取人の 業種別 區分 - 內容品の 種類 - 用途(發送目的) - 通信手段別 利用比率 - 郵便利用 事由(通常郵便物) - 郵便局에 대한 改善 要望事項 - 郵便物 送達 速度
通常郵便利用 實態調査	- 種別, 重量別, 構成比 - 規格봉투 使用 比率 - 料金納付方法 - 봉투의 形態 및 색깔 - 郵便番號 기재위치 및 郵便番號 記載用 내모칸의 색깔
小包郵便物重量別 統計 接受郵便物 移動實態調 査	- 重量別 接受個數(國內, 國際小包) - 直締結 郵便局別 郵便物 發送物數 - 自局國配達郵便物數 - 同一直締結局 管内 移動物數

IV. 産業經濟統計

(라) 資料의 處理

1) 處理方法

郵便利用性向 및 利用者 輿論調查資料는 遞信部 電算管理所에서 電算處理하고 나머진 수작업 處理한다.

2) 電算處理 過程

가) 設問書를 普通通常郵便物用과 小包郵便物用으로 區分하고 該當設問紙를 각 청단위로 入力基準에 依據 KEY ENTRY作業을 實施한다.

나) 設問書중 각 청별로 20개를 무작위로 抽出하여 KEY ENTRY된 內容과 一致하는가를 審査한다.

다) 設問書중 각 該當內容을 應答하지 않은 資料에 대하여는 該當資料를 무시하고 각 統計事項을 算出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 각 統計表마다 該當 內容을 點檢하여 각 청별 統計 및 全國 統計를 算出 할 수 있도록 單位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마) 結果公表

郵便센서스 結果報告書에 收錄·公表하고 있다.

(5) 日帝의 臨時國勢調查

(가) 物品流通事業體調查로서의 臨時國勢調查

日帝는 中日戰爭을 일으킨(1937.7.7) 직후 이른바 國家總動員法을 시행(1938.5.10)하고 西歐에서 二次對戰의 戰雲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人的資源에 관한 國民職業能力申告令을 공포하는 일방 物的資源의 統制와 配給制進入에 必要한 實態把握의 一環으로 臨時國勢調查를 실시키로 하였다.

본래 日本에서 國勢調查란 人口調查를 稱하는 것이지만 軍國的 總動員體制社會의 속성상 다시금 그 용어에 意味를 불허 國家資源力調查라는 廣義로 적용함으로써 國勢調查法 자체를 그 概念으로 改正하였다. 그리하여 國세조사 名稱을 國民의 消費生活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調查時點(1939年 8月 1日)을 기준으로 過去 1年間에 國民生活에 消費된 物資의 量과 金額 및 그 地域의 分布와 配給狀況을 조사케 하였다. 말하자면 「國民消費生活에 관한 物動實態調查」를 하면서 臨時國勢調查라

고 하였다. 調査擔當機關도 總督官房 國勢調査課였다. 이때 調査의 客體를 消費單位인 個人이나 家計, 消費事業場등이 아닌 流通業體段階에서 조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調査對象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 ① 物品販賣業體
- ② 物品賣買의 仲介業體
- ③ 法人 組合形態의 物品販賣 또는 仲介業體
- ④ 旅館, 料理點, 飲食店등

(나) 臨時國勢調査의 法的根據

본래는 「國勢調査에 관한 法律」(1902, 法律49號)에서 10年間隔調査토록 되어 있던 것을 1922년에 5년간격 조사로 改正한 바 있었다(人口統計參照). 그런데 1939년에는 「調査할 必要가 있을 때는 臨時로 國勢調査를 시행할 수 있다」는 條項을 추가하여 이에 따라 1939年 臨時國勢調査施行令을 勅令으로 제정하였다(1939.4.18勅令第209號). 이를 朝鮮總督府 府令과 告示로 韓國에서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 ① 朝鮮 1939年 臨時國勢調査施行規則(1939. 5. 13. 府令第76號)
- ② 朝鮮 1939年 臨時國勢調査地方事務取扱規程(1939. 5. 13 府訓令第27號)
- ③ 同上 施行規則의 臨時國勢調査 申告書用紙 樣式(1939. 5. 13.府告示 第417號)

以上の 法的根據下에 調査時點을 1939年 8月 1日로 하고 實查期間(조사회수기간)은 8月 1日부터 10日까지 10日間이었다. 販賣實績에 관한 調査對象期間은 1938年 8月 1日부터 1939年 7月 31日까지의 一年間이며 만약 1938年 8月 1日以前에 賣出을 하고 그 代金受取가 8月以後로 되는 것은 調査에서 除外하였다.

(다) 調査事項 및 調査方法

調査事項은 調査對象(業體)에 따라 상이하지만 都小賣 및 仲介業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調査하였다. 즉,

- ① 經營體의 名稱(또는 事業者名), ② 本·支店別, ③ 開業年月, ④ 企業組織,
- ⑤ 納入資本金(法人) 또 出資金, ⑥ 營業 또는 事業의 種類, ⑦ 經營形態, ⑧ 從

業者數(男·女別, 年齡別, 教育程度), ⑨ 調查期日前 1年間の 賣出額(都賣, 小賣別), ⑩ 指定物品의 1年間 賣出數量 및 金額(都·小賣別), ⑪ 特定物品의 現保有量 등

調査의 申告義務者는 事業者(代表者)로서 調査方法은 自計式으로 하였다. 다만, 조사표의 配付와 回收는 國勢調査員(名譽職)이 調査區를 담당하였다. 調査區는 府(市)邑·面別로 20個 經營體를 묶어 1個調査區가 되도록 分劃하였다.

(라) 調査範圍 및 都·小賣 經營體의 定義

調査는 小賣商, 都賣商, 百貨店등을 範圍로 定하였는데 그 定義와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小賣店……直接 消費者에게 物品을 販賣하는 一般의 小賣店을 持稱하는데 行商 또는 露店營業과 같은 移動的·假設的인 經營場所는 除外하였다.
 - 가) 固定의 小賣店鋪를 所有하면서 露店, 行商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이를 一括하여 1個의 小賣店으로 한다.
 - 나) 精米商, 甘粟집, 豆腐집, 도시락집, 이불집, 印刷所 등과 같이 簡單한 加工 또는 調理하여 小賣하는 것은 生産 小賣商으로 하지 않고 小賣店으로 한다. 이는 近代統計에서 零細製造業으로 定義하는 것과는 相違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通信販賣店은 小賣店으로 한다.
 - 라) 工場, 學校, 病院, 劇場 등의 構內賣店, 船車內의 賣店, 博覽會會場, 避暑地 등의 臨時開設의 出場賣店도 小賣店으로 한다.
- 2) 百貨店……이는 三越, 三中井, 丁子屋, 平田, 和信등의 각 本店 및 支店과 分店만을 말한다.
- 3) 生産小賣商……菓子, 豆腐, 떡, 洋服, 靴, 家具 등의 製造販賣店 또는 野菜를 栽培하여 그 生産品을 小賣하는 것과 같이 物品을 製造 또는 生産하여 이를 小賣하는 경우를 말한다. 小賣의 方法은 固定店鋪에 의하는 露店과 行商에 의하는 것은 關係없다.

學校試驗場 등에서 그 生産商品을 小賣販賣하는 경우에도 生産小賣商이라고 한다. 一般工場에서 物品을 製造하지만 그 製品을 都賣하고 小賣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生産工場으로 取扱하여 物品販賣를 하는 生産小賣商으로는 分類하지 않는다.

- 4) 都小賣商……都賣와 小賣를 兼營하는 경우이다. 自營製造하여 小賣하는 경우는 生産小賣商에 包含되며 여기에서는 除外된다.
- 5) 都賣商……商人 또는 生産業者에 대하여 物品을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其他 米穀, 누에, 고물 등의 仲買商, 中央都賣市場의 仲買인과 같은 것을 말한다. 都賣와 物品賣買의 仲介를 兼營하여 區分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 一括하여 都賣商이라고 한다. 物品의 製造業이며 그 製品을 直接 小賣할 경우에는 生産小賣라고 하였는데 製品을 大量的으로 다른 販賣業者에 都賣할 경우에는 當然히 工場經營의 一部이기 때문에 物品販賣業으로 보지 않고 都賣商에서 除外한다.
- 6) 貿易商……輸入商, 輸出商, 輸出入商, 輸入組合, 輸出組合, 外國商館과 같이 外國貿易을 經營하는 것을 말한다. 滿州國과의 去來業者 또는 中國과의 去來業者도 물론 包含하는데 日本本土, 臺灣, 樺太 등에 대한 移出入業者는 이 概念에서는 除外되며 이를 經營形態에 따라 小賣店, 都賣商에 包含시킨다. 또한 小賣를 위하여 輸入하는 경우는 小賣店에 分類한다.
- 7) 産業組合……이는 1926年 1월에 法令 第2號 朝鮮産業組合令에 의한 것을 말한다.
- 8) 消費者團體의 共同購買……官廳, 會社, 工場 등의 從事자가 組織한 共濟會, 共濟組合, 物品配給所, 購買部 등과 같이 産業組合令에 따르지 않은 消費者團體를 말한다.
- 9) 其他 共同購買 및 共同販賣……産業組合, 消費者團體의 共同購買以外的 共同購入 또는 共同販賣를 한 경우이다. 例를들면 生産業者 또는 商人團體로서 原料, 材料 또는 商品을 共同購入하기 위하여 工業組合, 商業組合과 같은 生産業者團體로서 組合員의 生産品을 共同販賣를 하는 出荷組合과 같은 것을 말한다.
- 10) 物品販賣의 仲介……他人間의 物品賣買의 仲介斡旋을 行하는 中立(브로커)等 代理商, 農會, 金融組合聯合會 등을 말한다.

IV. 産業經濟統計

(마) 企業組織의 5區分

- 1) 個人經營이란 店主1人의 普通商店으로서 兄弟商會와 같이 2人以上의 經營者가 있을 경우에는 共同經營으로 看做하여 5)항의 其他에 包含시킨다.
- 2) 合名會社, 合資會社
- 3)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 4) 其他法人……前記의 會社以外的 모든 財團法人, 社團法人의 總稱으로서 産業組合, 工業組合과 같은 것을 말한다.
- 5) 其他……前記한 1), 2), 3), 4) 以外的 總稱으로서 共同經營消費組合等の 各種 團體는 물론 購買部와 같은 것도 이에 包含된다.

(바) 店舖의 定義

1936年의 8月 1日 現在를 調查時點으로 한 店舖는 場所의 單位에 의하였으므로 本店, 支店, 分店, 出張所 販賣店 等은 각기 1個의 店舖로 看做하였다.

臨時國勢調查 經營形態別 現況

	店 舖 數	從 業 者 數	賣 出 額
	軒	人	圓
總 數	246,688	595,116	4,126,246,784
小 賣 店	176,832	340,439	479,153,409
百 貨 店	24	3,373	30,238,653
生 產 小 賣 商	36,448	104,945	74,235,507
都·小 賣 商	16,064	66,809	795,390,749
都 賣 商	9,139	42,502	1,539,322,168
貿 易 商	87	591	39,489,093
產 業 組 合	154	1,522	28,222,529
消 費 者 團 體 供 購 販	455	1,855	19,761,215
기 타 供 購 販	425	2,484	113,676,586
物 品 賣 買 仲 介	7,060	30,596	1,006,751,875

資料 : 1939年 8月 1日 調查 「臨時國勢調查」參考統計表, 朝鮮總督府.

(사) 從業者의 定義

1936年 8月 1日 現在 經營體의 일에 從事한 者를 말한다. 當該店舖에 在籍한

者는 調査時點에 缺勤하여도 從事者로 看做하지만 徵集된 者는 除外하였다.

從事者中 經營者란 經營主와 其他 經營體를 主管하는 者의 總稱이다. 會社의 경우에는 社長, 理事, 監査 等の 任員을 그리고 一般法人의 경우에는 理事, 監査를 말한다. 또는 支店, 分店 等에서는 支店長, 分店主任 等を 稱한다.

從事家族은 오직 營業의 補助役割을 하는 家族으로서 經營者 및 使用人 以外의 家族從事者는 모두 이에 該當된다. 단지 經營組織이 會社 또는 其他 法人일 경우 에는 家族從事者는 없는 것으로 하여 經營主이거나 被傭人으로 定義한다. 家族從事者에는 家庭婦, 머슴 등이 包含되지 않는다.

다. 其他 經濟統計

(가) 朝鮮市場統計

朝鮮市場規則에 다른 本調査는 1930年 初부터 屋內에 市場을 造成하던가 屋內 場所는 없어도 區劃된 地域에 每日 또는 定期的으로 多數의 需要者 및 供給者가 來集하여 貨物의 賣買 또는 交換하는 場所에서의 賣上高를 把握하였다.

公設市長은 각 市·道·邑面의 商業擔當係에서, 私設市場은 組合으로 하여금 把握토록 하였다.

市場의 種類는 市場規則 第1條에 따라 第1號, 2號, 3號로 區分하였는데 第1號는 屋內外에서 每日 또는 定期的으로 需給行爲 및 物資를 交換하는 場所, 第2號는 20人以上의 營業者가 一場所에 있어서 主로 穀物食糧品을 販賣하는 場所, 第3號는 委託을 받아 競買의 方法에 의하여 貨物을 販賣하는 場所이다. 1932年과 1933年의 結果値를 다음에 記載한다.

第 1 號 市場 現 況

		1 9 3 2		1 9 3 3	
		市 場 數	賣 買 高	市 場 數	賣 買 高
公	設	1,410	157,201,865	1,431	178,728,077
私	設	6	2,757,054	5	2,413,573
合	計	1,416	159,958,919	1,436	181,141,650

IV. 産業經濟統計

第 2 號 市場 現 況

		1 9 3 2		1 9 3 3	
		市場數	賣 買 高	市場數	賣買高
公	設	16	3,918,110	18	4,533,145
私	設	2	5,316,028	2	6,102,850
合	計	18	9,234,138	20	10,635,995

第 3 號 市場 現 況

		1 9 3 2		1 9 3 3	
		市場數	賣 買 高	市場數	賣 買 高
公	設	11	2,053,217	11	2,990,852
私	設	27	8,137,251	26	9,063,652
合	計	38	10,190,468	37	12,054,504

(나) 工産額 및 家內工業統計

(가) 工産額統計

이 統計는 1920年代부터 報告例에 의하여 總督府殖産局에서 從業員 5人以上の 製造業體를 對象으로 主로 生産額을 每年末 現在의 地域別로 調査하였다. 또한 業種을 官營, 民間으로 크게 區分하고 각기 紡織工業, 金屬工業, 機械器具工業, 窯業, 化學工業, 木製品工業, 印刷製本業, 食料品工業 개스 및 電氣 等과 其他工業으로 大分類하여 集計하였다. 精穀, 製綿, 製材, 鐵 以外の 金屬精鍊加工貨 및 修理料는 別途로 集計하였으며, 이 生産額調査에서는 除外하였다.

(나) 家內工業統計

本統計調査는 1920年代부터 實施하였으나 地域別 및 業種別로 具體化시킨 것은 1930年代初부터였다. 法人形態를 갖추지 않고 營業시스템이 家內에서 經營하는 것으로 오늘날 零細製造業體에 比等한 것이다. 業種은 紡織工業, 金屬工業, 機械器具, 窯業, 化學工業, 木製品工業, 食料品工業 및 其他工業으로 大分類하였으며, 每年末現在로 生産量과 生産額을 調査하였다.

(다) 會社統計

앞서 말한 工業生産額統計나 家內工業統計나 마찬가지로 朝鮮總督府殖産局에서

1920年代부터 實施하였으나, 1930年初부터는 會社의 業種, 出資金 또는 公稱資本金, 積立金, 純益金, 純投金 등을 年末 現在로 每年 調査하여 왔다. 會社는 農村農林業, 商業, 保險業, 金融業, 運輸 및 倉庫業等, 製造業, 鑛業, 水産業, 電氣業, 雜業 10個로 大分類하여 集計하였다. 한편 會社의 形態를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및 合資會社로 別途區分 集計하였다. 한편 朝鮮에 本社를 가진 會社를 調査하였으며 別途로 外國支店 및 日本會社支店の 統計도 作成하였다.

工場工産額(官營工場包含)

業 種 別	1936年	1937年
紡 織 工 業	75,100,677	56,514,682
金 屬 工 業	28,414,894	21,539,271
機 械 器 具 工 業	9,586,547	8,344,600
窯 業	19,250,990	15,177,520
化 學 工 業	163,899,899	119,389,564
木 製 品 工 業	4,055,351	3,269,090
印 刷 製 本 業	13,133,273	12,744,014
食 料 品 工 業	88,905,412	76,507,082
瓦 斯 및 電 氣 業	39,988,934	39,803,658
其 他 工 業	60,662,834	54,051,291
計	502,998,822	407,340,711

(7) 都·小賣業總調査

(가) 意義 및 沿革

經濟의 서비스화에 따라 全體 産業에서 3次産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점점 增加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都·小賣業은 갈수록 事業體數가 擴大하고 變動率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事業體實態를 把握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따라서 全國의 都·小賣 및 飲食·宿泊事業體의 運營實態를 把握하여 商品의 流通秩序 및 需給計劃, 雇傭 및 物價政策等 政府施策 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고 國民所得推計의 參考資料로 活用하고자 1967年 5月 29日 指定統計 第111-11-09로 指定, 1968年에 最初로 調査를 實施하였으며, 1986年에 第6次 總調査를 實施하였다.

IV. 産業經濟統計

(나) 調查對象

都·小賣業, 飲食, 宿泊業을 對象으로 하며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다.

<除外對象事業體>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서 直營하는 事業體(단, 그 施設內에서 個人이 經營하는 事業體는 調查對象에 包含한다.)
- ② 農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 中小企業協同組合에서 直營하는 共販場(단, 邑·面 單位組合에서 經營하는 共販場, 連鎖店 등은 包含한다)
- ③ 煙草小賣業, 복권, 버스표, 우표(郵便葉書, 收入印紙는 包含한다)만을 販賣하는 事業體
- ④ 營業場所가 일정하지 않거나 營業을 위한 固定的 設備가 없는 事業體
- ⑤ 出入에 入場料, 許可 등의 制限이 있는 場所에 設置되어 있거나, 또는 事業體를 利用할 수 있는 範圍를 特定한 者에 限定하고 있는 事業體
- ⑥ 調查基準日(當該年度의 7月 1日) 現在 繼續 3個月 以上 休業하고 있는 事業體
- ⑦ 外國機關 또는 主權外國군이 經營하는 事業體
- ⑧ 商品仲介業, 貿易業에 속하는 事業體

(다) 調查 單位

個個의 事業體(여기서 事業體라 함은 一定的한 物理的 場所에서 단일소유자 또는 단일경영체계아래 商品을 매매하거나 飲食·宿泊施設의 提供을 주된 營業으로 하는 店鋪 또는 事業體를 말한다. 단, 동일區內에 經營主體를 달리하는 2개 以上の 事業體가 있을 때에는 각기 別個의 事業體로 取扱하며 여기서 同一區域이라 함은 同一建物 또는 同一店鋪內를 말한다).

(라) 調查 事項

事業體 名簿에는 經營組織, 營業形態등 8개 項目을 調查토록 하고 있으며, 本調査票에는 主要取扱商品, 販賣額 등 都·小賣業關聯 12개 項目을 調查하고 飲食·宿泊業調查 事項으로는 年中營業期間, 業種, 客席 및 客室數 등 9個 項目을 調查한다.

(마) 用語定義

1) 都賣業

商品販賣業중 주로 다음과 같은 經營形態의 店鋪 또는 事業所

가) 小賣業者 또는 다른 都賣業者에게 商品을 販賣하는 事業體

나) 鑛工業, 運輸通信業, 호텔, 病院, 學校, 官公署 또는 기타 産業使用者 (農林, 水産業에 대해서는 法人 事業體에 한함)에 商品을 販賣하는 事業體

2) 小賣業

주로 個人用, 家庭用 消費를 위하여 商品을 販賣하는 事業體를 말하며 다음 事業體도 小賣業 對象에 包含

가) 小賣와 關聯商品의 修理를 兼한 事業體(修理事業을 除外)

나) 個人經營의 農林 및 水産業者에게 生産에 必要한 商品을 販賣하는 事業體

3) 飲食·宿泊業

가) 飲食業

일정한 場所에서 接客시설을 갖추고 그 자리에서 消費할 것을 目的으로 準備된 음식과 음료를 販賣하는 事業體

- 韓食, 中國食, 日食, 양식, 기타의 食堂業
- 요정, 카바레, ㅍ아, ㅍ아롱 등의 요식業
- 빵, 생과자점, 다방

나) 宿泊業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事業體

4) 營業組織

事業體의 法的 組織形態로 法人과 個人의 두 가지로 區分

5) 從業員

調査基準日 現在 收入이나 이윤을 目的으로 店鋪 또는 業所의 販賣 및 用役業務에 從事하는 自營業主, 무급가족종사자, 상용 고용원과 臨時 및 일일고용원, 무급 고용원 및 의관원

6) 事業場面績

事業體가 營業活動을 위하여 實際 使用하고 있는 面積을 말하며 매장 및 倉庫面

IV. 産業經濟統計

도·소매업총조사의 연도별 조사개요

구 분	1968	1971	1976	1979	1982	1986
조 사 범 위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조 사 기 준 일	1968.7.1	1971.7.1	1976.7.1	1979.7.1	1982.7.1	1986.7.1
조 사 대 상 기 간	1967.7.1~ 1968.6.30	1970.7.1~ 1971.6.30	1975.7.1~ 1876.6.30	1978.7.1~ 1979.6.30	1981.7.1~ 1982.6.30	'85.7.1.~ 1986.6.30
조 사 방 법	타계식 면접조사	타계식 면접조사	타계식 면접조사	타계식 면접조사	타계식 면접조사	타계식 면접조사
조 사 표 항 목	3종 상용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용 상용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용 개인서비스용 * 사업체명 부 별도	3종 상용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용 상용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용 음식, 숙박업용 * 사업체명 부 별도	1종 연명부식 조사표 * 사업체명 부 별도	2종 도·소매업용 음식, 숙박업 용 * 사업체명 부 별도	2종 도·소매업용 음식, 숙박업 용 * 사업체명 부 별도	1종 도·소매및 음식, 숙박업용 * 사업체명 부 별도
조 사 항 목	재고액, 판매 액, 영업경비 등 15개 항목	재고액, 판매 액, 영업경비 등 16개 항목	재고액, 판매 액, 종업원수 등 7개 항목	판매액, 재고 액, 영업경비 등 15개 항목	판매액, 구입 액, 재고액, 영 업경비등 도매 18, 소매 14 개 항목	판매액, 구입 액, 재고액, 영 업경비등 14 개 항목
비 고	전수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 (인명부식)	전수조사	도매:전수조사 소매:표본조사	전수조사(총 사업체통계조 사와통합실시)

積을 包含(단, 남에게 빌려준 場所는 除外하며 주거비용일 경우에는 순수한 事業
目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面積만을 包含함)

7) 購入額

1年間に 事業體에서 販賣目的으로 購入한 商品의 總額

8) 販賣額

商品의 所有權을 他人에게 移轉시켰을 때 받은 金額

9) 在庫額

調査票基準日 現在 그 事業體 또는 店鋪가 販賣를 目的으로 所有(또는 保有)하고 있는 商品의 評價額

10) 營業經費

營業經費는 商品購入額을 除外한 지난 1年間に 支出한 일체의 經營上의 經費를 말하며 여기에는 人件費, 外販員給與 및 手數料, 材料費, 賃借料, 諸稅公課金, 福祉厚生費, 保險料, 協會費 및 其他 營業經費를 包含.

(바) 結果公表

5年마다 都·小賣業總調査(센서스)報告書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8) 都·小賣業動態調査

都·小賣業體의 經營實態, 景氣動向分析 및 消費購買力動向을 把握하여 政府施策 입안자료 및 民間企業의 經營指針資料를 提供하고자 1965年 韓國銀行에서 「서울 小賣額 指數」를 作成하기 위하여 1962부터 1964年 8月까지 試驗調査를 거쳐 實施하였다. 1970年에 經濟企劃院(통계청)으로 이관하여 都賣業을 追加하여 調査를 實施하다가 1982年 1月 29日 一般統計 第111-21-12로 承認, 現在 調査對象地域을 서울에서 全國으로 擴大하여 每月 調査하고 있다.

都·小賣業總調査 結果(1986年)에 의하여 全國 都·小賣業 535,851개 事業體를 業鍾別로 층화하여 販賣額 規模順位에 의한 系統抽出方法 등으로 4,000개 標本 事業體를 抽出하여 調査하고 있다.

한편 1985年을 基準年度로 하여 1986年 都·小賣業總調査에 나타난 都·小賣業의 販賣額을 産業分類上 細細分類別 加重值로 使用하여 指數를 편제하고 있는 바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I = \frac{\sum \left(\frac{\text{比較時點 販賣額}}{\text{基準時點 販賣額}} \times \text{加重值} \right)}{\sum \text{加重值}} \times 100$$

IV. 産業經濟統計

結果公表는 韓國統計月報에 게재, 公表하고 있다.

(9) 都·小賣業統計調査

1988年 7月 5日자로 指定統計 111-11-19로 승인, 每年 調査하고 있다.

(가) 調査事項

1) 對象事業體

韓國標準産業分類중 都賣業·小賣業 및 음식·숙박업에 속하는 全事業體를 對象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의 事業體는 對象에서 除外한다.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直營하는 事業體
- 복권, 버스표만을 販賣하는 事業體
- 營業場所가 일정하지 않거나 營業을 위한 固定的 設備가 없는 事業體
- 出入에 입장료, 許可 등의 制限이 있는 場所에 設置되어 있거나 또는 그 事業體를 자유로히 利用할 수 있는 範圍가 特定한 자에 限定되어 있는 事業體
- 調査基準日 現在 繼續 3個月 以上 休業하고 있는 事業體
- 外國機關 또는 주둔 外國軍이 經營하는 事業體
- 商品중개업 및 貿易業으로 分類되는 事業體

2) 調査單位

- 原則적으로 個個의 事業體를 調査單位로 한다. 事業體란 一定的한 場所에서 단일 소유자 또는 단일 經營體制아래 商品을 賣買하거나 음식·숙박 시설의 提供을 주된 營業으로 하는 店鋪 또는 事業所를 말한다.
- 同一 地域內에 經營主體를 달리하는 2개 以上の 事業體가 있을 때는 각각 別個의 事業體로 取扱한다. 여기서 同一 區域이라 함은 同一 建物 또는 同一 店鋪內를 말한다.

(나) 調査項目

- ① 事業體名 및 所在地
- ② 開設年度

- ③ 組織形態
- ④ 營業形態
- ⑤ 매장 면적
- ⑥ 營業時間
- ⑦ 從事者數 및 月給與額
- ⑧ 장부기장여부
- ⑨ 營業經費
- ⑩ 購入額
- ⑪ 在庫額
- ⑫ 販賣額 또는 收入額
- ⑬ 客席數, 客室數

(다) 標本設計

1986年 總事業體統計調查 結果 중 都·小賣業 및 飲食·宿泊業 995,355個 事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였다.

1) 전수조사부문

백화점, 슈퍼마켓, 호텔업에 該當하는 事業體

2) 標本調査部門

• 事業體 單位

一般 都賣業에 대하여 從業員數를 基準으로 市道別 일정규모 以上の 事業體는 전수조사하고 (總7,389業體), 그 以上の 事業體는 단순임의추출법으로 4,447個業體를 選定한다.

• 調査區單位

其他 業種에 대하여는 1986總事業體調査 結果의 조사구중 300個 조사구, 약 47,000個 事業體를 選定한다.

結果公表는 每年 都·小賣業統計調查 報告書를 發刊하여 公表한다.

(10) 總事業體 統計調査

(가) 意義 및 沿革

IV. 産業經濟統計

全國의 모든 産業에 대한 事業體의 地域別, 産業別 分布와 雇傭, 給與, 組織形態, 資本金, 事業場面積 등을 綜合的으로 把握하여 各種 政策 입안의 基礎資料와 事業體 關聯 모든 統計調查의 母集團 資料를 提供하는 한편, 都·小賣, 飲食·宿泊業 및 서비스업 部門에 대하여 收入額(販賣額), 事業 經費 등 實績事項을 調查하여 同 産業分野의 經營構造 및 運營實態를 深層的으로 把握, 分析하기 위해서 1981年 6月 26日 指定統計 第111-11-17號로 指定, 現在 5년마다 調查하고 있다.

調查結果의 主要 用途를 살펴보면

- 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
 - 産業構造 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 均衡的인 地域開發 計劃樹立
 - 고용구조 變化와 需要豫測
 - 산업재배치 및 投·融資 計劃樹立
- 統計目的에 利用
 - 各種 事業體部門 統計調查의 母集團 資料提供
 - 事業體部門 統計調查 結果에 대한 比較分析 및 評價
 - 國民所得, 地域所得 및 産業연관표 등 2次統計 生産의 基礎資料 提供

(나) 調查對象

調查基準日 現在 全國의 全事業體이며 除外事業體는 다음과 같다.

- ① 農家 및 어가(단, 法人格을 갖고 있는 農家 및 어업사업체는 調查對象에 包含)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과 이들 機關이 直營하는 事業體(但, 國公立 學校, 國公立 病院(保健所 除外), 국공립도서관과 社會福祉施設(고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부녀회 등)은 調查對象에 包含)
- ③ 國際 및 其他 外國機關
- ④ 營業場所가 일정하지 않거나 營業을 위한 固定設備가 없는 事業體
- ⑤ 調查對象에서 除外되는 事業體의 施設內에 있는 또 다른 事業體(관공서 구내에 있는 식당, 이발소 등)

⑥ 일정한 事務所 또는 營業場所가 없는 運輸事業體

(다) 調查單位

個個의 事業體이나 다음 事項은 注意를 要한다.

- ① 同一區域 또는 場所에서 同一經營者가 事業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事業體로 보았으나 同一營業者가 다른 場所에서 事業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각기 個別의 事業體로 調查한다.
- ② 동일지역 또는 場所에서 2인이상의 經營者가 서로 獨立하여 事業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經營者別로 個別의 事業體로 把握한다.
- ③ 鑛物을 채굴, 채석하고 있는 現場事務所(또는 營業所)는 하나의 事業體로 보았으나 建設工事 現場事務所는 個別의 事業體로 把握한다.
- ④ 동일학교 法人에 속하는 몇개의 학교, 예컨대 大學, 高等學校, 中學校, 國民學校, 유아원 등이 同一地域에 있는 경우라도 각 學校마다 個別의 事業體로 보았으며 또한 동일 學校라도 분교가 別途 場所에 있으면 각기 別個의 事業體로 하였으나 正規課程에 別성되어 있는 特設과정은 동일사업체로 본다.

(다) 調查事項

- ① 事業體名 및 所在地
- ② 開設年度
- ③ 組織形態
- ④ 本·支店別
- ⑤ 資本金 또는 出資金
- ⑥ 事業場 面積
- ⑦ 從事者數 및 月給與額
- ⑧ 産業分類
- ⑨ 營業期間
- ⑩ 販賣額 또는 收入
- ⑪ 營業經費
- ⑫ 購入額

IV. 産業經濟統計

⑬ 在庫額

⑭ 客席數, 客室數

(마) 用語定義

• 事業體

事業體란 일정한 物理的 場所에서 財貨의 生産 또는 販賣나 서비스의 提供등 經濟活動을 營爲하는 經濟單位로서 一般的으로 鑛山, 工場, 事務所, 協會, 店舖, 銀行, 發電所, 營業所, 病院, 여관, 극장과 같은 個個의 場所를 말한다.

• 組織形態의 公共團體

公共目的을 遂行하는 공법상의 法人을 말하며 本 調査에서는 공공조합,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과 國公立學校, 圖書館, 病院 및 特殊會社 施設을 包含한다.

V. 企業經營統計

여 백

V. 企業經營統計

1. 企業實態統計

가. 企業經營分析統計

(1) 意義 및 沿革

政府의 產業政策과 中央銀行의 通貨信用政策의 효과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企業의 經營實態와 그 변동요인을 精確히 파악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러한 企業經營分析資料는 金融機關의 합리적인 與信管理와 企業自身의 經營合理化計劃의 수립에도 필수적인 자료이다.

본래 企業經營分析은 金融기관에서 여신취급과 수신자의 신용상태를 판단할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징수·분석한데서 발달한 것이지만 그후, 좀더 유리한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投資分析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지금에 와서는 經營자가 자기기업의 經營상태를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韓國銀行은 企業의 經營實態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위와 같은 목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960년도부터 매년 「企業經營分析」통계를 편제, 발표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企業經營分析」과 「企業原價分析」이라는 冊子로 그 조사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1968년에 「企業原價分析」을 「企業經營分析」에 흡수통합하고 꾸준히 통계내용과 조사기법을 개선 확충해 왔으며 1978년부터 현재의 層化任意抽出法에 따른 標本設計方法을 채택하여 조사발표해 오고 있다.

또한 「企業經營分析」통계를 각종 경기대응적 정책판단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上半期 企業經營分析」調查를 실시, 年間 企業經營分析과 더불어 발표해 오고 있다.

V. 企業經營統計

政府樹立 초기에는 기업활동의 計數化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1958년 7월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인 財政金融委員會의 「企業會計準則制定分科委員會 基礎小委員會」에서 「企業會計原則」을 공포함과 함께 財務部告示로 「財務諸表規則」이 공포되어 익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1958년과 1962년 두번에 걸친 資產再評價실시로 인하여 企業經營實態 計數化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최초로 企業經營分析調查를 실시, 발표하게 되었다.

최초조사시에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鑛業 및 製造業을 대상으로 1960, 1961년 양년도분을 조사발표하였다. 母集團資料는 1960년도 產業銀行調查 「鑛工業센서스」資料를 이용하여 標本業體를 有意抽出하여 선정하였으며 소정 조사표를 우송하여 自計記入하는 방식과 조사표 미회수분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는 他計記入방식을 병행하였고 회수된 조사표를 단순집계하여 각종 經營指標를 산출하였다.

62년도에는 새로 電氣業을 추가하였고 63년도에는 建設業, 都小賣業, 運輸業, 「서비스」業을 추가하여 조사대상범위를 農業, 林業, 狩獵業 및 漁業을 제외한 產業全般으로 확대하였다.

64년도 통계에서는 「中小企業基本法」의 개정으로 대기업 구분기준을 종래 1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65년도에 鑛工業의 母集團資料를 63년도 產銀調查 「鑛工業센서스」자료로 변경하고 다시 67년도에 母集團資料를 66년도 「鑛工業센서스」자료와 67년도 大韓商工會議所의 「全國企業體總覽」으로 변경하였다.

68년도에는 종래 별개로 발표해오던 「企業原價分析」을 「企業經營分析」에 흡수 통합하여 利用便宜를 높이는 한편 標本抽出方法을 변경하여 鑛業 및 製造業은 層化任意抽出方式으로, 그리고 여타 產業은 單純任意抽出方式으로 標本業體를 선정, 조사하였다.

71년도 통계부터는 다시 有意抽出法에 따라 매년 調查對象企業體數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同年부터 종래의 經營지표 중심의 편제체계를 산업별 업종 중심의 수록체제로 개편하여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그 이후 계속 통계의

개선·확충을 추진하여 72년도부터는 종래의 中小企業·大企業規模別 分類외에 특수분류로서 重化學工業·輕工業, 輸出產業·內需產業 경영지표를 추가하였으며 그 다음해부터는 內·外資企業分類를 추가하는 한편 調查對象範圍에 水産業을 추가하였다.

76년도 통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대기업 구분기준을 종래의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또는 총자산 5억원이상인 업체로 변경하는 한편 同年 개정 시행된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에 따라 企業의 決算方式이 변경되어 일부 시계열의 단층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새로 추가된 4개 지표와 내용이 변경된 지표는 74년도까지 소급조정하였고 표본업체의 보완조정으로 製造業中 金屬製品·機械·裝備業, 建設業, 運輸·倉庫業, 「서비스」業의 75년도 경영지표가 일부 수정되었다. 77년도에도 同年 7월 1일부터 실시된 附加價值稅制에 따라 租稅公課, 賣出額, 費用 등과 관련한 지표의 시계열 단층이 생기게 되었으며 標本業體의 보완조정으로 製造業, 不動產業, 「서비스」業의 76년도 지표일부를 수정하였다.

77년도까지는 有意標本抽出方式에 따라 선정된 각 표본업체의 재무제표를 단순 집계하여 諸經營指標를 산출한 것이며 標本調查→母集團推定→諸經營指標產出의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이 방식은 시계열연속성의 유지와 통계정도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標本設計에 따른 調查方式의 채택필요성이 요청되어 온 바 78년도부터는 國稅廳 法人稅申告業體를 母集團으로 하는 새로운 標本設計方式을 채택하여 統計精度提高는 물론 時系列連續性維持와 業務量輕減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標本抽出方式은 母集團資料가 업종별, 규모별로 매우 이질적임에 따라 우선 편의상,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 또는 모집단 수가 적은 업종의 기업등의 全數調查業體를 선정한 후 이를 제외한 副母集團을 대상으로 業種別로 1차층화하고 賣出額規模에 따라 2차층화하는 層化任意抽出方式을 채택하고 각층내 분산을 고려하여 Neyman 配分法에 따라 각층별 표본수를 할당하여 標本業體를 任意抽出하였다. 이를 위해 目標精度를 제조업은 信賴係數를 0.95, 許容誤差를 0.05로 하고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은 信賴係數 0.90, 許容誤差 0.1, 여타 산업은 信賴係數 0.95, 許容誤差 0.05로 하여 총 1,437개의 標本業體를 선정하여 조사된 統計量으로 母集團

V. 企業經營統計

의 標本業體 선정의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84년 통계에서는 同年 1월에 개정된 韓國標準產業分類에 따라 일부 업종의 포괄범위가 조정되었고 86년도 조사시에도 역시 일부 업종의 포괄범위를 조정하고 1983년도 「産業센서스」 업종별 출하액비중,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업종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였고 88년도에도 제조업의 12개 細分類 및 細細分類 業種의 조정개편이 있었다.

(2) 標本設計

88년도의 제3차 표본설계개편에 의한 企業經營分析의 현행 標本設計와 母集團 推計方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標本設計

1) 母集團 :

1986년도 국제청 법인세신고업체 44,134개 중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아래의 기업을 제외한 15,475개 업체를 母集團으로 하였다.

- ① 조사대상업종 이외의 업종(농업, 수렵업, 임업,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10,447개 업체
- ②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 : 1,718개 업체
- ③ 결산일이 1.1~5.31인 기업 : 5,010개 업체
- ④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인 영세기업 : 11,484개 업체

위와 같이 선정된 母集團이 조사대상 전 법인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業體數 基準으로 45.9%, 賣出額 基準으로 91.5%이다.

2) 標本抽出

이 통계조사의 정도제고 및 표본추출 작성상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全數 調査와 副母集團에 의한 標本抽出方法을 병행하였다.

3) 全數調査業體의 선정

- ① 1986년도중 매출액 250억원 이상의 대기업 : 632개 업체
- ② 모집단수가 적은 업종의 기업으로 ①항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 27개 업체
- ③ ①, ②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1986년중 수출액 100대기업, 상장기

업 및 시장지배적 기업 : 69개 업체

4) 副母集團에 의한 標本抽出

모집단에서 상기 전수조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14,747개 업체)을 副母集團으로 하고 層化任意抽出法에 의하여 표본업체를 선정하였다.

5) 代表變量

표본설계를 위한 대표변량으로는 賣出額을 이용하였다. 이는 대표변량 선정을 위하여 각 조사대상항목의 여타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본 결과 賣出額의 相關性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 層化

業種別로 1차 층화하고 賣出額規模에 의하여 2차 층화하였다.

① 業種別 層化

産業小分類別(製造業은 細分類別)로 나눈 105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② 規模別 層化

필요표본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층내분산을 감안, 업종별로 3~9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7) 標本數 決定 및 配分

업종별 표본수를 결정(공식①)한 후 Neyman 配分方式(공식②)을 이용하여 매출액규모별로 2차 배분하였다.

(공 식)

$$\textcircled{1} n = \frac{(\sum N_h Sh)^2}{N^2 D^2 + \sum N_h Sh^2}$$

$$\textcircled{2} nh = \frac{N_h Sh}{\sum N_h Sh} n$$

단, n : 업종별 표본수

nh : 층별 표본수

N : 업종별 부모집단업체수

Nh : 층별 부모집단수

Sh : 층별 표준편차

V. 企業經營統計

$$D: \frac{d}{z} \text{ (목표정도)}$$

목표정도 및 표본추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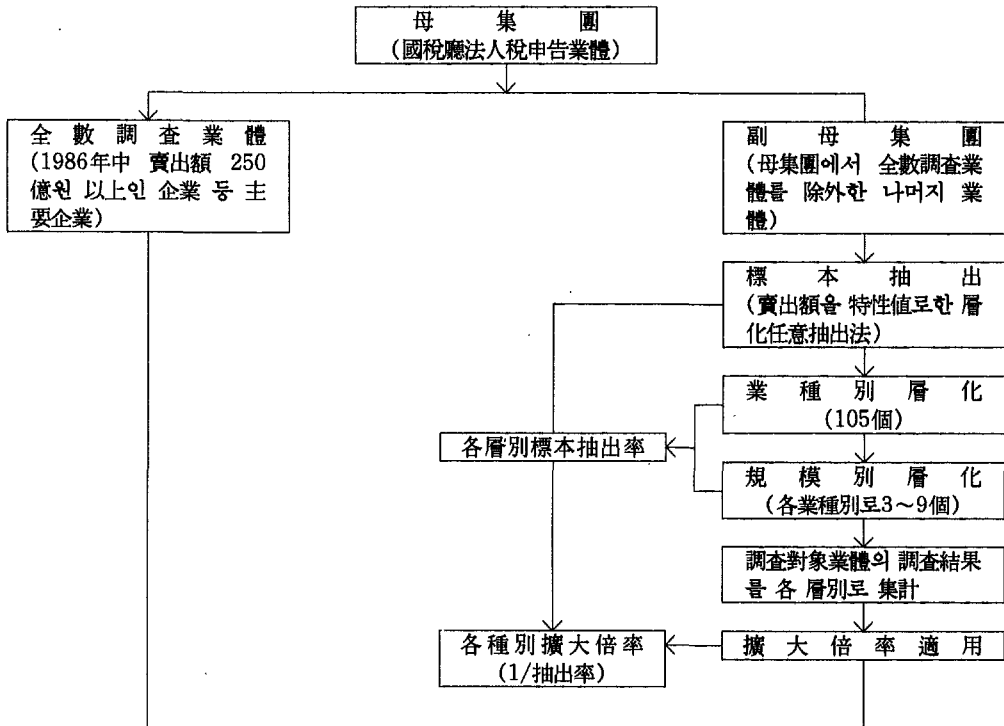
	신뢰도 (z)	허용오차 (d)	표본추출율
제조업	95	5	16.6
여타산업	95	5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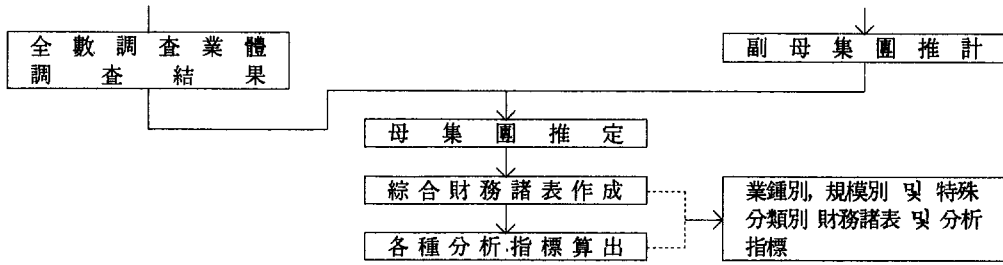
標本業體 選定方法은 각 층별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표본업체를 단순임의추출하였다.

(나) 母集團推計方法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로 집계하여 표본추출시에 정해진 확대배율에 의하여 副母集團值를 推計하고 이에 全數調査值를 합산하여 母集團推計值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各種 經營分析指標를 산출하였다.

企業經營分析 標本設計 內容





업종별모집단추계치 = 표본에 의한 부모집단추계치 + 전수조사치

$$X_h = A_h + B_h = \sum_i^m \sum_j^n X_{ij} \frac{N_i}{n_i} + B_h$$

단, X_h : h업종의 추계치

A_h : h업종의 부모집단 추계치

B_h : h업종의 전수조사치

N_i : h업종 i층의 모집단수

n_i : h업종의 i층의 표본수 ($i=1, 2, 3, \dots, m$)

X_{ij} : h업종 i층의 j번째 표본치 ($j=1, 2, 3, \dots, n$)

나. 中小企業動向調査

(1) 意義 및 沿革

본 조사는 中小製造業의 生産動向을 部門別로 把握하여 中小企業의 政策樹立에 대한 基礎資料 提供을 目的으로 中小企業銀行에서 1963년부터 本調査를 毎月 실시하다가 1974年 6月 1日 一般統計 第304-21-02로 承認, 현재 毎月 作成하여 오고 있다.

同調査는 中小製造業 生産指數 作成을 위한 基礎調査이므로 調査結果는 指數로 發表하고 있다. 현재 작성하고 있는 指數는 다른 經濟指數와 마찬가지로 1985년을 基準으로 한다. 또한 同 指數는 현재 統計廳에서 作成하여 發表하고 있는 産業 生産指數와 同一한 方法으로 作成되나 産業 生産指數는 物量接近方法이고 中小製造業 生産指數는 金額接近方法이다.

V. 企業經營統計

(2) 調查事項

(가) 事業體 概況

- 事業體名
- 事業體 및 本社所在地
- 電話番號
- 主生產品目
- 輸出品目

(나) 計數 調查項目

- 生産額
- 出荷額
- 受注額
- 輸出額
- 信用狀來到額
- 從業員數
- 販賣價格 騰落率(內需·輸出 區分)

(다) 其他

- 在庫水準의 過多, 不足, 適正與否
- 不足原資材名

(3) 調查方法

(가) 調查組織 및 管理

調 查 組 職

調 查 員 (54名)	管 理 方 法
서울(14), 仁川(2), 京畿(4)	本店, 統計調查課에서 管理
釜山(8), 大邱(5), 江原(3), 忠北(2), 忠南(3), 全北(3), 全南(3), 慶北(3), 慶南(3), 濟州(1)	該當地域支店에서 管理

(나) 調查方法：調查員이 抽出對象事業體를 訪問調查

(다) 集計方法

調查票回收(每月 15日까지)→審査→電算集計(統計調查課)

(4) 標本設計

(가) 母集團

- 從業員數 5人 이상 300人미만인 中小製造業體(鑛工業統計調查 1980年末 現在)
- 但, 從業員이 300人미만이라도 中小企業으로 볼 수 없는(質的概念) 一部 大企業의 工場은 母集團에서 除外

(나) 標本抽出方法

層化單純任意抽出法을 適用한다.

- 層化基準: 韓國標準產業分類上 小分類(26個) 基準
- 從業員數層: 6個層

1 層	5~9人	事業體
2 層	10~19人	事業體
3 層	20~49人	事業體
4 層	50~99人	事業體
5 層	100~199人	事業體
6 層	200~299人	事業體

- 標本數抽出: 產業小分類別 目標程度 7% 適用을 적용하였다.

(5) 指數編制方法

(가) 產業小分類別 生産額 推計

產業小分類別로 生産額은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X_i = \sum_{j=1}^6 \bar{X}_{ij} \times N_{ij}$$

(但, X_i : i産業의 母集團 生産額 推計值

\bar{X}_{ij} : i産業, j從業員規模層內的 標本事業體當 平均生産額

N_{ij} : i産業, j從業員規模層內的 母集團事業體數)

(나) 生産額의 不變價格化

앞에서 추계한 產業小分類別 生産額을 經常價格에 의한 生産額이므로 이를 中小

V. 企業經營統計

企業銀行에서 別途 編制하는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1980년 가격으로 不變價格化한다.

(다) 디플레이터(Deflator)

中小製造業 生産指數를 編制함에 있어 經常價格으로 얻어지는 生産額系列을 不變價格化하기 위하여 별도로 中小製造業 製品生産者 販賣價格指數를 편제하고 있으며 代表品目は Cut-off方式에 의하여 選定된 209개 品目を 1개 品目當 5개업체를 調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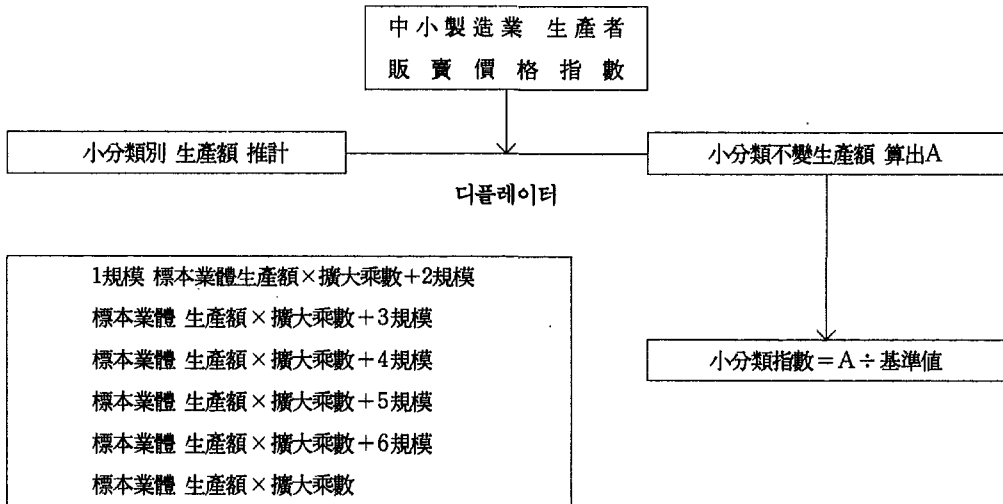
(라) 基準值

標本事業體로부터 推計된 1980년 月平均 生産額이며 産業小分類로 정해진다.

(마) 産業小分類別 生産指數算出

위에서 구한 産業小分類別 不變價格 生産額을 基準值를 100으로 하여 産業小分類 生産指數를 算出한다. 그 節次는 아래와 같다.

算式節次圖



(但, 擴大乘數는 각 從業員規模別 標本抽出率의 逆數이다.)

(바) 産業中分類別 生産指數 算出

産業小分類別 指數에 産業小分類別 純附加價值를 價重值로 하여 平均한다.

$$I_h^t = \frac{\sum_i I_{hi}^t \times W_{hi}}{\sum_i W_{hi}}$$

(但, I_h^t : t時點의 h産業中分類 指數

I_{hi}^t : t時點의 h産業中分類, i小分類 指數

W_{hi}^t : h産業中分類, i産業小分類의 純附加價値額

(사) 産業大分類別 生産指數 算出

産業大分類指數는 中分類指數를 加重平均하여 算出한다.

(아) 加重値算定

1) 加重値는 中分類指數 및 大分類指數를 算出하는 과정에서 産業小分類指數가 中分類 및 大分類指數에서 얼마나 比重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寄與度를 말하며 生産額을 加重値를 얻고자 할 때는 生産額에서 生産活動과 直接關聯이 없는 原材料, 半製品등의 使用額과 設備資産의 減價償却額등을 除外하는 것이 妥當하며, 이러한 諸條件을 充足시키려면 加重値를 純附加價値額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中小製造業 生産指數의 편제방법에서는 1980年度 鑛工業統計調查結果의 附加價値에서 減價償却費를 공제하여 이를 加重値로 하였다.

(6) 生産指數編制에 金額接近方式을 택하는 理由

中小企業部門의 生産指數編制方式에서 物量接近方式보다 金額接近方式이 合理的인 理由는

첫째, 中小企業製品은 그 種類와 品質, 規格이 多様하여 代表品目選定이 어렵고, 둘째, 部品生産業體와 注文生産의 比重이 높은 受給企業의 경우 生産品目の 連續性이 維持되기 어려우며 셋째, 정하여진 品質, 規格의 製品만을 調査하는 物量接近方式은 新製品의 出現을 生産指數에 反映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製品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品質改良에 따른 頻繁한 生産品目 轉換으로, 정하여진 品目を 繼續 調査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V. 企業經營統計

(7) 結果公表

中小企業動向(毎月初) 및 企銀調査月報(毎月末)에 收錄하여 公表하고 있다.

다. 上場企業의 附加價值分析

(1) 意義 및 沿革

韓國生産性本部에서는 上場企業의 經營實態를 計數적으로 把握하여 産業의 附加價值指標分析, 生産性測定을 통한 生産性向上 및 經營合理化를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하고자 1979年 9月 19日 一般統計 第381-21-06으로 承認, 現在 每年 作成하고 있다.

(2) 調査對象

毎年 6月末 現在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된 企業중 金融, 保險業을 除外한 企業體(단, 資料不充分으로 計算이 不可能한 企業은 調査對象에서 除外)

1983年度 調査의 경우 調査對象業體는 約 275個社였다.

(3) 調査方法

韓國證券去來所에 設置된 産業別, 製造業種別 上場會社의 公示資料를 基礎로 直接調査

(4) 調査事項

- 貸借對照表
-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 從業員動態
- 製造原價明細書
- 附加價值計算
- 營業利益計算
- 損益計算書
- 利益金計算
- 經常利益計算

(5) 産業 및 業種分類

(가) 産業分類

- 水産業
- 製造業
- 流通業
- 海·空運業
- 建設業
- 鑛業
- 建設業
- 陸運業
- 서비스業

(나) 製造業의 業種分類

- 飲食料品
- 纖維·衣服 및 가죽製品
- 木材 및 나무製品
- 종이 및 종이製品
- 化學製品
- 石炭製品
- 고무製品
- 鐵鋼製品
- 組立金屬製品
- 輸送裝備製品
- 精密機械製品
- 石油製品
- 非金屬鑛物製品
- 非鐵金屬製品
- 機械製品
- 其他製品

(6) 調査內容

(가) 成果計算書

- 1) 附加價值計算
- 2) 營業利益計算
- 3) 經常利益計算
- 4) 利益金 및 處分計算

이는 會社가 公示한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利益金處分計算書(損失金處理計算

V. 企業經營統計

書) 및 製造(工事)原價明細書를 基礎로 하여 필요한 項目으로 編成, 全 產業別, 業種別, 會社別로 成果計算書를 作成한다.

(나) 成果計算書의 作成方法

1) 附加價值計算方式: 加算法과 控除法의 두가지 方式이 있으나 本 調査에는 控除法에 의해 計算한다.

$$\bullet \text{ 附加價值} = \text{賣出額} - \{(\text{原材料費} + \text{支拂經費} + \text{減價償却費}) + \text{基礎在庫額} - \text{期末在庫額} \pm \text{附加價值調整額}\}$$

$$2) \text{ 營業利益} = \text{附加價值} - \text{勞動收益}$$

$$3) \text{ 經常利益} = \text{營業利益} + (\text{財務收益} + \text{기타營業外 收益}) - (\text{借入資本利子} + \text{기타財務費用} + \text{기타營業外 費用})$$

4) 利益金 및 處分計算은 經常利益에 特別利益, 特別損失, 前期移越利益剩餘金, 任意積立金移入額 등을 加減하여 法人稅 등 控除前末處分利益을 計算한 다음 法人稅充當金, 配當金, 任員賞與金, 諸積立金 등에 分配되는 狀態를 나타낸다.

(다) 附加價值分析指標

成果計算書를 基礎資料로 하여 全 產業에 대한 產業別, 業種別, 會社別로 作成한다.

(라) 主要指標作成을 위한 公式

- 1) 附加價值生産性 = 附加價值 ÷ 從業員數
- 2) 附加價值率 = 附加價值 ÷ 純賣出額
- 3) 1人當賣出額 = 純賣出額 ÷ 從業員數
- 4) 資本集約度 = 經常資本 ÷ 從業員數
- 5) 勞動裝備率 = 有形固定資產 ÷ 從業員數
- 6) 勞動分配率 = 勞動收益 ÷ 附加價值
- 7) 資本分配率 = 營業利益 ÷ 附加價值
- 8) 勞動所得 = 勞動收益 ÷ 從業員數
- 9) 實質勞動所得 = 勞動所得 ÷ 消費者物價指數
- 10) 賣出原價率 = 賣出原價 ÷ 純賣出額
- 11) 販賣費와 一般管理比率 = 販賣 및 一般管理費 ÷ 純賣出額

- 12) 經常資本利益率 = 營業利益 ÷ 經營資本
- 13) 經營資本回轉率 = 純賣出額 ÷ 經營資產
- 14) 在庫資產回轉率 = 純賣出額 ÷ 在庫資產
- 15) 有形固定資產回轉率 = 純賣出額 ÷ 有形固定資產
- 16) 賣出總利益率 = 賣出總利益 ÷ 純賣出額
- 17) 賣出額營業利益率 = 營業利益 ÷ 純賣出額
- 18) 總資本利益率 = (借入資本利子 + 經常利益) ÷ 總資本
- 19) 利子 對 利子 및 經常利益 = 借入資本利子 ÷ (借入資本利子 + 經常利益)
- 20) 自己資本利益率 = 經常利益 ÷ 自己資本
- 21) 處分可能利益率 = 當期末未處分利益剩餘金 ÷ 自己資本
- 22) 法人稅 등 分配率 = 法人稅 등 ÷ 當期末未處分利益剩餘金
- 23) 配當金分配率 = 配當金 ÷ 當期末未處分利益剩餘金
- 24) 任員賞與金分配率 = 任員賞與金 ÷ 當期末未處分利益剩餘金
- 25) 內部留保金分配率 = 諸積立金 ÷ 當期末未處分利益剩餘金
- 26) 內部留保率 = 諸積立金 ÷ 自己資本
- 27) 自己資本配當率 = 配當金 ÷ 自己資本
- 28) 株式資本配當率 = 配當金 ÷ 納入資本

(7) 結果公表

「韓國企業의 附加價值分析」을 發刊하여 每年 公表하고 있다.

라. 中小企業 實態調查

(1) 意義 및 沿革

中小製造業 및 中小鑛業部門의 全般的인 實態와 經營實績을 每年度別로 調查·把握하여 中小企業의 政策樹立 및 經營指標 作成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1967년에 中小企業銀行에서 第1次 調查를 實施(中小企業基本法 第5條 1項 규정)

V. 企業經營統計

하였으며 同年 8월 29日 商工部를 主管部署로 하여 一般統計 第127-21-03號로 承認되었으며, 1982年 第16次 調査때부터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로 移管, 現在에 이르고 있다.

(2) 調査對象

中小製造業 및 中小鑛業(韓國標準產業分類上)에 대한 産業小分類別, 從業員 規模別로 標準抽出하여 選定된 事業體를 調査對象으로 한다.

(3) 調査項目

(가) 鑛業

- 事業體概況
- 年間生産額 및 出荷額
- 販賣代金回收狀況
- 鑛業權
- 技術
- 財務狀況 및 18개事項

(나) 製造業

- 事業體概況
- 原資材 購買狀況
- 生産
- 販賣
- 財務
- 勞務

(4) 標本設計

(가) 母集團 및 抽出方法

鑛工業統計調査(統計廳實施) 結果를 基礎로 層化單純任意抽出法(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ing)을 使用하였다.

(나) 抽出單位와 틀(frame)

- 抽出單位: 事業體
- 틀(Frame): 該當 鑛工業統計調査結果를 利用

(다) 層化基準

- 製造業：産業小分類別, 從業員規模別
- 鑛業：産業小分類別, 從業員規模別

(라) 標本數 決定

鑛工業統計調查結果중 産業小分類, 附加價值(出荷額, 從業員數)의 標準偏差 및 分散資料를 利用하여 Neyman's Presumed Allocation 및 Optimum Allocation 公式을 使用하여 産業小分類, 從業員規模別 標本事業體를 決定한다.

(5) 結果公表

中小企業實態調查報告書를 每年 10月경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마. 中小企業生産 및 操業狀況調查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員業體의 生産 및 操業狀況과 休·閉業狀況을 把握하여 中小企業의 育成發展을 위한 經濟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提供을 위해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1982年 8月 6日부터 一般統計 第327-22-05號로 指定받아 現在 每月 作成하고 있다. 調查範圍는 全國이며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 鑛工業을 對象으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員業體 約 18,000개를 調查하고 있다.

操業狀況(正常操業, 操業短縮, 休業, 閉業), 操業短縮 및 休·閉業數, 操業短縮 및 休·閉業事由를 調查하며, 作成結果는 「中小企業動向」(每月)을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바. 輸出企業 經營實態調查

(1) 意義 및 沿革

國內輸出企業의 經營實態를 計數적으로 把握하여 輸出企業의 經營計劃樹立 및 輸出增大方案에 대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韓國貿易協會에서 1980年 3월 26일 一般統計 第330-21-04號로 承認, 現在 每年 作成하고 있다.

V. 企業經營統計

(2) 調查對象

(가) 調查範圍

韓國貿易協會에 登錄된 全 貿易業體

(나) 分析對象

調查票 回收業體중 商品輸出이 總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50% 이상인 業體를 輸出企業으로 定義하여 이들 業體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다) 分類基準

1) 業種別 分類

- 綜合貿易商社：現行基準 10個 商社
- 一般貿易業體：MCI(商工部) 分類基準에 따라 38個 業種으로 分類한다.

2) 規模別 分類

中小企業基本法에 따라 從業員數가 300人 이하인 業體를 中小企業, 301인 이상인 業體를 大企業으로 分類한다.

3) 其他目的에 따라 製造輸出企業과 專門輸出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3) 調查事項

(가) 貸借對照表(綜合, 業種別, 規模別)

(나) 損益計算書(綜合, 業種別, 規模別)

(다) 製造原價明細書(綜合, 業種別, 規模別)

(라) 損益關係比率(綜合, 業種別, 規模別)

(마) 資産·資本關係比率(綜合, 業種別, 規模別)

(바) 生産性에 관한 指標(綜合, 業種別, 規模別)

(사) 資産·資本의 回轉率(綜合, 業種別, 規模別)

(아) 其他 成長性에 관한 回轉率(綜合, 業種別, 規模別)

(4) 結果公表

「輸出企業 經營分析」을 每年 6月경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사. 企業金融 實態調查

(1) 意義 및 沿革

企業의 金融實態를 調查分析하여 企業內의 經營指針 및 國家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1975년부터 年2回 調查하였으며 1976년 9월 30일 一般統計 第 338-21-01로 承認, 全國經濟人聯合會에서 半期別로 作成하고 있다.

(2) 調查對象

韓國標準產業分類上의 鑛業, 製造業, 建設業이다.

(가) 鑛 業

(나) 建設業

(다) 製造業

- 飲食料品
- 纖維 및 靴依類
- 製材 및 本製品
- 紙類 및 印刷出版
- 化學, 石炭, 石油, 고무 및 플라스틱
- 第1次 金屬
- 非金屬鑛物製品
- 金屬, 機械 및 裝備
- 기타

(3) 調查時期

調查對象期間은 上半期の 경우 1~6월까지이며 下半期の 경우는 7~12월이다.

(4) 調查項目

(가) 資金事情

V. 企業經營統計

- (나) 所要資金(運轉 및 施設資金)
- (다) 資金調達 經路別 隘路點(銀行, 資金市場)
- (라) 資本構成
- (마) 金融機關借入金 用途
- (바) 借入金 利子率
- (사) 金融費用 增減
- (아) 收益性 指標(自己資本利益率, 企業收益率)
- (자) 企業金融 圓滑化 方案
- (차) 社債關聯(金利, 求得事情 등 30개 項目)

(5) 標本設計

鑛工業 및 建設業事業體 名簿上의 全 企業體중 從業員 20人 이상인 業體를 對象으로 하여 業種別(韓國標準產業分類方式에 의거)로 1차 층화하고 從業員 規模順으로 標本을 2次 층화하여 抽出한다.

(6) 結果公表

企業金融實態調查報告書를 每年 3月, 9월에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아. 主要企業의 設備投資計劃調查

(1) 設備投資의 意義

한 나라의 核心的 經濟活動이라 할 수 있는 財貨 및 서비스의 生産活動은 이를 營爲하고 있는 經濟主體의 生産力과 이에 대한 國內外的 需要에 따라 決定된다.

그런데 生産力, 즉, 財貨와 서비스를 供給할 수 있는 能力은 勞動·資本·에너지·技術 등과 같은 生産要素의 質과 量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生産要素들 중 資本스톡은 設備投資라고 하는 「플로우」에 의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設備投資는 여러 가지 側面에서 경제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經濟現象의 判斷

이나 景氣分析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設備投資를 간단히 說明하면 財貨 및 서비스의 生産을 위하여 機械를 購入한다든가 工場建物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範圍까지가 設備投資에 해당한다고 一律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例를 들면 새로운 機械의 購入이나 工場建物의 新築 등은 당연히 設備投資에 包含되는 것으로 断定할 수 있지만, 破損된 機械附屬品の 代替나 建物의 塗裝에 드는 費用의 處理, 生産活動과 直接 關聯이 없는 寄宿舍나 社會福祉施設에의 投資, 機械設置에 따르는 運搬·設置費, 土地의 購入에 따르는 取得稅 등을 包含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떤 特定基準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設備投資統計를 利用할 때는 각각의 統計에서 包括하고 있는 設備投資의 範圍나 基準 등에 留意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設備投資라고 할 때에는 資產種類別로 보아 有形固定資產에 該當하는 土地, 建物 및 構築物, 機械·裝置·機具·備品과 船舶·航空機·車輛 및 運搬具 등을 포함하며 投資動機別로 보면 新製品이나 既存製品의 生産能力 擴充을 위한 設備能力 擴張投資, 設備의 改良·補修나 工程改善·勞動力節減 目的의 設備自動化 및 에너지節約을 위한 合理化 投資와 研究開發, 技術革新을 위한 投資 및 其他 公害防止나 社屋·寄宿舍의 新改築등에 따르는 投資등이 包含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2) 設備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

設備投資의 量을 決定하는 要因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보아 設備投資로부터 얻어지는 收益要因과 그 때문에 必要的 費用要因을 相互 比較하여 決定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設備投資量의 變動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需要面과 生産面에서 把握될 수 있다. 먼저 需要面の 效果를 살펴보면 設備投資의 發注에 의해서 關聯産業의 生産活動이 活潑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雇傭이 增大하여 所得이 增加함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消費를 유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消費財産業의 生産活動도 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國民經濟活動이 擴大되어 간다.

이러한 경우의 數量的 效果는 소위 投資乘數理論에 의해서 測定될 수 있다. 投

V. 企業經營統計

資乘數를 單純하게 定義하면,

$$\left[\frac{1}{1 - \text{限界消費性向}} \right] \text{로 表示할 수 있으므로}$$

國民經濟活動이 擴大되는 크기는 國民所得指標를 導入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ext{國民所得增加分} = \frac{1}{1 - \text{限界消費性向}} \times \text{投資增加分}$$

이와같은 設備投資는 需要面에서 GNP增加를 이끌게 된다. 다음에 設備投資의 變動이 生産面에 미치는 影響을 살펴보면 設備投資는 需要의 增加에 따라 일어나므로 投資된 設備가 실제로 가동해서 生産이 增加되기까지는 時間을 必要로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동하게 되면 生産能力이 擴大되게 된다. 물론 生産能力의 擴大比率는 企業이 採擇하는 技術水準, 勞動力의 質的水準 및 設備投資 增加分の 크기에 의해서 決定될 것이다. 지금 技術水準과 勤勞力의 質的水準에 의해서 生産能力計數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設備投資의 增加로 인한 生産能力의 擴大效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生産能力增加分} = \text{生産能力計數} \times \text{設備投資의 增加分}$$

이러한 生産能力 增加는 곧 供給量을 增大시킬 수 있는 能力이 되므로, 需要의 增加를 통해서 國民經濟活動의 擴大와 直結되는 것이다.

(3) 調査沿革

韓國産業銀行에서 1965년부터 본 調査를 實施하였는데 同年 2月 10日 一般統計 第302-21-01號로 承認, 1987年 1月 9日 指定統計 第302-11-01로 變更하여 現在 半期別로 調査實施하고 있다.

(4) 調査對象

調査基準日 現在 가동중이거나 建設中인 一定規模 이상의 主要民間企業體로서 製造業 全業種과 非製造業 7個部門(鑛業, 電氣業, 가스業, 建設業, 宿泊業, 運輸業, 通信業)

- (가) 製造業：從業員 200人 以上(業種에 따라 100人 또는 300人 以上)
- (나) 非製造業：資本金 10億원 以上(鑛業：從業員 100人 以上, 電氣·가스業, 通信業：전수조사)

(5) 調查時點

- (가) 調查基準時點
 - 上半期調查：前年度 12月 31日 基準
 - 下半期調查：當該年度 6月 30日 基準
- (나) 調查對象期間
 - 上半期調查：前年度 年間 實績 및 向後 2年間の 計劃
 - 下半期調查：當該年度 上半期實績 및 下半期計劃과 向後 2個年の 計劃

(6) 調查事項

- (가) 資產形態別 設備投資額
 - 土地
 - 建物
 - 機械
 - 裝置
 - 船舶
 - 車輛
 - 運搬具
 - 其他

(나) 投資動機別 設備投資額

設備能力 增加(新製品生産 + 既存設備의 擴張 = 國內 需要對比 + 輸出需要對比), 設備의 維持·補修, 自動化·省力化, 에너지節約, 公害防止, 研究開發, 其他

(다) 資金源泉別 設備資金調達額

- 外部資金：株式, 社債, 金融機關借入金, 外貨借入金, 外資(合作投資, 商業借款, 기타), 其他
- 內部資金：減價償却充當金, 社內留保資金, 其他

(라) 設備投資不振要因

國內需要不振, 輸出需要不振, 資金調達難, 收益性低下, 原資材調達難, 景氣展望不透明, 其他 등 12個項目中 3順位까지 調查한다.

V. 企業經營統計

(마) 中古 有形固定資產 取得額 및 保有 有形固定資產處分額

(바) 主要投資內容

調査對象業體의 主要工事件名과 建設期間, 總所要資金 및 完工前後의 生産能力을 比較調査한다.

(7) 調査方法

面接法과 記入法을 병용(調査票配付 및 回收: 調査員, 不實調査 및 再審査: 當部職員 直接訪問)한다.

(가) 審査過程

1) 每年 2月初(上半期 調査), 7月初(下半期 調査)에 調査표를 配付, 調査期間은 1個月間이다.

2) 回收된 調査表中 不實調査業體를 對象으로 再調査를 實施, 補完한 뒤 1次的으로 電算集計한다.

3) 1次 電算集計된 結果를 分析, 增減幅이 특히 큰 業種이나 投資比重이 높은 業體를 對象으로 每年 4月, 10月중에 再審査를 實施한다.

4) 確認·修正된 調査票를 電算集計하여 最終 結果를 作成한다.

(나) 審査體系

全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個 調査區로 區分(調査區마다 調査員 1名씩 分다) • 教育實施: 每年 1月末 調査員 및 支店調査擔當職員 對象
本 店	서울 20個 調査區
支 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釜山(양산군) 6個 調査區 • 大邱(구미), 光州(여수, 순천, 목포), 仁川(부천)에 각각 3個 調査區 • 大田, 全州(이리, 군산), 昌原(마산)에 각각 2개 調査區 • 淸州, 蔚山에 각각 1個 調査區
郵便 調査 區	• 當行 本·支店이 없는 地域에 所在한 業體

(8) 調査標本

(가) 母集團: 每年 1월에 鑛工業統計 調査報告書(統計廳)를 토대로 業種別 附加價値 대표도 80% 水準을 維持하도록 Cut-off Sampling에 의해 調査對象業體를

選定한다.

(나) 調査對象業體選定基準

產 業	對 象 範 圍	企 業 體 數
全 產 業	-	2,308
製 造 業	-	1,926
食 料 品	從業員 200人 以上	106
飲 料 品	" 200 "	29
纖 維	" 300 "	181
木 材 및 나 무 製 品	" 200 "	33
종 이 및 종 이 製 品	" 100 "	85
印 刷 · 出 版	" 100 "	65
產 業 用 化 學	" 200 "	110
其 他 化 學	" 200 "	200
石 油 精 製	" 300 "	6
石 炭 製 品	" 100 "	15
고 무 製 品	" 300 "	58
非 金 屬 鑛 物 製 品	" 100 "	161
第 1 次 金 屬	" 300 "	58
組 立 金 屬 製 品	" 200 "	135
一 般 機 械	" 100 "	165
電 氣 電 子 機 器	" 200 "	256
運 輸 裝 備	" 200 "	103
精 密 機 器	" 100 "	46
其 他 製 造 業	" 200 "	114
非 製 造 業	-	382
鑛 業	從業員 100人 以上	38
電 氣 業	-	1
가 스 業	-	15
建 設 業	國內總工事額 100億원以上	96
宿 泊 業	賣出額 10億원 以上	84
運 輸 業	資本金 10億원 "	147
通 信 業	-	1

(9) 主要 調査項目의 定義

(가) 設備投資

이 調査의 設備投資는 自社의 有形固定資産에 대한 國內投資로서 建物, 建築物, 機械 및 裝置, 車輛 및 運搬具 등과 土地의 購入 및 造成開發(단, 投機目的의 不動產投資는 除外)등에 대한 投資를 말한다.

이 調査에서는 設備投資額은 投資動機(新製品生産, 既存設備 擴張, 設備의 維持·補修, 工場自動化, 研究開發, 其他)別로 區分하여 調査하였다.

(나) 資産形態別

1) 土地購入

工場 및 事務所의 敷地 등을 말하며 投機目的의 不動產投資는 除外한다.

2) 土地調整 및 開發

建築 및 建築造物의 工事を 위한 土地의 改良·造成費를 말한다.

3) 建 物

建物이라 함은 工場, 事務所, 社宅, 寄宿舍, 기타 附屬建物を 말하며 昇降機, 冷溫房裝置, 照明通風裝置 등 建物の 附屬設備도 包含한다.

4) 機械·裝置

動力機械, 製造 및 加工機械, 反射爐, 分類塔 및 전도장치 등을 말한다.

5) 船舶·車輛·運搬具

自動車, 鐵道車輛의 陸上運搬具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海上運搬具 및 航空機 등을 말한다.

6) 其 他

建築物, 工具, 機具 및 備品 등을 包含한다. 構築物은 도로, 교량, 철도, 담장, 굴뚝, 저장탱크, 조선대, 송유관, 우물 및 정원 등을 말한다.

(다) 投資動機別

1) 新製品生産

既存業體의 經營多角化를 위한 同一産業分類內의 他製品 生産施設에 대한 投資 및 新規事業體의 投資 등을 말한다.

2) 設備의 擴張

需要增大에 대비한 生産能力의 擴充을 위한 投資를 말한다.

3) 自動化

原價節減, 生産期間短縮, 品質向上을 위한 既存施設의 自動化 및 勞動力節約을 위한 投資를 말한다.

4) 設備의 維持·補修

設備의 合理化를 위한 既存設備의 更新, 改補修를 위한 投資를 말한다. 단, 여기에는 資本的 支出만이 包含되며 收益的 支出은 包含되지 아니한다.

5) 研究開發

技術革新, 品質向上, 新製品開發 등을 위한 研究施設에의 投資를 말하며 有形固定資產取得을 위한 支出이 아닌 研究費 등은 除外된다.

6) 其他

保安對策投資 및 福祉厚生施設 및 事務室用 建物에의 投資를 말한다.

(라) 資金調達方法

資金調達源泉은 外部資金과 內部資金으로 大分하고, 外部資金을 다시 株式, 社債, 金融機關借入金(元貨借入金, 外貨借入金), 外貨 및 其他로 區分하여 調査한다.

1) 株式·社債

設備投資를 위해 調査對象期間중에 發行하였거나 發行할 株式·社債만을 의미하며 外國人이 引受하는 株式은 除外된다.

2) 金融機關借入金

國策銀行, 市中銀行 및 地方銀行으로 부터의 元貨차입금과 Bank Loan 및 政府保有外貨를 財源으로 한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外貨表示借入金を 말한다.

3) 商業借款

國內企業의 外國으로부터 直接 外資를 도입한 경우를 말한다.

4) 外貨의 其他

國內金融機關으로부터의 前대자금(ADB, KFW, IBRD 등으로부터의 借款資金 등) 등과 外國銀行의 國內支店 및 綜合金融會社로부터의 外貨에 의한 借入金を 말한다.

V. 企業經營統計

5) 리스

리스會社를 통하여 設備를 Lease로 구입한 경우를 말하며 外貨設備리스, 元貨設備리스로 區分된다.

6) 外部資金의 其他

保險會社, 相互信用金庫, 短資會社 등으로 부터의 借入金 및 私債 등을 말한다.

7) 内部資金

社內留保와 減價償却充當金を 말한다.

(10) 結果公表

設備投資計劃調查報告書를 每年 6月과 12月 두차례에 걸쳐 發刊·公表하고 있다.

자. 企業의 設備投資動向調査

業種別 施設投資 및 가동률동향을 調査分析하여 政府의 景氣對應的 政策運用, 企業의 經營計劃 및 投資戰略樹立에 대한 基礎資料 提供을 目的으로 1975년에 最初로 全國經濟人聯合會에서 本 調査를 實施하였으며, 1976年 9月 30日 一般統計 第338-21-02로 承認, 每年 作成하고 있다.

調査對象은 常時從業員 300人 以上되는 大企業體로 하고 있으며 調査項目은 施設投資實績 및 計劃(資產別 投資動向, 用途別 投資動向, 投資資金調達狀況), 施設投資隘路要因, 施設狀況 등을 調査한다.

標本은 韓國標準產業分類의 中分類에 따르는 業種別 分類를 택하였으나 業種에 따라서는 細分類로 병행하였다. 또한 標本抽出에 있어서는 鑛工業體名單에 收錄되어 있는 從業員 300人 以上の 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系統抽出하였다.

結果公表는 企業의 設備投資 및 가동률 動向調査를 每年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2. 景氣指標

가. 景氣豫測統計

景氣變動(business cycle)이란 한 나라의 總體的인 經濟活動이 일정기간을 두고 上昇과 下降을 반복하는 現狀으로서, 특히 企業을 中心으로 市場機能에 의하여 營爲되는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 일국의 經濟活動規模가 內生的 또는 外生的 要因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現狀을 意味한다.

이러한 現狀은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反復하여 움직이므로 景氣循環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景氣變動을 豫測하는 것은 앞으로의 景氣가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미리 測定하는 것으로 過去와 現在 그리고 未來의 여러 가지 與件들을 參照하고 經驗的 또는 理論的인 方法을 使用하여 推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推定한 景氣變動의 豫測은 諸般 經濟計劃을 樹立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經營上의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重要하다. 왜냐하면 政府·企業 및 個人의 모든 活動은 일국의 國民經濟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景氣變動의 直接的 혹은 間接的인 影響을 받게 되고, 또한 經濟政策樹立과 그 執行上의 基礎資料로 活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시작한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期間中인 1963~1964년에 景氣後退를 經驗하면서 景氣變動에 대해 關心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1964年 下半期에 韓國生産性本部(KPC)가 처음으로 業種別 景氣動向의 豫測이라는 企業景氣展望調査를 實施, 企業實查指數(BSI)를 作成하여 景氣觀測을 시작하였으며, 그후 韓國銀行과 韓國産業銀行 등 여러 機關에서 企業景氣展望調査를 實施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景氣豫測의 初期段階는 企業景氣展望調査를 中心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企業實查指數는 企業經營者의 主觀的인 景氣展望을 直接調査하여 景氣變動의 增加 또는 減少 方向을 豫測하는 것으로, 現在에는 大韓商工會議所와 中小企業銀行 등 6個機關에서 月別 혹은 分期別로 調査하고 있다.

V. 企業經營統計

그러나 經濟指標의 시계열을 利用한 統計的 分析方法에 의하여 처음으로 作成한 綜合的 景氣指數는 1972年 韓國銀行이 作成한 景氣豫告指標(warning indicators, WI)라 할 수 있다.

WI는 現在의 景氣狀態가 景氣調節政策을 必要로 하는 過熱現狀 또는 停滯現狀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4個의 段階(信號燈)로 區分하여 測定하는 指標로서, 構成 指標의 前年同月比를 點數變動의 基準變動率과 比較하여 3點, 2點, 1點, 0點으로 點數化한 後 이들 點數를 單純合計하여 算出한 平均點數에 따라 景氣狀態를 過熱(3.0~2.1點), 上向性安定(2.0~1.6點), 下向性安定(1.5~1.1點), 沈滯(1.0~0點)의 4局面으로 把握한다. 그런데 이때 適用되는 點數變動의 基準變動率이 過去 高度成長期를 反映하고 있어 經濟安定期의 景氣豫測에는 不適合한 것으로 判斷 1984年 5월에 作成을 中止하였다.

한편 1970年代 들어 第2次 石油波動으로 世界的 景氣不況이 誘發되고 우리 經濟 또한 1978年 史上 最高의 好況에서 1979年初부터 急激한 景氣後退를 겪게 되자 景氣의 진폭을 測定할 수 있는 景氣指標 作成의 必要性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統計廳(당시의 調查統計局)과 韓國開發研究院(KDI)이 共同으로 새로운 景氣 指標開發을 위한 研究에 着手했으며, 그 結果 1981年 3月 19個 構成指標로 이루어진 景氣綜合指數를 公表하고 國內景氣動向 測定과 豫測을 위한 主要指標로 活用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9~82년에 걸친 不況期가 지남에 따라 構成指標의 景氣反映度 檢證 등을 包含한 改編作業에 着手하여 1984年 3月 22個 構成指標에 의한 改編 景氣綜合指數를 發表하였으며, 1988年 7月에는 構成指標의 現實反映度 再檢證 및 統計的 技法의 改善등을 통해 選定한 21個 指標로 이루어진 第2次 改編指數를 公表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一般的으로 景氣變動을 統計적으로 測定 또는 豫測하는 方法에는 景氣指標(business indicators)에 의한 方法, 企業實查調查(business survey)에 의한 方法, 計量經濟모형(econometric model)에 의한 方法, 個別指標에 의한 綜合判斷 方法 등이 있다.

나. 景氣綜合指數

(1) 意義 및 沿革

景氣變動이란 生産, 販賣, 雇傭, 金融, 貿易, 投資 등 廣範圍한 經濟部門의 循環的 變動에서 形成되는 한 나라의 總體的인 經濟活動을 意味하는데, 景氣綜合指數 (Composite Index : CI)는 이러한 經濟 各部門의 指標中에서 景氣를 민감하게 反映하는 主要指標를 選定, 이들의 움직임을 綜合한 指數에 의하여 全體變動의 方向, 速度, 局面, 轉換點을 豫測判斷하기 위하여 作成한다.

景氣綜合指數(CI)는 美國 商務部가 景氣變動을 體系的으로 研究해온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研究結果를 發展시켜 1968年 처음으로 作成, 發表함으로써 美國의 主景氣指標로 活用되기 시작하였는데, 現在 英國, 日本, 臺灣, OECD統計局, EC統計局 등 많은 나라에서 作成하여 使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年 3월에 19個指標에 의한 景氣綜合指數를 一般統計 第111-22-10(81.2.26)로 承認받아 作成·公表하고 每月 景氣動向을 測定하여 왔다.

그후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친 景氣不況期 등 內外 經濟與件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景氣綜合指數의 景氣反映度를 檢討·補完하여 1984年 3월에 22個 指標로 構成된 第1次 改編指數를 公表하였다. 또한 經濟統計資料의 基準年度 變更, 景氣循環期의 結果등에 따라 構成指標의 景氣反映度 再檢證 및 統計의 技法을 改善·補完할 第2次 改編指數를 1988年 7월에 作成하여 公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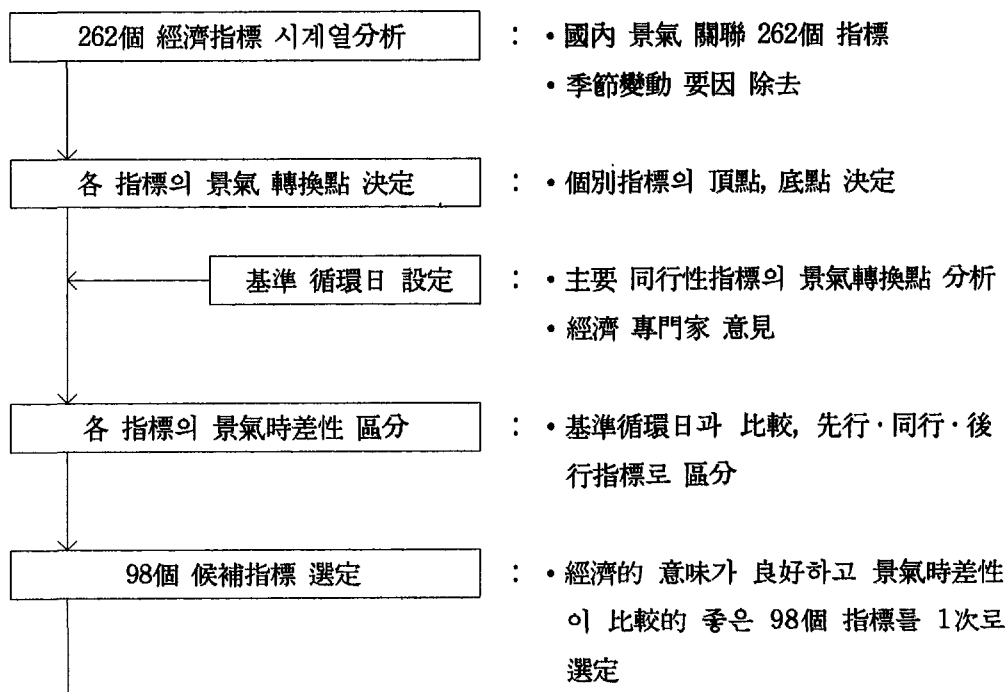
(2) 經濟 部門別 構成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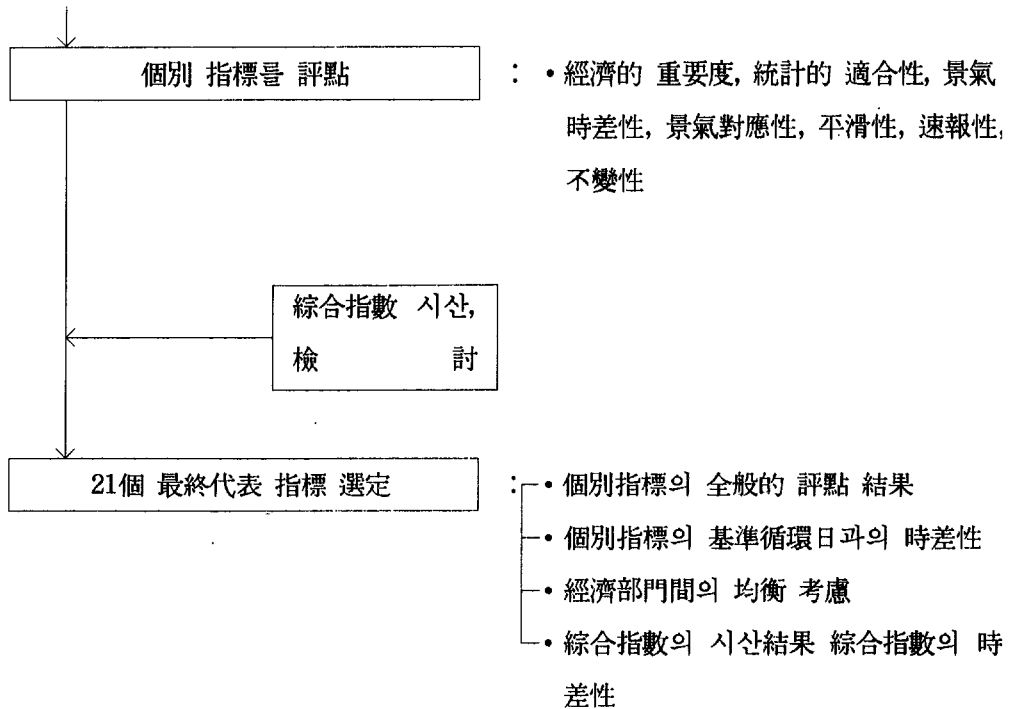
區 分	先 行	同 行	後 行
雇 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造業 入職率 • 製造業 平均勤勞 時間(生産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造業 勤勞者指數 	—
生 産·所 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業 生産指數 • 製造業稼働率指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造業 賃金(賞與 金 除外)
消 費·販 賣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産者 出荷指數 • 都小賣額 指數 	—

V. 企業經營統計

區 分	先 行	同 行	後 行
投 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築許可 面積 • (生產 + 產業 前年 同月比) • 機械受注(民間 + 公共, 前年同月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本財 生產指數 • 機械類 輸入額
在 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造業 在庫率指數 (逆系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產者製品 在庫指 數(前年同月比)
費用·企業經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綜合株價指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位勞動 費用(製 造業)
通 貨·金 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貨(M₁, 平殘) • 總流動性(M₃, 前 年同月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中銀行 要求拂預 金 回轉率
貿 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來到額 • 輸出額(前年同月 比) 	—	—

(3) 構成指標 選定





(4) 編制方法

構成指標의 前月比 增減率을 振幅 調整한 後, 이를 加重 綜合하여 指數化한 것으로 計算過程은 다음과 같다.

(가) 構成指標 시계열의 非景氣的 變動要因으로 構成

- 個別指標의 原指數는 4가지 變動要因으로 構成

$$\text{原指數} = \boxed{\text{趨勢變動} \times \text{循環變動}} \times \boxed{\text{季節變動} \times \text{不規則變動}}$$

(景氣的 要因) (非景氣的 要因)

- 季節變動要因 除去: $\times -11$ ARIMA 方法
- 不規則變動要因 除去: 不規則 程度에 따라 1, 3個月 移動 平均

(나) 個別指標別로 前月對比 增減率 算出

- 今月增減率 = $200 \times \frac{\text{今月指數} - \text{前月指數}}{\text{今月指數} + \text{前月指數}}$

V. 企業經營統計

(但, 比率指標는 今月值-前月值)

(다) 個別指標 增減率의 振幅을 標準化

• 全構成指標 增減率의 全期間 平均이 같은 水準이 되도록 一致시킴으로써 큰 振幅을 갖는 特定指標가 綜合指數를 支配하는 것을 排除

$$\bullet \text{ 振幅標準化 增減率} = \frac{\text{今月增減率}}{\text{過去增減率의 絶對值 平均}}$$

(라) 個別指標의 振幅標準化한 增減率을 加重平均하여 綜合增減率 算出(先行, 同行, 後行 綜合增加率)

$$\bullet \text{ 綜合增加率} = \frac{\Sigma \text{標準化 增減率} \times \text{加重值}}{\Sigma \text{加重值}}$$

(마) 綜合增減率의 振幅을 標準化

• 先行, 同行, 後行, 綜合增減率을 同行 綜合指數 增減率 크기로 調整함으로써 增減率 크기로 相互比較 可能케 함.

• 振幅標準化 綜合增減率 =

$$\text{先行(後行)綜合增減率} \div \frac{\text{過去先行(後行)綜合增減率 平均值}}{\text{過去 同行綜合增減率 平均值}}$$

(바) 標準化한 綜合增減率을 累積하여 原指數 算出

$$\bullet \text{ 今月指數} = \text{前月指數} \times \frac{200 + \text{今月標準化 綜合增減率}}{200 - \text{今月標準化 綜合增減率}}$$

• (但, 1970年1月=100으로 함)

(사) 趨勢調整指數 算出

• 先行, 同行, 後行指數의 趨勢線이 서로 다르므로 國民經濟의 長期趨勢變動을 나타내는 GNP趨勢線으로 調整

• 趨勢調整 綜合增減率 = 原指數 綜合增減率 + (GNP月平均 趨勢增減率 - 原指數 月平均 趨勢增減率)

• 趨勢調整 綜合增減率은 累積하여 指數化(1970年 1月=100)

(아) 趨勢調整 指數를 1985年 基準指數로 轉換 → 景氣綜合指數

- 1985年 基準指數 = $\frac{1970.1\text{月 基準指數}}{1970.1\text{月 基準指數의 } 1985\text{年 年間平均值}}$

(5) 主要用語定義

(가) 景氣綜合指數(趨勢·循環變動值)

- 先行綜合指數(Leading CI) : 景氣를 短期 豫測하는 指標
- 同行綜合指數(Coincident CI) : 現在의 景氣狀態를 判斷하는 指標
- 後行綜合指數(Lagging CI) : 現景氣를 事後的으로 確認해 주는 指標

(나) 同行指數 循環變動值

- 同行綜合指數를 趨勢變動值로 나누어 算出
 - 趨勢變動值 : 局面平均法(Phase Average Trend Method)으로 算出

(다) 先行綜合指數의 前年同月比

• 先行綜合指數 前年同月比는 先行綜合指數보다 景氣轉換點이 먼저 나타나는 性質을 가지므로 景氣轉換點을 豫測하는 補助指標의 하나로서 利用한다.(但, 前年同月比 變動이 나타내는 振幅은 意味가 없음)

- 先行綜合指數 前年同月比

$$= \left(\frac{\text{今月先行綜合指數}}{\text{前年同月の 先行綜合指數 12個月移動平均值}} - 1 \right) \times 100$$

(6) 結果公表

翌月初에 速報(先行指數, 同行指數 動向)와 翌月中旬에 月報(先行, 同行, 後行指數 및 構成指標動向, 시계열資料)를 公表한다.

다. 月間景氣動態調查

(1) 意義 및 沿革

企業實事調查(business survey)는 企業活動의 實績, 計劃 및 景氣動向에 대한

V. 企業經營統計

企業家の 判斷을 設問調査하여 사전적 데이터를 可能한 한 廣範하고 組織的으로 蒐集, 利用함으로써 全般的인 景氣動向을 把握하고자 하는 短期 景氣豫測 方法中의 하나이다.

1976年 8月 18日 一般統計 第338-21-04로 承認, 現在 每月 調査 實施하고 있다.

(2) 調査對象

(가) 調査對象業種：鑛業 및 製造業中 18個業種

業 種 分 析	韓國標準產業分類(KSIC)上番號
1. 鑛業	2
2. 食料品 製造業	311~312
3. 飲料品 製造業	313
4. 纖維 製造業	321
5. 木材 및 나무製品 製造業	33
6. 종이 및 종이製品 製造業	341
7. 産業用 化合物 製造業	351
8. 其他化學製品 製造業	352
9. 石油精製業	353
10. 고무製品 製造業	355
11. 달리 分類되지 않은 플라스틱製品 製造業	356
12. 非金屬 鑛物製品 製造業	36
13. 鐵鋼產業	371
14. 非鐵金屬產業	372
15. 一般機械 製造業	381, 382, 835
16. 電氣 및 電子機器 製造業	383
17. 自動車 製造業	3843
18. 船舶建造 및 修繕業	3841

(나) 調査對象業體：各 業體別 大企業 300個業體(市場占有率順)

(3) 調査對象

(가) 企業의 景氣動向을 反映하는 8가지 項目

(나) 綜合的인 景氣에 대한 綜合景氣項目 等 總9個項目

項 目	調 查 方 法
1. 生産	前月을 100.0으로 한 指數
2. 內需販賣	
3. 輸出	
4. L/C 來到	
5. 製品在庫	
6. 從業員數	실수(%)
7. 稼動率	
8. 資金事情	前月對比 好轉, 惡化, 不變與否
9. 綜合景氣	

(4) 標本設計 및 結果公表

業種別 特性, 品目の 多樣性 등을 考慮하여 業鍾別 事業數를 決定하고 全國經濟人聯合會 會員 및 中小企業 部門에서 各 業種別로 市場占有率이 큰 順으로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主要業種의 月間景氣動態報告書를 每月 發刊·公表한다.

라. 企業景氣展望調查

大韓商工會議所에서 1972년에 最初로 調查하였으며 1975年 1月 17日 一般統計 第343-21-01로 承認, 1980年부터 分期別(年4回)로 調查 實施하고 있다. 調查對象은 國內 鑛工業體인 常時從業員數가 20人 以上인 業體를 生産額크기의 順으로 業鍾別·規模別로 整理한 後 증화추출하여 作成한 大韓商工會議所의 多目的 調查用 標本業體 各簿에 收錄된 2,029個 業體이다.

調查週期는 每分期이며 서울地域은 臨時調查員에 의해 實施하고 地方의 경우에는 관할 地方商工會議所에서 調查한다. 調查事項은 生産, 稼動率, 設備投資, 內需販賣, 輸出, 資金事情, 企業損益 등 18個 項目이며, 企業景氣展望調查報告書를 每分期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마. 住宅建設景氣展望調查

(1) 意義 및 沿革

住宅景氣動向分析 및 장래의 短期的 住宅景氣動向을 豫測·把握하여 住宅定着 및 住宅景氣對策에 대한 資料를 提供하고 住宅建設業體의 經營計劃樹立 및 住宅金融에 관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기 위해 韓國住宅銀行에서 1978年 8月 24日 一般統計 第305-21-01로 承認, 같은 해 9月 第1回 4/4分期調查를 시작하였으며, 現在 分期別(年 4回)로 調查·實施하고 있다.

(2) 調查對象 및 調查事項

建設業統計調查(統計廳 實施)의 住宅建設業體中 住宅建設 既成額 순으로 280個 業體를 對象으로 調查하고 있다. 이는 1990年度에 實施한 建設業統計調查에서 住宅建設 既成額(1989年度 實績)의 99.9%를 차지한 244個 綜合建設業體와 36個 中小住宅事業體이다.

地域別 調查對象業體數 現況

區 分	綜合建設業體數(*)	中小住宅事業體數	合 計
全 國	244	36	280
서 울	135	5	140
地 方	109	31	140
• 釜 山	30	—	30
• 大 邱	20	—	20
• 仁 川	10	10	20
• 光 州	13	7	20
• 大 田	14	6	20
• 馬 山	11	4	15
• 全 州	11	4	15

註：(*)는 建設部の 免許를 得한 業體임.

調查事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된 住宅建設
- 住宅建設類型
- 全般的인 景氣水準
- 住宅建設活動 變動要因
- 經營上 隘路點
- 資材求得難
- 住宅建設量
- 住宅建設在庫量
- 住宅分讓實績
- 資金事情
- 雇傭水準
- 計數調査
- 住宅建設關聯 價格 및 營業利益
- 住宅建設에 따른 隘路點 및 建議事項

(3) B.S.I(Business Survey Index)算出方式

$$B.S.I = \frac{\text{增加(上昇)應答業體數} - \text{減少(下落)應答業體數}}{\text{全體 應答業體數}} \times 100 + 100$$

(指數의 範圍 : $0 \leq B.S.I \leq 200$)

마. 中小製造業景氣展望調査

中小企業의 景氣變動을 分期別로 分析把握하여 中小企業部門의 短期政策樹立 및 其他 銀行業務의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中小企業銀行에서 1979年 9月 14日 一般統計 第304-21-04로 承認, 現在 每分期別로 調査·實施하고 있다. 調査對象은 全中小製造業體中에서 業種 및 從業員數를 勘案하여 選定된 2,756個 事業體이다.

V. 企業經營統計

調查對象企業의 構成

	5~19人	20~99人	100~299人	計
製 造 業	818	1,130	808	2,756
• 飲食料品	109	118	73	300
• 纖維·衣服·가죽	129	195	172	496
• 나무製品·家具	95	54	22	171
• 종이製品·印刷出版	78	73	43	194
• 化合物·石炭·고무	100	228	121	449
• 非金屬礦物製品	93	76	54	223
• 第1次 金屬	39	85	57	181
• 組立金屬·機械·裝備	145	250	216	611
• 其他製造業	30	51	50	131

調查事項으로는

- 全般的 景氣
 - 分期景氣
 - 3個月後 展望
 - 6個月後 展望
- 生産
 - 3個月後 展望
 - 6個月後 展望
- 資金事情
 - 3個月後 展望
 - 6個月後 展望
- 施設投資
 - 3個月後 展望
 - 6個月後 展望

을 調查한다.

結果算出方法으로는 다른 B.S.I와 마찬가지로

$$B.S.I = \frac{\text{好轉業體數} - \text{惡化業體數}}{\text{總應答業體數}} \times 100 + 100$$

이다. 調查結果의 公表는 中小製造業景氣展望을 發刊(每分期 下旬頃)하여 公表하고 있다.

사. 輸出產業景氣展望調查

(1) 調查沿革

韓國貿易協會에서는 1975년부터 每分期別로 綜合景氣調查를 實施한바 있으며 1976年 7月 13日 一般統計 第330-21-01로 承認, 現在 每分期別로 調查實施하고 있다.

(2) 調查項目

輸出額과 그 先行指標인 L/C賣渡額은 具體的으로 어느 規模에 이를 것인가를 計數調查하고 이밖에 判斷調查로서 輸出景氣와의 關聯性이 높거나 輸出產業動態把握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調查項目中 아래와 같이 輸出產業에 固有한 項目 8個, 一般的 調查項目 6個, 合計 14個를 算定하여 이들이 前分期에 비하여 增加(好轉), 同一, 減少(惡化)의 3個方向 또는 크게 增加(10% 이상 增加), 다소증가(5% 未滿 增加), 同一, 다소감소(5% 未滿 減少), 크게 減少(10% 以上 減少)의 5個 方向中 어떻게 變動하였는가를 調查하였다.

(가) 計數調查

- 輸出
- L/C 賣渡額

(나) 判斷調查

< 輸出產業에 固有한 調查項目 >

- 輸出相談
- 交易相對國 景氣
- 輸出 原價
- 輸出商品價格

V. 企業經營統計

- 輸出競爭力
- 輸出採算性
- 主要交易相對國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
- 原資材 輸入

< 一般調查項目 >

- 製品在庫에 대한 判斷
- 設備投資
- 設備稼動率
- 資金事情
- 從業員數
- 貴社가 본 同業界의 全般的 景氣

(3) 調查對象品目

調查對象品目の 輸出額累計가 總輸出에서 佔하는 比重이 70% 以上되도록 아래와 같이 主要輸出品目 34個를 選定하였다.

(가) 食料品 및 直接消費財

- 活鮮魚
- 冷凍水產物
- 통조림

(나) 輕工業製品

- 綿絲
- 組織物
- 刺繡織物
- 合成纖維絲
- 合成纖維織物
- 직물제의류
- 編織製 의류
- 양말

- 絹織物
- 革製衣類

(다) 輕工業製品：非纖維類

- 신발류
- 플라스틱製品
- 타이어 및 튜브
- 합판 및 本製品
- 도자기 및 타일
- 완구 및 인형
- 革製品

(라) 重化學工業製品

- 電子部品
- 電子製品
- 鐵鋼製品
- 船舶 및 水上構造物
- 시멘트
- 金屬製品
- 컨테이너
- 自動車 및 同附屬
- 機械類
- 電氣機器
- 肥料
- 합성수지
- 光學·測定機器

V. 企業經營統計

(4) 調查對象業體數

調 查 對 象 品	業 體 數
計	500
食料品 및 直接消費財	51
輕工業製品(纖維類)	151
輕工業製品(非纖維類)	101
重化學工業製品	197

(5) 指數算出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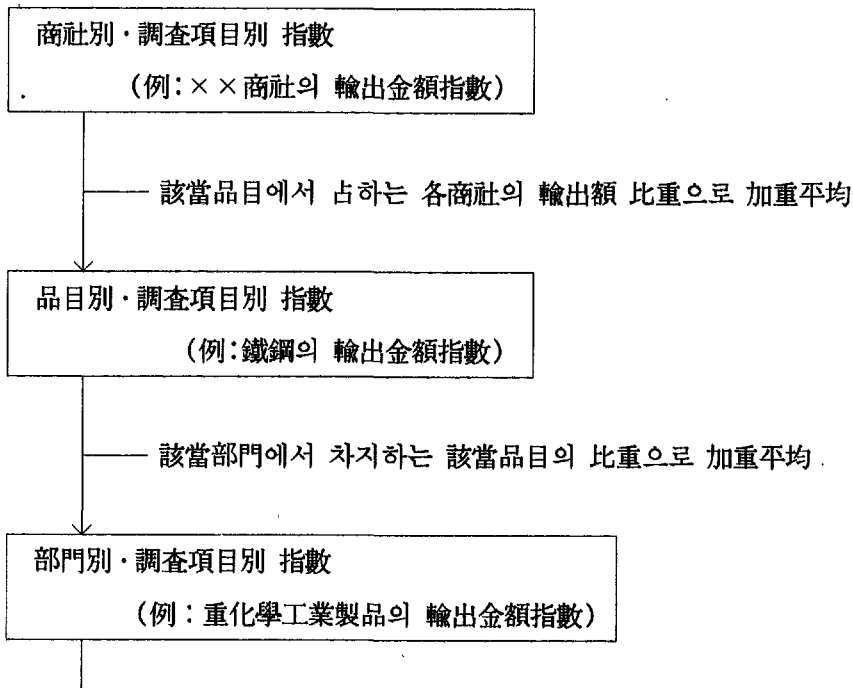
(가) 計數調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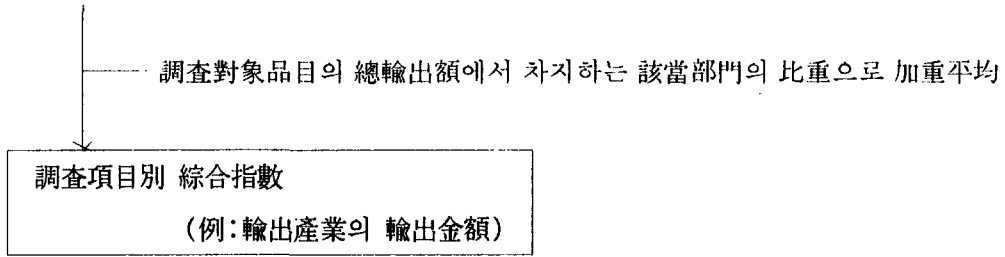
○ 輸出金額 및 L/C賣渡額 = 各種項目 綜合指數 × 基準年의 分期平均値

$$\text{但, 綜合指數} = \frac{\text{調查對象分期의 實績 또는 豫測値}}{\text{基準年의 分期 平均値}}$$

(基準年은 1990年임)

○ 指數算出過程





○ 商社別 加重值

商社別·調查項目別 指數에서 品目別·調查項目別 指數를 算出함에 있어서 中小貿易業體와 大貿易業體가 同一하게 評價됨을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品目에 대한 調査回答業體의 89年 輸出實績에서 各 商社가 차지하는 輸出額 比重으로 加重平均 한다.

○ 品目別 加重值

品目別·調查項目別 指數에서 部門別·調查項目別 指數 또는 調查項目別 總指數를 算出함에 있어서 巨額輸出品目과 少額輸出品目이 同一하게 評價됨을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部門 또는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各 品目の 輸出額 比重으로 加重 平均 한다.

(나) 判斷調査

1) 算出指數의 種類

上記 14個 判斷調査項目에 대하여 輸出商品別, 產業部門別로 그리고 總輸出商品에 대하여 各各 指數를 算出한다.

2) 指數의 算式

- 基本型: 變動方向 3個의 境遇

$$B.S.I = \frac{X - Z}{N} \times 100$$

但, X: 增加, 好轉等 景氣回復의 方向으로 應答한 業體數

Z: 景氣後退의 方向으로 應答한 業體

N: 總有效 應答業體數

- 加重值 賦課型: 變動方向 5個의 경우

V. 企業經營統計

$$\text{B.S.I} = \frac{(1.5X_1 + X_2) - (Z_1 + 1.5Z_2)}{1.5X_1 + X_2 + Y + Z_1 + 1.5Z_2} \times 100$$

단, X_1 = 크게 好轉(增加)으로 應答한 業體數

X_2 = 다소 好轉으로 應答한 業體數

Y = 同一로 應答한 業體數

Z_1 = 다소 惡化(減少)로 應答한 業體數

Z_2 = 크게 惡化로 應答한 業體數

3) B.S.I의 特徵

위의 方法으로 B.S.I를 算出하게 되면 指數는 上限+100 下限-100의 範圍內에서 基準線 0을 갖게 되며, 變動方向이 5個인 調査項目의 경우 크게 好轉으로 應答한 業體數는 1.5倍의 比重을 갖게된다.

한편, B.S.I의 景氣綜合指數로서는 「貴社가 본 同業界의 全般的 景氣」項目을 택하였는 바, 이는 同項目 自體로서 이미 綜合性을 包含하고 있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6) B.S.I의 概念 및 指數活用

(가) B.S.I의 概念

Trade Business Survey Index는 輸出業界의 景氣豫想에 대한 輿論調査의 結果를 指數로 作成한 것을 말한다.

(나) 指數活用

1) 一般적으로 調査票作成者는 景氣回復期에는 景氣展望을 樂觀적으로 應答하고 後退期에는 悲觀적으로 應答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景氣가 回復期에 들어서는 時點에서 實施될 調査結果는 實際보다 樂觀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悲觀적으로 나타났을 可能性이 있다.

2) 品目別 動向에 있어서 回答業體數가 小數일 경우에는 同種目的 景氣動向을 바르게 反映하지 못할 可能性이 있다.

3) 計數調査에 있어서는 回答業體의 輸出額에 加重值를 賦課하여 指數를 計算하게 되므로 大企業의 主觀의 判斷(預測)이 과도하게 反映될 可能性이 있다.

4) 判斷調査에 있어서 每分期의 指數는 前分期를 基準으로 한 것이므로 特定分期의 景氣動向은 前分期 또는 前前分期의 動向과 相互關聯下에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7) 結果公表

輸出産業 景氣豫測調査報告書를 每分期別로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여 백

VI. 社 會 統 計

여 백

VI. 社會統計

1. 地域社會

가. 地域所得統計

(1) 作成沿革과 目的

1959년부터 1967년까지 OEC, 韓國銀行등의 機關에서 각각 試驗的으로 道別所得을 推計해본 적이 있었으며, 그 후 內務部에서 1967年 以後 서울시를 除外한 市, 道를 對象으로 「住民所得推計」라는 이름으로 道內總生産을 推計해 오고 있으나 1979年度 以後로는 內部資料로만 活用하고 있고, 한편 內務部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1973年 以來로 研究機關에 依賴하여 「서울市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을 推計하고 있다.

1983년부터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地域所得統計 開發과 基礎統計 改善, 開發에 着手하여 그동안 全市, 道를 對象으로 4차례의 道內總生産推計 試算作業을 推進하였고, 1989年 2월에 一般統計 111-22-16로 承認되어 統計廳에서 1990年初부터 每年作成하고 있다.

地域住民 經濟의 循環과 構造를 生産, 分配, 支出 면에서 計量把握하여 地域經濟의 實態를 明白히 나타내 주는 綜合的인 地域經濟指標로서 地域經濟政策 樹立에 必要한 資料 提供을 目的으로 함.

(2) 作成範圍와 方法

地域所得은 國民所得에 대한 地域單位 概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地域所得推計는 國民所得 推計의 諸概念을 地域別로 適用하여 對象地域에 따라 道民所得, 市都民所得으로 區分할 수 있다.

VI. 社會統計

따라서 地域所得은 一定期間 地域住民의 모든 生産活動에 의해서 評價된 附加價値를 生産, 分配, 支出側面에서 把握하는 것이며 地域所得推計의 諸概念 基準은 UN의 「新 SNA」方式을 準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地域別 基礎統計 의 未備로 우선 道別 生産計定(道內總生産)부터 作成하고 分配, 支出所得은 2段階 課題로 繼續 開發할 計劃인바, 한편 현재의 地域소득추계로 基本的으로 國民所得 3面等價의 概念에 따라 生産接近方法, 所得接近方法, 支出接近方法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우선 生産接近方法을 주로 活用하고 基礎資料의 事情에 따라 所得接近方法, 支出接近方法도 部分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3) 作成項目

(가) 道內總生産의 經濟活動別 分類

1) 産業

- ① 農業, 林業 및 漁業
- ② 鑛業
- ③ 製造業
- ④ 電氣, 가스, 水道事業
- ⑤ 建設業
- ⑥ 都小賣, 飲食宿泊業
- ⑦ 運輸, 通信, 倉庫業
- ⑧ 金融, 保險, 不動產, 事業서비스
- ⑨ 社會 및 個人서비스

(控除)金融歸屬서비스

2) 政府서비스

3) 民間非營利團體

4) 輸入稅

(나) 要素所得의 區分

1) 固定資本消耗

- 2) 純間接稅
- 3) 被傭者報酬
- 4) 營業剩餘

產業部門別 附加價值 推計方法

部 門	附加價值 推計方法	主要 基礎資料
I. 產業		
1. 農業, 林業, 漁業		
1) 農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算出額－中間材費用 • 產出額＝產出額×單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家經濟調查
2) 林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出額×附加價值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林產額表
3) 漁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出額×附加價值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 統計年報
2. 鑛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出額－中間材費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業센서스
3. 製造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出額－中間材費用 	
4. 電氣, 가스, 水道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算書上의 附加價值 項目合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電力 決算書
5. 建設業		
1) 建物建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築年面積×建築單價×附加價值率 	
2) 土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事施工額×附加價值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建設業 統計調查 報告書
6. 都小賣, 飲食, 宿泊業		
1) 都小賣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品去來額×品目別Margin率×附加價值率 	
2) 飲食, 宿泊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算出額×附加價值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小賣센서스, 課稅資料
7. 運輸, 倉庫, 通信業		
1) 運輸, 倉庫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算出額－中間材費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運輸業 統計調查
2) 通信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算書上의 附加價值 項目集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信公社 決算書
8. 金融, 保險, 不動產, 用役業		
1) 金融, 保險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算書上의 附加價值 項目集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融業 決算書
2) 不動產, 用役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出額×附加價值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算書, 課稅資料
9.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出額×附加價值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課稅資料
II. 政府서비스生産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算書上의 附加價值 項目集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 決算書
III. 民間非營利서비스生産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算書上의 附加價值 項目集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間非營利團體 決算書

나. 韓國都市年鑑資料調查

全國 都市에 대한 各種 現況과 都市基盤施設 實態를 體系的으로 收錄한 都市年鑑은 地方都市의 變化趨勢 把握 및 都市行政資料로 活用하고자 內務部가 1966年 12月 作成하여오다 1976年 4月 19日 一般統計 第121-22-01號로 承認, 現在 每年 作成하고 있다.

各 市·道로 부터 每年 4月 1日~7月 30日사이에 報告系統을 통해 資料를 蒐集한다.

作成內容은

① 概說

都市一覽

② 人口·面積

- 氣象
- 面積·家口·人口
- 行政區域 變遷
- 人口增加 趨勢
- 人口變動狀況
- 都市公務員數

③ 財政

- 市 豫算 規模
- 市 決算 規模
- 市 一般會計歲入決算 現況
- 市 一般會計歲出決算 現況
- 市 特別會計歲入歲出 決算現況
- 市 起債
- 市有財產

④ 租稅負擔

- 地方稅 徵收 現況

- 租稅 負擔

⑤ 都市計劃 與 住宅

- 都市計劃 概況
- 地目別 土地利用 狀況
- 土地區劃 整理
- 開發制限 區域 指定現況
- 住宅現況
- 建築許可實態
- 아파트 現況
- 都市公園 現況

⑥ 建設

- 道路
- 道路施設物 現況
- 上水道
- 下水道
- 溜水池 與 排水貯水池 現況
- 下水處理場 現況
- 公共建設 事業費

⑦ 保健衛生

- 쓰레기 收去
- 분뇨收去
- 便所實態
- 醫療施設
- 醫療業者 分布狀況
- 醫藥品製造 與 販賣
- 食品 與 環境衛生業所

⑧ 社會福祉施設

- 都市低所得 住民現況

VI. 社會統計

- 社會福祉施設
- 公共體育施設現況

⑨ 産業・經濟

- 市場分布
- 經濟活動人口 및 産業別 就業者 現況
- 産業別 事業體 및 從業員數
- 工場分布 및 從業員數
- 廢水排出施設 및 廢棄物埋立地 現況
- 工業團地
- 金融機關

⑩ 教育・文化

- 새마을幼兒園
- 幼稚園
- 國民學校
- 中學校
- 高等學校
- 專門大學
- 教育大學現況
- 大學(校)現況
- 大學院 現況
- 其他學校
- 圖書館
- 博物館
- 文化財現況
- 文化施設 및 藝術團現況

⑪ 交通・通信

- 車輛現況
- 停車場 現況

- 交通安全施設現況
- 電話普及
- 郵便施設
- 郵便物 取扱現況

⑫ 公安・災害

- 交通事故發生
- 警察官署 및 犯罪發生 檢舉現況
- 火災發生
- 消防署 및 消防公務員 現況
- 消防裝備
- 管内 官公署 및 主要機關數

다. 出・入國者統計

內・外國人의 入國 및 出國狀況을 把握하여 出入國 管理業務나 關聯된 政策判斷 및 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法務部가 1976年 7月 29日 一般統計 123-22-01로 承認받아 作成하고 있으며 1984年 7月 1日 出入國 管理法令 改正時 一部 樣式을 追加 및 改正하여 現在 每月 調查하고 있다.

輸送手段을 不問하고 出入國節次를 마친 모든 內・外國人을 對象으로 地方出入國 管理事務所에서 出入國申告書를 基礎로 內・外國人의 出入國 狀況을 集計하여 每月 法務部 出入國管理局에 報告함으로써 作成된다.

報告事項을 살펴보면

(가) 內國人・外國人에 관한 事項

- 1) 行先國別 出國目的別 國民出國者
- 2) 行先國別 職業別 國民出國者
- 3) 行先國別 年齡別 國民出國者
- 4) 滞在國別 出國目的別 國民歸國者

(나) 外國人에 관한 事項

VI. 社會統計

- 1) 國籍別 滯留資格別 外國人 入國者
- 2) 國籍別 職業別 外國人 入國者
- 3) 國籍別 年齡別 外國人 入國者
- 4) 國籍別 滯留期間別 外國人 入國者
- 5) 國籍別 目的別 外國人 短期資格 入國者

(다) 其他

- 1) 港口別 內·外國人 入國者
- 2) 港口別 內·外國人 出國者
- 3) 國籍別 上陸 許可者

등이다.

結果公表는 每年 出入國 管理統計年報를 발간하여 公表하고 있다.

라. 財政收支調查

統計廳에서 1985年 8月 30日 一般統計 第111-21-13號로 承認, 1985年에 1983年, 1984年分을 調査한 바 있으며 1986年以後 每年 作成하고 있다. 本 調査는 市·道·郡(教育廳 包含)을 하나의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調査하고 있는 項目은 建物延面積, 公務員 機能別 人員, 一般會計 歲入, 歲出, 教育費, 育成會費 特別會計 歲入, 歲出, 給水量 및 水道料金 賦課現況 등이다. 調査基準期間을 1.1~12.31까지 1年間이며 調査實施期間은 每年 5~6月中에 實施한다. 結果는 地域所得統計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마. 地籍統計

內務部에서는 土地管理에 관한 政策樹立 및 學術研究 資料提供 및 各種 標本調査의 基準을 決定하는 基本資料提供을 위하여 1970年 12月 31日부터 作成하기 시작하여 1982年 11月 26日 一般統計 第121-22-09로 承認, 現在 每年 作成하고 있다.

休戰線以南의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를 登錄別, 行政區域別, 所有別, 地目別로 區分하여 面積과 地番數를 集計하여 作成하고 있으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土地(林野)를 市, 郡, 區別, 登錄別로 24個 地目으로 나누어 面積과, 地番數를 國有地, 民有地로 區分하여 作成하고 있다.

作成方法은 市, 郡, 區에 備置된 指定公簿 集計簿에 依據하여 每年 12月 31日 現在를 基準으로 土地臺帳登錄地, 林野臺帳登錄地, 數值地籍簿登錄地別로 區分하여 24個地目を 國有地와 民有地로 나누어 面積과 地番數를 調査集計하여 內務部에 報告함으로써 作成한다.

結果公表는 每年 地籍統計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2. 住居生活

가. 住居實態調査

(1) 意義 및 沿革

都市家口에 대한 現 住居實態 및 장차 마련하고자 하는 住宅에 관한 希望事項 등을 調査하여 政府가 支援하는 住宅의 融資金 支援限度와 適正한 住宅의 戶當規模, 地域別 特性에 따른 條件 등을 分析, 現在의 住宅建設計劃과 住宅政策方向 決定의 基礎적인 資料를 提供코자 建設部에서 1976年 10月 15日 一般統計 第128-21-08호로 승인되었으며 1983年 1月 1일부터 作成이 中止된 無住宅 家口實態 調査(1973年 一般統計 승인)와 統合하여 2年마다 作成하고 있다.

(2) 調査對象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등 6대 都市의 零細한 住宅(15坪이하의 住宅)에 居住하는 所有家口와 無住宅家口中에서 5,000家口 標本을 抽出한다.

(3) 調査事項

家口構成 및 經濟活動에 관한 事項으로는 家口主의 判斷, 家口主의 性別, 동거가

VI. 社會統計

족 관계, 總家族數, 家口主의 學歷, 家口主의 職業, 就業狀況, 月平均 所得, 月平均 貯蓄金額 등이며, 住居狀態에 관한 事項으로는 住宅의 種類, 住宅의 材料, 現在 住宅으로 이사한 동기, 建物 保存狀態, 동거상황, 住宅의 經過年數, 부엌의 수, 화장실의 種類,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垜地面積, 建物面積, 집전체(침실) 傍의 數, 지붕의 材料, 使用하는 煖房燃料, 使用하는 취사연료, 現在 住宅의 價格, 住宅에서 職場까지의 距離, 지난 3年동안 이사 回數, 現在 國民住宅規模에 대한 意見, 國民住宅의 전매금지기간, 집세지불방법, 使用하는 房(침실)의 數, 國民住宅의 分讓方法, 傳賃金額, 月賃 및 保證金, 샷월세 등이다.

원하는 住宅에 관한 事項으로는 원하는 住宅型, 住宅의 購入方法, 住宅規模(專用面積), 住宅의 價格, 원하는 住宅의 位置, 住宅의 주난방방식, 취사연료, 방(침실)의 수, 賃貸保證金, 月賃借料, 마련하고자 하는 住宅의 방에 대한 意見, 政府住宅資金의 最低融資希望額, 賃貸期間, 住宅所有觀念, 住宅을 購入할 수 있는 時期, 住宅을 購入하기 위해 貯蓄하는 方法,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자금 이외의 不足한 資金調達方法,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總金額이다.

(4) 標本設計

1) 第1次 抽出

각 동의 반에 일련번호를 附與하고 이중 3의 배수가 되는 반을 抽出하여 調查對象班으로 하였다.

2) 第2次 抽出

第1次 抽出에서 選定된 반에 다시 一連番號를 附與하고 그 반의 수와 調查對象 家口數의 比率에 該當하는 배수인 番號로 抽出하는 반을 第2次對象班으로 하였다.

3) 第3次 抽出

第2次 抽出으로 얻어진 調查對象班中에서 각 주가구별 一連番號를 附與하고 그 중 가장 中央에 位置한 1個의 家口를 選定하여 調查對象 家口로 한다.

(5) 結果公表

住居實態調查報告書を 毎年度기로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나. 共同住宅의 住居環境調查

(1) 意義 및 沿革

共同住宅團地의 주위환경, 便益施設 配置 및 規模, 住居密度의 適正性 등의 實態를 把握하여 共同住宅의 建設 및 效率的인 管理를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키 爲해 1980年 6月 20日 一般統計 第128-21-16號로 承認, 現在 3年마다 調查 實施하고 있다.

(2) 調查事項

1) 團地(團地의 一般的인 事項)

- ① 建物構造
- ② 層數 및 棟數
- ③ 坪型 및 세대수
- ④ 垜地面積
- ⑤ 竣工日
- ⑥ 建設事業者
- ⑦ 住宅價格
- ⑧ 融資金融 등

2) 管理에 關한 事項

- ① 管理事務所
- ② 管理方法
- ③ 入住方式
- ④ 住宅의 난방방식
- ⑤ 管理人員

VI. 社會統計

- ⑥ 가스施設
- ⑦ 승강설비
- ⑧ 車輛의 굉음 등

3) 부대 및 福祉施設에 관한 事項

- ① 어린이 놀이터
- ② 휴게소
- ③ 商街
- ④ 病院施設
- ⑤ 不動產 紹介所
- ⑥ 노인정
- ⑦ 유아원
- ⑧ 通信施設
- ⑨ 體育施設
- ⑩ 公衆用 휴지통 등

4) 公共文化施設에 관한 事項

- ① 學校施設
- ② 洞事務所
- ③ 파출소
- ④ 郵便局
- ⑤ 學校施設
- ⑥ 銀行
- ⑦ 交通施設 等

(3) 結果公表

아파트 住居環境調查報告書를 3年마다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다. 아파트入住者 實態調査

(1) 意義 및 沿革

住公아파트 入住家口의 輿論을 把握하여 住宅建設 및 管理改善 政策에 活用하고 자 大韓住宅公社에서 1978年 7月 一般統計 318-21-01號로 승인받은뒤 1988年 5月 調查項目 一部를 變更하여 作成하고 있다.

(2) 調查對象

大韓住宅公社에서 1985年度 事業分으로 建設 供給한 全國 37個都市 44,000家 口中 2,500家口이다.

(3) 調查事項(設問式)

1) 一般事項

2) 家口員 事項

① 家口主

② 家口員數

③ 月平均 總所得

④ 月平均 貯蓄

⑤ 貯蓄目的

3) 住居事項

① 이사오기전 住宅類型

② 現 住宅의 所有形態

③ 住宅購入方法

4) 住公아파트 入住動機

5) 居住結果 滿足度

住居環境(5項目), 構造 및 施工(7項目), 生活經濟的 條件(6項目), 管理狀態(4項目)

6) 改善 및 希望事項

7) 向後 住居計劃

(4) 結果公表

“住公아파트 入住者 實態調査”에 매년 收錄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라. 都市住宅價格 動向調査

(1) 意義 및 沿革

1970年 以後 都市化가 급격히 進行됨에 따라 都市에의 人口集中 現象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면서 住宅問題는 날로 重要な 問題로 부각되어 왔다. 더욱이 80年代 以後 不動產 投機가 가열되면서 住宅은 居住空間으로서의 概念에서 急激하게 소유 내지는 投資의 對象으로서의 概念으로 바뀌어져 갔다. 따라서 住宅價格의 變動에 대한 一般人들의 관심도 지대하게 높아져가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으로 인해 住宅價格의 動向을 把握해야 할 必要性도 漸次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要求에 따라 本 都市住宅價格動向調査는 1981年 11월에 처음으로 住宅 銀行에 의해 調査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每月 調査를 實施해서 發表해 오고 있다. 또한 1988年 11月 23日 住宅價格 綜合指數 算出에 使用하는 가중치를 從前 '80年 住宅總調査 結果資料에서 '85年 住宅總調査의 住宅類型別 재고구성비로 變更하는 한편 標本規模를 擴大했다.

(2) 調査範圍 및 對象

全國 37個 都市의 新築後 10年 以內의 標本住宅 3,033戶(단독 1,680, 연립 396, 아파트 957戶)이다.

(3) 調査項目

標本住宅의 類型別(단독, 연립, 아파트), 規模別(25坪 미만, 25~40坪, 40坪 초과), 建築時期別(新築後 5年 이내, 5~10年) 住宅賣買價格, 독채 전세가격, 가격 變動要因을 調査한다.

(4) 標本設計

<標本크기의 결정>

- 본 산식

$$n = \frac{(Z_{\alpha/2})^2 \left(\frac{\sigma}{\mu}\right)^2}{\left(\frac{d}{\mu}\right)^2 + \frac{(Z_{\alpha/2})^2}{N} \left(\frac{\sigma}{\mu}\right)^2}$$

N이 相當히 크므로

$$n = \frac{(Z_{\alpha/2})^2 \left(\frac{\sigma}{\mu}\right)^2}{\left(\frac{d}{\mu}\right)^2} \text{ 利用}$$

단, $Z_{\alpha/2}$: 신뢰도 계수 (=2)

$\frac{\sigma}{\mu}$: 변동계수 (= $\frac{S}{\bar{X}}$)

$\frac{d}{\mu}$: 허용오차 (=0.01)

N : 모집단의 크기 (=3,054,205)

n : 표본의 크기

- 동 基本算式에 의할 경우 韓國住宅銀行이 '88年 3월에 調査한 37個 都市 標本住宅 2,498戶의 價格指數 資料에서 算出된 分散 $S^2=943.85$, 平均 $\bar{X}=114.40$ 을 信賴水準 95.5% 이상 維持하면서 許容誤差 0.01 水準에서의 標本數는 2,884 戶로 決定했다.

- 이를 起點으로 '85年 人口 및 住宅總調査 結果를 利用한 都市別 住宅在庫構成比의 比例로 標本住宅數를 配定하되 中小都市의 최소 標本數를 39戶로 하여 總 3,033戶의 標本住宅을 選定하였다.

(5) 指數編制

1) 基準時點을 '85年末로 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適用하여 指數算出時 住宅有型別 構成比 및 都市別 財産稅額 構成比를 가중치로 適用한다.

VI. 社會統計

2) 指數算出 方式

$$HP = \frac{\sum \left[\frac{\sum \frac{P_t}{P_0} \cdot w_i}{\sum w_j} \right] W_i}{\sum W_i} \times 100$$

단, P_0 = 기준시 주택가격

P_t = 비교시 주택가격

W = 각 都市別 住居用 財産稅 賦課額의 構成比로 算出한 가중치

w : W 의 값을 各都市로 住宅流刑別 構成比로 비례배분한 加중치

j : 住宅類型別 첨자

i : 都市別 첨자

3) 편제지수 내용

- 市道別, 37個市別, 住宅賣買價格指數
- 市道別, 37個市別, 住宅傳賃價格指數
- 住宅規模別 住宅價格指數(단순산술평균)
- 建築時期別 住宅價格指數(단순산술평균)

(6) 結果公表

매월 都市住宅價格動向調査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3. 保健·衛生

가. 國民營養調査

(1) 作成沿革

1969년부터 食品衛生法 第70條의 規定(國民營養調査 및 指導)과 國民營養改善令 및 同施行規則에 依據하여 調査하다가, 1973年 5月 7日 一般統計 第129-21-03으로 承認, 現在 每年 作成하고 있다.

(2) 調査事項

1) 食品攝取調査

- ① 일정기간에 攝取한 食品의 種類 및 量
- ② 일정기간의 食事狀況
- ③ 攝取食品의 種類 및 量에 食品性分表를 適用한 營養素攝取量

2) 食生活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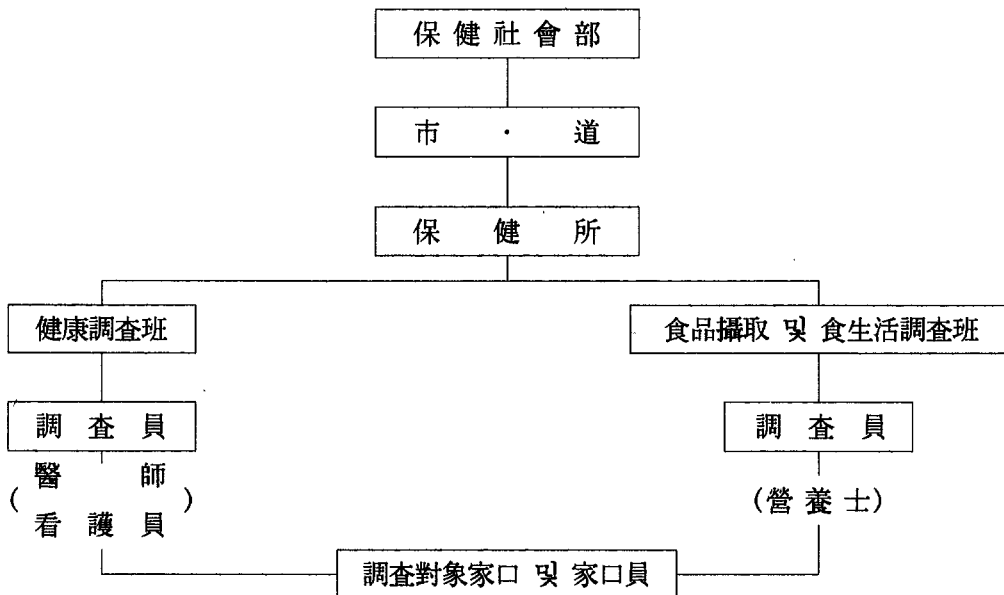
- ① 家口 및 家口員의 一般事項
- ② 食品取扱者의 一般事項
- ③ 食品의 調達方法, 調理施設 等 食生活에 關한 事項

3) 健康調査

- ① 體位測定
- ② 營養과 關係되는 증후
- ③ 其他 健康狀態에 關한 事項

(3) 調査方法

1) 組織



VI. 社會統計

2) 管理

① 保健社會部

- 調查基本計劃 및 細部計劃 樹立
- 豫算配定
- 調查指導監督
- 調查計劃樹立協調
- 調查員 및 檢查員 訓練
- 調查票點檢, 電算處理
- 調查地區 行政支援
- 調查報告書 作成

② 各市·道

- 調查員 任用 및 配置
- 調查對象에 대한 調查趣旨通報
- 調查地區 行政支援
- 調查裝備管理

③ 保健所

- 健康調查班編成 및 調查指導監督
- 健康調查員確保 및 點檢
- 營養調查員 點檢
- 調查票取合·點檢·送付

④ 大韓營養士會

- 營養調查員 動員
- 食品攝取調查 및 食生活調查

3) 方法

① 健康調查

健康調查員(醫師, 看護師)이 對象家口를 訪問하여 실측조사

② 食品攝取調查

營養調查員(營養士)이 對象家口를 訪問하여 連3日間 실측調査

③ 食生活調査

營養調査員(營養士)이 對象家口員에게 面接調査

(4) 標本設計

1) 모집단 基礎資料

經濟企劃院의 '85人口 및 住宅總調査 調査區 名簿(섬지역 調査區 除外)

2) 標本抽出方法

- ① 總調査 調査區 名簿를 각 市·道의 市부, 郡部別로 23個 地域으로 區分한다.
- ② 市·郡部の 家口數에 比例하는 확률로 300個의 基本 標本調査區를 抽出하고 여기서 50개의 실사 標本調査區를 계통추출한다.
- ③ 各 調査區當 20家口를 抽出한다.

(5) 結果公表

毎年 國民營養調査報告書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나. 國民健康調査

1983年 7月 15日 一般統計 第304-21-05로 승인, 現在 매 3년마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作成하고 있다. 調査對象은 표本으로 選定된 一般家口 10,000家口에 居住하는 가구원 전원이며, 調査項目은

－ 家口에 관한 事項

- 家口員의 이름
- 家口主와의 關係
- 家口員의 性別
- 家口員의 年齡
- 家口員의 教育水準
- 家口員의 職業

VI. 社會統計

- 家口員의 結婚狀態
 - 家口員의 醫療保障狀態
 - 家口所得 水準
 - 일주일동안의 상병상태
 - 상병에 대한 保健醫療的 措置
 - 慢性的인 상병상태
- 病態個別調査
- 病態의 發生時期
 - 病態의 種類
 - 진단명 혹은 증상, 診斷을 내린 사람
 - 事故의 原因, 다친곳, 다친정도
 - 中毒原因 物質
 - 正常活動 制限與否와 그 期間
 - 病態때문에 일주일동안 받았던 治療行爲
 - 찾아간 保健醫療機關, 回數
 - 利用 交通手段, 걸린 時間
 - 治療費 등이다.

標本選定은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을 使用했으며 抽出單位는 1次抽出의 경우 邑·面·洞을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方法으로 抽出했으며 2次抽出 單位는 洞·반을 임의추출한다. 標本の 크기는 1次抽出 單位間的 급간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計算하여 200個의 1次抽出單位에서 各各 50家口씩 10,000家口를 選定하였다. 조사방법은 調查員에 의한 面接調査를 하며 國民健康調査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다. 全國 結核實態調査

1965년에 最初로 전국결핵실태조사를 實施한 이래 1980年 2月 26日 一般統計第129-21-31로 승인, 現在 每 5年마다 調査하고 있다. 本調査는 保健社會部에

서 國內의 결핵감염 및 有病實態를 調査把握하여 每5年마다 實施한 結核實態調査 結果와의 比較分析 및 國家結核 管理事業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作成하는 것으로 '85調査의 경우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 調査區 558個 調査區를 抽出率 10/31을 適用하여 總180個 調査區를 標本 抽出하여 調査地域內 11,000家口, 45,000名의 住民을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調査種目別로는 X-선 檢診의 境遇 調査對象 家口의 5歲以上 住民 全員이며 細菌檢査는 X-선 이상자 全員이고, 튜베르쿨린 反應檢査 및 B.C.G 反應檢査는 生後 60日 以上~ 만30歲未滿의 全 住民이다. 治療歷 調査는 治療有無의 경우 生後 60日 以上 住民全員(X-선 檢진반에서 調査)이 對象이며 詳細한 治療歷은 X-선 이상자 全員(細菌檢査반에서 調査)이고 吸煙習慣調査는 15歲以上 住民이 된다.

調査項目을 살펴보면

- B.C.G 접종률
- 治療歷
- 結核感染率
- X-선상 活動性 肺結核 유병률
- 結核菌의 藥劑감수성
- 吸煙歷
- 菌陽性 肺結核 유병률
- 비결핵성 抗酸菌 感染率
- 肺結核과 객담증상과의 關係
- 恒酸菌의 菌種 등이며

現地住民檢診 및 X-선 撮影에 의한 方法으로 調査하여 結核實態調査結果報告 書を 調査翌年に 發刊하여 公表한다.

VI. 社會統計

라. 家族保健實態調查

(1) 意義 및 沿革

우리나라 人口政策 評價의 基礎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家族計劃에 대한 意識構造, 可妊有配偶 婦인의 피임실천, 出産力, 母子保健과 영유아 보전 등에 관한 統計資料 蒐集을 위해 1982年 4月 5日 人口保健社會研究員이 一般統計 第340-21-04로 승인, 現在 每3年마다 調查 實施하고 있다.

(2) 調查對象

一般家口 12,000家口中에서

- 1) 出産力 : 만 44세 이하의 기혼부인
- 2) 家族計劃 : 만 44세 이하의 유배우 부인
- 3) 母子保健 : 最近 1年동안에 出産經驗이 있거나 調查當時 임신중의 부인
- 4) 嬰幼兒保健 : 만2세 이하의 嬰幼兒

(3) 調查項目

1) 家口事項

- ① 家口主와의 關係
- ② 性別
- ③ 年齡
- ④ 結婚狀態

2) 出生·死亡

- ① 出生年月日
- ② 生存與否
- ③ 死亡年月日
- ④ 性別

- ⑤ 生存期間
 - ⑥ 死亡年月日
 - ⑦ 死亡時 年齡
 - ⑧ 死亡者의 生年月日
 - ⑨ 死亡原因
- 3) 家口特性
- ① 住宅所有關係
 - ② 月平均收入
 - ③ 醫療保險 加入狀態
- 4) 부인특성
- ① 出生地
 - ② 최장거주지
 - ③ 結婚直前居住地
 - ④ 教育水準
 - ⑤ 宗教
 - ⑥ 就業狀態
 - ⑦ 結婚狀態
 - ⑧ 結婚時 年齡
 - ⑨ 남편직업
- 5) 家族計劃實態
- ① 避妊方法知識
 - ② 避妊方法 인지 경로
 - ③ 避妊實踐狀態
 - ④ 避妊實態 임신
 - ⑤ 避妊方法 變更理由
 - ⑥ 불임시술 및 자궁내장치 시술일자
 - ⑦ 시술장소

VI. 社會統計

- ⑧ 시술비 負擔
 - ⑨ 시술권유자
 - ⑩ 먹는 피임약, 콘돔등 使用時期 및 期間
 - ⑪ 避妊中斷方法, 時期 및 理由
 - ⑫ 將來避妊方法
- 6) 임신 및 出產
- ① 避妊回數 및 時期
 - ② 出產兒數 및 出產時期
 - ③ 出產兒의 死亡與否 및 時期
 - ④ 死産, 자연유산, 인공유산 回數 및 時期
 - ⑤ 避妊歷
 - ⑥ 期待出產兒數
 - ⑦ 妊娠可能與否
- 7) 人工妊娠中絶實態
- ① 人工流産態度
 - ② 人工流産理由
 - ③ 人工流産場所
 - ④ 人工流産後의 경과 및 治療與否
- 8) 母子保健
- ① 産前診察 有無 및 時期
 - ② 診療場所 및 診療理由
 - ③ 産前檢査의 種類
 - ④ 母子保健手帖 有無
 - ⑤ 分娩場所
 - ⑥ 分娩形態
 - ⑦ 産後診察有無 및 診療理由
 - ⑧ 豫防接種狀態

⑨ 모유수유상태

9) 結婚 및 子女觀

① 이상적 結婚年齡

② 男兒選好理由

③ 두자녀 태도

④ 이상적 子女數

⑤ 1자녀 단산태도

⑥ 老後對策

(4) 標本選定

1) 抽出方法 : 층화계통임의추출법

2) 標本크기의 決定

地域別 층화(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기타 도청소재지, 其他小都市, 군부)

(5) 結果公表

家族保健實態調查 報告書를 3年마다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마. 患者調查

全國醫療機關 利用患者의 傷病狀態, 醫療人當 患者數, 수진율 등을 把握하여 國民保健醫療政策의 基礎資料를 活用코자 1988年 7月 13日 從前에 家口를 對象으로 調查하던 疾病傷害統計調查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國民健康調查와 統合되면서 醫療機關을 對象으로 하는 患者調查를 新規로 保健社會部에서 作成하고 있다.

醫療機關의 경우 調查基準日 現在 開設中인 全國 醫療機關中 3,340個所를 調查對象으로 하되 綜合病院, 病院, 醫院(법인), 醫師 2人 이상 個人病院, 齒科病院, 齒科醫院(法人), 병상있는 개인 齒科病院, 保健所, 한방기관(법인), 병상있는 個

VI. 社會統計

人 한방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수調查하며 其他 醫療機關은 標本調查를 實施한다.

患者의 경우에는 調查基準日 中 來院한 患者 全員과 調查基準 期間中 退院한 患者 全員을 對象으로 한다.

調查基準은 外來 및 入院患者가 '88年 調查의 경우 '88年 8月 24日이고, 退院患者가 '88年 6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이다.

調查事項은

— 機關調查票

機關名, 所在地, 開設日字, 患者數(外來, 入院, 退院), 設立形態, 가동병상수, 分野別 醫療從事者 現況

— 外來患者 調查票

診療記錄番號, 性別, 年齡, 住所, 질병분류, 診療費 支拂方法

— 會員患者 調查票

診療記錄番號, 性別, 年齡, 住所, 疾病分類, 入院日字, 회원일자, 治療結果, 退院形態, 入院經路, 會員經路, 診療費 支拂方法 등이다.

調查結果는 患者調查報告書를 2年마다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4. 教育·文化

가. 教育統計

(1) 概要

國內 各級 學校의 學生, 教職員, 施設, 財政 등 제반사항을 把握하여 國內 教育 現況의 海外紹介 및 教育政策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1962年 中央教育研究所가 「文教統計 要覽」으로 發刊한 바 있으며 1963年 3月 28日 一般統計 第125-22-01호로 승인, 作成하여 오고 있다.

調查基準日은 '90年 調查의 경우를 例로들면 4月 1日로 하되 年度間 變動數는

다음과 같다.

① 學生變動狀況

1989年 3月 1日~1990年 2月 28日

② 教員變動狀況

1989年 4月 2日~1990年 4月 1日

③ 獎學金給與 및 學費減免狀況

1989年 3月 1日~1990年 2月 28日

④ 교시변동상황

1989年 4月 2日~1990年 4月 1日

⑤ 財政現況

國費는 政府會計年度에 學校費는 學年度

(2) 各 調査事項

1) 總括事項

大學校의 캠퍼스(분교)現況은 所在地別로 區分하였고, 大學院의 교원 및 施設現況은 所屬 大學(校)現況에 包含하였으며 병설 및 附屬學校 現況은 주된 學校와 分離하였다. 또한 產業體 부설학교 및 產業體 特別學級의 現況은 社會教育統計에만 包含하여 作成하였다.

2) 學校事項

未 開校 學校는 除外하였으며, 閉校를 전제로 학생모집이 중지된 學校數는 除外하였으나, 閉校 또는 폐과 존치기간내의 現況은 包含하였다. 캠퍼스數는 學校數에서 除外하였으며, 特殊地 學校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施行規則에 의거 區分하였다.

特殊學校는 맹아, 농아, 지체부자유자, 나환자, 정신박약자 등 심신장애자만을 收容하고 있는 學校이며, 藝術, 體育 및 科學高等學校는 實業系教育課程의 適用을 받으나, 設立目的上 一般系 高等學校에 包含하였다.

實業系高等學校는 農林業高等學校, 工業高等學校, 商業高等學校, 水產高等學校,

VI. 社會統計

海洋高等學校, 實業高等學校, 綜合高等學校로 區分하였다. 주야별, 남녀별 學校數는 1學年을 基準으로 區分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계열이 變更된 경우에는 1學年の 設置學科를 基準으로 하여 계열을 區分하고 學生數를 該當 계열에 包含하였다.

其他 學校의 區分을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技術學校, 高等技術學校, 各種學校로 區分하였다.

高等教育機關의 각종 현황중 韓國科學技術大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科學技術院, 3군사관학교, 警察大學, 세무대학현황은 除外하였다.

施設講習所의 系列別 區分은 文理系, 技術系, 藝能系, 家庭系, 事務系로 區分한다.

3) 學級 및 學科事項

高等教育機關의 學級 및 學科數 중 教育大學은 學級數이고, 專門大學, 大學, 大學院 및 各種學校는 學科數이며, 同一名의 晝夜間 學科數는 1개 學科數로 看做한다.

國民學校 및 特殊學校의 學級種類는 단식학급, 복식학급, 단급, 特需學級으로 區分하며 2부제 學級은 教室을 두번째로 使用하는 學級이다.

4) 學生事項

高等教育機關의 卒業者數는 1990年 2月 및 1989年 8月 卒業者이며 特殊學校의 兒童別 區分은 맹자, 농자,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으로 한다.

各 군사관학교의 進學者는 大學에 進學한 것으로 包含하였으며 就業者의 產業別 및 職業別 區分은 韓國標準產業 및 職業分類表에 의하여 區分하였으며 장교(R.O.T.C 包含)와 長期服務下士官으로 입대한 자는 就業者로 看做하였다.

5) 教員事項

教員數에서 臨時教師는 包含하고 時間講師, 客員교수, 대우교수, 名譽教授는 除外하였다. 교도, 사서, 양호, 실기교사는 專擔教員數이며, 資格別 教員數에서 2個以上の 資格證 소지자는 現勤務學校의 上級 資格證을 基準으로 區分하였고, 現勤務學校의 資格證 없이 상위 또는 하위학교의 資格證만을 소지한 경우는 기타 資格證 所持者로 區分하였다.

扶養家族數는 敎員이 의식주를 實際로 責任지고 있는 家族數이며, 女子敎員은 그 配偶者가 職業人 일때에는 扶養家族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주 擔當授業時間別 敎員數에서 2個校 以上을 兼任하는 敎員은 總 授業時間數를 調査하였다.(補充授業時間은 除外)

6) 施設事項

2個校 以上이 公용하고 있어 學校別로 區分할 수 없는 施設은 所有權을 가진 學校 또는 最上級 學校의 施設現況에 收錄하였다.

敎室의 區分은 敎室(임시 敎室)과 대용敎室(현관, 層階, 복도, 倉庫 등 本來의 建築 目的과 다른 建物을 임시칸막이 또는 修理하여 使用하는 敎室과 正敎室을 칸막이한 敎室 및 學校 所有가 아닌 建物을 臨時 차용하여 使用하는 敎室)로 區分하였다. 初·中·高等學校의 敎室數는 學校施設 設備 基準令에 의거 66㎡以上(特別敎室의 경우 132㎡)을 1室로 區分하였다. 國民學校에 병설된 幼稚園의 專用施設은 國民學校施設과 區分하였으며 建物의 노후도는 개축, 중수, 정수로 나누고 보통敎室의 變動狀況은 보통敎室 중 대용敎室을 除外한 定規敎室과 假敎室班을 包含하였다.

교사(建物)現況중 변소는 동수로 표시하였으며 대변기 10개를 1동으로 換算하였다. 책걸상의 單位는 조로 表示하며 그 基準은 國民學校의 경우 2人用 책걸상을 1조로 中·高等學校의 경우 1人用 책걸상을 1조로 환산하여 作成하였다.

(3) 結果公表

結果公表는 每年 教育統計年報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나. 全國民 旅行動態調査

(1) 調査根據 및 調査時期

國民의 旅行動態 및 餘暇活用 實態를 把握하여 國民 觀光 發展을 위한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1976年 9月 一般統計 第322-21-01號로 승인, 韓國

VI. 社會統計

觀光公社에서 3年마다 調查하고 있다.

全國 만18세 以上の 男女 2,000名을 對象으로 調查年度도 10月 1日부터 該當年度 9月 30日까지 1年間을 調查基準으로 하여 調查한다.

(2) 調查事項

① 宿泊 觀光旅行

旅行時期, 目的, 內容, 동반자, 交通手段, 費用, 期間, 宿泊場所, 食事場所, 애로 사항

② 당일 觀光旅行

月別回數, 目的地, 所要時間, 旅行內容, 觀光쇼핑의 問題點, 지켜지지 않는 公중도덕

③ 旅行計劃 및 餘暇性向

最近 餘暇活動內容, 向後 宿泊旅行計劃, 旅行情報 把握方法, 원하는 旅行地

④ 海外旅行 實態

旅行經驗數, 目的, 訪問國家, 期間, 동반자, 交通手段, 經費, 訪問하고 싶은 國家, 向後 海外旅行計劃 등이며 結果公表는 全國民旅行動態調查에 收錄·公表하고 있다.

다. 國民消費行態 및 意識構造調查

(1) 調查方法

國民의 主要 消費生活과 關聯하여 特定商品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구매행동 과정과 實際 購買後에 나타나는 滿足, 不滿足 및 불평행동을 하기까지의 여러 消費行態와 消費者의 意識 등을 調查하여 消費生活의 合理化와 向上을 위한 基礎資料의 마련을 目的으로 韓國消費者保護院이 1987年 8月 12日 一般統計 367-21-01號로 승인, 3年마다 調查·作成하고 있다.

도서지역을 除外한 全國의 20세 이상 65세 未滿의 男女를 調查對象으로 하며

全國的으로 選拔된 調查員이 該當 家口를 訪問하여 應答者와 個別面接하여 調査한다.

(2) 調査內容

- 消費行態
- 消費者의 滿足水準 및 불평행동
- 消費者의 意識構造
- 應答者 特性等

(3) 標本設計

1) 모집단과 標本의 크기

本調査는 常住人口調査(1989. 11. 1 基準)에 依賴하여 1인 또는 2人以上이 모여 취사, 취침등 生計를 같이하는 全國의 11,083,000家口 중에서 도서지역의 家口를 除外한 10,952,555家口를 모집단으로 하고, 人口 및 住宅總調査(1985. 11. 1 基準)의 普通調査區로 부터 추출한 250個 標本調査區에서 각 調査區當 12家口를 抽出하여 家口當 1名을 對象으로 總 3,000名을 標本으로 하였다.

母集團 및 標本의 크기

地 域	常住人口調査(1989. 11. 1) 母集團地域(家 口 數)	調査家口數
市 部	8,128,463	2,220
郡 部	2,824,092	780
計	10,952,555	3,000

2) 標本의 抽出

① 抽出單位 調査區의 分類

全國의 母集團調査區를 서울 및 5대직할시, 각 도별 市·郡部의 22個地域別로 人口 및 住宅總調査 普通調査區의 주된 産業特性에 따라 1次分類하고, 각 1次分類內에서 주된 住宅特性에 따라 2次分類하며, 2次分類內에서 주된 煖房施設의 種類

VI. 社會統計

에 따라 3次分類하여 최종적으로 行政區域番號 및 調查區番號循으로 分類하였다.

② 地域別 標本調查區數의 배분

標本數는 濟州道를 除外한 14個 市·道에서 3,000명으로 하였으며, '87年 第1回 調查와 調查區數를 같게 하여 250個의 調查區를 標本抽出하였다. 따라서 250個의 標本調查區數를 각 地域의 家口數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였다.

③ 標本調查區와 標本家口의 抽出

標本調查區는 각 地域別로 배분된 수의 調查區를 調查區別 家口數에 比例하는 확률로 系統抽出하였으며, 標本家口는 그 調查區의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亂數표를 利用, 系統抽出하였다.

④ 標本家口員의 抽出

標本으로 抽出된 家口에서 母集團特性, 즉 市道地域別, 市·郡部別, 性別, 年齡別, 家口數別 構成比를 充足시킬 수 있도록 家口當 1名을 標本家口員으로 抽出하였다.

結果公表는 매년 國民消費行態 및 意識構造調查를 3年마다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5. 環境·其他

가. 産業災害調查

(1) 意義 및 沿革

産業社會가 發展해 감에 따라 小規模의 工場이 大規模로, 단순 작업이 複雜한 作業으로 變하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사업장과 그것에 從事하는 勤勞者가 늘어나고 있어 勤勞者들이 危險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韓國에서도 産業災害와 職業病에 의한 死亡者와 勞動力을 상실하게 되는 勤勞者數가 繼續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며, 이러한 재해 勤勞者나 職業病的 이환 근로者는 本人이나 그 家族에게 生計의 手段을 提供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들의 福祉問題

가 社會的인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産業災害로 말미암아 企業側에서도 큰 損失을 입지만, 勤勞者의 立場에서 보면 영속적으로 勞動市場에 參與하기 어려운 障礙者集團으로 남게 되며, 그 수 또한 해마다 累積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産業災害, 職業病에 관하여 具體的인 統計를 作成하여 災害 및 질병의 豫防과 災害者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政策을 펼 수 있도록 1963년부터 勞動廳 發足과 함께 매년 調査를 實施하여 오다 1975年 8月 11日 總理令 第154號에 依據하여 報告樣式 第44-4號로 承認되었으며 1977年 2月 4日 總理令 第180號에 의거 報告統計 第44-3號로 승인되었고 1977年 2月 17日 一般統計 第144-22-08로 承認되어 調査해 오고 있다.

(2) 調査範圍 및 對象

調査範圍는 全國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適用對象 事業의 全業種이며 職種은 韓國標準職業分類에 의하고 있다.

調査對象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産業災害中 死亡 또는 4日以上 加療를 요하는 負傷 또는 疾病에 이환되는 경우를 對象으로 한다.

(3) 調査基準 및 報告期間

調査對象의 産業災害가 發生하는 時點을 基準으로 하며 事業場에서 發生한 産業災害에 대하여 요양신청서가 提出될 때 관할 勞動部 地方事務所에도 同時에 報告하도록 되어 있다.

(4) 調査 및 報告方法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死亡 또는 4日以上 加療를 요하는 負傷 또는 疾病에 이환되는 産業災害가 發生하는 경우 事業場의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가 産業災害에 대하여 産業災害調査要領에 의거 産業災害調査

VI. 社會統計

票를 作成하여 요양신청서가 提出될 때 관할 勞動部地方事務所에 同時에 報告하며, 地方事務所長은 事業場으로부터 接受된 産業災害調查票를 分期別을 취합하여 分期末 翌月 10日까지 本部에 報告한다.

(5) 調查事項

<事業場 保管用 産業災害調查 事項>

1) 概要

- ① 災害有發者(姓名, 性別, 年齡, 職業, 入社勤續期間, 同種業務經歷, 學歷)
- ② 災害日時, 일기
- ③ 災害者數(計, 死亡者數, 加療要求期間別 災害者數)

2) 原因 및 結果

- ① 管理的(技術的, 教育的, 作業管理上, 其他) 原因
- ② 直接(不안전한 狀態<物的要因>, 不안전한 行動<人的要因>, 其他) 原因
- ③ 기인물(동력기계, 運搬機械, 其他 裝置, 架設·建物·構造物, 物質·材料, 積재물, 環境, 其他)
- ④ 發生形態
- ⑤ 상해부위
- ⑥ 상해종류

<報告用産業災害調查事項>

1) 概要

- ① 事業場의 屬性(名稱, 所在地, 電話番號, 代表者 姓名, 事業種類, 雇傭規模, 安全管理者資格 有無)
- ② 災害有發者의 屬性(性命, 性別, 年齡, 職業, 入社勤屬年數, 同種業種經歷 學歷)
- ③ 災害者數(計, 死亡者數, 加療要求期間別 災害者 數)
- ④ 災害日數, 曜日, 日氣

2) 原因 및 結果

- ① 管理的 요인
- ② 直接原因
- ③ 기인물
- ④ 發生形態
- ⑤ 傷害部位
- ⑥ 傷害種類
- ⑦ 調査者 意見

(6) 用語 解説

産業災害統計에 관한 UN의 권고는 1923년에 第1次 ICLS(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s)의 의제로 採擇되어 論議된 以後 第6次 ICLS(1947)에서 産業災害率에 관한 결의안, 第8次 ICLS(1954)에서 職業病의 統計에 관한 決議案, 第10次 ICLS(1962)에서 고용재해통계에 관한 決議案, 第13次 ICLS에서 職業災害를 의제로 다루어 災害에 대한 分類와 도수율(frequency rate) 및 강도율(severity rate)의 計算式, 그리고 職業病에 관한 分類方法을 決議하여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 強度率은 勤勞損失 日數에 1000을 곱하여 얻는 것을 延勤勞時間數로 나눈 것으로 産業別・性別・年齡階級別로 計算하여야 한다.

$$\text{強度率} = \frac{\text{勤勞損失日數} \times 1,000}{\text{延勤勞時間數}}$$

단, ① 強度率을 計算하기 위하여 重大災害에 起因한 損失과 重大災害로 인한 永久 完全 勞動障害者는 7,500勤勞日의 損失과 同一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② 永久 部分 勞動障害가 된 災害의 強度率은 장애의 程度에 따라 計算되어야 한다.

③ 其他災害에 관한 強度率은 300/365을 곱한 勤勞日數를 變換한 障害日數로 計算되어야 한다.

VI. 社會統計

強度率의 分類는 國際比較性에 基礎를 둔 強度率을 計算할 수 있도록 災害者의 主要 그룹에 따라 死亡, 영구전신·영구부문·일시전신장애로 分類되어야 하고, 勤勞時間數를 알지 못할 때에는 2,400 勤勞時間(man-hours)으로 정하거나 勤勞者의 年平均 300日의 標準勤勞日로 假定한다.

또한 産業災害의 度數率은 동 期間中에 發生한 災害發行件數에 100만을 곱한 것을 동 期間中 危險에 노출된 勤勞者의 勤勞時間(man-hours)數로 나눔으로써 計算된다.

$$\text{度數率} = \frac{\text{總災害件數} \times 1,000,000}{\text{總勤勞時間數(man-hours)}}$$

여기에서 勤勞時間數를 모를 때에는 危險에 노출된 勤勞者數를 勤勞時間數로 變換하여 道수율을 計算하여야 하며, 變換한 方法을 分明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産業災害에 관한 發生率은 統計의 對象이 된 期間中에 發生한 災害 件數에 1,000을 곱한 것을 同一期間中 危險에 노출된 平均勤勞者數로 나눔으로써 계산한다.

$$\text{強度率} = \frac{\text{勤勞損失日數} \times 1,000}{\text{延勤勞時間數}}$$

(7) 結果公表

매년 産業災害分析報告書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나. 環境汚染 實態調査

全國에 산재되어 있는 배출시설과 排水施設에 設置되어 있는 汚染防止施設의 運營狀態를 把握하고 主要都市의 대기오염도 및 주요 水系의 水質汚染度를 綜合·分析하여 適正한 環境保全對策을 樹立·施行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기여코자 1980年 3月 8日 一般統計 第153-22-01로 승인, 環境處에서 매월 調査·作成하고 있다.

全國 河川을 對象으로 水域名, 滄수지점, 지점번호, 滄수일자, 檢査期間 등의 一般事項을 調査하고 대장균군수, Cd, CN, 유기인, Pb, Cr⁺⁶, As, Hg, PcB 등 檢査

項目을 作成한다.

調査方法은 채수지점을 각 지청에서 맡아 遂行하고 채수된 것을 研究院으로 보내면 이를 檢査 分析하여 그 結果를 環境處으로 보내어 綜合·集計된다.

結果公表는 排出施設 및 測定現況을 매년 發刊하여 公表한다.

다. 廢水輩出施設調査

全國의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實態를 調査하여 産業 폐수관리의 效率化 및 水質 保全對策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고자 '80년도 全國 約 4,000개 業體의 폐수배출량 調査를 시작했으며 1981年 3月 2日 一般統計 第153-21-06號로 승인 받아 環境處에서 매년 作成하고 있으며 폐수 排出業體의 增加로 인하여 '86년에는 약 84,000個業體를 調査하였다.

調査對象은 環境保全法 第15條 規定에 의한 全國 폐수방출시설 設置許可業體이며 이를 對象으로 용수량, 폐수배출량, 배출경로, 방지사설현황, 生産製品現況 등을 調査한다.

調査基準時點은 매년 3月 31日이며 폐수배출시설조사 結果報告書를 每年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라. 犯罪分析統計

犯罪의 現況과 犯罪心理 및 그 量的 質的 變化를 調査·測定하여, 범죄의 豫防과 검거대책 樹立 등 형사대책 및 社會政策 樹立에 資料提供을 위하여 1963年 2月 中央情報部에서 「犯罪分析」지로 창간(월보로 제7호까지 發行)하여 동년 9月 1日자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實施하였으며, 1976年 7月 29日 一般統計, 第138-21-01로 승인, 現在 대검찰청에서 分期別로 調査·實施하고 있다.

全國 각 수사기관(檢察·警察·軍 調査機關 및 其他 特別 사법경찰관)에서 取扱하는 피의자 및 犯罪人을 對象으로 하며 調査事項은

① 犯罪의 發生 및 검거 상황

VI. 社會統計

- ② 犯罪의 原因과 動機
- ③ 犯罪者의 生活 環境과 宗教別, 性別, 年齡別, 教育 程度別 狀況
- ④ 犯罪 發生 狀況(時間別, 曜日別, 場所別)
- ⑤ 犯罪 被害狀況
- ⑥ 犯罪의 檢거 상황(檢거 단서別, 檢거 期間別 등)
- ⑦ 犯罪者 處分 狀況
- ⑧ 犯罪者 구속·불구속 상황
- ⑨ 女性犯罪 狀況
- ⑩ 少年犯罪 狀況
- ⑪ 學生犯罪 狀況
- ⑫ 公務員 犯罪 狀況
- ⑬ 精神장애와 犯罪狀況

등이며 全國 各 수사 機關에서 處理한 犯罪 事件에 대하여 犯罪統計 원표(피의자표, 發生표, 檢거표)에 의거 대검찰청에 報告된 資料를 集計한다.

結果公表는 매분기별로 犯罪分析紙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6. 社會統計調查 및 社會指標

가. 社會指標의 意義

社會指標를 作成하려는 움직임은 1960年代 後半 이른바 社會指標運動(social indicators movement)으로 인하여 급격히 表面化되었으며 그 實質的인 紀元은 美國의 후버(H. C. Hoover) 大統領이 社會的 動向(social trends)의 全國調查를 위하여 「社會動向에 관한 大統領委員會(The President's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Trends)」를 構成시킨 192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社會指標라는 用語는 1966年 바우어(R. A. Bauer) 教授가 美國航空宇宙局(NASA)의 研究費로 宇宙探險의 社會的 影響을 調查하는 過程에서 처음으로 使用하였다.

社會指標의 定義는 그 作成目的과 指標의 力點에 따라 또는 學者들의 見解 등에

따라 多樣하지만, 社會指標라는 用語를 처음으로 使用한 바우어教授는 “우리들로 하여금 價値 및 目標와 關聯하여 우리가 現在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特定한 定着內容을 評價하고 그 效果를 判斷할 수 있게 하는 統計나 統計系列(statistical series) 및 其他 모든 形態의 證據”라고 定義한다.

바우어의 古典的 定義에 뒤이어 特定한 側面을 強調하는 社會指標의 定義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特徵 있는 것 중 하나는 社會의 價値와 目標를 보다 일반적인 概念인 삶의 質과 社會福祉의 向上으로 대체한 것으로 비더먼(A. B. Biderman)은 삶의 질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여 經濟指標에 對應하거나 또는 이를 補完하는 社會的 指標를 提示하고, 특히 GNP와 같이 貨幣的 數量으로 表現되는 經濟指標만으로는 社會經濟的인 諸要因이 包括적으로 考慮될 수 없다는 것을 指摘한 데 그 重要性이 있다.

韓國의 社會指標에서는 “歷史的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 狀態를 總體的이고도 集約적으로 나타내어 生活의 量的인 側面은 勿論, 質的인 측면까지도 測定함으로써 人間生活의 全般的인 福祉程度를 把握 可能케 하여 주는 尺度”라고 定義하고 있다.

나. 社會指標의 沿革

社會統計 體系化에 관한 UN(UN統計委員會 第17次 會議 議決, 1972)의 권고에 依據하여 UNFPA의 資金支援을 받아 1975年 10월부터 韓國開發研究院(KDI)과 共同으로 「人口統計 改善: 開發計劃 作成을 위한 社會經濟指標」에 관한 研究調查事業을 遂行하여 1978年 350個 指標를 最初로 체계화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1979년에 128個 指標를 作成하여 最初로 公표한 이래 1980年 151個, 1981年 166個, 1982年 177個, 1983年 187個, 1984年 198個, 1985年 208個, 1986年 215個, 1987年 224個의 指標로 擴大하여 作成公表하였다.

1987년에는 1978년 指標體系化 以後 社會變化에 不합하는 새로운 指標體系의 必要性이 대두됨에 따라 既存의 社會指標 體系를 改善하여 總 468個 指標를 새로이 體系化하여 1988년에는 新體系에 따라 243個 指標를 作成하였으며, 1989년에

VI. 社會統計

는 252個 指標, 1990년에는 262個 指標을 作成하게 되었다.

다 調查目的

社會統計調查는 1977年 3月에 社會指標 作成을 위하여 最初로 實施한 바 있는데 이 調查에서는 既存 各種 調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社會 各 部門에 대한 主觀的 判斷實態를 把握하여 社會指標을 補完 發展시키기 위한 基礎資料 蒐集에 目的이 있다.

라. 調查對象期間(1990年 調查의 경우)

(1) 1989年 1年間

讀書人口比率, 教養書籍購入人口 및 購入量, 公演場 및 展示場 入場率, 平均 旅行回數 및 旅行地에서 不便한 點

(2) 1주간(1990. 5. 14~20)

TV視聽率 및 視聽時間

(3) 평소상태

子女期待教育水準, 子女教育의 目的, 教育機會의 充足度 및 미충족이유, 雜誌購讀率, 餘暇活用方法 등

마. 調查對象

1985年 人口住宅總調查의 147,000個 調查區 中에서 추출된 961개 調查區의 약 32,500家口(1989年 調查부터 對象標本家口數가 既存 17,500家口에서 32,500家口로 擴大됨)내에 상주하는 15歲('86年 以前은 14歲)以上 家口員을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바. 調查事項

(1) 共通事項

姓名, 家口主와의 關係, 性, 年齡, 配偶關係, 教育程度, 주된 活動狀態, 產業, 職業, 從事上的 지위

(2) 教育

子女期待教育水準, 子女教育의 目的, 教育機會의 充足度 및 미충족 이유, 教育費負擔에 대한 認識 및 負擔要因, 學校教育의 效果

(3) 文化·餘暇

書籍保有家口比率, 讀書人口比率, 教養書籍購入口 및 購入量, 雜誌購讀率, 公演場 및 展示場 入場率, 新聞購讀頻度, 新聞의 關心部門, TV視聽率 및 視聽時間, TV기호 프로그램, 餘暇活用 方法, 餘暇活用 滿足度 및 不滿要因, 平均 旅行回數 및 海外旅行 經驗率, 旅行地에서 不便한 點

年度別 調查內容

年 度	部 門	調 查 事 項
1980	雇傭·人力	일에 대한 滿足度, 職業選擇 要因
	教 育	課外教育
	保 健	유병기간, 治療方法, 分娩場所, 分娩介助者, 산전진찰, 醫療人에 대한 信賴度
1981	住宅·環境	住宅現況, 通勤 및 統合環境, 住宅使用燃料
	社 會	TV視聽, 餘暇 活用
1982	所得·消費	所得形態別 家口 및 家口員 所得
	住宅·環境	住宅現況 및 住宅附帶施設
1982	教 育	子女期待教育水準 및 期待水準未達 理由
	保 健	醫療施設과의 距離, 1次 診療場所
	住宅·環境	住宅現況, 圓滑 住宅規模 種類, 無住宅家口의 關心事項

VI. 社會統計

年 度	部 門	調 查 事 項
1983	雇傭·人力 保 健	職業選擇 要因 유병기간 및 治療方法, 分娩場所 및 個助者, 產前診療, 醫療人에 대한 信賴度
	住宅·環境	通勤 및 通學環境, 住宅使用燃料, 主觀的 公해도, 노후의지, 老後生計 責任, T·V視聽, T·V기호프로그램, 申告精神, 公衆秩序, 先進國의 要件
1984	雇 傭 教 育	女性就業에 대한 見解, 女性就業에 대한 어려움, 女性의 就業 目的 學校教育에 대한 滿足與否, 學校 知識의 現在生活에 대한 도움여부, 學校教育의 目的
1982	教 育 保 健	子女期待教育水準 및 期待水準未達 理由 醫療施設과의 距離, 1次 診療場所
	住宅·環境	住宅現況, 圓滑 住宅規模 種類, 無住宅家口의 關心事項
1983	雇傭·人力 保 健	職業選擇 要因 유병기간 및 治療方法, 分娩場所 및 個助者, 產前診療, 醫療人에 대한 信賴度
	住宅·環境	通勤 및 通學環境, 住宅使用燃料, 主觀的 公해도, 노후의지, 老後生計 責任, T·V視聽, T·V기호프로그램, 申告精神, 公衆秩序, 先進國의 要件
1984	雇 傭 教 育	女性就業에 대한 見解, 女性就業에 대한 어려움, 女性의 就業 目的 學校教育에 대한 滿足與否, 學校 知識의 現在生活에 대한 도움여부, 學校教育의 目的
	住宅·環境	居住地의 選擇理由,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度, 居住地에 대한 不滿足 理由
	社 會 文化·餘暇	靑少年의 고민, 靑少年의 脫線原因, 靑少年 犯罪豫防方法 餘暇活用 方法 및 場所, 餘暇에 대한 滿足度
1985	雇 傭 文化·餘暇	勤勞與件에 대한 滿足度, 職場의 將來性에 대한 滿足度 讀書 人口比率, 雜誌購讀率, 新聞購讀頻度, 新聞의 가장 關心部門, 文化施設利用, 家口의 書籍 保有量
	所 得 保 健	家口當 源泉所得, 10분위별 所得分布, 主觀的 階層意識, 將來 家口所 得에 대한 기대 醫療人에 대한 信賴度, 健康維持方法, 分娩場所 및 分娩도움자, 產前 診察者數 및 診療回數, 罹患率 1次診療場所, 醫療施設 接近 所要時間
1987	住 宅	現居住地 選擇理由, 住宅마련方法 및 時期, 원하는 住宅形態 및 規模, 現住宅 및 居住地에 대한 滿足度
	教 育	子女期待 教育水準
1988	雇傭·勞使	勤勞與件에 대한 滿足度, 女性就業事由

6. 社會統計調查 및 社會指標

年 度	部 門	調 查 事 項
	社 會 公 安	家庭生活 滿足度, 主觀的 階層意識, 社會的 移動에 대한 態度 犯罪 被害度, 違法水準, 犯罪被害의 두려움에 대한 程度
1989	所 得 保 健	勤勞所得, 事業所得, 受贈補助金, 賃貸料收入, 副業所得, 年金, 利子 및 配當金 등 飲酒 및 吸煙人口比率, 健康管理方法, 個人的 健康評價, 罹患率, 活動 制限日數, 臥病日數, 醫師診療者數 및 1人當 治療日數 등
1990		< 調查事項 > 參照

사. 結果公表

調查結果를 分析·指標化하여 「韓國의 社會指標」(每年末)를 發刊하여 公表한다.

여 백

VII. 家計 및 物價統計

여 백

VII. 家計 및 物價 統計

1. 家計調查

가. 生計費調查의 出發

生計費調查는 우리가 生計를 營爲하기 위하여 얻은 收入으로서 費用으로 充當하는 經費를 調查하는 것인데 歐美에서는 生活費用(Cot of Living)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生計費調查란 收入과 支出은 물론 生計에 관한 모든 方面을 調查하여 生計狀態를 明白하게 하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1916년에 처음으로 高野란 學者가 職工層에 屬한 20家口를 對象으로 調查하고 1919년에 熟練工 40世帶를 調查한 바 있다. 前者는 1個月間, 後者는 1年間을 繼續 家計簿記帳式에 의하여 調查를 實施하였는데 1年間의 應答率은 50%에 그쳤다. 한편 1992년에는 鑛山鑛夫 1,000家口에 대하여 3個月부터 記入式 家計調查를 實施한 바 있다. 그후 1930年代에는 統計局에 家計調查課를 두고 典型的인 標本調查에 의한 近代的인 生計費調查를 하였다.

한편 朝鮮에서의 生計費調查는 總督府 官房國勢調查課에서 1940年初 江原道, 咸鏡道 등의 鑛山地域 鑛夫, 火田民과 僻村에서 特殊地域 零細民의 生活實態를 把握하고자 總督府職員을 甲山, 平昌, 茂朱 等地에 2, 3名씩 派遣하여 1個月 또는 3個月間의 生活實態를 調查한 바 있다. 이러한 調查結果는 記錄에 남은 것이 없이 알 수 없으나 日本의 1920年代 調查와 마찬가지로 生活에 관한 研究資料 水準이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典型的인 生計費調查로서는 1942年 1月부터 都市家計調查라는 명칭으로 일부지역을 조사했다고 하나 자료면에서 不確實한 상태인 바 그뒤 1943年 10월에 처음 試圖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에 總督府에서는 全文 17條로 된 「家計調查要綱」(1943. 10. 1 告示 1086號)을 새로 마련하고 지역별 標本數(俸給者 600, 勞

Ⅶ. 家計 및 物價統計

動者 700, 農家 406등 1,706家口)까지 提示하고 있다.

다음에 그 概要를 記述하기로 한다.

i) 調査對象……給料生活者, 勞動者 및 農業者를 家口主로 하는 世帶中에서 每年 朝鮮總督府가 選定한 것을 調査한다.

ii) 調査範圍……全國의 市部와 邑部를 對象地域으로 하는 都市勤勞者家口 1,300과 7個道の 農家 406, 總 1,706을 標本家口로 하였다.

iii) 調査期間……每年 10月 1日부터 翌年 9月末日의 1개년

iv) 調査事項……給料生活者家口 및 農務者家口에 대하여

- 收入
- 支出
- 現金殘高
- 住居
- 家口員
- 雜品

그리고 農家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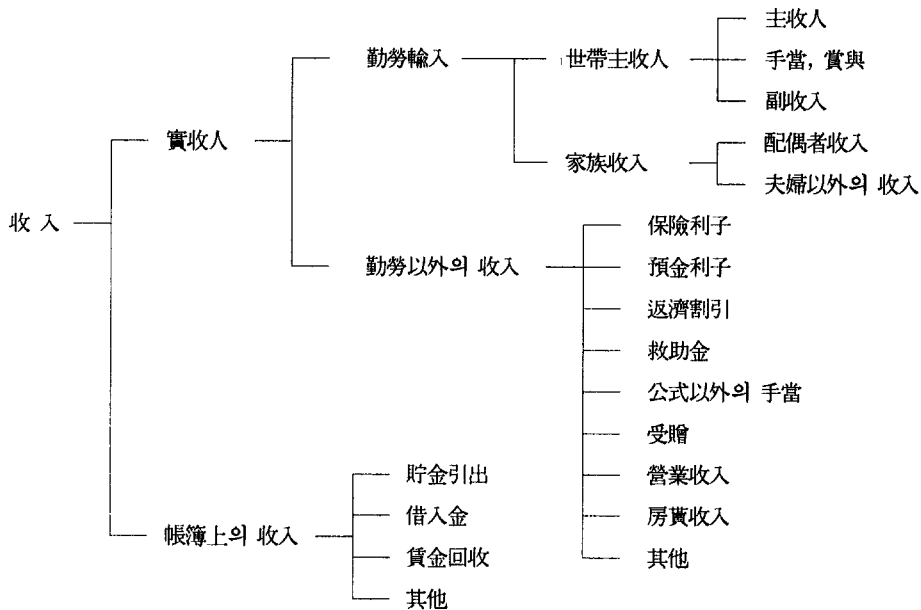
- 農業上의 收入
- 農業上의 支出
- 家計上의 收入
- 家計上의 支出
- 現金殘高
- 農業經營의 樣相
- 家屋
- 家口員
- 雜品
- 資產 및 負債 등을 調査하였다.

v) 調査方法……原則的으로 家計簿記帳인 自計式方法을 택하였으나 家計調査員(市邑面職員)이 隨時로 家口를 訪問하여 家口主를 面接하여 記入을 指導 또는 補完하는 面接調査에 의하여 調査를 完成하였다. 그리고 調査期間은 一年이지만

月別로 記入이 끝나면 翌月 20日까지 指導員이 府尹 郡守를 통하여 知事에게, 知事는 同月末日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한다. 또한 調査員은 市, 郡의 長이, 指導員은 道知事の 推薦으로 總督이 任命한다. 家計調査員은 家計調査員證을 携帶하며 家計簿取扱 사항은 統計作成上의 目的에만 利用할 수 있으며 이것은 絶對로 公表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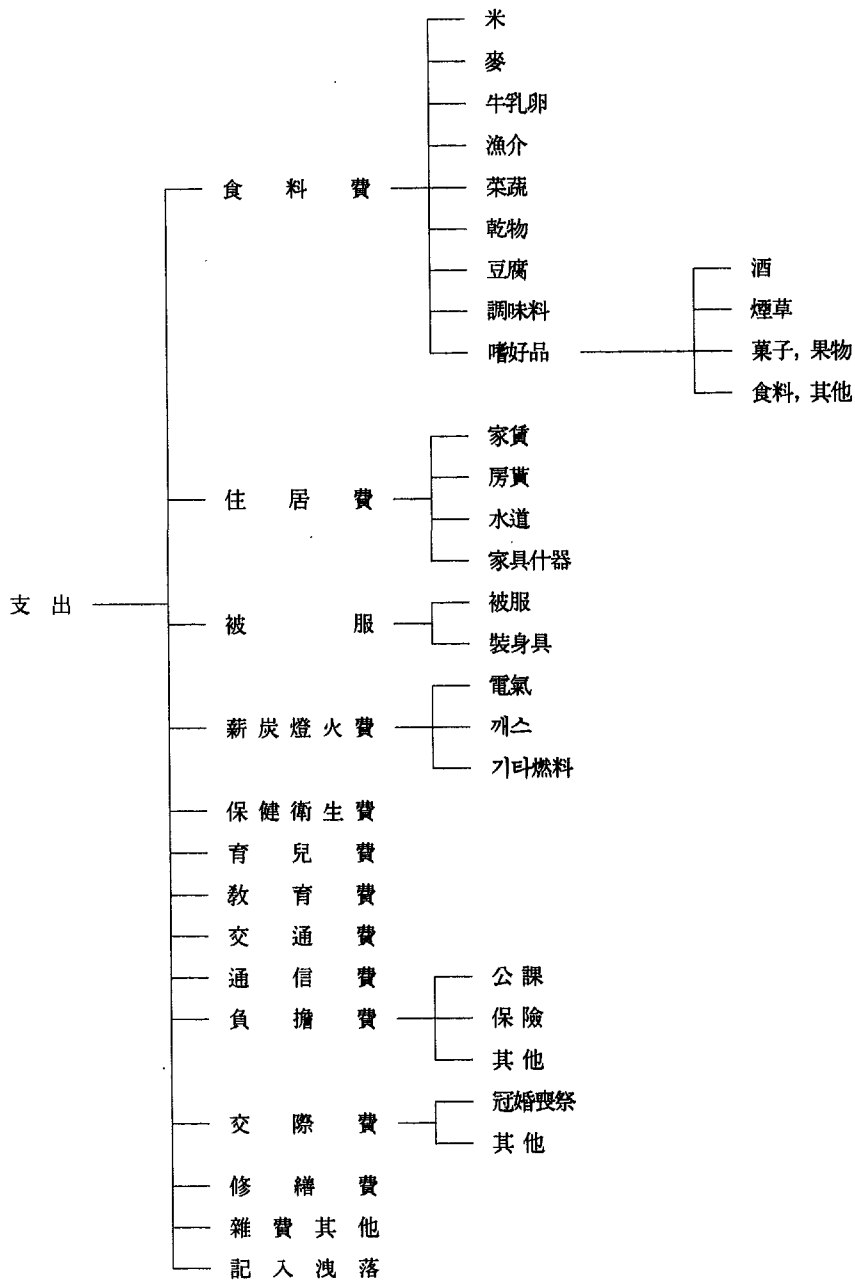
vi) 集計結果表……調査의 不正確으로 公式發表는 保留되었고 解放될 때까지 内部資料로만 使用하였다 한다.

家計輸入構成



Ⅶ. 家計 吳 物價統計

家計支出의 構成



나. 都市家計調查

(1) 全國都市家計調查

(가) 調查目的과 沿革

都市家計調查는 都市生活人의 家計生活實態와 그 變動을 조사함으로써 國民生活水準에 관한 社會經濟政策의 資料로서 뿐만 아니라 國民소득추계나 物價指數編制上의 기초자료로서도 活用코자 실시하고 있다.

韓國에서의 都市家計調查는 1950年 1월에 統計局과 韓銀의 共同으로 조사한 以來 1951年 7월에도 韓銀이 單獨으로 釜山에서 60家口를 對象(有意抽出方法)으로 하는 生計費調查를 實施한 바 있다. 韓國銀行은 還都後에도 1954년부터 1959년까지는 公務員, 銀行員, 勞務者 世帶 等 200家口를 有意抽出하여 서울 勤勞者家計調查를 實施하였고, 1960년부터는 任意標本에 의한 一般家口 및 勤勞者家口를 對象으로한 全國都市家計調查로 範圍를 擴大하였다.

1963년부터 家計調查가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으로 移管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1969, 1972, 1977, 1982, 1988年 등 5회에 걸친 標本改編作業이 있었다.

(나) 調查範圍

• 調查地域 : 1985年 人口住宅總調查의 普通調查區 146,900調查區를 産業 住宅特性, 煖房施設, 使用하는 燃料 등으로 層化하여 其中 514調查區를 抽出하여 調查한다.

• 調查對象家口 : 515調查區에서 調查區當 大략 9家口씩을 抽出하여 全國적으로 約 4,300家口를 對象으로 調查한다.

그러나 農家, 單獨家口, 飲食店, 旅館, 下宿 등을 經營하여 家計收支把握이 어려운 家口 등은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다) 調查事項

1) 家口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項

VII. 家計 및 物價統計

- 2) 家口主에 관한 事項
- 3) 家口構成에 관한 事項
- 4) 住居에 관한 事項

(라) 調査期間

每月 1일부터 末日까지

(마) 資料蒐集方法

每月 家計簿記帳方法(Book Accounting method)에 의하여 資料를 蒐集한다.

(바) 標本抽出方法

1次로 人口住宅總調査 調査區 中에서 515個를 抽出하였으며 2次로 抽出된 調査區에서 家口를 普通 8~10個씩 抽出하는 二段任意抽出方法을 擇하였다.

(사) 調査結果의 發表

이와 같이 도시가계조사는 전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중에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본으로 추출하고 있으나 이들 가구의 가구주 직업에 따라 피용자가구인 근로자가구와 그 이외에 상인·개인경영자·자유업자·무직가구 등 근로자외가구를 구분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근로자외 가구는 지출사항만을 가계부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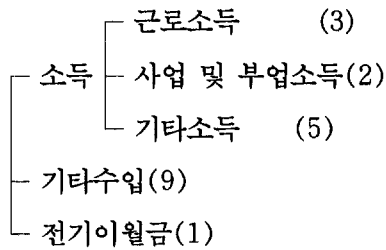
또 조사된 가계부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득계층별, 소득 10분위별, 가구원수별, 주택의 소유형태 및 가구주의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로 집계하여 매년 도시가계연보로 공표하고 있다.

(아) 家計收支의 分類項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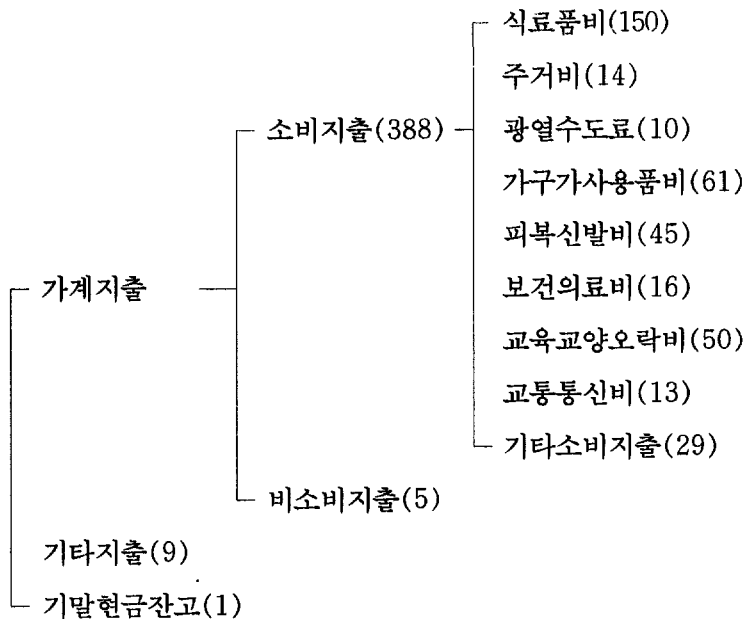
기본적인 분류원칙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고, 재화는 그 내구정도에 따라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구분한다.

가계수지항목분류부호는 비목 → 류 → 항목의 3자기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의 성질은 크게 총수입과 총지출로 구분하며 각각의 분류체제와 항목수는 다음과 같다.

• 총수입 : 20 항목



• 총지출 : 405개 항목



• 전세 · 자가 평가액 (2)

다. 其他 家計 및 消費實態調査

都市家計調査以外에도 國民銀行에서 實施하고 있는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査는 1980년부터 一般家計의 金融資産保有 및 金融去來現況實態를 把握하는 調査가 있다.

또한 全國經濟人聯合會에서 1982년부터 豫想되는 消費動向 및 消費者購買計劃을 파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비자태도조사를 每年 4月과 10月末에 2回씩 實施

하고 있다.

2. 農漁家經濟調查

가. 日帝時代의 農家經濟狀態調查

(1) 1910年代의 農家狀態調查

合併을 前後한 時期에 韓國農業에 대한 日帝의 관심은 주로 日本人 農業移民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朝鮮土地調查事業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른바, 驛屯土調查事業을 실시하여 방대한 面積의 國有地를 創出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東洋拓殖株式會社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農業移民을 모집하게 하고 移住農家에 國有地를 拂下함으로써 定着을 도왔던 것이다. 이러한 日帝의 移民政策에 수반하여 統監部時代부터 韓國에 移住한 日本人 農家經營자들의 經營收支狀態에 대한 조사가 統監部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조사결과는 『統監部統計年報』와 그 후신인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게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田畝 1단보에 대하여 그 구입가격, 水稻·麥·大豆를 심었을 경우의 단보당 수익금액과 항목별 지출금액(단보당생산비)을 기재한 것 외에 購入價格에 대비한 收益金額의 比率, 즉 土地購入의 利率을 算出함으로써 韓國에서 農地를 購入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日帝가 韓國에서 행한 最初의 農家經濟調查는 바로 이들 日本人을 對象으로, 日本人의 農業移民을 촉진할 目的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韓國人 農家에 대한 農家經濟調查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明確하진 않다. 文獻상의 記錄에 의하면 『韓國中央農會報』 第4卷 第2號 (1910年 2月號)에 『韓農의 經濟狀態調查』란 제목으로 게재된 이래 1911년 3월호까지 11회에 걸쳐 연재(6회부터 『朝鮮農家の 經濟狀態調查』로 改題)되었던 조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調查資料는 農工商部에서 調查한 것으로 (『小作農民に關する調查』, 朝鮮總督府殖産局, 1928) 전국적인 農家經濟調查로서는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즉, 調

査地域은 전국 13도중 忠北·慶北·咸北 등 3개도를 제외한 10개도와 경성부였던 바, 전남의 경우만 2개부락을 택하고 나머지 地域에서는 각기 한 부락식을 택하였으며, 조사에는 각 도·전업모범장, 원예모범장, 종묘장, 임시면화재배소에 勤務하는 技師 혹은 技手들이 담당하였음을 할 수 있다. 調査對象 農家は 選定된 부락에서 上農과 下農 각 1호씩이었다. 上農과 下農의 소유지 면적과 경작지 면적이 각 도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보아 調査對象 農家は 全國的인 基準에 의해 選定된 것이 아니라 調査部落內에서 임의로 選定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調査項目은 上農·下農 공히 가족수, 소유지면적 및 경작지면적, 農用動物數, 1年間の 실제 식부 작목별 수입액과 경작비·생활비 등 1년간의 支出額 및 兩者의 差額 등이다. 또한 收入과 支出內譯이 比較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調査者가 調査對象 農家를 상대로 면접 淸취조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개 도를 제외한 전국 각 도별로 1개부락 혹은 2개 부락을 選定하여 同時에 調査한 점이나 調査項目이 同一한 것으로 보아 農商工部의 指示에 따라 전국 각 도에서 同時에 調査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調査目的·調査方法·調査時期 등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알 수 없다. 다만 調査時期의 경우 이 調査資料가 1910년 2월호부터 게재된 것으로 보아 1909년말 경에 調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밖에도 1910~15년에 『朝鮮農會報』에는 地域單位 農家經濟調查資料가 여러 편 게재되어 있다. 『農會報』만 年次的으로 검토한다면 農家經濟調查는 산발적·부분적이지만 1910~5년에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여길 정도이다. 어쨌거나 이들 調査資料를 게재순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면 ①④⑤⑨⑬은 農家單位의 經濟調查가 아니라 作目別 收支調查로서 嚴密한 의미의 農家經濟調查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⑧⑪⑱ 또한 일정 規模의 土地面積에 대한 公課金負擔額내지 그 賣買價格을 調査할 것으로서 農家經濟調查의 범주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農家經濟調查로 들 수 있는 것은 ②③⑥⑩⑫⑬⑭⑮⑯⑰이다. 이중 ⑩⑫는 한국에 이주한 日本人 農事經營者에 사례조사인 바 ⑩은 兼農業을 對象으로 한 調査이며 ⑫는 1911년 4월에 이주한 移住農民 중에서 經濟狀態가 가장 優良한 1農家와 가장 不良한 1農家(두 農家 모두 순소작농)에 대해 그 수지상태를 調査한 것이다. 調査方法은 類型 分類의 基準은

VII. 家計 및 物價統計

『朝鮮 (韓國) 農家經濟狀態調查』의 調查地域과 調査者

調查地域	調査者姓名	連載 回数	掲載卷數
京畿道 水原郡 北部面	農學士 向坂幾三郎	1	4권 2호 (1910. 2)
京城 東大門外 독심 부근	독심원에모범장 技師 久次米邦藏	2	4권 4호 (1910. 4)
全南 光州郡 瓦谷面 相村	木浦臨時棉花栽培技師山本小源太	3	4권 5호 (1910. 5)
全南 海南郡 右水營	"	"	"
江原道 春川郡 南府內面 下退溪里	春川 種苗場 技手 船越光雄	4	4권 6호 (1910. 6)
黃海道 海州郡 泉決面 桐峴	海州 種苗場 技手大藤太郎	5	4권 8호 (1910. 8)
忠南 公州郡 南部面 舟尾里	公州 道技師 指宿武吉	6	5권 1호 (1910. 9)
慶南 普州郡 大安面 三洞	普州 道技師 佐藤政次郎	7	5권 2호 (1910. 10)
平南 江西郡 大平面 新洞	平壤 勸業規範場 技師 花井藤一郎	8	5권 3호 (1910. 11)
	" " 技手 住吉正喜		
咸南 咸興郡 州南面 龍興里	咸興 道技手 定野秀一	9	6권 1호 (1911. 1)
平北 義州府	義州 道技手 成瀬簿貞	10	6권 2호 (1911. 2)
全北 全州府 東面	全州 道技師 岩秀次	11	6권 3호 (1911. 3)

註：1910년 8月號까지 『韓國中央農會報』란 題號였으나 1910년 9월호부터 『朝鮮農會報』로 改題하면서 5권 1호를 명명하여 12월호가 5권 4호로서 5권은 4호로 終了되고, 1911년 1월호는 6권 1호임.
資料：「朝鮮農會報」, 제4권 2호~6권 3호

다르나 兩者 모두 農家類型分類에 따라 類型別로 1戶씩을 택해 調査하였으며, 調査項目 또한 同一하다.

韓國人 農家에 대한 農家經濟調査 事例은 ②③⑥⑬⑭⑮⑯⑰ 등으로서, 調査項目은 어느 調査에서나 대체로 同一하나 調査對象農家の 分類 및 選定 基準과 調

査戶數 등은 약간 相異하다. 즉, 調查事例 ②의 경우 調查對象地域 選定時 交通의 편리 與否를 基準으로 가장 편리한 곳, 不便하지 않은 곳, 가장 不便한 곳으로 나누어 調查地域을 選定한 점이 特徵的이다. 또한 ⑬의 경우는 慶北道내 22개 地方 金融組合에서 調查한 수치를 각 郡別로 平均한 수치로서, 표에 指示된 農家經濟調查 중 가장 廣範圍한 調查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의 調查는 上農의 경우 5個村에서 각기 1戶씩 選定된 5戶의 平均值이며, 中農의 경우 3個村 3戶, 下農의 경우 3個村 3戶를 調查하여 平均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⑮의 調查는 陸稻栽培地域에서 上農이라 할 수 있는 두 농가에 대해 그 經濟狀態를 調查한 점에서 다른 調查와 區別된다. 그 밖의 調查는 調查地域이 다를 뿐 上·中·下(小)農으로 구분하여 각 1호씩 調查한 점이나 수지상태 調查項目 등은 거의 同一하다. 다만 上·中·下(下)農의 分類基準에서 ③은 所有地 중 일부를 小作주고 나머지를 耕作하면서 家計費를 충분히 充足하는 農家를 上農, 耕作地의 50% 이상을 所有하고 生計가 可能的한 農家를 中農, 순소작농을 小農으로 分類하였으며, ⑭에서는 연간 地稅納付額이 10円이상 農家를 上農, 60錢 이상 이하 納付者를 小農, 그 중간을 中農으로 分類하고 있다. ⑦의 경우 겨울철의 양식용 穀物 貯藏量을 基準으로 上·中·下農을 구분하고 있다. 나머지 調查에서는 分類 基準에 대해 說明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이상을 總括하면, 韓國人 農家에 대한 農家經濟調查는 1909年末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全國的인 調查도 이것이 처음이었으나 調查範圍는 각도에서 1個郡 내지 2個郡을 選定하여 그 郡에서 上農·中農·小農 각1호씩을 事例調查한 것이므로 標本調查라고 할 수도 없는 극히 한정된 範圍의 調查이다. 이후 1910~15年에도 이와 거의 同一한 方式과 調查項目의 農家經濟調查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극히 일부 地方에 한해, 그것도 調查對象農家が 각 類型別로 1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극히 저급한 水準의 事例調查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VII. 家計 및 物價統計

『農會報』에 게재된 農家經濟調查 資料 (1910~15)

番號	題 目	調 查 機 關	揭載號數	調 查 地 域	調 查 對 象	調 查 內 容
1	全南地方의 棉花 米麥作 收支	勸業規範場 木浦支場	1910. 10	全 南 道	1. 陸地棉 2. 在來棉 3. 大 麥 4. 水 稻 5. 水稻小作計算	각 項目別로 1단보당 支出 및 收入物量과 金額을 提示하였으 며, 水稻小作計算은 折半法과 1/3法의 각각에 대해 提示하 였음.
2	農家의 經濟狀 態調(1)	江原道地方金融 組合	1911. 6	江 原 道 春 川 郡 江 陵 郡	1. 交通 가장 편리한 곳 2. 交通 不便치 않은 곳 3. 交通 가장 불편한 곳	3유형의 調查對象地내 1農 家에 대해 家族人員, 所有 地面積, 耕作地面積, 1年收 入額과 內譯 및 支出額과 그 內譯, 收入과 支出額의 差額 調查한 것임.
	上 同 (2)	上 同	1911. 7	襄 陽 郡	上 同	上 同
	上 同 (3)	上 同	1911. 8	伊 川 郡	上 同	上 同
	上 同 (4)	上 同	1911. 9	原 州 郡	上 同	上 同
③	黃海道農民經濟 狀態 (上)	黃海道廳	1911. 7		上農家: 田畝 收 收으로 生計可 能, 약간 소작 중.	上·中·下 農家에 대해 家族 數, 所有面積, 耕作地面積, 飼 育家畜·가금수, 1個年 收入· 支出額과 內譯, 收入·支出額의 差額 등 調査
	黃海農民經濟狀 態 (下)	黃海道廳	1911. 8		中農家: 所有地 가 耕作地의 50 % 이상 小農家: 新소작농	
④	農作物一段步 收支計數 (1)	農商工部農務課	1911. 8	水 原 부 근	1. 水稻 2. 大豆 3. 大麥 4. 小麥 5. 粟 6. 陸地棉 7. 在來棉 8. 朝鮮人 在來 棉	品目別 收入額과 支出額 및 構 成比目

2. 農漁家經濟調查

番號	題 目	調 查 機 關	掲載號數	調查地域	調 查 對 象	調 查 內 容
	上 同 (2)	上 同	1911. 9	木 浦 早 郡	1. 水稻 2. 大豆 3. 粟 4. 陸地棉 5. 在來棉	上 同
	農作物一段步 收支計算 (3)	農商工部農務課	1911. 10	光 州 早 郡	1. 水稻 2. 大豆 3. 大麥 4. 粟 5. 陸地棉 6. 在來棉	品目別 收入額과 支出額 및 構 成費目
				平 壤 早 郡	1. 水稻 2. 大豆 3. 小麥 4. 粟 5. 在來棉	上 同
⑤	元山附近 主要 作物一段步收 支計算 (1911. 9調查)	江原慇太郎	1911. 8	元 山 早 郡	1. 水稻 2. 稗 3. 大豆 4. 粟	上 同
⑥	元山地方의 農 家經濟狀態	上 同	1911. 11	元 山	1. 上農 (5個村 5號) 2. 重農 (3個村 3戶) 3. 下農 (3個村 3戶) 지가, 곡 물가	家族數, 所有地面積, 耕作地 (作物別), 農用動物數, 1年間 의 費目別 收入額·支出額 剩 餘 田畝 (上·中·下) 時價와 穀 物價格
⑦	忠北에서의 農 家冬季貯穀量 (上)	綾本長次	1911. 12	堤 川 郡 永 春 郡 丹 陽 郡 清 風 郡 延 豊 郡	上農: 1個年間 米穀貯藏 可能農 家 中農: 6月 中순 까지 下農: 貯藏 不可 能	第 1 期(추수~12월말), 第 2 期(1~3월), 第 3 期(4~6 월중순)로 나누어 각 기별로 여러 穀鍾의 貯藏量을 調査한 것으로 각 郡別로 上·中·下 農의 構成比도 指示

VII. 家計 및 物價統計

番號	題 目	調 查 機 關	掲載號數	調查地域	調 查 對 象	調 查 內 容
	上 同 (下)	上 同	1912. 1	上 同	上 同	5個郡의 調査值을 總括하여 中 · 下農別로 各種 穀物의 貯藏 量에 對해 서술하였음.
⑧	全北의 土地1 斗 落當 平均公 課負擔額	全羅北道	1911. 12	全北의 28 個郡	田, 畓, 宅地	지목별로 1두락의 結數, 地稅 · 地稅附價稅 · 面費의 課率과 金額을 調査한 統計表
⑨	平南成川地方의 農作物 收支	朝鮮農會 平壤 支會	1911. 12	平 南 成 川	1. 粟 2. 大麥 3. 小麥 4. 大豆 5. 小豆 6. 高粱	穀種別로 1日耕(약 1,200坪) 單位에 對해 收入과 支出의 構 成費目과 그 數量 및 金額을 調査한 統計表
⑩	內地人農業經營 者 經濟狀態調 查 (1)	高橋彥一	1912. 1	忠北文義郡 莢江	1. 上農: ① 商業經營者 ② 林業經營者	投資處別 資本投資額, 家族數 所有地 · 耕作地面積, 家畜 · 가 금수, 1個年間的 費目別 收入 · 支出額 (生計費, 耕作費 包 含) 및 그 差額
	上 同 (2)	上 同	1912. 2	上 同	2. 中農: ① 菜蔬農兼小賣 ② 지주경 복 용작물재배	
	上 同 (3)	上 同	1912. 4	上 同	3. 下農: 순소작 채소농겸소매	
⑪	平南의 土地1 段步 課負擔額 과 賣買價格	平安南道	1912. 9	19個郡	1. 田 · 畓 賣買 價格과 課目 別 負擔額 2. 부군별 公課 金額	1. 田 · 畓 1段步에 對해 부군 별로 結稅 · 附加稅 · 面費額 과 賣買價格 調査 2. 부군별로 國庫金 · 地方費 · 面費에 對해 각기 年額 · 1 戶當 · 1人當 負擔額 調査
⑫	移民民營農狀態 調査	勸業規範場內同 學會	1912. 4		1911. 4에 移住 한 日本人 營農 者중 가장 우량 농가 1호와 가 장 불량농가 1 호	優良農家 1戶, 不良農家 1戶 (두 農家 모두 순소작농)에 對 한 面接 調査內容, 家族數, 家 畜數, 耕作地面積, 作物別 식 부면적 및 收穫量, 構成費目別 收入額 · 支出額, 創業費 (固定 資本) 內譯

2. 農漁家經濟調查

番號	題目	調查機關	掲載號數	調查地域	調查對象	調查內容
⑬	農家經濟狀態調查	慶尙北道	1912. 11	慶北內 22 個 金融組 合區域	22個 金融組合 調查值的 平均值	農家 1戶의 家族數, 所有地· 小作農面積, 家畜·가금수, 作物別 식부면적, 收入額·支出 額과 그 差額
14	咸南北靑의 農 家經濟狀態調查 (1)	卜村龜太郎	1913. 1	咸南北靑郡 老德而西里	1. 上農: 연간지 세 10미이상 納付者	1호에 對해 家族數, 所有地面 積, 作物別 耕作地面積, 家畜· 가금수, 1년간 內譯別 收入· 支出額과 그 差額
	上 同 (2)	上 同	1913. 2	上 同	2. 中農: 60전 ~10미 納付	上 同
	上 同 (3)	上 同	1913. 3	上 同	3. 小農: 6年間 60전 이하의 지세 納付者	上 同
⑮	乾畜地方의 農 家經濟狀態 (1)	小林林藏	1913. 10	平南肅 三郡坪 里面蛇 山里	上農韓桂元	家族數, 乾畜所有地·小作農面 積·택지면적, 水稻·菜蔬 작 부면적, 家畜·가금수, 作物別 收入額, 境地費·生計費 등 支 出額과 그 差額
	上 同 (2)	上 同	1914. 2	安州郡 雲田面 一里	上農 崔龍雲	上 同
⑯	鮮人農家經濟狀 態調查	野木林造	1913. 5	미 상	上 農 中 農 小 農	上·中·下農 各1戶에 對해 家族數, 地목별, 所有地面積· 耕作地面積, 作物別, 耕地面 積, 家畜·가금수, 小作地面 積, 作物別 收入額, 費目別 支 出額
⑰	全南務安郡農家 經濟狀態調查 (上)	高橋松次郎	1914. 12	務安郡 朴谷面 道林山里	上 農	家族數, 地목별 所有지, 耕作 地面積, 作目別面積, 家畜, 가 금수, 貸借金, 內譯別 收入額· 支出額
	全南務安郡農家 經濟狀態調查 (中)	高橋松次郎	1915.	務安郡 朴谷面 道林山里	中 農	家族數, 地목별, 所有地·耕作 地面積, 作目別面積, 家畜·가 금수, 貸借金, 內譯別 收入額· 支出額

VII. 家計 및 物價統計

番號	題 目	調 查 機 關	掲載號數	調 查 地 域	調 查 對 象	調 查 內 容
18	上: 同(下)	上 同	1915.	上 同	下 農	上 同
	全北井邑襄陽經濟調查(上)	澤藤榮一	1915.	전 북 정 읍	桑田 3年落 (1反 5畝)	桑苗 식부후 3년에 걸쳐 年次別 收入·支出額 調査
	上: 同(下)	上 同	1915.	上 同	누에 1군	누에 1군 飼育時 3년에 걸쳐 年次別 收入·支出額 調査
19	耕地面積及 1 段步當 地稅負擔額 調査	朝鮮總督府	1915.	各 道	1. 田畝面積 2. 1段步當 地稅負擔額	各 道別 田畝面積 및 上·中·下別 比率, 田畝 1段步當 上·中·下別 地稅負擔額

(2) 1920年代의 小作慣行 및 農家收支 調査

1910~15년에 빈번하였던 農家經濟調査는 1916年 이후 22년까지 전혀 눈에 띄지 않다가 22年 이후 다시 출현하며, 그것도 그 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調査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時期의 農家經濟調査書로 꼽을 수 있는 『小作制度 및 農家經濟에 관한 調査書(全羅北道, 1922)』, 『小作慣行調査書(全羅南道 內務部, 1923)』, 『京畿道農村社會事情(京畿道·內務部 社會課, 1924)』 등에 수록되어 있는 農家經濟統計의 調査時期는 모두 1922年으로 明示되어 있으며, 그 調査範圍를 해당 도내 각군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文獻은 그 題目이 相異함에도 불구하고 同一한 時期에 同一한 目的으로 調査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의 小作慣習(朝鮮總督府, 1929)』에는 1925年 9월 內務部 社會課에서 발표한 『農家經濟에 관한 調査』의 調査結果가 수록되어 있는데, 『農家等級發表』의 경우 京畿道の 農家等級別 호수는 『京畿道農村社會事情』에 게재되어 있는 『農家の 等級別 分布狀況表』의 호수와 同一하며 全南의 大·中·小·細別 지수 호수는 『小作慣行調査書』의 『地主 大小別 區分 人員表』에 있는 지주 호수와 同一하다. 또한 『農家收支表』상의 農家等級別 收支를 보면 全南의 경우 『小作慣行調査書』의 農家等級別 收支와 同一하다. 이로 보아 위의 세 文獻은 內務局 社會課에서 발표한 『農家經濟에 관한 調査』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사結果를 수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별 발표자료는 위의 全北·全南·京畿道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은 1922년에 전국 各道에서 同一한 調査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또다른 文獻에서는 1922년에 內務局 社會課의

指示로 각 도에서 調査한 小作慣行調査 資料와 함께 이 때 하달된 『小作慣行調査 項目』을 게재하고 있다(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따라서 이를 綜合하면, 1922년에 內務局 社會課의 指示에 의해 全國 각 道에서는 小作慣行과 農家經濟를 調査하였는데, 全北·全南·京畿道에서는 당해 道の 調査資料를 모아 査자를 발간한 반면 여타 道에서는 따로 발간하지 않았으며, 內務局 社會課에서는 이때의 調査資料를 集計하며 1925년 9월에 『農家經濟에 관한 調査』를 발표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1922년에 실시된 調査의 內容에 관해서는 그 전모를 알 수 있으나 여러 文獻上의 記錄을 모아 그 대강을 살필 수 있다. 즉, 全北·全南·京畿道の 調査結果는 앞서 든 세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全國 각 道の 狀況에 대해서는 『朝鮮의 小作慣習』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調査方法을 보면, 各府郡에서 管内 “農村의 事情에 정통한 地主·小作人으로부터 調査한 資料에 根據하거나 혹은 종래의 調査統計材料 등에 의해 達觀的으로 技術蒐錄(전라남도, 1923)”하는 方式이었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資料를 道에서 集計하여 中央에 보고하면, 이를 內務局 社會課에서 道別로 취합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主要 調査 內容을 보면, “同調査는 최근 1個年間に 대해 각 道별로 地主·自作農·自作兼小作農·小作農·窮農의 수와 각 계급의 收支 및 農家の 轉業狀況을 調査한 것(朝鮮農會, 1929)”이다. 여기서 農家の 等級을 다음과 같은 基準에 따라 分類하고 있다. 이러한 農家の 等級 區分은 예컨대 地稅納付額을 基準으로 하거나 自作地主兼 自作農을 上農, 自소작농을 中農, 自소작농을 小農으로 區分한 1915년 이전의 調査에 바하면 한층 現實化되고 상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農家等級分類는 대체로 여기서의 分類 基準을 適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992년의 調査는 重要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922년의 農家調査는 이와 같이 農家の 等級을 각 道별로 農家等級別 호수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等級別로 農家の 收支狀態를 調査하고, 이를 이용하여 地主, 自作農, 自作兼小作農, 小作農의 각 作物 1段步當 生産費와 1석당 生産비를 算出함으로써 이후의 農家收支狀態 調査와 生産費調査에서도 이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II. 家計 및 物價統計

한편, 1924年 이래 財務局 이재과에서 全國의 金融組合에 위촉하여 매년 조사케 한 『農家收支調査』는 “調査項目의 精細, 農家戶數의 多數란 점에서 쉽게 얻기 힘든 資料(朝鮮農會, 1929)” 이지만 이 調査資料는 발간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朝鮮의 小作慣習』(朝鮮農會, 1929)에는 同 調査結果 중 일부가 게재되어 있어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同 調査는 實收小作料에 관한 “가장 正確한 資料”로서, 각 道별로 小作農 1戶當 大·中·小 細別로 田畝 耕作面積, 벼, 보리, 大豆 등 田畝의 主作物에 대해 收穫量·小作料量·自家用 物量·販賣 및 購入量, 벼 收穫量對比 畝小作料의 比率, 大豆·麥 收穫量對比 田小作料의 比率 등에 관한 統計表가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同 調査의 調査方法, 調査戶數 등 具體的인 調査內容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耕地規模別 農家等級分布

農家等級	規模	大	中	小	細	備 考
地 主		20정보 이상	5~20정보	1~5정보	1정보 미만	소유지의 전부 혹은 대부분 임대
自 作 農		3정보 이상	1~3정보	1정보미만	3단보미만	경작지=소유지
自 作 兼 小 作		"	"	"	"	경작지=소유지+소작지
小 作 農		"	"	"	"	경작지=소작지
窮 農		궁핍한 者로서 農家의 勞役に 종사하여 겨우 生活을 維持하는 者				

資料: 朝鮮農會, 『朝鮮의 小作慣習』 1929.

1920년대에도 1個郡地域을 對象으로 한 事例調査가 있었으나 調査方法은 1915년 이전의 調査에 비해 훨씬 정밀해졌다. 즉 忠北 괴산군 農會에서 1923年 5月1일부터 1924年 4月末까지 1個年에 걸쳐 農家調査를 하였는데(『朝鮮農會報』, 1924.10.), 전 입조사원을 설치하고 農家를 大·中·小·窮農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經濟狀態를 조사케 하였던 것이다. 農家 등급구분의 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大農: 10정보 내외의 경지를 소유한 지주계급

中農: 2정보 内外의 耕地를 소유하고 自作 또는 自作兼 小作을 하는 者

小農: 1정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

窮農: 주로 農業의 雇傭勞役に 종사하는 자.

이상의 각 階層別로 3호씩 總 12戶를 選定하고 日記帳에 일일 金錢·물품의 出入을 調査委員을 選定하여 調査케 하였으나 對象數는 소수에 한정하고 있었다. 『朝鮮農會報』에 발표된 결과치는 大·中·小·窮農 등 4階層에 대해 각기 하나의 統計值만 발표된 것으로 보아 階層別 3호의 조사치를 平均한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收入額·支出額·殘額과 그 內譯이 게재되어 있는데, 收入의 경우 작물별 收入額, 支出의 경우 生活費와 營農費를 망라하고 있다. 구성비목은 여타조사와 동일하다.

1922年の 전국적인 農家調査에 이어 1925~26年에도 전국적으로 農家調査와 生算費調査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되는 文獻으로서 『大正 15年度 (1926) 農家經濟調査書』(경상북도농회, 1926), 『農家經濟狀態調査書』(평안북도 이재과, 1927) 등이 있으며, 식산국에서 “朝鮮의 소작쟁의 대책을 강구하고 産業開發의 基本調査에 利用하기 위하여” 農家經濟調査를 실시하였다는 기사(『朝鮮農會報』 1925년 5월호)라든지 1926년에 제주도청에서 제주면·중면지역 거주농가중 지주 29, 자작농 48, 자작겸소작농 42, 소작농 31, 궁농 11 농가를 對象으로 農家收支를 調査한 統計表(朝鮮總督府, 『濟州道(調査資料 39輯)』, 1929), 1925년 및 1926년에 벼 1석당 생산비조사를 한 結果表(朝鮮農會, 1929) 등을 연관시켜 볼 때 1925~26년에는 農家調査와 生産費調査가 각각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調査書로는 慶北과 平南에서 간행한 위의 두 문헌외에는 전하지 않으며, 제주도의 경우 調査內容의 일부가 소개된 정도이므로 과연 이때 全國적으로 農家經濟調査가 실시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단지 두 調査書의 調査項目이 상당히 상세하고 조사양식이 定型화된 것으로 보아 全國적인 調査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어떻든, 『1926年度農家經濟調査書』의 내용을 보면, 調査地域은 경북내 8個郡이며, 調査對象農家は 각 郡별로 自作·自小作·小作農 각 1호씩이 選定되었다. 따라서 총 調査農家は 24農家이다. 同 調査書의 『調査凡例』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土地: 自家의 농업용에 사용되는 것만 農業用, 貸는 時價의 8할을 農業用, 2할을 농업이외용으로 하며, 山林은 농업용 이외의 재산으로 함.

ii) 建物: 貸地에 준함. 단, 부속건물 등으로서 명백히 농업용의 아닌 것은 농업

Ⅶ. 家計 및 物價統計

용 이외의 재산으로 함.

iii) 現金·預金·貸金·有價證券: 농업용 이외의 재산으로 취급

iv) 家具·家財: 시가의 2할은 농업용, 8할은 농업용 이외의 재산으로 함.

v) 生産物收入은 모두 생산물처리의 方面에서 구분하여 時價를 본위로함. 自家用이란 음식 기타 가사 일체에 쓰이는 現物, 기타 現物使用高 중에는 현물로서 노임 기타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함.

vi) 生産物經費(諸經費): 農業用土地를 기초로 하여 부과되는 것은 모두 本經費에 산입하고 農業用과 家事用의 구별이 不明確한 호별 洞費등은 그 8할을 本經費에, 2할을 가계비에 산입함.

vii) 家計費 중 稅擔은 호별 洞費 등의 가사분담분, 오락기호품은 술·담배·과자 등이고 保健衛生費란 의약·이발 등의 費用임.

viii) 臨時費: 매년 必要經費 이외 臨時로 요하는 費用

ix) 自家勞動力數: 성인 남자 한사람의 하루 10시간을 1인, 여자 성인 한사람의 하루 10시간을 0.8로 하며, 실제 능력에 따라 比率를 정해 算定함.

x) 기타 표의 備考란에 기재한대로 임.

調査에 利用된 「農家經濟調査表」의 調査項目은 다음과 같다.

① 農家概況: 經營地의 土質·地勢, 관개의 便否, 住家와 경작지의 거리, 垡地의 이용상황, 交通상황, 작목별 작부면적, 소유지, 貸地, 借入地面積, 家族 및 常傭人數.

② 財産狀態: 農業用財産과 負債, 農業經營 이외의 財産과 負債

③ 總收入: 生産物收入, 財産收入, 雜收入의 사용처별 金額

④ 總支出: 生産物經費, 家計費, 臨時費 등의 現金·現物支出額

⑤ 家族 및 常傭人의 勞動: 월별로 本業·副業의 노동일수·인원수, 勞動年人員

⑥ 1個年 農業經營成績: 農業所得, 農業利潤, 本業 利潤, 本業에 대한 自家勞動報酬, 성인 남자 1인의 하루 노임, 농업자본에 대한 이율

⑦ 家族·常傭人을 포함한 1인당 가계비 및 음식비 附·作物別 작부면적과 수확고 및 생산액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26년 경북농회에서 調査한 農家調査는 경북내 8개군에

서 24농가를 對象으로 한 소규모 調查이지만 調查方式은 극히 치밀하며 評價基準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調查方法上的 커다란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식산은행에서는 1927년부터 43년까지 田畝 1단보의 賣買價格과 收入·支出 狀態 등을 매년 調查하여 『全朝鮮畝田賣買價格及收益調』라는 조사서를 발간하였다. 이 조사는 農家經濟調查라고는 할 수 없으나 田畝 1단보에서의 收支狀態 및 그 變化를 全國적으로 알 수 있는 資料이다.

이밖에 『朝鮮農會報』, 1928년 3월호 기사에 평남에서는 “이미 각도 農業技術官會議에서 협정하였던 農家經濟調查”를 다음 해에 실시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을 縮小하여 江西郡에서 지주·자작·자작겸소작·소작의 4계급에 대해 道농회에서 調查準備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193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각 도별 『農家經濟調查』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農家收支調查는 아니지만 農家經濟狀態의 일종인 農糧資金에 관해 京畿道農會는 1928年 도내 각군 농회에 實施調查를 지시하였는데, 그 調查要項은 다음과 같았다. (『朝鮮農會』 1928.6)

① 調查는 郡내에서 빈부 정도가 중간인 3~40戶의 1個里등을 選定하며, 특히 관계 구장·유지는 본조사에 관해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자일 것.

② 調查는 郡農會에서 直接 里洞에 출장하여 야간 등에 個人別로 상세히 調查할 것.

③ 調查項目은 다음 표에 의한 것(표생략)

이에 따른 調查結果表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調查對象 里洞別로 부락총 호수·차입호수와 비율, 차입자 중 自作·自小作·小作者 戶數와 金融組合員·非組合員 戶數를 集計한 표, 각 里洞別 現物·現金差入 總額과 1戶當 平均差入額, 差入한 金錢과 穀物에 대한 最高, 最低·普通利率 등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1920년대에는 10년대에 비해 調查範圍의 擴大, 調查方法의 改善, 調查樣式의 마련 등 調查上的 여러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調查들은 목시적이든 명시적이든 產米增殖計劃과 소작쟁의의 가열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調查되었다는 점에서 20年代 農家經濟調查의 本質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1930年代의 農家經濟調查

1930年代의 農家經濟調查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930년부터 33년까지 朝鮮農會에서 5個道를 對象으로 한 『農家經濟調查』와 1933년에 시작된 『農家經濟更生 5個年計劃』의 일환으로 1933년과 38년에 2회에 걸쳐 農林局 農村振興課에서 調查集計한 『農家經濟概況調查』가 그것이다. 전자는 1929年 世界大恐慌에 의한 農業恐慌과 米價暴落으로 農家經濟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되는 狀態에서 이루어진 政策的 調查이며, 후자는 農業恐慌에 의해 疲弊해진 農村을 이룬바 農業振興運動에 의해 更生시킨다는 農業政策의 일환으로 역시 政策的으로 實施된 것이다.

즉 두 調查 모두 政策的인 統計調查이자 現存하는 農家經濟調查書로서는 가장 방대하여 完璧한 調查資料라는 點에서 共通的이다. 差異點은 전자가 각 道別로 9戶의 農家を 調查한 小規模 調查이며 1회에 끝난데 반해 후자는 全國 각 邑面當 1戶씩 1,900여 農家を 對象으로 한 廣範圍한 調查이며 1933년과 38년에 2회에 걸쳐 調查한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朝鮮農會의 農家經濟調查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調查의 目的으로서 “農村의 疲弊困憊가 극에 달하여 구제의 소리는 상하 할것 없이 절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農村危急에 當하여 農家の 農業經營에 관한 收支 및 家계상태를 실지로 精密調查하여 실상에 입각한 救濟策을 樹立”하는 것이 가장 緊要하므로 農家經濟調查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朝鮮農會, 1932.9, 序) 따라서 이 調查는 원래 “同一年度에 全國 각 도에서 일제히 實施하여 統一된 成績을 얻는 게 이상”이지만 朝鮮農會의 財政事情으로 逐次(段階)적 調查를 하게 되었다.

調查概要는 다음 표와 같다. 즉, 각 道別로 1個 부락을 選定하여 그 部落內에서 自作·自小作·小作農 각 3戶씩을 택해 調查했다. 이때 調查對象農家は 그 道內에서 標準이라고 할 수 있는 農家を 選擇했지만 調查에 대해 農家가 이해할 必要가 있으므로 一般農家에 비해 優良農家を 選擇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調查方法은 “調查對象農家に 帳簿를 나누어 주고 각자 記入케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農家の 知識 정도가 낮은 朝鮮에서는 그와 같은 方法은 당분간 실행키 어려우므로

職員은 現地에 주재시켜 매일 農家를 돌아다니면서 실지 調査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지만 조사는 正確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朝鮮農會調查『農家經濟調查』概要

	調査地域	調査期間	調査戶數					
			自作		自小作農		小作農	
			養蠶 兼營	養蠶 없음	養蠶 兼營	養蠶 없음	養蠶 兼營	養蠶 없음
全南 京畿	나주군 나주면 송촌리	1930.5.1 ~31.4.31	2	1	3	0	3	0
	수원군 반월면 상수기	”	1	2	2	1	1	2
平南	순천군 사인면 사창리	1931.4.1 ~32.3.31	3		3		3	
慶南	밀양군 산외면 남근리	”	3		3		3	
咸南	함주군 상조양면 상한리	1932.4.1 ~33.3.31	3		3		3	

調査員이 휴대하는 장부는 日誌, 현물정리장, 재산대장, 물가노임표 등으로서 調査員이 기장 후 이를 本部에 送付하면 정해진 項目別로 分類하여 集計整理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調査에서 農家の 等級分類 基準은 耕地를 所有하고 그것을 자작하거나 一部를 소작준 農家를 上農으로서 自作農으로 選定하고, 自作地와 小作地를 兼營하는 自小作農은 中農, 小作農을 순소작농으로서 小農에 해당되는 것으로 選定하였으며, 부업으로서 養蠶을 행하는 農家를 採擇하였다. 『朝鮮農會報』(1933.2) 또한 調査農家は 中年夫婦를 中心으로 형제자매와 아동이 동거하며, 公職이나 뚜렷한 兼業을 하지않고 유학하는 자제가 없는 農家를 採하였다고 한다.

調査項目은 크게 調査部落의 概況調査 項目과 戶別 調査項目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概況調査項目은 地稅, 관개의 便否, 기후, 現在 戶口數, 토지면적, 계층별 農家 戶數, 交通狀況, 金融狀況, 農業勞動者 雇傭狀況, 重要農產物 生産額 등이다. 戶別調査 項目은 ①家族: 年齡 및 勞動能力 ②作物別 作付狀況 ③農業用 土地의 지목별 所有地·差入地面積 ④農業資本: 土地·農具·建物·動物·植物·現物 등의 年度初와 年度末 評價額과 現金 및 준현금, 부채 및 未拂金, ⑤農業外 財産: 土地·建物·其他財産·負債와 未拂金 ⑥農業收入: 作物別 收入量 및 金額, 용도별 物量 및 金額 ⑦農業

Ⅶ. 家計 및 物價統計

經營費:費目別 金額 ⑧勞動狀況:月別로 家族·雇傭人 등의 農業勞動 일수와 家事勞動 일수 및 기타 勞動日數 ⑨農業收支計算:農業所得·農業勞動報酬·성인 1인의 하루 노동보수·농업수익·농업용 所有資本에 대한 이율 ⑩家計費:費目別 金額과 現金·現物量 ⑪家族 1인당 家計費:1인당 ⑫農業 總收支:農業以外 總收入, 農家 總收入, 農事 및 家事 이외의 支出, 農家 總支出, 農家所得, 농가의 잉여 등이다.

한편, 農林局 農村振興課에서 調査 集計한 『農家經濟概況調査』는 애초부터 農家更生5個年計劃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計劃은 1933年 3月 7日字 정무총감 통첩 『農產漁村振興計劃實施에 관한 件』에 의해 農家更生計劃實施要綱이 하달되었다. 農家計劃은 農村振興運動의 3大目標, 즉 식량의 충실, 금전경제수지의 균형, 부채의 근절 등을 政府補助 없이 自力으로 달성케 한다는 것이었다. 이計劃의 實施要綱 3項이 바로 『現況調査의 施行』으로서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朝鮮農會報』, 1933.4) 즉, 現況調査의 施行(農家更生計劃 實施要綱 第三項)

部落(指導部落)의 選定을 끝냈을 때는 別記方法을 參照하여 邑面으로 하여금 郡島 指導下에 左의 제점에 유의하여 農家戶數의 現況調査를 施行할 것.

① 現況調査 施行時에는 事前에 充分히 本 施設의 취지·방법 등에 대해 部落民에게 徹底히 주지시켜 충분한 이해와 協力을 얻어 部落民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지 않게 할 것.

② 調査項目은 民度에 비추어 간편하게 하며 別紙 調査方法을 參照하되 地方의 실상과 各호의 事情에 따라 취사선택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할 것.

③ 本 現況調査는 農家更生計劃 樹立上 정확·주도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나, 가령 미세한 부분에 필요이상의 調査上 努力과 費用을 多大하게하여 調査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도로 할 것.

④ 聽取時 항상 正確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 유의함과 동시에 調査員은 指導部落 農家가 일반적으로 購買·販賣하는 品目이나 1段步當 收穫高 같은 것을 미리 調査해 두고 調査項目의 遺漏가 없도록 판단의 정확을 기할 것.

⑤ 調査는 現在 또는 最近의 事實에 대해 할 것.

⑥ 賃借關係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正確히 調査할 것(秘密을 要하는 事項에

특히 주의).

⑦ 朝鮮 農家の 經濟狀態는 요즈음 盛衰가 심하므로 그 變革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盛衰의 原因을 明確히 하여 更生指導의 資料로 할 것.

⑧ 전 각호의 취지에 따라 調査終了했을 때에는 다시 실지와 대조하여 면밀히 檢討함으로써 오류나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속히 재조사해서 보정할 것.

⑨ 調査書는 이의 원부를 邑面에 비치해야 하며 이후 수시로 補正하여 제반계획의 資料로 活用할 수 있게 할 것.

이상과 같은 實施要綱에 따라 1933年 農家現況調査가 實施되었으며 그 5年 後인 1938年에 同一한 農家에 대해 第2次 現況調査를 實施하였다. 이 調査에 대해 調査書의 『調査要綱』에서는 “嚴選된 少量 農家を 對象으로 加급적 長期間에 걸쳐 상세한 관찰을 해야 하는데 이 調査는 現況調査를 基礎로 하고 있으므로 단지 전체적 經濟動向과 그 變遷이 概要를 알수 있는” 정도라고 자평하고 있다.(農林局 農村振興課, 1940)

調査地域과 調査農家 戶數를 보면, 自小作農의 경우 全局 13個道 220郡島 1,919 個面에 걸쳐 1邑面 平均 1戶씩으로서, 道別 分布는 表와 같다. 1938年 調査에서는 1933~38年 사이에 部落外 轉出 其他 事故로 인해 調査할 수 없게 된 農家が 60戶에 이르러 調査戶數는 1,859戶였다.

自小作農의 경우에는 1,778個 面에 걸쳐 1邑面 平均 1戶씩 1,778農家を 調査對象으로 삼았다. 이 또한 1938年 調査에서는 自小作農의 경우와 같은 사정으로 50戶가 除外되고 1,728戶가 調査되었다. 自小作, 小作을 막론하고 調査對象農家は 1933年度에 更生計劃을 樹立한 者 중에서 家族·勞動能力·農業經營外 제요소 등에서 보아 比較的 中間이라고 할 수 있는 農家 중에서 選定되었다고 한다.

調査期間은 自小作·小作을 막론하고 1933年 調査는 1932.4.1~33.3.31, 1938年 調査는 1937.4.1~38.3.31의 만 1개년이었다. 調査方法은 1933年 當時 實施된 現況調査書에 따라 本部에서 邑面, 郡島, 道, 實態를 재조사하였다. 1938年 調査에서는 33年 調査樣式을 이용했기 때문에 樣式變更이 없이 대체로 이전의 양식을 답습하여 比較調査하였다.

調査項目은 다음과 같다.

Ⅶ. 家計 및 物價統計

i) 家族: ①家族의 移動 ②家族의 實員數 ③家族 實人員에 대한 年齡別 人員數의 比率 ④부양자 ⑤農業從事者

ii) 教育

iii) 農業勞動: ①勞動能力 ②연고 ③계절·임시고

iv) 兼業

v) 耕地: ①經營耕地的 變遷 ②經營別 耕地面積 ③1戶當 耕地面積 ④農業從事者 1人當 耕地面積 ⑤耕地面積別 戶數 ⑥總戶數에 대한 耕地面積別 戶數의 比率

⑦桑田

vi) 耕地 以外의 土地面積: ①垡地 ②임야

vii) 土地間隔

viii) 農作物: ①벼 ②麥類 ③豆數 ④栗 ⑤옥수수 ⑥馬鈴薯 ⑦면화 ⑧면화 以外의 特用作物

ix) 경지이용도

x) 가축·가금: ①소 ②돼지 ③면양·기타 가금류

xi) 양잠

xii) 農林產 加工品: ①가마니 ②새끼 ③筵 ④직물 ⑤목탄·완조제품·기타

xii i) 비료

xii v) 小作料: ①小作料率 ②小作料率別 ③小作 總戶數에 대한 小作料率別 戶數의 比率 ④小作料 納付樣態

x v) 食糧

x vi) 負債: ①原因別 負債 ②金額別 負債

x vii) 物價概況

x viii) 現金收入: ①部門別 收入 ②調査農家 1戶當 部門別 收入 ③現金收入 總額에 대한 部門別 比率

x ix) 現金支出: 現金收入 調査項目과 同一

x x) 收支概況: ①農家の 總收入 ②營農收入 ③營農支出 ④農業收益 ⑤現物自給
1930年代에는 이 두 調査 外에도 農家經濟調査내지 負債現況調査가 빈번하였다.
평안남도에서는 朝鮮農會의 調査와 별도로 1930年 9月경에 지주·자작·자소작·소작

調查對象農家戶數(1933)

自 小 作 農 戶 數				小 作 農 戶 數	
南 鮮 區 700戶	全	北	153	146	南 鮮 區 652戶
	全	南	224	216	
	慶	北	102	90	
	慶	南	221	200	
中 鮮 區 575戶	京	畿	225	231	中 鮮 區 560戶
	忠	北	95	92	
	忠	南	88	87	
	江	原	167	150	
西 北 鮮 區 584戶	黃	海	204	195	西 北 鮮 區 516戶
	平	南	119	119	
	平	北	97	90	
	咸	南	98	78	
	咸	北	66	34	
合	計		1,919	1,778	

등 4階層으로 나누어 農家經濟調查를 한 바 있으며(『朝鮮農會報』, 1930.10) 경상남도 지방과에서는 1931年 3월경에 전농공제조합이 소재하는 10個 部落의 負債狀況을 調查하였다.(『朝鮮農會報』 1931.4) 京畿道農會에서는 道內 20個郡의 農會에 위촉하여 각군에서 1개 里洞을 選定하여 1927년의 農糧資金返濟狀況을 調查한 바 있다.(『朝鮮農會報』, 1931.11) 1932년에는 總督府에서도 朝鮮農家の 負債狀況을 調查하여 發表하였으며(『朝鮮農會報』, 1932. 7) 경상남도에서는 소작농의 收入狀態를 調查發表하였다(『朝鮮農會報』 1932.8). 같은 해에 慶北 안동군에서도 農家 各 階層別로 收支狀態 및 負債狀況을 調查發表하였고(『朝鮮農會報』, 1932, 9) 慶北道에서는 道民 전체의 負債額을 調查 發表하였으며(『朝鮮農會報』, 1933), 慶南道에서는 農家更生指導計劃을 위한 基本調查로서 道內 246個面 전체에 대해 1面當 30~40戶를 選定하여 基本調查를 完了하였다. 그 調查事項은 勞動力·現金收支·現物經濟 등이었다.(『朝鮮農會報』, 1933.5) 總督府에서는 또 小作農의 負債額 借入猿人 등을 調查發表하였다.(『朝鮮農會報』, 1934.9)

이처럼 農會·各道·總督府 등에서 다투어 農家經濟 내지 負債現況을 調查한 것은

VII. 家計 및 物價統計

전술했듯이 農業恐慌에 의한 農家經濟의 沒落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調査資料는 冊子로 發刊되지 않아 具體的인 調査內容은 알 수 없다.

冊子로 發刊된 1930年代의 農家經濟調査書로는 먼저 總督府 調査資料 第40輯 『慶州郡(生活狀態調査7)』(1933)에 農家經濟에 관한 세개의 調査資料가 수록되어 있다. 첫째 『經濟更生 5個年計劃 樹立 農家の 基本調査』로 경주군내 5個面에서 107명의 農家를 對象으로 現金 收支狀態, 負債額·利率·借入線 등 負債狀況, 食糧不足 數量, 勞動力 保有 狀況, 家畜數 등을 農家別로 調査 發表한 것이고 둘째는 1932年 봄에 경주군 직원이 내남면 栗里에 출장하여 29戶의 細小農家에 대해 家族 狀態, 資産 및 負債, 耕地, 家計狀態, 生計費, 收支狀態 등을 調査한 것, 그리고 셋째 指導生家計調査는 경주군 안강면 소재 安康公立普通學校 卒業生 10人의 家計에 대해 戶別로 家計調査를 한 것으로서, 調査項目은 家族員數, 財産, 生活費, 收支 등이 다.

다음으로 朝鮮農會에서 發刊한 『優良營農調査書』(1936, 1937) 두 권을 들 수 있다. 1권은 1934年 調査實績을 수록한 것이며 2권은 1935年 調査實績을 수록한 것이다. 調査對象은 각지의 優良經營農家로서 調査目的은 이들 農家の 營農方法과 그 實績을 精密調査하여 農家指導의 參考資料로 活用하는 한편 일반농가에 시범을 보이고자 하였다.(『朝鮮農會報』, 1934.8) 1934年 調査에서는 18農家(自作4, 自小作10, 小作4), 35年 調査에서는 17農家를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調査項目은 ①概況 ②農業從事者 ③耕地面積 ④農業用 資本 ⑤農業用 純財産 ⑥作目別 生産量·金額 ⑦農業經營費 ⑧農業勞動力의 月別·作目別 分配狀況 ⑨農業畜力 分配狀況 ⑩主要作物 및 養蠶收支計算 ⑪農業所得 ⑫農業勞動報酬 등이다.

朝鮮農會에서는 이밖에 1934~35년에 設置한 26個所의 有畜農業 장려부락 중에서 優良事例 10農家를 選定하여 戶別로 그 收支狀態 등을 調査한 바 있으며(『朝鮮農會報』, 1936.6 및 1936.8), 朝鮮蠶絲會 경기도지회에서는 경기도 내 각 郡農會에 위촉하여 각 郡 更生指導部落 중 2個部落씩을 選定하여 1936.1.1~12.31까지 1個年間の 現金수지상태를 조사 발표한 바 있다(『朝鮮農會報』, 1939.2~1936.6).

이상에서와 같이 1930年代에는 農業恐慌과 미가폭락, 農村振興運動과 農家更生

5個年計劃 등 社會經濟的 與件을 배경으로 農家經濟調查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地主·小作調查

(1) 概要

지주적 토지소유자와 지주·소작관계는 조선후기 이래 한국 농업의 본질을 규정하는 특징적 현상이었던 만큼 이에 관련되는 조사는 일찌기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일제 관료나 민간인의 빈번한 한국 사찰보고서·복명서 등에서 거의 빠짐없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류의 보고서 등은 走馬看山식 기록에 그쳐 있기 때문에 지주·소작에 관하여 언급만 한 정도이므로 조사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격적·종합적으로 한국의 농업·토지제도를 조사한 것으로서는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本田幸介外, 1906)5冊을 들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일본 農商務省의 주관하에 동경 제대교수 本田幸介 등 8명의 조사자를 3개 반으로 나누어 경상·전라(1반)·경기·충청·강원(2반)·평안·황해·함경도(3반)등 한국의 각도에 파견조사한 결과를 집대성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로서, 총독부의 초기 농업정책은 이를 지침으로 삼았다고 할 정도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주·소작에 관련되는 각 지방의 관행과 당시의 개략적인 지주 현황등에 대해 현지에서 청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태 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주·소작에 관련된 통계조사는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의 度支部 司稅局을 위시하여 舊韓國時代부터 일제 말엽에 이르기까지 小作制度에 관련된 조사는 여러 형태로 이어졌으며 공식적으로 발간된 이 방편의 조사서도 10여종이 넘는다. 이들 문헌들을 그 發刊年代順으로 살펴보면, 1934년경까지는 小作慣行에 관한 調查가 주류를 이루며, 『朝鮮小作年報』 제1집이 발간된 19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小作爭議 관계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 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地主·小作에 관련된 조사로는 地主·小作別 農家戶數 및 자작지·소작지별 경지면적 조사와 토지소유규모별·민족별지주 현황 통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이후 일제 말엽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①自小作別 耕地面積 및 農家戶數 統計 ②小作慣行調査 ③小作爭議 統計 ④土地所有規模別·民族別 地主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自·小作別 耕地面積 및 農家戶數

경지면적과 농가호수는 농업통계에서 가장 기본이며, 따라서 일제는 합방이전에 통계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부터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統監府統計年報』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自·小作別 耕地面積이나 自·小作 階層別 農家戶數에 관한 조사는 1913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즉 朝鮮總督府 農商工部는 1913년에 「農事調査의 件」이란 통첩을 각도에 하달하여 1913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①자작지·소작지면적 ②지주·자작·자소작·소작농 호수 ③경지소유규모별 농가호수 ④경작면적별 농가호수 ⑤경지소유자의 거주지별 호수와 소유면적에 대해 조사하여 1913년 12월 말일까지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조선농회보』, 1913.11) 이때 하달된 조사표 양식은 5種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는 自·小作地別로 1914년과 1913년도부터 農家戶數를 기재하고 있다. 자·소작지 면적의 경우는 1914년부터 1940년까지 통계표의 양식에 변화가 없으나 농가호수의 경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1913~15년에는 地主甲(소유지 전체를 소작준 지주), 地主乙(소유지의 일부를 자작하는 地主)의 구분없이 지주로 통합한 그 숫자와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으로 나누어 호수를 기재하였으나 1916년부터는 地主를 甲과 乙로 나누어 그 호수를 기재하였다. 또한 1920년까지는 화전민의 호수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1926년 이후부터는 화전민 호수가 제시되고 있으며, 1926~32년에는 화전민이 兼火田民과 純火田民으로 하던것을 1933년부터는 兼火田民 호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1933년부터는 地主甲과 兼火乙을 구분치 않고 다시 地主로 통합되었으며, 대신 被傭者 戶數가 새로 첨가되었다. 그러나 「農家戶數表」의 비고란에는 “大正6年(1917년)이전에는 民籍整理가 불충분하므로 본표의 計數도 불완전함을 면치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편, 일제하의 農家類型別 戶數 統計에 대하여는 “今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인 官製統計의 粗雜과 不充分”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해서는 “어떠한 과학적 분석도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한예로서 “농업인구 중에서 현재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더우기 직접적 생산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머슴」의 숫자가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印貞植, 1940) 1933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被傭者」란 것도 통계제작자의 註解에 의하면 「被傭者란 경지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면서 독립된 세대를 꾸려가는 자」로 되어 있어 「머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地主 甲의 경우, 예컨대 소규모의 소유경지를 모두 소작주교 도회지에서 노동자, 소매상, 봉급생활 등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萬石君」과 같은 거대 부재지주와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점도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地主 乙의 경우 예컨대 소유경지의 절반 이상을 소작주교 자신은 고리대업, 村의 관리, 소매상 등 부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경지를 고용노동에 의해 경작하는 경우 사실은 거대지주에 속하는 예가 많은데도 地主 乙에 속하게 된다. 자작농의 경우에도 수정정보의 경지를 他人勞動力에 의해 경작하면서 果樹栽培, 畝音 등을 경영하는 富農的 要素도 있는가 하면, 겨우 5~6단보를 자작하면서 농한기에는 出稼勞動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賃勞動者적인 要素도 포함되어 있다. 「自作兼小作農」, 「小作農」의 경우에도 耕作規模나 耕作物의 種類 등에서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農村의 階層區分이란 면에서 地主 甲~小作農의 분류는 정확한 기준에 의한 계층구분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어떻든, 자·소작별 경지면적 및 농가호수에 관한 통계는 行政調查(보고례통계)를 통해 매년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총독부통계연보』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앞의 제4표에서 보듯이 1913년 이후에는 경작하는 경지 규모별 농가호수도 함께 조사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이 통계는 전혀 공표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이때문에 「經營耕地面積別 農家戶數」에 관하여 “全朝鮮에 대한 統計는 없다”(朝鮮經濟研究所編, 1931)고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예컨대 日帝下의 農民階層分解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所有分解에 국한되고 經營分解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는 결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면적별 농가호수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지주·소작관계의 중대성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官製統計는 과학적

Ⅶ. 家計 및 物價統計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청의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소유의 구별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다”(印貞植)는 속성 때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自作畝田 및 小作畝田의 各及別

府 郡 名	內地·朝鮮 及外國人別	自 作		小 作		計	
		畝	田	畝	田	畝	田
何 何 府	內 地 人 朝 鮮 人 外 國 人 計	정반	정반	정반	정반	정반	정반
何 何 郡	內 地 人 朝 鮮 人 外 國 人 計						
計	內 地 人 朝 鮮 人 外 國 人 計						

비고 1) 반 이하의 단수는 사사오입할 것.

- 2) 회사·조합 등에서 內地人·朝鮮人·外國人이 공동으로 경지를 소유하는 경우 편의상 內地人欄에, 조선인과 외국인 공동으로 경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조선인란에 계상할 것(제2표 이하 동일)
- 3) 국유지는 본표에 계상하지 않음.

地主, 自作, 小作 및 自作兼 小作 各農家 戶表

府 郡 名	內地·朝鮮 및 外國人別	地 主	自 作	小 作	自作兼 小 作	計	總戶數
		戶	戶	戶	戶	戶	戶
何 何 府	內 地 人 朝 鮮 人 外 國 人 計						
何 何 郡	內 地 人 朝 鮮 人 外 國 人 計						
計	內 地 人 朝 鮮 人 外 國 人 計						

비고: 1) 지주는 소유경지를 모두 타인에게 경작시키고 자작하지 않는자, 자작은 소유경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자(일부 소유지는 소작준경우 포함), 소작이란 타인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자(국유지 포함), 자작겸 소작은 자기 소유경지외에 타인소유 경지(국유지 포함)도 경작하는 자
2) 총호수는 농가외에 일반 호수까지 계상한 것.

耕地所有의 廣狹에 의해 구별한 農家

府郡名	內地·朝鮮 및 外國人別	100정보 이 상	50정보 이 상	20정보 이 상	10정보 이 상	5정보 이 상	3정보 이 상	2정보 이 상	1정보 이 상	5단보 이 상	5단보 미 만	계
		戶	戶	戶	戶	戶	戶	戶	戶	戶	戶	戶
何何府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何何郡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計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비고: 100정보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명 및 소유지면적을 기재, 첨부할 것, 단, 內地人是 기재하지 말 것.

Ⅶ. 家計 및 物價統計

耕作하는 耕地의 廣狹에 의해 구별한 農家戶數

府郡名	內地·朝鮮 및 外國人別	5정보 이상	3정보 이상	2정보 이상	1정보 이상	5단보 이상	5단보 미만	계
		戶	戶	戶	戶	戶	戶	戶
何何府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何何郡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計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耕地와 그 소유자의 거주지 調

府郡名	內地·朝鮮 및 外國人別	總反別	所有地 소재면에 거주하는자		所有地 소재府郡에 거주하는자		所有地소재 지외의他府 郡에거주자		所有地소재 지외의他道 에거주자		所有地 소재외의 他國거주자	
			戶數	反別	戶數	反別	戶數	反別	戶數	反別	戶數	反別
何何府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정반	戶	정반	戶	정반	戶	정반	戶	정반	戶	정반
何何郡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計	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비고: 1) 단보이하의 단수는 사사오입할 것.

2) 소유지 소재지외의 他國이나 內地에 거주하는 자 중 內地에 거주하는 자는 黑書,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朱書할 것.

1913년 이후 매년 행해진 행정조사와는 별도로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촌진흥과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의 성과를 검토하는 자료로서 1935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3개 년간에 걸쳐 조선에 있어서 자작농 및 소작농 호수의 추이를 조사”(善生永助, 『殖銀調査月報』, 1941.4)하였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1935年·36년·37년의 각 연도에 도별로 ①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한 호수 ②자작농에서 자·소작농으로 전락한 호수 ③소작농에서 자소작농으로 갱생한 호수 ④자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갱생한 호수가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8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촌진흥과에서 「경지면적별 농가호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먼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3단보 미만, 5단보 미만, 1정보 미만, 2정보 미만, 3정보 미만, 5정보 미만, 10정보 미만, 20정보 미만, 20정보 이상 등 9등급으로 분류하고 ①각 등급별로 자작 호수, 자작겸 소작(甲:자작이 주) 호수, 자작겸 소작(乙:소작이 주) 호수, 소작 호수 ②각 도별로 자작농, 자작겸 소작(甲), 자작겸소작(乙), 소작농의 경작면적 등급별 호수를 조사한 것이다.이 조사는 자·소작별 호수와 경작면적별 호수를 결합시켜 파악한 조사로서는 유일한 조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자·소작별 경지면적·농가호수 등에 대해서는 일제 초기부터 기본적인 행정조사에 의해 매년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지면적 조사는 조사내용 등에서 변화가 없는 반면 자·소작별 농가호수 조사는 두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조사는 구태의연한 행정조사에 의존함으로써 농촌계층구성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3) 小作慣行調査

소작관행조사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農産·土地制度 調査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래 중엽까지 지주·소작과 관련한 조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조사 회수도 여러 차례였으며, 관련 문헌이나 조사기록도 10여종에 달한다. 이들 문헌은 크게 보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작관행조사의 조사결과를 수록한 조사서이며, 둘째는 기존의 조사서를 시대순으로 재편집하거나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요약정리한 문헌들이다. 그밖에 조사는 있었지만 조사경과는 책자로 간행되지 않은

VII. 家計 및 物價統計

경우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문헌에 의존하여 실필 수밖에 없으므로 문헌 해제식으로 접근하기로 하겠다.

主要 小作慣行 調査(書) 一覽

조사(서)명	조사시기	조사자	발간기관	발간연도
① 韓國土地農業調査報告書	1904.12~ 1905.11.	本田辛介의7	農商務省	1906.
② 南鮮地方調査報告書	1907	中山補佐官	不動產法調査會	1907.6.
③ 慣習調査報告書	1908~1910	韓國法典調査局	韓國法典調査局	1910(초판)
	1911~1912	總督府 取調局	朝鮮總督府取調局	1913(1차중보)
		上 同	朝鮮總督府	1913(2차중부)
④ 小作慣例調査	1908	各財務監督局	度支部 司稅局	1909
⑤ 土地調査參考書(제2호)	1908	尾石剛毅	度支部	1909
⑥ 土地調査參考書(제3호)	1908	鹽田興助	"	1909
⑦ 咸南·江原 兩道地方에서 의 韓日人小作의 狀況 (上·下)	1907	忠野季一	韓國中央農會	韓國中央農會報 1908년 2월, 3월호
⑧ 釜山理事廳管內의 小作 制度	1907	泳松戊州	上 同	韓國中央農會報 1908.3.
⑨ 小作農民에 관한 조사	1908	總督府 取調局	總督府 取調局	1912
⑩ 驛屯賭徵收에서의 慣例 調査	1912	各財務監督局	度支部司稅局	1908
⑪ 駐屯土小作에 관한 조사 서	1921	針替理平		
⑫ 小作制度에 관한 舊慣 및 현황		本岡榮次郎		
⑬ 朝鮮의 小作制度	1921	勞務課	產業調査委員會	1921.6
⑭ 黃海道에서의 小作慣行	1918	指宿武吉	朝鮮農會	朝鮮農會報 1919.1.
⑮ 朝鮮에서의 小作制度	1922	李 覺 鍾	朝鮮總督府	1922
⑯ 小作制度並農家 經濟 調査	1922	內務局社會課	全羅北道	미간행
⑰ "	1922	全羅北道	全羅南道	1922
⑱ 小作慣行調査書	1922	全羅南道		1922

조사(서)명	조사시기	조사자	발간기관	발간년도
①9 舍音에 관한 調査	1923	慶尙南道	朝鮮農會	朝鮮農會報 1923.8.
②0 忠淸南道에서의 小作慣例(上·下)	1925	忠淸南道 稅務課	"	朝鮮農會報 1925.4~5.
②1 小作慣行에 관한 調査書	1926	黃海道農會	黃海道農會	1926
②2 小作農民에 관한 調査		總督府殖産局	朝鮮總督府殖産局	1928
②3 朝鮮의 小作慣行		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29
②4 朝鮮의 小作慣行(時代와 慣行)		朝鮮農會	朝鮮農會	1930
②5 小作慣行 및 驛屯賭에 관한 調査書		內務局社會課	內務局社會科	1928
②6 小作慣行調査書	1930~31	各道	各道	1931~1933
②7 朝鮮의 小作慣行(上·下)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32
②8 압록강·대동강 연안에서의 賭地慣行		殖産局農務課	殖産局農務課	1931
②9 小作에 관한 慣習調査書		渡邊業志		1930

소작관행조사 관계 주요 문헌을 발간년대순으로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표에서 ②② ②③ ②④ ②⑦은 그 동안의 소작관행조사 자료를 재편집 혹은 요약 정리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조사(서)이다. 이들 조사 중 일부가 책자로 발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일부는 극히 부분적·단편적 조사이다. 여기서는 1910년 이전의 조사인 ①②를 제외하고 주요 조사(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③『慣習調査報告書』는 1910년판, 1912년판, 1913년판의 3종이 있다. 10년판은 舊韓國法典調査局 委員長 倉富勇三郎이 당시의 총독 寺內正毅에게 제출한 보고서로서, 法典調査局에서 朝鮮의 民事·商事에 관한 慣習을 조사한 것이다. 同書의 凡例에 의하면 “본보고서는 조선 각지의 관습을 기초로 하는 한편, 조선의 신구 법령을 참조하여 편찬하였다. …조사는 明治 41年(1908년) 5월부터 개시하며 明治 43年(1910년) 9월 法典調査局의 폐지와 함께 종료하였으며, 10월에 잔무정리로서 본보고서의 편찬에 착수하여 12월에 탈고하였다”고 한다.

1912년판은 總督府 取調局長 石塚英藏이 「倉富勇三郎報告, 明治 43年 12월」에 대해 총독 寺內正毅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머리말」에 의하면 “本局(取調局을 말함)

관습조사에 의해 새로 취득한 자료에 의거, 이미 法典調查局에서 편찬한 관습조사 보고서를 정정보충하여 별책으로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1913년판은 12년판의 再版으로서, 그 「머리말」에 의하면 “본보고서는 조선에서 시행할 民法 編纂資料로 제공하기 위하여 舊韓國法典調查局에서 明治 41年(1908년)부터 同43年(1910년)까지 조사한 朝鮮의 民·商事 慣習의 요강을 편찬한 것으로서, 그후 同44年(1911年)부터 45년(1912년)까지 本府 取調局에서 계속 조사하여 정정보충을 가한 것을 이번에 다시 再版하였다”고 되어 있다. 13년판은 12년판과 완전히 동일하며, 12년판은 10년판의 목차 그대로이되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목차를 보면 제1편 民法, 제2편 商法으로서, 민법편은 제1장 총칙, 제2장 物權, 제3장 債權, 제4장 親族, 제5장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편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 제3장 商行爲, 제4장 海商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조사는 民事·商事에 관한 광범위한 관습조사이지만, 거기에는 土地에 관련되는 관례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또한 조사목적으로서 “조선에서 시행할 민법”의 편찬 자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선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소유권은 전적으로 日本民法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조사는 조사 자체로 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小作慣例調査』는 1908년에 舊韓國 度支部 司稅局에서 各財務監督局으로 하여금 조사케 한 것으로서, 이는 『韓國中央農會報』 1909년 8월호부터 1910년 1월호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제1 소작정도의 연혁, 제2 소작의 종류, 제3 소작계약, 제4 소작인 감독 방법, 제5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제6 자작 소작 전답 면적, 제7 소작인 1인당 평균 경작규모, 제8 소작인이 貧富·生計 정도, 제9 소작인 消長의 추세, 제10 기타 참고사항, 제11 소작관습 개량·기타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各財務監督局 管内로서 漢城, 春川, 大邱, 平壤, 全州, 錦山, 光州, 전남 靈巖, 忠南 鴻山과 天安, 元山 지방이다.

緒言에 의하면 “현재의 소작관례를 보건데 지주는 誅求를 일삼고 소작인은 濫作을 일삼아 상하 모두 培養하지 않으며, 荒廢天時에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본서는 各財務監督局에서 그 상태를 조사하고 또한 개량의견을 첨부한 것을 종합하여 인쇄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한다. 당시 소작제도의 폐해에 대해 일찍부터 지적

되었음이 주목된다.

⑤⑥『土地調査參考書』는 제1호부터 5호까지 발간되었다. 이 중 小作慣行調査가 포함된 것은 제2호와 3호로서, 전자는 舊韓國 度支部 臨時財産整理局 囑託 尾石剛毅의出張調査復命書이며, 후자는 同局 囑託 鹽田興助의復命書이다. 제2호의 조사지역은 충남 공주, 한성, 평양의 각 재무감독국 관내이며, 제3호의 조사지역은 전주·대구·원산 재무감독국 관내이다. 조사목적은 어느 것이나 토지에 관한 관습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제2호 1908년 5월 14일~8월 6일, 제3호는 1908년 5월 14일~7월 13일이었다. 출장조사자의 말을 빌리면 “1개소의 조사일이 겨우 3일 정도이며… 더우기 사리에 어두운 人民에 대해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통역을 끼고 조사하였기 때문에”조사지역의 관습을 망라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슬회하고 있다. 제2호·3호는 조사지역만 다를 뿐 조사내용은 동일하다.

즉 목차를 나열하면 행정구역의 명칭, 토지의 명칭 및 사용목적, 과세지와 비과세지, 과세지와 비과세지의 구분, 境界, 산림원야의 경계, 토지표시 부호, 지위·등급·면적 및 結數 査定事例, 結等級別 區分, 소유권, 質權·低當權,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 토지에 대한 장부·서류, 人事 등으로서 양자가 동일하다. 「토지조사참고서」란 제목이나 토지에 관한 권리 등을 조사한 조사 내용으로 보아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예비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⑦⑧은 『農會報』에 게재된 조사자료로서 조사자는 農會의 會員이며 조사지역은 조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⑦의 경우 함남·강원지역에서는 40정보 이상 소유자를 대지주, 10~40정보 소유자를 중지주, 10정보 이하의 토지소유자를 소지주로 칭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⑩은 각 재무감독국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을 종합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각 지방별로 역둔토에서의 소작료액과 그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⑪ 역시 역둔토소작에 관한 조사서로서 내무국 촉탁 針替理平이 조사한 것이다. 1908년에 「역둔토조사사업」을 개시하였음을 감안하면, 당시 역둔토에 대해 일제 당국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이로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⑫는 前總督府 試補 本岡榮次郎이 충남·전북·경남·황해·평남·평북의 6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서 소작의 종류, 소작기간, 소작료 징수방법과 공과금 부담, 소작료

남부 시기와 운반비 부담, 소작계약의 형식, 소작전매매, 사유 등에 관해 그 관행만을 기술한 것이다. ⑫는 農務課의 조사자료를 産業調查會에서 간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⑪과 대동소이하다.

⑭는 조선농회 農藝委員 指宿武吉의 조사자료로서, 조사항목은 타조사와 비슷하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인 지주 7명, 조선인 지주 6명을 선정하여 각 지주별 주소·성명과 함께 田·畓의 각각에 대해 1914~16년 3개년의 소작지 면적, 소작료 수납 석수, 수확고에 대한 소작료의 비율, 단보당 평균 소작료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⑮는 朝鮮總督 囑託 李賢鍾의 調查書로서 그 조사항목은 소작관행조사에서 기본적인 항목들이다. 조사내용은 별 특징이 없으나 조선인의 조사서로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⑯⑰⑱은 발행기관·제목 등이 상이하나 동일한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 속하지 않나 생각된다. 앞의 농가경제조사편에서도 언급했듯이 1922년에 내무국 사회과의 지시에 의해 전국 각도에서 일제히 「小作制度並農家經濟調査」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⑯은 그 전국 집계자료이고 ⑰·⑱은 도별 집계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⑳의 「제6장 大正11年경의 소작관행」은 ⑯의 자료를 轉載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⑯은 “大正11年(1922年) 내무국 사회과에서 각도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 자료를 농무과에서 취합한 것”(朝鮮農會, 1930, p. 335의 凡例)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조사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소작관행조사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보아 1922년 내무국 사회과에서는 「소작관행조사항목」을 각도에 시달하여 전국 각도에서 이에 의거 조사하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추측컨대 ⑰⑱은 이 때의 조사자료를 전남·전북도에서 당해 도의 조사 경과를 따로 집계하여 발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어떻든 ⑯은 두가지 점에서 조사방법상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 이전의 조사는 총독부 관리의 출장조사나 아니면 기껏해야 각재무감독국 별로 관내 몇개 군에 한해 조사한 것인 데 반해 이때 비로소 전국 각도의 각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둘째, 그 이전의 조사가 통일적인 조사 항목에 의하지 않았음에 비해 이 조사는 중앙에서 통일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조사케 하였다는 점

이다. 그리하여 각도별로 賭只法·打作法·執租法 등 소작종류별 비율, 현물·현금 등 소작료의 종류별 비율, 수확고에 대한 소작료의 최고·보통·최저 비율, 단보당 지가에 대한 소작종류별 소작료의 비율, 소작권이동 비율, 사임의 수와 사임 1인당 관리면적 및 관리 소작인 수 등의 통계수치가 구체적으로 집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조사자료에 대해 ㉔에서는 “본조사요항을 보면 가끔 추상적·개념적 항목이 있음으로써 각도의 조사서가 도에 따라 精粗 각양이 되어 그 관념의 정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그 중에서 완전히 해당 의견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서는 단지 각도 조사서의 기사를 항목마다 도별로 배열하는 데 그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에 따라 “조사가 조잡하거나 혹은 누락되어 조사되지 않은 관행도 있는 듯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㉑는 경남도청 조사자료로서 솥밥 및 지주대리인의 여러 명칭과 각각의 임무·보수·임기·폐해·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임 외에 사임에 준하는 지주대리인의 명칭이 12가지나 되며 그 명칭별 숫자를 각 군별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㉒ 『소작관행에 관한 조사서』는 황해도 농회에서 1926년에 조사한 것으로서, 황해도의 각 군별로 大地主(20정보 이상 토지 소유자), 中地主(5~20정보), 小地主(5정보 이하 소유자) 각 1인씩과 그 지주 소유지의 소작인 1명씩을 선정하여 주소성명과 함께 지주의 소유지 면적, 소작인의 소작지 면적과 그 지가 및 시가, 소작의 종류, 계약기간, 소작료의 종류, 소작료 산정 방법, 소작지에 대한 제공과액과 부담 방법, 종자·비료의 부담 방법, 사임에 대한 보수, 소작료 이외 납부여부 등등의 항목에 대해 소작인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17개군에서 각기 지주3인, 소작인 3인씩을 조사하였으므로 조사호수는 지주 51인, 소작인 51인인 셈이다. 호수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통일된 조사항목에 대해 소작인을 상대로 직접 대답 조사한 점이 특징이다.

㉓㉔㉕는 독자적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사자료를 요약정리하거나 재편집·수록한 문헌들이다.

㉕는 『牧民心書』에서부터 ㉗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조사자료를 시대순으로 요약 혹은 轉載한 것으로서 1922년경까지의 조사자료가 거의 망라되어 소개되고 있

다. ㉓에는 소작관행 이외에 소작쟁의, 농가계층별 농가경제 상태와 미곡생산비 등에 관한 통계표가 게재되어 있다.

㉔는 1909년 4월 度支部 司稅局에서 발간한 「小作慣例調査」 즉, 표에서의 ④와 1908년 6월 度支部 司稅局에서 조사한 자료, 즉 표에서의 ⑩, 탁지부 조사 土地調査參考書 「小作人과 지주의 관계」, 그리고 1924년 12월 재무국 세무과에서 조사한 자료 「역둔토 관리방법」 등의 기존 조사자료를 재수록한 것이다.

㉕㉖은 1930~31년에 전국 각도에서 행해진 小作慣行調査資料로서, ㉕은 各道에서 道別로 발간한 조사서이며, ㉖은 각도의조사 내용을 취합 정리한 전국 조사서이다.

이때 행해진 소작관행조사는 조사범위에서 전국 각도를 망라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 중앙에서 「小作慣行調査 要項」과 그에 따른 「記載例」를 작성·발간하여 이를 각도에 하달하고 이 요령에 의해 각도에서 통일적으로 조사케 하였다는 점에서 일제시대에 행해진 소작관행조사 중 결정판이라 할 수 있으며, 발간된 조사서도 13도의 도별 소작관행조사서 13종과 전국편 1종 등 14종에 달한다. ㉗은 上·下 2권으로서, “本書는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에 관한 주요 조사서를 망라한 것으로서 前篇·後篇·續篇은 本府의 계획에 입각하여 昭和2年(1927년)이래 실시한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를 採録한 것이며, 參考篇은 이 조사의 실시에 즈음하여 참고로 수집한 종래의 公私 調査資料를 輯録한 것이다. 그리하여 昭和2년 이래 조사자료의 일부는 각 道·府·郡·島·面으로 하여금 조사케 한 것이지만 그 밖에 農林局 農務課 事務官 鹽田正·吉田正廣 등으로 하여금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을 맡게 함으로써 본서를 편찬케 된 것”(緒言)이라고 한다.

㉗의 卷頭に 실린 凡例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조사는 1930년 총독부에서 조사항목을 정해 전국 各 府·面에서 먼저 그 관내의 해당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청취조사는 本府에서 직접 취합) 群島에서는 면의 조사서, 道에서는 府群島의 조사서에 기초하여 정리조사케 한 것과 1927년 이래 本府職員이 實施調査한 결과를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숫자에 관한 통계조사는 1930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照會調査에 의해 조사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조선에서 조직적·계통적으로 소작관행조사를 실시한 효시라고

하면서도 조사상의 부족한 점을 들고 있다. 그것은 첫째 소작관행의 역사적 원류를 구명하는 데 미흡하며, 둘째, 照會調查인데다 實施調查 또한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혹은 지주·소작인별로 다르며 소작의 종류도 뚜렷이 구별되어 내용과 형태가 다른데도 조사 각 항목에 대해 구 사정을 분석·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지주와 소작인의 답변이 다를 경우 그 是非를 가리기 곤란한데 그 점에서도 불철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넷째 面의 조사를 기초로 郡·島·道の 整理調查를 거친 道調查書를 採録한 데다 實施調查도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특색이 희석되어 버렸다는 점 등이다.

어떻든 ㉗의 上卷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이 조사에 관한 주요 통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30(昭和5)年 3月 25日

小作慣行調査에 관한 件

殖 産 局 長

各道知事 앞

昭和3(1028)年 2月 이래 本府에서 臨時小作調査委員會를 설치하고 時勢에 적합한 小作制度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한 바, 그 答申意見에 입각하여 속히 실행을 요할 諸點에 대해서는 이미 政務總監으로부터 통첩된 바 있으나 소작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유력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소작관행에 대해 全鮮에 걸친 통일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道에서도 管下의 소작관행을 조사해 두면 현행 소작관행의 개선과 小作爭議의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 긴요한 일이라고 인정되므로今回 別冊 小作慣行調査要項 및 同記載例에 의거, 통일적 조사를 시행하되 左記事項을 잘 알고 調査要項의 일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精細 調査 후 調査書를 제출하도록 통첩함. 덧붙여 右調査에 필요한 調査要項, 調査要項 記載例 및 小作問題聽取調査書는 別表대로(그 중 10부, 단 청취조사서 5부는 예비로서 府·郡·面 등에서 재교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충당토록 할 것) 별도 송부하되 되도록이면 面의 조사보고용지도 1면당 평균 100매까지 마찬가지로 송부하되

群島에서 각 면별로 그 소요 정도를 비교 계량하여 나누어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것.

記

1. 本調査는 面·府에서 그 구역 내의 해당 사항을 조사하며 이를 기본자료로 삼고 群島調査書에 기초하여 관내 조사를 완성하도록 함.
2. 本府에 제출한 조사서는 昭和6年(1931년) 6월 말일까지로 하며, 郡, 島 및 府, 面의 조사시간은 각도에서 적절히 결정할 것.
3. 道, 郡, 島 및 農會에서는 수시로 그 직원을 파견 혹은 출장보낼 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조사의 지도·보충을 하게 할 것.
4. 面의 소작관행조사보고서는 별도로 배부된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능한 道農會, 郡農會 등으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할 것.
5. 소작문제 청취조사는 소작문제의 논리를 규명하고 또 면의 소작사정을 고찰하는 데 참고자료로 하며, 그 조사는 의견을 기입할 空欄이 붙은 조사서를 가지고 조사함으로써 면으로 하여금 조사기입토록 하고 그대로 本府에 제출하는 조사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며 道群島에서 이를 整理調査해야 함.

이상의 통첩과 함께 「조사요항」, 「조사요항기재례」, 「소작문제청취조사서」등이 배부되었다. 이에 대해 일선 관서에서는 이 세 文件이 내용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30년 5월 28일자 殖産局長통첩 「小作慣行調査에 관한件」에서는 “조사 항목의 해석 기타에 대해 照會받은 바도 있고 하여 당해항목의 해석, 正誤修正의 요령 및 증보 사항 등에 대해 左記한 대로 하도록 各府群島面에 시달 지도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本府에서는 직원들을 일선에 내려보내 조사사업을 시찰케 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방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즉, 1930년 8월 9일자 통첩에서 “조사 상황에 대해 일부 지방을 시찰한 廳員의 復命에 의하면 左記事項에 대해서는 더한층의 지도와 유의를 요하는 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遺憾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면에서의 조사 진척상황이 각기 다양한데 가능한 보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조사 방법도 구구각색이라는 것

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뒤 다시 조사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통첩의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조사 진척 상태라든지, 조사상의 애로점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조사항목을 보면 제1 소작에 관한 在來用語, 제2 소작계약의 체결, 제3 소작계약의 기간, 제4 소작료, 제5 소작료의 減免增收, 제6 소작료의 납입, 제7 소작료의 체납, 제8 소작지에 대한 제한, 제9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제10 소작지에 대한 제부담, 제11 기타 소작인의 특수부담, 제12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제13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제14 소작지의 관리, 제15 토지개량사업이 소작관행에 미치는 영향, 제16 곡물검사가 소작관행에 미치는 영향, 제17 이외 소작에 관한 중요 사항, 제18 永小作 제19 소작관행에서 개선을 요하는 점 및 그 이유와 대책 등이다. 1922년에 시행된 소작관행조사 항목과 비교하면 소작에 관한 재래의 용어,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조사항목은 비슷하지만 조사내용이 훨씬 정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조선통치상 가장 중요”하다(『朝鮮農會報』1930.5)고 까지 강조한 이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컨대 “지주와 소작인의 공동 이익 증진” 혹은 “크게 보면 농업의 진흥, 조선의 개발”(上同, p. 45)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인용된 통첩에 드러나 있듯이 “小作紛議의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 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총독부에서는 昭和2년(1927년)이래 全鮮에 걸친 소작관행조사를 행하게 되어 그뒤 이를 계속해 왔다. 内地(日本)에서는 이런 류의 조사가 여러차례 있었고 그 후 調停法 시행 또는 소작쟁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각지의 관행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또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행하려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조선에서는 기왕에 지방적으로 또는 관행의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된 적은 있지만 全鮮的으로 또한 관행 전반에 걸쳐 조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朝鮮農會』 1930.10)

1930년에 이처럼 최초의 전국적인 조사를 한 것은 농업공황에 의한 농가경제의 파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소작쟁의의 격화·증대라는 직접적 원인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연도별로 소작쟁의 참가인원과 발생건수를 보면 1930년까지 계속 증가되어 30년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 후 점차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朝鮮

總督府農林局, 1934) 이러한 소작쟁의의 동향에 따라 1928년 2월 8일부로 「臨時小作調査委員會規程」이 총독부훈령 제2조로 발표되고 “조선 소작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회하기 위하여”(同規程 제1조) 臨時小作委員會가 설치되었으며, 이 조사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대대적인 小作慣行調査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조선농회에서 1928년 9월 25일에 「조작관행개선간담회」를 주최하여 제주측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던 상황이었으며 총독부에서는 “소작쟁의가 빈발하는 道에 國費의 小作官과 小作官補를 설치하게 되어 내년도(1929년) 총독부 예산에 제상하여 이미 재무부의 승인을 得하였다... 小作官의 신설에 의하여 小作관행의 조사를 충분히 하여 소작쟁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도기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朝鮮農會報』1928)라는 인식이 자리잡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소작쟁의의 격화에 따라 1928년부터 小作관행개선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小作관행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던 데서 조사목적 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1930년에 시행된 小作관행조사의 조사방법은 “대체로 實施調査와 照會調査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本府職員이 각도에 출장하여 實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 후자는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그 항목에 준거하여 各面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 양 방법에 의해 조사된 조사결과를 비교 대조하여 조사의 正誤, 是非 내지는 조사부족 유무 등을 감안하여 다시 보충조사를 함으로써 조사를 완성”(『朝鮮農會報』1930.10)한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서 實地調査는 一般慣行調査와 特殊慣行調査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照會調査의 경우 조사구역은 “작을수록 좋으나 현대의 행정사무의 실체에 비추어 이를 面單位로 한 것”이라고 한다(『朝鮮農會報』1930.10.) 이리하여 예컨대 경남에서는 “1930년 3월 各府郡勸業擔任者를 道에 모으는 한편 本府로부터도 本事務에 정통한 分의 臨席을 청하여 2일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나아가 각 군에서도 4월 중 面調査 종사자를 군에 집결시켜 강습회식의 협의회를 개최”(『朝鮮農會報』1930.5)하는 등 가히 행정적인 총력을 기울여 조사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일제하에 시행된 小作慣行調査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청취조사식의 조사가 시행된 이후 1930년까지 잇달아 계속되었다. 1922년에 미약하나마 전국적인 照

會調查가 실시된 후 1927년부터 매년 총독부 주관하에 소작관행조사가 계속되다가 1930년에는 전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하여 照會調查와 實地調查를 병용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작쟁의의 격화, 농업공황에 의한 농가경제의 피폐 등의 배경하에 소작쟁의에 대한 대책과 소작관행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4) 小作爭議 統計

“朝鮮의 소작쟁의 통계는 警務局調查에 의한 것과 殖産局調查에 의한 兩種의 統計가 있으나 調查標準이 各異하여 對照하여볼 興味가 적다. 萬一 이에 관한 第三統計(民間統計)가 있다면 매우 興味있을 일이겠으나 新聞記事와 地方通信 등으로 겨우 꾸며진 극히 斷片的인 조사자료가 散在할 뿐 歷年趨勢를 살펴볼 만한 것이 全然 없으므로 부득히 官廳統計에 의하여 趨勢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李如星·金世鎔, 1933) 다음표에서 보듯이 小作爭議에 관한 통계는 1920년부터 警務局에서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925년부터는 이와 별도로 殖産局에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표의 비고란에 서술되어 있듯이 警務局調查는 治安上의 관점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쟁의만을 집계하였으며, 殖産局調查는 소규모의 쟁의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양자의 숫자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殖産局에서는 1930년 「소작쟁의의 조사방침」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소작쟁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朝鮮農會報』의 기사(1930년 1월호)전문은 다음과 같다.

※ 朝鮮小作爭議의 調查方針

朝鮮에서 소작쟁의는 그 8할까지가 小作權移動에 의한 것이며, 1개년의 발생 건수는 경찰측 조사에 의하면 1道 170件 정도이지만 本廳·農務課의 조사에 의하면 이의 數倍로서, 경찰서에서 발생 건수가 없다고 보고한 道에서 1,200건이나 발생했던 사실이 있다. 소작쟁의로 취급하는 표준이 구구하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알 수 없었는데 금년도(1930년)부터 小作官이 설치되게 됨을 기화로 本廳에서는 주로 農林省(일본)이 채택한 표준과 신설 小作官의 보고를 기본으로 하여 발생 건수를 산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컨대 지주 1인과 소작인 1인의 小作權移動에 관한

VII. 家計 및 物價統計

쟁의도 이를 소작쟁의로 인정하여 철저히 그 원인을 精査하고 이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을 취하고부터 점차 이런 류의 쟁의는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小作爭議 件數 및 參加人員數

	爭 議 件 數		爭議參加人員數		件當平均參加人員數	
	警務局調	殖產局調	警務局調	殖產局調	警務局調	殖產局調
1920	15	—	4,140	—	276	—
1921	27	—	2,967	—	81	—
1922	24	24	2,539	2,539	16	16
1923	176	176	9,060	9,060	51	51
1924	164	164	6,929	6,929	42	42
1925	11	204	2,646	4,002	25	20
1926	17	198	2,118	2,745	125	14
1927	22	275	3,285	3,973	149	14
1928	20	1,590	3,576	4,863	119	3
1929	36	423	2,620	5,319	73	13
1930	93	726	10,027	13,012	108	18
1931	—	667	—	10,282	—	15

備考: 1. 警務局調는 『朝鮮警察 概要』에 의한.

2. 殖產局調는 『調査月報』1932.6.에 의한

3. 1925년부터 警務局調와 殖產局調가 전연 相違되는 것은 警務局調는 경찰의 주의를 끌게된 비교적 大爭議라 할 것만 그 件數에 집어넣었으며 殖產局調는 비교적 적은 爭議까지 통털어서 집어넣는 까닭이다. 그리고 1925년 이전 것은 殖產局으로서의 특별조사가 없었으므로 警務局調에 의한 것이다.

4. 殖產局調는 건당 평균 참가인원수는 평가계산

5. 爭議 參加人員이란 것은 지주와 소작인 합산한 것임.

자료: 李如星: 金世鎔 『數學朝鮮研究』, 世光社, 1933.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적어도 1930년 이후의 소작쟁의 통계는 지주1인대 소작인 1인의 분쟁까지 망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조사의 정확 여부는 여전히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소작쟁의에 관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그 외에도 朝鮮總督의 『調査月報』에 통계표가 게재되어 있으며, 『朝鮮農會報』의 「農界雜報」 혹은 「地方欄」에 기사 형식으로 소작쟁의 건수가 게재되어 있다.

『朝鮮의 小作慣習』과 『小作에 관한 參考事項摘要』는 소작관행에 관한 기존 조사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그 일부에 소작쟁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고 그에 의해 간략한 설명을 가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소작쟁의 관련 조사자료를 다각도로 정리 집계한 조사서는 표에서의 『朝鮮小作年報』이하 4종으로서 題號는 상이하나 동일계열의 조사서임은 그 緒言에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보면 1920년 이후 소작쟁의 발생 건수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처음에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警務局의 조사대상에 속해 있던 소작쟁의에 대해 農政次元에서 農務課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은 19278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사자료를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은 1937년부터였던 것이다.

(5) 土地所有規模別 地主에 관한 統計

소유지의 규모별 지주 수에 관한 통계는 『총독부통계연보』에 「지세납세의무면적별 인원수」가 게재되어 있으며, 도별 숫자에 대해서는 『朝鮮의 農業事情』(총독부 식산국)에 게재되어 있다. 그밖에 『平安南道農業統計局』(평안남도)에 도내의 府郡別 숫자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京畿道農村社會事情』(경기도 내무국 사회과, 1924)와 『小作慣行調査書』(전라남도, 내무부, 1923)에도 그 숫자가 게재되어 있다. 『朝鮮에서의 小作에 관한 참고사항 적요』(총독부 농림국, 1934)에도 1927년에 도별로 100정보 이상 소유자를 조사한 자료, 1930년 조사 경지 30정보 이상 소유한 일본인 대지주 수, 1930년 조사 경지 50정보 이상 소유 대지주 수 등이 도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도별로 대지주 명단이 수록된 문헌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중 ①②는 현재 전하지 않는 듯하며 ③, ⑤~⑬은 『農地改革等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한국 농촌경제연구원, 1985)에 기록되어 있다.

VII. 家計 및 物價統計

小作爭議 關係 統計書 收錄한 主要文獻 一覽

文 獻 名	發 行 機 關	發 行 日 字	小 作 爭 議 關 係 收 錄 統 計 表
朝鮮의 小作慣行	朝鮮總督府	1929	120~27년 道別 小作쟁의 건수·인원조 1920~27년 小作쟁의 원인별조 1920~27년 小作쟁의 결과별조
小作에 관한 參考事項 摘要	朝鮮總督府農 林局	1934	1922~32년 小作쟁의 道別 年進수들 1927~32년 道別 小作쟁의 건수·인원·면적·원인별표 1926.10~32.12. 道別 小作쟁의 원인별표 1926.10~32.12. 道別 小作쟁의 調整지·별표 1927~32 營小작 및 임차권의 等기進수표 1926~28 小작관계 민사소송 수리 進수표 1930년 小작지를 公동으로 차입하여 公동·개별 耕作 하는 小작인 단체
朝鮮小作年報(제1집)	"	1937	1920~29小작쟁의 발생進수, 1920~36도별 쟁의 발생 進수, 1390~36년 各군별 쟁의 발생進수
" (제2집)	"	1938	1927~36년 小作쟁의 원인별 進수표, 1930~36년 月別 쟁의 發生進수표, 1920~36년 小作쟁의 참가인원進수표, 1927~36년 쟁의관계 토지면적표, 1933~36년 쟁의관 계토지면적 규모별 進수표, 1933~36년 쟁의지속 기간 別進수표 1927~32년 쟁의해결 종류별 進수표 1926~32년 쟁의해결자별 進수표, 1926~36년 小작인 의 小작지반환상황표, 1925~36년 小작관계 민사소송 사건상황표, 小작조정령에 의한 調整사건 受理상황
朝鮮農地關係彙報(제 1집)	朝鮮總督府農 林局	1939	1937년에 發生한 小作쟁의에 對해 道별로 進수·민족 別進수·참가인원·관계 토지면적, 小작쟁의 원인별 進수, 月別進수, 關係 토지면적別進수, 쟁의해결 종류 別進수, 지속기간別 進수, 小작조정사건 大역표
朝鮮農地年報(제1집)	"	1940	1920~39년 上同의 內容외에 附屬으로 1939년 小作 의상황표 附載

도별 대지주 명단수록 문헌일람

문헌명	발생기관	발행일자	비고
①50정보이상 소유지주 조사서	경상남도	1926	
②昭和8년 지주명부	함경북도 농무과	1934	
③內鮮人 地主 所有地調	全羅北道	1928	전북의 일본인 50정보이상, 조선인 100정보이상 소유지
④內地人 "	"	"	"
⑤충청남도 농업요람	충청남도	1930	충남 경지 100정보이상 소유지수 명부
⑥충청남도 발전사	安齊露堂著	1932	충남대지주명부 일본인: 30정보이상 조선인:100정보이상
⑦전라북도·전라남도 지주조	경성미곡사무소 군산출장소	1930	전북 일본인: 50정보이상 전남 일본인:30정보이상 조선인:100정보이상 조선인:50정보이상
⑧소작 관행조사서	평안북도	1931	경지 100정보이상 소유자
⑨ "	충청북도	1933	畝田 100정보이상 소유자
⑩(秘)지주명부	경기도농회	1938	경기도에 경지 30정보이상 소유자
⑪진주대관	진주대관사	1940	소작료500부이상 수답자
⑫조선농업요람	농상무성 농무국	1910	일본인 농사경영자중 중요한 자
⑬조선의 농업	총독부 식산국	1927 1933	30정보이상 일본인 농사경영자 100정보이상 "

다. 解放後의 農家經濟調查

(1) 調查目的 및 沿革

韓國의 農家經濟調查는 農業의 再生産構造를 把握함과 同時에 農家經濟의 動向과 經濟社會의 諸變遷에 따르는 農林産業의 構造變化를 把握함으로써 農林經營의 改善 農家消費水準의 測定 農家經濟指標 및 패리티 指數의 算出等 諸資料를 獲得하여 農業政策樹立과 國民所得推計를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함을 目的으로 한다. 農家經濟調查는 6.25動亂의 戰禍와 재해로 인해 피폐한 農村經濟 實態의 把握과 農家の 消費水準을 測定할 目的으로 1953年 1월 1일부터 農林部와 韓國은행이 合同으로 調查를 시작하였다. 당시 調查名稱은 農村實態調查라 하고 調查對象은 전국에서 農家를 有意選定하고 1년간 調査하였다.

VII. 家計 및 物價統計

1954년 7월 1일부터 한국은행과 분리하여 農林部에서 獨自的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農家經濟調査는 한국은행과 농림부로 二元化 되었다.

農林部에서는 地帶別과 規模別의 특성을 감안하여 平野部, 中間部, 山間部의 3個 地帶로 구분하여 전국에서 17개 調査區를 선정하고 각 지구마다 記帳能力이 있는 農家를 細農(0.5ha미만)에서 4가구, 小農(0.5ha~1.0ha)에서 3가구, 中農(1.0ha~2.0ha)에서 2가구, 大農(2.0ha이상)에서 1가구 計 10가구씩 170가구를 선정하였다. 매 조사지구에는 1명의 調査員을 배치하여 본 調査業務를 專擔토록하여 調査를 실시하였다.

農家經濟에 관한 調査는 農林部 以外에도 農事院(農振廳)調査(1944년~1960년) 韓國銀行의 調査(1958년~1962년)등이 있었다.

1953년 農林部와 공동으로 시작하였던 韓國銀行은 1958년 1월부터 標本農家를 任意 標本抽出과 有意抽出을 병행함으로써 全國的으로 개편하고 調査內容과 調査方法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뒤 農業銀行에서도 1958년 6월부터 農家經濟調査를 實施함에 따라 韓銀에서는 1960년 1월부터 農業經營에 중점을 둔 調査體系로 개편하였다.

초기 調査는 標本數가 母集團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어서 代表值로서의 信賴度가 낮았으며 標本設計에 있어 有意標本選定方法을 사용 하였으므로 推定誤差를 계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調査內容 및 調査方法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허다하여 調査한 結果를 發表하지 못하였다. 1961년초에 주한통계고문단(단장: 태평박사)에게 標本調査를 依頼하여 설계하였다. 設計當時 豫算上 調査員은 80명을 確保하고 있었으며 調査員 1명이 調査活動을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1개리, 記帳指導 할 수 있는 농가수는 15가구 內外가 적합하였다. 그리고 1960년 농업총조사의 사후조사 標本設計를 위한 예비조사의 분석결과 許容誤差 5%의 標本크기는 1,200가구였으며 同一標本에 農家經濟와 農產物 生産費의 兩調査를 실시한다는 條件을 충족하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效果를 얻도록 設計하였다.

전국의 農家를 母集團(서울제외)으로 三段確率抽出方法을 사용하였으며 層化指標는 행정구역인 市·邑·面別로 農家率, 耕地率, 畝率, 畝의 蒙利率, 보리, 쌀보리, 밀, 기타 중요작물의 植付率로 하였다. 層의 크기는 調査員이 80명이었으므로 전국

의 總層數를 80으로 하고 各層의 크기를 全國農家數 2,168천가구를 80으로 나눈수 27,100가구로 하였다. 各道별 層數도 道の 農家數를 27,100으로 나눈 것으로 하였다.

第1次 抽出單位는 市·邑面으로 하고 各층에서 市·邑面の 農家數에 따라 확률추출법으로 1개의 市·邑面을 추출하여 총 80개의 標本 市·邑面을 추출하였다. 제2차 추출단위는 1960년 농업총조사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農業調查區(자연부락 1~3개의 범위로 農家戶數 60~120가구)로 하고 第1次로 抽出된 市·邑面の 農業調查區에서 各 農業調查區의 農家數에 따라 確率比例抽出法으로 3개의 農業調查區를 抽出하였다. 이 방법은 調查區를 분산시킴으로써 推定值의 精度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調查員의 活動範圍가 너무 넓으므로 調查內容에 非標本誤差가 크게 發生할 우려가 있어 3개 調查區에서 1개의 調查區를 다시 抽出하여 결국 1개층에서 1개 調查區를 선정하였다.

第3次抽出單位는 농가로 하고 抽出된 調查區에서 調查員이 調查區內의 농가일람표를 작성 副次抽出에 의하여 任意系統抽出 방법으로 標本農家를 抽出하였다. 이와 같이 抽出한 1,206가구의 農家를 全國의 標本農家로 결정하였다. 1961년 7월 1일부터 調查內容과 調查方法 및 分析方法을 새로운 技法에 의하여 개편 하였으며 특히 調查員은 대학졸업자로 총무처(당시 국무원사무국)에서 公採한 국토건설추진위원(정규직)을 일선 調查員으로 배치 조사하다가 이 직원들은 1962년부터 본부에 배치하고 잠급직원을 배치하였다 調查內容에 있어서는 종래의 農家生活費調查를 위주로 하던 내용을 지양하고 經濟單位인 동시에 消費單位인 農家の 성격을 收入과 支出의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토록 하였으며 특히 農家の 規模別 특징을 더욱 상세하게 비교 파악하기 위하여 0.5ha미만, 0.5ha~1.0ha, 1.0ha~1.5ha, 1.5ha~2.0ha, 2.0ha이상의 5계층으로 구분하여 各계층별의 特性을 분석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標本으로 抽出된 調查農家は 記帳能力이 없는 農家도 調查對象에 포함되어 調查員이 대신 記帳하였으며 이와같이 조사한 결과는 1963년에 처음으로 統計刊行物로 公表하였다.

이렇게 調查한 標本을 時日이 經過할수록 農村經濟의 變化趨勢와 乖離되었다. 이에 1973년에 1970년도 農業總調查 結果를 利用하여 全國을 母集團으로한 層化3段

VII. 家計 및 物價統計

確率抽出方法을 사용하여 再抽出하였다. 층화지표는 행정구역인 市·邑·面別로 耕地率, 畝率, 農家數와 그 비율, 답의 蒙利率, 보리, 쌀보리, 밀 등의 播種面積등을 이용하여 1961년에 標本設計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160개층에서 160개 市·邑面을 抽出하고 추출된 市·邑面에서 160개의 標本調査區를 1970년 農業센서스 調査區에서 抽出하였다.

抽出된 調査區에서 農家一覽表를 작성 副次抽出率로 1개 調査區에서 15가구 내외를 추출하여 전국에서 2,518가구를 標本農家로 선정하였다.

1973년부터 컴퓨터로 資料處理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74년 부터 電算處理됨으로 다각적으로 統計的 分析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7년부터는 지역발전의 比較評價와 통계자료의 수요증가로 지금까지 전국을 母集團으로 標本設計한 것을 地域別 推計와 업체별 분석이 가능토록 道母集團으로 標本設計를 하여 調査를 실시하였다. 推定值의 精度를 높이기 위하여 層 設定에 있어 層間은 이질적이고 層內는 同質性을 보장하고 도별로 층의 크기는 가능한 같게하는 동시에 同一標本에서 農家經濟와 農產物生產費의 두 調査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이 두 調査內容이 영향을 주는 諸指標를 채택하였다.

市·邑面 단위뿐만 아니라 里洞資料를 병용하여 農家率(市部農家率 40%미만, 郡部農家率 40%이상), 耕地率(平野部 耕地率 40%이상, 中間部耕地率 20%~40%, 山間部耕地率 20%미만), 畝率(畝作畝率 65%이상, 混作畝率 45%미만), 기타보조지표(水利蒙利率, 養蠶農家率, 畜產農家率, 煙草耕作農家率, 家口當 耕地面積), 農家數를 이용하였다. 층화지표가 기입된 全 1,495개의 市·邑面(서울, 부산제외)의 카드를 작성하고 해당란에 천공하여 각도별로 소정의 層數가 되도록 층화를 하는데 층화에는 同一標識 또는 관련성이 큰 標識끼리 모아 층의 크기(층의 농가수=도농가수/도층수)가 대략 같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층화를 하고 각층에서 농가수에 비례하는 確率比例法을 이용하여 1개의 市·邑面을 1次抽出 하였으며 추출된 시읍면에서 각 里洞의 總農家口, 農家總面積, 耕地面積, 畝面積, 果樹農家, 養蠶農家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시 層化하고 각층에서 1개의 里洞을 確率比例抽出하였다.

2차로 抽出된 里洞에서 총농가일람표를 耕地面積順으로 작성하고 副次抽出率로

15개의 농가를 系統抽出하여 전국적으로 225개 標本調查地區에서 3,375標本農家を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1982년부터는 종래의 활용도가 적었던 지역별통계 대신에 지대별, 영농형태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층화 2段確率比例抽出 방법으로 새로 標本設計를 하여 조사하였다.

1980년 農業總調查에서 조사된 전국 2,157,555農家口를 母集團으로 하여 農村의 영농구조 변화에 따른 지대별, 영농형태별, 農家所得을 推計하고 農產物生産費調查, 營農實態, 主要農產物消費量 및 在庫量, 植付意向調查等 각종 農政資料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전국 單一母集團의 다목적 標本設計를 하였다.

層化指標로 지대구분을 부락주민의 판단을 참고로 도시근교(시군청 소재지 및 도시에 인접한 지역), 평야(지역내의 들이 75%정도 또는 그 이상인 지역), 중간(지역내의 산과 들이 약 50%정도인 지역), 산간(지역내의 산이 75%정도 또는 그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 하였으며, 영농 형태 구분도 畝作, 田作, 果樹, 菜蔬, 特作, 畜産, 養蠶, 기타의 지표를 層化 분류하여 200개의 調查區를 1次로 確率比例抽出하고 추출한 조사구에서 農家の 規模別 분포를 고려하여 각 調查區의 영농형태별 구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모가 큰 농가에서 작은 農家順으로 배열하여 1/10의 抽出間隔으로 전국에서 2,000標本農家を 系統抽出하였다. 기존 標本農家は 1980년 農業總調查 결과를 이용하여 1982년에 설계하여 1986년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 標本이 老朽化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標本設計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農家人口가 도시로 移動함에 따라 母集團이 변화되고 農業이 근대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農業構造 및 營農形態등 農村與件이 많이 변하여 標本の 대표성이 희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지역별, 경제사회개발계획수립에 道單位 統計資料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1980년 農業센서스 및 1985년 간이농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7년에 標本을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여 2개월간의 試驗調查를 거쳐 1988년부터 새 표본에서 조사하였다.

이 標本으로 지대별, 영농형태별, 도별로 農家所得, 農產物生産費調查, 營農實態, 主要農產物消費量, 農產物在庫量, 식부의향조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標本の 크기는 과거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標本誤差率을 계산해서 각도별로 農

Ⅶ. 家計 및 物價統計

家經濟의 標本誤差를 3%이내로 하고 調查區를 310개 地區로 결정하여 1개 지구에서 10개 農家를 추출함으로써 전국 3,100標本農家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의 特殊性으로 道別農家數 平方根比例로 標本을 주었다. 統計의 精度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대별 영농형태별을 層化指標로 이용하는 層化確率比例抽出에 의하였다. 지대구분으로는 부락주민의 판단을 참조하여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지대의 4개지대로 구분하고 영농형태구분은 畚作, 田作, 果樹, 菜蔬, 特作, 畜産, 養蠶, 其他 등으로 層化하였다. 이와같이 層化를 하고 第1次抽出로 里洞(調查區)을 층화확률비례 추출에 의하여 標本을 抽出하고 추출된 조사구에서 耕地規模順으로 全農家를 배열하여 系統抽出하였다.

(2) 調查對象 및 調查方法

標本으로 選定된 310個地區에서 標本農家로 抽出된 3,100標本家口를 對象으로 調查한다.

그리고 調查方法은 日計簿를 農家에 備置하여 그날 그날의 農家經濟의 動態를 農家에서 직접 記帳하며 記帳能力이 없는 農家は 調查員이 代理記帳한다. 그리고 財産臺帳인 調查原簿는 年2회(年初와 年末) 調查員이 直接調查記帳하는 方法으로 農家財産의 利用實態, 變動狀態, 在庫農産物, 生産資材, 現金, 準備金 및 借入金 狀況 등을 파악한다.

(3) 調查事項과 項目의 分類

農家經濟調查는 農家經濟 및 經營의 實態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標本農家の 概況으로서 常住家口員 또는 同居人에 대한 經營主와의 關係, 年齡, 職業, 教育實態, 勞動能力 및 就業狀況, 耕地面積 등을 조사한다. 여기서 家口員 혹은 同居人은 3개월 이상 항시 동거하는 사람이며 혈연관계가 없는 식모, 유모, 하숙생이나 머슴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勞動能力은 實勞動能力으로 평가하며 特別한 이상이 없는한 연중 勞動能力의 變化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耕地面積은 自作耕地와 借用耕地에 한하여 조사한다.

둘째는 標本農家의 收入 및 支出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複式簿記의 원리를 이용한 單式簿記에 의하며 收入에는 농업수입, 兼業收入 및 事業以外 收入인 勞賃, 給料, 임대료, 이자수입과 사례금, 송금보조, 피증보조 등으로 구성된 移轉收入 및 財産의 收入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그리고 支出은 農業支出, 兼業支出 및 事業以外的 支出인 차입금이자, 조세공과금과 가계비, 분가지출 및 재산적 지출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셋째로 勞動時間 및 勞動日數는 所得的 노동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家計消費勞動을 조사하지 않는다.

넷째로 農家財産은 표본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 몇가지 재산은 제외한다. 즉 家計用 資産, 農外用 資産(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소식물과 소농기구, 경영내부의 中間性產物과 副產物등이다.

이와 같이 조사항목은 모든 經濟活動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項目 分類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품분류, 수입원천 분류, 종류별 및 용도분류의 방법 등에 의하였으나 현재의 농가경제 여건과 조사결과와의 이용을 감안하여 다소 便利主義를 택하였다. 이를 收入部門, 支出部門, 農家財産部門으로 나누어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農家經濟 收入部門

농가경제조사 항목중 수입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收入源泉 및 種類別로 事業收入, 事業外收入, 財産的收入, 移轉收入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農家經濟 收入部門 調查項目

事 業 收 入		事 業 外 收 入	移 轉 收 入	財 產 的 收 入
農業收入	兼業收入	勞 賃	사 례 금	固定資産의 賣却
農作物收入	原始取得物	給 料	송금보조	流動資産의 減少
農作物以外收入	林水產物	賃貸料 및 利子	피증보조	借入金의 增加
	農産加工	家事雜收入	퇴 직 금	
	商工鑛業			
	서비스業			
	其他兼業			

Ⅶ. 家計 및 物價統計

사업수입은 자가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성과인 수입을 계산하는 것으로 農業收入과 兼業收入으로 분류하며 세부항목으로는 각 收入源泉別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농업수입은 農作物收入과 農作物以外收入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작물 수입은 미곡, 맥류, 잡곡, 서류, 채소, 특용작물, 과일, 화훼, 기타 농작물 및 농산물 부산물 수입을 말하고 농작물 이외수입은 축산물 양잠, 기타 농작물 이외의 수입을 포함한다.

또한 兼業收入은 원시취득물, 임산물, 수산물, 농산가공, 상공공업, 서비스업, 기타 兼業收入을 말한다.

事業外收入은 自家經營 以外的 收入으로서 노임, 급료, 임대료 및 이자, 가사잡수입 등의 수입이며, 移轉收入은 농가의 비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收入으로서 사례금, 송금보조, 퇴직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財産的收入은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수입과 차입금에 대하여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당 금액을 각각 계상한 것이다.

2) 農家經濟 支出部門

農家經濟 支出部門 調查項目

事業 支出		事業外支出	租 稅 公 課	分 家 支 出	家 計 費	財 產 的 支 出
事業支出	兼業支出					
諸 資 材 費	原 始 取 得 物	借 入 金 利 子	各 種 稅 金 公 課 金	分 家 時 分 是 用	飲 食 物 費 光 熱 水 道 費 教 育 · 教 養 娛 樂 費 住 居 費 被 服 及 洗 滌 費	固 定 資 產 的 購 入 流 動 資 產 的 增 加 借 入 金 的 少
勞 賃	林 產 物	農 外 就 業 用 費				
修 理 費 及 賃 賃 料	水 產 物	財 產 移 用 收 入 을 爲 한 支 出				
其 他 事 業 支 出	農 產 加 工 商 工 鑛 業 서 비 스 業					

농가경제 조사항목중 지출부분은 用途分類 및 種類別로 事業支出, 事業外支出, 家計費, 租稅公課金, 分家支出 및 財産的支出로 각각 분류하여 항목을 설정하였다. 事業支出은 농업지출과 兼業支出로 구성하였고, 農業支出은 농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출되는 諸자제비, 노임, 수리비 및 임차료와 기타 농업지출로 분류되는데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영농광열비, 동물비, 사료비, 양잠비, 자재 및 원료, 노

입, 수지, 임차료, 도정료, 농사비, 영농잡지출이 여기에 속한다.

兼業支出은 農外事業을 위한 諸費用 및 用品購入費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시 취득물, 임산물, 수산물, 농산가공, 상공공업,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事業外支出은 농업지출이나 농외지출에 계산하기 곤란한 비용을 분리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차입금이자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租稅公課金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또한 分家支出은 分家時 소요되는 비용을 분리하여 계산한 것이며 財產的支出은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지출과 채무상환에 의한 차입금 감소 등을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家計費는 농가의 생계에 필요한 농산물 소비, 구입용품 및 기타 잡비용이 포함된다.

3) 農家財產

농가재산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負債의 總額을 말한다. 농가는 이러한 계산으로 經營活動과 消費活動을 하며 여기에는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으로 분류되는 農家資産과 농가가 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차입금, 미불금 등의 負債項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농가는 經營과 家計가 未分離狀態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현금과 같은 자산은 가계용 혹은 경영용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農家資産은 農業經營에서 生産手段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 대농기구, 대동물, 대식물 등의 자산을 말하며,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매년 사용함에 따라거나 또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가치나 用役性이 소실되므로 減價償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土地는 내용년수가 영구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한편 流動資産은 유동적이며 처분하기 쉽고 또한 用役性 면에서는 보통 1회에 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소동물, 재고농산물, 재고생산자재가 포함된다. 流動資産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자산으로 변형될 수 있고 또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농가보유 현금, 예저금, 대부금, 보험금, 유가증권, 계, 미수입금 등이다.

(4) 調查結果의 公表와 利用

농림수산부는 농가경제조사의 年間 集計結果 및 月別 集計結果를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書」로서 年1回 발간하여 公表하고 있다.

Ⅶ. 家計 및 物價統計

同보고서는 農家經濟의 構造와 動向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이용에 대한 時系列分析이 가능하도록 1회의 보고서에 10년까지의 자료를 계열화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統計需要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생산된 통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있다.

라. 漁家經濟調查

(1) 調查目的 및 沿革

農村經濟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農水產施策의 基礎資料를 提供하며, 또한 沿近海零細漁業을 經營하는 漁民의 漁業經營形態把握과 同時에 漁家經濟動向과 漁村社會의 變化過程 등을 把握하여 漁民所得增大를 위한 諸般施策樹立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 調查 第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에 들어서면서 漁家經濟實態를 正確히 把握할 目的으로 1967년에 水產廳에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 調查를 依賴하여 實施하였으나 諸般調查與件의 未熟으로 1970년에 調查를 中斷하였다. 그 후 1974년부터 水產廳에서 이 調查를 위해 1970년 總漁獲 總調查의 調查結果를 利用하여 標本設計를 하고 새로 設計한 標本에서 1974년 7월 1일부터 50名의 調查員을 配置하여 試驗調查에 着手하였고, 1977년부터 本調查를 本格的으로 實施하여 一部 主要項目에 대하여 公表하였다.

1978년 農水產統計官室로 調查業務가 移管되면서 本格的인 調查를 實施하게 되었다. 1978년 漁業基本統計調查區를 基礎로 50개의 標本調查區에서 500標本漁家를 標本으로 抽出하고 調查要領 調查書式 등을 全面修正補完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調查하였다. 그 후 漁家經濟調查의 標本老朽化를 방지하고 調查結果值의 精度提高를 위하여 1980년 總漁業調查結果를 基礎로 1982년에 새로 50個로 層化하여 一層에서 1個調查區를 抽出하여 50個 標本調查區로 하고 1調查區에서 15漁家 總 750標本漁家를 對象으로 調查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調查結果를 電算處理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에 設計한 標本을 繼續使用하고 있어 標本이 老朽化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防止하고 標本設計 以後에 急速한 經濟發展에 따라 漁業도 近代化方向으로 서서히 變化되므로 標本の 改編이 要求되어 1989년에 다음 原則에 따라 새로 標本設計를 하였다.

첫째, 1980년 總漁業調查區와 1987년 漁業基本統計調查區의 數値를 比較檢討한 바 漁業階層別 漁業變動狀況이 크게 發生되어 1987년 漁業基本統計調查區名簿를 使用하여 二相二段抽出方法으로 하고

둘째, 推定値의 精度를 높이고 全國의 推定値와 標本誤差의 算出公式은 集計分析의 便宜를 위하여 層化할 때 自體加重標本으로 標本設計를 하였다.

셋째, 非漁船漁家 無動力船漁家 動力船漁家 養殖業漁家の 層化地標로 20個層으로 層化하고 確率比例抽出方法으로 1層에서 3個調查區를 抽出하여 60個標本調查區로 하고

넷째, 各調查區別로 均一하게 標本漁家를 뽑게 되면 調查區別로 相異한 擴大變數를 가져 推定過程이 複雜하게 되므로 抽出한 調查區別로 抽出率을 計算하여 系統抽出方法으로 815 標本漁家를 抽出하였다. 이 標本으로 1989년부터 調查하고 있다.

(2) 調查對象 및 調查事項

沿近海漁業을 經營하는 個人漁家로서 그 漁業形態가 漁船非使用漁家, 無動力船使用漁家, 動力船使用漁家, 養殖業漁家를 對象으로 調查하고 調查事項은 家口員의 狀況, 漁家の 支出, 漁家の 財産, 漁家の 勞動力狀況 및 기타 등이다.

(3) 調查方法

調査는 日計簿와 原簿로 區分하여 調査한다. 日計簿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標本漁家에 日計簿를 常時設置하여 每日 發生한 漁業經營形態 즉 支出事項을 漁家에서 直接 記帳케 하는 自計式 申告方法을 택하고 調査員은 수시 漁家를 訪問하여 日計簿記帳指導에 漏落誤記事項을 補完하고 있다. 그리고 原簿調査는 漁家の 財産狀態를 調査하기 위하여 年2회(年初와 年末) 實施하고 있으며, 이

Ⅶ. 家計 및 物價統計

는 調査員이 直接記帳하는 事項으로 漁家財産의 利用實態狀況 在庫農水産物 生産資材, 現金, 準備金, 및 借入金狀況 등을 他計式聽取調査方法에 의하여 調査하고 있다.

(4) 調査結果의 公表

조사결과는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와 「농림수산통계연보」에 수록 發刊하고 農家經濟調査와 같이 每年 生産된 統計資料를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에 축적하고 있다.

마. 漁業經營調査

(1) 調査目的 및 沿革

주요 漁業의 經營實態를 파악하고 각종 經營指標를 산출하여 어업경영의 합리화 및 수산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目的이 있는 이 調査는 1962년부터 水産廳 주관으로 實施하였으며, 1976년에 水協中央會로 이관되어 水産廳長]訓令 제233호에 의거하여 2년간 試驗調査를 한 끝에 1978년에는 調査對象 業種分類 標本抽出 調査方法 등을 개선하여 본격적인 調査가 實施되었다. 그 후 1983년에 水産廳長 許可漁業과 定置網漁業의 標本을 전면 재조정하고 일부 漁業을 통폐합하여 現實的으로 개편한 후 현재는 分期別로 조사를 하고 있다.

(2) 調査對象 및 調査事項

1척 또는 수척의 어선을 가지고 販賣를 목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하나의 漁業經營體를 조사단위로 하여 水産廳長許可漁業(近海漁業) 17개 업종중 15개 업종과 定置網漁業(免許漁業) 8개 업종중 2개업종을 調査對象으로 하여 資産 및 負債, 作業상황, 수입지출상황, 어업자금 지급상황등을 조사한다.

(3) 調査期間 調査方法 및 調査結果發表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調査하며 調査方法은 抽出된 標本經營體의 經營주가 自計拭으로 작성한 月別記帳資料(어업경영일기장)를 기초로 市·郡 調査員이 매월 集計하여 이를 水協中央會에 제출하여 中央會調査部에서 이를 집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이 調査結果는 「어업경영조사결과보고서」에 수록 매년 1회 발간되고 있다.

3. 物價統計

가. 日帝時代의 物價指數

이 당시의 물가지수에 관한 통계로는 1910년 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였던 京城都賣物價指數 및 1911년 3월 기준 京城商工會議所의 京城重要商店 都賣物價指數, 1936년에 같은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 小賣物價指數가 있었다.

(1) 都賣物價指數

(가) 沿革

도매물가지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時系列이 긴 경제통계의 하나로 국내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物價統計이다.

우리나라의 도매물가지수는 1910년에 당시의 발권은행이며 현재의 한국은행 전신인 舊 韓國銀行에서 최초로 「京城都賣物價指數」를 편제해온 이래 해방직전인 1945년 6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지수는 1939년 1월에 1936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한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쳤다.

(나) 編制內容

1) 1910년 7월 기준지수

이 지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물가통계로서 舊 韓國銀行에서 시작하여 合邦되던 해인 1910년 11월에 발행한 '月報' 7호에 「京城重要物價表」의 이름으로 실렸는 바 동지수의 편제내용을 보면

- ① 품 목 수 : 30개(국내생산품 16個品目, 수입품 14個品目)

Ⅶ. 家計 및 物價統計

② 분 류 : 조사대상품목을 곡물, 식료품, 직물원료, 직물, 건축재료, 연료, 비료, 기타등 8개로 분류하였으나 類別指數는 산출하지 않고 國內生産品 平均 및 輸入品 平均과 總指數만을 산출

品目別 分類內容

分 類	品 目 數	分 類	品 目 數
곡 물	7	건 축 재 료	3
식 료 품	6	연 료	4
직 물 원 료	2	비 료	2
직 물	2	기 타	4
		총 지 수	30

③ 산 식 : 단순산술평균법

④ 산출기간 : 1910년 7월부터 1945년 6월까지(단, 1936년 1월이후의 지수는 공식계열로 이용되지 않음)

⑤ 조사지역 : 경성(현재 서울)

⑥ 조사주기 : 월3회

이 지수는 물가지수로서의 정밀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처음으로 都賣物價指數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해방직전까지 同指數의 편제가 계속되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現行 都賣物價指數의 前段階라 할 수 있다.

2) 1936년 기준지수

이 지수는 1910년 이후 편제되어 왔던 京城都賣物價指數의 편제방식을 1차 개편한 것으로서 1936년 평균물가를 기준년도물가로 하여 1939년 1월에 완성되었으며 1910년 7월 기준지수와 병행하여 '京城都賣物價調'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 바 동지수의 편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품목을 8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상품을 10개 類別로 분류하여 그 類別指數를 산출하였으며 物價指數 算出方法으로서는 幾何平均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① 품 목 수 : 80개 품목

② 분 류 : 조사대상품목을 곡물, 식료품, 직물원료, 직물, 건축재료, 금속

류, 연료, 비료, 공업약재, 잡품등 10개 품목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品目別 分類內容

分 類	品 目 數	分 類	品 目 數
곡 물	10	연 료	8
식 료 품	18	비 료	3
직 물 원 료	5	직 물	13
건 축 재 료	6	공 업 약 재	3
금 속 류	6	잡 품	8
		총 지 수	80

③ 산 식 : 단순기하평균법

④ 산출기간 : 1936년 1월부터 1949년 4월까지(단, 1945년 8월하순 기준지수와 1936년 기준인 1947년 1월 이후의 지수는 공식계열로 이용되지 않았음)

⑤ 조사지역 : 경성

⑥ 조사주기 : 월 3회

이 지수는 單純算術平均法으로 1936년 평균과 1945년 8월하순 평균의 2가지 종류의 기준으로 발표되었다가 1948년 3월부터 다시 산식을 單純幾何平均法으로 변경하고 1936년 1월까지 과거 시계열을 소급 정비하였다.

(2) 小賣物價指數

우리나라에서 소매물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指數化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1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全鮮商議小賣物價指數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며 그후 1945년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이 이를 인수하면서 보다 정밀한 小賣物價指數가 편제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 美軍政下의 物價統計編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商品別, 地域別 物價統計

당시의 물가지수를 제외한 物價統計로는 대부분이 상품별 물가통계와 지역별 물

VII. 家計 및 物價統計

가통계로 구분된다.

(가) 商品別 物價統計

상품별 물가통계는 1909년(明治42年)이후의 시계열이 유지되고 있는데 주로 去來比重이 높은 중요 상품을 골라 商品의 特性別로 물가를 조사하여 편제하였다.

예를 들면 곡물류의 경우 商品의 質에 따라 上品 및 下品등 등급별로, 油類의 경우 金露, 一鶴등 商標基準으로, 松板의 경우 六分, 八分, 正一寸등 두께기준으로 나누었다.

한편 物價의 단위는 개별상품의 통상적인 商去來單位別로 나누었는데, 大豆, 小豆등 곡물류는 石단위로, 牛皮, 牛肉, 食鹽, 砂糖 등은 斤단위로, 和金巾, 洋金布 등은 段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物價의 金額은 圓단위로 작성하였다.

(나) 地域別 物價統計

지역별 물가통계로는 1910년(明治 43年)이후의 시계열을 가진 '京城物價表'가 작성된 이래 서울을 비롯한 仁川, 釜山, 大邱, 木浦, 平壤, 新義州, 清津등 전국의 주요 도시 및 도별로 중요상품가격을 조사하여 물가통계를 작성하였다.

조선은행 통계월보 1940年(昭和15年) 1月號에 수록되어 있는 '京城重要物價'를 보면 곡물류6, 식료품6, 직물원료2, 직물2, 건축재료3, 연료4, 비료2, 기타 4개품목등 총29개 중요품목의 月別價格이 品目別 通商去來單位別로 圓貨金額基準으로 수록되었다.

조사대상품목은 조사대상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사대상기관마다 조사대상처나 조사시기가 서로 달라 동일품목에 대한 가격이 다소 다른 경우가 흔히 있게 된다.

(4) 物價調查機關 및 收錄冊字

이상과 같이 물가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總督府에서는 다음과 같은 「朝鮮物價調查規則」을 制定하였다.

朝鮮總督府令 第209號

朝鮮商工會議所令 第十二條의 規定에 의하여 朝鮮物價調查規則을 아래와 같이 定함.

1937(昭和12)年 12月 27日

朝鮮總督 南 次 郎

朝鮮物價調查規則

第一條 朝鮮總督이 指定한 商工會議所는 그 地域內에 있어서 都賣物價 및 小賣物價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前項의 調査를 하여야 할 商品의 品目, 建物 및 單位에 대해서는 別途로 이를 定한다.

第二條 前條의 商工會議所는 그 地域內의 一定한 都賣業者에 대하여 每日의 都賣價格을 調査하여 그 月의 平均價格을 翌月 10日까지 朝鮮總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三條 第一條의 商工會議所는 그 地域內의 一定한 小賣業者에 대하여 小賣價格을 每月 調査하여 그 月의 末日까지 이를 朝鮮總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調査는 每月 16日에 이를 하여야 한다. 但, 16日에 調査를 할 수 없거나 또는 適當치 않다고 認定되는 商品이 있을 경우에는 그 商品에 대해서는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近接日에 이를 하여야 한다.

附 則

本令은 1938(昭和13)年 1月 1일부터 이를 施行한다.

그 당시 조사된 物價에 관한 통계 또는 統計表는 1931년 기준으로 약 246종에 달한다. 이들 통계는 주로 각 기관이 발행하는 月報 또는 年報에 수록되고 있는 바 그 당시 발간된 각종 간행물을 참고로 하여 기관별 물가조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朝鮮總督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여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최초로 실은 '物價'통계를 보면 당시 去來比重이 높은 곡물류등 30여개 품목을 地方 8府(市)別로 조사해서 이를 평균하여 수록하고 있다.

한편 同 月報 1930年 7월호에 발표한 '物價 및 指數'를 보면 조사대상품목으로

Ⅶ. 家計 및 物價統計

곡물류5, 육류5, 조미료7, 음료10, 의류6, 연료6, 기타 4개품목등 총 43개 품목을 골라 各 類別로 한 指數總平均을 산출하여 수록하였다.

(나) 조선은행

1910년 11월에 발행한 「조선은행 월보」7호에 발표된 ‘京城重要物價表’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의 표시이자 우리나라 물가통계의 표시를 이루고 있다.

1925년 11월호 「조선은행 통계월보」의 ‘各地重要物價’란 통계에는 각종 국내생산물 11종, 각종 수입품 12종을 골라 각 지역별로 물가를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同 月號에 실린 ‘京城重要物價’라는 통계를 보면 국내생산물 16종 및 수입품 14종을 택하여 1910년을 기준년도로 삼아 物價指數를 산출하였다. 물론 이 내용은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발간한 「조선금융사항참고서」에도 ‘京城物價表’ 및 ‘京城重要物價指數表’란 통계명으로 실려있다.

국내생산물 : 玄米, 精米, 大麥, 小麥, 大豆, 眞荏, 명태, 소금, 철원油, 松挽材, 松薪,
炭, 朝鮮紙, 牛皮, 牛蠟

수입품 : 맥분, 精糖, 醬油, 清酒, 麥酒, 綿絲, 和金巾, 棉, 石油, 石炭, 燐寸, 木材, 平
鐵, 洋紙

(다)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에서 발간하는 「조선금융사정개관」 1924年 상반기호에 ‘京城重要物價指數表’, ‘京城重要生産品 物價 및 指數’, ‘京城重要輸入品物價 및 指數’등을 실고 있다. 이 표에서도 국내생산물 16종, 수입품 14종을 조사하였다.

(라) 각 지방상공회의소등

각 지방상공회의소에서 각 지방의 물가를 조사하였음을 각 지방상공회의소 발행 「商議月報」 또는 「商議年報」에 실린 각종 물가통계표에서 알 수 있다.

경성상공회의소에서의 발간한 1924년 1월호 「朝鮮經濟雜誌」에 실린 ‘京城主要商品 小賣物價表’를 보면 주요상품의 小賣價格 및 공설시장가격이 조사 수록되어 있다.

1927년 「京城商工會議所 統計年報」에 수록된 ‘京城重要商品 都賣物價指數表’를 보면 1911년 3월을 100으로한 물가가 50여 상품별로 조사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同 年보에 실린 ‘京城主要品小賣物價’통계표에는 30여종의 商品名別 소매

가격이 조사 수록되어 있다. 한편 경성상공회의소에서는 1936년 부터 소매물가의指數化作業이 시작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消費者物價指數로 이어져 왔다. 이 물가지수는 1945년 조선은행이 인수하여 편제하다가 1965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끝으로 물가통계중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로서 조선주둔·憲兵隊司令部가 1911년 1월에 조사한 ‘朝鮮各地物價調查概要’라는 책자에는 각 도내의 대표적인 몇개 지역을 선택하여 9個類 100種의 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여 그 최고·최저치 및 연평균치를 수록하였다. 조사시기는 분기별로 1회 조사하였다.

나. 都賣物價指數

(1) 연혁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都賣物價指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계열이 긴 經濟統計의 하나로 국내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910년에 처음으로 편제된 이래 198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9차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7월과 6.25동란중이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9개월간 두 번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편제되어 왔다.

즉 1910년 7월 기준지수는 서울지역의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單純算術平均法에 의하여 편제되었으며, 1936년 기준 지수에서는 품목수를 80개로 확대함과 더불어 單純幾何平均法으로 산식을 변경하였다. 광복후 1947년 기준지수는 품목수를 45개로 오히려 축소조정 하였으나 산식은 加重總和法(라스파이레스식)을 적용함으로써 편제산식을 進一步하였다.

한편 1955년 기준지수부터는 편제방법에 있어 現指數體系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중치를 도입 적용한 基準時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 修正算式)을 채택하여 근대적인 지수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품목수도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화와 상대가격

VII. 家計 및 物價統計

都實物價指數의 編制方法 變遷

	1910年 7月基準指數	1936年 基準指數	1947年 基準指數	1955年 基準指數	1960年 基準指數	1965年 基準指數
算式	單純算術平均法	單純算術平均法	加重總和法	基準時加重算術平均法	左 同	左 同
品目數	30	80	45	199	360	471
加重值推計 (또는 品目 選定) 基礎資料	有意選定	有意選定	關係機關의 行政統計	韓國銀行의 鑛業及製造業 事業體調查	鑛工業서비스	65年國民所得 推計資料 63年產業聯關 分析資料
基準時	1910. 7	1936	1947	1955	1960	1965
調查地域	서울	左 同	左 同	10個都市(韓 國銀行本支店 所在地)	左 同	左 同
調查頻度	月3回	月3回	週1回(金)	月3回(農產食 用品月 6回)	月3回(5日, 15 日, 25日)	左 同
基本分類	商品分類 —大分類2 (生産品과 輸 入品)	商品分類 —大分類10	商品分類, —大分類8	商品分類 —大分類10 —中分類34 —小分類12	商品分類 —大分類11 —中分類37 —小分類17	商品分類 —大分類12 —中分類52 —小分類17
特殊分類	—	—	—	穀物과 穀物 以外 生産財과 消 費財	穀物과 穀物 以外 生産財과 消 費財	穀物과 穀物 以外 食料品과 食 料品以外 生産財 原 材 料 建 築 資 材 其 他 消 費 財 耐 久 財 非 耐 久 財
算出期間	1910.7~1945.6	1936.1~1949.4	1947.1~1961.4	1955.1~1963.12	1960.1~1967.12	1965.1~1971.8

都實物價指數의 編制方法變遷(계속)

1970年 基準指數	1975年 基準指數	1980年 基準指數	1985年 基準指數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523	613	848	867
68年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 69,70年生産者 出荷指數	75年 鑛工業統計調查暫定集 計表 75年 貿易統計 73,74,75年 農林統計年報 등	84年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80年 貿易統計 78,79,80年 農林統計年報 및 水産物統計年報 등	85年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85年 貿易統計 85年 農林水産統計年報 등
1970	1975	1980	1985
15個都市(韓國 銀行本支店所 在地 및 群山, 蔚山)	16個都市(韓國銀行本支店 所在地 및 群山, 蔚山)	15個都市(韓國銀行本支店 所在地)	16個都市(韓國銀行本支店 所在地)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商品分類 -大分類13 -中分類46 -小分類65	商 品 分 類 -大分類15 -中分類59 -小分類46	商 品 分 類 -大分類15 -中分類70 -小分類74	商 品 分 類 -大分類 4 -中分類 17 -小分類 37 -細分類 39 -細細分類157
食料品斗食 料品以外 原資材 原材料 建築材料 其他(燃料,電 力及機械器具) 資本財 消費財 耐久財 非耐久財	食料品·食料品以外 食 料 品 食料品以外 用途別 原資材 資本財 消費財 產業別 農林水産品 鑛産品 工産品 原資材内外依存別 輸入原資材高依存商品 輸入原資材低依存商品 輸入原資材依存商品	食料品·食料品以外 食 料 品 食料品以外 에너지·에너지以外 에너지 에너지以外 用途別 原資材 資本財 消費財 産業·業種別 農林水産品 鑛産品 工産品 原資材内外依存別 輸入原資材高依存商品 輸入原資材低依存商品 輸入原資材依存商品	商 品 別 食料品·食料品以外 食 料 品 食料品以外 에너지·에너지以外 에너지 에너지以外 用途別 原資材 資本財 消費財 工業構造別 輕工業 重化學工業 原資材内外依存別 輸入原資材高依存商品 輸入原資材低依存商品 輸入原資材依存商品
1970.1~1977.3	1975.1~1982.9	1980.1~1987.12	1985.1~

체계의 변동 등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수에 반영시키기 위해 매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함으로써 지수의 현실반영도가 제고되어 왔다.

(2) 現行指數의 特徵

현재 편제하고 있는 1985년 기준지수는 1980년 이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신규상품의 출현과 석유류 관련제품 가격안정 등에 기인한 상대가격체계의 변동, 그리고 유통구조의 근대화 및 소비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가중치구조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포괄품목을 조정함으로써 지수의 정도를 높이고, 국민소득통계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 여타 경제통계와 기준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상호비교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 개편지수에서는 산업부문별지수를 중시하는 선진국의 물가지수 편제추세에 부응하고 산업연관표 등 여타 통계와의 연결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기본분류체계를 종래의 상품분류에서 산업분류로 전환하였으며, 제조업 성격을 띠는 서비스 부문인 전력(상업용, 농업용), 수도 및 도시가스를 지수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지수포괄범위를 확충하는 등 지수의 이용도 및 현실 반영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985년 기준지수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기본분류를 종래 상품의 속성 및 용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산업분류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에따라 산업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등 여타통계와의 연결 이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둘째, 전력(농업용 및 상업용), 수도 및 도시가스 등 제조업 성격을 띠는 일부 서비스부문을 지수대상품목에 포함하여 지수포괄범위를 확충하였다. 다만 도매물가지수의 개념상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정용 전력 및 수도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1980년 이후 급속한 성장으로 단일품목으로서 가중치가 비교적 크면서도 수급구조나 가격변동패턴이 상이한 경우에는 품목을 세분하여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수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종래의 지수에서

는 가중치가 0.2인 단일품목이었으나 개편된 지수에서는 규격별로 수급구조나 가격변동구조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본체, 컴퓨터 터미널 및 컴퓨터 프린터로 세분함으로써 각각 2.1, 0.9, 0.9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동종의 단일품목이라도 품질규격별로 거래구조가 크게 상이한 경우에는 품질규격별 거래액 비율에 따라 품목가중치를 분할해 줌으로써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가중치가 1.8인 참깨의 경우 품질규격인 국내산참깨와 수입참깨에 대하여 거래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1.3 및 0.5로 분할하였다.

(3) 품목수와 가중치 및 算式

상품 분류별 품목수와 가중치는 별표와 같다. 현행지수편제를 위하여 조사하는 품목은 867개로 이의 도매 가격변동을 基準時加重算術平均法算式에 의하여 指數를 算出하고 있다.

도매물가지수품목 및 가중치

분	류	품 목 수	가 중 치
총	지 수	867	1,000.0
농 립	수 산 품	57	149.3
광	산 품	16	17.5
공	산 품	790	790.5
	음 식 료 품 및 담 배	92	138.0
	석유·의복 및 가죽제품	86	70.1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8	16.8
	종 이 및 종 이 제 품	28	27.8
	화 학·석유 및 석탄제품	198	230.7
	비 금 속 광 물 제 품	41	39.4
	금 속 1 차 제 품	66	73.9
	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234	186.8
	기 타 공 산 품	17	7.0
	전 력·수도 및 도시가스	4	42.7

(4)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처

전국적인 도매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당행본지점 소재지 16개 지역에서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사대상품목을 전지역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생산지 또는 집산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조사한다.

그리고 가격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각 조사지역의 조사대상 품목별로 거래비중이 큰 3개 이상 조사대상처의 가격을 평균하여 당해지역의 평균가격으로 하고 지역별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함으로써 전국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5)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

가격조사는 월 3회(5일, 15일, 25일) 실시하고 3개 시점의 평균가격을 월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가격조사일이 휴무일이면 그 전일을 조사일로 하며 전일도 휴무일이면 정기가격조사일에 가장 가까운 일자로 한다.

가격자료는 고정조사대상처에 대하여 직접방문, 전화 및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일 현재 지정된 품질규격상품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업체 및 조합과 구입자 등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다.

다. 輸出入物價指數

(1) 沿革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輸出入物價指數는 1958年 10월에 1957年을 基準年으로 하고 123個의 輸出入商品(輸出32個, 輸入91個)을 調査對象品目으로 選定하여 編制한 것이 그 嚆矢이다. 當時는 貿易規模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編制方法도 未熟하였기 때문에 指數의 利用度가 낮았으므로 1964年末에 同 指數編制를 中斷하였다.

1960年代 들어서 對外指向的인 經濟開發計劃을 繼續 推進함에 따라 우리 經濟는

海外依存도가 深化되었고 그 結果 輸出入商品의 價格變動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增大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年 10月 石油波動을 계기로 대두된 國際資源波動으로 輸入原資材價格이 急騰하여 國內關聯製品의 價格上昇을 誘發함으로써 1973年 以後 2年동안 우리나라 經濟는 激甚한 物價高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海外商品의 需給 및 價格動向을 迅速, 正確히 把握할 수 있는 輸出入物價指數의 編制가 그 어느때보다도 切實히 要請되기에 이르렀다.

輸出價格指數 編制方法 變遷

	1957年 基準	1974年 基準	1975年 基準	1980年 基準	1985年 基準
算 式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	‘피셔’算式	‘라스파이레스’ 修正算式	左 同	左 同
品 目 數	輸出 32 輸入 91	輸出 118 輸入 101	輸出 134 輸入 116	輸出 216 輸入 147	輸出 233 輸入 178
加 重 值 資 料	輸出入通關統計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基 準 分 類	國際標準貿易 分類(SITC) 輸出 3 輸入 8	商品分類 輸出 12 輸入 13	商品分類 輸出 8 輸入 8	商品分類 輸出 9 輸入 9	産業分類輸出輸入 大分類 3, 3 中分類 12, 15 小分類 19, 16
特 殊 分 類		産業別 用途別 生産要所別 原資材内外依存別 市場形態別	産業別 用途別 貿易分類別	商業別 用途別 貿易分類別	用途別 工業構造別 貿易分類別 商品分類別
去 來 條 件	輸出: FOB 輸入: CIF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調 查 時 點	契約時点	左 同	左 同	左 同	左 同
調 查 基 準 日	月1回(15日)	月3回 (5日,15日,25日)	月1回 (20日)	左 同	左 同
其 他	1965年 以後 輸入 商品 都賣 物價指數로 對替	輸入商品 都賣物 價指數 廢止, 1971년까지 時系 列 遞及作成	算式變更으로 指 數系列 斷絶	1971~74年 ‘피 셔’式時系列을 ‘라스파이레스’式 으로 連結	基準分類를 商品 別分類로부터 産 業別分類로 變更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여 1974年을 基準時点으로 한 輸出入物價指數를 1971年가

Ⅶ. 家計 및 物價統計

지 遡及 編制하여 1976年 1월부터 發表하게 되었다. 그 以後 第3次 經濟開發5個年 計劃의 完了와 더불어 諸般經濟指數의 基準年度가 1970年에서 1975年으로 改編된 에 따라 이 指數의 基準年度도 1975年으로 改編되었으며 貿易構造變化 및 相對價格變動 등에 따른 品目 및 加重值 構造變化를 指數에 反映시키기 위해 每5年마다 基準年度를 變更하여 왔다.

이번에 다시 諸經濟地標의 基準年度變更에 맞추어 輸出入物價指數의 基準年을 1980年에서 1985年으로 改編하였다. 이는 1980年 以後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持續的으로 伸張되었고 특히 1985年 以後 乘用車, VTR 등 技術集約的인 品目들의 輸出急增, 그리고 美달러貨 弱勢, 日本엔貨 強勢 및 國際金利下落 등 對外與件變動에 따른 輸出構造를 指數에 反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輸出面에서도 産業用機械類 등 資本再輸入의 꾸준한 增加勢와 1985年 以後 原油를 비롯한 國際原資材價格의 安定 등으로 輸入構造가 크게 變化되었으므로 이러한 貿易構造變化 및 相對價格體系變動을 指數에 反映시키고 國民所得統計난 餘他 物價指數 등의 基準年과 一致시킴으로써 諸經濟地標와 相互比較를 容易하게 하는 데 그 改編目的을 두었다.

(2) 現行指數의 特徵

현행 1985年基準 改編指數의 主要特徵은 都賣物價指數에 맞추어 分類體系를 産業別로 變更하였고 用途擴充을 圖謀하기 위해 價格表示方法을 多樣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調査品目の 細分化 및 明確化 등을 통한 價格調査結果의 精度提高를 主眼點으로 한 것인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基準分類體系를 從來의 商品別分類에서 産業別分類로 轉換하였다. 이에 따라 加重值推計過程에서 非選定品目들의 去來額을 處理하는 데 있어서 合理化를 기하는 한편 部門別指數를 重視하는 先進諸國의 編制方法을 導入하기 위한 基礎를 마련하였으며 85年基準 都賣物價指數의 分類體系와도 一致시킴으로써 海外要因의 國內物價波及計測을 容易하도록 하였다.

둘째, 價格表示方法을 契約通貨, 美달러化 및 圓化로 區分하여 각각의 指數를 作成하였다. 따라서 各 指數의 相互比較를 통해 利用目的에 따라 選擇해서 使用할 수

있으며 보다 現實的이고 正確한 物價分析이 可能케 되었다.

셋째, 調査對象品目の 細分化 및 明確化를 期하여 精度높은 價格調査 및 正確한 指數作成이 可能토록 努力하였다. 즉 同種의 商品이더라도 그 性格 用途 및 價格變動樣相이 相異한 品目を 細分化하였다. 예를 들면 簿板의 경우 從來의 指數에서 熱延簿板과 冷延簿板을 調査對象 規格으로 選定하고 各各의 規格指數를 平均하여 簿板의 指數를 算出하였다. 그러나 改編指數에서는 用途 및 價格變動樣相이 서로 다른 점을 考慮하여 熱延簿板과 冷延簿板을 獨立된 品目으로 選定함으로써 細分化하였다.

또한 品目名稱이 包括的이어서 品目特性을 잘 나타내지 못하거나 輸出入去來에 서 事實上 通用되지 않는 名稱은 實際 使用되는 品名을 採擇하였을 뿐만 아니라 可及的 都賣物價의 名稱과도 一致시키는 등 品目名稱을 正確히 하였다. 즉 過去指數에서는 綿上衣와 綿外衣는 別個品目이었으나 改編指數에서는 두 品目間의 用途 및 品目區分 名稱이 模糊했던 點을 考慮하여 綿자켓으로 統合하였다.

(3) 編製方法

(가) 品目數와 加重值

品目數는 輸出 233個 輸入 178個品目, 指數算式은 라스파이레스 修正算式을 이 용한다.

(나) 算式: 라스파이레스 修正算式

(다) 價格調査時点

輸出入商品價格은 輸出入契約價格을 調査함으로써 다른 어느 指標보다도 先行性을 갖도록 하였다.

調査價格으로는 契約時價格 以外에 通關時와 L/C來到 및 I/C發給時의 價格 등이 있으나 本 指標에서 특히 契約時의 價格을 採擇한 理由는

첫째, 契約時價格은 L/C來到 또는 I/L發給時와 通關時의 價格에 비해 보다 先行性이 있으므로 國內物價에의 事前的 影響計測이 可能하고

둘째, 通關時價格은 船積期間이 各各 다른 여러가지 商品價格이 通關時点에서 複合적으로 나타나므로 特定時点의 正確한 對外時勢를 把握할 수 없지만 契約時價

VII. 家計 및 物價統計

格은 同一時點에 있어서의 價格實勢를 把握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輸出物價指數 調査對象品目數

分 類	品 目 數	加 重 值
總 計	233	1,000.0
農 林 水 產 品	15	37.6
農 產 品	5	10.4
水 產 品	10	27.2
礦 產 品	1	4.0
工 產 品	217	958.4
飲 食 料 品	9	19.3
織 維, 衣 服 및 가 죽 製 品	67	308.8
木 材 및 나 루 製 品	4	6.0
종 이 및 종 이 製 品	4	6.4
化 學, 石 油 및 石 炭 製 品	33	152.8
非 金 屬 鑛 物 製 品	6	12.0
金 屬 1 次 製 品	21	74.8
金 屬 製 品, 機 械 및 裝 備	63	333.6
其 他 工 產 品	10	44.7

輸入物價指數 調査對象品目數

分 類	品 目 數	加 重 值
總 計	178	1,000.0
農 林 水 產 品	17	119.2
農 產 品	11	92.2
林 產 品	5	23.5
水 產 品	1	3.5
礦 產 品	13	227.7
石 炭	2	37.3
金 屬 鑛 物	5	20.5
非 金 屬 鑛 物	6	169.9
工 產 品	148	653.1
飲 食 料 品	5	15.7
織 維, 衣 服 및 가 죽 製 品	13	45.9
木 材 및 나 루 製 品	1	3.9
종 이 및 종 이 製 品	4	19.6
化 學, 石 油 및 石 炭 製 品	43	153.6
非 金 屬 鑛 物 製 品	4	11.9
金 屬 1 次 製 品	21	85.1
金 屬 製 品, 機 械 및 裝 備	54	313.8
其 他 工 產 品	3	3.6

(라) 調査基準日

輸出入價格은 去來頻度가 國內物價에 비해 적으므로 每日 20日을 基準으로 月1回 調査한다. 다만 價格調査日일이 休務日이면 그 前日을 調査日로 하되 前日도 休務日이면 定期價格調査日에 가장 가까운 日字를 價格調査日로 한다.

(마) 價格調査方法

價格調査는 固定對象處에 대한 直接訪問, 電話, 書面照會 등의 方法에 의하여 調査日 現在 指定된 品質現價商品의 契約價格을 調査한다.

美달러化表示指數 編制를 위한 適用換率은 뉴욕外換市場의 終場時勢의 月平均을, 圓화表示指數는 外國換銀行의 對顧客 電信換賣買率의 月平均을 利用한다.

(바) 貿易相對國

貿易相對國 選定은 品目別로 가장 높은 去來比重을 갖는 1個國을 原則으로 하였고 輸出入地域이 多邊化되어 있는 品目的 경우는 數個國으로 하였다.

라. 小賣物價調査 및 消費者物價指數

(1) 沿革

經濟企劃院에서 實施하고있는 小賣物價調査는 일찍이 1937년부터 商工會議所에서 着手하였고 그後 1945年 8月부터는 朝鮮銀行(韓國銀行전신)이, 그리고 1965년부터는 經濟企劃院에서 管掌하였는데 品目別價格調査와 指數를 1955年以後 基準時의 變更 調査品目的 增大 加重值의 改編 地域의 擴大등 5年마다 改編하여 6次에 걸쳐 現在에 이르렀다.

(2) 조사지역 및 對象店鋪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大田, 光州, 全州, 春川, 清州, 水原, 馬山등 11個市の 42個市場에서 2,800店鋪 및 事業場에서 實施하고 있다.

(3) 調査品目

VII. 家計 및 物價統計

消費者物價指數의 編制方式變遷

	1947年 基準指數	1955年 基準指數	1960年 基準指數	1965年 基準指數
算 式	基準時 加重總和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品 目 數	43	154	279	285
加 重 母 集 團	48年 서울시 1人當 購入量	55年 서울勞務者 및 俸給生活者 生計費 支出額	60年 서울시 家計 消 費支出額	65年 全都市家計 消 費支出額
基 準 時	1947	1955	1960	1965
調 查 頻 度 및 時 點	每 日	穀物, 菜蔬, 생선, 魚 類 및 調味料: 週1回 (金曜日) 肉類 및 嗜好品: 月2 回(10, 20日) 연초 및 서어비스: 月1回(15日) 房賃: 年4回	月3回(5, 15, 25日) 房賃 月1回(15日)	主要品目 月3回 (5, 15, 25日) 一般品目 月1回 (15日) 中央調査 月1回 (15日) 房賃 分期 1回
調 查 地 域	서 울	서 울	서 울	31 個 市
品 目 分 類	4大分類 總 指 數 43 飲 食 物 21 醫 療 品 14 燃 料 5 雜 品 3	5大費目10個中分類 總 指 數 飲 食 物 費 154 住 居 費 62 光 熱 費 16 被 服 費 8 雜 費 36 32	5大分類22中分類 總 指 數 279 飲 食 物 費 107 住 居 費 41 光 熱 費 7 被 服 費 50 雜品 및 서어비스 74	5大分類34個類別 總 指 數 285 食 料 品 費 109 住 居 費 38 光 熱 費 7 被 服 費 44 雜 費 87
作 成 機 關	朝 鮮 銀 行	韓 國 銀 行	韓 國 銀 行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計 算 期 間	1945年 8月~ 1957年 12月	1955年 1月~ 1963年 11月	1960年 1月~ 1966年 12月	1965年 1月~ 1971年 7月

消費者物價指數의 編制方式變遷(계속)

	1947年 基準指數	1955年 基準指數	1960年 基準指數	1965年 基準指數
算 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基準時 加重算術 平均式
品 目 數	338	349	394	411
加 重 母 集 團	70年 全都市家計 消 費支出額	75年 全都市家計 消 費支出額	80年 全都市家計 消 費支出額	85年 全都市家計 消 費支出額
基 準 時	1970	1975	1980	1985
調 查 頻 度 及 視 點	月3回(5,15,25日) 映畫觀覽料 月1回 (5日) 納入金, 房費 分期 1回	月3回(5,15,25日) 映畫觀覽料 月1回 (5日) 納入金, 房費 分期 1回	月3回(5,15,25日) 映畫觀覽料 집계 月1回(5日) 納入金 分期 1回	月3回(5, 15, 25日) 映畫觀覽料 집계 月1回(5日) 納入給 分期 1回
調 查 地 域	32 個 市	35 個 市	9 個 市	11 個 市
品 目 分 類	5大費目 37個類別 總 指 數 338 食 料 品 費 123 住 居 費 54 光 熱 費 7 被 服 費 54 雜 費 100	5大費目 37個類別 總 指 數 349 食 料 品 費 131 住 居 費 60 光 熱 費 7 被 服 費 57 雜 費 94	5大費目 37個類別 總 指 數 394 食 料 品 費 136 住 居 費 72 光 熱 費 9 被 服 費 67 雜 費 110	9大費目 42個中分類 11 個 少 分 類 總 指 數 411 食 料 品 費 153 住 居 費 17 光 熱 · 水 道 9 家 具 器 · 家 事 用 品 57 被 服 · 신 발 45 保 健 醫 療 26 教 育 · 教 養 娛 樂 59 交 通 · 通 信 16 其 他 雜 費 29
作 成 機 關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計 算 期 間	1970年 1月~ 1977年 3月	1975年 1月~ 1982年 8月	1980年 1月~ 1987年 12月	1985年 1月~

VII. 家計 및 物價統計

411個品目を 對象으로 價格을 調査하고있는데 이는 都市家計調査資料中 總消費支出上의 重要度 1/1,000以上の 品目を 選定한것이다.

(4) 調査頻度

大部分의 品目에 대하여 每月 5日, 15日, 25日의 3회에 걸쳐 價格調査를 實施한다. 그리고 집賃는 25日基準으로, 映畫觀覽料는 5日基準으로 月1回만 價格資料를 蒐集한다. 또한 各及學校納入金은 每分期末日基準으로 年4回만 調査한다.

그러나 모든 調査基準日이 休日일 경우에는 그前日 實施한다.

全都市消費者物價 品目數 및 加重值

分 類	品 目 數	加 重 值
總 指 數	411	1,000.0
食 料 品	153	379.9
住 居 費 및 家 具	74	179.9
光 熱 水 道	9	76.1
被 服 및 신 발	45	74.4
其 他 (教 育 · 雜 費 등)	131	289.9

都市別 指數品目數

	全都市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總 品 目	411	411	411	410	410	408	410	407	405	406	408	408
食 料 品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住 居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水道光熱	9	9	9	9	9	8	9	9	8	8	9	9
家具집기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被服신발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保險醫療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教育教養	59	59	59	59	59	59	59	59	58	58	58	58
交通通信	16	16	16	14	15	14	15	13	12	13	14	14
其他雜費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5) 價格資料蒐集

一般品目 및 서비스料金は 選定한 一定한 店鋪 事業場 家口 등을 調査하여 普遍的으로 去來되는 價格을 面接調査한다.

그러나 納入金이나 公共料金 등은 自計式 方法에 의하여 調査한다.

(6) 消費者物價指數의 編制要領

• 品目選定 및 加重值

1985年 基準으로 하는 指數의 加重值는 同年의 都市家計消費支出總額을 1,000으로 하여 品目別支出構成比가 높은 411個(全都市의 경우)品目を 選定하여 加重值를 算定하였다. 指數品目에서 除外한 商品指數 및 서비스料金は 選定된 同種品目에 配分(imputation)하였다. 한편 全都市指數를 作成할 때의 都市間加重值는 1985年 人口總調査의 家口數와 都市別支出額을 加重資料로 使用하였다.

• 指數算式……基準的加重法에 의한 라스파이레스(Laspeyres)算式으로 計算한다.

①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

$$\frac{\sum \frac{P_t}{P_o} W_i}{\sum W_a} \times 100$$

P_t : 都市別品目別比較時價格

W_i : 品目別 都市別 加重值

P_o : 都市別 品目別 基準時價格

W_a : 全都市의 品目別 加重值

② 서울 및 都市別 消費者物價指數

$$\frac{\sum \frac{P_t}{P_o} W_c}{\sum W_i} \times 100$$

Ⅶ. 家計 및 物價統計

Pt : 品目別比較時價格

Po : 品目別 基準時價格

Wc : 品目別加重值

ㄷ. 全國地價統計調查

韓國土地開發公社가 住宅價格變動狀況을 測定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實施한 調査로서 1984年 5월에 一般統計로 承認을 받고 1987年 1월부터 每分期別로 實施하고 있다.

(1) 調査對象地域

全國市區郡의 標準地 13,719地點을 對象으로 調査하고 있다.

(2) 調査頻度와 調査時点

每分期翌月 1日에 實施한다.

(3) 指數의 編制

1) 加重值

1987. 1. 1 現在의 全國 地價總額으로 地域別 用途別로 比例配分한다. 全國地價는 87年 1/4分期 全國地價統計調查 標準地 評價額으로 算出하며 行政單位 및 用途地域別面積은 86年 12月 韓國土地開發公社의 標準地管理方法에 의하여 算出하였다.

2) 指數算式

- 用途地域別指數 : 加重值總和法(Laspeyres 修正算式)

$$L_p^t = \frac{\sum \frac{P_{t_{ij}}}{P_{0_{ij}}} W_{ij}}{\sum W_{ij}} \times 100$$

i : 行政單位名

j : 用途地域

P_{ij} : 基準時點의 價格

P'_{ij} : 比較時點의 價格

W_{ij} : 行政單位別 用途地域別加重值

- 地目別指數 算術總和法

$$I = \frac{\sum P'_{ij}}{\sum P_{ij}} \times 100$$

i: 行政單位名

j: 地 目

P_{ij} : 基準時點의 價格

P'_{ij} : 比較時點의 價格

바.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查

(1) 調查目的과 沿革

農村物價는 농촌지역에 거래되는 農產物 및 農家購入品の 價格으로서 이들을 각각 종합하여 평균화한 것이 농촌물가의 수준이다. 이러한 農村의 價格과 賃料金の 動向을 파악하기 위하여 品目別로 價格調查가 행해지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物價指數가 작성된다. 현재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查는 農協中央會 調查部(금융조사과)에서 작성하여 指定統計 336-11-01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으로는 농촌물가 및 임료금에 대한 계절적 변동과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여 農村 所得推計와 農產物 價格政策의 기초자료와 農家패리티指數의 작성에 사용하고, 아울러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있다.

농협중앙회의 농촌물가 조사는 1956년 6월부터 당시 농업은행이 65개 농산물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地方物價調查」로부터 시작하여, 1958년 4월에는 「農村物價調查」로 개칭되고 조사대상도 25개 지역 15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 조사는 1964년 국내의 모든 經濟指數가 1960년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比較基準年度를 1960년으로 하였으며, 이후 매 5년마다 指數改編 作業에 착수(1970, 75, 80, 85년도

Ⅶ. 家計 및 物價統計

기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農村物價調査 品目數

類 別	品 目		數 增 減
	'85年 基準	'80年 基準	
農 家 販 賣 價 格 總 指 數	62	59	3
穀 物	17	17	—
青 果 物	25	24	1
畜 產 物	11	9	2
其 他	9	9	—
農 家 購 入 價 格 指 數	246	201	45
家 計 用 品	172	127	45
農 業 用 品	66	65	1
農 村 賃 料 金	8	9	△1

農村物價의 調査地域

道 別	調査地域數	調 查 地 域 名
京 畿	10	始興·光州·楊州·龍仁·安城·平澤·華城·驪州·江華·利川
江 原	7	溟州·旌善·平昌·洪川·鐵原·三陟·寧越
忠 北	8	清原·中原·槐山·丹陽·堤川·永同·報恩·陰城
忠 南	9	錦山·公州·扶餘·論山·洪城·禮山·瑞山·唐津·牙山
全 北	9	完州·沃溝·益山·南原·井邑·高敞·金堤·任實·扶安
全 南	13	光州·潭陽·谷城·光陽·昇州·寶城·長成·和順·海南·靈岩·務安·羅州·咸平
慶 北	14	義城·安東·迎日·清道·星州·金陵·善山·尙州·禮泉·榮豐·漆谷·軍威·月城·永川
慶 南	13	密陽·義昌·晉陽·固城·河東·居昌·陝川·金海·昌寧·山淸·咸安·咸陽·梁山
濟 州	2	北濟州·南濟州
計	85	

(2) 調査對象과 調査方法

본 조사는 農村販賣價格 調査와 農家購入價格 調査로 구분된다. 농가판매 가격 조사는 곡물, 청과물, 축산물 등 농가가 판매하는 1次 去來段階의 價格調査이며, 농

가구입가격 조사는 가계용품, 농업용품 및 농촌임료금 등 농가가 영업 및 가계를 위하여 구입하는 價格과 賃料金を 조사하는 것이다.

調査品目은 기준년도마다 조금씩 변동되고 있으나 대체로 품목이 추가되는 것이며, 1985년을 기준한 현재의 조사품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販賣價格 調査에 62개 품목, 購入價格 調査에 246개 품목을 선정하여 조사되고 있다. 또한 調査地域은 전국의 85개 군을 표본지역으로 선정하여 調査對象郡의 農協管内에서 농산물 거래량이 많은 5일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農村賃料金은 조사지역 관내의 農村部落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調査方法은 월2회(매월 15일 기준, 농촌 5일 시장의 전장과 후장일), 조사지역의 농협중앙회 군지부 조사원이 조사일에 출장하여 이미 지정된 상점에서 당일 거래된 대표적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單 價格의 品目(담배, 전기료, 우편료, 비료 등)은 본부에서 전화를 통하거나 서면조회를 통하여 조사한다.

(3) 指數의 計算 및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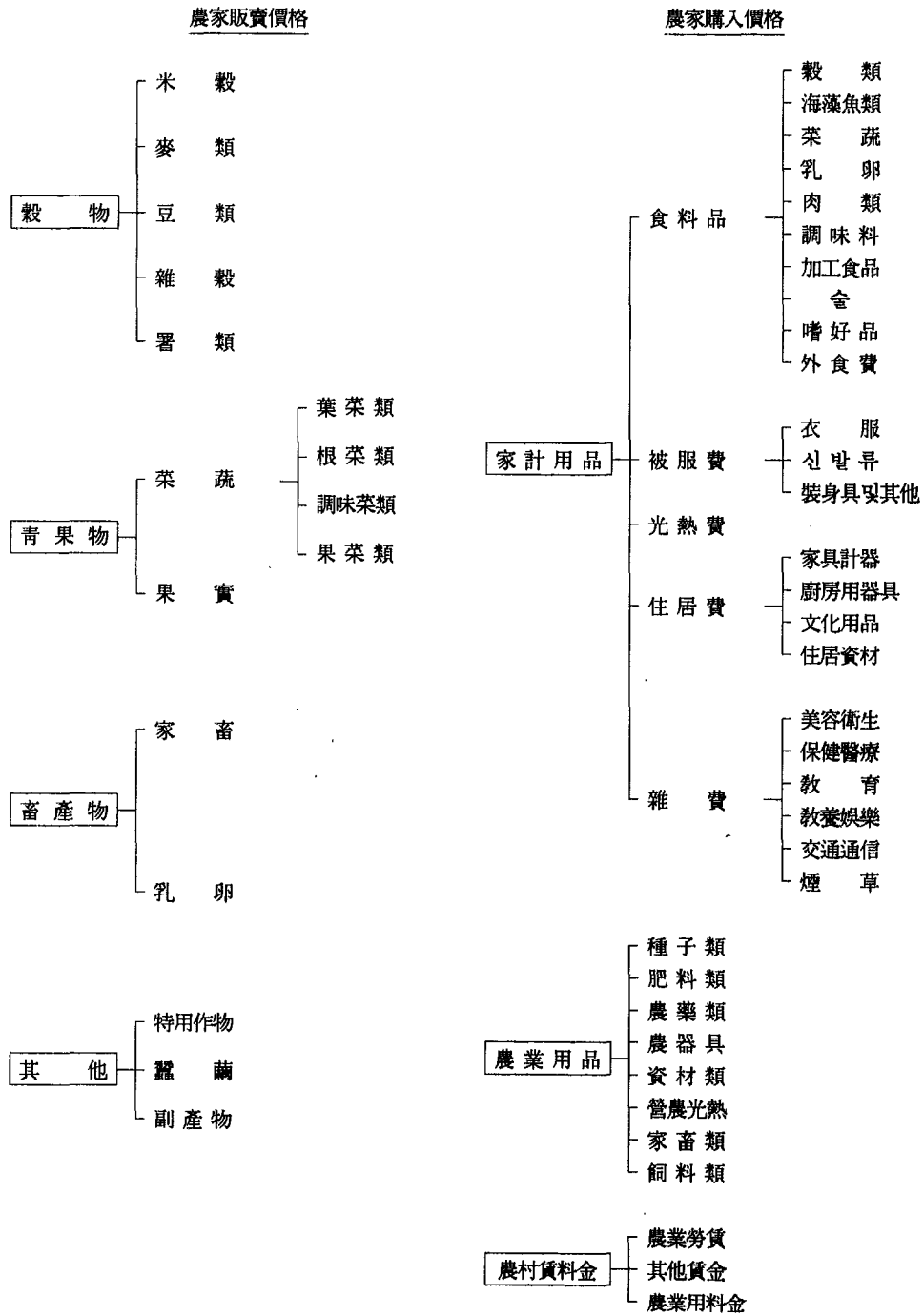
指數는 농가경제를 기초로 하여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하는 가격(販賣現金收入)을 종합한 農家販賣價格 指數와 농업경영이나 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자재류의 가격을 종합한 農家購入價格 指數의 2가지 계열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農村賃料金은 현금 이외의 現物 支出額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물가지수는 價格을 파악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생산자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소비단계)에 대응하여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農村物價指數는 농가수취가격에 관한 계열인 농가판매가격 지수와 농가의 지불가격에 관한 계열인 농가구입가격 지수라고 하는 종합하기 어려운 2가지의 계열로 되어있는 것이 다른 물가지수와 상이한 점이다.

이때문에 指數의 作成方法에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있다. 먼저 指數品目을 유사한 상품군별로 분류하여 類別 品目別 加重值를 작성한다. 그리고 품목별 지수에 품목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곱하여 加重하고 그 가중치를 종류별로 합계한 다음 類別指數를 산출한다. 여기서 基準時加重相對法 算式에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의 기준시 가중산술평균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종류별, 품목별 가

VII. 家計 및 物價統計

農村物價 및 賃料金 指數의 分類體系(1985年度 基準)



중치 산정에는 農家經濟調查結果를 이용하여 호당 농산물 판매금액 및 구입품의 지출금액에 대한 品目別 金額 比率를 각각 1/10,000로 나타낸 것을 이용하게 된다. 이것이 품목의 중요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시의 수량이 그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의 변화만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年平均指數 作成에는 季節 加重值를 이용하고 있다. 즉, 농산물 월별 계절 가중치로 개별 품목의 월별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연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年平均 指數를 작성한다. 아울러 季節加重值는 1985년도중 농가의 개별농산물의 월별 현금수입액을 해당품목의 월별 농가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월별 거래량을 추계한 후 거래량의 연간 총거래량에 대한 구성비로 산정하고 있다.

(4) 結果公表와 利用

본 조사결과를 「農協調查月報」와 「農協年鑑」에 수록하여 공표하고 있다. 다만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指數作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農家販賣價格指數에서 계절 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한 연평균 지수는 월별지수를 연간 누계하여 월수(12월)로 나눈 지수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年平均 指數와 月別指數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 백

VIII. 金融・財政統計

여 백

VIII. 金融·財政統計

1. 日帝時代の 金融·財政統計

가. 日帝金融統計

1910年 한일합병이후 金融機關統計로는 크게 貨幣發行, 金融機關의 預金 및 貸出金, 어음交換關聯統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銀行을 비롯한 金融機關의 業務와 관련된 계수를 統計化한 것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對象機關의 總額主義方式을 택하고 있다.

(1) 金融機關

(가) 銀行

1910년 한일합병이 강행되자 舊韓國銀行을 閉鎖하고 새로운 中央銀行으로서 1911년 8월 朝鮮銀行을 설립하였다. 이 당시 朝鮮銀行은 發券, 出納, 再割引業務 이외에 一般銀行業務도 兼營하였다.

또한 특수금융기관으로서는 1918년 10월 朝鮮殖産銀行이 農工銀行을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一般銀行으로서는 朝鮮商業銀行이 大韓天一銀行을 모체로 하여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를 병합하여 1912년에 발족하였고 그 이후 1920년까지 釜山 銀行등 19개 은행이 신설되었다. 이 당시의 국내경제여건으로 보아 일반은행의 數는 經濟規模에 비하여 過多한 수준에 달함으로써 金融機關의 經營難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金融制度研究會는 1928년 金融制度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벌이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말에는 日本系 銀行으로서는 第一銀行, 安田銀行, 三和 銀行만이 남게 되고, 朝鮮系 銀行으로서는 漢城銀行, 東一銀行, 朝鮮商業銀行, 大邱

商工銀行, 慶尙合同銀行, 湖南銀行 7개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수은행으로는 이제까지의 朝鮮殖産銀行외에 貯蓄銀行이 1929년 종래의 朝鮮殖産銀行業務중 貯蓄預金業務를 인수하여 貯蓄預金業務專擔銀行으로 발족하였다.

또한 1931년에는 기존의 각종 信託會社에 대한 법적 뒷받침으로서 朝鮮信託令을 공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신탁회사는 釜山信託등 5개사로 정리되었고 1932년에는 朝鮮信託會社가 5개 信託會社를 吸收하여 신설되었다.

그후 1937년 中日戰爭을 계기로 日本의 大陸侵攻이 본격화하자 日政은 金融機關을 戰費調達機能에 主眼點을 두어 金融機關을 再編成하기 위하여 1941년에 銀行令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大邱商工銀行이 商業銀行에, 慶尙合同銀行이 漢城銀行에, 湖南銀行이 東一銀行에 각각 흡수되고 이어 1943年 10月에는 東一銀行이 漢城銀行과 합병하여 朝興銀行으로 개편되었다.

解放直前 朝鮮의 銀行組織을 보면 中央銀行인 朝鮮銀行을 정점으로 하여 特殊銀行으로 朝鮮殖産銀行과 貯蓄銀行이 있었고 一般銀行으로는 朝興銀行과 商業銀行이 있었다.

1945년 6월말 현재 銀行店舖現況을 보면 本店을 뺀 支店數는 朝鮮銀行 16, 殖産銀行 74, 貯蓄銀行 21, 一般銀行 136개였다.

(나) 保 險

근대적 의미의 保險이 朝鮮에서 영업을 개시한 시기는 대체로 1870년대 門戶開放以後라고 볼 수 있겠다. 즉 朝鮮의 門戶가 개방되자 日本系 및 歐美系 保險會社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구미계 회사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철수하였고 19개 日本系 生命保險會社만이 1945년 해방직전까지 영업을 하였다. 한편 朝鮮系 生命保險會社는 1921년 설립된 朝鮮生命保險會社 하나뿐이었다.

이외에 官營生命保險으로서 1929년에 朝鮮總督府 遞信局에서 실시한 簡易生命保險이 있었는데 해방이후 遞信部가 이를 인수하여 國民生命保險으로 改稱되었다.

(다) 信 託

朝鮮에 있어서의 근대화된 信託은 日本人의 조선진출과 때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藤本合資會社가 설립된 이래 1918년 3월 朝鮮銀行法이 개정되

어 信託業務가 새로이 추가되고 同年 6월 朝鮮殖産銀行令이 제정 공포되면서 신탁업무가 규정됨으로써 새로운 信託制度가 도입되었다. 이후 80여개의 群小會社가 난립하여 업계가 혼란에 빠지자 1931년 6월 에는 朝鮮信託令을 제정하여 5개사로 대폭 정리하였다. 그리고 1932년 12월에는 朝鮮信託株式會社가 5개 신탁회사를 흡수하여 설립되었으며 업무내용도 종전의 金錢信託 위주에서 벗어나 有價證券, 金錢債權 등으로까지 擴大하여 오늘날과 유사한 信託業務를 영위하여 왔다.

(라) 無 盡

朝鮮에 무진업이 시작된 것은 19세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서울에 貯金會가 설립되면서 無盡業은 크게 번창하였지만 資金力不足, 經營不實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22년 4월 朝鮮無盡令이 제정되면서부터 會社型無盡業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36년 5월에는 無盡業令을 일부 개정하여 會社의 合併節次를 간소화 하는 동시에 1道 1社原則을 세워 群小無盡의 난립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1939년에 이르러서는 全國의 一元化方針에 의하여 전국의 9개사가 朝鮮無盡株式會社로 흡수되었다.

(마) 어음交換所

1910年(明治 43年) 京城어음交換所가 설치된 이래 普通銀行을 중심으로 店舖新設이 늘어나면서 어음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1943년말 현재 전국의 어음교환소수는 11개에 달했다.

(2) 金融機關統計

(가) 화폐발행관련통계

화폐발행관련통계로는 舊韓國貨幣發行·回收(引上) 및 流通高, 通貨流通展望(見込高) 및 朝鮮銀行卷發行高等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舊韓國貨幣發行, 回收 및 流通高關聯 統計는 1905年 이후의 발행고 및 回收實績을 金貨, 銀貨, 白銅貨, 靑銅貨로 나누어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매 2년마다 발간하는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 수록하고 있다. 通貨流通展望關聯 통계는 1910년 이후의 유통화폐종류별 즉 金貨, 補助貨 및 少額紙幣, 日本銀行卷, 朝鮮銀行券 등

VII. 金融・財政統計

金融機關現況

年	銀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金融組合	手形交換所	無盡會社	信託會社	
	總數		朝鮮銀行		朝鮮殖產銀行		朝鮮貯蓄銀行		普通銀行		聯合會	支部				本	支
	本	支出店張及所	本	支出店張及所	本	支出店張及所	本	支出店張及所	本	支出店張及所							
西紀 1910	11	59	1	12	6	27	-	-	4	20	-	-	120	1	-	-	-
" 1934	11	183	1	10	1	60	1	4	8	109	1	13	692	9	34	1	4
" 1935	10	187	1	12	1	60	1	5	7	110	1	13	698	9	31	1	5
" 1936	10	191	1	12	1	65	1	8	7	106	1	13	709	9	28	1	5
" 1937	10	196	1	13	1	65	1	10	7	108	1	13	719	9	23	1	6
" 1938	9	204	1	13	1	67	1	11	6	113	1	13	723	10	18	1	6
" 1939	9	212	1	14	1	66	1	12	6	120	1	13	723	10	10	1	6
" 1940	9	214	1	14	1	66	1	13	6	121	1	13	723	11	6	1	6
" 1941	7	219	1	14	1	66	1	14	4	125	1	13	722	11	5	1	7
" 1942	6	239	1	14	1	69	1	20	3	136	1	13	626	11	1	1	8
" 1943	5	241	1	15	1	69	1	20	2	137	1	13	614	11	1	1	8

道別 (1943年末)

總數	5	241	1	15	1	69	1	20	2	137	1	13	614	11	1	1	8
京畿道	5	43	1	1	1	4	1	3	2	35	1	1	61	2	1	1	-
忠清北道	-	5	-	-	-	2	-	-	-	3	-	1	29	-	-	-	-
忠清南道	-	19	-	-	-	8	-	1	-	10	-	1	41	-	-	-	-
全羅北道	-	14	-	1	-	7	-	2	-	4	-	1	44	1	-	-	1
全羅南道	-	23	-	1	-	9	-	2	-	9	-	1	65	1	-	-	1
慶尙北道	-	20	-	3	-	5	-	1	-	13	-	1	70	1	-	-	1
慶尙南道	-	33	-	1	-	6	-	2	-	24	-	1	64	1	-	-	1
黃海道	-	13	-	1	-	3	-	-	-	9	-	1	56	-	-	-	1
平安南道	-	17	-	2	-	3	-	3	-	9	-	1	39	2	-	-	1
平安北道	-	10	-	1	-	6	-	1	-	2	-	1	41	-	-	-	-
江原道	-	8	-	-	-	6	-	-	-	2	-	1	38	-	-	-	-
咸鏡南道	-	18	-	2	-	4	-	3	-	9	-	1	37	2	-	-	1
咸鏡北道	-	18	-	2	-	6	-	2	-	8	-	1	29	1	-	-	1

1. 朝鮮金融組合聯合會(1932年末以前에는 金融組合聯合會)及金融組合의 分은 年度末顯在로 함.
2. 朝鮮銀行은 元韓國銀行이라 稱하고 1909年 營業을 開始하여 同 1911年 朝鮮銀行이라 改稱함.
3. 朝鮮殖產業銀行은 1918年 營業을 開始함가 同時에 農工銀行을 合併함.
(同欄에 1910年末分은 農工銀行의 分인)
4. 無盡會社又是 信託會社는 朝鮮無盡業令又是 朝鮮信託業令에 依하여 營業免許를 受한 것을 揭記함.

으로 나누어 총독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總督府 統計年報 및 京城商議에서 매년 발간하는 京城商議統計年報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朝鮮銀行券 發行關聯 통계는 1906年(明治 39年) 이후의 조선은행권의 正貨準備發行高와 保證準備發行高, 조선은행권 발행준비종류별 통계를 正貨準備(金貨, 日本銀行券, 地金銀)와 保證準備(公債證券, 政府證券, 證券, 商業어음)로 나누어 매년 발간되는 총독부 통계연감과 매월 발간되는 조선은행 통계월보등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朝鮮銀行券發行高는 10錢卷으로부터 百圓卷까지 7가지 종류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조선은행권 발행고를 月別로 최고, 최저, 평균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나) 預・貸關聯統計

먼저 예금관련 통계로서는 1906년(明治 39年) 이후의 예금종류별(定期預金, 當座預金, 特別當座預金, 其他預金)과 소유자별(公共同業者 및 民間) 통계를 매월 작성하고 있으며 예금제도 신설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계월보등 공표용 책자에 수록하여 왔다.

은행예금은 다시 예금종별로 조선, 만주, 일본소재 지점별 계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조선은 본점과 仁川 등 12개 지점으로, 만주는 長春 등 4개 지점으로, 일본은 東京 등 2개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출금관련 통계에는 예금통계와 마찬가지로 증서대출, 어음대출등 대출방법별과 당좌대월, 할인어음, 荷爲替(換)어음등 대출종류별로 구분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금 및 회수액을 조선, 만주, 일본 각 지점별로 나누고, 대출거래선을 보통거래선, 동업자, 정부, 공공단체,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거래선과 동업자에 대한 대출금은 정기대출, 당좌대월, 할인어음, 통지대출등 대출금 종류별로 별도 작성하고 있다. 또한 보통거래선에 대한 대출금은 대출금 종류별로 나누어 조선, 만주, 일본소재 지점별로 구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은행대출금을 農業資金, 工業資金, 商業資金 및 雜資金등 사용대상별로도 작성하였는데 이는 현행 산업별 대출금편제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출금통계는 이외에도 각종 대출금 수혜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즉 不動產, 有價證券, 商品,

信用 등으로 나누어 貸出金 擔保別表도 1908年(明治 41年)이후 半季別로 작성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편제하고 있지 않은 쌀, 콩, 잡곡, 면화 등 중요상품에 대한 은행대출금도 1916年(大正 5年)이후 半季別로 작성하고 있다. 조선은행을 비롯한 은행 대출금을 朝鮮人, 日本人, 外國人 등 借入者 國籍別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는 바, 日本人에 대한 대출금이 1924年(大正 13年) 현재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日本人에 대한 편중 대출현상을 볼 수 있다.

은행이외의 기관으로 東洋拓殖會社, 信託・無盡會社, 金融組合聯合會 및 金融組合의 예금·대출금 통계도 은행통계처럼 자세하지는 않지만 예금·대출금 총합계 금액만을 수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통계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매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하는 「朝鮮金融事項參考書」와 총독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總督府統計年報」 및 京城어음교환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金融統計」, 조선은행에서 매월 발간하는 「朝鮮銀杏 統計月報」 등에 실려 있다.

(다) 금리관련 통계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1906年(明治 39年)이후 보통은행 및 농공은행의 예금·대출금리를 최초로 통계책자에 수록하였는 바 대출금리는 貸付金과 割引어음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최고, 최저, 보통금리를 日邊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當座預金과 定期預金으로 나누어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각각 최고, 최저, 보통금리를, 當座預金은 日邊기준으로, 定期預金은 預置期間이 장기임을 감안 年利基準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작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평균금리를 예금종류별로, 대출금의 경우에는 어음대출, 증서대출등 대출형식별 및 할인어음, 당좌대월등 대출종류별로 구분하여 대체로 최고, 최저금리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조선식산은행에서는 各地 組合銀行 및 道別로 銀行貸出金 平均金利表를 작성하여 不動產擔保, 證券擔保, 商品擔保 및 信用貸出金利를 최고, 최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고 당좌대월, 할인어음금리도 최고, 최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은행과 보통은행의 대출금 담보별 금리도 不動產, 證券, 貨物, 信用으

로 구분하여 최고, 최저금리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지역별 예금·대출금리는 金融組合 道別預金 및 대출금리와 金融組合聯合會 道別貸出金利가 있는 바 金融組合 道別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당좌예금, 거치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등 예금종류별로, 대출금리는 할인어음, 당좌대월, 보통대출금(담보대 및 무담보대), 특별대출금등 대출금 종류별로 최고, 최저금리를 수록하고 있다.

金融組合聯合會의 道別 및 金融組合聯合會別 金利도 예금종류별, 대출금종류별로 구분하여 최고, 최저, 보통금리를 수록하고 있다. 그밖에 貸金業者 平均金利가 貸付者와 借入者 國別로 나누어 朝鮮人間, 日本人間, 其他 外國人間, 朝鮮人對, 日本人, 朝鮮人對 其他 外國人間 등으로 구분하여 최고, 최저 및 보통금리를 分單位로 작성하고 있으며 貸金業者 金利는 京畿道등 전국 13개 道別로 작성하고 있다.

(라) 保險, 信託 및 郵便貯金關聯統計

保險관련통계는 크게 生命保險統計와 火災保險統計로 나누어지는데 火災保險은 다시 火災, 海上, 運送, 損害, 自動車, 硝子, 信用, 森林, 盜難, 航空 10개 종류로 구분된다.

保險統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新契約高, 解除契約高, 現契約高, 收入保險料, 支拂保險金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信託統計는 信託會社業務總況에 자세히 설명되어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한편 郵便貯金統計는 郵便貯金의 金額, 預入 및 불려, 預入者數와 1人當 平均預入金額, 地域別(朝鮮, 日本, 臺灣, 滿洲, 靑島등), 金額別(50錢부터 1萬圓以上까지), 職業別, 預入者 國別(朝鮮人, 日本人)등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였다. 이밖에도 郵便振替貯金表, 郵便貯金, 預金主別統計 등도 작성하였다.

(마) 어음交換關聯統計

어음交換關聯統計는 최초 어음교환소가 설치된 1910年(明治 43年) 京城어음交換所가 어음교환업무를 개시한 이래 동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어음교환관련 통계내용을 보면 어음교환소별 교환액을 장수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뽑고 있고 어음교환대상어음종류별 즉 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송금환, 우편환, 채권이표, 기타 등으로 나누어 張數基準과 金額基準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京城어음

교환소등 11개 어음교환소별로 작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各地域別 어음交換所의 不渡어음금액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바 통계의 내용을 보면 不渡發生 人員數와 수표, 약속어음, 환어음등 交換어음種類別로 張數基準, 金額基準으로 뽑고 또한 預金不足, 無去來등 不渡發生原因別統計도 작성하고 있다. 이 당시 어음交換統計는 종류나 내용면에서 오늘날 통계와 별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바) 金融機關營業關聯統計

金融機關 營業關聯統計로는 各 機關別要約貸借對照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金融機關別 主要計定과 다를 바 없다.

銀行營業關聯統計는 1906年(明治 39年) 이후의 各種 銀行의 本·支店, 出張所數, 公稱資本金, 納入資本金, 積立金, 總利益金, 配當金, 銀行券 發行高, 債權發行高, 資金의 入·出金 및 金銀의 現殘등을 주요항목으로 하는 各種 銀行營業總況이 있다. 오늘날 韓國銀行이 發行하는 調査統計月報와 비교해 볼 때 銀行의 資金調達 및 運用中 預金, 貸出金, 有價證券項目이 제외되어 있다.

그후 1910년(明治43年)들어 이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통계의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業務總況을 보면 支部數, 會員數, 資產計定, 負債計定, 純益金으로 나누고 資產計定은 다시 貸出金, 有價證券, 預置金, 本支部, 其他로 구분되고 負債計定은 預受金, 借入金, 出資金, 債權發行, 積立金, 本支部, 購買 및 販賣, 雜計定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金融組合 業務總況은 組合數, 組合員數, 資產計定, 負債計定, 拂込濟 出資金 純益金등이 있다. 資產計定에는 佛入未濟出資金, 貸出金, 所有物, 朝鮮殖産銀行, 媒介貸付, 現金 및 預置金, 各種 計定으로 나누어져 있고 負債計定은 出資金, 政府貸下金, 積立金, 預金, 借入金 및 各種 計定으로 나누어져 있다.

無盡會社 業務總況을 보면 支店數, 資產計定, 負債計定이 있는데 資產計定은 미불려자본금 未收無盡, 損金, 貸付金, 所有物, 現金 및 預置金, 雜計定으로 나누어져 있고 負債計定은 公稱資本金, 積立金, 未拂無盡 給付金, 未拂入札差金, 未拂解約, 반려금, 無盡給付資金, 借入金, 雜計定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信託會社 業務總況을 보면 信託業務의 特性上 固有計定과 信託計定

으로 나누어져 있고 固有計定과 信託計定은 다시 資産計定과 負債計定으로 나누어져 있다.

固有計定을 자산·부채계정으로 나누어 보면 자산계정에는 未拂込 資本金, 有價證券, 不動産, 貸付金, 現金, 預置金, 營業用 土地, 建物, 雜計定이 있고, 부채계정에는 資本金, 積立金, 借入金, 雜計定이 있다. 한편 信託計定을 자산부채계정으로 나누어 보면 자산계정에는 有價證券, 貸付金, 現金 및 預置金, 雜計定이 있고 負債計定에는 金錢信託, 金錢信託以外の 金錢信託, 有價證券의 信託, 金錢債權의 信託, 土地 및 그 定着物の 信託, 雜計定 등이 있다.

(사) 金融統計刊行物

일제시대 조선의 금융관련통계로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크게 통화관련 통계, 예·대관련통계, 금리관련통계, 어음교환관련통계 및 금융기관 영업관련통계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統計表名과 이 表가 수록되어 있는 冊子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통화관련통계

통화관련통계로서 조선총독부 이재국에서 매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하는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 舊韓國新貨幣發行 引上並(回收 및)流通高表, 通貨流通見込高表, 朝鮮銀行券 發行高表, 朝鮮銀行券 發行高種類別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銀行에서 매일 발간하는 「朝鮮銀行統計月報」에는 朝鮮銀行券 發行高 最高最低平均, 朝鮮銀行券 發行高, 銀行券發行還收種類別表, 銀行券發行殘高準備別表, 正貨出入高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총독부에서 매년 1회 발간하는 「總督府 統計年報」에는 通貨流通見込高, 朝鮮銀行券 發行高, 朝鮮銀行券 發行高種類別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② 예·대관련통계

금융기관 예·대관련 통계로서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各種銀行預金 및 貸出金 道別表, 主要地別 預金貸出金表, 各種銀行預金貸出金 內鮮外人別表, 各種 銀行貸出金 使途別表, 重要品에 대한 銀行貸出金表, 朝鮮銀行 預金表 및 貸出金表, 朝鮮銀行 貸出金擔保別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總督府 統計年報」에는 各種 銀行預金 및 貸出金地方別, 各種 銀行預金現在高 月別, 各種 銀行貸出金 現在高月別,

朝鮮銀行 預金, 朝鮮銀行 貸出金, 朝鮮銀行 貸出金擔保別 등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銀行 統計月報」에는 各銀行 預金貸出金, 現在高, 預金 出入表, 貸出金 出入表, 貸出金殘高貸出先別表, 普通去來先 및 同業者에 대한 貸出金殘高種類別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③ 금리관련통계

금리관련통계로서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朝鮮銀行 金利表, 朝鮮銀行 貸出標準金利表, 朝鮮銀行貸付金 擔保別金利表, 朝鮮銀行鮮外支店民間預金貸出金金利表, 農工銀行, 普通銀行, 金融組合聯合會 金利表, 普通銀行 擔保別金利表, 個人貸金業者平均金利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總督府 統計年報」에는 朝鮮銀行平均金利, 朝鮮殖産銀行 平均金利 普通銀行 平均金利, 金融組合金利, 貸金業者 平均金利 등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統計年鑑」에는 「總督府 統計年報」 내용과 거의 비슷한 표를 수록하고 있다. 「朝鮮銀行 統計月報」에는 各銀行 平均金利를 수록하고 있다.

④ 어음교환관련통계

어음교환관련 통계로서는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 어음交換所交換高表, 어음交換所어음交換高 種類別表등이 수록되어 있고 「朝鮮統計年報」에는 어음交換所 어음交換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換관련 통계로서는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 各種銀行 換受拂表,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農工銀行 및 普通銀行의 換受拂表가 수록되어 있다.

⑤ 금융기관 영업관련통계

금융기관 영업관련통계는 주로 은행의 貸借對照表를 中心으로 한 것으로서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各種銀行 總括表, 朝鮮銀行表, 朝鮮殖産銀行表, 農工銀行表, 普通銀行表 등이 실려 있으며 「朝鮮統計年鑑」에는 銀行營業總況, 朝鮮金融組合聯合會, 金融組合, 無盡會社, 信託會社 業務總況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銀行 統計月報」에는 各銀行 諸計定, 各地, 組合銀行計定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나. 日帝 財政 統計

1910년 한일합병이후 조선의 財政統計는 크게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으로 나누어 朝鮮總督府 特別會計의 歲入歲出關聯統計 및 國債發行관련 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時代 財政計定에 대한 理解를 돕기위해 日政末期까지의 財政 및 租稅制度를 살펴보기로 한다.

(1) 財政 및 租稅制度

(가) 財政制度

조선에서 근대적 화폐금융제도와 재정제도의 전환시기는 1904년 제1차 韓日協約에 의하여 日本政府가 추천한 目賀田種太郎이 조선정부 재정고문에 취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최초로 근대적 豫算이 편성된 것은 舊韓國 政府에서 財政改編의 一環으로 추진하였던 1895년 乙未改革당시의 會計法에 의한 政府豫算編成이었다.

1910년 8월 韓日合併과 동시에 朝鮮總督府가 설치되었고 同年 9月에는 조선의 財政을 經理하는 朝鮮總督府 特別會計制度를 창설하였다.

한편 그무렵에 급속히 팽창한 재정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租稅收入에만 依存할 수 없어 國債制度를 도입하였는데 1905年 韓國政府는 國庫證券條例를 發布함과 동시에 短期國債를 발행하였다.

이와같은 적극적인 經常財源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경비를 支辨할 수 없어 韓國政府에서는 그 일부를 日本政府로 부터의 補助金으로 보전하였다.

1913년 日帝 總督府 當局은 朝鮮財政獨立計劃을 수립하고 租稅負擔을 증가시키는 한편 既定歲入의 自然增收과 경비절약을 강행하였다.

1919년 3.1운동이후에는 產米增殖計劃의 추진, 鐵道建設, 煙草專賣, 滿洲事變, 中日戰爭 등으로 인한 財政膨脹需要에 대응하기 위하여 1926년에 稅制委員會를 총독부내에 설치하고 1927년 및 1934년의 2차에 걸친 稅制整理를 단행하였다.

그후 1941년 12월 太平洋戰爭과 함께 戰費가 급격히 팽창하자 日帝는 이러한 戰費를 조달하기 위하여 식민지로부터의 수탈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경제가 계속됨에 따라 세출은 해마다 급격히 팽창되었다. 이와같은 財政膨脹原因을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①戰費調達, ②軍事的 목적을 위한 鐵道, 通信, 港灣, 道路 등

의 建設改良, ③軍需用 地下資源의 開發, 食糧增産 등을 위한 經費膨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膨脹豫算이 이른바 財政인플레이를 일으키게 되었다.

〈1911~1944年の 韓國財政變遷

(單位：千圓)

	歲 入	歲 出
1911年	52,284 (2,885)	46,172
1921	175,134 (15,000)	148,414
1930	218,210 (15,473)	208,724
1935	330,219 (12,825)	290,267
1941	1,085,391 (84,260)	931,810
1944	2,358,988	2,358,988

資料：朝鮮銀行刊, 1948年「朝鮮經濟年報」

註：1944年度는 豫算, 他는 決算에 依함

괄호내 歲入分은 日本中央財政에 負擔인 補助金임.

(나) 租稅制度

1910년 韓日합병이후 수년간 日帝는 1911년 登錄稅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한말의 세제를 답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 정리만을 꾀하다가 1914년 地稅의 근본법규인 地稅令을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조선 法人에 대한 所得稅가 日本所得稅法의 적용을 받던 것을 1920년에 朝鮮所得稅法令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금까지의 地稅中心의 稅制로부터 점차 所得稅 중심의 稅制로 이행할 素地가 마련되었다.

한편 1926년에는 租稅體系上의 不均衡, 稅負擔의 不公平 등 稅制上의 결함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稅制調査委員會를 설립하고 1927년에는 一般所得稅를 租稅體系의 주축으로 하는 것과 收益稅를 一般所得稅의 보충세로 하고 消費稅에 流痛稅를 병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國稅體系를 편성하였다.

이와같은 國稅體系整備의 원칙에 따라 同年중에 營業稅와 資本利子稅를 신설하였고 法人稅의 세율을 5% 比例稅로 하였으며 1929년에는 各種關稅特例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第1次 稅制改正을 단행하였다.

第1次 稅制改正을 단행한 결과 稅制는 대체로 정비되었으나 아직까지도 近代租稅體系의 중추라 할 수 있는 一般所得稅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土地所得에만 편중되고 勤勞所得이나 營業所得에 대하여는 전혀 國稅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負擔의 不公平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32년 12월에 租稅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第2次 稅制改正을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1934년에는 一般所得稅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補充稅制度를 도입하기 위한 相續稅와 清梁飲料稅가 신설되었으며 地稅를 경감함으로써 租稅體系의 전반적인 변형을 이룩하게 되었다.

한편 1937년 中日戰爭과 1941년 太平洋戰爭이 발발하자 日帝는 격증하는 軍事費를 염출하고 戰時下에 一般行政費 및 經濟統制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直接稅徵收를 增大하는 한편 사치품에 消費稅를 重課하는 方針을 취하였다. 즉 1937년에 第1種所得稅, 外貨債特別稅, 揮發油稅를 신설하였고 1938년에는 利益配當稅, 物品稅, 通行稅, 入場稅를 신설하였으며 1939년에는 遊興飲料稅, 1940년에는 特別法人稅 및 廣告稅를 신설하였으며 1939년에는 遊興飲料稅, 1940년에는 特別法人稅 및 廣告稅, 1944년에는 織物稅, 電氣가스稅 등을 신설하여 소비를 더욱 억제하는 한편 馬券稅를 신설하여 流痛稅의 보충을 꾀하였다.

(2) 財政關聯統計

財政關聯統計로는 財政一般, 租稅, 營業 및 官有財産, 專賣, 國債 및 地方債發行 償還關聯統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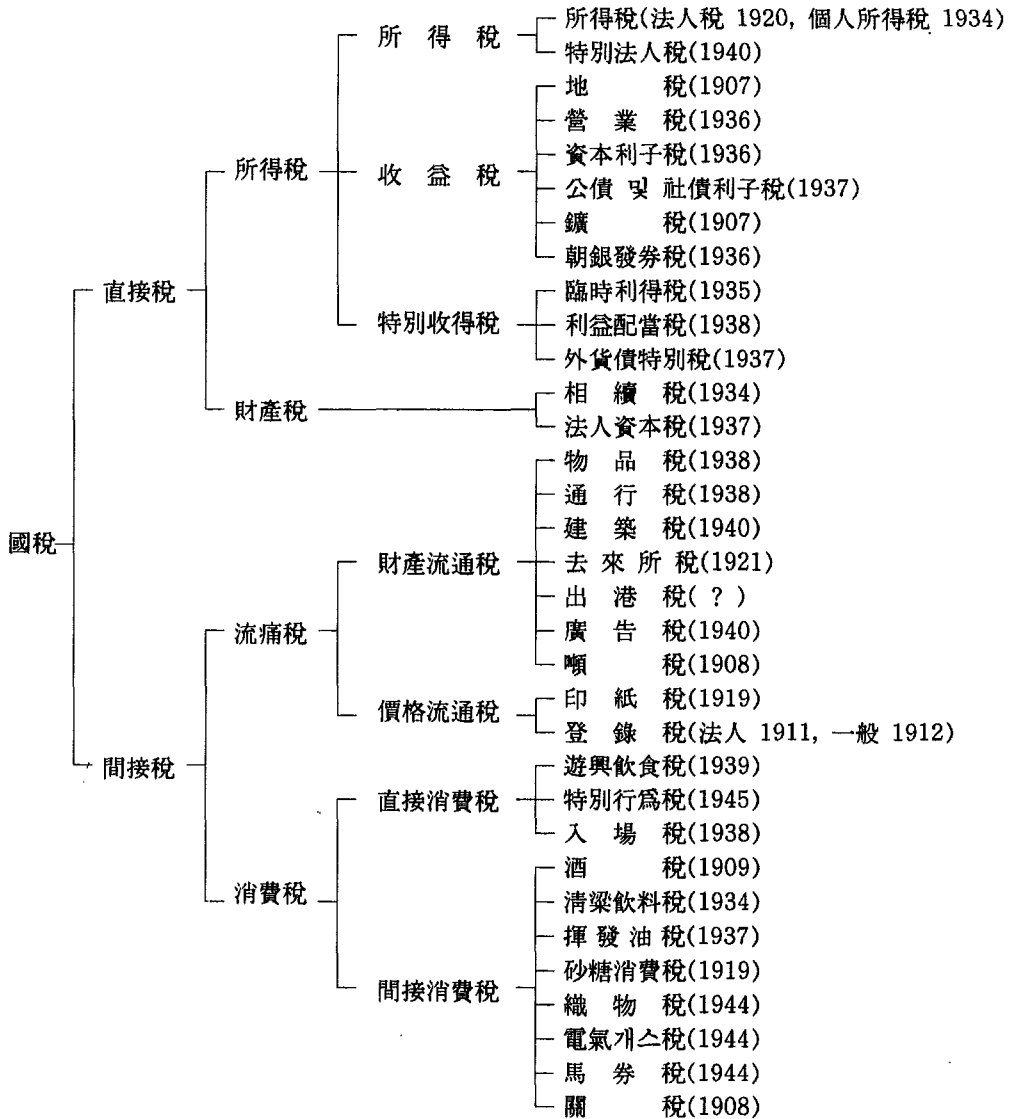
(가) 財政一般統計

財政一般에 관련된 통계로는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의 歲入·歲出관련 통계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中央財政統計를 보면 舊韓國政府 歲入·歲出豫算관련 통계,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入·歲出 및 繼續費관련통계, 一般會計支出朝鮮經營費관련통계 등이 있고 地方財政統計에는 地方財政歲入·歲出관련통계, 地方費歲入·歲出관련통계, 地方稅收納額관련통계 등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中央財政統計의 種類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解放前 國稅體系의 變遷



註：() 內는 創設된 年度로 筆者가 一部調整하였음.
 資料：韓國銀行調查部刊, 1956年「經濟年鑑」

舊韓國政府의 歲入·歲出豫算關聯統計는 1906년(光武10年) 이후의 시계열이 유지되고 있으며 통계항목을 보면 歲入豫算은 歲入經營部와 歲入臨時部로 나누어지고 歲入經營部는 다시 租稅(地稅, 戶稅, 家屋稅, 酒稅, 煙草稅, 關稅, 噸稅, 水產稅, 鹽稅, 雜稅, 鑛稅, 驛屯賭稅), 印紙收入, 驛屯賭收入, 官業 및 官有財産收入(蓼業收入, 度量衡收入, 林野收入, 鹽業收入, 鑛業收入, 其他) 및 雜收入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歲入臨時部는 公債金 조입, 借入金, 公債金, 조체, 前年度剩餘金 조입 및 導掌賜金公債金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歲出豫算도 歲出經常部와 歲出臨時部로 나누어지고 歲出經常部는 다시 皇室費, 內部所管, 度支部所管, 學部所管, 農商工部所管, 軍部所管, 法部所管 및 其他 등으로 구분되며 歲出臨時部는 歲入經常部 항목중 皇室費, 軍部所管 및 法部所管을 제외하고는 歲入經常부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入·歲出관련 통계는 1910년(明治43年) 이후의 時系列을 가지고 있으며 歲入통계는 租稅(地稅, 所得稅 등 15가지 稅目) 印紙收入, 驛屯賭收入, 官業 및 官有財産收入, 印刷所收入, 蓼業收入, 阿片收入, 度量衡收入, 林野收入, 水道收入, 郵便電信 및 電話收入, 鐵道收入, 煙草收入 및 雜收入으로 구성되는 經常歲入과 公債金事業費資金借入金, 前年度 조입금, 補充金, 一時借入金으로 구성되는 臨時歲入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歲出統計는 李王家歲費, 總督府, 警務費, 地方廳, 諸學校, 稅關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歲出經常부와 朝鮮部隊費, 臨時土地調查費, 調查 및 試驗費, 土木費, 臨時手當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歲出臨時부로 나누어진다.

朝鮮總督府 繼續費統計를 보면 그 財源이 무엇이나에 따라 公債支辨과 普通財源支辨으로 나누어지고, 公債支辨에 해당하는 계속비로는 鐵道建設 및 改良費, 道路修築改良費, 海關工事費, 砂防事業費 등이 있고, 普通財源支辨에 해당하는 계속비에는 發電水力調查費, 朝鮮神社造營費, 總督府廳舍新營費, 應急治水工事費 등이 있다.

그밖에 一般會計支出 朝鮮經營費統計는 1907年(隆熙元年) 이후부터 시계열이 유지되고 있는 바 軍事費와 行政費로 나누어지고 軍事費는 陸軍과 海軍으로, 行政費는 行政其他諸費와 補充金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地方財政關聯統計를 보면 1910年(明治43年)이후의 地方財政歲入・歲出을 各 地方團體別로 經常部와 臨時部로 나누어 보거나 道別로 道地方費, 府, 面, 學校費, 學校組合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 經常部와 臨時部로 나누어 地方財政을 편제하였다. 한편 道地方費 歲入・歲出 種目別統計는 道別로 地方費 歲入・歲出 항목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1910年(明治43年)이후의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다.

地方財政統計는 이외에도 地方稅收納額, 朝鮮各道の 豫算, 地方財政起債, 地方公共團體起債, 地方稅賦課金, 地方稅課率, 朝鮮, 日本, 外國人の 1人當 또는 1戶當 地方稅 負擔額 등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였다.

(나) 租稅統計

租稅關聯統計는 國稅關聯統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國稅關聯統計는 다시 直接稅관련통계와 間接稅관련통계로 나누어져 있다.

國稅관련통계를 보면 1910年(明治43年)이후의 國稅를 稅目別, 道別, 稅關別, 俸給, 廳費, 修繕費, 旅費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直接稅負擔額은 1915年(大正4年) 이후부터 府別, 道別로 나누어 戶數, 人口, 稅目別 負擔額 및 平均負擔額, 1人當 또는 1戶當 稅負擔額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國稅의 稅目別 통계로서 1921年(大正10年) 이후의 所得稅를 道別로 普通所得, 超過所得, 留保所得, 配當所得, 清算所得, 令第2條에 해당하는 法人所得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고, 所得稅納額別 人員을 道別로 五圓未滿에서 부터 1萬圓以上 까지 11段階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다. 酒稅는 1916年(大正5年)부터 釀造酒, 蒸溜酒, 再製酒, 朝鮮酒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酒稅에는 이외에도 自家用酒稅, 輸移入酒稅 등도 있다. 이밖에는 地稅, 市街地稅, 鑛山稅, 特許鑛稅, 砂糖消費稅, 自家用煙草耕作稅 등에 관한 통계도 작성되고 있다.

(다) 官業 및 官有財產

官業 및 官有財產統計로는 朝鮮鐵道用品資金特別會計 歲入・歲出, 遞信歲計, 食堂車 및 構內食堂營業成績月別表, 遞信官署所屬조체受入歲入金 및 조체滯拂渡歲出金, 遞信官署所屬雜賦金受入 및 拂渡, 各種現金受入 및 拂渡, 驛屯土收入收納額 등이 있다.

(라) 專 賣

專賣關聯統計에는 專賣局收入支出計算, 專賣局歲入·歲出, 葉煙草受拂, 葉煙草收納種類別等級別 千分率, 葉煙草種類別使用高, 製造煙草受拂, 製造煙草引替 및 매려, 製造煙草賣渡金, 延納許可, 製造煙草運搬費, 交付金調, 煙草元賣捌荷置場數調 등의 통계가 있다.

(마) 國債 및 地方債

國債 및 地方債관련통계는 1910年(明治43年) 이후의 舊韓國政府와 朝鮮總督府 特別會計가 발행한 國債를 國債種類別로 起債額, 發行價格, 利率, 發行日字, 據置期間, 償還期限, 借入先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였고 地方公共團體 起債額은 1911年(明治44年) 이후의 통계가 起債機關別로 府, 學校組合, 水利組合, 居留民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地方財政의 起債目的에 따라 事業所費, 土木費, 衛生費, 警備費 등으로 나누고 이를 起債機關別로 통계를 작성한 地方財政起債統計가 있다.

(바) 財政統計 刊行物

財政關聯統計로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財政一般, 租稅, 官業 및 官有財產, 專賣, 國債 및 地方債관련통계 5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統計表名과 이 表가 수록되어 있는 冊子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財政一般

財政一般에 관한 통계로서 「朝鮮金融事業參考書」에 舊韓國政府歲入豫算表 및 歲出豫算表,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入表 및 歲出表, 朝鮮總督府繼續費表 등이 수록되어 1910年(明治43年)부터 2년에 한번씩 발간 공표되었다.

또한 「總督府 統計年報」에는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入 및 歲出豫算表 등이 1911年(明治44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다.

② 租 稅

租稅에 관한 통계는 거의 대부분이 「總督府 統計年報」에 수록되어 있는 바, 國稅收納額, 徵稅配, 直接稅 負擔額, 所得稅, 所得稅納額別 人員, 기타 稅目別統計가 1919年(大正8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다.

③ 官業 및 官有財產

官業 및 官有財産에 관한 통계는 遞信局에서 발간하는 「遞信統計要覽」에 遞信歲計, 遞信官署所屬조채 受入歲入金 및 조채拂渡歲出金, 各種 現金受入 및 拂渡 등이 수록되어 있고 最初發刊時期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매년 발간 공표되었다.

④ 專·賣

專賣關聯統計는 專賣局에서 발간하는 「專賣局年報」에 수록되어 있는 바, 專賣局 收入支出計算表, 專賣局 歲入 및 歲出表, 沒收品名數量 및 價格表, 葉煙草受拂表, 葉煙草收納種類別 等級表, 葉煙草種類別 使用高表 등의 통계가 1926年(昭和元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다.

⑤ 國債 및 地方債

國債 및 地方債관련통계는 「總督府 統計年報」에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所屬國債, 府債 등의 통계가 1911年(明治44年)부터 매년 발간되었고,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舊韓國政府總督府 特別會計國債現在高累年比較表, 舊韓國政府朝鮮總督府 特別會計所屬國債一覽表, 地方公共團體 起債額現在高表 등의 통계가 최초 발간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 2년마다 한번씩 발간 공표되었다.

2. 通貨金融統計

가. 本源通貨

우리나라의 通貨金融統計는 다른 어느 統計보다 일찍 개발되었으며, 통계편제의 理論體系도 잘 정비되어 있다. 그것은 기초자료의 제공자인 金融機關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동기관의 會計處理역시 정밀하고 연속성이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金融統計는 1910년 舊韓國銀行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시의 통계체계는 金融機關의 會計貸借對照表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가 1950년에 韓國銀行法의 草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던 「부름필드」박사가 당시의 한국 通貨事情을 분석하면서 通貨量(Money supply)이란 통계적 개념을 사용한 것을 계기로 金融통계체계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후 1955년 IMF가 제

안한 金融統計體系를 받아들임으로써 通貨量의 分析을 中心으로 한 오늘날과 같은 통화금융통계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후 經濟發展과 더불어 金融資產이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크게 증가됨에 따라 通貨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통화통계도 이러한 개념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왔다.

(1) 本源通貨

本源通貨는 韓國銀行의 창구를 통하여 민간이나 預金銀行에 공급된 화폐로서 通貨量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때문에 유동성 파악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1969년 하반기중에 財政安定計劃에 의하여 本源通貨를 통화규제지표로 채택,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通貨乘數의 불안정, 通貨緊縮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곧 중단된 바 있었다.

현재 本源通貨는 韓國銀行의 貨幣發行額과 預金銀行의 韓國銀行 基本預置金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화폐발행액은 예금은행 時在金과 民間貨幣保有額으로 세분화되어 편제된다.

본원통화가 현재와 같은 체계로 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단지 한국은행의 通貨性 負債라 하여 본원통화를 구성하는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 지준예치금외에 政府預金과 外國機關 預金까지도 포함하여 편제하여 왔다. 1969년 개편당시 정부예금과 외국기관 예금을 본원통화에서 제외시킨 것은 通貨量이 民間이 보유한 통화만을 대상으로 集計되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그후 1987년 5월부터는 一般貨幣에 비하여 流動性이 제약되어 있는 紀念鑄貨를 본원통화에서 제외시켜 편제하였으며 과거 시계열은 1986년 3월이후 부터 소급조정하였다.

(2) 通貨當局計定

본원통화가 經濟部門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얼마만큼 공급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通貨概觀表上的 韓國銀行計定인 通貨當局計定을 이용할 수 있다.

통화당국계정을 통화당국의 貸借對照表를 資產을 經濟部門別로, 負債를 通貨性

負債와 非通貨性 負債로 구분정리하여 통화당국과 정부, 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관 등 여타부분과의 金融去來를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로서 현재와 같은 체계로 정비된 것은 1969년이다.

그 이전에는 통화당국의 활동에 대한 통계로서 “銀行券 卷種別 發行高”, “韓國銀行 各店別 발행 및 還收” 등 화폐발행에 관한 통계가 朝鮮銀行시절부터 작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통계는 1951년 3월부터 편제되기 시작한 “韓國銀行計定”이다. 당시 한국은행계정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요 항목을 나열한 정도에 그쳤으며 자산과 부채를 현재와 같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였다.

그후 1952년에 동통계를 발전시켜 貨幣發行額의 供給經路를 부문별로 나타낸 “韓國銀行券 發行經路”가 작성되었다.

通貨當局計定은 1958년 9월부터 金融概觀表(Monetary Survey)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정비되었다.

당시 금융개관표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綜合貸借對照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한국은행계정이 현재 통화당국계정체제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최근들어 國際收支黑字가 크게 늘어나 海外部門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通貨調節用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대량 발행하게 됨에 따라 同 基金計定을 통화당국계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나. 通貨概觀表

(1) 通貨(M₁)

通貨(M₁)는 시중에 유통중인 現金通貨와 要求拂預金 즉 預金通貨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통화로서 주로 支給決濟手段으로 사용되는 금융자산이다.

195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급결제수단으로서 대부분 現金이 사용되었으나 1950년 이후 예금통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예금통화가 현금통화잔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 6월말 현재

通貨(M₁)잔액 13조 26억원중 現金通貨가 5조942억원, 預金通貨가 7조 9,084억원으로서 現金通貨比率은 40.8%를 나타내었다.

通貨(M₁)는 현재 民間貨幣保有額과 예금은행의 總要求拂預金에서 他店券을 차감한 實勢要求拂預金, 즉 預金通貨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通貨金融統計의 가장 중요한 통계의 하나인 通貨(M₁)통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48년 預金通貨民間流通額 推定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겠으나 通貨情勢分析 目的으로 편제가 시작된 것은 1951년 3월부터 였다.

1951년 3월 韓國銀行은 최초로 통화정세분석을 목적으로 한 통화량편제를 시작하여 1945년까지의 과거계열을 소급정비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때의 통화량은 預金通貨의 포괄범위와 연관되어 2가지 개념으로 편제되었다. 즉 통화량을 貨幣民間保有額(現金通貨)과 通貨性預金(預金通貨)의 합계로 볼 때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중 어떤 예금을 통화성예금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通貨供給量 第1義와 通貨供給量 第2義로 구분하였다.

通貨供給量 第1義는 現金通貨와 韓國銀行을 포함한 전금융기관의 民間 및 企業當局預金の 합계로 정의되었고 通貨供給量 第2義는 通貨供給量 第1義에 特別當座預金, 通知預金, 定期預金 및 其他諸預金を 포함시킨 것으로 현재의 總通貨(M₂)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2가지 개념으로 편제되어 왔던 통화량은 그후 通貨性預金の 범위에 포함되는 預金種類와 所有者別 通貨性預金 특히 外國公館, 國際機關 등의 해외부분이 보유하는 통화성예금의 통화량산입문제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개편되었다.

1955년 10월에 통화성예금의 범위를 當座預金과 其他要求拂預金(特別當座預金 및 別段預金) 및 通知預金으로 한정하고 民間部門에 포함되었던 外國公館 및 國際機關保有 通貨性預金과 종전에 누락되었던 國際聯合軍 保有 通貨性預金を 합쳐 외국기관의 통화성예금으로 처리하여 이를 통화량에 산입하는 한편 당시까지 통화량에 포함하였던 金融機關이 보유하는 未清算手票·어음(他店券)을 제외시켜 통화량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1956년 2월부터는 通知預金の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통화량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외국기관의 통화성예금도 政府預金과 마찬가지로 通貨還收要

이므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이를 통화량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현재의 통화(M_1)개념에 크게 근접하게 되었다.

1957년 4월에는 통화성 예금에 포함되었던 貯蓄預金中 農協의 現物貯蓄과 어린이 豫金, 國民貯蓄組合預金を 제외시켰다.

그후 1963년 2월에는 통화성예금의 純額을 산출하기 위하여 차감하여 왔던 금융기관보유 未清算手票·어음중의 國庫手票를 제외시킨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1968년 1월에는 통화성예금에 포함되어 온 貯蓄預金이 저축목적으로 예입되는가 혹은 去來手段으로 예입되는가하는 문제가 논란되어 貯蓄預金 모두를 저축성 예금으로 간주하게 됨에 따라 通貨量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그후 水協(74. 1월)과 畜協(83. 12월)등 신설금융기관을 통화량편제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전체예금중에서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낮은 産業銀行을 제외(74. 1월) 하였으며 87년 5월에는 현금통화에서 紀念鑄貨發行額을 제외하는 등 포괄금융기관의 조정등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通貨(M_1)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와같은 통화는 해방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流動性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1957년부터 流動性規制地標로 채택되어 1969년 상반기까지 이용되어 왔는데 이는 당시 通貨(M_1)가 예금은행에 의해 거의 전액공급된 국내유동성중 9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유동성지표인데다가 通貨當局이 貨幣數量說에 입각하여 통화가 物價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 總通貨(M_2)

通貨(M_1)에 貯蓄性預金 및 居住者外貨預金を 더한 것을 總通貨(M_2)라고 하는데, 이는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의외화예금을 準通貨(Quasi Money)로서 통화의 개념에 포함시킨 넓은 의미의 통화라 할 수 있다.

總通貨(M_2)에 관한 통계는 1951년 3월부터 발표된 「通貨供給量 및 通貨供給量 增減原因表」의 通貨供給量 第2義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으며 당초에는 通貨(M_1)와 貯蓄性預金의 합계개념으로 總通貨(M_2)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1974년 1월에 있었던 통화금융통계의 개편으로 인하여 準通貨에 居住者外貨預金을 추가함으로써 그 포괄범위가 확대되었다.

그후에도 總通貨(M_2) 통계는 금융기관의 업무자체에 대한 定義의 변경 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시계열이 크게 조정된 바 있다. 즉 1979년 5월 農水協 相互金融特別會計의 信用事業預置金이 종전의 民間借入 형태에서 일반적인 예금으로 변경처리됨에 따라 1972년까지 소급하여 준통화에 이를 포함시켰고, 1982년 12월에는 종전에 금융기관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國民投資基金의 업무를 정부의 재정활동으로 개편함에 따라 同基金의 예금을 총통화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또한 總通貨의 平殘管理가 필요함에 따라 1982년 12월부터 平殘 M_2 를 편제 공표하는 동시에 1971년까지 소급하였다.

(3) 通貨概觀表 (Monetary Survey)

通貨概觀表는 IMF가 개발한 통화통계체계로서 通貨金融機關인 韓國銀行과 預金銀行의 統合貸借對照表의 자산을 政府, 政府代行機關, 公的機關, 非通貨金融機關, 民間, 海外, 其他 등 經濟部門別로 나누고, 負債는 流動性的의 정도에 따라 정리하여 예금은행과 여타 경제부문간의 金融去來를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이다.

이 표는 通貨(M_1) 혹은 總通貨(M_2)를 通貨金融機關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공급하였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우리나라의 流動性管理政策이 주로 예금은행 負債의 증가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므로 通貨概觀表가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財政安定計劃의 실시와 더불어 1970년에 通貨概觀表上의 資産항목인 국내신용을 유동성관리지표로 채산함에 따라 크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통화개관표는 1958년 9월 韓國銀行에서 최초로 金融概觀表(Monetary Survey)라는 명칭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1956년 계열까지 소급하여 발표하였는데 작성대상금융기관에는 通貨金融機關뿐만 아니라 產業銀行까지 포함되었다.

현행과 같은 양식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9월부터였으며 1971년 3월에는 명칭을 金融概觀表에서 通貨概觀表로 변경하였다.

그후 1974년 1월에는 通貨統計編制方式上 내포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분석통계로서의 이용도를 크게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인 산출방식에 의하던 通

貨, 國內信用, 本源通貨의 편제를 통화서베이방식에 의거 일원화하고, 通貨金融機關범주에 水産業協同組合의 信用事業部門을 포함시키고 産業銀行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제항목을 경제부문별로 분류하는데 있어 部門區分이 명확하지 못한 종전의 편제방식을 크게 개선하였다.

다. 金融概觀表

(1) (M₃)

M₃란 總通貨(M₂)에 비통화금융기관의 預受金, 金融機關發行 金融債, 讓渡性預金證書(CD), 商業어음賣出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합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개념이다.

M₃ 지표는 1982년부터 작성되어 내부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72년 私金融陽性化 措置이후 비통화금융기관이 급속히 성장하여 전체 金融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總通貨(M₂)만으로는 경제전체의 유동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M₃는 그동안 새로운 금융상품의 창출로 계속 구성금융자산을 확대하여 왔는데 1984년 6월에는 讓渡性預金證書(CD)를, 1987년 9월에는 企業金錢信託 및 通貨債券投資信託 受益證券(B.M.F)을 각각 포함하였으며 1988년 3월부터는 計理方式이 종전의 債券去來方式에서 金融去來方式으로 변경된 還買條件附 債券賣渡(R.P.)까지를 포함하였다.

M₃의 과거 時系列은 末殘의 경우 1971년부터 1979년까지는 分期末殘으로 정비되어 있고 1980년 이후 月末殘으로 편제되고 있다. 또한 平殘의 경우는 1986년 이후부터 편제되고 있다.

(2) 金融概觀表 (Financial Survey)

금융개관표는 통화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통화금융기관까지를 포함한 전금융기관의 連結貸借對照表(Consolidated Balance Sheet)를 작성하고 전금융기관의 資

産항목을 通貨概觀表와 마찬가지로 經濟主體別로 負債항목은 流動性의 정도에 따라 정리하여 全金融機關과 余他經濟部門간의 金融去來를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이다.

이 표는 全金融機關을 통하여 조달된 資金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공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분석표로서 전체 유동성의 증감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通貨概觀表의 대폭 개편과 병행하여 1976년 1월에 처음 金融서비스라는 이름으로 金融概觀表가 작성되게 되었다.

그후 M_3 개념의 도입과 함께 金融서비스를 金融概觀表로 명칭을 바꾸어 1982년 1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總流動性을 通貨와 準通貨로 구분하고 準通貨는 통화금융기관의 준통화와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으로 세분하여 편제하였으나 그 이후 金融債, 讓渡性預金證書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그동안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제외되었던 地方所在 相互信用金庫, 信用協同組合, 채신예금기관까지를 대상금융기관에 포함하여 편제하였다.

라. 其他 通貨總量統計

지금까지 설명된 通貨總計이외에도 中心通貨指標인 總通貨(M_2)가 최근들어 전체 유동성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通貨指標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通貨當局에서는 總通貨(M_2)指標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總통화에서 長期貯蓄性預金(2年 以上 滿期 定期預金, 定期積金, 목돈마련貯蓄, 勤勞者住宅마련貯蓄, 家計優待定期積金, 상호부금, 住宅부금)을 제외한 M_{2A} 指標가 1989년 1월부터 공식편제되어 補助指標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의 短期預受金을 합한 M_{2B} 指標를 개발하여 새로운 中心通貨指標로 사용하고자 1989년 4월부터 한국은행에서 내부편제해오고 있다.

M_{2B} 지표의 과거 時系列은 M_3 지표와 마찬가지로 末殘의 경우 1971년부터 1979년까지는 分期末계열이 1980년부터는 月末계열이 정비되어 있고 平殘의 경우는 86년부터 정비되어 있다.

마. 預金・貸出金統計

우리나라의 통화금융통계중 貨幣發行에 관한 통계와 더불어 역사가 가장 오래된 통계중의 하나이다.

1947년 韓國銀行의 전신인 朝鮮銀行에서 調査月報를 발간함과 동시에 預金・貸出金에 관한 통계를 ①金融機關別 ②預金・貸出金 種類別 ③道別 預金・貸出金으로 나누어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6.25동란으로 한때 편제가 중단되었다가 戰局이 어느 정도 안정된 1952년 9월부터 金融機關預金受拂狀況 및 金融機關貸出供給狀況이라는 명칭으로 金融機關別, 種別 預金 및 貸出金통계를 통합하는 한편 道別통계도 동시에 작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金融機關別 預金 및 貸出金은 그후 銀行別 預金과 銀行別 貸出金으로 명칭을 바꾸어 작성하고 통화금융기관의 포괄범위의 변천과 더불어 계수조정이 행하여지고 種別預金은 1955년 금융기관 부문별 예금통화의 작성을 계기로 要求拂預金과 貯蓄性預金으로 대별하여 포괄적으로 표시하였다.

그후 예금통계의 효율적인 분석의 필요성 때문에 貯蓄性預金에 대해서는 1971년 3월부터 種別분석이 행하여 졌으며 種別 貸出金은 1971년 3월부터 金融貸金과 財政貸金의 種類別 분석을 시작하여 1972년 5월부터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한편 産業別 용도로 본 금융기관 대출금은 1953년 1월부터 금융기관 業鍾別 貸出金과 用途別 貸出金으로 나누어 작성하다가 1955년 9월에는 固定設備, 農業生産資金, 同 運營資金 등 각 용도별 대출금을 산업별로 施設資金과 運轉資金으로 구분 金融機關 産業別 貸出金殘額表와 月中 新規貸出表로 정리 발표하였으나 1962년 2월부터 신규대출표는 폐지되었다.

그 이후에도 預貸統計는 과거 통계체계를 유지하면서 예금 및 대출제도의 변경 시에 부분적인 보완 및 확충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 證券統計

(1) 沿革

(가) 修正株價 平均指數

1962년부터 1956年 2月 大韓證券去來所 開所以後의 初期 債券去來爲主이던 市場에서 株式市場으로 轉換하자 綜合的인 市況을 把握키 위한 株式指數의 必要性을 절감하고, 이에 따라 1963年 5月 19日부터 同年末까지 188日間의 採用種目平均을 100으로 하여 1964年 1月 4日부터 “다우”식 株式指數를 發表(이것이 國內 株價指數의 효시이며 이 당시 株價指數의 種類는 綜合株價指數, 資產株價指數 및 證券關係株價指數가 있었다) 했으며, 1971年 12月 13日字로 修正株價指數는 廢止되고 韓國綜合株價指數를 새로이 發表하고 있다.

(나) 韓國綜合株價指數

1972年 1月 4日부터 “다우-존스”식에 의한 韓國綜合株價指數를 새로이 發表하였다. 그러나, 證券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라 그 당시 採用種目 35種目으로는 市場全體動向把握이 不可能하여 採用種目擴大를 實施하는 한편 每年 採用種目を 優良種目으로 交替하는 方式을 導入하여 이에 準備時點도 1972年 1月 4日에서 1975年 1月 4日로 變更하여 1975年 1月 4日 부터 施行 發表되었다.

(다) 年度別 株價指數

1972年 1月 4日부터 韓國綜合株價指數를 發表하기 시작한후 上場會社가 急速히 增加하고 이들 種目들의 去來量도 大幅 增加하여 韓國綜合指數로서 證券市場의 全般的인 株價動向을 把握하기에는 不充分하였다.

따라서 證券去來所에서 全上場會社의 普通株를 對象으로 每年初를 基準時點으로 (=100) 1974년부터 1978년까지 年度別 指數를 綜合株價指數와 함께 發表하였다.

(라) 產業別 株價指數

1972年以後 上場會社가 急激히 增加됨에 따라 產業別로도 株價動向把握이 必要하게 되어 1974年 7月 14日부터 每年初 基準時點의 產業別株價指數를 100으로 하여 發表한다.

Ⅷ. 金融・財政統計

(라) 時價總額式 株價指數

1983年 1月 4日부터는 株價指數算出方式을 “다우-존스”식에서 市價總額式으로 轉換하였다. 이는 國內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證券市場도 質·量的으로 成長을 거듭하면서 從來의 “다우-존스”식 指數算出法이 構造的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어 指數採用種目的 交替 및 有無償增資, 株式額面分割時 株價斷層이 發生하는 등 株價指數의 連結性問題가 대두되고 최근 우리나라 資本 自由化를 推進하고 있는 時點에서 美·英·日·西獨 등 主要先進國의 株價指數算出方式이 時價總額式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株價指數 比較가 困難하여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時價總額式으로 轉換, 現在 편제 實施하고 있다.

(2) 基準時點

1980年 1月 4日을 基準日로 하며 當日의 株價指數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連結指數를 算出한다.

(3) 株價指數算出方法

(가) 對象種目

上場된 普通株 全種目を 對象으로 한다.

1) 新株는 上場株式株가 舊株에 包含되어 指數가 反映된다.

2) 舊株에 賦與되어 있는 新株引受 또는 新株의 無償交付를 받을 權利가 없어진 狀態로 권리락이라 하는데 이때의 指數는 當該 권리락 種目的 新株가 권리락 後 첫 賣買가 이루어 지는 날 上場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算出한다.

3) 優先株는 除外한다(指數採用種目中에서 優先株를 除外하는 理由는 一般的으로 優先株의 配當率은 固定되어 있고 配當金이나 殘餘財産의 分配에 있어 優先權을 賦與함으로 優先株의 價格을 經濟活動의 期待보다 利子率의 變化에 더 彈力的이기 때문이다.)

(나) 加重值는 上場株式數로 한다.

(다) 算式은 다음과 같다.

$$\text{株價指數} = \frac{\text{比較時價 總額}}{\text{基準時價 總額}} \times 100$$

(라) 基準時價總額의 修正

1) 修正目的

新規上場, 有價增資, 上場廢止等 市況의 變動 以外의 要因으로 時價總額이 變動하는 경우에는 基準時價總額을 修正하여 長期間의 比較가 可能하도록 株價指數의 連續性을 維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 修正事項

가) 新規上場

나) 有價增資(株主割當, 第3者割當, 失權株 發生)

다) 上場廢止

라) 採用種目交替(部別, 資本金規模別, 產業別)

마) 優先株의 普通株로의 轉換

바) 會社合併(上場會社合併, 非上場會社 合併)

사) 轉換社債의 普通株로의 轉換

3) 修正方法

修正事項의 時價總額이 市況의 變動 以外의 要因에 의하여 變動할 때, 變動前日의 株價指數와 變動當日의 株價指數는 理論的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成立된다.

$$\frac{\text{變動前日의 時價總額}}{\text{舊基準 時價總額}} = \frac{\text{變動前日의 時價總額} \pm \text{時價總額變動額}}{\text{新基準 時價總額}}$$

따라서

$$\bullet \text{ 新基準 市價總額} = \text{舊基準 時價總額} \times$$

$$\frac{\text{變動前日의 時價總額} \pm \text{時價總額變動額}}{\text{變動前日의 時價總額}}$$

그러므로, 變動當日의 株價指數는

$$\text{株價指數} = \frac{\text{變動前日의 時價總額} \pm \text{時價總額變動額}}{\text{新基準 時價總額}} \times 100$$

(4) 結果公表

賣買終了翌日 증권市場速報와 每月 發刊하는 「株式」, 年間으로 發刊하는 「證券統計年報」에 收錄 公布하고 있다.

3. 財政統計

가. 意義와 經緯

政府는 公共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財政活動을 한다. 財政統計는 이 財政活動을 一定한 基準에 따라 分類集計하여 財政의 經濟的, 機能的 效果의 分析 등 國家의 財政政策的 指標를 提供하기 위하여 편제하는 것이다.

政府樹立以後의 財政統計는 당시의 各種 財政關係法에 의해 年度別 豫算編成과 決算處理를 통하여 行政統計(業務統計)로서 政府會計를 統計로 작성하여 왔던바 특히 1951年 9월에 制定한 財政法에 의하여 1960년까지 지속하였다.

그 뒤 1961年 12월에 制定된 豫算會計法에 의하여 中央政府의 豫算業務는 經濟企劃院에서, 決算業務는 財務部가 主管하였고 地方政府의 豫・決算財政統計는 1968年以來 地方財政法에 의해 內務部에서 管掌하였다.

한편 1961년에 財務部에서 「決算關聯統計資料」를 發刊하여 정부거래를 통계적으로 分類하여 1948年以來의 中央政府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決算(統計 및 統計時系列), 그리고 歲出決算의 機能的分類(1959年以後)를 시작하였다.

한편 韓國의 財政統計는 1974年 國際通貨基金(IMF)에서 「財政統計便覽」(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작성하였고 1977년에 來韓한 IMF 調査團이 綜合豫算制度의 採擇을 勸告함에 따라 1979年 9월부터 이에 의하여 1970년까지 시계열을 소급한 IMF체제의 재정통계를 작성하였다. 재무부에서 는 이를 1979년부터 해마다 「韓國의 재정통계」로 편제발간하고 있으며 한편 韓國

銀行에서도 「經濟統計年報」와 「調査統計月報」에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中央政府와 地方政府的 財政活動부문에 대한 재정통계가 1970年度分부터 새로운 체계로 편제되어 정착하게 되었다(1969年 以前分과는 時系列 斷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財政統計」를 一般統計 301-22-09(1976年 7月 22日字)로 승인받아 작성편제하고 있다.

나. 財政統計編制基準

(1) 包括範圍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는 IMF基準에 따라 構成하되 原則적으로 中央政府部門(一般會計, 特別會計, 各種基金 및 歲入·歲出外)과 地方政府部門(一般會計, 特別會計)을 一般 政府로 하고 또 企業特別會計와 糧穀·調達基金 및 地方自治團體 公企業特別會計를 非金融公企業이라 하며 그밖에 外局換平衡基金 등 公共金融機關의 3個그룹을 묶어 公共部門으로 包括하고 있으나 현재 재무부에서 편제하는 「한국의 재정통계」에서는 地方政府部門과 公共金融機關을 除外하고 있다.

(2) 會計期間

1年을 單位로 編制하되 IMF 便覽에서 曆年(calendar Year: 1月 1日~12月 31日間)基準을 強調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따르고 있으나 특히 年初(1月 1日~1月 15日間)에는 去來調定の 必要와 基礎資蒐集 등의 制約으로 會計年度(Fiscal Year)基準에 의하고 있다.

(3) 豫·決算基準

歲入은 國庫에의 收納段階, 歲出은 現金支給段階에 計上하는 現金基準을 택하고 있다.

(4) 統計値의 統合

財政運營上 政府로 包括되는 範圍에 있는 각종 會計와 基金間의 內部去來를 除

去시키고 다른 經濟部門과의 外部去來만을 一定基金에 따라 統合하고 있다. 즉 中央과 地方政府 각각의 政府內部去來는 除去시키고 各급 정부기관간의 상호 거래는 統合하고 있다.

다. 分析 및 分類體系

(1) 分析體系

- ① 財政收支(黑字 또는 赤字)
- ② 歲入의 經濟的 分類
- ③ 歲出 및 純融資의 機能的 分類
- ④ 歲出 및 純融資의 經濟的 分類
- ⑤ 補填財源
- ⑥ 貯 蓄
- ⑦ 債 務

(2) 分類體系

IMF體制에 의한 財政統計分類方式은 統合財政收支의 판단과 정부정책수행기능과 관련하여 재정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 경상지출
 - 1) 재화 및 용역(직접적인 소비증대효과)
 - 2) 이자지출(간접적인 소비증대 : 이자수령인의 소비성향자극 효과)

(3) 보조금 및 경상이전

- ① 국내이전(보조금수령자의 소비성향 자극효과)
- ② 해외이전(유효수요의 해외유출효과)
- 자본지출

국민소득(소비 + 투자)에서 고정자산매입 및 재고증가 등 자본지출증가는 국민

경제투자수준과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라. 政府支出의 機能別 配分

현재 정부지출의 機能別 分類에 의한 규모와 그 구성비를 보면 표와 같은바 90年代에 들어와 國防費의 비중이 저하하는 반면 社會開發費와 經濟事業費는 증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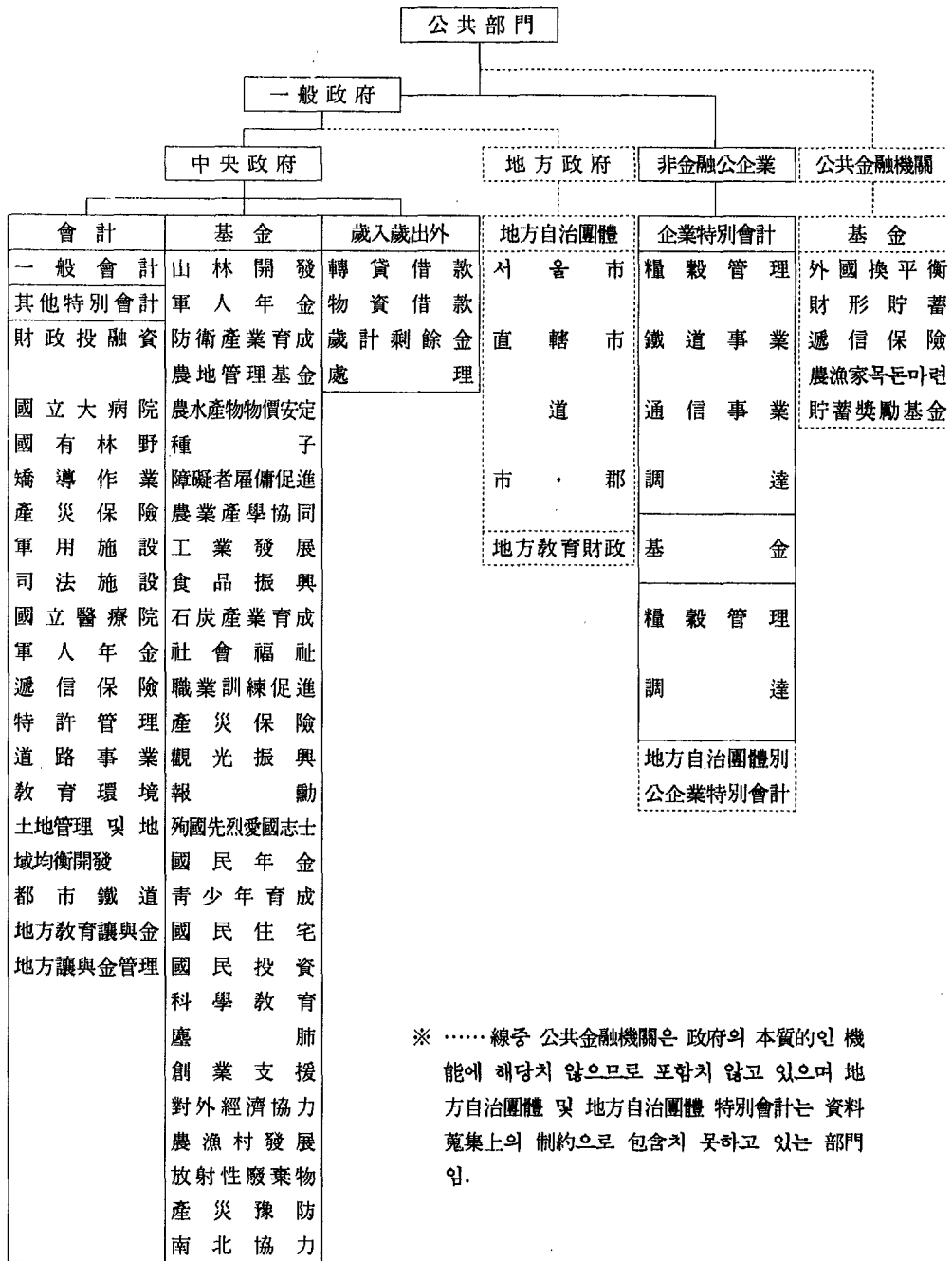
政府支出의 機能別 分析

(單位: 億원, %)

區 分	'91豫算 (A)	'90豫算 (B)	增減率 (B/A)-1	國 際 比 較 (構 成 比)			
				美國 ('88)	西獨 ('87)	英國 ('87)	韓國 ('90)
1. 一 般 行 政	22,756	28,239	24.1	7.6	4.3	7.1	8.5
2. 國 防	59,251	66,732	12.6	24.2	8.7	12.5	20.0
3. 社 會 開 發	91,404	124,524	36.2	44.5	68.3	52.1	37.4
○ 教 育	44,022	56,488	28.3	1.8	0.7	2.9	17.0
○ 保 健	4,752	5,686	19.7	12.9	18.3	14.3	1.7
○ 社 會 保 障	20,465	26,912	31.5	26.6	49.0	31.9	8.1
○ 住 宅	2,473	33,790	65.0	2.7	0.3	3.0	10.1
4. 經 濟 事 業	48,541	67,890	39.9	8.1	7.4	2.9	20.4
○ 農 水 產 業	27,528	34,103	23.9	1.8	0.4	0.7	10.2
○ 鑛業·製 造 業	3,242	6,800	109.7	0.1	0.7	0.9	2.0
○ 道 路	10,067	13,483	33.9	1.3	1.3	1.0	4.0
5. 地 方 財 政 交 付 金 等	34,820	45,576	30.9	15.6	11.3	25.4	13.7
合 計	256,772	332,961	29.7	100.0	100.0	100.0	100.0

資料: 「한국의 재정통계」, 1991, 재무부(1990 GFS Yearbook, IMF 統計局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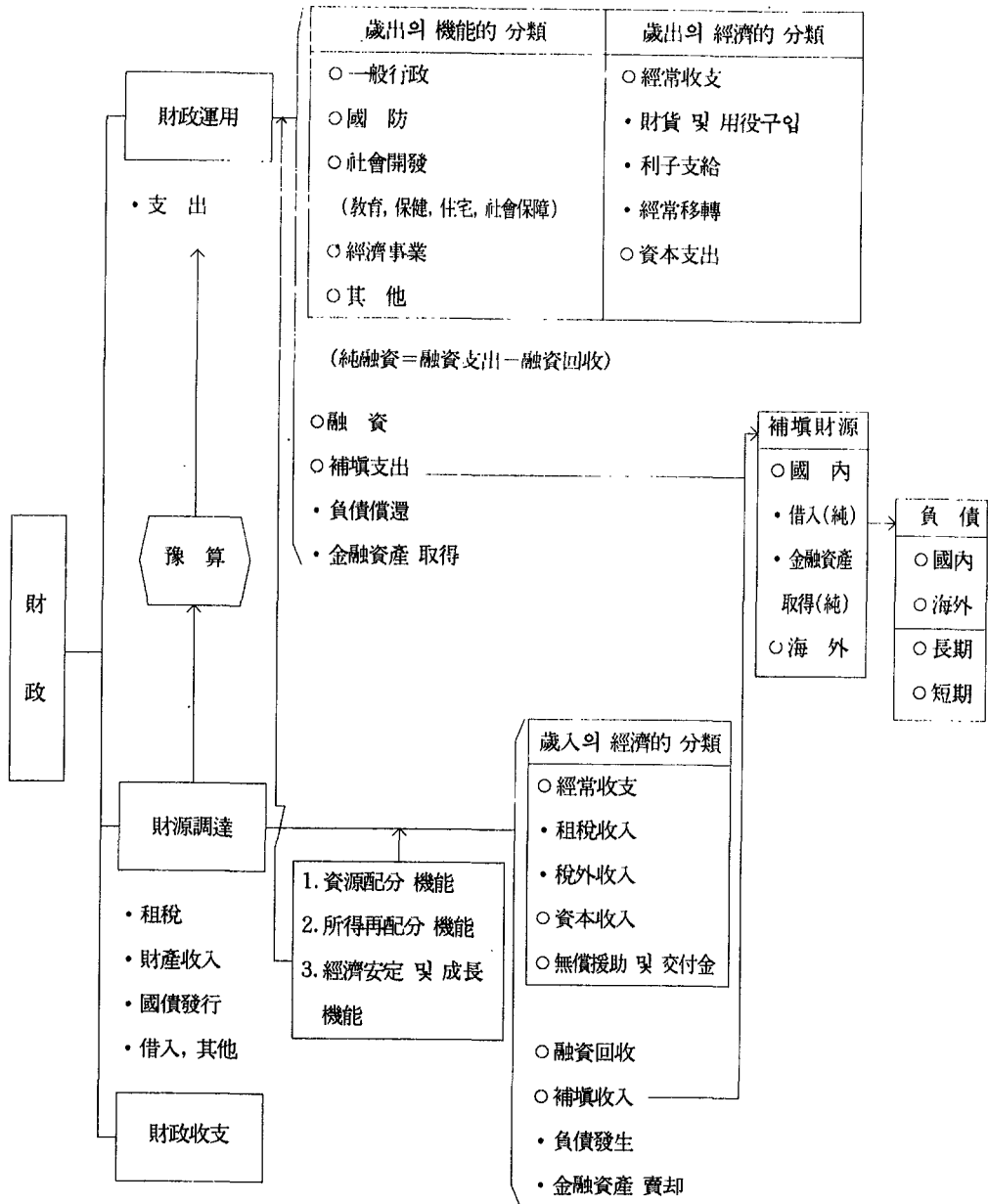
財政統計의 包括範委



※ ……線중 公共金融機關은 政府의 本質의인 機能에 해당치 않으므로 포함치 않고 있으며 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 特別會計는 資料蒐集上의 制約으로 包含치 못하고 있는 部門임.

註：1) 產災豫防 및 南北協力基金은 '91 회계년도에 新設된 基金임.
 資料：「한국의 재정통계」재무부, 1991.

財政統計體系



歲入 - 歲出 - (融資支出 - 融資回收)

< 赤字 또는 黑字 >

資料：「한국의 재정통계」, 1991, 재무부

여 백

IX. 國民計定統計

여 백

IX. 國民計定統計

1. 國民經濟計定統計

가. 日帝時의 國民所得推算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國民所得概念에 속하는 총량을 체계적으로 추계한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 1945년 이전의 日帝下 조선의 國民所得에 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 재무국 이재과에서 推算한 자료뿐인데 당시 조선의 국민소득은 아래와 같다.

1945年 以前 朝鮮國民所得

(單位：億圓)

1937	1941	1942	1943	1944	1945
20	30	35	40	55	70

(1) 1937년도 國民所得算出

해방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 다만 총괄적인 숫자 발표로 日本人 土方成美가 1937년의 조선의 국민소득을 2,746백만圓이라고 발표하였고 日本 東洋經濟社가 1,728백만圓으로, 日本人 高교귀길씨가 1,763백만圓이라고 각각 발표한 것이 있을 뿐인데 조선총독부 이재과에서는 이러한 발표숫자를 단순히 平均하여 약 22億圓 정도로 측정한 후 다시 당시의 조선의 各種 經濟指標가 日本의 1/10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참작하여 이에 수정을 가하여 20億圓이라고 概算하였다.

(2) 1941년도 國民所得算出

먼저 제3종 소득, 제2종 소득, 비과세소득, 호별세, 기타 법인유보소득 등을 중심으로 個人所得의 증가지수를 다음과 같이 1937년을 기준년도 100으로 하고

IX. 國民計定統計

1941년까지의 매년도 증가지수를 구하였다.

個人所得의 增加指數

(1937=100)

1937	1938	1939	1940	1941
100	114	130	145	15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941년도 조선의 國民所得을 산출하였는 바, 1937년도의 推定國民所得 20억圓에 1941년도 私人所得 增加指數 157을 곱하여 1941년도 국민소득을 대략 31억圓으로 추정하는 한편 同年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點檢을 행하였다.

종별 소득금액

(單位：百萬圓)

① 관공소득	152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141
공공단체수입	6
② 사인소득	2,772
법인유보소득	69
개인소득	2,534
예금이자	82
산업단체소득	9
부동산매매익	77
③ 합 계	2,924

이상과 같은 모든 결과를 종합평균하여 1941년도 國民所得을 30억圓으로 概算하였다.

(3) 1942년도 國民所得算出

前期 1941년도분 2,924백만圓을 기초로 生産物의 과거 3년간의 前年對比 平均 增加率 20%를 국민소득증가율로 간주하여 1942년도 국민소득을 다음과 같이 概算하였다.

$$2,924 \text{ 百萬元} \times 1.20 = 3,508 \text{ 百萬元}$$

(4) 1943년 이후의 國民所得算出基礎

1943년 이후에 있어서는 조선의 生産狀況, 매년도 財政 및 産業資金供給豫想額 日本의 國民所得增加率 등을 종합하여 개산하였다.

日政은 이렇게 산출한 국민소득계수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資金計劃을 수립하였는 바 환언하면 日政은 자금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조선의 국민소득을 이용코자 전술한 바와 같은 국민소득을 산출하였던 것이다.(韓國國民所得推計資料輯, 韓國銀行)

1941~45年間 朝鮮國民所得配分計劃表

(單位: 億圓, %)

	國民所得	配 分 計 劃					
		財政資金	比 重	消費資金	比 重	國 債	比 重
1941	30	5	0.16	19	0.63	6	0.20
1942	35	6	0.17	20	0.57	9	0.25
1943	40	7.1	1.77	20.9	5.22	12	3.01
1944	55	10.2	1.85	21.8	3.96	23	4.18
1945	70	12.1	1.72	22.9	3.27	35	5.00
계	230	40.4	0.17	104.6	0.45	85	0.38
5개년 년평균	46	8	—	20.9	—	17	—

나. 해방이후의 國民所得統計

(1) 沿 革

해방후에는 신경제이론의 도입에 따라 국민소득의 산출이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서 그 용도가 다양해지고 긴급해짐에 따라 정부수립직후에 기획처 경제기획국은 생산통계를 이용한 생산국민소득을, 재무부세제국은 사세행정자료를 이용한 분배 국민소득을 추계하였고 조선은행 조사부에서도 1949년도에 소비면에서 본 소비투 자방법으로 1947년 이후 계열의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추계하였다. 이상의 3가지 추계결과는 당시의 자료사정과 기술상의 문제로 통계상의 불일치가 심하였다. 동

란중 정부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1년 12월 국민소득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를 각기관과 유기적연결을 시도하였던바 UNKRA의 위촉으로 한국경제재건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1952년 사절단이 생산추계자료에 의거 추계방법을 提示하였었다. 1955년에는 한국은행조사부와 기획처 경제기획국이 협동하여 1952년~1954년에 걸친 회계연도의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총생산액을 국민계정방식에 의거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종합추계를 했다. 한편 재무부 사세국에서는 주로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을 매년 예측추계형식으로 총예산제안의 설명자료로서 발표하여왔고 또한 OEC(미국원조기관)에서도 원조정책의 지침을 얻기 위하여 미달러화표시 국민총생산을 추계하였다. 그러던 차에 1957年 8월에 財務部 司稅顧問團이 국내 국민소득추계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민소득추계를 전담할 것을 건의하였고, 동 건의는 즉시 채택되어 정부와 OEC는 국민소득추계를 중단하고 한국은행조사부가 공식추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은행은 추계업무의 정비확장과 아울러 국민계정체계의 전반적 조사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계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58년에 이르러 산업별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UN이 권고하고 있는 통일안에 따라 1953~57년의 역년기간에 대해 경상시장가격과 195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추계발표하게 된 것이다. 1959년에 이르러 국민계정체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종전에 국민총생산중심이었던 추계방법을 지양하고 국민소득의 개편추계를 시도하였다. 이 개편에서는 생산·분배·지출 3면등가의 원리에 의해 국민소득추계방법의 일대혁신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1961년 7월 조사부내에 종전의 통화, 재정, 국민소득, 해외 및 대외거래 등 통계를 담당하던 제1통계과에서 국민소득과를 분리시켜 국민소득업무의 전담 및 일부 금융통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1967년에는 다시 국민소득과에서 일부담당하던 금융통계를 금융통계과로 이관하고 국민소득과는 주요업무로 국민소득, 국민생산, 국민지출, 국부에 관한 통계의 편제와 분석업무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신국민계정체계의 이행에 따라 I/O와 GNP의 기준일치가 시급해짐에 따라 조사제2부내에 국민계정실을 설치하고 기존의 국민소득과 기획기능과 투입산출과의 기획기능을 합하여 기준과를 신설

함으로써 국민계정실을 기준과 국민소득과 투입산출과로 구성하고 신국민계정체계의 완전이행업무 및 국민계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한편 불변시장가격계열의 기준년변경을 1990년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신SNA로의 이행작업을 1986~87년에 추진하였다. 1989년에는 1985년으로 기준년을 변경하였는데 특히 1) 1980년 이후의 경제구조 및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변시장가격계열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였고 2) 국민계정체계의 완전이행으로 「경제활동별 재화와 용역산출표」와 「경제활동별 재화와 용역별 투입표」편제를 통해 국민소득통계와 I/O표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대국민계정을 상호연결하였고 3) 산업생산지수, 물가지수 등 주요기초 통계자료와의 기준년과 일치시켜 자료의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연구 및 분석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4) 각 년도의 국민계정추계시 입수가 불가능하였던 산업연관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등 기초통계자료의 확충으로 추계의 정도제고를 기하였다.

(2) 국민소득 추계방법

국민소득은 3면등가의 원칙에 의해 생산·분배·지출의 어느 측면에서 파악하든 등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추계하는데는 생산접근방법·소득접근방법·지출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활동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국민소득의 추계에 이용되는 기초자료의 공급시기와 내용 등이 이 각 부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각 부문은 기초통계의 사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통계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출이나 분배보다 생산관련기초통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국민소득을 추계하여 확정된 다음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출 및 분배 국민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이 때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사이에는 추계방법과 기초자료이용상의 차이에 따라 규모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지출국민소득에서 통계상 불일치라는 항목으로 기록된다. 이와같은 통계상의 불일치는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며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분배국민소득의 추계는 기초자료의 사정으로 연간 확정시에만 추계한다.

(가) 생산국민소득 추계방법

생산국민소득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가사서비스 생산자 등 주요활동주체별로 정상이가격과 불변가계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1) 산 업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 9개 경제활동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원칙적으로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먼저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① 생산액의 추계

정상이가격에 의한 산출액의 추계는 기초자료의 사정에 따라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기초자료에서 산출액을 직접 추출하거나 별도로 구한 생산량에 정상이가격을 곱하거나 또는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 및 가격지수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불변가계에 의한 산출액의 추계는 정상산출액을 관련가계지수(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단가지수 등)로 직접 환가하여 실질화하거나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② 부가가치의 추계

정상부가가치는 정상중간투입액의 추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추계하며 정상중간투입액의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및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하여 구한 정상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불변부가가치는 불변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며 정상중간투입액추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변산출액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정부, 민간비영리, 가사서비스 생산자

이들 활동주체의 비용구조는 성격상 영업잉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산출액은 동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정상경비와 일치하게 된다.

① 정부서비스 생산자

정부서비스생산자의 경제활동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등 13개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추계하며 각각의 산출액 중간

투입액 및 부가가치의 경상가격은 해당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이용하여 해당항목을 직접 추출 합산하여 구하고 불변가격은 관련가격지수로 각각 환가하여 구한다.

②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제활동은 조사연구, 교육, 의료보건, 복지 기타 등 5개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추계하며 경상산출액은 대체로 표본조사로 구성된 단체당 산출액(경상경비)에 해당관계 단체수를 구하여 추계하고 경상부가가치는 경상산출액에 표본조사로 구한 경상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불변산출액은 경상산출액을 관련가격지수로 환가하여 구하고 불변부가가치는 불변산출액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사서비스생산자

가사서비스생산자의 산출액은 그 비용구조가 중간투입없이 피용자보수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와 규모가 같다. 경상가격은 도시가계연보, 가정부 및 파출부, 알선기관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불변가격은 이들 자료에서 구한 임금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한다.

(나) 지출국민소득 추계방법

지출국민소득은 가계, 민간비영리단체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고증가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 등으로 분류하여 추계하며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합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하고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가를 합하여 총자본형성이라 한다.

1) 최종소비지출

①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은 보리, 콩 등 곡물과 곡물이외의 재화 그리고 서비스 및 비거주자 가계지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곡물은 가계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고 곡물이외의 재화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축차적으로 추적 추계하는 재화유통추적법(Commodity flow method)을 이용한다. 즉 품목별 국내산출액에서 수출입과 재고변동을 조정하여 국내 총공급을 산출하고 여기에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가계소비율을 곱한 다음 상

업 및 운수마진을 더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서비스부문은 대부분 생산국민소득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전기, 수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결산서 등에서 관련항목을 직접 추출한다. 한편 거주자가계의 순지출은 외환통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와같이 추계된 곡물, 곡물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계최종소비지출을 합하여 국내에서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하며 이로부터 비거주자 가계순지출을 차감하여 거주자가계의 최종소비지출로 한다.

② 민간비영리단체 및 정부최종소비지출

이들의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측에서 추계된 산출액에서 상품 및 비상품(정부나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어 생산비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산업 및 가계 등에 판매한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의 판매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한다.

2) 총자본형성

①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자본재형태별 및 경제활동별로 추계하는데 총고정자본형성 총액은 자본재형태별 추계결과를 이용한다.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은 7개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하는데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기타건축물, 토지개발, 조림 및 과수원개발, 중축, 역축, 낙농축 부문 등은 생산국민소득의 산출액을 이용하며 운수장비 및 기계류부문은 재화유통추적방법을 이용한다.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로 나누어 추계하고 있으며 정부서비스생산자는 정부예결산서를 이용하여 경제활동별로 추계하고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액으로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총고정자본형성액을 차감하여 구한 산업 전체의 총고정자본형성을 기업경영분석 및 국부통계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활동별 분배비율을 이용하여 각 산업에 배분하여 추계한다.

② 재고증가

재고증가는 농림산품, 축산품, 광공산품 및 수입품 등 상품류별로 구분하여 추계하는데 농림산품은 국내총공급액(산출물+수입액-수출액)에서 기준년 국내수요액을 관련지수로 연장한 국내 수요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축산품은 한우, 닭, 돼지 등 재고증가에 포함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여 재고증가두수(기말가축사육두수

- 기초가측사육두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광공산품은 광공산품의 생산출하 및 재고동향에 관한 자료로 부터 재고변동량의 비율인 재고증가율을 구하여 여기에 생산측 자료인 산출액을 곱하여 추계한다. 한편 수입액은 수입액에서 수입품수요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수입품수요액은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수입품 수요율에 생산측의 산출액을 곱하여 구한다.

3)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

① 재화와 용역의 수출

상품, 운수 및 통신, 보험서비스수출과 비거주자가계(외국기관 포함)의 국내소비지출 등으로 나누어 FOB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상품수출은 통과시점을 기준으로 한 무역통계(관세청)를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재화의 법적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계상하는 신국민계정의 개념에 맞게 조정하여 계상한다. 운수 및 통신, 보험서비스수출과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은 외환통계와 관련협회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② 재화와 용역의 수입

상품, 기타운수 및 통신, 기타 보험서비스수입과 거주자가계(정부포함)의 해외소비지출 등으로 나누어 CIF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기타운수 및 통신, 기타보험서비스수입과 거주자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외환통계와 보험협회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다) 분배국민소득 추계방법

분배국민소득은 확정추계시 연간경상으로만 작성하는 통계로 이는 소득거래가 생산과 소비상의 거래처럼 수량요인과 가격요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분기별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거래항목은 그 성격상 소득의 발생거래(소득의 1차분배)와 경상이전거래(소득의 2차분배)로 양분되는데 소득의 발생거래는 생산추계에서 총액이 확정된 것을 제도부문별로 배분하는데 그치고 경상이전거래는 독자적으로 추계한다. 그러나 각 제도부문별 배분에 있어서 개인의 수취부문을 잔액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수가 많다. 각 제도부문별 추계는 기본적으로 1) 법인기업의 자료는 국세청의 법인기업 종합재무제표 및 정부의 5대기업특별회계결산서

2) 금융기관의 자료는 금융업과 보험업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결산서 3) 일반정부의 자료는 정부결산서를 이용한 직접 추계자료 4) 해외의 자료는 대외거래에서 작성된 자료를 이용 5) 개인부문의 자료는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를 이용한다.

다. 産業聯關表

(1) 由來와 沿革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각산업간에 이루어지는 原材料의 매매거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財貨와 서비스의 産業間 去來關係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産業聯關表에 의하여 산업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最終需要가 生産, 雇傭, 所得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가 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각 산업의 投入과 產出關係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經濟豫測이나 計劃樹立 등에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美國의 레온티에프(W.W.Leontief)교수가 1936년에 “美國의 經濟體系에 있어서 投入-產出의 數量的 關係”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美國에서는 194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産業聯關表작성은 1958년 당시의 復興部 産業開發委員會가 1957년 및 1958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表는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電算化미비 등 여러가지 통계기초여건의 애로로 말미암아 통계의 정도 등 내용이 부실하여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960년부터는 韓國銀行도 産業聯關表 作成의 形式과 內容을 體系的으로 研究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5·16以後 經濟開發計劃樹立을 추진하던 政府는 이에 必要基礎資料로서 産業聯關表作成을 韓國銀行에게 지시함에 따라 1962년에 착수하여 약 1년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그후 經濟規模의 확대와 經濟發展에 따른 産業構造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

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및 1980년의 實測表와 1968년, 1973년, 1978년 및 1983년의 延長表를 작성하여 한국경제의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産業聯關表의 基本構造

國民經濟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판매하거나, 최종수요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하는 등 국민경제는 산업 상호간, 산업과 최종수요부문간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다.

이와같은 경제의 모든 循環過程을 일정기간(보통 1年)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록 원칙에 따라 行列形式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가 산업연관표이다.

産業聯關表의 基本構造

		內 生 部 門		外 生 部 門		輸入 (控除)	總產 出額
		i...j...n	中間需要計	消費投資輸出	最終需要計		
內 生 部 門	1	$X_{11} \cdots X_{1j} \cdots X_{1n}$	ID_1	$C_1 \quad I_1 \quad E_1$	Y_1	M_1	X_1
	\vdots	\vdots	\vdots	\vdots	\vdots	\vdots	\vdots
	n	$X_{n1} \cdots X_{nj} \cdots X_{nn}$	ID_n	$C_n \quad I_n \quad E_n$	Y_n	M_n	X_n
	中間投入計	$\Pi_1 \cdots \Pi_j \cdots \Pi_n$					
外 生 部 門	附加價值計	$V_1 \cdots V_j \cdots V_n$					
總 投 入 額		$X_1 \cdots X_j \cdots X_n$					

산업연관표에서는 이와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거래관계에 따라 內生部門과 外生部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게 된다.

산업연관표에서 보면 行으로 i部門의 국내생산 X_i 와 수입 M_i 를 합한 總供給 $X_i + M_i$ 중 $ID_i (= \sum_{j=1}^n X_{ij})$ 는 自部門 및 他部門에 중간재로, $Y_i (= C_i + I_i + E_i)$ 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로 판매된 것을 나타낸다.

한편 列로 보면 j部門은 X_j 의 생산을 위해 自部門 및 他部門으로부터 $\Pi_j (= \sum_{i=1}^n X_{ij})$ 를 원재료로 구입하고 V_j 의 본원적 생산요소를 구입한 것을 나타낸다.

(3) 産業聯關分析의 基本假定 및 特徵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생산의 일반적 성질과 관계를 가지고 대개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結合生産의 非存在에 관한 가정이다. 이것은 어떤 한 산업은 하나의 생산물만 생산한다.

둘째로 대체생산방법의 非存在(각상품의 생산방법은 한개뿐)

세째로 規模經濟의 非存在(투입은 산출의 일차함수 ; 수확불변의 법칙)

네째로 외부경제의 비존재

이상의 기본가정은 산업연관분석의 파라미터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는 것, 즉 각 산업마다 하나의 생산함수를 想定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가정에 바탕을 둔 산업연관 분석은 經濟構造分析, 經濟豫測 및 經濟計劃樹立, 經濟政策의 효과측정 등 각종 경제분석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방법은 다른 경제분석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에 입각하여 전 경제의 均衡을 찾기 위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一般均衡分析이다.

둘째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과 微視的 분석의 중간에 속하는 多部門분석이다.

세째로 산업연관분석은 기본적으로 시간개념이 포함되지 않고 일시점에 있어서의 균형상태를 분석하는 靜態分析이다.

이와같은 특징을 가지는 산업연관분석은 선형경제학의 발전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으로 그 分析範圍가 크게 擴大되어 가고 있다. 즉 地域間 연관관계분석, 動學的 産業연관분석, 線型計劃 모델에의 응용, 그리고 개별기업의 경영분석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4) 과거 작성된 산업연관표 내용

1960년부터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온 각 산업연관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960년 산업연관표는 당시 國家再建最高會議의 요청에 따라 韓

國銀行에서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1962년 3월에 작성 작업에 착수하여 약 1년 반의 작업끝에 완성, 1964년에 공표하였다.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약 1,150餘個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의 형식은 競爭·非競爭輸入折衷型을 취하여 43개부문에 대하여 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 및 준역행렬계수표를 작성하였다. 역행렬계수표는 $(I-A)^{-1}$ 형, $(I-A^d)^{-1}$ 및 $(I-A+\hat{m})^{-1}$ 형을, 준역행렬계수표는 $A^m(I-A^d)^{-1}$, $A^v(I-A^d)^{-1}$ 형을 계산하였다. 부속표로서 物量表와 수도부문의 109개통합표 및 43개부문에 대한 雇傭表도 작성하였다.

1963년 산업연관표는 1964년 10월에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65년 12월에 공표하였다.

1963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960년표의 기준을 따랐고 부문수는 기본부문을 270개부문으로 하였으며 109개부문과 43개부문으로 통합하였다. 1960년표에 비하여 제조업부문을 가능한 한 細分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주요품목으로 策定된 산업부문 즉 石炭, 化學肥料, 시멘트, 전력, 통신 등을 독립부문으로 설정한 점이 특색이었다. 한편 購買者價格評價表도 작성하는 등의 변경을 가하였다.

표의 형식은 1960년표와 마찬가지로 競爭·非競爭輸入折衷型으로 하였으며 43개부문에 대하여 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의 준역행렬계수표를 작성하였고 역행렬계수표로서 $(I-A)^{-1}$ 형, $(I-A+\hat{m})^{-1}$ 형 및 $(I-A^d)^{-1}$ 형을 준역행계수표로서 $A^m(I-A^d)^{-1}$, $A^v(I-A^d)^{-1}$ 형을 계산하였다.

1966년 산업연관표는 1967년 6월에 착수하여 1968년 11월에 완성하고 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 및 준역행렬계수표 등 각종 계수표를 작성하였다.

1966년표의 체계는 1963년표와 같이 競爭, 非競爭輸入折衷型으로 하였다.

1968년 산업연관표는 1966년表를 기초로 한 연장표로서 작성되었으며 1969년 12월에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70년 4월에 완성하였고,

1970년의 산업연관표는 1971년 1월에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73년 4월에 완성 공표하였다.

1970년表의 作成에 있어서는 과거에 작성한 표보다 부문분류, 표의 형식 및 계

IX. 國民計定統計

정처리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고 여러가지 부속표를 작성하여 그 분석이용도를提高하였다.

1973년 산업연관표는 1974년 9월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75년 8월에 완성 공표하였다.

1973년 산업연관표는 1970년표를 기초로 한 연장표로 작성하였으므로 부문분류, 표의 형식 및 계정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1970년표와 같다.

1975년 산업연관표는 1976년 1월에 작업에 착수하여 약 2년 후인 1977년 12월에 완성 공표하였고 1978년 산업연관표는 1975년표를 기초로 한 연장표로서 1979년 4월에 그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80년 12월에 완성공표하였다.

1980년 산업연관표는 1981년 1월에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82년 12월에 공표하였다.

1983년 산업연관표는 1980년 이후의 상대가격 변화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투입산출구조의 변동을 把握하기 위하여 1980년표를 연장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상의 諸原則은 1980년표를 따랐다.

(5) 1985年以後의 産業聯關表

1985년 중엽부터 원유 등 國際原資材價格의 안정에 따른 相對價格體系의 변동과 최근의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발전과 산업용 로봇의 등장에 의한 工場自動化추진 등 生産技術構造變化 및 新商品 開發 등 산업구조면에서 큰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작성이 요청된 데다 國民所得計定の 新SNA體系로의 전면이행과 관련하여 1985년 산업연관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85년 산업연관표는 1986년 1월 그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表의 체제결정, 부문분류, 조사대상표본업체선정 등의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表의 체제결정, 부문분류, 조사대상표본업체선정 등의 준비작업, 투입구조조사 및 자료처리작업, 총산출액, 수출입,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 등 부문별 추계작업, 거래표 조정작업 그리고 각종 계수산출작업 등 약 2년 3개월에 걸린 작업끝에 완성 1988년 3월에 공표하였다.

1985년표의 기본구조는 1980년표의 체제를 따랐으나 추계결과의 정도를 높이고 분석이용의 다양성에 대응할 필요에서 부문분류를 다소 조정하고 부문별 개념 및 정의, 추계방법, 계정처리방식 등에 있어서는 1980년표와 같이 新SNA의 개념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985년표의 基本表는 구매자가격과 생산자가격에 의한 상품×상품(Commodity×Commodity)의 거래표로 작성되었다. 또한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國產品去來와 輸入品去來를 구분하여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를 각각 작성하였다.

종래표에서는 수입품을 경쟁수입품과 비경쟁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경쟁수입형표 및 비경쟁수입형표를 작성하였으나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술축적과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국내에서 생산가능해짐에 따라 원유 등 자원을 제외한 비경쟁수입품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경쟁 및 비경쟁수입품목의 구분이 어려운 품목도 있어 1980년표와 같이 수입을 경쟁수입과 비경쟁수입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1985년표의 부문분류에 있어서는 과거의 표와 같이 財貨와 用役의 生産活動을 단위로 하는 商品基準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부문 및 품목의 설정에 있어서는 時系列比較 등을 위해 1980년 산업연관표의 부문 및 품목분류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韓國標準產業分類, 1985년 鑛工業統計調査用 품목분류를 참고하고 산출액의 변화와 수입비중의 변화를 감안하여 일부 부문을 통폐합 또는 세분하였으며 光纖維, NC工作機械등 신규품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1980년의 부문수에 비하여 基本部門이 396개부문에서 402개부문으로, 中分類部門이 162개부문에서 161개부문으로, 大分類部門이 64개부문에서 65개부문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한편 1987년 산업연관표는 1987년중 新技術의 도입에 따른 生産技術構造의 변화와 유가 등 國際原資材價格의 반등으로 인한 相對價格體系의 변동 등 우리 經濟構造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제반 경제분석 및 정책입안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1985년표(본표)를 연장한 표이다.

1987년표의 작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1986년 대비 價格變化 및 算出額 증감이 현저한 부문,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문, 輸入代替가 이루어진 素材部品부문 및 生産技術과 相對價格變化로 인하여 投入構造가 달라져 附加價值率變

IX. 國民計定統計

화가 심한 부문을 投入構造調査對象部門으로 선정하였으며 調査對象部門數는 41個 基本部門(211個 基礎品目)으로 하였다.

수입원자재 가격변화와 수입대체의 진전에 따른 정확한 需要構造 파악을 위하여 8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輸入品 配分構造調査를 하였다.

라. 資金循環計定

(1) 意義와 沿革

국민경제의 움직임은 商品의 生産 流通 消費라는 實物面의 흐름중에서 일부는 장래를 위한 비축으로서 資本形成으로 향하게 되고 金融面의 흐름중에서도 그 일부는 金融資産으로 축적된다. 자금순환계정(Flow of Funds Account)은 이러한 信用 및 通貨의 흐름(Flow)과 그 잔액(Stock)을 經濟各部門別로 각 거래 항목별로 분류한 표에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실물거래의 대표적인 統計의 國民所得計定이나 産業聯關表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금의 금융적유통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金融統計는 금융기관이라는 자금의 중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의 산업적 유통은 물론 자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하는 流通經路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資金循環計定을 개발한 것은 美聯準의 調査統計部와 이를 지도한 「코넬」대학의 「코플랜드」교수였으며 결과는 1952년에 「美國의 資金循環에 관한 研究」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그후 美聯準은 「1937~1953년간의 美國經濟의 資金循環」을 1955년에 발표하였다. 이어서 1963년에 英蘭銀行에서 1960~62년간의 자금순환표를 작성발표하였으며 日本銀行에서도 1958년에 1954~57년까지의 자금순환표를 작성하였다. 이밖에도 西獨, 프랑스, 台灣 등 많은 국가에서 자금순환표가 작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資金循環計定편제는 1965년부터 韓國銀行에서 작성 발표하여 왔는데 1969년에는 1963년 부터의 時系列(1963~1968)을 수록한 「韓國의 資金循

環」을 발간하였다. 그 후 1971년에는 1970년까지의 시계열을 보완하고 1965~1970년까지의 分期表를 새로 작성 발표하였고 1976년과 1978년에는 각각 그때까지의 시계열을 수록한 「韓國의 資金循環」을 발간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1983년까지의 시계열 및 응용표를 수록한 「資金循環計定」 책자를 발간하였다.

(2) 資金循環計定の 內容

(가) 基本構造

자금순환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계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각국이 작성하는 자금순환표는 作成機關과 分析目的 및 基礎資料의 사정에 따라 計定の 構造, 去來의 包括範圍, 部門分類 및 去來項目의 분류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우선 자금의 흐름을 形態別로 表示할 것인가(形態別 資金循環) 經路別로 표시할 것인가(經路別 資金循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計定方式에 의한 形態別 資金循環表로서 「매트릭스」(行列式) 형태를 취하고 있다.

行(row)에는 國民經濟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인 金融, 政府, 企業, 個人, 海外의 5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列(Column)에는 위 각부문간의 거래형태가 非金融去來(貯蓄, 投資, 資金過不足)와 金融去來의 순서로 분류하고 있다.

(나) 部門分類

자금순환표상의 部門分類는 나라마다 경제여건과 금융제도 등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최초 자금순환편제시 法的, 制度的基準에 따랐으나 1976년에 소폭 개편을 한 이후 1985년 자금 순환계정 전면개편시 經濟的, 機能的 基準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5大分類이외에 小分類를 취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金融部門

韓國銀行, 預金銀行, 保險 및 年金基金, 其他金融機關으로 구성된다.

2) 韓國銀行

本源通貨를 공급하는 通貨當局임.

3) 預金銀行

IX. 國民計定統計

派生通貨를 공급하는 一般銀行과 特殊銀行을 말함.

4) 保險 및 年金基金

보험부문에서는 生命, 事故, 疾病, 火災 및 災難 등 보험제공에 주로 종사하는 法人組織이나 상호부조단체가 포함되며 年金基金은 특정 피용자 집단이 은퇴할 경우 소득발생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말함.

- ① 生命保險：生命保險會社,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국민생명보험, 체신보험, 농협공제사업부문
- ② 年金基金：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기금,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체신공제조합
- ③ 損害保險：손해보험회사, 한국보험공사, 수출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수협공제사업부문

5) 其他金融機關

기타 금융기관에는 開發機關, 貯蓄機關, 投資機關, 證券機關, 公的 金融機關으로 크게 구분된다.

- ① 開發機關：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 ② 貯蓄機關：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은행신탁계정, 새마을 금고
- ③ 投資機關：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 ④ 證券機關：증권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⑤ 公的金融機關：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6) 政府部門

정부부문에는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교육, 문화 등 각종 社會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생산비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자금이 조달되는 社會保障機構, 가계나 기업에 봉사하며 정부에 의해 주로 자금이 조달되고 통제받는 公共非營利機關이 속한다.

- ① 中央政府：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및 연금·보험특별회계의 기금, 국민투자기금 등 여타부문으로 분류되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제외

한 중앙정부의 기관

- ② 地方政府：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정부
- ③ 社會保障機構：의료보험조합연합회, 의료보험관리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및 기금,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 및 기금
- ④ 公共非營利機關：한국개발연구원, 증권감독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병원, 한국에너지연구소 등

7) 企業部門

기업부문에는 公企業(政府企業, 政府管理企業)과 民間企業(民間法人 企業, 非法人企業)이 포함되어 있다.

① 公企業

공기업은 정부기업과 정부관리기업으로 나누어 지는 데 정부기업은 정부가 公益性的의 확보와 政府受入증대를 위해 직접기업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企業特別會計 및 基金을 말하며 政府管理企業은 정부가 일정규모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통제를 하지만 獨立채산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말함.

- 政府企業：양곡관리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 기금, 조달기금 등
- 政府管理企業：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어촌개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② 民間企業

민간기업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株式會社, 有限會社, 合資會社, 合名會社 형태의 모든 民間法人企業과 個人企業중 일정규모이상의 非法人企業을 말함.

- 民間法人企業：금융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을 제외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형태의 모든 營利法人企業
- 非法人 企業：연간수입액 2억 5천만원이상(단,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및 도금업, 보관업은 6천만원 이상)으로 所得稅法에 따른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인 개인 사업자.

8) 個人部門

IX. 國民計定統計

개인부문에는 家計(農家포함), 民間非營利團體, 非法人企業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기업을 포함.

9) 海外部門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를 상대국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부문

(다) 去來形態分類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實物去來와 金融去來로 구분되는 바 자금순환계정에서도 貯蓄·投資 등 실물거래는 非金融去來計定에, 預金 借入金 등 금융거래는 金融去來計定에 기록된다.

먼저 非金融去來計定の 거래내용은 원천항목인 經常剩餘, 固定資本消耗, 資本移轉과 運用項目인 固定資本形成, 在庫增加, 土地 및 無形固定資產純購入으로 구분된다. 金融去來計定の 거래내용은 金, 通貨 및 通貨性預金, 其他預金, 生命保險 및 年金, 短期債券, 長期債券, 株式, 貸出金, 政府融資, 出資金, 企業信用, 外換保有額, 對外債權, 債務, 其他金融資產, 負債 등의 14개 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其他預金, 短期債券, 長期債券, 貸出金 등은 다시 형태별로 세분되는 데 금융자산구입을 통한 자금의 공급은 운용, 금융부채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은 원천란에 기록한다. 자금순환표의 금융계정분류순서에 따라 各 金融資產 및 負債의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金 : 한국은행보유 地金銀

2) 通貨 및 通貨性預金

- ① 韓銀預受金 : 금융기관의 對韓銀預置金(支給準備金, 通安計定預置金), 군인연금기금, 국민투자기금, 재형기금의 對韓銀預置金
- ② 現金通貨 : 한국은행의 貨幣發行額으로서 預金銀行보유분 제외
- ③ 要求拂預金 : 예금은행의 當座預金, 別段預金, 普通預金 등 要求拂預金
- ④ 政府當座預金 : 국고예금

3) 其他預金

- ① 預金銀行預金 : 예금은행의 貯蓄性預金 및 居住者外貨預金
- ② 讓渡性預金證書(CD)
- ③ 信託 : 銀行信託計定の 金錢信託

- ④ 短資：投資金融會社 및 綜合金融會社의 自體發行어음 및 CMA
 - ⑤ 其他：貯蓄機關, 開發機關, 證券機關의 예수금 및 公積金예탁금
- 4) 生命保險 및 年金：생명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의 준비금
- 5) 短期債券
- ① 國公債：만기 1년이내의 국공채로서 재정증권 및 양곡증권
 - ② 金融債：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만기1년이내의 채권으로서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③ 企業어음：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할인어음중 재매출분
- 6) 長期債券
- ① 國公債：만기 1년이상인 국고채권, 징발보상증권, 국민투자채권, 국민주택기금 채권 등
 - ② 金融債：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만기 1년이상인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주택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 ③ 會社債：일반회사채 및 정부관리기업이 발행한 전력채권, 전신전화채권, 토지개발채권, 서울지하철공사채 등
 - ④ 投資受益證券：투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7) 株式：주식회사(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본금
- 8) 貸出金：
- ① 韓銀貸出金：한국은행의 예금은행 및 일반정부, 정부기업에 대한 대출금
 - ② 預金銀行貸出金：예금은행의 원화 및 외화대출금
 - ③ 保險貸出金：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의 대출금
 - ④ 短資貸出金：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할인어음(자체보유분)
 - ⑤ 其他貸出金：개발기관, 저축기관, 증권기관, 공적금융기관 대출금 및 종합금융회사의 원화 및 외화대출금
- 9) 政府融資：중앙정부의 자금관리특별회계 및 각종기금융자금, 지방정부의 융자금, 사회보장기구, 공공비영리기관의 대출금, 해외차입금 중 전대차관분

IX. 國民計定統計

- 10) 出資金 :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를 취하는 금융기관 및 법인기업의 자본금
- 11) 企業信用 : 기업부문의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등
- 12) 外換保有額 :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제외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환
- 13) 對外債權·債務 : 대외자산중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국내부문의 모든 대외부채를 계상
- 14) 其他金融資産·負債 : 상기 거래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선급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3) 資金循環計定 改編內容

한국은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63년에 자금순환계정을 每4分期 및 年間表를 작성 공표하여 왔으나 部門 및 去來項目분류방법이 제한됨으로써 金融構造의 변천과 金融資産의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 간의 개편 작업을 거쳐 部門 및 去來項目을 修正 改編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76년 자금순환계정의 개편은 거래형태신설 등 부분적인 보완은 있었어도 기본적인 계정체계는 1965년부터의 편제와 동일한 分類體系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經濟發展과 더불어 金融産業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金融資産이 대량 출현하는 등 金融構造의 急變으로 資金循環計定の 개편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國民計定體系가 新國民計定體系로 이행됨에 따라 자금순환계정도 他計定과의 연결을 위해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제2차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部門分類를 종전의 5大 13小分類를 5大 20小分類로 대폭 확대개편하였다.

(가) 法的·制度的 基準에 의한 分類體系를 新SNA의 經濟的, 機能的基準으로 전환하였다.

- 1) 자금의 매개기능을 수행하는 國民投資基金, 住宅基金 및 財形貯蓄基金을 정부부문에서 금융부문(公的金融)으로 변경하였음.

- 2) 경제활동기능이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5大特別會計 糧穀 및 調達基金을 정부부문에서 기업부문(公企業)으로 변경하였음.
 - 3)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證券會社, 損害保險會社를 법인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변경하였음.
 - 4) 정부로 부터 이전될 자금으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KDI 등 公共非營利團體와 醫療保險管理工團 등 社會福祉機能을 개인부문에서 정부부문(公共非營利機關)으로 변경하였음.
 - 5) 민간에 대출하는 등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公務員, 軍人年金基金을 개인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변경하였음.
 - 6) 통화금융통계와 상호연관성제고를 위하여 一般政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세분하였음.
- (나) 새마을 금고를 貯蓄機關에 추가하였다.
- (다) 非法人企業을 個人部門에서 분리하여 기업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즉 資金赤字單位(Deficit Unit)인 非法人企業이 資金剩餘單位(Surplus Unit)인 個人部門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는 데 그 뜻이 있다.
- 1) 個人事業者중 기업적 성격을 가진 약 28,000개 업체(국세청의 복식부기 의무자)를 개인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분류를 변경하였다.
 - 2) 標本業體의 선정은 Neyman배분방식에 의한 層化任意抽出로 700개업체를 선정하였다.
- 둘째, 금융거래형태를 26개분류에서 38개분류로 조정하였다.
- (가) 금융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항목을 세분하였다.
- 1) 貯蓄性預金을 預金銀行預金과 非通貨金融機關預金으로 세분하였음.
 - 2) 韓銀預受金을 그 성격에 따라 순수한 韓銀預受金과 政府當座預金으로 나누었다.
 - 3) 有價證券을 株式과 債券으로 나누고 債券은 상환기간 1년이내와 1년초과로 구분하여 短期債券, 長期債券으로 나누었다.
 - 4) 金 및 外換保有額은 新SNA分類體系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金과 外換保有額으로 나누었다.

K. 國民計定統計

(나) 새로운 金融資産의 出現 등을 감안하여 거래항목을 신설하였다.

1) 讓渡性定期預金證書의 신설('84. 4月)에 따라 거래항목을 신설하였음.

2) 金融기관 포괄범위확대에 따라 生命保險 및 年金を 신설하였음.

세제, 편제기간을 단축하고 計定處理 및 評價方法을 개선하였다.

(가) 金融과 實物計定을 분리하여 핵심계정인 金融計定을 우선 편제 발표함으로써 速報性을 제고하였으며 實物計定은 연간 확정치추계시 金融計定과 접합함.

(나) 金融기관내부거래를 상쇄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함으로써 資金需給 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政府轉貸借款을 政府融資에 포함시킴으로써 資金需給經路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다) 對外債權·債務 評價方法을 개선하여 실세를 반영하였다.

(라) 外國은행 국내지점의 保有外換을 外換保有額에서 분리하여 對外債權으로 처리함으로써 國際收支통계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마. 國富統計

(1) 意義 및 沿革

國民貸借對照表에 나타나는 金融的 資産은 부채에 對應하여 部分別로 有形資産의 蓄積을 매개로 하지만 國民經濟 全體로서 보면 상쇄되어 버린다. 따라서 國家의 純資本 스톡의 총체를 把握하고 그 內部構造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資産項目別, 構造別로 여러 角度에서 非金融 資産을 分類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民貸借對照表에 있어서 非金融資産, 즉 有形資産으로서 계상되는 것을 國富(national wealth)라고 한다.

이와 같이 國富는 국민대차대조표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 自體를 독자적으로 調査하는 수가 많다. 金融資産, 負債와 合算하지 않아도 國富 그 自體로서도 重要한 目的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쿠즈네츠에 의하면 國富調査의 目的은 ① 國力の 國際比較 ② 일국의 國富蓄積

의 程度와 進陞狀況에 대한 시계열 분석 ③ 資本計數의 算出을 통한 國民所得水準 및 經濟成長과 資本과의 關係 分析 등 國民所得과의 相互關係 分析 ④ 經濟計劃樹立 資料로서 國富構造 分析 등 네가지를 들고 있다.

國富의 정의에 대해선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달리 規定되나 一般的으로 일정국에 있어서 再生産 可能한 有形資產을 현시점의 貨幣價値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經濟活動의 成果로서 畜積된 再生産 可能한 耐用年數 1年 이상의 有形固定資產과 對外純資產을 意味하지만 때때로 土地, 천연자원(물, 山林資源, 매장광물 등), 석화, 골동품 등을 포함하여 規定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無形資產은 그것이 對外資產일 경우에만 포함시키는 것이 普通이다.

세계에서 最初로 國富調査가 行해진 것은 킹(G. King)이 英國의 國民所得을 最初로 推計한 때보다 10年 거슬러 올라간 1679년에 페티(W. Petty)가 英國의 國富를 2億 5,000만 파운드로 推計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世界 主要國家에서 調査가 行해지기 시작한 것은 1910年代로 되어 있지만 그 후 定期的으로 調査가 行해지는 나라는 적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經濟企劃院이 주관이 되어 1969년에 (1968年末 對象) 처음 國富調査가 實施된 바 있으며 2회 調査는 1978년에(1977年末 對象) 實施하였다.

第1回 調査에서는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中小企業銀行이 部門別로 參與했고 第2回 調査에서는 國民銀行과 農水産部가 追加되었다. 우리나라 國富調査에서 採擇한 資產의 範圍는 國民經濟 內에 所在하는 再生産 可能한 有形固定資產, 재고자산, 대외순자산만을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또 有形固定資產의 評價는 原則적으로 取得時期, 取得價格을 調査하여 取得時期로부터 調査時點까지의 物價倍率을 適用하여 總資產額을 구하고 殘價率을 適用하여 순자산액을 算出하는 取得原價法을 使用하였다.

(2) 調査基準 및 時期(第3回調査)

調査週期는 매 10년이며 調査基準時點은 1987年 12月 31日이다. 또한 調査期間은 1988년 3月부터 8月(6個月間)까지이다.

IX. 國民計定統計

部門別 調查時期

部 門 別	擔 當 機 關	調 查 期 間
• 政府資產	韓國銀行	'88. 4. 1~8.31
• 法人資產	韓國產業銀行	'88. 7. 1~8.31
• 個人企業資產	農林水產部	
- 農林漁業	中小企業銀行	'88. 3.16~4.30
- 鑛工業~都小賣業	國民銀行	'88. 7. 1~8.31
- 운수업~서비스업	經濟企劃院	'88. 7. 1~8.31
• 가계자산		'88. 4. 1~8.31

(3) 調查對象

(가) 資產

國民經濟內에 所在하는 再 생산 可能한 有形固定資產(가재포함), 재고자산, 對外 純資產, 再生産 不可能資產中 土地 및 山林資產

(나) 對象機關

國內에 소재 또는 居住하는 中央政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一般家口 등으로서 이를 資產의 所有 主體別로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 一般 政府：中央政府, 地方自治團體
- 政府企業
- 政府管理企業：主要 政府出資企業 및 所有하는 資產
- 法人：商法上의 營利法人과 民法, 特別法上의 財團法人 및 社團法人
- 個人企業：個人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個人企業
- 非營利團體
- 一般家口
- 對外純資產

(4) 調查方法

- 調查體系：部門別로 6개 機關이 分擔 調查

調 查 對 象

實 施 機 關	調 查 部 門
• 經濟企劃院	總括 및 家計資産, 全國의 土地 및 山林資産
• 韓國銀行	政府資産 및 對外純資産
• 韓國産業銀行	法人資産
• 農林水産部	個人企業中 農林漁業部門 資産
• 中小企業銀行	個人企業中 鑛工業, 電氣·가스·水道業, 建設業 및 都小賣 飲食·宿泊業 部門資産
• 國民銀行	個人企業中 운수·창고·통신業, 金融·保險·不動資産 및 其他 서비스업 部門資産

調 查 方 法

部 門 別	調 查 方 法	對 象 處 數
• 政府資産	전수조사, 자계식	24,500機關
• 法人資産	標本調査, 자·타계식	8,000業體
• 個人企業資産		
- 農林漁業	標本調査, 타계식	31,000業體
- 鑛工業~都小賣業	"	15,000業體
- 運輸業~서비스업	"	15,000業體
• 家計資産	"	62,500業體
• 對外純資産	既存資料로 面接調査	-
• 土地 및 山林資産	"	-

(5) 國富의 概念

國富의 概念을 廣義로 表現하면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의 經濟主體(政府, 企業, 家計들이 所有하고 있는 資産의 總合을 意味한다.

- 經濟活動의 成果인 建物, 재고량 등 有形資産
- 自然物로서의 土地, 매장광물, 자연림 등 天然資源
- 對外純資産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國富統計調査 結果를 주로 經濟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함에 따라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다음과 같이 限定하고 있다.

- 實質的 形態를 가진 實물자산(現金, 有價證券의 金融資産과 特許權, 鑛業權 등의 非金融無形資産을 除外)

IX. 國民計定統計

- 再生産이 可能한 資産(土地, 自然林, 地下資源 등의 自然자원은 除外)
- 客觀적으로 經濟的 價値를 評價할 수 있는 資産(書籍, 골동품, 藝術品 등은 除外)
- 재화와 서비스의 生産에 기여하는 生産的 資産(무기류, 군수물자 등은 除外)
- 對外純資産(단, 金融資産 包含)

(6) 資産評價方法

(가) 有形固定資産 評價方法

有形固定資産의 評價方法은 원칙적으로 取得時期, 取得價格을 調査하여 取得時期로부터 調査時點까지의 물가배율을 適用하여 總資産額을 구하고 잔가율을 適用, 純資産額을 算出하는 取得原價法을 使用하였다.

- 總資産額(再取得價格) = 取得價格 × 物價倍率(Gross Base)
- 純資産額(제조달가격) = 총자산액 × 잔가율(Net Base)

1) 중고품 및 資産在評價資産 評價方法

중고품 및 資産再評價資産에 대한 再取得價格 및 再調達價格의 評價는 다음 方法에 의하였다.

가) 基準時 再取得價格

$$G = P \times \frac{1}{0.3161} \times R$$

(단, 0.3161은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의 1/2이 經過한 후의 잔가율이다.)

나) 基準時 再調達價格

$$N = P \times R \times r$$

(단, G : 基準時 再取得價格

R : 取得後 經過年數에 따르는 物價倍率

N : 基準時 再調達價格

r : 取得後 經過年數에 따르는 잔가율

P : 取得時 價格

2) 임차자산 評價方法

가) 再取得價格 = 新品價格(建物인 경우 建物評價基準表에 準한 평가액)

나) 再調達價格 = 再取得價格(新品價格) × 잔가율

(단, 잔가율을 위한 耐用年數는 임차시 신품의 경우, 임차후 經過年數로 하고

임차시 증고품의 경우 임차시 經過年數를 내용년수의 1/2로 하여 임차후 經過年數를 合算한 年數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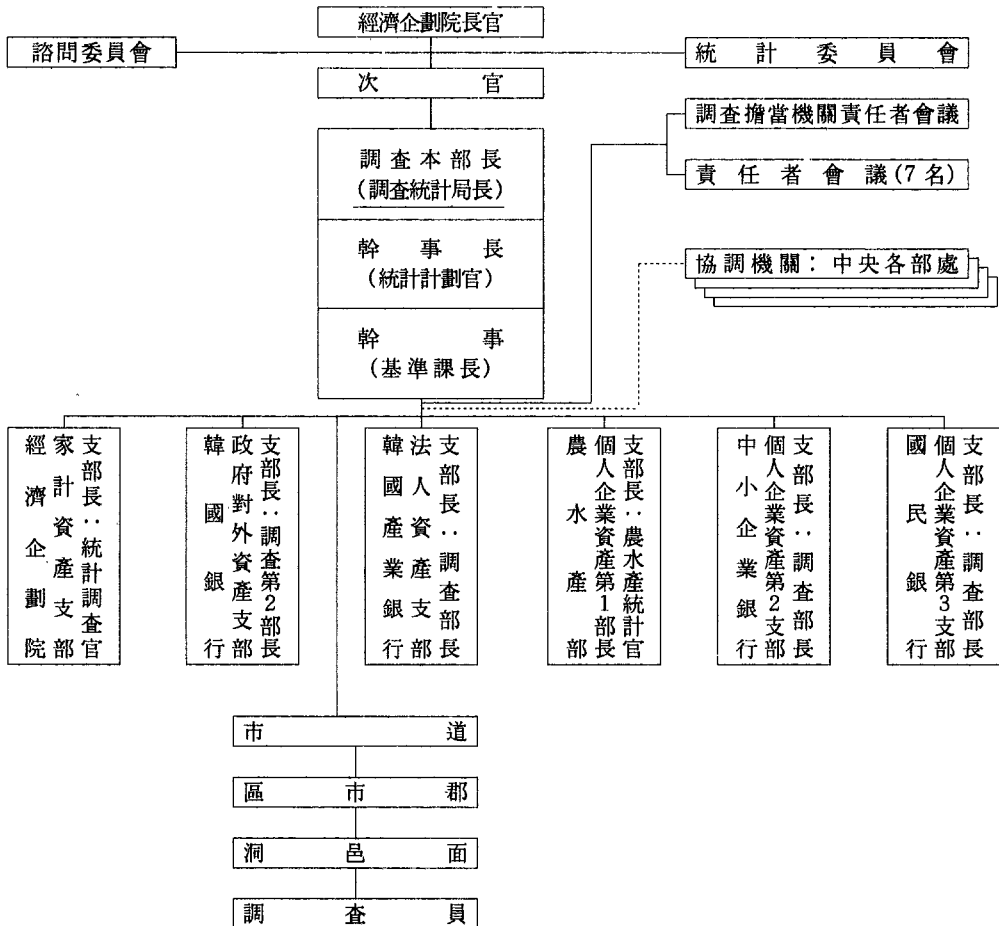
(나) 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의 評價方法은 調查基準 時點에서 實施한 政府價格을 評價額으로 한다. 그러나, 調查時點 現在 재고조사를 實施하지 않는 경우에는

1) 調查基準時點에서 가장 가까운 調查時點에 行한 재고조사의 帳簿價格으로 評價하고

2) 실지 재고조사를 行한 적이 없는 재고는 調查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시가에 評價하였다.

(7) 國富調查機構



(8) 結果公表

國富統計調查報告書(第1卷 綜合編, 제2권 政府資産部門, 제3권 法人資産部門, 제4권 個人資産部門, 제5권 가계자산부문)를 發刊하여 公表하고 있다.

2. 對外去來統計

가. 日帝下의 對外去來

(1) 對外貿易實態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대외무역규모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일본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1910년 조선의 수출총액은 1,991만원이었고 이중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1,538만원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하였으며 그후 1919년에는 수출총액이 2억 2,195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1억 9,985만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중 수입을 보면 1910년 조선의 총수입액은 3,978만원이었고 이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35만원으로 전체의 63.7%였으며 1919년의 총수입액은 2억 8,308만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8,492만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조선무역에서의 수출품의 대부분은 原料品과 食料粗製品이었음에 반해 수입품은 完製品의 比率이 가장 높아 일본에 대한 原料供給地 및 商品市場化 현상이 深化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와같은 추세는 지속되었으며 특히 產米增產計劃의 결과로 쌀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1930년대 以後 日本의 침략전쟁기에 접어들면서 朝鮮貿易이 日本貿易全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갔고 朝鮮이 日本에 수출하는 상품도 주로 木材, 石炭, 鑛物, 生絲, 金屬類등 軍需工業 原料나 쌀이었다. 반면 조선은 完製品輸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1930년이후 朝鮮의 貿易構造는 輸出에 있어 對日本 食糧供給 및 軍需工

業原料供給 역할이, 輸入에 있어서는 植民地 販賣市場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統計種類

일제시대 조선의 對外去來關聯統計는 주로 貿易關聯統計로서 內容別로 보면 輸出入額, 國別 輸出入額, 港別 輸出入額, 重要商品別 輸出入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輸出入關聯統計

輸出入에 관한 통계는 1910年 이후 輸出入品價額을 輸移出, 輸移入으로 나누고 이는 다시 外國產과 內國產으로 구분하여 月別 및 年間累計統計를 작성하였다.

또한 輸出入商品을 貨物과 金銀으로 나누어 1910年 月別 이후의 金銀輸移出과 輸移入을 金貨, 金地金, 銀貨, 銀地金 등으로 나누어 年間統計를 작성하였으나 1915년부터는 支那銀貨, 露國銀貨 등이 추가되었다.

② 國別 輸出入關聯統計

國別 輸出入관련통계로는 國別 輸出入金額, 國別 重要輸出入商品別金額 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國別 輸出入金額關聯統計는 1909年(降熙3年) 이후의 시계열이 유지되고 있으며 日本과 淸國, 其他國으로 구분하여 모든 商品의 種類別 內國產輸出額과 外國產 輸入額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또한 1909年(降熙3年) 이후의 日本, 淸國, 香港, 英領印度, 露領亞細亞, 英吉利, 佛蘭西, 獨逸, 伊太利 등 세계주요교역상대국간의 輸出入額統計가 작성되었다. 이외의 國別 輸出入關聯統計로는 1910年 이후의 貨物輸移出入額國別統計와 輸出入金銀價額國別統計 등이 있다.

한편 國別 重要輸出入商品別統計로는 1909年 이후의 重要輸出入商品品目別로 輸出入相對國과 거래액을 작성한 것으로 輸出의 경우에는 玄米, 精米 등 17개 품목을 각각 日本, 淸國 등 거래상대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輸入의 경우에는 小麥粉, 葛布 등 30개 품목을 각각 日本, 淸國 등 거래상대국으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였다.

③ 港別 輸出入額관련통계

IX. 國民計定統計

港別 輸出入額關聯統計로는 港別 輸出入金額, 港別 重要輸出入商品輸出入額 및 港別 國別輸出入額統計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港別 輸出入額통계는 1910年 이후의 仁川, 釜山, 元山, 鎭南浦, 京城, 群山, 木浦, 馬山浦, 清津, 新義州 등 港口別 輸出入額을 年間 또는 月別로 작성하였다.

港別 重要商品輸出入額統計는 1909年 이후의 輸出의 경우 人蔘, 牛皮, 玄米 등 주요상품의 港口別 수출액을 年間統計로 작성하였고 輸入의 경우 葛布, 綿織絲 등 주요 상품의 港口別 수입액을 年間統計로 작성하였다. 한편 抗別 國別輸出入額統計는 1909年 이후의 日本, 英吉利, 淸國 등 조선의 거래상대국과의 수출입액을 港口別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④ 重要商品別 輸出入額關聯統計

重要商品別 輸出入額統計는 1909年 이후 輸出의 경우 米, 大豆, 牛皮 등 중요상품의 수출액을, 輸入의 경우 綿織絲, 生金巾, 白木棉 등 중요상품의 수입액을 月別 또는 年間統計로 작성하였다.

(3) 統計表 및 收錄冊子

① 輸出入額關聯統計

輸出入額에 관한 통계로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輸移出入品價額, 輸移出入金銀價額表 등이 수록되어 1911년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다.

「朝鮮銀行統計月報」에 貨物 및 金銀輸移出入額, 輸移出入品價額月別表 등이 수록되어 1925년부터 매월 발간 공표되었다.

한편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貨物 및 金銀輸移出入額表가 수록되어 1910년부터 매 2년마다 발간 공표되었다.

이밖에도 朝鮮總督府가 1911년부터 매년 발간 공표하는 「朝鮮貿易年表」에는 輸移出入品價額 連年對照表, 輸移出入品價格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② 國別 輸出入關聯統計

國別 輸出入에 관한 통계로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輸移出入品價額 國別輸出入重要品加額國別表 등이 수록되어 1912년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으며, 「朝鮮銀行統計月報」에는 輸移出入品價額國別表가 1925년부터 매월 발간 공표되

었다.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貨物輸移出入額國別表가 최초 발간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매 2년마다 발간·공표되었다.

한편 「朝鮮貿易年表」에는 輸出入品價額國別, 輸出入金銀價額國別表 등이 1914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다.

③ 港別 輸出入額관련통계

港別 輸出入에 관한 통계로서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는 輸移出入品價額港別, 輸出重要品價額港別 및 輸入重要品價額港別表가 1911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으며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貨物輸移出入液港別表가 최초 발간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매2년마다 발간 공표되었다.

한편 「朝鮮貿易年表」에는 輸出品港別, 輸移出入品價額港別+年對照, 輸移出入金銀價額港別5年對照, 輸移出入金銀價額, 港別輸出金價額國別表 등이 1917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으며 「朝鮮貿易月表」에는 輸出入品價額港別, 港別支那輸出入品價額地方別, 港別移出入品價額仕向地 및 仕出地別, 港別輸出品價額國別表 등이 1923年부터 매월 발간 공표되었다.

(4) 重要商品別輸出入關聯統計

重要商品別 輸出入關聯統計로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輸移出重要品數量國別, 輸移出重要品價額國別 輸移出重要品數量價額國別, 輸移入重要品收量國別表 등이 1912年부터 매년 발간 공표되었으며 「朝鮮貿易月報」에는 輸移出 및 輸移入 重要品, 輸出重要品國別, 輸入重要品國別表 등이 1923年부터 매월 발간 공표되었다. 또한 「朝鮮銀行 統計月報」에는 輸移出重要品價額, 輸移入重要品價額表 등이 1925年부터 매월 발간 공표되었다.

이밖에 重要商品別 輸出入額關聯統計로 全鮮輸移出重要品價額表가 景城어음교환소 발행 「金融統計」에 1929年부터 매월 발간 공표되었다.

總督府 財務局의 集計한 日帝後期인 1936, 37年間の 貿易規模는 다음과 같다.

IX. 國民計定統計

日帝時代의 貿易規模

(單位：千円)

	1936 年	1937 年
I. 對 外 國 貿 易		
輸 出	75,265	113,097
滿 洲 國	65,434	92,177
中 華 民 國	3,702	4,810
其 他	6,128	16,109
輸 入	114,499	128,138
滿 洲 國	66,045	69,156
中 華 民 國	15,148	10,367
其 他	33,304	48,615
輸 入 超 過	39,233	15,041
II. 對 日 本 貿 易		569,101
移 出	518,047	735,413
移 入	647,918	166,311
移 入 超 過	129,870	
III. 貿 易 總 括 (I + II)		
輸 · 移 出	593,313	682,199
輸 · 移 入	762,417	663,552
輸 · 移 入 超 過	169,104	181,352

나. 貿易統計

(1) 意 義

貿易統計는 일국의 經濟活動 중 對外去來에서 일어난 財貨의 移動狀況을 일정한 基準에 依據하여 分類, 集計한 統計를 말한다.

이러한 貿易統計는 物動計劃, 貿易政策 나아가서는 產業政策의 樹立과 經濟分析에 매우 重要한 基礎資料가 되는데 한정된 資源의 國家間 적정 配分次元에서 國際的으로 統一된 基準이 強調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貿易統計는 統計 計上時點 基準으로 볼때 크게 두 가지 部類가 있는데, 하나는 通關기준 統計로서 여기에는 關稅廳이 作成하는 貿易統計 및 이를 基礎로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韓國貿易協會에서 商品을 再分類하여 作成하는 貿易統計가 있다. 그리고 韓國銀行(金融統計課)에서 作成하는 國際收支項目에는 貿易

收支가 포함되어 있어 輸出入의 總括的인 實績額을 나타내 주고 있는바, 國際收支가 基本的으로는 關稅廳 貿易統計를 基礎로 作成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通關 基準 貿易統計라 할 수 있다.

또한 部類는 決濟基準 統計로서 韓國銀行(外換需給課)에서 作成하는 外換需給 統計의 한 項目을 構成하는 貿易統計이다. 外換需給統計는 1952년부터 每月 韓國 銀行에서 外換의 決濟基準으로 作成해 오고 있는 統計인데, 商品輸出入에 따른 外換需給狀況이 '貿易'項目으로 集計되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輸出入統計가 作成된다고 할 수 있다.

(2) 關稅廳의 貿易統計

(가) 沿革

政府樹立 以後 1961년까지 財務部에서 처음으로 作成하기 시작한 이래 1962~64년간에는 韓國銀行이, 1965~70년까지는 財務部가, 그리고 1971年 以後는 關稅廳이 各各 作成하여 오고 있다.

(나) 作成基準

1) 統計 計上範圍

貿易統計를 作成할 때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統計에 計上할 商品의 範圍와 國家의 領域限界이다. 貿易統計의 國際的 基準을 提示해 주고 있는 UN 권고안에서는 對外去來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商品의 範圍를 “그 流出人으로 인하여 일국의 物的 資源의 貯量(stock)에 增減을 가져오는 財貨”로 보고 있다. 따라서 通貨나 用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一次的으로 統計에서 除外된다. 다만 財貨는 商業的 去來物에 한하지 않으며 長期貸與 및 리스契約 現物借款輸入, 工場設備(플랜트)移轉 等の 非商業的 去來物도 包含된다.

한편 國家領域의 限界는 關稅線(關稅가 賦課되는 領域)을 基準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資料蒐集의 現實的인 限界 때문이다.

統計包含與否에 관하여 특히 強調하고 있는 財貨는 다음과 같다.

먼저 決濟用이라기 보다는 商品으로서의 性격을 가진 貨幣와 非通貨性金, 즉 未加工된 금이나 金 조각 등은 包含되어야 하며 政府去來인 專賣品의 輸出, 食糧輸入,

IX. 國民計定統計

對外援助 事業에 의한 輸出入品 심지어 軍事裝備物等도 可能한 한 統計에 包含시키도록 하고 있다.

統計에서 排除되어야 할 財貨로서는 海外에 駐在하는 資國의 公館 또는 軍隊와 去來되는 財貨, 그리고 外國의 海역에서 自國 船舶에 의해 採取된 水產物 等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關稅線 基準原則을 適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國內의 範圍도 關稅法이 適用되는 地域으로 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輸出의 경우 輸出免許된 物品뿐만 아니라 保稅工場 및 輸出自由地域으로부터 搬送이 免許된 物品도 輸出의 範圍에 包含하고 있으며, 輸入에 있어서도 輸入免許된 物品뿐만 아니라 輸入免許 전에 保稅區域으로부터 國內에 搬出된 物品과 外國으로부터 保稅工場·輸出自由地域 또는 保稅建設場에 搬入된 後輸入免許 前에 使用承認된 物品 等도 輸入의 범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貿易統計는 關稅線을 通過하는 再輸出入, 通過貿易, 受託加工貿易 등이 모두 包含된다.

한편 貿易에서 除外되는 物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無換 輸出入品으로서 價格이 100달러 未滿인 것.

여기서 無換輸出品이라 함은 貿易去來法 第14條에 依據하여 輸出入 許可(承認)를 받지 아니하고도 搬出入이 되는 物品을 말하며 一般送品, 旅行者 携帶品, 이사 物品, 商品見本品, 郵便物品 等の 輸出入이 이에 該當된다. 이러한 無換輸出入은 關稅法上的 通關節次(特히 輸出入申告)에서 간편한 方法이 適用되며 關稅도 일정한 경우 免除 또는 減稅된다. 유의할 것은 無換輸出入은 輸出入 申告資料에 依據原則적으로 貿易統計에 算入되나 價格이 작은 100달러 未滿의 物品에 한하여 統計에서 除外된다는 점이다.

둘째, ATA카르네(Carnet: 일시수입 通關證書)協約에 依據하여 國家間的 通關節次를 간소화한 物品으로서 여기에는 일시 輸入되는 職業用品, 展示會出品物中 商業用 見本, 廣告物品 등이 該當된다.

세째, 保稅區域에서의 裝置期間結果로 關稅法에 依據 賣却되거나 國家에 歸屬된 物品

네째, 保稅區域 相互間에 移動되는 物品

다섯째, 密輸品

여섯째, 決裁手段으로 輸出入되는 金, 은, 有價證券, 銀行券, 鑄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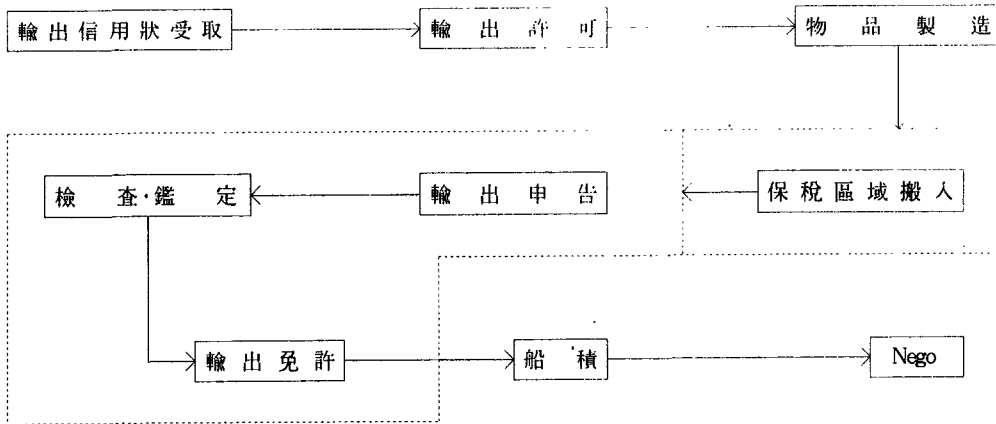
(3) 統計 計上時期

輸出入節次는 아래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한 일련의 過程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節次完了時까지는 많은 時日이 所要된다. 이러한 경우 과연 어느 時點에서 당해 월 또는 當該年度의 統計로 計上할 것인가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우리나라는 現在 輸出入 免許日字를 基準으로 하고, 다만 輸入免許 前에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되거나 保稅區域에서 使用된 경우에는 免許 前 搬出 또는 使用承認日字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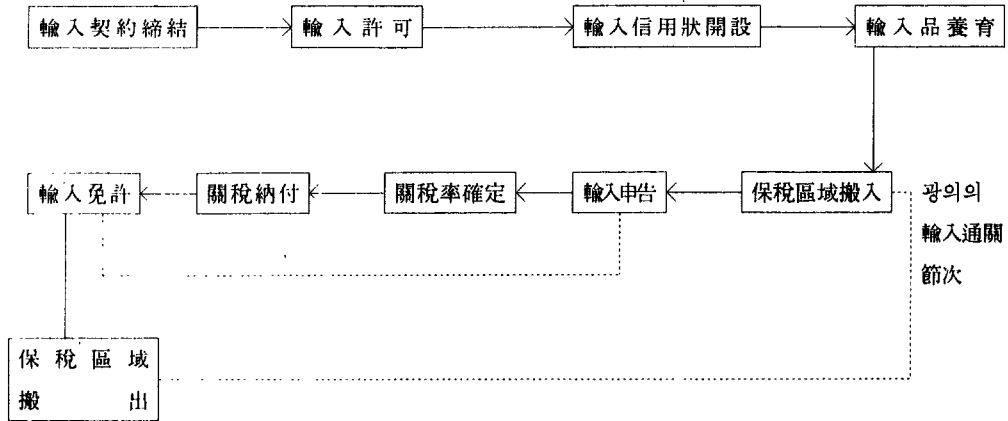
統計에서 排除되어야 할 財貨로서는 海外에 駐在하는 自國의 公館 또는 軍隊와 去來되는 財貨, 그리고 外國의 海역에서 自國 船舶에 의해 採取된 水產物 等이다.

輸 出 節 次



Ⅸ. 國民計定統計

一般輸入節次



1) 品目分類

國際貿易과 關聯한 品目分類는 商品別 國際比較가 容易하도록 國際基準이 設定되어 있는바, 크게 두 가지 分類가 있다.

하나는 關稅行政의 便利를 圖謀하기 위하여 發展되어 온 分類로서 同一한 原料로서 얻어진 物品은 同一한 品目群에 分類하고 原料로부터 完製品의 순으로 排列하는 方式이다. 또 하나는 經濟分析과 貿易統計의 國際間比較가 容易하도록 貿易商品을 分類한 것으로서 商品의 種類別, 產業構造別로 分類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兩者의 母體는 모두 1931年 國際聯盟의 主管下에 制定된 제네바(Geneva)品目分類表인데 前者는 UN關稅協力理事會(CCC)에 의해 推進되어 왔으며, 1959年의 브뤼셀 品目分類表(BTN)→1974年의 關稅行政品目分類(CCCN)→1958年의 國際統一 商品分類制度(H·S)로 發展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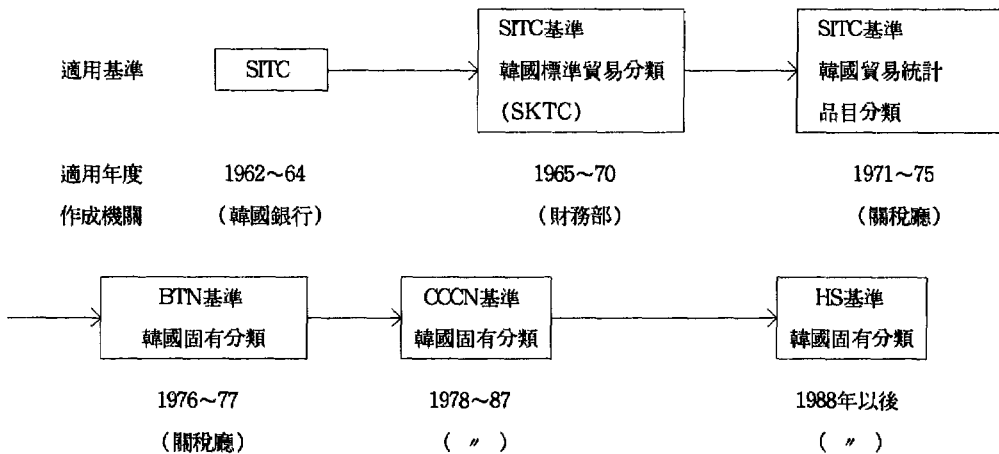
한편 後者는 UN經濟社會理事會에서 推進해 온 分類로서 國際標準貿易分類(SITC)로 불리우며 1986년까지 3차례의 改正을 보았는데, 兩 制度의 改正 過程은 모두 서로를 連繫시켜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데 1次的인 目的이 있다.

아 물론 우리나라 關稅行政은 CCC에 의한 品目分類를 基準으로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調整한 分類體系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貿易統計의 品目分類에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

그러나 品目分類方式이 改正되어도 本統計는 시계열을 소급하여 作成하지 않고 있으므로 當該年度에 適用된 分類方式이 무엇인가를 먼저 確認한 후 資料를 利用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品目分類 變遷과정을 살펴보면 國際分類를 適用하기 시작하였던 1962년부터 1964년까지는 韓國銀行이 SITC에 의한 分類를,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財務部가 國際標準貿易分類(SITC)를 基準으로 한 韓國標準貿易分類를 適用하여 各各 作成하였다.

關稅廳이 貿易統計를 作成하기 시작한 1971年 以後에도 몇차례 品目分類가 變更되었는데 1971년부터 75년까지는 SITC를 基準으로 한 韓國固有의 貿易統計 品目分類를 適用하였으며, 1976~77年은 CCC의 브뤼셀 關稅品目表(BTN)를 基準으로 한 韓國固有分類를, 그리고 1978~87年은 CCC가 制定하였던 CCCN을 基準으로 한 韓國固有分類를 各各 適用해 왔던 것이다.

品目分類의 變遷



그리하여 새로운 關稅行政分類方式인 HS가 1988년부터 適用됨에 따라 貿易統計의 商品分類도 이제 이를 基準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貿易統計에 適用된 品目分類의 變遷過程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2) 評價方法

IX. 國民計定統計

貿易統計에서 集計되는 價格評價는 輸出과 輸入의 경우가 다르다. 즉 일단 通關 基準에 의해 計上範圍에 들어간 品目에 대하여 輸出品은 本선인도가격(FOB)을 輸入品은 正常到着價格(運賃, 保險料包含價格: CIF)을 基準으로 價格評價를 하고 있다. 이때 輸出入에 따른 代金 決濟條件이나 決濟與否와는 아무런 關聯이 없으며 關稅線을 通過한 物量에 대해서만 評價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代金を 일정기간 유예하여 支給하는 年拂輸出入이나 선수금 着手金만 받고 輸出入이 施行되는 경우에도 代金支拂 狀況 또는 契約條件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다) 作成內容

1) 輸 出

• 總 括

一般輸出, 保稅加工輸出, 其他로 區分하여 月·年度別로 收錄하고 있는데, 總括 資料는 1952年 以後부터의 資料가 財務部 1965年版 貿易統計年報에 收錄되어 있으나 위와같은 세 가지 項目으로 分類되는 方式은 1966年版 以後부터이다.

• 形態別

輸出은 一般, 特殊貿易, 對外援助, 現物借款, 海外投資, 再輸出, 其他로 分類하여 實績額을 集計한다.

• 國 別

輸出品이 最終 到着되는 國家를 基準으로 輸出의 形態別로 集計한다. (單純한 國別만의 輸出統計는 1961年 以後의 資料가 財務部 1965年版에 收錄되어 있다.)

• 細番別

輸出品別로 國際關稅行政 分類番號의 4單位로 分類한 商品別 輸出數量 및 金額을 表記한다.

• 商品別 및 國別

單位 細分類에 의한 商品別, 國別 輸出物量 및 金額을 表記한다.

• 稅關別

稅關別 實績額을 表記한다.

• 調查項目

輸出者,	船(機)名,
申告者,	船(機)籍,
目的國,	裝置場所
關稅符號,	品名 및 規格
重量 및 單位	
申告價格	
稅番 및 統計符號	

2) 輸 入

• 總000 括

保有外換(KFK)에 의한 輸入, 借款輸入, 其他로 區分하여 集計한다.(이 項目에 의한 分類는 財務部の 1966年版 貿易統計年報 以後부터 이다)

• 國 別

輸入等の 原產國別 輸入財源別 實績額을 集計한다.(單純한 國別 輸入實績은 1961年 以後의 資料가 1965年 財務部版에 收錄되어 있다)

• 財源別

保有外換, 公共借款, 商業借款, 外國人 投資, 再輸入, 其他項目으로 分類하고 있다.

• 細番別

輸入品別로 國際關稅行政 分類番號의 4單位로 分類한 商品別 輸入數量 및 金額을 集計한다.

• 商品別 및 國別

輸出項目 參照

• 稅關別

輸出事項 參照

• 調查項目

輸入者,	納稅義務者,
申告者,	船名 및 國籍,
入港地,	裝置場所,

IX. 國民計定統計

摘出國,	原產地,
輸入財源別,	輸入形態,
品名 및 規格,	
重量 및 單位,	
數量 및 單位,	
申告價格 및 鑑定價格	
稅番 및 統計符號	
關稅減免 · 分割納付 · 徵收猶豫	
關稅符號	
內國稅	

(4) 韓國貿易協會의 貿易統計(SITC)

(가) 沿革

1974年 12月부터 韓國貿易協會에서 電算處理로 作成하기 시작하여 1979年 9月 14日 一般統計 第330-22-02로 承認, 現在 每年 作成하고 있다.

(나) 調査對象

國內關稅法이 適用되는 全地域의 輸出과 輸入을 對象으로 稅關에서 免許되었거나, 免許 前에 搬出承認된 輸出入免狀과 免狀의 寫本 그리고 搬入許可書를 基準으로 하며,

① 輸出은 一般有換輸出과 無換輸出을 包含하고

② 輸入은 一般有換輸入과 無換輸入을 包含한다.

③ 但, 無換輸出入物品으로써 \$ 1,000未滿의 것, 密輸出入과 金貨, 銀行券, 紙幣, 債券, 株式 및 其他 有價證券은 除外한다.

(다) 作成時點

① 輸出은 貨物을 積載한 船舶 또는 航空機가 出港한 日字가 屬하는 月에 計上하였고,

② 輸入은 輸入免許될 日字가 속하는 月에 計上하였으며,

③ 通關基準에 의하여 財源別, 形態別, 輸出入과 基本項目別, 輸出入, 商品類別, 輸出入, 國別 輸出入, 商品別, 國別 輸出入 등에 관한 事項을 主要 內容으로 每年 調查하여 基礎資料를 作成한 後에, 統計의 作成은 年末基準으로 1年分을 電算處理하여 作成한다.

(라) 作成事項

輸出과 輸入을 나누어 作成 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輸 出

輸出者,	目的國,
關稅符號,	品名,
重量,	數量,
申告價格,	稅番 및 統計符號

2) 輸 入

輸入者,	摘出國,
稅關符號,	輸入財源別
申告價格,	輸入形態,
品名,	重量,
數量,	租稅 및 統計符號

(마) 作成方法

각 稅關에서 輸出入 免狀의 內容을 關稅廳으로 連結된 온-라인을 利用하여 端末機로 入力하면, 關稅廳에서는 每月 入力資料를 集計한다. 集計한 資料의 1個月分을 韓國貿易協會로 送付하면 韓國貿易協會에서는 送付된 資料(M/T)를 電子計算所의 컴퓨터에 入力시켜 每月 月別로 基礎資料를 作成한다. 作成된 基礎資料를 利用하여, 每年 末에 SKTC符號別로 1年分을 電算處理하여 統計를 集計, 年度別 輸出入 形態別 輸出實績, 財源別 輸入實績, 商品別 輸出實績, 國別 輸出實績, 商品別·國別 輸出實績, 國別·商品別 輸出實績, 商品別 輸入實績, 國別 輸入實績, 商品別·國別 輸入實績, 國別·商品別 輸入實績등을 作成한다.

(바) 分類體制

1) 品目分類

IX. 國民計定統計

品目分類는 國際聯合의 標準國際貿易分類(2次 改正版)를 基準으로 하여 國內實情에 맞도록 세분류를 가하여 作成한 韓國標準貿易分類에 依據하여 分類하였다.

2) 國別分類

國別分類는 原則적으로 輸出은 最終目的國, 輸入은 原產國에 依據하였고, 輸入에 있어서의 原產國이 不明한 경우에는 最初의 摘出國에 의하여 分類하였다.

3) 價 格

輸出價格은 本船引渡價格(FOB), 輸入價格은 正常到着價格(CIF)에 의한다.

(사) 結果公表

다. 國際收支

(1) 概 要

國際收支(Balance of Payments)라는 개념은 14세기 후반 重商主義시대까지 소급되나 그 시대에는 금 또는 귀금속의 보유량을 일국의 富로 삼았기 때문에 무역활동이 금보유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것으로 대외거래를 분석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국제수지의 개념은 대외거래의 내용이나 항목의 변동을 기록하는 것보다 綜合的인 收支差의 파악정도였다.

국제수지 작성초기단계에는 貿易收支와 國際收支를 같은 뜻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후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對外去來가 貿易去來 이외에도 貿易外去來, 移轉去來 및 資本去來로 확대되었다.

이와같이 대외거래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외거래를 포함할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원리 및 양식에 의한 국제수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UN과 IMF가 설립된 이후이다.

제2차대전 이후 UN은 1948년에 1939~45년간의 각국의 국제수지표를 작성 발표하였으며 그 후 이 업무는 IMF에 이관되었다. IMF는 1948년 1월에 國際收支編制要覽 초판을 발간하고 각 가맹국으로 하여금 1946년과 1947년의 국제수지

표를 제출케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제수지통계작성방법을 지도하는 한편 1947년 7월에는 국제수지연보 제1집을 발간하였다. 그뒤 IMF는 1950年, 1961年, 1973年 및 1977年에 國際收支要覽改訂版을 내면서 第4版까지 發刊하였다.

韓國도 1955年 IMF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IMF협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국제수지편제 및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작성방법도 IMF의 원칙과 권고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해 오고 있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란 「일정기간중 그 나라의 居住者와 非居住者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經濟的 去來의 체계적인 기록」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기간 이라함은 스톡(stock)개념이 아닌 플로우(flow)개념으로서 그것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기도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月別로 작성,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나라의 居住者와 非居住者들 사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의 본거지가 그 나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법인포함)과 모든 여타국가(법인, 국제기구 포함) 사이에 전개되는 거래를 말한다. 즉,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를 구별하는 기준은 法律上的 國籍보다도 「利益의 中心(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따라서 自國人이라할 지라도 이익의 중심이 他國의 경제권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된다.

또 「모든 經濟的 去來」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 무상거래 등 일체의 거래를 망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體系的인 去來」라 함은 모든 거래를 회계학에서 말하는 복식부기의 원리(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韓國이 1955년 IMF에 가입한 이래 韓國銀行에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IMF당국에 제출하는 한편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무역통계를 비롯하여 국제수지표 작성에 필요한 제반 통계자료의 불비로 IMF에서 권고하는 표준양식대로 작성하되 몇가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961년 7월에 IMF의 국제수지 편제요람 제3판 出刊을 계기로 항목의 분류에 있어서 財貨 및 用役과 移轉去來의 범위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념

IX. 國民計定統計

을 국제연합 및 구주경제협력기구(OECD의 전신)의 표준국민소득계정과 좀 더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資本 및 貨幣用金은 부문별 외화자산 및 부채의 변화를 세분화하는등 국제수지통계를 개선한 바 있다.

(2) 現行 國際收支作成體制

1977년에 IMF에서 다시금 그 동안의 국제통화제도 및 국제거래관행의 변화, SNA 등 관련통계기준의 변화등을 반영하여 국제수지편람요람 제4판을 발간하고 1979년부터는 이제 의거 국제수지표를 편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3판과 비교하여 볼 때 통계편제상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제4판은 개념, 분석방법, 포괄범위, 계상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분류방법에 있어 제3판에서는 경상계정을 상품, 비화폐용금, 운임 및 보험, 기타운수, 여행, 투자수익, 정부거래, 기타항목과 이전거래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은 국내거래자를 중심으로한 부문별 분류를 택하여 「리저브」 항목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으나 제4판에서는 경상계정에서 비화폐용금을 상품항목에, 정부거래를 기타용역항목에 각각 통합하여 7개항목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에서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리저브」항목과 「리저브」제의 금융항목으로 구분하고 리저브제의 금융항목은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및 기타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제2판의 조정적공적금융의 파악이 가능한 분석방법의 권고 및 제3판에서의 특정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태도와는 달리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 등에 의한 분석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국이 자국실정에 맞는 분석방법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제2판과 제3판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계상거래에 있어 평가변동을 국제수지계산에서 제외토록 제3판과 마찬가지로 권고를 하였으나, 리저브항목의 평가변동만은 총변동과 함께 리저브변동의 보충자료로서 계상토록 하였으며 금의 화폐화와 SDR의 배분에 있어서는 제3판에서 금의 화폐화, 비화폐화는 계상할 필요가 없었고 SDR의 배분 및 말소는 리저브에 계상은 되었으나 별도 항목에서 조정하였던 것을 제4판에서도 이들을 평가변동과 함께 「리저브」의 재평가변동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리저브」계산에서 제외하다

록 하는 한편 금 및 SDR항목의 보충자료로 표기토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편제방법도 이에 준거하고 있다.

(가) 商品輸出入

국제수지기준 輸出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통관수출(f.o.b)합계에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한다.

첫째, 包括範圍調整으로 재수출, 재수입을 위한 수출, 소유권불이전부 임대수출, 개조선수출 등을 차감한다. IMF개정 제4판에서는 처음으로 「리스」방식의 수출입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소유권이전조건과 소유권불이전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권불이전부 임대수출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무역거래로 보아 수출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재수출이란 수출품의 하자 등으로 재반입됐던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것이다.

둘째 計上時點調整으로 통관과 인도의 시차가 비교적 큰 신조선과 철구조물 등에 대하여 시차조정을 하게 되는데 통관시 차감하고 인도시 가산한다.

셋째 分類調整으로 수리선박수선비는 항목의 성격상 무역외거래항목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통관수출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한다.

輸入의 경우는 통관수입이 CIF로 평가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정작업을 한 「조정후 수입」(CIF)에서 운임·보험을 차감한다.

첫째, 包括範圍調整으로 재수입, 재수출을 위한 수입, 소유권불이전부 임차수입, 개조선수입 등을 말한다. 개조선수입 이외에는 수출의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개조선수입의 경우는 성격상 수리선과 마찬가지로 무역외항목의 성격이나 통관수출·수입에 선가총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출에서 차감하고 수입에서도 총액을 모두 차감시킨 뒤 이 차액을 무역외항목에 계상시킨다.

둘째, 計上時點調整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통관되지 않은 품목(가령 원유, 국방물자)등에 대하여는 업체 및 정부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운임과 보험을 차감하여 CIF를 FOB로 바꾸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관세청의 통관통계에는 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추계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IX. 國民計定統計

運賃의 경우는 수입화물 수송에 따른 자국선(기) 운임수입액을 수입화물 자국선(기)적취율로 나누어 총수입화물에 대한 운임지급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 전체 운임지급액에서 자국선(기)의 운임수입을 차감하면 무역외항목의 운임지급이 된다.

保險의 경우도 운임과 추계방법이 동일하다. 위의 계산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 항만청, 보험감독원, 교통부, 대한항공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나) 貿易外收支

무역외수지는 운임 및 보험, 기타운수, 여행, 투자수익, 기타재화용역의 5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運賃 및 保險

운임 및 보험은 운송, 보험, 기타서비스로서 운임은 항공운임과 선박운임으로 구분되고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으로 구성된다.

2) 其他運輸

기타운수 항목에는 여객운임, 항만경비, 운항경비, 용선료 및 수리선박수선비등이 해당된다. 위의 자료는 외환수급통계, 대한항공의 자료 등이 이용된다.

3) 여 행

여행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계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의 계상방법에 있어서 수입 및 지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학 및 훈련, 일반여행, 원화표시여행자수표대전, 지참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참금과 재환금을 수입과 지급 모두에서 차감시키게 된다.

4) 投資收益

투자수익의 기초자료도 역시 외환수급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수입에는 외화증권이자, 외화예치금이자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해외투자관련이자와 배당금 은행간 본지점이자, 분할 영수수출이자 등이 포함되고 지급란에는 지점결산이익금, 공공차관이자, Bank loan이자, IMF신용인출이자, 소유권이전부임차수입이자 등 각종 이자를 포함한다.

5) 其他財貨 및 用役

이 항목에는 정부거래, 잡용역, 비상품보험 등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정부거래는 독립항목이었으나 IMF Manual 제4판에 의거 이 항목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주로 외환수급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다) 移轉去來

이전거래는 크게 증여와 무환수출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전수입에는 개인송금 등의 증여수입과 통관통계의 무환수입으로 구성된 증여지급과 무환수출이 이전지급을 구성한다.

(라) 資本去來

자본거래는 편의상 1년을 기준으로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계정에는 일국의 대외금융자산, 부채의 증감을 초래하는 거래가 계상되는 바 대외금융자산은 화폐용금, SDR 및 기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금융부채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실물자산의 거래인데 금융계정 즉 자본계정의 거래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는 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과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 및 국제수지 작성국에서 1년이상 이용되는 선박, 항공기 등의 이동장비의 법적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운용되는 국가내에 이들 자산을 운영하는 거주자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소유자는 이들 운용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금융상의 채권을 갖는 것으로 취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수지표에는 거주자, 비거주자간의 거래만 계상하여야 하지만 자본계정의 경우에는 양도가능한 대외자산을 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에 거래하였더라도 同 대외채권채무가 소멸될 때까지는 국제수지표에 계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래라도 자본계정 분류상 동일항목에 속하는 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에 거래되었을 때는 상쇄되어 국제수지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IMF의 편제요람 제4판에서는 자본계정을 자산과 부채, 기능별 및 기간별로 구분하고 특정분석상 필요할 경우 세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분석적 목적에 유용한 분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본계정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및 「리저브」의 기능별항목구분을 주로 하고 각 항목

을 자산, 부채로 분류한 후 그 이하 필요한 세분류를 택하고 있는 바 기타자본만 국내부문별 분류를 하였다.

資本計定の 機能別구분 항목의 개념과 포괄범위, 평가 및 계상시점, 분류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直接投資

직접투자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말하며 이에 투자자가 제공하는 지분자본, 재투자된 수익은 물론 투자자가 직접 투자기업에 제공하거나 투자자의 다른 투자기업을 통하여 제공한 기타 형태의 장·단기자본도 이 항목에 계상한다.

그러나 통화금융기관의 경우 본점과 현지법인은행인 지점이나 법인이 아닌 해외 지점간의 자본이동은 직접투자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아 직접투자항목에 계상하지 않고 기타자본항목에 계상한다.

직접투자기업과 직접투자자간의 거래가 이 항목에 계상되므로 이러한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사내이전가격에 의한 평가는 이를 시장가격으로 평가조정하여 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자국의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외국의 자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구분하여 순자산과 순부채를 각각 계상하고 있다.

2) 포르트폴리오投資

포르트폴리오투자란 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의 수익성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채권과 법인지분에의 투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가 또는 투자자가 법인지분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직접투자로 처리하여야 하느냐 포르트폴리오투자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IMF Manual 제4편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계정의 기능적분류란 사실상 거래자의 거래동기를 감안한 분류이므로 위에서 말한 문제도 거래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의 문제로 거래자의 동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한편 자본거래 항목중 직접투자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은 부채에서 해외 통화 당국의 「리저브」를 형성하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채무

국의 입장에서 부채중에서 어떤 것을 채권국이 리저브로 취급하고 있느냐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3) 리저브 項目

리저브 항목이 포함되는 자산은 화폐금융, IMF리저브포지션, IMF신용인출 및 중앙통화당국이 자국의 수지불균형 보전에 직접 사용하거나 수지개선을 위한 환율 변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비저주자에 대한 청구권 등이다. 이 중 개념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중앙통화당국이 보유한 대외청구권인 바 과연 어떤 것을 리저브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리저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제요람 제4판에서는 리저브에 포함할 대외청구권은 중앙통화당국이 직접적이고 유효한 편제를 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시장성이나 유동성과 직접관련은 없더라도 이용가능성이 커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저브에 포함되는 자산은 화폐금융, SDR, IMF리저브포지션, 외국환, 기타청구권 및 IMF신용인출등이 있다.

리저브항목의 계상거래에서의 어려운 문제는 재평가이다. 리저브의 재평가란 거래에 의하지 않은 리저브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에 는 평가변동, 金의 화폐화, 비화폐화, SDR의 배분·말소 및 자산의 재분류등이 해당된다.

편제요람 제3판에서는 재평가변동을 원칙적으로 국제수지에 반영하지 않되 金의 화폐화, 비화폐화와 SDR의 배분·말소만이 계상되도록 하였으나 본 요람 제4판에서는 각 항목을 재평가변동을 제외한 변동만을 국제수지표에 계상할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동시에 각세부항목의 총변동과 재평가변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대응항목(총변동에 대한 차감항목)을 보충항목으로 표시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國際收支表上 資本去來의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長期資本收支에서 부채항목에 차관과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증권투자, 장기무역신용, 개발기관뱅크론 등이 있고 자산에는 공공차관공여 해외직접투자, 해외증권투자, 중장기연불수출신용 등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외환수급통계와 재무부의 차관자료 등을 이용하고 있다.

短期資本收支도 부채에 단기무역신용, 원유단기차입, 수출선수금, 내국수입유산

IX. 國民計定統計

스 해외매각 등이 있고 자산에는 단기연불수출, 수입착수금 등의 항목이 있으며 대부분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마) 金融計定

금융계정은 통화금융기관(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증감을 계상하며 부채의 증가는 +, 자산의 증가는 -로 나타난다.

첫째, 부채에는 중앙은행의 부채와 예금은행의 부채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은행의 부채는 IMF신용인출과 원화부채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IMF신용인출의 잔액은 없는 상태이다.

예금은행의 부채에는뱅크론, 외화증권, 본지점가계정도입, Refinance, 평가변동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IMF Manual에서는 리저브에 관한 평가변동만을 보충자료로 표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편제시에 모든 대외거래를 거래시점의 미달러화로 평가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정은 일부항목(뱅크론, 외화채권)을 제외하고는 기초자료가 되는 금융기관 외화B/S상의 전월말 및 금월말 환은집중기준율(시장평균환율)로 환산하여 구한 스톡(stock) 변동액으로 작성되므로 달러이외의 기타통화표시 대외자산 및 부채의 경우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예금은행 부채중 본지점가계정도입, 리화이년스, 당좌차월, 예수금, 본지점을 계정도입, 해외콜머니, 기타차입 등은 건별거래실적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평가변동조정방법은 해당통화기준 월중변동액에 각 통화별 대미달러 월중평균환율을 곱하여 구한 총액과 전월 및 금월말환율을 적용하여 구한 스톡변동액과의 차액을 조정해 주고 있다.

둘째, 자산에는 외환보유액, 국내은행 보유액, 국내은행기타자산, 외은지점자산, 투자자산 및 평가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보유액은 1988년 1월부터 공적보유액 개념으로 바뀌어 당행이 보유한 외환만을 외환보유액으로 하게 되었는데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에는 -로 기록한다.

끝으로 IMF Manual과 우리나라편제방법을 비교·정리하여 보면 경상수지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자본계정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IMF표준분류항목은 자본

계정을 크게 리저브를 제외한 자본계정(capital, excluding reserves)과 리저브(reserve)로 나누고, 리저브를 제외한 자본계정은 다시 기능별 분류원칙에 따라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및 기타자본으로 분류하고 리저브에 중앙은행의 자산, 부채를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식은 주체별 분류로 크게 장기자본순수지, 단기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한국은행 및 예금은행의 자산 및 부채는 모두 금융계정에 계상하되 개발기관을 포함하여 정부 및 민간의 자산 및 부채는 만기구조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자본수지에 계상하고 있다.

라. 외환통계

(1) 意義와 作成沿革

외환수급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외환의 수급을 수반하는 대외거래를 외국 환은행으로부터 보고 받아 외환보유액, NFA 등 주요외환지표를 작성하고 결제기준수출 및 수입, 무역외수입 및 지급, 자본거래실적을 파악함으로써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대외지급준비의 적정규모유지, 통화가치의 안정 등 경제의 안정유지와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수급통계는 1952년 1월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무역 및 무역외수지에 관한 통계인 “외환통계월보”에서 시초가 된 것으로 당시에는 외국부에서만 대외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동 통계의 작성은 외환관리의 실시상황을 심사분석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그간 외환관리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외환수급통계의 작성방법도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 개선되어 현재는 복잡다기화된 외국환은행의 외환수급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韓國의 外換統計作成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52. 1 ; 외환통계월보 발간
- 1962. 5 ; 시중은행의 외국환업무개시에 따라 시중은행과 환전상으로부터도 보

IX. 國民計定統計

고서 徵求

- 1967. 1 ; 외환수급통계 업무의 전산화
- 1969. 3 ; 외환통계월보를 “계보외환통계”로 변경
- 1970. 5 ; 외환통계 기초자료 징구방법을 관계인증서류사본에서 별도양식의 보고서로 변경
- 1976. 7 ; 통계법(1975.12.31 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의 외환수급통계 작성을 일반통계로 승인함.
- 1986. 1 ; 계보외환통계를 1985년 3/4분기호를 마지막으로 폐간, 계보수록 내용중 일부를 1986년부터 조사통계월보에 게재

(2) 외환통계 작성방법

1959年 1월에 종전의 KFX자금 결제실적에 AID원조자금 결제실적을 추가하고 1963年 1월부터 종전의 경상거래실적에 자본거래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외환보유액 변동요인의 파악이 가능하면서부터 韓國의 外換統計는 近代의 體制로 정비해 나아갔고 1976년에는 統計法에 의한 일반통계로 지정받았다.

현재의 외환수급통계체제를 보면 먼저 외국환은행의 보고서 작성원칙으로서 외국환의 영수 또는 지급을 수반하는 수출, 수입과 무역외 및 자본거래 등 일체의 대외거래와 이에 부수되는 수출신용장내도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보고서 작성시점은 외국환의 영수 또는 지급이 수반되는 보고서는 외국환은행과 고객 또는 해외은행간에 거래가 발생한 날에 작성하며, 그밖의 보고서는 당해보고대상업무를 취급한 날에 작성한다.

또 모든 보고서 작성통화는 미달러화 금액으로 작성한다. 단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는 보고기준일 현재 해당통화의 “대미달러환산율”에 의해 미달러화로 환산 보고한다(외국환관리업무취급절차 제32조)

한편 보고금액에 있어서는 외국환의 결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해외국환계정에의 기표금액을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취급금액을 기재하며 수입금액과 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에서는 은행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보고서별로 목

적국, 결제방법, 결제통화 및 무역외화 자본거래 항목별 코드를 기재하며 상품별 코드는 HS로 기재한다.

그밖에도 외국환은행의 취급점장은 보고서 작성자로 하여금 당해보고서 기재내용과 관계장부(또는 카드)의 내용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각 외국환은행장은 각 취급점으로부터 징구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보고한 보고서를 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기재항목인 은행별, 통화별, 결제방법별, 가격조건별, 상품별(또는 무역외항목별)코드의 기입여부 및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를 시정한 후 전산입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3회 보고서 입력시의 착오와 보고서 코드확인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착오도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역 및 무역외거래 총액이 확정집계되면 종합외화B/S와 함께 외환수급총괄표가 확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외화B/S란 각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포지션 등을 항목별로 보고받아 작성하는 외화표시의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환보유액, NFA 등 주요외환지표(stock)의 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환수급총괄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며, 외채중 금융기관분의 잔액파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외환수급총괄표란 외환수급을 수반하여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대외거래를 파악하여 항목별로 분류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외환보유액 변동요인 분석과, 국제수지표, 외채통계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며 외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조사분석, 전망, 외환정책수립을 위한 주요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외환보유액의 의의와 그 산출방법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환보유액(Reserve)이란 통상 일국의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SDR, 보유외환, IMF리저브포지션 등을 말한다.

첫째 보유주체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잔액을 당행에 위탁하여 운영을 맡기고 있다.

IX. 國民計定統計

우리나라는 87년말까지 외환집중제도하에서 외국환은행보유 외화자산도 외환보유액에 포함시켰으나 그 후 외환사정의 호전으로 1988年 1월부터 이를 제외하였다.

둘째, 외환보유액에는 유동성, 교환성, 안정성이 확보된 금(당행의 해외예탁금 및 국내보유금), SDR, IMF리저브포지션 및 보유외환(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화증권, 매입외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중 대내자산과 투자자산은 제외된다.

외환보유액 산출방법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군정 및 정부수립기(1945~50)

조선환금은행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처음으로 외환보유주체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보유회환의 미미와 통계자료 보존의 미흡으로 체계적인 외환보유액의 산출은 없었다.

2) 한국은행 전담기(1950~62)

1950年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과 더불어 외국환업무를 당행에 이관함으로써 1950年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을 체계적으로 산출·공표하였다.

3) 외국환은행 병존초기(1962~67)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추진에 따른 대외거래의 확대에 의하여 1962年 4월 1일 5개 시중은행에 외국환업무를 대내적 취급을 허용하는 을류외국환은행이 인가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보유주체에 외국환은행이 추가되었다.

4) 외국환은행 병존후기(1967~68)

1967年 1月 28日 한국외환은행의 설립, 일본 및 미영계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 정부에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및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이 을류외국환은행으로 인가되었다.

5) 국제유동성결여 자산 제외기(1968. 8~)

외환보유액 계상항목중 유동성이 완전히 결여된 외국환은행의 해외본지점가계정 및 한국은행의 국제기구출자자산을 제외하고 IMF가 창출배분한 SDR도 불포함함으로써 총외화자산개념으로부터 일부 제외형으로 변형하였다.

6) 외은지점보유 외화자산 제외기(1976. 7~)

외은지점보유외화자산은 대부분 해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유사시 대외 지급액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는 반면, IMF Reserve Position, 금보유액, SDR을 포함한다.

7) 외화보유액 조정기(1986. 8~1987.12)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사정이 급격히 호전됨에 따라 적정 외환보유액 관리 및 유동성제고를 위해 매입외환중 1년초과의 장기매입외환을 제외한다(1986年 8月말 현재 1.1억달러 상당)

8) 공적보유액 전환기(1988. 1)

지속적인 경상수지흑자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관리 및 IMF기준충족을 위하여 당행보유액 및 일반예탁1호를 포괄한 공적보유액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9) 현 행(1988年 2月以後)

1988年 1월에 조정된 외환보유액 계산항목중 당행의 대내외환자산인 일반예탁 1호를 제외함으로써 멸실공히 IMF의 외환보유액(Reserve)기준에 부합되는 개념으로 조정하였다.

여 백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여 백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1. 序 論

오늘날은 科學技術의 發達과 文化의 發展 또는 生活樣式의 變化 등으로 社會現象이 相當히 복잡다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基準에 따라 調査하고자 하는 사항을 分類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아니라 自己가 作成한 分類基準과 다른 機關에서 만든 基準이 상이할 때에는 이 두 統計調査結果의 比較가 困難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統計調査 資料를 蒐集하여 이를 分析하고자 할 때에는 調査企劃段階에서 調査하고자 하는 事項에 대하여 概念을 定義하고 調査된 內容을 適正한 基準에 따라 類型化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면 鑛工業 勤勞者를 對象으로 經濟活動 狀態를 調査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알면 이를 類型化하여 어디에서 勤務하였는가에 의해 産業을 把握하고 무엇을 하였는가에 따라 수많은 職業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히게 된다.

그런데 여러가지 事業體와 수많은 일의 形態를 類型化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統計集團을 分明하게 限定하는 同時에 分類標識를 明確히 區分하고 일정한 名稱을 賦與함으로써 알기 쉬운 體系를 구축하여 資料 利用시 比較性을 確保하는 것이 必要하다. 즉 標準分類란 이러한 分類基準을 모든 機關에서 使用하도록 하여 比較 可能性을 높이는 同時에 각 事項을 각각 綜合하면 全體가 될 수 있도록 齊合性을 確保하고 또 全體를 體系的으로 나눌 수 있도록 細分性도 갖춘 分類를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統計法에서 標準分類를 明示하여 同法 第11條에 의거 統計作成 資料 分類基準이 되는 各種 標準分類를 經濟企劃院長官이 定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각 機關이 이 標準分類를 使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는 統計基準으로서 韓國標準産業分類, 韓國標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準貿易分類, 韓國標準職業分類,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의 4종의 標準分類를 制定 告示하였고 그동안 몇차례의 改正을 거쳐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들 標準分類는 國際間的 比較성을 용이하도록 UN統計局, ILO, WHO 등 관계 UN전문기관이 各國에 권고하는 國際標準分類體系를 原則적으로 따르면서 우리나라의 特性을 反映하여 設定한 것이다.

2. 韓國標準產業分類

가. 意 義

모든 產業領域에 從事하는 각 事業體가 繼續적으로 遂行하는 주된 經濟活動은 그 特性에 따라 分類하기 위하여 모든 產業을 일정한 基準 및 原則에 따라 體系的으로 類型化한 것이 產業分野이다.

이러한 產業分類는 分類의 目的이나 分類 原則 및 基準을 달리함으로써 多様な 分類體系를 考慮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各種 產業分類問題의 比較가 可能하도록 體系化한 것이 標準產業分類이다.

韓國標準產業分類는 우리나라의 經濟 및 產業構造를 把握, 分析하는데 必要한 產業 關聯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그 統計調査의 對象이 되는 事業體의 產業領域을 確定하고, 또한 각 產業에 關聯된 統計資料의 蒐集, 製표 및 分析 등의 경우에 모든 機關이 統一的으로 使用하도록 設定하였으며, 作成된 統計의 比較는 물론 國際間的 資料比較도 可能하도록 한 것이다.

나. 領 域

產業分類 對象은 모든 產業領域을 分類 對象으로 한다. 즉, 農業, 林業, 수렵업 및 漁業·鑛業·製造業,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建設業, 都·小賣業 및 飲食宿泊業, 運輸·通信 및 倉庫業, 金融·保險·不動產 및 사업서비스業, 社會 및 個人 서비스業 등 모든 產業을 망라한다.

다. 沿·革

(1) 制 定

第1卷(鑛業, 製造業編) (1963年 3月 1日 經濟企劃院 告示 第10號)

第2卷(非製造業編) (1964年 4月 1日 經濟企劃院 告示 第13號)

經濟企劃院은 統計資料의 正確性和 比較性을 높이기 위한 統計基準 業務의 일환으로 1963년 3월 經濟活動중 우선 鑛業과 製造業에 대한 韓國標準產業分類를 制定, 제1권을 發刊하였고, 다음해 4월 非製造業 部門의 韓國標準產業分類를 制定, 제2권을 發刊하여 전 經濟活動에 대한 標準產業分類를 制定 使用하여 왔다.

(2) 第1次 改正 (1965. 9. 8, 經濟企劃院 告示 第20號)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1권 鑛業 및 製造業編과 第2卷 非製造業編을 制定함으로써 標準分類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양권을 統合하여야 할 必要性이 提起되었고 이 分類方式에 의한 統計調査 實施過程에서 鑛業과 製造業部門에서는 다소 未備點과 不合理點이 나타나 1965. 1부터 1965. 9까지 分類全般에 걸친 用語定義, 外來語表記, 分類 項目 名表記 등에 重点을 둔 第1次 改正作業을 단행, 1965. 9. 8 經濟企劃院 告示 第20號로 改正하였다.

(3) 第2次 改正 (1968. 2. 1, 經濟企劃院 告示 第1號)

第1次 改正으로 產業分類는 標準分類로서 確固한 體系가 서게 되었고, 關係 各級 公私機關에서 統計調査 또는 政策立案의 基礎資料로서 廣範하게 使用해왔으나 1966 人口總調査와 經濟活動人口調査 및 各種 產業調査에서 標準分類로서 使用하는 過程에서 다소 未備點이 나타나 이의 補充을 위한 項目의 再分類와 定義를 補完할 必要性이 提起되었고 특히 1968年 商業센서스등 대규모 新구조사에 대비 주로 商業部門의 全面改編이 要求되어 1967. 4. 12부터 67. 9. 13일 까지 第2次 改正作業을 단행 1968. 2. 1 經濟企劃院 告示 第1號로 改正하였다.

(4) 第3次 改正 (1970. 3. 13, 經濟企劃院 告示 第1號)

1968년에 國際標準產業分類의 第2次 改正으로 分類體系 및 內容에 있어서 現역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한 變경을 가져왔고 이제까지 國際分類나 韓國分類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分類되지 못한 產業 등이 明確하게 나타나게 되어 이에 따라 1969. 1월 부터 전면 개정작업에 들어가 1969. 12월말에 개정원안을 작성하고 1970. 2월에 統計委員會의 最終審議를 거쳐 同案을 確定하고 1970. 3. 13 經濟企劃院 告示 第1號로 改正, 1970. 5. 1부터 施行케하였다.

(5) 第4次 改正 (1975. 12. 3, 經濟企劃院 告示 第5號)

1970年 이래 經濟發展에 따른 產業構造의 變化에 副應하여 分化 또는 統合된 產業과 새로 開發된 產業을 細分類 以下에서 再分類하고 統計作成 및 利用에 있어서 正確性を 提高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동분류의 改正作業에 着手 180개 產業 事業體, 關係機關 및 協會의 意見과 浦項綜合製鐵, 現代造船所등 50個 事業體의 專門家로 부터 자문을 받아 改正案을 作成하고 中央 各 部處, 銀行, 商工會議所 및 其他 統計作成機關으로 專門審議會를 構成하여 重點 審議 檢討後에 統計委員會에 上程하였다. 이로써 4次 改正案을 最終 確定하여 經濟企劃院 告示 第5號로 개정, 1976. 1. 1부터 施行케 되었다. 本 改正은 原則的으로 UN 권고안의 體系를 따랐고 세분류 이하에서 國內實情에 따라 細分하였으므로 國際的인 比較性を 可能케 하였다.

(6) 第5次 改正(1984. 1. 26, 經濟企劃院 告示 第71號)

이상과 같이 韓國標準產業分類는 4次에 걸쳐 改正補完하여 使用하여 왔으나 1975년 이후 우리나라 經濟가 急速히 成長하고 이에 따라 產業構造도 急激히 變化되어 이를 同 分類에 反映하여야 할 必要性이 생겼고, 또한 韓國標準產業分類가 一般 行政目的 遂行을 위한 一部 法令에서 그 적용대상 事業範圍를 限定하기 위한 基準으로 活用됨에 따라 統計目的 分類로서 뿐만아니라 一般 行政目的에 使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補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要請에 따라 다시금 改編作業過程을 거쳐 1984. 1. 26 經濟企劃院 告示 第71號로 改正, 1984. 2. 1부터 施行토록 하였다. 改正內容은 주로 새로운 產業을 同 分類에 明示하여 주고 產業構造上 비중이 커진 產業을 細分化하고 또한 內容說明을 좀더 具體化 하는데 注力하였으며, 基本的인 分類基準이나 分類體系는

종전 분류와 큰 差異가 없도록 하였다.

(7) 第6次 改正(1991. 9. 9, 統計廳告示 第91-1號)

1968년에 제2차 改正되었던 國際標準產業分類가 그간의 國際的인 經濟 및 產業 構造의 變動實態와 새로운 產業內容을 反映하여 20여년만인 1989년에 第3次 改正, 勸告됨에 따라 同 改正勸告 分類體系 및 分類內容을 基本으로 하고 이에 國內의 產業實態와 새로운 統計的 要請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改正作業을 着手, 300여개 政府機關, 產業團體 및 主要 事業體로부터 改正資料를 蒐集하여 改正案을 作成하고, 13部門으로 區分된 專門審議會와 綜合審議, 그리고 統計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1991年 9月 9日 統計廳告示 第91-1號로 改正告示하여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토록 하였다.

이번 改正은 產業, 商品, 서비스 分類 등 各種 經濟關聯 分類間에 連繫性을 構築하여 關聯資料間的 關聯分析이 可能토록 함과 同時에 統計分析 뿐만 아니라 一般 行政 目的에도 同 產業分類가 積極的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分類內容을 改善하는데 主力하였다. 이번의 主要改正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主要 改正內容(要約)

1) 分類項目的 細分

- 大分類 項目 : 9個 項目 → 17個 項目
- 中分類 項目 : 36個 項目 → 60個 項目

(※ 製造業 部分의 中分類 : “9個 項目 → 23個 項目”으로 細分)

2) 符號體系의 變動

- 方 式 : 10진법 → 알파벳 文字와 아라비아 숫자를 混用하여 5段階 分類
- 大分類 : 알파벳 文字 使用(A~Q : 17個 項目)
- 中分類 : 01~99의 두 單位 숫자를 使用하여 5배수 방식에 의하여 17個 大分類 部門에 分割하여 60個 中分類 項目을 順次的으로 分類
- 小, 細, 細細分類 : 10진법 사용

3) 分類內容上的 變化

- 農業領域에 複合農業 新設(0130)

λ.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 신발, 家具 製造業을 獨立項目으로 각각 新設(192 및 361)
- 記錄媒體 出版 및 複製活動을 出版, 印刷 및 記錄媒體 複製業에 분류
- 再生材料 處理業(37) 新設
- 자기가 企劃(구상, 디자인, 견본제작 등)한 製品을 직접 製造하지 않고, 自己所有의 原材料를 다른 契約業者에게 提供하여 製造케 하고, 이를 自己名義와 자기 責任下에 販賣하는 경우를 都·小賣活動으로 보는 것을 製造活動으로 變更
- 綜合 또는 專門建設業者에 의하여 遂行되는 活動을 그 作業順序에 따른 流刑化합으로써 建設業本部 分類體系 改善
- 建設 및 建物解體 裝備 賃貸(操作者 달린)活動을 別個의 獨立으로 分類(4550)
- 自動車, 모터사이클의 販賣 및 修理活動과 車輛用 燃料小賣活動을 別途 獨立分類(50)
- 個人·家庭用品의 修理活動을 小賣活動(52) 領域으로 調整
- 運送手段別로 分割되었던 運輸關聯 서비스를 統合하여 別도 獨立項目(63)으로 分類
- 金融리스를 金融業에 新設
- 各種 機械裝備 및 個人用品 賃貸活動을 (71)에 통합 分類
- 研究 및 開發活動을 社會서비스業에서 事業서비스業 領域으로 變更
- 寫眞攝影 및 處理活動을 個人서비스業에서 事業서비스業 領域으로 變更
- 建物清掃 및 消毒, 代理活動을 社會서비스業에서 事業서비스業 領域으로 變更

라. 産業分類의 概要

(1) 産業 및 産業活動의 定義

일반적으로 産業이란 “同一한 또는 類似한 種類의 生産的인 經濟活動에 주로 從事하는 모든 生産單位의 集合”이라 定義되며, 生産的인 經濟活動(産業活動)이란

社會的인 分業化에 따라 “各 經濟主體가 繼續的으로 財貨 또는 서비스를 生産 또는 提供하는 주된 經濟活動”이라 定義한다.

이때 生産的인 經濟活動에는 營利的인 事業活動 뿐만 아니라 公共行政, 國防, 教育, 宗教 및 기타 非營利團體의 活動을 包含하지만 자기 家庭內的 家事活動은 除外된다.

(2) 分類基準

各種 產業活動을 分類하는데 다음과 같은 分類基準을 適用하여 各級 分類項目을 設定하였다.

- 各 生産單位가 遂行하는 活動의 特性
 - 1) 生産된 財貨 또는 提供되는 서비스의 種類
 - 產出物(또는 生産品)의 種類
 - 產出物(또는 生産品)의 物理的 構成 및 組立段階
 - 產出物의 需要 및 販賣市場
 - 2) 生産된 財貨 또는 서비스의 用途
 - 3) 生産의 原材料, 工程 및 技術
- 生産活動이 事業體內에서 結合된 또는 事業體間에 分割된 一般的인 양상 이상의 分類基準을 適用하여 分類된 細分類는 가능한한 다음의 두 條件을 만족시키도록 定義한다.
 - 1) 特定 細分類에 包含될 特性을 갖는 財貨와 서비스의 總生産은 그 細分類 項目에 分類되는 모든 生産單位의 總產出物의 크기가 되며,
 - 2) 그 細分類項目內는 그 項目에서 正하는 特性을 갖는 財貨와 서비스의 大部分을 生産하는 모든 生産單位를 包含하여야 한다.

첫째 條件은 事業體 또는 類似單位가 유일한 經濟活動의 流刑에 한하여 分類되도록 하고, 또한 特定 細分類에 包含되는 單位는 가능한 相互 類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條件이다.

(3) 統計的 分類單位

統計單位란 統計作成에 필요한 情報가 蒐集되고 統計가 作成되는 對象이 되는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主體로서 이러한 單位는 同質性, 資料獲得 可能性, 自律性의 基準에 의하여 單位가 決定된다. 첫째, 同質性에는 統計單位가 遂行하는 經濟活動의 同質성과 地域의 同質성이 있으며, 둘째, 資料獲得 可能性이란 그들의 活動에 관한 資料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必要條件이지 統計單位를 設定하는 充分條件은 아니다. 셋째, 自律性이란 각 單位가 그들의 母單位로부터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 市場과 直接 關係를 갖는 것을 말하며 한 所有者에 속한 單位는 完전한 自律性을 發見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의 特定過程에 관하여 管理者가 택한 決定이 다른 過程에 影響을 주지 않은 것으로 解析될 수 있다. 이러한 同質性, 資料獲得 可能性, 自律性은 서로 排他的인 것이 아니며 서로 關聯을 갖고 있다.

統計單位는 報告單位와 區分되는 것으로 報告單位는 情報을 蒐集할 수 있는 實體를 말하며 大部分의 경우 事業體가 되나 行政機關이나 會計事務所 등도 될 수 있다. 統計單位는 情報을 구하는 實體로 統計가 窮極的으로 作成되는 單位를 말한다. 이러한 統計單位는 觀察單位와 分析單位로 區分할 수 있는데 觀察單位는 統計가 蒐集되고 統計가 編制되는 單位를 말하며 分析單位는 統計人이 分析을 위하여 觀察單位보다 더욱 細分化하거나 統合된 單位로서 技術單位나 生産의 同質性 單位 등이 있다.

(가) 企業體 單位

企業體 單位란 同一資金에 의하여 所有되고 統制되는 制度的 單位 또는 經營 單位로서 收入, 支出 및 資金管理에 관한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와 기타 記錄을 維持 管理하는 單位이다. 이는 株式會社, 協同組合, 協會, 組合 등의 法人體와 法人系列 등을 包括하며, 政府組織도 하나의 企業體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企業體는 하나 이상의 事業體로 構成될 수 있다는 점에서 事業體와 區分된다. 따라서 각 産業의 資金源泉 및 用途, 生産資金에 관한 資料 등을 把握하고 相互 比較하는데 필요한 財務關聯 統計作成에 가장 有用한 單位이다. 그러나 企業體는 각기 다른 分野의 經濟活動에 從事하는 여러개의 工場, 光山, 商店 등을 所有 또는 管理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企業體 全體를 單一項目에 分類하여 分析하기에는 대단히 困難하며 또한 産業分類의 適用單位로서 企業體 單位를 使用한다면 産業이 다른 各種 經濟活動을 單一産業 項目에 分類되는 수가 있을 것으로

産業分類 適用單位로서는 不適合하다.

또한, 經濟 또는 産業의 集中程度를 測定하거나 企業體間的 國內外的 聯合을 說明할 수 있는 統計資料를 生産하고, 事業所有權의 集中 또는 分散狀態의 研究를 위한 分析單位로 企業集團을 사용할 수 있다.

(나) 活動流刑單位

이상적인 活動流刑單位의 概念은 하나의 活動이 遂行되는 地域은 限定되지 않고, 하나의 單一 또는 主된 經濟活動에 獨立的으로 從事하는 企業體 또는 企業體를 構成하는 部分單位라고 定義된다.

이러한 活動流刑單位는 單一法的 主體가 遂行하는 活動이 特定地域에 限定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事業體 單位와 區別된다.

예컨데 建設, 運輸, 通信 등의 經濟活動에서는 單一法的 主體가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同一한 經濟活動을 遂行하므로, 이러한 經濟活動 分野에 대하여는 事業體 單位 대신 活動流刑單位를 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建設業, 通信業, 運輸業 등에 있어서도 地域別 統計資料가 要請될 수 있으므로 企業體의 組織이나 記錄維持方法 등을 考慮하여 地域別 區劃單位를 適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問題는 電氣, 가스의 生産·供給이나 벌목, 漁業의 경우에도 利用성과 資料蒐集 可能性 등을 考慮하여 適合한 統計的 單位를 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發電所, 變電所 등 電氣産業의 各 生産 및 供給組織을 統計的 單位로 適用하는 것이 企業體 單位를 適用하는 것보다 統計的으로 有用할 것이며, 伐木의 경우에는 各 伐木場 또는 伐木팀 單位, 漁業의 경우에는 各 船舶 또는 漁船團을 統計的 單位로 適用하는 것이 有用할 수 있으며, 이러한 活動은 地域과 無關하며, 各 經濟活動을 함께 營爲하는 經營組織이다.

(다) 地域單位

企業體가 둘 이상의 場所에서 産業活動을 遂行할 경우, 活動의 種類는 不問하고 一定地域에 限定된 모든 活動에 관한 統計資料를 蒐集·分類·集計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單位가 地域單位이며 地域單位의 概念에는 하나의 企業體가 單一 場所에서 修行하는 모든 經濟活動을 包括한다. 따라서 이 單位의 要點은 經濟活動의 流刑은 考慮하지 않고, 各種 經濟活動이 單一 所有

權下에서 遂行되며 또한 일정한 場所에서 遂行되는 모든 活動이 包括된다. 이러한 地域單位를 使用하는 目的은 經濟的 活動에 관해서는 考慮하지 않고 地域上的 同質性을 요구하는 統計를 作成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地域單位는 雇傭 및 資本形成에 관한 統計作成에 使用될 수 있는 單位이나 其他 統計를 위한 觀察單位로 使用하기에는 適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事業體 單位

대부분의 統計는 經濟活動과 地域의 兩面에서 同質性을 要求한다. 이러한 要請에 따라 活動流刑 單位와 地域 單位를 結合하여 사용되는 單位가 事業體 單位이다. 이러한 事業體 單位란, 이상적으로 “일정한 物理的 場所에서, 單一所有權 또는 單一統制下에 單一經濟活動만을 獨立的으로 遂行하는 經營單位(單一法的 主體)”를 말하며, 農場, 工場, 作業場, 商店, 鑛山, 事務所 등의 形態로 나타난다. 이러한 事業體 單位는 가장 이상적인 觀察單位로서 각종 經濟統計에 廣範圍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理想的인 概念은 實質的인 運營上에서 항상 엄격하게 適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運用上의 事業體 定義는 “일정한 物理的 場所 또는 일정한 地域內에서 하나의 單一 또는 주된 經濟活動에 獨立的으로 從事하는 企業體 또는 企業體를 構成하는 部分單位”라 하며, 그러나 이러한 運營上의 事業體 定義를 使用하는 경우에도 限界가 있다. 즉, 建設, 運數, 通信部門에 從事하는 企業體는 同一活動을 廣範圍한 地域에서 遂行하고 있으며 또한 電氣 및 가스, 伐木과 漁業 또는 月別, 季節別 產業인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事業體 單位보다 活動流刑 單位를 適用하는 것이 더 便利할 것이다.

(마) 同質生産 單位

個別 生産工程을 보다 具體的으로 分析하기 위한 統計는 技術的 觀點에서 同質性이 있는 單位로부터 資料를 蒐集하여야 한다. 이러한 目的에 使用되는 分析單位가 同質生産 單位이다. 單一場所에서 單一經濟活動에 從事하는 企業體의 最小單位로서, 經營剩餘를 算出하는데 필요한 統計를 有效하게 作成할 수 있는 分析單位로 使用된다.

(바) 技術的 單位

技術的 單位는 事業體가 生産 또는 供給하는 財貨나 서비스의 特定部分을 직접

生産하는 그 事業體內的 일개 “部”나 “課” 또는 特定 生産品이나 서비스를 生産하는 全 課程上의 特定 生産段階에만 從事하는 事業體內的 일개 部署이다.

리아드, 베이컨 및 고기 통조림을 生産하는 事業體內的 屠殺部署는 전 事業體 活動上 水平的 結合關係에 있는 技術的 單位이며, 纖維事業體內的 방사, 직물, 직물염색부서는 全 事業體 活動上 垂直的 結合關係에 있는 技術的 單位이다. 또한 技術的 單位에서 補助的 活動을 遂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事業體의 技術的 單位는 그 事業體 活動의 全體活動을 包括하지 않으나 事業體의 補助的 單位는 아니다. 特定 財貨나 서비스의 生産에 관한 資料나 그 生産品 生産에 投與된 原材料 및 勞動力에 관한 資料를 分析하기 위하여 技術的 單位가 使用된다.

(사) 補助單位

補助單位란, 母生産單位에서 使用되는 非耐久財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單位다. 이러한 財貨나 서비스는 母生産單位가 生産하는 生産品の 構成品이 아니며 事業體의 全 活動중 要素的 部分이라 할 수 있는 維持的 및 補助的 活動을 通商의 으로 供給한다.

補助單位의 代表的인 事例은 中央行政事務所, 즉 一般行政, 監督, 會計, 財務, 購買, 技術 및 組織計劃, 廣告, 法務 등의 總括的인 行政 및 管理業務를 遂行하는 中央管理部署이다. 其他 補助單位에는 事業體 內部에 倉庫, 車庫, 修理所, 製品檢査 및 實驗室, 發電部署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補助單位는 機能에 따라 그 補助單位가 補助하는 母生産單位의 주된 活動의 일개 部分으로 限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活動單位는 補助單位로 보아서는 안되며 別個의 事業體로 간주하여 그 自體活動에 따라 分類하여야 한다.

- 1) 固定資産 形成의 一部로 행하여지는 作業 또는 財貨의 生産單位, 예컨데, 母 企業體가 자기計定에 의하여 建設活動을 하는 경우에 自營建設을 擔當하는 單位로서 財貨의 生産 및 活動에 관한 別途의 資料가 必要한 경우,
- 2) 母 生産單位에서 使用되는 財貨나 서비스를 補助的으로 生産하고 그 生産되는 財貨나 서비스의 大部分을 다른 事業體에 販賣하는 單位로서 이에 대한 別途의 資料가 필요한 경우,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 3) 모 生産單位가 生産하는 生産品의 構成部品이 되는 財貨를 生産하는 單位, 즉, 모 生産單位의 生産品을 包裝하기 위한 캔, 상자 및 類似製品을 生産하는 企業體內的 別個의 單位로서 이에 대한 別途資料가 필요할 경우,
- 4) 研究 및 開發活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通商的인 生産課程에서 消費되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自體의 本質的인 性質에 따라 事業서비스業으로 分類한다.

(4) 統計單位의 産業決定

活動主體의 生産的인 經濟活動은 主된 活動 및 補助的 活動이 複合的으로 遂行될 수 있으며 각 單位의 活動分類는 그 單位의 주된 活動 또는 活動範圍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때 副次的 活動과 補助活動은 무시된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각 單位의 主된 活動은 주로 販賣되거나 出荷되는 財貨 또는 다른 單位나 消費者에게 提供되는 서비스에 따라 決定된다. 그 具體的인 決定方法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상적으로, 각 生産主體의 주된 生産品 또는 서비스는 販賣된 財貨 또는 提供된 서비스에 대한 附加價値의 크기에 따라 決定되어야 할 것이나, 實際적으로는 個別商品이나 서비스에 대한 附加價値의 測定은 不可能한 것이다.
- (나) 따라서 이러한 理想的인 方法에 의하여 決定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業體의 總產出量에 대한 각 活動에 關聯하여 生産 또는 供給되는 特定財貨 또는 서비스의 產出量 比率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의 產出量은 우연 또는 행운에 의한 것을 제외한 正常的인 收入만을 말한다.
- (다) 그러나 上記의 原則에 따라 決定하는 것이 분명히 不適合한 경우에는 그 該當活動의 從業員數, 賃金 및 給與額 또는 設備의 정도에 의한다.
- (라) 그런데 單一事業體가 産業領域을 달리할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活動을 複合的으로 結合하여 遂行할 경우, 즉 伐木과 製材, 粘土採取와 벽돌製造, 合成纖維 生産과 纖維産業 등 垂直的으로 結合되는 活動을 遂行하거나, 製造한 신발과 購入한 신발의 販賣, 빵과자 製造와 설탕과자製造 등, 水平的으로 結合되는 活動을 遂行하여 이들 活動을 別途로 分離把握할 수 없을

경우, 그 實際的 分類方法은 주된 最終 產出物이 되는 財貨 또는 서비스에 따라 分類된다. 예컨대, 伐木한 大部分의 原木을 原木대로 販賣하고 일부만 製材하는 경우에는 伐木業으로 分類되어야 하나 伐木한 原木을 販賣하지 않고 이를 직접 製材하는 경우는 製材業으로 分類한다.

따라서 垂直的으로 結合되는 活動을 遂行하는 경우, 從業員 및 施設面에서 그 주된 活動을 區分할 수 없을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最終段階의 活動에 따라 分類되며, 水平的 結合關係에서 遂行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最終 產出物에 따라 分類한다.

- (마) 企業體의 活動이 相異한 여러 細分類 項目 또는 細細分類 項目과 關聯된다면 分類目的에 따라 이러한 活動은 그 上位段階만을 適用하여 分類하거나 또는 優先的으로 中分類段階, 그리고 細分類 및 細細分類段階의 分類水準을 順次的으로 適用할 수도 있다.
- (바) 複合活動으로 構成되는 企業體 또는 地域單位의 분류는 그들의 構成單位別 附加價値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單位는 附加價値가 큰 部分의 活動에 따라 分類되어야 한다.
- (사) 事業의 轉換이 있는 경우에는 本來의 產業으로 轉換할 意思가 없다면 總生產額이 적더라도 현재의 產業으로 分類되어야 하나, 다시 轉換할 의사와 기존 設備를 갖추고 있다면 本來의 產業으로 分類하며,
- (아) 季節에 따라 定期的으로 產業을 달리하는 事業體의 경우에는 調査時點에서 經營하는 事業과는 關係없이 觀察期間의 總生產額이 많았던 事業, 즉, 주된 活動에 의하여 分類된다.
- (자) 休業중 또는 資產을 清算중인 事業體의 產業은 營業中 또는 清算을 시작하기 전의 產業活動에 의하여 決定되며, 設立中인 事業體는 개시하는 產業活動에 따라 決定한다.
- (차) 單一事業體의 補助單位는 그 事業體의 일개部署로 包含하며, 여러 事業體를 管理하는 中央補助單位는 別途의 事業體로 處理하고 그 補助되는 事業體中 주된 事業體와 동일한 產業으로 分類한다. 그러나, 外國에 設置된 產業體를 管理하는 國內의 中央行政部署는 事業서비스業 (7414)에 分類

한다.

(5) 産業分類의 適用原則

基本分類內에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言及된 分類適用上의 原則은 다음과 같다.

- (가) 單位는 產出物 뿐만 아니라 投入物과 生産工程 등을 考慮하여 그들의 活動을 가장 精確하게 說明된 項目에 分類해야 한다.
- (나) 複合的인 活動單位는 優先的으로 最上級 分類段階(大分類 項目)를 精確히 決定하고, 順次的으로 中, 小, 細, 細細分類段階 項目을 決定하여야 한다.
- (다) 垂直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單位는 달리 明示된 項目內容이 없다면 最終製品의 性質에 따라 指示된 項目에 分類한다.
- (라) 地域統計를 國家統計로 合算하고자 할 경우 事業體의 活動分類 符號는 그것이 包含되는 活動流刑 單位와 항상 同一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 (마) 特定項目이 明示的으로 設定된 경우를 除外하고, 手數料 또는 契約에 의하여 活動을 遂行하는 單位는 自己計定과 自己責任下에 生産하는 單位와 同一項目에 分類되어야 한다.
- (바) 자기가 直接 實質的인 生産活動은 하지 않고, 다른 契約業者에 依賴하여 財貨 또는 서비스를 實質的으로 生産케 하고, 이를 自己名義로, 自己責任下에서 販賣하는 單位는 그들이 이들 財貨나 서비스 自體를 直接 生産하는 單位와 동일한 産業으로 分類되며, 製造業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考案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自己所有 材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 (사) 資本材의 修理 또는 分解修理를 주로 하는 單位는 그 財貨를 生産하는 單位와 同一한 産業項目에 分類된다. 自動車, 二輪自動車의 修理活動은 502 및 504에 각각 分類되며, 個人 및 家庭用品의 修理活動은 526에, 컴퓨터 및 事務用 機械裝備修理 및 維持活動은 7250에 分類한다.
- (아) 同一單位에서 製造 또는 生産한 財貨의 小賣活動은 別個活動으로 把握되지 않고 製造 또는 生産活動 中心으로 分類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生産한 財貨와 購入한 財貨를 함께 販賣한다면 그 주된 活動에 따라 分類

한다.

- (자) “75：公共行政 및 國防, 社會保障事務” 以外的 다른 產業活動을 遂行하는 政府機關은 그 活動의 性質에 따라 分類되어야 한다.

(6) 分類構造 및 符號體系

- (가) 分類構造는 大分類(알파벳 文字 使用：Sections), 中分類(두자리 숫자 使用：Divisions), 小分類(3자리 숫자 사용：Groups), 細分類(4자리 숫자 使用：Classes), 細細分類(5자리 숫자 使用：Sub-Classes)의 5段階 分類體系이며,

(나) 符號處理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使用토록 했다.

(다) 大分類 項目段階의 新·舊關係는 大體的으로 $A+B=1, C=2, D=3, E=4, F=5, G+H=6, I=7, J+K=8, L+\sim+Q=9$ 關係이며 研究開發活動이 舊分類의 “9” 產業에서 新分類의 “K” 產業으로 移動하는 등 具體的인 內容 上에서는 이들 關係가 完全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 中分類를 나타내는 숫자 符號體系의 처음 單位는 過去 體系와 달리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마) 特定分類段階를 더이상 分類되지 않을 때 “0”을 使用한다.(예를 들면 05：漁業, 小分類：050) 또한 컴퓨터를 使用하여 보다 細分된 項目의 中間 集計하는데 “0”을 使用하도록 한다.(예를 들면 2691~2699를 2690으로 3311~3330은 3300으로 表示할 수 있다.) 또한 小分類 以下에서 “9”는 其他 項目을 意味한다.

(바) 國際勸告分類體系를 基本體系로 하고, 細分類(4자리) 單位까지는 原則的으로 國際分類와 一致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國內實情을 考慮하여 一部 單一 4자리 項目 또는 其他項目을 分割하여 獨自的으로 細分類(4자리) 項目을 設定한 경우도 있다.

예)

勸告案

韓國分類

1544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4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1545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548 식료품 입가공업

1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사) 細細分類(5자리) 單位는 國內産業實態를 考慮하여 統計的 要請 또는 一般行政目的上的 要請에 附合토록 細分類(4자리) 單位를 獨自的으로 細分하여 設定하였다.

(7) 新·舊 産業分類의 分類段階別 項目數 比較

大分類別	項目別		中分類		小分類		細分類		細細分類	
	新	舊	新	舊	新	舊	新	舊	新	舊
計	60	35	160	89	334	293	1,195	1,047		
A	2	2	6	6	14	11	32	30		
B	1	1	2	1	4	3	9	10		
C	5	4	10	4	12	11	27	26		
D	23	9	61	28	142	105	585	522		
E	2	2	4	2	4	4	6	6		
F	1	2	5	11	7	28	40	31		
G	3	2	17	6	36	27	168	140		
H	1	1	2	2	4	4	22	18		
I	5	2	10	5	19	15	61	53		
J	3	2	5	2	13	9	30	25		
K	5	2	17	7	32	20	83	57		
L	1	1	3	2	8	10	15	10		
M	1	-	4	1	5	8	14	29		
N	1	1	3	2	6	6	20	18		
O	4	2	9	8	26	29	80	69		
P	1	1	1	1	1	1	1	1		
Q	1	1	1	1	1	2	2	2		

※ 위 項目數는 分類不能 項目(○)을 除外한 숫자임.

※ 新·舊關係는 위 “다”項의 關係 및 內容을 根據로 作成.

3. 韓國標準貿易分類

가. 沿革

(1) 制定(1964. 4. 7, 經濟企劃院 告示 第14號)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은 統計法第11條의 規定에 依據 統計資料의 國內外 比較를 可能하게 하는 統計基準設定業務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商品에 관한 分類作業에 着手하여 2年間の 研究審議期間을 거쳐 1964年 4月 7日 韓國標準商品分類를 制定 施行하였다.

(2) 第1次 改正(1967. 12. 23, 經濟企劃院 告示 第4號)

制定 商品分類는 UN이 권고하는 國際標準貿易分類(SITC)의 體系를 原則적으로 따랐으나 中分類 以下에서는 주로 國內 商品産業 및 거래에 관한 標準分類에 適合하도록 分類하여 SITC分類體系와 完全 一致하지 않았기 때문에 貿易商品分類로는 利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國內商品分類와 貿易商品分類의 일원화의 必要性에 따라 1967年 12月 23일 제1차 改正을 보게 되었다.

(3) 第2次 改正(1971. 11. 8, 經濟企劃院 告示 第2號)

제1차 개정 分類가 貿易에 관한 국제권고안인 SITC體系와 完全 일치시켰으나 商品의 最終 項目이 6單位와 7單位로 區分되었고 商品名을 한자로 表記한 반면 英文을 병기하지 아니하여 利用上에 不便이 있어 이러한 事項들을 是正하여 商品의 대외무역 및 生産去來에 관한 統計作成에 積極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1971. 11. 8일 第2次로 改正하였다.

(4) 第3次 改正(1977. 1. 24, 經濟企劃院 告示 第11號)

第2次 改正 分類가 對外貿易과 國內生産去來에 다같이 活用하기 위하여 品目 및 體系를 強化하였으나, 그간 對外的으로는 SITC가 關稅協力理事會의 品目分類(CCCN)와 相互 關聯關係를 위하여 75년에 第2次 改正이 勸告되었고 또한 産業活動과 密接한 關聯을 갖는 國際標準 財貨 및 用役分類를 開發하기 위한 作業이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당시에 相當히 進展을 보였으며, 國內的으로는 이제까지 資料蒐集에만 使用된 關稅協力理事會 品目分類에 의한 統計資料의 算出이 貿易行政上 切實히 要請되어 標準分類 適用上 問題點을 改善하여야 할 必要性에 따라 經濟企劃院이 主管이 되고 財務部, 關稅廳 其他 關係機關 合同으로 76年初부터 標準分類와 CCCNK의 改編作業을 同時에 단행, 소심의위원회와 關係機關의 檢討, 綜合審議會, 統計委員會 審議를 거쳐 1976. 12. 30에 第3次로 改正, 韓國標準貿易分類를 最終 確定하였다.

(5) 第4次 改正(1978. 12. 22, 經濟企劃院 告示 第24號)

第3次 改正 以後에 勸告된 關稅協力理事會(CCC)의 신 CCCN과 國內貿易構造의 變動實態를 反映하여 第3次 改正 分類의 內容을 補完하는 程度의 改正이다.

主要 改正內容은 151개 項目을 追加 新設하였고, 19개 項目의 內容을 修正하였으며, 이들 改正項目(SKTC)에 關聯되는 CCCNK를 補完, 改正하였다.

(6) 第5次 改正(1982. 1. 1, 經濟企劃院 告示 第55號)

第5次 改正은 第4次 改正과 類似한 形式의 補完의 改正으로 國內貿易構造의 變動과 새로운 商品의 增加, 國內産業保護 등의 要請에 따라 137個 項目의 新設, 20個 項目의 內容修正과 5개 項目을 削除하였으며, 이에 關聯되는 CCCNK를 相關的으로 補完하였다.

(7) 第6次 改正(1984. 1. 1, 經濟企劃院 告示 第70號)

第6次 改正은 4, 5次 改正에서와 마찬가지로 第2次 改正 國際標準貿易分類體系의 範圍內에서 第5次 改正 이후의 補完이 要求되는 新規品目의 新設과 産業政策上 正確한 情報가 必要한 主要 品目 또는 其他 項目으로 分類된 品目中에서 輸出入의 比重이 큰 品目에 대한 細分新設 등 輸出入 構造의 보다 正確한 分析을 위하여 468個 項目을 細分 또는 新設하였으며, 輸出入實績이 없거나 細分の 實益이 없는 項目 등 31個 項目을 削除하고 內容의 補完이 要求되는 53個 項目에 대하여 內容을 補完 調整하였으며, 이들과 關聯된 CCCNK를 相關的으로 補完함으로써 同 分類의 有用性을 提高하였다.

(8) 第7次 改正(1987. 1. 15, 經濟企劃院 告示 第87-2號)

第7次改正은 第2次改正 國際標準貿易分類 範圍內에서 1984年 以後 貿易構造의 變化에 따른 一部 品目を 補完하고자 8個 品目を 削除하고 1個 品目を 分類調整함으로써 貿易統計를 좀더 現實化하였다.

이같은 現象은 國際標準貿易分類的 3次改正이 압박함에 따라 韓國標準貿易分類도 改正의 必要性이 增大되었으므로 최소한의 必學的 補完만을 追求하였던 結果이다.

(9) 第8次改正(1988. 1. 1, 經濟企劃院 告示 第87-18號)

韓國標準貿易分類는 貿易關聯 統計資料의 正確性和 比較性を 提高하기 위하여 第2次改正 國際標準貿易分類를 基礎로 作成하여 왔다. 그러나 CCC 및 UN에서 關稅業務의 能率性和 統計業務의 質的改善을 위하여 CCC 主管下에 關稅目的分類인 CCCN體系가 HS體系로 改編됨에 따라 HS體系와 連繫시켜 國際標準貿易分類가 3次改正되고, 1988년부터 第3次 國際標準貿易分類 體系에 依據 汎世界的으로 貿易統計를 作成하도록 勸告하였다.

따라서 HS體系나 連繫된 SITC Rev.3體系의 第8次改正 韓國標準貿易分類를 完成했으며, HSK 및 SKTC를 連繫함으로써 貿易關聯 統計業務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나. 分類基準

- ① 本 分類는 第3次改正 國際標準貿易分類(SITC, Rev.3)를 基準으로 分類하였다.
- ② 同 分類의 基本的인 分類記號 및 分類內容은 SITC의 基本項目과 一致하며, 그 以下 單位에서는 HSK와 連繫하여 다음 事項을 考慮하였다.
 - 商品의 特性和 製品生産에 投入된 材料의 特性
 - 生産段階
 - 商去來 慣例와 製品의 用途
 - 貿易에서 차지하는 商品의 重要度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 生産統計와의 連繫

- ③ 基本的으로 7單位 分類를 原則으로 하되 7單位 以下の 細分이 必要한 경우에 는 알파벳부호 및 보조숫자를 使用하여 9單位까지 細分하였다.
- ④ 本 分類는 10進分類法에 따라 其他項目은 “9”를 使用하였고, “0”은 더 細分되 지 않음을 表示하며, SITC에서 결번을 둔 경우에는 缺番으로 두었다.
- ⑤ 品目에 관한 解釋은 관련 HS 品目解説書에 의한다.
- ⑥ 本 分類 HSK, 구 SKTC, CCCNK 및 BEC項目과 연관시켜 利用上 便利를 도 모하였다.

다. 分類의 構成

韓國標準貿易分類는 10個의 大分類, 67個의 中分類 및 261개의 小分類로 最終 單位項目數는 10,199項目으로 構成되어 있다.

韓國標準貿易分類의 分類項目

大 分 類	中分類	小分類	細分類	5單位 分類	6單位 分類	7單位 分類	8單位 分類	9單位 分類
0. 食品 및 산동물	10 (10)	36 (36)	132 (132)	387 (344)	485	286	77	
1. 飲料 및 담배	2 (2)	4 (4)	11 (11)	34 (22)	35	16		
2. 非食用原材料 (연료제외)	9 (9)	36 (36)	123 (123)	283 (267)	358	358	71	16
3. 鑛物연료, 運轉유 및 관련물질	4 (4)	11 (11)	25 (25)	45 (37)	6	24	11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3 (3)	4 (4)	21 (21)	45 (44)	60	29	5	2
5. 화학물 및 관련 製品	9 (9)	33 (33)	126 (126)	515 (474)	903	879	349	
6. 材料別 製造製品	9 (9)	52 (52)	234 (234)	864 (829)	1,389	865	235	2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細分類	5單位 分類	6單位 分類	7單位 分類	8單位 分類	9單位 分類
7. 機械 및 運輸 裝備	9 (9)	50 (50)	214 (214)	708 (653)	992	622	199	
8. 其他 製造製品	8 (8)	31 (31)	143 (143)	511 (442)	930	720	181	
9. 달리 分類되지 않 은 商品 및 取扱物	4 (4)	4 (4)	4 (4)	3 (3)	3	4	6	
計	67	261	1,033	3,395	5,215	3,763	1,134	20

* 괄호는 SITC 項目數

라. 他分類와의 關係

CCCN(關稅 行政 品目分類表,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은 關稅專門家들이 關稅政策을 圓滑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同一한 原料에서 얻어진 物品을 同一한 品目群에 分類하고, 原料부터 完製品의 순으로 배열하는 方式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輸出入業者로 하여금 CCCN內에서 特定 商品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物品의 製造工程에 따르는 相對的 關稅保護程度를 쉽게 把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해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國際標準貿易分類)는 統計專門家들이 國際的으로 去來되는 商品에 대한 貿易統計의 蒐集 및 情報把握의 便宜를 考慮하여 만든 것인데 商品의 種類別, 產業構造別로 分類한다는 原則에 따르고 있다.

이처럼 CCCN과 SITC는 制定目的과 制定主體가 각기 다르고 서로 相異한 機能을 갖고 있지만 國際貿易分野, 특히 關稅 및 統計分野에 있어서는 密接한 相互依存關係를 갖고 있다. 즉 大部分의 國家가 關稅의 輸出入 統計資料를 가지고 貿易統計를 作成하고 있으므로 SITC와 CCCN은 相互 連繫體系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貿易構造의 變化와 分類方式의 發展으로 인해 CCCN이 廢止되고 HS(新國際統一商品分類,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로 轉換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HS를 採擇하게 되었다. CCCN이 순수하게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關稅目的을 위한 商品分類라면 HS는 關稅, 貿易, 運送, 保險과 같은 多樣한 目的에 共通的으로 使用될 수 있도록 만든 多國的 商品分類表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SITC도 第3次 改正을 하여 HS와 SITC(Rev.3)는 연계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現행 韓國標準貿易分類는 SITC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으며 HS와의 연계체계를 갖추어 使用되고 있다.

4.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

가. 意 義

疾病, 상해 및 사인통계는 各國의 保健 및 福祉行政에 관한 政策樹立과 人口問題 및 醫學研究에 重要한 資料로 利用된다. 이러한 사인통계 또는 질병상해통계를 올바르게 作成하기 위하여서는 사인이나 질병, 상해가 適切히 分類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一定的한 分類의 原則에 따라 各 分類項目의 內容을 明確히 정한 標準分類를 制定하여, 모든 統計의 作成을 이 標準分類에 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러한 여러가지 統計를 國際的으로 活用하는데는 國際的인 統一이 要請되기 때문에 W.H.O는 國際的으로 統一된 疾病, 上해 및 사인分類(I.C.D)를 定하여, 各 會員國으로 하여금 이에 依據하여 死亡 및 질병통계를 作成·公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世界保健機構 分類規則 第2條 및 第3條)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醫師, 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交付하는 진단서에 記載하는 병명은 世界保健機構에서 정한 疾病, 상해 및 사인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醫療法 施行規則 第12條 3項) 특히 最近의 醫療保險制度의 實施에 따라 醫療保險遼養機關에서 醫療費用請求書에 記載하는 疾病 및 상해명을 本 標準分類에 의하여 統一的으로 기재함으로써 醫療保險制度의 發展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나. 沿革

(1) 初期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질병사인분류가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人口動態調查 事務를 着手한 1938년부터 第4次 改正 국제사인표(1929)를 採擇한데서부터 비롯되며, 이것이 8.15해방까지 그대로 使用되어 오다가 8.15 以後 美軍政下에서는 第5次 改正 국제사인표(1938)를 번역 使用하였다.

1949년 공보처에서 第6次 改正 國際疾病사인표(1948)의 原本을 入手하여 번역 하던중 6.25사변으로 原本 및 其他 書類를 소실당하였으며, 그후 1952年 11月 日本 도쿄에서 開催된 서태평양지구 保健 및 人口動態統計會議에서 W.H.O 勸告案을 재입수하고, 이에 韓國實情을 가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사인상해 및 疾病分類를 制定하였다.

(2) 第1次 改正

經濟企劃院에서 各種 標準分類의 制定, 改正, 補完業務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經濟企劃院은 第8次 改正 國際疾病分類(1968)에 依據, 韓國疾病 사인分類를 改正하여 1973. 1. 1부터 施行하였다.

(3) 第2次 改正

醫學의 發展과 새로운 統計的 要請에 副應하기 위하여 매 10年 改正原則에 따라 제29차 世界保健總會에서 1976年 5月 國際疾病分類(I.C.D)를 제9차 改正하여 各會員國에서 1970. 1. 1부터 이를 發效시키도록 勸告하였다. 이에 따라, 經濟企劃院에서는 1978年初 한국질병사인분류의 改正作業計劃을 樹立하고, 동 권고안의 번역을 대한의학협회내 醫學用語制定審議委員會에 依頼하여 1978. 8에 이의 번역을 完了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韓國標準질병사인분류 改正 초안을 작성하여 保健社會部에 이의 內容에 관한 意見을 조회한 바, 이견 없음을 通報받았다. 最終적으로 동 改正초안과 科學技術用語集과의 相異한 用語를 統一 調整하고 改正內容 全般에 대한 檢討를 위해서 關係機關 및 사계 專門家の 審議會를 거쳐 最終案을 確定하였다.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第2次 改正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는 國際的 比較가 可能하도록 第9次 改正國際疾病分類의 基本的 構造인 3단수자항목(小分類항) 및 4단수자항목(細分類항)의 체계를 變動시키지 않았으며 질병상해사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醫學用語의 統一과 標準化를 도모하는데 注力하였다.

다. 第2次 改正內容의 特性

- ① 일정한 곳에 임의적 5단수자분류가 可能하도록 하였다.
- ② 獨立的인 4단수자 分類組織인 신생물의 組織學的 形態의 分類가 新設되었다.
- ③ 상해의 외인에 使用되는 “E” 코드는 役割이 달라졌다.
- ④ 일정한 진단기록에 二元的 分類가 可能하도록 하였다.
- ⑤ 精神장애의 部門에서 用語解説을 分類自體內에 包含하였다.
- ⑥ 지금까지 Y코드로 使用되어 오던 補助分類는 Y를 V로 變更하여 繼續 使用토 록 하였다.

라. 分類體系

(1) 分類의 區分

1) 本分類

17個 大分類→107개 中分類→909個 小分類→5,163개 細分類

2) 補助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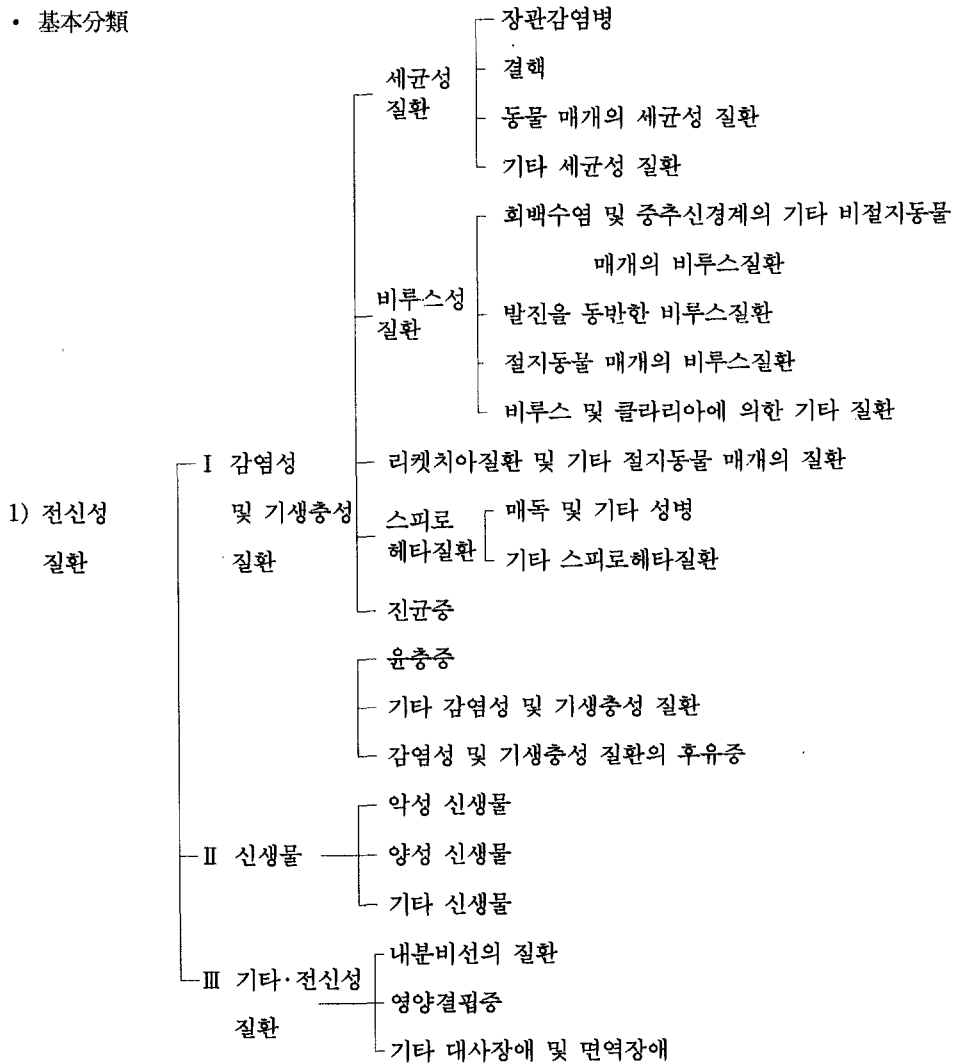
- ① 손상 및 중독의 외인분류.
- ② 건강상태 및 保健事業從事者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類

3) 其他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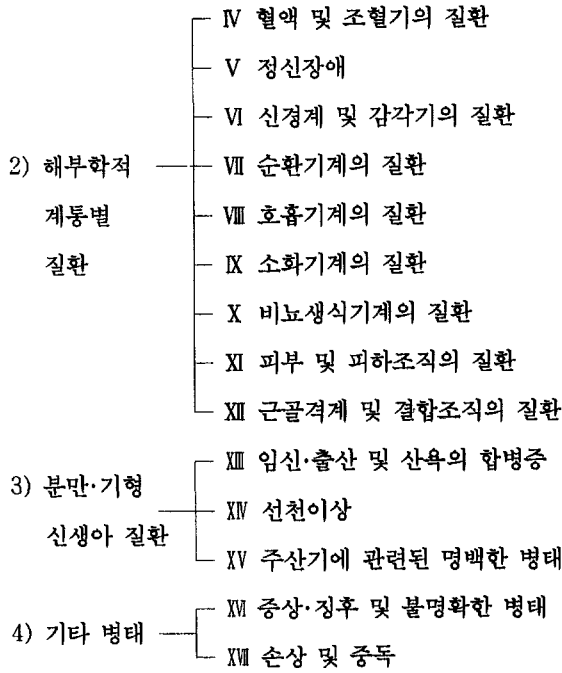
- ① 신생물의 形態分類
- ② 작인에 따른 산업재해분류

分類의 構造

• 基本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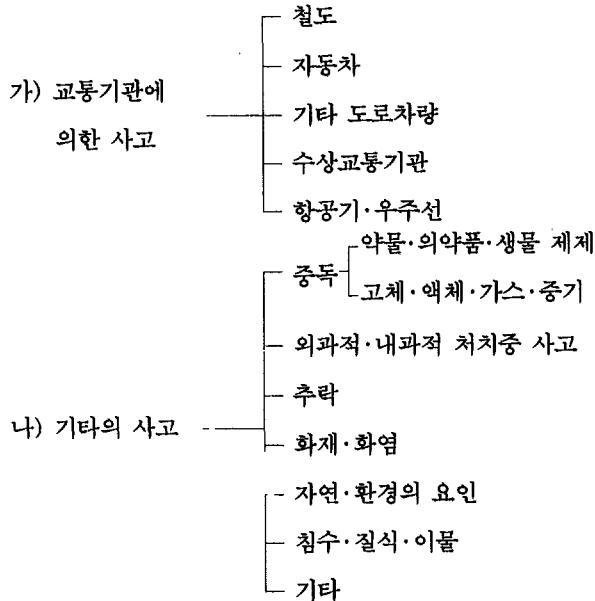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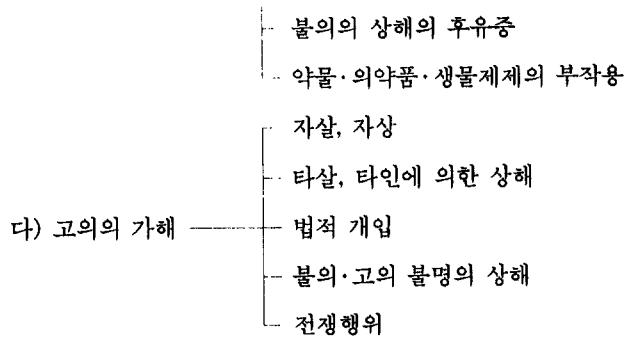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 보조분류

1) 손상 및 중독의 외인





2) 건강상태 및 보건사업종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가) 건강위험의 잠재력을 가진 자 - 전염병과의 관련

- 개인력 및 가족력과의 관련

나) 출생형에 따른 건강출산아(V30-V39)

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V40-V49)

라) 보건사업에 관련되는 자 - 생식·발육과의 관련(V20-V28)

- 특수조치·뒷조리와의 관련(V50-V59)

- 기타 상황과의 관련(V60-V68)

- 개인·주민의 검사·조사와의 관련

(Y70-V82)

• 기타 분류

1) 작인에 따른 산업재해분류

가) 기계류(11-19)

마) 작업환경(51-53)

나) 운수장비 및 인양장치(21-26)

바) 기타 작인(61-69)

다) 기타 장비(31-39)

사) 자료미상 작인(7)

라) 자재·물질·방사선(41-49)

2) 신생물의 형태 분류(M800-M997)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新舊 項目 對比表

장	대분류 항목명	3단수자항수		4단수자항을 갖는 3단 수자항수		4단수자항수	
		구	신	구	신	구	신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2	120	71	101	313	566
II	신생물	88	92	59	82	290	570
III	내분비·영양 및 대사의 질환과 면역장애	36	37	20	32	84	206
IV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10	10	7	9	36	61
V	정신장애	26	30	23	25	181	180
VI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58	65	19	61	65	458
VII	순환기계의 질환	56	58	33	45	91	223
VIII	호흡기계의 질환	42	50	6	28	21	136
IX	소화기계의 질환	44	48	26	41	130	290
X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40	47	14	40	76	273
XI	임신·분만 및 산욕의 합병증	38	46	29	38	181	289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6	26	12	21	66	125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8	30	14	28	62	245
XIV	선천이상	20	20	17	20	130	168
XV	주산기에 관련된 명백한 병태	20	20	18	19	95	157
XVI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17	20	13	19	98	161
XVII	손상 및 중독	187	190	153	179	677	1,055
	소 계	858	909	534	788	2,596	5,163
보조 분류	손상 및 중독(외인분류)	182	192	65	137	452	997
	소 계	182	192	65	137	452	997
	총 계	1,040	1,101	599	925	3,048	6,160

5. 韓國標準職業分類

가. 沿革

우리나라에서 體系的으로 職業分類를 作成한 것은 1960年 當時 內務部 統計局에서 國勢調査에 使用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統計의 標準分類業務가 經濟企劃院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1963. 10. 1 韓國標準職業分類가 制定되었고 1966. 1. 30. 第1次 개정판이 發刊되었다. 그 후 國際的 比較性을 容易하게 차기 위하여 UN의 권고안을 中心으로 1970年 8월에 第2次 개정판을 發刊하여 現在까지 使用하여 왔었다.

1968年 改正 國際標準職業分類는 細分類(5단위)까지 分類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職業分類 歷史가 짧고 많은 職名이 여러가지 바르지 못한 外來語로 通用되고 있어 統計資料 蒐集上 애로가 많아 小分類까지만 分類하고 小分類以下에는 많은 類似職名을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나. 第3次 改正

그간 繼續되는 經濟發展과 重化學工業의 推進으로 인하여 新産業이 많이 대두하였고 보다 專門化 내지는 細分化됨에 따라 職種도 보다 細分되었다. 이러한 經濟構造의 變化에 따른 職種의 細分化를 充足시키고 또한 人力需給計劃에 대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며 其他 職業訓練計劃, 移民計劃 등 여러가지 用途에 使用할 수 있도록 國際標準職業 細分類를 中心으로 각 産業部門에서 資料를 蒐集하여 經濟企劃院이 초안을 作成하고 이의 초안을 關係機關에 배부, 의견을 蒐集하여 修正하고 다시 사계전문가들로 專門審議會를 構成하여 補完하였다.

第3次 改正은 既存 1970韓國標準職業分類와는 小分類까지 原則적으로 同一하게 하였다.

다. 第4次 改正

'74 韓國標準職業分類는 ILO의 第1次 改正 ISCO-68을 基礎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UN의 國際勞動機構에서는 그간의 急速한 經濟發展에 따른 職業構造의 變化와 勞動關聯 統計의 正確性과 比較性 提高를 위한 새로운 統計的 要請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1988년 第14次 國際勞動統計官會議에서 새로운 國際標準職業分類 改正案을 確定하고, 이를 각국에서 使用토록 勸告하여 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부터 改正作業을 着手, 새로운 勸告體系와 國內의 產業構造 및 職業實態를 反映하여 1992년 8월에 改正案을 確定하고 이를 關係機關의 檢討와 專門家 審議를 거쳐 1992년 12월에 統計廳 告示 第1992-1號로 改正, 告示하였다. 그 중요한 改正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主要 變更 內容

1) 分類段階의 調整 : 4段階 分類→5段階 分類

세분류 다음에 1단계의 職業群을 增設하여 勞動行政 目的에도 活用配慮

2) 職業의 概念 및 分類基準의 具體化

- 職業을 “한사람에 의하여 遂行되었거나 수행되도록 設定된 일련의 職務” 라고 正義하고,
- 각종 職務를 遂行하는 職務能力水準을 國際標準教育分類(ISCED)에서 정한 教育水準에 준하여 4段階로 區分하고,
- 필요로 하는 職務能力水準(第1~第4職能水準)에 따라 大분류 항목의 직업 군을 設定하고,
- 生産된 財貨, 서비스의 種類, 필요한 專門知識 技術分野, 使用된 道具 및 機械, 原材料 등에 의하여 專門職務能力과 職務를 細部的으로 類型化 함으로서 各급 職種の 概念과 職務範疇 具體化

3) 機能人力의 區分基準 設定

- 간단한 手道具를 活用하고 높은 技藝를 移用하여 物건을 生産하는 機能員 (예 : 양복원, 대장원 등)……大분류 7 : 技能員 및 關聯 技能勤勞者에 分類
- 복잡한 機械와 裝置를 이용하여 物건을 生産하는 技能員(예 : 선반조작원, 콘크리트혼합장치 조작원 등)……大분류 8 : 裝置, 機械操作員 및 組立員

구 분류

大分類 7/8/9 :
生産 및 關聯 從事者

신 분류

大分類 7 :
技能員 및 關聯 技能勤勞者
大分類 8 :
裝置, 機械操作員 및 조립원

4) 2개의 農業部門 共存

구 분류

中分類 61 :
農業 및 畜産 從事者

신 분류

中分類 61 :
出荷目的 農業 및 漁業熟練 勤勞者
中分類 62 :
自給農業 및 漁業勤勞者

5) 女性の 社會參與 增加를 反映

· 大分類 4 : 사무직원

- 비서직종

구 분

小分類 321 :
속기사, 타자원 및 전산
타자원

신 분류

小分類 411 :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細分類 4115 : 비서

- 経理직종

구 분류

小分類 33 :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소분류 331 :
경리원 및 出납원
소분류 3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신 분류

中分類 42 :
고객봉사 사무직원
小分類 421 :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細分類 4211 :
대금수납원 및 대표사무원
細分類 4212 :
금전 출납원 및 기타 계산대 사무원
細分類 4213 :
마권영업자 및 도박진행자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細分類 4214 :

전당업자 및 대출업자

細分類 4215 :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 大分類 5 :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 보모 직종

구 분류

小分類 540 :

달리 분류되지않은 가정부
및 관련 가사종사자

신 분류

小分類 513 :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細分類 5131 : 보모

－ 모델 직종

구 분류

小分類 451 :

판매원, 점원 및 선전원

신 분류

小分類 521 :

패션 모델 및 기타 모델

細細分類 52101 : 패션모델

細細分類 52102 : 예술모델

細細分類 52103 : 광고모델

7) 非公式 部門의 職業 反映

- 細分類 7331 : 木材 및 關聯 材料의 手工藝勤勞者
- 細分類 7322 : 纖維, 가죽 및 關聯 材料의 手工藝勤勞者
- 細分類 9111 : 食品 行商人
- 細分類 9112 : 非食品 行商人
- 細分類 9120 : 구두 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

8) 大分類의 分割 設定

구 분류

大分類 0/1 : 전문, 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신 분류

大分類 2 : 전문가

大分類 3 : 기술공 및 전문가

9) 종사상의 지위 따른 분류의 통합

구 분류

中分類 40 : 도소매 관리자

신 분류

中分類 12 : 법인관리자

<u>구 분류</u>	<u>신 분류</u>
中分類 41 : 도소매 자영자	中分類 13 : 종합관리자
中分類 50 : 요식숙박업 관리자	
中分類 51 : 요식숙박업 자영자	

10) 法人企業의 管理者와 零細企業의 管理者 區分

<u>구 분류</u>	<u>신 분류</u>
中分類 21 : 관리자	中分類 12 : 법인관리자
	中分類 13 : 종합관리자

11) 尖端産業의 發達로 새로운 職種 設定

<u>구 분류</u>	<u>신 분류</u>
細分類 02390 : 기타 전기 및 전기기술자	細分類 2131 :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細分類 08310 : 체계 분석가	細細分類 21311 :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細細分類 21312 :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細細分類 21313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細細分類 21492 :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이외
細分類 08420 : 전산기 프로그래머	細分類 2132 : 컴퓨터 프로그래머
	細細分類 21321 : 시스템 프로그래머
	細細分類 21322 : 응용 프로그래머
	細細分類 21329 : 컴퓨터응용 공학자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細分類 03490 :
기타 전기 및 전자기술공
구 분류

細分類 3121 :
컴퓨터 보조원
신 분류

細分類 3122 :
컴퓨터조작원
細細分類 31221 :
컴퓨터 주변장치 조작원
細細分類 31222 :
광분석장치 조작원

細分類 3123 :
산업용 로봇 조종원
小分類 817 :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細分類 8171 :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細分類 8172 :

산업용 로봇 조작원

12) 事務職員, 販賣從事者, 서비스從事者, 農漁業從事者에 分類된 單純勞務者를 하나의 大分類로 統合

구 분류

신 분류

33160 표 수집원
37040 문서송달원
45220 행상인
45240 신문팔이
54020 가정부
54050 객실종사원
54055 호텔 포터
55130 건물관리인
55220 청소원

大分類 9. 단순노무직 근로자

55230 창문 청소원

58940 경비원

62420 목동

6223 농업노동자

라. 職業分類的 概要

(1) 職業의 定義

職業分類상 職務(Job)란 “生産活動에 종사하는 개별 勤勞者 한사람에 의하여 定規적으로 遂行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設定, 教育, 訓練되는 一聯의 業務 및 任務”라 정의되며, 직업군(Occupational Group)이란 “類似한 職務의 集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類似한 職務”란 “동일한 形態의 일”을 지칭하며, 또한 “일의 定規性”이란 일정형태의 職務를 매일, 매주, 매월, 계절적, 주기적 또는 명확한 주기를 갖지 않더라도 현재 계속하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하여 意思와 能力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活動은 職業으로 보지 않는다.

- 가. 利子, 株式配當, 賃貸料(전세금, 월세금), 小作料, 權利金 등고 같은 財産 收入을 얻는 境遇
- 나. 年金法이나 社會保障에 의한 收入을 얻는 경우
- 다. 競馬 등에 의한 配當金の 收入을 얻는 경우
- 라. 保險金 收取, 借用 또는 自記所有의 土地나 株券을 賣却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 마.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
- 바. 정규주간 教育機關에 在學하고 있는 경우
- 사. 法律違反 行爲나 法律에 의한 強制勞動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자의 활동 등을 말한다.

(2) 職業分類的 概念

生産的인 經濟活動에 從事하는 개별 勤勞者들에 의하여 遂行되어지는 각종 職務를 그 遂行되는 일의 形態에 따라 體系的으로 분류 한 것이 직업분류이며, 國內職

業 構造 및 實態에 맞도록 標準化한 職業分類를 韓國標準職業分類라 한다.

(3) 分類基準

각종 職業에 包括되는 일은 그 일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技術的 特性과 遂行能力 수준에 의하여 일정한 形態로 구분될 수 있으며, 特定形態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專門職務能力和 職務能力 수준에 따라 決定된다. 다시말하면 특정한 형태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職務遂行能力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技術的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職業分類上에서 職務遂行能力은 特定職務를 遂行하는데 필요한 職務能力水準과 專門職務能力에 따라 類似한 職務類型(職種)을 구분하는 基準으로 使用하였다. 다만, 주로 管理的, 行政的 監督 및 立法的 機能과 責任을 갖는 職務를 修行하는 職業은 이러한 職能의 概念에 따르지 않고 別途의 獨立된 大分類 項目에 分類토록 했다.

(가) 職務遂行에 요구된 基本概念인 職務遂行 能力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간의 숙련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內包하는 概念이다.

- 職能의 專門: 特定職務를 遂行하는데 필요한 特定知識, 利害, 手腕 및 經驗 등 職務分野에 關聯된 概念이다.
- 職能水準: 知識 및 이해의도, 수완과 경험의 정도에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職務遂行 能力의 특질은 遂行되는 일의 형태의 基本概念을 대신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본개념을 定義, 說明하는 중요한 手段이 된다.

예를들면 職種(직업군)은 原材料, 作業場所, 環境, 專用裝備 및 유사한 상관성을 근거로 설정하며 관련 근로자의 特定 기량, 지식 및 작업능력은 이러한 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나) 職能(skill)과 資格(qualification)은 區分된다.

- 職能: 教育, 訓練, 經驗을 통하여 또는 先天的 能力과 社會的, 文化的 및 環境을 통하여 얻어지며,
- 資格: 공식적인 實驗, 試驗合格과 같은 일련의 公式的인 基準을 충족함으로써 受與된다.

(다) 직업분류상 직능수준에서만 최광의 집단간에 한해서 구분이 가능하나 전문직무능력은 “광의 또는 협의” 모두 표시할(나타낼) 수 없다.

(라) 專門職能은 關聯分野, 生産過程, 利用裝備, 투입된 原材料, 生産財貨 및 用役의 特性 등에 관련된다. 따라서 職業分類에서 關聯分野, 生産課程 등을 설명하는 用語는 일련의 핵심적 직무능력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서 어떤 勤勞者는 그들의 職業分類 方法을 理解하면, 그들의 産業分類를 상당히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職業分類가 産業을 分類基準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職務能力은 産業決定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生産品, 原材料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두 분류간의 概念的 차이는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基準 및 이들의 聯關關係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分類原則

(가) 包括的인 業務에 대한 分類

동일직업에 包含되는 직무범위상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들면 小規模 事業體에서는 타자와 문서정리가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문서접수계원의 임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大規模 企業體에서는 이들은 별도로 分類된 2~3개의 任務로 구성될 수 있다. 國際的으로는 傳統的 또는 團體協約과 같은 要因이 중요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차이의 존재는 대체적으로 勞動部門의 單純性和 經濟發展 수준과 연관된다. 職業分類는 國內外的으로 가장 普遍的인 업무 및 임무의 결합상태에 根據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직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업무 및 임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分類原則을 적용한다. 이에 관련되는 다음의 원칙은 상이한 분류체계간의 분류항목 연계포를 작성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1) 數的優位 原則

經濟 및 其他統計 또는 部門專門家로 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情報를 근거로하여 遂行되는 職務耐用과 관련 分類項目에 명시된 職務內容을 比較・評價하여 關聯職務 내용상의 相關性이 가장 많은 項目에 分類한다.

(2) 最上級 職能水準 于先原則

수행된 業務와 任務가 통상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訓練과 經驗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職務能力을 필요로 하는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업무와 임무에 따라서 分類하여야 한다.

(3) 生產業務 于先原則

財貨의 生産 및 供給過程의 상이한 단계와 연관된 업무 및 임무인 경우에는 동일 재화의 販賣 및 마케팅, 運送 또는 生産過程의 管理같은 業務가 주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우선하여 生産段階에 관련된 業務에 따라 分類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빵을 굽는 제빵공이 빵을 製造하고 이를 販賣하였다면 販賣員으로 分類되지 않고 제빵원으로 보아 “7412 : 제빵원, 파스트리 및 과자 제조원”으로 分類되어야 한다.

(나) 多數職業 勤勞者의 分類

한 사람이 전혀 相關性이 없는 두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決定하는 一般적 原則은 다음과 같다.

- (1) 就業時間이 많은 職業을 택한다.
- (2) 위의 경우를 分別하기 어려운 경우는 輸入이 많은 직업을 택한다.
- (3) 위의 두가지 경우가 분명치 못할 경우에는 조사시 최근의 직업을 택한다.

(5) 概念上의 分類構造

職業分類體系는 職務(또는 수행된 일)의 概念과 職務能力(직능)의 개념을 근거로 設計되고 편제되었다. 그 具體的 概念을 보면,

- 職務(Job) : 職業分類의 통계단위가 되는 개별 勤勞者에 의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되도록 설정된 一聯의 業務 및 任務라고 定義된다. 직업은 주된 임무 및 업무가 높은 類似性을 갖는 職務로 구성되며 특정 직무근로자의 직업은 그들이 수행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무에 의하여 분류된다.
- 직 능 : 직업분류상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갖는 개념으로서 “特定 職務를 遂行할 수 있는 能力”으로 定義된다.

(가) 職能水準 : 주어진 業務 및 任務 機能의 복잡성과 범위에 따른 개념이며,

(나) 職能의 專門性 : 生産된 財貨 및 서비스의 種類, 原材料, 專用機械 및 道具, 필요한 知識分野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러한 職務修行 능력의 概念에 따라 職業項目을 단계적으로 細分하였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勤勞者가 그 직무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職務遂行能力은 통상적으로 年齡, 職業의 種類, 國家의 經濟, 社會的 및 文化的 與件하에서 수행되는 정규적 訓練 및 教育, 非定規的 訓練 및 職業的 經驗 또는 이들의 結合方法을 통하여 습득된다. 물론 이러한 職務能力은 天賦的 才能이나 先天的 能力에 의하여 그 差異를 갖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ISCED에 의하여 規定한 教育課程에서 정한 教育水準에 의하여 組織的인 訓練과 體系의인 教育을 통해서 만이 國際的으로 認定되고 收用될 수 있는 職務能力水準을 定義하고 說明할 수 있는 用語와 構造를 갖게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ISCED를 使用한다고 해서 ISCO에서 定義한 職務能力水準에 分類된 職務를 遂行하는데 요구되는 職務能力은 定規教育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그러한 職務能力은 비정규적인 訓練과 經驗을 통하여서도 얻게된다. 따라서 分類目的上 決定的 要所는 이러한 職務能力을 習得하는 方法이 아니라 職務를 遂行하는데 필요한 特定業務 遂行能力 그 자체이다. 이러한 基本概念에 의하여 設定되는 분류의 概念的 體系는 분류의 國際的 特性을 고려하여 4개의 職務能力水準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職務能力이 定規教育(또는 訓練)을 통하여서 만 얻어지는 것이라할때 이에 관한 用語상의 概念을 ISCED상의 教育課程 水準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第1職能 水準

통상 一般的으로 5, 6, 7세에 시작하여 5년정도 施行되는 教育으로서 ISCED상의 第1水準의 教育課程(初等教育課程 水準) 정도의 定規教育, 또는 訓練을 必要로하는 職務能力으로 定義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자는 最小限의 文字理解와 또는 數理的 思考能力을 필요로 하며, 간단한 職務教育으로 누구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職務能力을 必要로 한다.

· 第2職能 水準

一般的으로 11세 또는 12세에 시작하여 3년정도 계속되는 教育 또는 14, 15세에서 시작하여 3년정도 계속되는 教育으로서 ISCED상의 第2, 3水準의 教育課程(中等教育 課程 水準) 정도의 定規教育 또는 訓練을 필요로 하는 職務能力으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職務能力을 필요로 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자는 一定한 職務訓練을 必要로 하며, 때로는 일정한 實習과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訓練實習期間은 定規訓練을 보완하거나 定規訓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 第3職能 水準

一般的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정도 계속되는 教育으로서 ISCED상의 第5水準의 教育課程(技術專門教育課程 水準) 정도의 定規教育 또는 訓練을 必要로 하는 職務能力으로 定義되며, 이러한 教育課程의 修了로 初級大學 學位와 동등한 學位가 受與되는 것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자는 一定한 補充的 職務訓練 및 實習過程이 요구될 수 있고 定規訓練課程의 일부를 代替할 수도 있다.

· 第4職能 水準

一般的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3년, 4년 또는 그 이상 繼續하여 學士, 碩士 또는 그와 동등한 學位가 受與되는 教育으로서 ISCED상의 第6, 7水準의 教育課程(大學 및 大學院 教育課程 水準) 정도의 定規教育 또는 訓練을 必要로 하는 職務能力으로 定義되며, 一般的으로 이러한 수준의 職務能力을 필요로 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자는 일정한 補充的 職務訓練 및 實習을 必要로 할 수 있다.

위의 같은 4개의 職務能力 水準의 定義는 다음과 같이 職業分類上的의 10개 大分類 項目中 8개항목의 定義에 使用되었으며, 大分類 1: 立法者, 高位任職員 및 管理者의 大分類 0: 軍人 項目에는 使用되지 않았다.

1. 立法者, 高位任職員 및 管理者: 職能水準과 무관하게 설정
2. 전 문 가: 제4직능 수준 필요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제3직능 수준 필요
4. 사무직원: 제2직능 수준 필요
5. 서비스 勤勞者 및 商店과 市場販賣 勤勞者: 第2職能 水準 必要
6. 農業 및 漁業熟練 勤勞者: 第2職能 水準 必要
7. 技能員 및 關聯 技能勤勞者: 第2職能 水準 必要
8. 裝置, 機械操作員 및 組立員: 第2職能 水準 必要
9. 單純勞務職勤勞者: 第1職能 水準 必要
0. 軍 人: 職能水準과 무관하게 設定

(5) 大分類 要約

職業分類의 大分類 項目내용을 概括적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收錄한 情報는 本分類내에 包含된 職業項目 보다 細部的인 說明內容을 代替하려는 것

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 大分類 1. 立法者, 高位任職員 및 管理者(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이 대분류에는 주된業務가 法律과 規則 그리고 政府政策을 決定, 樹立하고 監督하며, 政府를 代表, 代理하거나 企業, 團體 또는 部署의 政策을 企劃, 지시 조정하는 職務를 遂行하는 職業을 分類한다. 이 대분류의 範圍를 정의하는 데는 職務能力水準에 관한 사항은 使用되지 않았으며, 專門分野의 差異와 企業 및 組職形態의 差異를 反映하여 3개의 중분류와 8개의 소분류, 34개의 세분류 및 78개의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2. 專門家(Professionals)

이 대분류에는 주된 業務가 物理 및 生命科學, 社會科學 및 人類學 분야에서 높은水準의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務를 遂行하는 職業을 分類한다. 주된 業務는 蓄積된 기존의 知識을 增加시키고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科學的, 藝術的 概念과 理論을 應用하며, 體系의인 방법으로 전문한 事項을 教育시키는 業務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되는 대부분의 職業은 第4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의 差異 및 結合된 業務의 差異를 反映하여 4개 중분류, 18개의 소분류, 60개의 세분류, 240개의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3. 技術工 및 專門家(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이 대분류에는 주된 業務가 하나이상의 物理 및 生命科學 分野 또는 社會科學 및 人間學 分野의 技術的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業을 包括한다. 주된業務는 위에 언급한 分野에서 概念 및 실제적인 方法의 應用에 관련된 技術的인 作業을 遂行하며, 特定教育水準에 있는 자를 教育시키는 업무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되는 대부분의 職業은 第3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하며, 專門分野의 差異 및 結合된 業務의 差異를 反映하여 4개의 중분류, 21개의 소분류, 74개의 세분류 및 223개의 세세분류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4. 事務職員(Clerks)

X. 標準分類의 體系와 그 變遷

이 대분류에는 주된 業務가 情報를 組職하고 保管하며, 計算하고 檢索하는데 필요한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業을 包含한다. 주된業務는 비서업무, 워드프로세서 및 기타 事務器機 操作, 숫자자료의 記錄 및 計算을 遂行하며, 대체적으로 우편 업무, 화폐취급 活動 및 豫約業務에 關聯하여 많은 顧客을 對象으로 하는 事務的인 任務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되는 대부분의 職業은 第2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의 差異 및 결합된 業務의 差異를 反映하여 2개의 중분류, 7개의 소분류, 23개의 세분류 및 63개의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5. 서비스 勤勞者 및 商店과 市場販賣 勤勞者(Servic Workers and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이 대분류에는 주된 業務가 個人的이고 保護的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商店이나 市場에서 物件을 販賣하는데 필요한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業을 포함한다. 주된業務는 여행, 가사, 조리, 시중, 個人 및 財產의 保護와 法律 및 秩序의 維持 또는 商店이나 市場에서 商品販賣와 關聯된 서비스를 制空하는 業務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된 대부분의 第2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와 差異에 따른 業務의 差異를 反映하여 2개의 중분류, 9개의 소분류, 24개의 세분류 및 76개의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6. 農業 및 漁業熟練 勤勞者(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이 대분류에는 業務가 農產物, 林產物 및 水產物의 生産에 필요한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業을 包括한다. 주된業務는 作物栽培, 동물사육 및 狩獵, 漁業 및 養殖業, 育林業 및 伐木, 특히 市場指向性 農業 및 漁業 勤勞者의 경우에는 購買者, 購買組職 또는 市場에 生産品을 販賣하는 業務로 구성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되는 대부분의 職業은 第2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의 差異 및 結合된 業務의 差異, 市場 指向성과 自給自足 農業 및 漁業 勤勞者間의 差異를 反映하여 2개의 중분류, 6개의 소분류, 17개의 세분류 및 53개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7. 技能員 및 關聯 技能勤勞者(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이 대분류에는 業務가 最終 生産品의 特性과 使用目的, 모든 단계의 生産過程, 使用되는 材料 및 道具를 理解하는 熟練作業 또는 手工藝의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業을 包含한다. 주된業務는 原材料의 抽出, 建物 및 기타 構造物의 建設, 手工藝品 및 각종 製品의 製造業務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되는 대부분의 職業은 第2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의 차이에 따른 業務의 差異를 反映하여 4개의 中분류, 16개의 小분류, 70개의 세분류 및 376개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8. 裝置, 機械操作員 및 組立員(Plant and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s)
 이 대분류는 주된 業務가 大規模的이고 때로는 高度의 自動化된 産業用 機械 및 裝備를 操作하는데 必要한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職業을 包含한다. 주된 業務는 自動車 및 走行 自動裝置와 採鑛, 加工 및 生産機械와 장비를 操作하거나 또는 部分品을 가지고 製品을 組立하는 業務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에 包含되는 대부분의 職業은 第2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의 차이에 따른 業務의 差異를 反映하여 3개의 中분류, 20개의 小분류, 69개의 세분류 및 400개 세세분류 項目으로 區分되었다.
- 大分類 9. 單純勞務職 勤勞者(Elementary Occupations)
 이 대분류에는 수지工具의 使用을 包含하여 대부분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要求되고, 거의 制限된 개인적 創意와 判斷만을 必要로 하는 業務 遂行할 수 있는 知識과 經驗이 要求되는 職業을 包括한다. 주된業務는 노상에서의 商品판매, 청소, 수위 및 財産經費, 鑛業, 農業 및 漁業, 建設 및 製造業 분야에 從事하는 肉體勞動 勤勞者의 業務로 構成된다. 이 대분류상 대부분의 職業은 第1水準의 職務能力을 必要로 하며 專門分野의 差異에 따른 業務의 相異性을 反映하여 3개의 中분류, 10개의 小분류, 25개의 세분류 및 58개의 세세분류 項目으로 구

분되었다.

○ 大分類 10. 軍人(Armed Forces)

軍隊는 軍補助 業務를 從事者와 現在 軍복무에 從事하는 자로 構成되며, 지원 또는 義務服務 與否를 不問하며 民間雇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集團員이다. 國家의 要請에 따라 特定期間 軍事訓練이나 기타 服務에 登錄된 징집병을 포함하여 陸軍, 海軍, 空軍 및 기타 軍服務에 定規要員을 包含한다. 國防問題와 關聯된 政府企業에 雇傭된 民間人, 警察(憲兵 이의), 稅關員 및 國境 警備隊 또는 기타 무장 民間服務者, 國家의 要請에 따라 短期間 軍事訓練 또는 再訓練을 위해 일시적으로 傭된 자 및 현역에 있지 않는 豫備軍은 除外된다.

대분류의 範圍를 定하는 職務能力에 關한 事項은 使用되지 않았다.

(6) 分類體系 및 構造

금번 改正 職業分類에서 채택한 概念的 接近方法에 따라 分類體系는 10개의 대분류, 28개의 중분류, 116개의 소분류, 397개의 세분류 및 1,567개의 세세분류로 構成되는 階層的 構造를 갖도록 했다.

분류단계별 항목수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8	34	78
2. 전문가	4	18	60	240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21	74	223
4. 사무직원	2	7	23	63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2	9	24	76
6.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2	6	17	53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4	16	70	376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	20	69	400
9. 단순노무직 근로자	3	10	25	58
0. 군 인	1	1	1	
계	28	116	397	1,567

〈附 錄〉

1. 統 計 目 錄

2. 參 考 圖 表

여 백

1. 統計目錄

1. 中央行政機關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公務員總調查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事項：人的事項，學歷，資格，兵役 등 — 任用事項：採用，經歷，昇進，教育訓練，賞罰 등 — 厚生福祉：報酬，住宅，家族，福祉施設 등 	5年	公務員統計	總務處 人事企劃課
科學技術研究活動調查	一般統計	研究開發活動遂行方法，研究開發活動部署從事人員(年齡別，專攻別，學位別)，自體使用研究，開發費의 費目別現況 등	年	科學技術研究開發活動調查報告書	科學技術處 技術調查課
環境污染實態報告	一般統計	水質污染，大氣中 二酸化黃測定	月	韓國環境年鑑	環境處 大氣制度課
排出施設業務處理現況	一般統計	排出業所現況，業種別 大氣排出業所現況，業種別 廢水排出業所現況，가스·煤煙·惡臭 및 騒音·振動 排出施設現況	分期	韓國環境年鑑	環境處 電算統計擔當官
環境污染度自動測定	一般統計	測程機에 의한 大氣污染度測定	月	韓國環境年鑑	環境處 電算統計擔當官
海水分析結果報告	一般統計	水銀，鹽分，亞鉛 등 18個項目	分期	韓國環境年鑑	環境處 海洋保全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廢水排出施設調查	一般統計	業所形態, 廢水排出水域 區分, 廢水排出量, 廢水 處理方法 및 處理能力, 廢水排出施設의 設置現況	年	廢水排出施設調查結果報告書	環境處 廢水管理課
産業廢棄物排出量 및 處理量調查	一般統計	特性有害物質, 一般産業 廢棄物, 廢油, 廢合成樹脂의 排出量 및 處理量	年	韓國環境年鑑	環境處 産業廢棄物課
韓國都市年鑑資料調查	一般統計	行政區域面積, 人口, 上下水道施設, 住宅, 公園, 橋梁, 道路 등	年	韓國都市年鑑	內務部 地域政策課
火災發生總括表	一般統計	火災原因, 場所, 保險加入與否, 消防施設 活用狀態 등	月	火災統計年鑑	內務部 防 護 課
住民所得推計	一般統計	行政區域內의 모든 生産活動에 의하여 發生한 附加價值額을 生産接近方法에 의해 推計	年	未發刊	內務部 地域經濟課
地籍統計	一般統計	地籍公簿 登錄地에 의한 行政區域別 面積	年	地籍統計	內務部 地籍課
地方稅 및 稅外收入徵收實績	一般統計	— 地方稅 徵收 狀況: 稅源別 調整額·徵收額·不納缺損額 — 稅外收入徵收實績: 會計別 豫算額·目標額·調整額·徵收額, 地方稅外 收入源別 實績, 要因別 稅外 收入	月	地方稅政年鑑 稅外收入年鑑	內務部 公企業課 內務部 稅制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地方稅表作成報告	一般統計	取得稅, 登錄, 免許, 住民財產稅 등 13種	年	地方稅政鑑 年鑑	內務部 稅制課
國立公園管理現況	一般統計	公園入場者 및 入場料現況, 遭難, 其他 事故發生現況	分期	未發刊	內務部 自然公園課
出入國者統計	一般統計	內·外國人, 在外國人的 出·入國者, 上陸許可者	月	出入國 管理統計 年報	法務部 記錄管理課
出入港航空機乘務員統計報告	一般統計	國籍別 出港 航空機數 및 入港 航空機數, 出入港時 乘務員數	月	出入國 管理統計 年報	法務部 入國審查課
出入港船舶船員統計報告	一般統計	國籍別 港口別 船舶 및 船員數	月	出入國 管理統計 年報	法務部 入國審查課
滯留外國人統計	一般統計	國籍 및 滯留資格別 居留外國人, 地域 및 國籍別 居留外國人, 出入國管理法 違反者 處理現況 등	月	出入國 管理統計 年報	法務部 滯留審查課
教育統計調查	一般統計	學校數, 學級數, 學年別 學生數, 教員數 등	年	教育統計 年報	教育部 統計分析室
學生身體檢查統計報告	一般統計	體格, 體質, 體力檢查 結果	年	教育統計 年報	教育部 義務教育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文化享受實態調查	一般統計	學歷別, 年齡別, 新聞 購讀量, 讀書量 등	3年	文化享受實態調查報告	文化部課
文化藝術人實態調查	一般統計	性, 年齡, 學歷, 住居形態 生活水準, 主要活動分野 創作作品數, 데뷔方式, 데뷔以後 活動期間 등	3年	文化藝術人實態調查報告	文化部課
國民生活體育參與實態調查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體育活動參與要因 및 諸般與件 - 體育活動參與類型 및 要求水準把握 - 體育에 대한 價値 및 意識分析 - 體育政策 및 體育風土에 대한 國民의 全般的인 態度調查 등 	3年	國民生活體育參與實態調查	體育青少年部生活體育課
農業總調查	指定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家事業體調查: 農家, 農家人口, 農耕地, 作物, 家禽 및 家畜, 農機具, 文化施設 등 - 地域調查: 地域 概況, 農業生產基盤, 經濟與件 	10年	農業總調查報告	農林水產部農產統計擔當官
農家經濟調查	指定統計	農家の 概況, 耕地面積, 收入 및 支出에 관한 事項	月	農家經濟統計年報	農林水產部流通經濟統計擔當官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農產物生產費調查	指定統計	논벼, 보리 등 主要 17個 作物의 經營耕地, 植付地, 生産量 및 種苗費, 肥料費, 農藥費, 營農 光熱費, 農機具費, 畜力費, 勞力費, 土地用役費 등	年	農家經濟統計年報	農林水産部 流通經濟統計擔當官
作物統計調查	指定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標本調査 : 面積 및 논벼, 보리, 밀, 감자, 마늘, 고추, 배추 등의 生産量 — 行政調査 : 옥수수, 조 등 29種의 生産量 	年	作物統計	農林水産部 農産統計擔當官
農業基準統計調查	指定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耕地에 관한 事項 : 耕地面積, 耕地規模別 面積 — 農家에 관한 事項 : 專·兼業別 業態別 耕地規模別 農家 — 農家人口에 관한 事項 : 性, 年齡, 就業與否, 學歷 등 	年	農林水産統計年報	農林水産部 農産統計擔當官
家畜統計調查	指定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家畜 : 韓肉牛, 豕, 돼지, 닭의 年齡別 性別 飼育 마리수 — 其他 家畜 : 산양, 사슴, 오리 등 13種의 年齡別 性別 飼育 마리수 	分期	家畜統計調查結果 其他家畜統計調查結果	農林水産部 農産統計擔當官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漁業總查	指定統計	漁業事業體 및 漁家に 관한 事項, 漁業從事者 및 水產施設(漁港, 施設規模, 水產物, 流通製造施設, 補給施設 등)에 관한 事項	10年	漁業總調查報告	農林水產部 水產統計官 擔當官
漁業生產高調查	指定統計	海面漁業, 淺海養殖漁業, 內水面漁業, 內水面養殖의 漁獲量 및 價格	月	漁業生產量統計	農林水產部 水產統計官 擔當官
漁業基本統計調查	指定統計	家口の 形態, 漁業家口の 性格, 家口 및 家口員(姓名, 家口主와의 關係, 年齡, 性學歷), 漁業에 從事한 分野, 漁業 以外의 事業에 從事한 分野	年	漁業基本統計調查結果	農林水產部 水產統計官 擔當官
漁家經濟調查	一般統計	沿近海漁業을 經營하는 個人漁家の 家口員 事項, 漁船, 養殖施設 및 漁家の 收入·支出과 資産事項	年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農林水產部 水產統計官 擔當官
農機具(保有)狀況報告	一般統計	耕耘機, 移秧機, 脫穀機, 秋收機 등의 農機具 保有狀況	年	農業機械保有狀況	農林水產部 農業機械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農作物 被害報告	一般統計	農作物 氣象災害被害狀況, 農作物 氣象災害復舊狀況, 農作物 氣象災害復舊費支 援狀況(支援額, 特別 支援 狀況)	年	未發刊	農林水產部 農產課
春夏秋 蠶繭收 刈共販 狀況報 告	一般統計	農家數, 檢查方法別(肉眼, 機械) 檢查量, 等級別收買量	半期	農林水產 統計年報	農林水產部 蠶業特作課
春秋期 掃蠶實 績報告	一般統計	누에씨(原種, 交蠶種) 生産量	半期	農林水產 統計年報	農林水產部 蠶業特作課
原蠶種 普通蠶 生産實 績報告	一般統計	누에의 生産量(普通蠶種, 原 蠶種, 不越年種, 越年種別)	年	未發刊	農林水產部 蠶業特作課
製絲統 計報告	一般統計	生絲生産, 販賣量, 在庫量, 原料使用 在庫量	月	農林水產 統計年報	農林水產部 蠶業特作課
누에飼 育規 模調查 報告	一般統計	家口數, 畝면面積, 養蠶 回數, 掃蠶, 蟻蠶量配布量, 고치生 産量	半期	未發刊	農林水產部 蠶業特作課
園藝作 物加工 現況 調查報 告	一般統計	果實別 菜蔬類製品別 加工 現況 及 原料所要量調查	年	果實 及 菜蔬類 加工現況	農林水產部 菜蔬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促成栽培設施現況 及生產績	一般統計	비닐하우스 施設面積, 栽培面積, 施設方法, 施設別品目別 生産量	年	農林水産統計年報	農林水産部 菜蔬課
양송이 生産報告	一般統計	양송이栽培農家の 生産計劃, 接種面積, 生産量, 收買狀況	月	特用作物生産實績報告	農林水産部 蠶業特作課
配合飼料 生産實績報告	一般統計	配合飼料 工場別 家畜別 用途別 生産實績	月	農林水産統計年報	農林水産部 草地飼料課
屠畜檢查 報告	一般統計	소·돼지의 傳染病 感染調査, 檢查頭數, 合格 및 不合格頭數	月	農林水産統計年報	農林水産部 家畜衛生課
牛乳及乳製品 生産消費狀況	一般統計	飼育頭數, 原乳生産量, 乳製品生産 및 販賣量, 價格	月	酪農關係資料	農林水産部 畜産經營課
農水產物 都賣市場業務報告	一般統計	都賣市場의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半期	未發刊	農林水産部 市場課
糧穀消費量 調查	一般統計	糧穀消費量 및 保有量 糧穀(食糧用)外의 消費量(飲料, 販賣用), 家口員, 外食回數 等	月	農家經濟統計年報	農林水産部 流通經濟統計擔當官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原乳檢査狀況報告	一般統計	納乳牧場數, 原乳檢査量, 原乳合格量, 原乳不合格 內譯	月	未發刊	農林水産部 家畜衛生課
穀價調節 糧穀放實 實績報告	一般統計	穀種別 段量別 地域別 穀價 調節 及 糧穀放出實績	月	農林水産 統計年報	農林水産部 糧穀調查課
果樹實態 調查	一般統計	家口數, 果樹面積, 傾斜 度 灌水施設, 果種別, 品 種別 樹齡別 樹木數, 貯 藏施設, 農機械, 家口員 數	5年	果樹實態 調查報告 書	農林水産部 果樹花卉課
中小企業 實態調查	一般統計	鑛工業等 中小企業體의 年 間生産額 及 出荷額, 原資材 購買狀況 등	年	中小企業 實態調查 報告書	商工部 政策課
機械産業 動向調查	一般統計	品目別 受注, 生産, 販賣, 在 庫量	月	機械産業 動向	商工部 産業機械課
鑛產物生産 量調查	一般統計	鑛山名, 所在地, 操業狀況 鑛物別 生産量	月	에너지 統計年報	動力資源部 鑛山課
民需用炭 及煉炭需 給狀況報告	一般統計	輸送量, 供給量, 貯炭量	月	에너지 統計年報	動力資源部 石炭流通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鑛山災害統計	一般統計	鑛山災害 類型(崩落, 落盤, 가스, 出水, 火藥 등)別 發生件數	月	鑛山災害統計年報	動力資源部 鑛山保安課
에너지總調查	一般統計	産業部門·家計部門·商業 公共部門의 熱設備現況, 電力使用現況, 輸送手段 現況, 熱設備對替現況 및 廢熱利用, 에너지利用器機 現況, 에너지源別 使用量 및 斷熱材 使用現況, 車輛別 保有臺數 및 走行距離, 에너지源別 使用量, 建物の 에너지 使用量	3年	에너지總調查結果報告書	動力資源部 에너지政策課
建築物着工統計	指定統計	建築主, 建築場所, 用途, 構造, 延面積 및 住宅形態 種類, 面積, 戶數, 事業 主體	月	未發刊	建設部 建築計劃課
下水道統	一般統計	處理場, 遊水池 및 配수 펌프場 現況, 普及率, 使用料, 糞尿處理場 現況	年	下水道	建設部 下水道課
上水道統	一般統計	配水, 給水, 動力, 設備, 水道料 및 工事內譯, 年度別 上水道事業 狀況 등	年	上水道	建設部 上水道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道路交通量統計	一般統計	全國 高速 道路·國道·地方道の 地點別 上·下行 時間別 交通量	年	道路交通量統計	建設部 道路管理課
建築許可統計	一般統計	建築許可의 用途別, 構造別, 地域別 延面積 및 棟數	月	建設統計便覽	建設部 建築計劃課
道路 및 橋梁 現況	一般統計	道路種類別, 延長, 橋梁 延長, 橋梁個數	年	道路現況調查	建設部 道路管理課
水門 調查年報	一般統計	降雨日數, 最大日雨量, 最大時雨量, 最高水位, 河川別 流量測定	年	韓國水門調查年報	建設部 河川計劃課
重機 登錄現況	一般統計	官用·自家用·營業用의 所有者別 登錄現況 및 新規·變更·抹消 登錄 現況	月	建設統計便覽	建設部 建設機械擔當官
無許可建築物現況	一般統計	既存 無許可建築物 現況, 新發生 無許可建築物現況	分期	未發刊	建設部 建築行政課
共同住宅居住現況調查	一般統計	共同住宅團地의 一般事項, 住宅管理, 公共文化施設, 附帶 및 福利施設에 관한 事項	3年	共同住宅의 住居現況調查報告書	建設部 住宅政策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建築物統計	一般統計	用途別, 層數別, 地域別 및 面積別 建築物 現況	3年	未發刊	建設部 建築計劃課
土地去來現況	一般統計	用途別, 地目別, 買入者 居住地別 土地去來件數 및 面積	月	土地去來現況	建設部 土地政策課
國民生活實態調查	一般統計	- 1次 調查: 家口 및 家口員에 관한 一般事項, 所得 및 財產에 관한 事項, 家計簿 記入 與否 - 2次 調查: 家口의 月平均收入 및 財產狀況, 家計收入 및 支出現況, 食品消費事項 등	3年	未發刊	保健社會部 生活保護課
國民營養調查	一般統計	- 家口의 食品攝取 및 食生活에 관한 事項: 日別 食事狀況, 食品別 購入價格·購入量, 飲食別 攝取量 등 - 國民健康에 관한 事項: 身長, 體重 등	年	國民營養調查報告書	保健社會部 保健教育課
法定傳染病月報	一般統計	法定傳染病 種類別 發生件數 및 死亡者數	月	急性傳染病統計年報	保健社會部 防疫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醫療機關 實態報告	一般統計	病·醫療院數 및 病室數, 入院, 退院, 外來患者數	半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病院行政課
醫藥品等 生產實績報告	一般統計	醫藥品의 業種別 品目別 效能別 生産量 및 生産費	半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藥務政策課
婦女兒童 保護現況	一般統計	母子 保護施設, 兒童 保護施設	分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兒童福祉課
食品公衆 衛生關係 實態現況	一般統計	公衆衛生業所, 食品接客業所, 製造加工業所 등의 違反件數 및 內容, 行政處分 등	月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衛生管理課
生活保護 實績	一般統計	居宅保護·施設保護 등의 家口數 및 家口員數 現況	分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生活保護課
社會福祉施設 收容者動態 報告	一般統計	社會福祉施設 現況, 養老·不具·浮浪人의 入所 및 退所 現況	分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生活保護課
結核管理 事業實績	一般統計	結核豫防接種, 檢診, 患者發見, 患者登錄, 追後檢查 藥品 및 機資材, 1年間 新規登錄患者治療 動態	月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防疫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慢性病管理事業實績	一般統計	癩病管理事業實績(管理患者現況, 藥品需給現況), 寄生蟲 및 性病管理實績(寄生蟲檢査 및 治療現況, 性病檢診 및 治療實績現況 藥品現況 등)	分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防疫課
家族保健事業實績報告	一般統計	家族計劃登錄現況, 避妊支援事業 및 普及現況, 母子保健登錄 등	分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家族保健課
家庭儀禮準則狀況報告	一般統計	家庭儀禮準則에 대한 啓蒙實績, 法律違反者 措置, 儀禮業所數 등	分期	未發刊	保健社會部家庭福祉課
生活保護對象者調查	一般統計	生活保護對象者 名簿作成, 家口員數, 健康狀態, 職業, 月所得 등	年	生活保護對象者現況分析	保健社會部生活保護課
弗素含有量水質檢査報告	一般統計	弗素含有量, PH, 溫度, 濁度, 大腸菌, 配水量 등	月	未發刊	保健社會部地域醫療課
全國結核實態調查	一般統計	世帶記錄表作成, X線檢診 細菌檢査, 早배클린反應 檢査 등	5年	全國結核實態調查結果報告	保健社會部防疫課
全國寄生蟲感染實態調查	一般統計	地域別 年齡別 學歷別 寄生蟲感染現況, 年間 驅蟲劑 服用回數 現況	5年	全國寄生蟲感染實態調查報告書	保健社會部保健教育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國際檢疫狀況	一般統計	入港船舶 及 上陸人員, 防疫措施, 各種 手數料, 檢疫區域內 傳染病發生 及 死亡	分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 地域醫療課
保健所 及 保健支所現況	一般統計	人力現況 及 活動狀況(保健教育, 母性保健, 家族計劃診療業務 등)	分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 地域醫療課
助產員教育現況	一般統計	教育機關別 助產教育生 現況, 分娩實績	年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 醫療政策課
不正醫療業者團束現況	一般統計	不正醫療業者 摘發 及 處理狀況(告發, 閉鎖)	分期	未發刊	保健社會部 醫療政策課
藥事監視狀況	一般統計	醫藥品, 鄉精神性 醫藥品, 化粧品, 衛生用品, 醫療用醫藥品, 監視件數, 違反件數, 處分內容	分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 藥務政策課
婦女職業輔導運營業況	一般統計	入所 及 退所人員, 就業人員	半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 婦女福祉課
婦女指導事業活動實報	一般統計	새마을 婦女會 運營狀況 及 相談員 活動狀況	分期	保社統計年報	保健社會部 婦女福祉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女性會館 運營狀況	一般統計	技術教育生 現況 教養 事業實績	半期	未發刊	保健社會部 婦女福祉課
口腔保健事業 現況	一般統計	口腔保健教育回數 及 人員 拔齒, 스케일링, 應急處置 件數 及 人員 등	分期	未發刊	保健社會部 地域醫療課
社會福祉 設施從事者 現況	一般統計	老人·兒童·障礙人 福祉施設 數 及 從事者 現況(事務職, 醫師, 看護師 등)	半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福祉支援課
少年, 少女 家長世帶 現況	一般統計	年齡別 現況, 在學 及 學歷 別現況, 就業現況, 結緣現況, 住居形態	分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兒童福祉課
兒童相談 所相談 現況	一般統計	保護兒童發生 及 相談措置 現況, 相談內容別 兒童數	分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兒童福祉課
患者調查	一般統計	外來患者(性, 年齡, 住所, 疾 病分類, 診療費支拂方法) 及 退院患者(年齡, 住所, 疾病 分類, 退院形態, 診療費 支 拂方法)에 관한 사항	2年	患者調查 報告書	保健社會部 統計擔當官
國內入養 現況	一般統計	入養兒童 現況(年齡, 性), 養父母現況(年齡, 職業, 住 所, 入養動機)	半期	保社統計 年報	保健社會部 兒童福祉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障礙人實態調查	一般統計	家口員에 관한 一般事項, 障礙有無, 經濟狀態에 관한 事項, 障礙程度(肢體障礙, 視覺障礙, 聽覺障礙, 言語障礙, 精神遲滯)에 관한 事項 등	5年	障礙人實態調查	保健社會部再活課
事業體實態調查 勞働實態調查	指定統計	從事員에 관한 事項(從事上地位別 現況), 勤勞者의 性別 年齡別 現況, 月給與에 관한 事項	年	事業體實態調查報告書	勞働部統計擔當官
每月勞働統計調查	指定統計	常傭勤勞者에 관한 事項, 勤勞者 種類別 性別 勤勞者數 勤勞日數, 實勤勞時間數, 賃金總額, 特別給與總額, 臨時 및 日傭勤勞者에 관한 事項	月	每月勤勞統計調查報告書	勞働部統計擔當官
職種別賃金調查	指定統計	勤勞者 個人調查, 性, 年齡, 婚姻與否, 勤務形態, 學歷, 職種, 職級, 技術技能程度, 勤務年數, 經歷年數, 勤務日數, 勤勞時間(正常 및 超過勤勞時間), 月給與(定額給與, 超過給與)額, 年間特別給與額	年	職種別賃金調查報告書	勞働部統計擔當官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勞動力 流動實態 調查	一般統計	從事員技能程度別現況, 入 ·離職者에 관한 個別的인 事項(性, 婚姻狀態, 年齡 從 事上의 地位, 學歷, 專攻分 野, 職種 등)	半期	勞動力 流動實態 調查報告 書	勞動力 統計擔當官
雇傭展 望調查	一般統計	職種別 技術系勤勞者 及 技 能系勤勞者 現員, 不足人員· 減員豫定人員, 公認資格證 所持 及 資格證 未所持 技 能勤勞者數	半期	雇傭展 望調查報告 書	勞動力 統計擔當官
產業災 害調查	一般統計	災害誘發者 人的 事項, 災害 者數, 災害 原因, 發生形態, 部位, 障害種類	隨時	勤勞統計 年鑑	勞動力 安全企劃課
事業類 保險適 用狀況 徵收報 告	一般統計	事業의 種類別 新規適用 事 業場數, 削減事業場數, 產災 保險 徵收決定, 受納額 及 返還金 支給額	分期	勞動統計 年鑑	勞動力 保險徵收課
企業體 勞動費 用實態 調查	一般統計	給與支給 延人員, 現金 給與, 退職金, 募集費, 教育訓練費 法定福利費, 法定外福利費, 其他 勤 勞費用	年	企業體勞 動費用調 查報告書	勞動力 統計擔當官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勤勞者健康診斷實施狀況報告	一般統計	一般, 特殊檢診別 對象勤勞者 及 疾病者 現況, 產業別 一般 疾病, 職業性 疾病別 現況	年	勤勞統計年鑑	勞 動 部 產 業 保 健 課
休廢業者失職現況報告	一般統計	產業別 休·廢業事業體의 勤勞者數, 休·廢業發生數, 失職者數	分期	未 發 刊	勞 動 部 雇 傭 對 策 課
產業災害保險給與支報	一般統計	業種別 給與種類別 受給者數 及 件數, 產業災害保險給與 支給金額, 障礙給與 支給狀況	月	勞 動 統 計 年 鑑	勞 動 部 災 害 補 償 課
醫療機關別支報	一般統計	療養患者數, 1日平均診療費 (入院, 通院), 療養日數	分期	未 發 刊	勞 動 部 災 害 補 償 課
事業體賃金實態調查	一般統計	一 事業體調查: 資產狀態, 經營狀態, 勤勞移動에 관한 事項 一 個人調查: 姓名, 組合員 給與, 性, 婚姻狀態, 學歷, 勤續年數, 經歷年數, 職種, 技術, 技術程度, 賃金 定算基準, 賃金基準額, 月給與額, 年間特別 給與額	年	賃金實態分析結果報告書	最 低 賃 金 審 議 委 員 會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單身勤勞者生計費查調查	一般統計	單身家口의 家計簿 記帳方式에 의한 所得과 支出의 項目別調查, 月間 家計收支 總括表, 主要 品目 消費 및 在庫量, 住居에 관한 事項(所有形態, 집세額)	半期	勤勞者生計費查調查結果報告	最低賃金審議委員會
交通部運輸實績報告	一般統計	輸送手段(鐵道, 地下鐵, 公路, 海運, 航空)別 旅客 및 貨物輸送實績	月	交通統計年報	交通部電算擔當官
自動車免許狀況	一般統計	市·道別 營業用 自動車 免許狀況	分期	交通統計年報	交通部地域交通課
自動車登錄現況查	一般統計	自動車 車種別(乘用車·버스·貨物車·特殊車), 用途別(官用·自家用·營業用), 크기別(排氣量·積載量)登錄臺數	月	交通統計年報	交通部車輛課
觀光客移動狀況報告	一般統計	外來 觀光客 移動狀況(觀光地, 內國人, 外國人)	分期	未發刊	交通部國民觀光課
月間民間航空運航統計	一般統計	航空社, 路線, 運航回數, 旅客, 手荷物 등의 運搬 狀況	月	交通統計年報	交通部航空政策課
海難事故現況	一般統計	海難審判處理現況, 海難事故(種類別·船種別·船舶 臺數別·事故原因別)現況 등	月	交通統計年報	交通部中央海難院審判書記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觀光客利用(指定)施設外國人觀光客利用人員及外貨獲得報告	一般統計	觀光客 利用施設の 外國人觀光客 利用人員 及 外貨獲得實績	半期	交通統計年報	交通部觀光施設課
立利用望動態報告	一般統計	觀光立望 利用者數 及 利用實績, 附帶施設利用人員	月	交通統計年報	交通部觀光施設課
高速輸送実績報告	一般統計	路線別, 業種別, 總運行回數, 總輸送人員	月	交通統計年報	交通部旅客課
航空部門外貨收入實績	一般統計	旅客收入, 貨物收入, 取消料收入, 販賣代行收入, 其他 雜收入	月	未發刊	交通部航空政策課
倉庫業許可狀況報告	一般統計	倉庫種類別, 業體數, 許可棟數, 面積 現況	半期	交通統計年報	交通部流通政策課
自動車輛停留場許可狀況報告	一般統計	自動車輛 停留場 許可, 閉鎖・取消件數	半期	交通統計年報	交通部旅客課
國際郵件利用物數及取扱統計	一般統計	國家別 利用物數 (國家別發送便別 郵便物 種別 發送及 到着郵便物數), 郵便囊取扱狀況(國家別 發送便別郵便囊, 種類別 發送, 到着及 返送郵便囊 及 寸)	年	遞信統計年報	遞信部國際郵便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郵便物統計	一般統計	國內接受郵便物 및 國際接受郵便物, 總接受, 郵便物의 取扱物數 및 料金 및 配達, 中繼郵便物	月	遞信統計年報	遞信部 郵政企劃課
郵便總查	一般統計	通常郵便利用實態, 小包郵便利用實態, 接受郵便物利用實態	3年	郵便總調查結果報告書	遞信部 郵政企劃課
物品增減及現在額總計	一般統計	品種別 前年度末 現在額, 當該年度 現在額	年	物品增減及現在額總計書	調達廳 物資管理課
定期財物調查報告	一般統計	在庫品, 使用品, 品目別 財物調查, 機關別 物品 需給 및 物品增減現況	年	未發刊	調達廳 物資管理課
人口總查	指定統計	全數調查項目(人口에 관한 事項, 家口에 관한 事項, 住宅에 관한 事項) 標本調查項目(人口移動에 관한 事項, 經濟活動, 出產力에 관한 事項)	5年	人口 및 住宅總調查報告書	統計廳 人口統計課
住宅總查	指定統計	外壁 및 지붕에 使用된 材料, 建坪과 垜地面積, 總房數와 住居家口數, 建築時期, 附帶施設	5年	人口 및 住宅總調查報告書	統計廳 人口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人口動態調查	指定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出生：申告年月日，現居住地，性別，出生年月日 등 － 死亡：申告年月日，現居住地，性別，死亡年月日 등 － 婚姻：申告年月日，現居住地，年齡，婚姻種類 등 － 離婚：申告年月日，現居住地，年齡，離婚事由 등 	月	人口動態統計死亡原因統計	統計廳 人口統計課
經濟活動人口調查	指定統計	性別，年齡，配偶者，教育程度，活動狀態，就業與否，就業時間 및 轉職希望 求職經路，求職期間，前職有無 및 失業動機，職業，從事上의 地位，事業體의 從業員 規模，所得 등	月	經濟活動人口年報	統計廳 社會統計課
產業調查	指定統計	鑛業，製造業，電氣，가스水道業을 營爲하는 事業體의 工場名，所在地，操業日數，生產額，有形固定資產，年間出荷額，出荷量 生產費 등	5年	產業總調查書 1	統計廳 產業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都市家計 調 查	指定統計	家口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項, 家口構成에 관한 事項	月	都市家計 年 報	統 計 廳 社 會 統 計 課
消費者物價 指 數	指定統計	470個 品目에 대하여 指定 된 品質規格品이 實際로 去 來되는 經常價格	旬期	消費者物 價(月報)	統 計 廳 流 通 統 計 課
서비스業 統 計 調 查	指定統計	都小賣業·飲食宿泊業 事業體 의 經營組織·營業形態 등 8 個 項目, 都·小賣 主要 取扱 商品·販賣額 등 12個 項目	5年	都小賣業 總 調 查 報 告 書	統 計 廳 流 通 統 計 課
鑛 工 業 統 計 調 查	指定統計	鑛業, 製造業, 事業體의 經 營組織, 從業員數, 資本金, 年間 給與額, 在庫額, 年間 主要生產費 등	年	鑛 工 業 統 計 調 查 報 告 書	統 計 廳 產 業 統 計 1 課
國 富 統 計 調 查	指定統計	國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 把握을 위해 政 府, 法人, 個人企業, 家計部門別 로 有形固定資產(建物,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 機具 및 備品, 建 設假計定, 大動·植物·家計資 產), 在庫資產(原材料 半製品 및 加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 藏品 등)과 對外純資產을 調查	10年	國富統計 調 查 報 告 書	統 計 廳 統 計 基 準 課 農 林 水 產 部 農 產 統 計 擔 當 官 韓 國 銀 行 調 查 2 部 投 入 產 出 課 韓 國 產 業 銀 行 調 查 部 設 備 投 資 調 查 室 中 小 企 業 銀 行 調 查 部 調 查 室 統 計 課 國 民 銀 行 調 查 部 統 計 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鑛工業動態調查	指定統計	766個 主要品目에 대한 物 量調查(製品, 原材料, 雇傭 및 給與, 月中 操業日數), 金額調查(月初在庫額, 生產 額, 出荷額, 月末在庫額, 雇 傭 및 給與)	月	産業生產 統 計	統 計 廳 産業統計 2課
建設業統計調查	指定統計	事業體 現況, 雇傭 및 給與 工事費用, 年初年末 在庫 額, 建設工事額 內譯, 有形 固定資產, 主要建設裝備 保 有臺數	年	建設業 統計調查 報告書	統 計 廳 産業統計 1課
建設受注統計調查	指定統計	國內外別 發注者別 工種別 建設工事受注額, 自己工事計 劃額, 發注者의 原資材支給 計劃額	月	建設受注 統 計	統 計 廳 産業統計 2課
運輸業統計調查	指定統計	運輸業 事業體의 概況, 裝備 保有現況, 年間實績, 雇傭 및 給與, 運輸收入 및 費用, 有形固定資產, 建設假計定	年	運輸業 統計調查 報告書	統 計 廳 産業統計 1課
總事業體統計調查	指定統計	全産業 事業體에 관한 事業 體名, 所在地, 事業場 面積, 事業의 種類, 從業員數 등 一般項目	5年	總事業體 統計調查 報告書	統 計 廳 流通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雇傭構造調查	指定統計	經濟活動狀態(就業與否 등) 8個項目	3年	雇傭構造調查報告書	統計廳 社會統計課
都小賣業統計調查	指定統計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體의 營業形態, 賣場面績, 從事者 數, 月給與額, 購入額, 在庫 額, 販賣額	年	都小賣業統計調查報告書	統計廳 流通統計課
家口消費實態調查	指定統計	家計收支에 관한 事項, 年間 所得, 家口耐久財, 貯蓄負債 에 관한 事項	5年	家口消費實態調查	統計廳 社會統計課
生產能力 및稼働率調查	一般統計	19個 主要品目の 月間生產 能力, 月間生產實態, 設備保 有狀態 등	月	產業生產統計	統計廳 產業統計 2課
人口動態標本調查	一般統計	出生·死亡·婚姻·離婚에 관한 性別 年齡別 發生年月日 등	月	未發刊	統計廳 人口統計課
統計活動現況調查	一般統計	統計作成의 目的 및 調查 事項과 統計人力現況	2年	韓國統計調查現況	統計廳 統計調整課
人口移動調查	一般統計	住民登錄簿上 每月末 人口 및 家口, 轉入·轉出, 轉入事 由, 移動前 居住地別 轉入, 職權處理, 出生死亡 등	月	人口移動統計年報	統計廳 人口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新規登錄事業體報告	一般統計	新規登錄事業體別 所在地 從業員數·生產品名 등	月	未發刊	統計廳 調查管理課
社會統計調查	一般統計	人口, 所得, 消費, 雇傭人 力, 教育, 保健, 住宅, 環 境, 社會, 公安 등에 관한 事項	年	韓國의 社會指標	統計廳 社會統計課
機械受注統計調查	一般統計	設備用 機械類 製造業體의 需要者別·機種別 受注額, 機種別 販賣額, 製造名, 需 要者 事業體名, 機種分類, 需要者分類, 受注額, 受注 數量	月	機械受注 統計	統計廳 產業統計2
景氣綜合指數	一般統計	先行·同行·後行景氣綜合指 數의 作成	月	景氣綜合 指數	統計廳 統計分析課
都小賣業動態調查	一般統計	月間 販賣額, 月末 在庫 額, 從業員數 등 11個 項目	月	韓國統計 月報	統計廳 流通統計課
財政收支調查	一般統計	— 地方政府部門: 構造別 建物 延面積, 建物評價 額,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狀況, 水道事業 特 別會計	年	未發刊	統計廳 統計分析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서비스業 統計調查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公立學校部門：構造別 建物 延面積 및 建物評 價額,事務用 自動車 保有 現況 一 私立學校部門：歲入, 歲 出, 決算狀況 事業體의 基本項目 및 建設, 土地, 車輛運搬具 등의 設備 投資, 營業收益, 移轉收入, 人件費, 賃借料	年	서비스業 統計調查 報告書	統計廳 流通統計課
地域所得 統計	一般統計	14個市·道內 總生產의 經濟 活動別 分類 및 要素所得의 區分으로 推計	年	地域所得 統計年報	統計廳 統計分析課
歲入徵收 總報告書	一般統計	科目別 歲入徵收 現況 등	月	國稅統計 年報	國稅廳 徵稅課
貿易統計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輸出：輸出者, 品名 및 規格, 重量 및 單位, 目 的國 등 12個項 一 輸入：輸入者, 品名 및 規格, 重量 및 單位, 摘 出國 등 18個項 	月	貿易統計 月報 貿易統計 年報	關稅廳 資料擔當官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犯罪分析統計	一般統計	各 搜查機關에서 處理한 犯罪事件에 대한 犯罪統計原表(犯罪發生檢舉類型, 犯罪者 教育程度, 犯罪發生場所, 犯罪者 轉科別, 少年犯罪原因別 등)	分期	犯罪分析統計	大檢察廳 犯罪分析課
山林基本調查	一般統計	所有 및 所管別 林野面積, 齡級別 立木蓄積	年	林業統計要覽	山林廳 課
丕立栽培事業生產實績報告	一般統計	接種材積, 現存材積, 乾丕立生產量	分期	林業統計要覽	山利廳 林用課
丕폴리製品生產 및 輸出實績報告	一般統計	丕폴리製品 生產業體名, 生產製品名, 木材使用量 및 製品生產實績과 輸出實績	年	未發刊	山利廳 林用課
製材施設現況 및 生產實績報告	一般統計	製材事業體의 製材施設現況, 生產能力, 從業員數, 原木消費量, 製品生產量, 製材率	年	林業統計要覽	山利廳 林用課
木林生產供給狀況報告	一般統計	伐採許可量, 面積, 材積, 申告量, 生產量, 供給量, 販賣量, 在庫	月	林業統計要覽	山林廳 經營計劃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林山額 調 查	一般統計	用材, 竹材, 燃料, 農用資材, 種實, ㄇㄨ, 樹脂 生產量 ㄨ 生產額	年	林業統計 要覽	山林 林政 廳課
觀賞樹 施業狀 調 查	一般統計	觀賞樹의 齡級別 日樹·觀賞樹·施業團地 現況	年	林業統計 要覽	山造 林林 廳課
山林被害 ㄨ 不正林 產物團東 狀況報告	一般統計	山林被害狀況, 山火被害 原因別 發生狀況, 事件處理狀況, 被害額, 被害面積	月	林業統計 要覽	山保 林護 廳課
養苗始業 實態調查	一般統計	樹種別 苗齡, 栽培量, 生產主體別 成苗·幼苗 調查	半期	未發刊	山造 林林 廳課
砂防事業 報告書	一般統計	地域別 砂防事業量, 財源別 設計金額, 工種別 所要資材別 設計數量 ㄨ 金額, 地域別 砂防事務 實行量 財源別, 投資額, 工種別 資材別 需給數量 ㄨ 金額	半期	林業統計 要覽	山治 林山 廳課
民有林造林 實績報告	一般統計	樹種別 財源別 所有別 造林面積 ㄨ 本數	年	林業統計 要覽	山造 林林 廳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造林活着狀況報告	一般統計	資金別(補助, 融資, 地方費, 自費) 植栽本數, 活着本數, 生存本數	年	未發刊	山林廳 造林課
밭收穫豫豫想量調查	一般統計	밭의 齡級別 收穫量算出因子 調查(樹齡別 標準地帶 及 本數調查, 송이當 重量調查)	年	林業統計要覽	山林廳 林政課
全國山林實態調查	一般統計	산林的 所有別 所管別 地種別 林野別 林相別 齡級別 林野面積 及 立木蓄積, 林木成長量 及 成長率	10年	全國山林實態調查報告書	山林廳 資源管理課
短期所得林產物生產實態調查	一般統計	山果實·산나물·特用樹·纖維原料의 栽培面積·生產量·販賣量·販賣金額	隨時	短期所得林產物生產實態調查	山林廳 林政課
水產製造業生產高調查	一般統計	水產加工品(102種)의 生產量 及 金額	月	農林水產統計年報	水產廳 製造課
規制對象漁業漁獲量報告	一般統計	韓一日漁業 共同規制水域內의 漁種別 生產量, 漁業의 種類, 出漁隻數, 年操業日數, 總投網日數	月	未發刊	水產廳 國際擔當官
海苔건홍 및 生産動向報告	一般統計	海苔건홍設置計劃 及 實績, 生産計劃量, 生産實績, 單價	月	未發刊	水產廳 增殖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旅客事故統計	一般統計	運轉事故 及 運轉障礙 分析(原因, 時間, 曜日, 列車種別), 死傷者 原因分析(旅客 及 職員 死傷者 數), 運轉事故 被害額(事故種別, 人命, 車輛) 等	月	鐵道統計年報	鐵道廳調查課
貨物事故統計	一般統計	事故 類型別 貨物 種類別 事故數	月	鐵道統計年報	鐵道廳運輸計劃課
定期旅客船落島補助航路輸送實績	一般統計	就航 計劃, 旅客(貨物) 輸送	月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內航課
國際旅客(報立立)輸送實績	一般統計	旅客・車量・貨物・콘테이너輸送實績	月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振興課
貨物輸送實績	一般統計	地域別 船舶 入出港 現況, 地域別 貨物 入出港 現況, 沿岸船舶 及 貨物 入出港 現況	月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港務課
港灣裝備保有現況	一般統計	港灣運送 事業船(船種別・噸數別) 及 附帶事業船 保有現況, 陸上荷役裝備保有現況	分期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港務課
入港船舶噸數別統計	一般統計	噸數別(外航船, 沿岸船) 入港 船舶	年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港務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登錄船舶統計 (地方廳別)	一般統計	船質別 屯數別 用途別 船齡別 登錄船舶	月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 船舶課
運航免許船舶統計	一般統計	免許船舶의 船種別 屯數別 國籍登錄船 受 國籍取得條件, 事業者別 船齡別 現況	月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 外港課
海技士免狀 受 船員手帖發給統計	一般統計	海技士免許證 受 船員手帖新規 發給 受 無效·實效件數, 免許證 受 船員手帖在庫量	月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 船員課
外貨收入 實績	一般統計	港灣運送事業 受 港灣附帶事業 收入實績, 荷役 收入實績 等	月	未發刊	海運港灣廳 港務課
港灣施設 受 能力現況	一般統計	港灣施設 受 荷役能力 航路標識 現況, 浚渫現況, 海上觀測現況 等	年	海運港灣統計年報	海運港灣廳 企劃課
運轉者 輩出現況	一般統計	運轉者 適性檢查, 運轉免許合格·不合格者	月	交通事故統計	警察廳 交通企劃課
月中交通事故 發生現況	一般統計	死亡者, 負傷者, 財產被害, 交通事故 原因	月	交通事故統計	警察廳 交通安全課
指定文化財 公開觀覽現況	一般統計	指定 受 寺刹文化財 觀覽客, 觀覽料 現況	分期	文化財管理年報	文化財管理局 有形文化財課

2. 地方自治團體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서울市民生活水準 및 意識調查	一般統計	家口員의 特性, 家口員의 一般事項, 文化生活, 家族 및 社會活動, 保健, 公安 秩序, 所得	3年	서울市 社會福祉 指 標	서울特別市 統計擔當官
釜山市車輛 交通量調查	一般統計	調查地點을 通過하는 時間帶別 車種別 臺數	年	車輛交通 量 調查	釜山直轄市 交通企劃課
住民登錄 人口統計	一般統計	人口에 관한 事項(地域別·性別·年齡別 人口數), 世帶에 관한 事項(地域別 世帶現況)	年	住民登錄 人口統計 報告書	서울·부산 시 등 15 개 시·도
地域別 住居生活 實態調查	一般統計	家口員數, 居處의 種類, 文化施設占有形態, 住居家口數, 延建坪 및 垜地面積	年	地域別 住居生活 實態調查 報告書	光州·大田· 忠南·慶北 統計擔當官
慶南道民 生活水準 및 意識調查	一般統計	教育, 環境, 文化, 餘暇, 社會, 保健, 住宅, 所得 등	年	慶尙南道 社會指標	慶尙南道 統計擔當官

3. 指定機關

〈金融機關〉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企業經營分析	一般統計	企業의 經營規模·收益性 活動性·財務構造·生產性등을 分析	半期	企業經營分析	韓國銀行 產業分析課
生產者物價調查	一般統計	896個品目에 대하여 品目別로 生產地 및 集產地를 中心으로 價格調査	旬期	月刊物價	韓國銀行 物價調查課
企業金融實態調查	一般統計	企業資金事情變化·設備投資와 生產動向 및 展望, 輸出動向 및 展望, 企業의 資金需要 變化 및 金融機關의 資金供給變化등	分期	未發刊	韓國銀行 通貨金融課
輸出入物價調查	一般統計	輸出品目 233個 및 輸入品目 178個 대한 輸出·入業體의 契約時點의 價格	月	月刊物價	韓國銀行 物價調查課
都市家計貯蓄市場調查	一般統計	貯蓄 保有 實態 및 貯蓄性向, 種類別 貯蓄實態, 貯蓄動機 및 障礙要因, 地域別·職業別 家計貯蓄現況, 借入金 保有實態, 生活設計와 家計運營, 銀行서비스 및 非現金支給決濟手段等	年	都市家計貯蓄市場調查	韓國銀行 貯蓄企業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通貨金融統計	一般統計	總通貨, 部門別總通貨, 本源通貨, 金融聯關計定, 預金貸出金利 등	月	通貨金融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財政統計	一般統計	國庫金 出納, 貸借對照表, 政府貸出金現況, 國債發行 償還 及 殘額, 稅目別 稅收 實績, 一般會計 歲入金 收納額, 未集中 國庫金 需給額, 決算概要	月	調查統計 月 報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國際收支統計	一般統計	經常收支, 長期 資本收支, 基礎收支, 短期 資本收支, 綜合收支, 金融計定 등	分期	調查統計 月 報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國民計定	一般統計	國內總生產斗 支出, 國民可處分所得斗 處分, 資本調達斗 蓄積, 對外去來, 制度部門別 所得支出計定, 制度部門別 資本調達斗 蓄積 등	分期	國民計定	韓國銀行 國民計定室
產業聯關表	一般統計	一 投入構造調查: 損益計算書, 製造原價報告書, 原材料費 內譯, 기타 間接經費 細部內譯, 製品別 生產內譯, 殘廢物 現況 등	5年	產業聯關 表(延長表)	韓國銀行 國民計定室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資金循環表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品配分 構造調查：HS品目別 使用內譯 - 流通現況調查：品目別 商業마진 및 運輸마진 內譯 <p>韓國銀行, 預金銀行, 保險會社 및 年金等 去來者別 貯蓄·投資 및 金融去來, 政府·企業·個人·海外別 金融去來, 去來者別 金融資產·負債殘額 等</p>	分期	資金循環 動 向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貨幣發行高 調 查	一般統計	貨幣發行殘額, 貨幣發行·還收現況, 未發行貨幣 保有現況, 貨幣製造·廢棄·燒却狀況 等	月	調查統計 月 報	韓國銀行 發 券 課
金融機關 預金統計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貸借對照表：預金種別 實績 把握 - 預金動態月報：預金種別 平殘 및 支給額 調查 	月	調查統計 月 報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外換受給統計	一般統計	經常去來의 外換受入·支給, 項目別貿易外 外換受給, 決濟通貨別 經常外換受給 등	月	外換統計年報	韓國銀行 外換分析課
金融機關有價證券保有統計	一般統計	國債(地方債), 產業金融債券, 證券(外國證券) 등의 保有 現況	月	調查統計月報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金融機關與信狀況調查	一般統計	預金銀行 및 非通貨金融機關의 貸借對照表 및 主要計定 月中 平殘報告書에 의해 金融機關別 與信 및 延滯狀況	月	未發刊	韓國銀行 金融統計課
巨視經濟指標展望調查	一般統計	一點豫測: 實質GNP增加率, 失業率, 消費者物價上昇率, 會社債收益率, 對美·日 換率, 貿易外 收支, 綜合株價指數, 通貨增加率, 經常收支 등 一 確率豫測: 實質GNP增加率, 消費者物價上昇率, 通貨增加率, 經常收支 등	分期	未發刊	金融經濟研究所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企業景氣調查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計數調查：賣出額, 內需販賣額, 輸出額, 有形固定資產, 從業員數等 - 判斷調查：在庫水準, 設備水準, 借入金金利等 - 特別서어베이調查：每調查時的 重要 時事性 項目 등 	分期	企業景氣調查	韓國銀行產業分析課
主要企業의 設備投資計劃調查	指定統計	<p>資產形態別 設備 投資額, 投資 動機別 設備投資額, 資金 調達別 設備 投資額, 中古 有形固定資產 取得額 及 處分額 등</p>	半期	設備投資計劃調查	韓國產業銀行設備投資調查室
景氣展望調查	一般統計	<p>事業概況, 稼働率, 雇傭, 資金事情, 生產額 등 15個 項目</p>	分期	景氣展望調查	韓國產業銀行設備投資調查室
財務分析	一般統計	<p>企業의 成長性·收益性·生産性·財務構造·資金의 調達과 運用등의 分析</p>	年	財務分析	韓國產業銀行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中小企業 動向調查	一般統計	主生産品, 生産指數, 雇傭指數, 出荷額, 輸出額 등	月	中小企業 動向	中小企業 銀行調查部
中小製造業 製品生産者 販賣價格 調查	一般統計	277個 品目에 對하여 品目別로 事業體의 販 賣價格調查 등	月	中小企業 動向	中小企業 銀行調查部
中小製造業 景氣展望 調查	一般統計	全般的 景氣, 生産, 資 金事情, 設備投資, 雇傭 事情 등	分期	中小企業 景氣展望	中小企業 銀行調查部
中小製造業 設備投資 展望調查	一般統計	産業, 從業員規模·調達源 泉別 設備投資額, 리스契 約, 技術開發投資 등	半期	中小製造業 設備投資 展 望	中小企業 銀行調查部
中小企業 金融實態 調查	一般統計	借入金에 관한事項, 金 融資産保有現況, 어음 割引에 관한 事項, 經 營에 관한 事項(販賣貸 金決濟方法, 經營上 隘 路事項) 등	年	中小企業 金融實態 調查 報告書	國民銀行 統計課
家計金融 利用實態 調查	一般統計	月間 家計收支에 관한 事項, 金融資産 保有現 況, 負債保有現況, 貯蓄 에 관한 事項, 負債에 관한 事項, 金融利用에 관한 事項 등	年	家計金融 利用實態 調查	國民銀行 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住宅建設 景氣展望 調查	一般統計	工事量, 新規宅地確保量, 資材購入量, 雇傭水準, 分 讓實績, 資金事情 등	分期	住宅建設 景氣展望 調查	韓國住宅 銀行統計 調查室
住宅金融 需要實態 調查	一般統計	家口現況, 入住現況, 家 計生活, 前住居地, 移住 動向, 住宅現況, 入住金 額, 住宅融資에 關한 事項 등	年	住宅金融 需要實態 調查	韓國住宅 銀行統計 調查室
都市住宅 價格動向 調查	一般統計	住宅賣買價格, 住宅傳 賃價格(독채), 變動原 因 및 特記事項 등	月	都市住宅 價格動向 調查	韓國住宅 銀行統計 調查室
住宅建設 業體實態 調查	一般統計	住宅事業 및 計劃 營業 實績, 事業形態, 宅地保 有現況 등	2年	住宅建設 業體實態 調查	韓國住宅 銀行統計 調查室
農村物價及 賃料金調查	指定統計	穀物, 青果物, 畜產物 등 의 農家販賣價格과 家計 用品, 農業用品등의 農家 購入價格 및 農村 임료 금 등	月	農協調查 月 報 農村物價 總 覽	農業協同 組合中央會 農業經濟課
漁業經營 調查	一般統計	漁撈體의 經營狀態, 漁撈 體의 收入·支出 事項 등	分期	漁業經營 調查報告	水產協同 組合中央會 調查部

〈公共 法人體〉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企業景氣 展望調查	一般統計	全般的景氣, 生產, 稼動率, 設備投資, 內需販賣 등	分期	企業景氣 展望調查 報告	大韓商工 會議所 產業調查課
서울地域의 公共및서비스 料金動向調查	一般統計	電氣, 水道, 가스, 택시, 汽車, 스포츠 關聯料金 등 205個 價格調查	年	서비스料金 動向調查	大韓商工 會議所 流通課
標準者모델 賃金調查	一般統計	製造業體의 學歷別 職 種別 勤續年數別 標準 者 賃金水準, 事務職· 生産職에 대한 月給與 額 및 賞與金 支給額 등	年	標準者모델 賃金調查 報告書	大韓商工 會議所 產業調查課
勞動政策에 關한 業界 意見調查	一般統計	賃金 및 勞動條件, 勞 使關係, 職業訓練, 職業 安定, 產業安全 및 產 業災害	年	勞動政策 에 關한 業界意見 調查	大韓商工 會議所 產業調查課
小賣業經營 動態調查	一般統計	商品別 賣出·收益性斗 生産性, 店鋪所有形態 및 營業時間, 雇傭動向 斗 從業員 賃金	年	小賣業經營 動態調查 報告書	大韓商工 會議所 流通課
經濟展望 調查	一般統計	經濟成長率, 對外去來, 公 社債收益率, 物價上昇率	分期	分期別 經濟展望	大韓商工 會議所 經濟調查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市中資金事情及金利展望調查	一般統計	市中資金事情 動向 및 展望, 變動 要因, 名目貸出 金利 및 平均實勢金利 등	分期	市中資金事情及金利豫測	大韓商工會 議 所 經濟調查課
主要輸入商品의 競爭力 實態調查	一般統計	國產品 및 主要 輸入商品의 競爭力에 關한 事項, 輸入商品의 豫想輸入需要 및 豫想收益性, 輸入商品에 對한 選好度	年	主要輸入商品의 競爭力 實態調查	大韓商工會 議 所 貿易調查課
서울地域 貨貸料 動向調查	一般統計	貨貸形態, 貨貸料, 貨貸料 變動展望, 建物延面積, 貨貸面積 등	年	未發刊	大韓商工會 議 所 流通課
釜山地域 製造業操業 狀況調查	一般統計	產業, 出荷, 在庫量, 原資材, 稼動狀況	月	經濟動向 月 報	釜山商工會 議 所 產業調查課
釜山地方의 公共料金及 서비스料金 動 向	一般統計	電氣, 水道, 鐵道, 自動車, 航空, 船舶, 郵便, 電話, 教育, 灌溉, 沐浴, 理·美容, 映畫觀覽料, 娛樂, 飲食料 등	年	釜山地方의 公共서비스 料金動向 報告書	釜山商工會 議 所 流通調查課
工場運營 實態調查	一般統計	生產販賣 및 在庫, 原資材輸出, 從事員, 施設, 動力用 에너지 使用量	月	大田地域 經濟動向	大田商工會 議 所 調查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中小企業經營實態調查	一般統計	生產, 販賣, 在庫, 財務動向, 從業員數, 入·離職者數	分期	中小企業經營實態及動向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動向分析課
中小製造業技術實態調查	一般統計	中小製造業體의 職種別從業員現況, 專門技術系從業員現況 및 不足人員等	年	中小製造業技術實態調查報告書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統計調查課
中小企業操業狀況調查	一般統計	正常操業, 操業短縮, 休·閉業現況, 操業短縮, 休·閉業의 事由	月	中小企業動向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動向分析課
中小製造業生產設備實態調查	一般統計	主要生產設備, 召哥曰, 試驗檢查施設 保有現況 및 導入計劃	隨時	中小製造業生產設備實態調查報告書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動向分析課
中小製造業賃金實態調查	一般統計	1人當月平均勤勞時間及勤勞日數, 賃金支給總額, 平均昇進所要時間等	半期	中小製造業賃金實態調查報告書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統計調查課
保險統計	一般統計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有價證券 및 不動產明細表, 收入保險料明細, 事業費明細, 保險金, 還給金, 配當金明細, 保險契約成績	年	保險統計年鑑	保險監督院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證券市場統計	一般統計	證市資金調達, 業種別資金調達, 業種別株式及會社債發行狀況, 株式公募狀況, 上場會社資本規模別分布等(21個項目)	月	證券調查月報	證券監督院 産業調査課
證券統計	一般統計	株價, 株價指數, 去來量, 債權收益率等 證券關聯統計	月	株式證券統計年報	韓國證券 去來所 統計課
株式賣買行態調查	一般統計	株式人口, 株式人口性格, 株式人口賣買行態, 其他證券市場理解度	年	株式人口及賣買行態調查報告書	韓國證券 去來所 統計課
勞動生產性指數	一般統計	產出量指數, 勞動投入量指數, 勞動生產性指數, 勞動生產性向上率	分期	生產性 지표	韓國生產性 本部 勞動研究室
賃金引上實態調查	一般統計	全産業事業體勞動者 의 職級別·學歷別 新入社員 初賃金, 賃金引上率, 職種別 平均給與額	年	未發刊	韓國生產性 本部 勞動研究室
上場企業의 附加價值分析	一般統計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製造原價明細書	年	韓國企業의 附加價值分析	韓國生產性 本部 産業經濟室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勞使協調實態調查	一般統計	勞使協調實態 및 問題點, 勞動組合活動狀況, 生產性, 賃金등에 대한 意識, 勞使協議制 運營實態	隨時	勞使協調實態調查報告書	韓國生產性本部 勞動研究室
附加價值勞動生產性指數	一般統計	產出量(附加價值)指數, 勞動投入量指數, 勞動生產性指數, 勞動生產性向上率	分期	生產性리뷰	韓國生產性本部 勞動研究室

〈政府投資機關〉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農業基盤造成事業統計調查	一般統計	農地改良施設物, 農業用水開發事業, 竣工現況, 農地基盤造成事業竣工現況, 水利施設物, 農地開發 및 擴大開發事業實績 등	年	農業基盤造成事業統計年報	農漁村振興公社 構造改善處 經濟調查部
인삼생산비용調查	一般統計	包裝機 및 折角機 生産費 調查實績, 收穫乾燥機 및 손질 搬入機 生産費	隨時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原料收買局
甘肅消費實態調查	一般統計	喫煙者의 性別 年齡別 職業別 現況, 吸煙動機, 吸煙開始年齡, 喫煙者嗜好, 消費量	2年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營業促進局
煙草耕作契約實績報告	一般統計	作付別 植付面積調查, 組合別 耕作許可個所, 工事面積斗 許可面積調查	年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原料生産局
甘肅生産實績	一般統計	甘肅 種類別 生産計劃 및 實績	月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製造局
人蔘耕作一覽表	一般統計	支社·組合·郡別 年根別 (2~6年根) 人蔘耕作人員, 個所 및 面積 支社·組合·郡別 年根別(2~6年根)人蔘移動面積(廢地, 收穫) 및 殘存 面積	半期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人蔘原料局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人蔘收買	一般統計	總生產量, 收買量, 金額, 等級別 數量·單價·賠償金, 蔘圃位置別 查定量·收穫量·收納代金	日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人蔘原料局
紅蔘製造	一般統計	作業區分別 內譯別 製造量	月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紅蔘製造局
紅蔘製品製造	一般統計	紅蔘의 製品別 生產實績, 紅蔘製品의 製品別 生產實績	月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紅蔘製造局
인삼가공작업실적보고	一般統計	加工作業의 計劃·實績 및 故障要因, 不適格品選別 實績, 材料品 및 煙料 使用實績	月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原料管理局
인삼수입실적보고	一般統計	市·郡別 收納取扱所의 인삼 수입 納付事項(葉煙草種類別 金額, 數量), 耕作面積, 數量, 販賣實績 등	年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原料收買局
소매인변동상태및판매현황	一般統計	地域別 年度末 小賣人數 및 地域別 賣渡額別 小賣人數	年	未發刊	韓國甘肅人蔘公社 營業企劃局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地域別 甘叫販賣 狀況	一般統計	品種別 地域別 販賣 狀況	年	未發刊	韓國甘叫 人蔘公社 營業企劃局
住公아파트 入住者實態 調查	一般統計	住居事項, 居住結果滿足 度, 改善 及 希望事項	年	住公아파트 入住者實態 調查報告書	大韓住宅 公社 調查研究室
全國地價 變動率調查	一般統計	區·市·郡別 用途地域別 (住居地, 商業紙, 工業地, 綠地 等) 地目別 土地價 格·地價指數·變動率	分期	地價動向	韓國土地 開發公社 地價處 地價統計部
全國民 旅行動態 調查	一般統計	家口 構成 及 家口員, 旅行動態 及 觀光實態 現況, 觀光希望事項	3 年	全國民 旅行動態 調查	韓國觀光 公社 調查統計課
外來觀光客 旅行輿論 調查	一般統計	外來觀光客의 國籍, 職 業, 訪問回數, 旅行目 的, 訪問動機, 滯韓日 數, 旅行形態 等	2 年	外來觀光客 輿論調查	韓國觀光 公社 調查統計課
國民海外 旅行動態 調查	一般統計	旅行形態, 旅行目的, 滯 在日數, 旅行情報 入手 經路, 旅行經費, 必需品 目, 旅行中 不便事項, 海外旅行 希望地域等	年	國民海外 旅行動態 調查	韓國觀光 公社 調查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高速道路 交通量統計	一般統計	高速道路 交通券 發給 及 通行車輛 現況	年	高速道路 交通量 統計	韓國道路 公社 營業計劃課
市內加入 電話需要 調查報告	一般統計	電話 施設數, 電話 加 入者數, 現在 需要數, 將來 需要數	年	加入電話 需要調查 報告書	韓國電氣 通信公社 事業企劃部
加入電話 現 況	一般統計	方式(機械式, 電子式), 需用加入者數(有料, 無料), 增設器機, 特殊 裝置	月	加入電話 現 況 報告書	韓國電氣 通信公社 營業支援 2 部
自家發電施 設保有企業 體 調 查	一般統計	電壓, 施設容量, 可能出 力, 燃料, 發電原價	非定期	自家發電 現況調查 分 析	韓國電力 公社 經營分析部
韓國電力 統 計	一般統計	電力事業現況, 電力施設, 發電事項, 送配電事項, 產業部門別 販賣事項, 用途別 販賣電力量, 製 造業 業種別 販賣電力 量, 韓國電力 經營事項	年	韓國電力 統 計	韓國電力 公社 經營分析部
家電機器 普及率調查	一般統計	家電器機別 保有臺數, 購入年度, 消費電力, 年 使用日數, 1日使用時間, 處分年度 等	2 年	家電機器 普及率 調查研究	韓國電力 公社 電力經濟 研 究 室

〈政府出撰 研究機關〉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 健實態調查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口員에 관한 一般事項 : 性, 年齡, 職業 등 - 結婚, 妊娠, 出產 事項 : 現存 子女數, 自然流產, 人工流產, 避妊實態 등 - 婦人就業活動 - 未婚者에 관한 事項 : 學歷, 職業, 結婚觀 등 	3 年	全國出產 力 및 家 族保健 實態 調 查	韓國保健 社會研究院 人口研究室
國民健康 및 保健 意識 行 態 調 查	一般統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健康에 관한 事項 ○ 家口員에 관한 一般事項 : 年齡, 教育程度, 醫療 保障, 月醫療保險料, 평소 健康狀態, 罹患狀態 등 ○ 醫療 利用調查票 : 지난 15日間 방문한 의 료기관 및 방문목적 ○ 罹患 調查票 : 지난 15日間 및 1년간 이환상태 ○ 入院患者 調查票 : 지난 1年間 入院 回收 및 醫療機關 形態 - 保健意識 行態에 관한 事項: 健康狀態, 運動與 否, 吸煙 및 飲酒與否, 血壓測定 與否 등 	3 年	國民健康 및 保健 意識 行 態 調 查	韓國保健 社會研究院 保健研究室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精密計量標準實態調查	一般統計	業種別 K.S表示品, 計量計測技術者現況, 計量計測分野別 標準機構 現況	2 年	精密測定標準實態調查	韓國標準科學研究院政策研究室
國民人體測定調查	一般統計	性別, 年齡別 身體 各部位別 值數	年	國民人體測定調查	韓國標準科學研究院人間工學研究室
國家標準의 寄與度調查	一般統計	生產設備 및 測定施設投資現況, 測定關聯投資效果 등	2 年	國家標準의 寄與度實態調查報告	韓國標準科學研究院政策研究室
國民消費 및 意識構造調查	一般統計	消費行態(家族中 購買意思決定者, 購買場所 選擇基準), 消費者의 滿足 및 不平行動, 消費者의 意識構造(消費性向, 消費者, 情報, 消費者 保護 등)	3 年	國民消費 및 意識構造調查	韓國消費者保護院調查部社會調查課

各種團體〉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輸出產業 景氣展望 調查	一般統計	全般的景氣，輸出相談，輸出採算性，資金事情，設備投資，從業員數 등 16個項目	分期	輸出產業 景氣豫測 調查	韓國貿易協會 動向分析課
SKTC에 의한 貿易統計	一般統計	轉出入實績，國別轉出入，商品別轉出入	年	貿易統計	韓國貿易協會 電算統計課
輸出企業 經營實態 調查	一般統計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製造原價明細書	年	輸出產業 經營實態 調查	韓國貿易協會 國內調查課
輸出企業 資金實態 展望調查	一般統計	資金事情動向，資金調達實態，地方金融環境變更，對應主要事項 등	半期	輸出企業 資金實態 展望調查	韓國貿易協會 金融稅制課
輸出產業 實態調查	一般統計	輸出目標 및 展望，競爭力實態，競爭力基盤，轉出供給能力 및 設備投資 등	年	輸出產業 實態調查	韓國貿易協會 產業 1 課
企業의 設備投資 動向調查	一般統計	資產別投資規模，動機別投資規模，投資資金調達規模，施設投資隘路要因 등	半期	企業施設 投資動向 調查	全國經濟人 聯合會 調查部
月間景氣 動向調查	一般統計	綜合景氣，資金事情，生產，內需販賣，輸出，投資執行收益性，人力需給 등 8個項目	月	主要業種 의 月間 景氣動向	韓國經濟人 聯合會 調查部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投資執行 動向調查	一般統計	用度別 投資 執行 動向, 投資資金 調達 動向, 年間 投資의 修正計劃 등	年	未 發 刊	韓國經濟人 聯合會 調查部
資金引上 動向調查	一般統計	鑛業, 製造業, 建設業 事業體 勞動者의 平均賃金 引上率, 職級別 從業員數, 初任給水率, 賃金引上 決定要因等	年	賃金調整 動向斗 特徵	韓國經營者 總協會 勞動經濟課
新規人力 採用動態 展望調查	一般統計	全國 100人 以上 事業體의 職級別 採用 計劃 및 實績, 新規職員 採用選拔方法	年	新規人力 採用動態 展望 調查	韓國經營者 總協會 勞動經濟課
100大企業 새해經濟 展望調查	一般統計	物價安定 및 物價上昇幅, 賣出額伸張, 輸出展望, 內需展望, 投資計劃, 雇傭計劃, 通貨供給, 원貨切上, 金利, 勞使關係展望	年	100大 企業새해 經濟展望 調查	韓國經營者 總協會 勞動經濟課
鐵鋼統計 調查	指定統計	銑鐵斗 粗鋼의 生産·內輸·輸出·在庫量, 鐵鋼製品의 品目別 生産·內需輸出·在庫量 등	月	鐵鋼統計	韓國鐵鋼協會 統計課
電子電氣 製造業實 態調查	指定統計	品目別 生産·出荷現況 및 業體名, 投資形態, 稼働率, 從業員 現況 등	月	電子振興	韓國電子 工業振興會 統計課

統計名稱	統計類型	調查事項	作成週期	刊行物名	擔當部署
綿紡織統計	一般統計	綿絲 生産量 및 原料消費量, 綿織物 生産量 및 原料消費量, 操業日數現況 및 에너지消費現況	月	紡 績	大韓紡織協會 統計刊行課
建設業統計	一般統計	契約, 既成額, 受領額, 發注者, 工事場 所在地, 營業稅納付, 勞務者 延動員數, 財務諸表, 資材使用量에 관한 事項	年	建設業者 計 年 報	大韓建設協會 統計調查課
建設業 經營分析	一般統計	綜合建設業의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를 利用한 成長力, 收益力, 安全性, 活動性, 生産性에 관한 指標	年	建設業 經營分析	大韓建設協會 經營調查課
完成工事 原價構成 分析	一般統計	材料費, 勞務費, 外注費, 現場經費, 工事契約額	年	完成工事 原價構成 分 析	大韓建設協會 經營調查課
建設業賃金 實態調查	一般統計	工事 및 光電子, 原子力 文化財 部門등에 관한 169개 職種의 日給및 賃金上昇 要因 등	半 期	建設業 賃金實態 調 查 報 告 書	大韓建設協會 經營分析課
專門建設業 統計調查	一般統計	專門建設業體의 契約, 既成額, 受領額, 財務諸表, 資材使用量에 관한 事項	年	專門建設 業 統 計 報 年	大韓專 門 建設協會 調 查 課
生命保險 性 向 調 查	一般統計	加入狀況, 加入動機, 保險支拂金額; 生活不安의 有無의 內容, 契約內容 理解度, 應答者의 社會 經濟的 特性	3 年	生命保險 性 向 全 國 調 查	生命保險協會 統計調查課

2. 參考圖表

1. 申告書式(簡易國勢調查)	693
2. 國勢調查 申告書(1940年)	694
3. 照查表(1940年)	695
4. 要計表(1940年)	695
5. 人口動態調查票	697
6. 朝鮮總督府 時代 農業關聯 統計書	701
7. 調查票樣式(朝鮮工場資源調查)	701
8. 朝鮮鑛業資源調查 調查票	707
9. 朝鮮自動車 資源調查票	708
10. 朝鮮 電氣供給事業 資源調查 調查票	709
11. 官報 貿易 統計(1910年)	711

여 백

1. 申告書式(簡易國勢調査)

大正十四年十月一日

簡易國勢調査申告書

注意 (一) (籍貫)欄へ府市又へ面長ニ於テ記入スルコト (二) 記入ヲ終リタルトキハ申告書ノ番號欄ニ印シテ置ルコト	検印 調査員	(一) 氏名 又ハ姓名	(二) 男女ノ別 男 女	(三) 出生年月 年 月	(四) 配偶ノ係 未婚 有配偶 死別 離別	(五) 本籍又ハ國籍	(六) 申告書枚ノ内第 號	(七) 世帯主又ハ世帯管理者記名捺印	道府縣 市 町 村 支 庁 郡 市 町 村	町 丁目 番 地 世帯ノ種類 世帯ノ種類 世帯ノ種類
--	-----------	----------------	-----------------	-----------------	--------------------------	------------	---------------	--------------------	--------------------------------	-------------------------------------

簡易國勢調査

(様式第一號) 申告書様式

3. 照査表(1940年)

調査區第 號

道 郡 島 府 邑 面

區域 {

國勢調査員

(枚ノ内第

第一欄	第二欄	第三欄	第四欄	第五欄	第六欄	第七欄	第八欄	第九欄					
世帯番號	世帯所在地(町里番)	世帯主ノ種類及名稱	申告者ノ氏名	人員數	申告書用紙配付枚數	申告書番通シ番數	申告書枚數	日本人内地人	朝鮮人	其ノ他人	外國人	合計	
								男	女	男	女	男	女
累 計													
小 計													
合 計													

用紙配付表

昭和十五年

月

日

調査員

4. 要計表(1940年)

(7) 道 郡 島 要計表

邑 面 名 地方行政 區域ノ順 序ニ依ル コト	調査 區數	申告書 括 數	申告書 通 數	世 帯 主 人								
				日 本 人		朝 鮮 人		外 國 人		合 計		
				内地人	朝鮮人	共ノ他	外国人	男	女			
1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計
2												
3												
23												
24												
25												
合 計												

道 知 事
印

昭和十五年

月

日

郡 守
印

様式第三號

(一) 道 府 邑 要 計 表

申告書紙数 括
技ノ内紙 陸

調査區番數 (附) = 依 ノコト	世帯人員									
	日 本 人		朝鮮人		其ノ他		外國人		合 計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陸										
島										
津										
越										
前										
小 計										
合 計										

道 知 事 府 長
部 長 官 印 昭 和 十 五 年 5 日 府 邑 面

(二) 道 要 計 表

調査區名	邑面數	申告書 紙 數	申告書 通 數	世 帯 人 員								
				日 本 人			外國人	合 計				
				内地人	朝鮮人	其ノ他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計
9												
18												
19												
20												
21												
22												
23												
24												
25												
合 計												

昭 和 十 五 年 月 日 道 知 事

5. 人口動態調査票

婚 和 昭

第一號様式 (陸五寸二分、横三寸一分)

(九) 職 業	(八) 出生ノ年月日	(七) 姓 名	(六) 婚期ノ年月日	(五) 既婚ノ年月日	(四) 協定ノ年月日	(三) ノ 禮 所 婚 地 時		(二) 本 籍 地		(一) 種 別	種 類 番 號 第 一 號
						妻	夫	妻	夫		
夫				妻		(昭)		(昭)		(昭)	(昭)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妻				夫		(昭)		(昭)		(昭)	(昭)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シベス入記ヲシ照ニ得心成作

婚 離 和 昭

第二號様式 (陸五寸二分、横三寸一分)

(九) 職 業	(八) 出生ノ年月日	(七) 姓 名	(六) 婚期ノ年月日	(五) 既婚ノ年月日	(四) 協定ノ年月日	(三) ノ 禮 所 婚 地 時		(二) 本 籍 地		(一) 種 別	種 類 番 號 第 二 號
						妻	夫	妻	夫		
夫				妻		(昭)		(昭)		(昭)	(昭)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妻				夫		(昭)		(昭)		(昭)	(昭)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シベス入記ヲシ照ニ得心成作

第三號様式 (縦五寸二分、横三寸一分)

出 生 票		年 月		種 別		
(六) 父母ノ出生年月日 母 父	(五) 父母ノ職業 母 父	(四) 請庶私ノ別 請出子) 庶子) 私生子)	(三) 出生ノ年月日 昭和 年 月 日	(二) 出生ノ場所 () () () () () () () () ()	(一) 姓名及男女ノ別 男 女 () () () () () ()	() () () () () () () () ()

シメス入記ヲシ照ニ得心成作

第六區様式 (縦七寸六分、横一尺四寸)

道徳致目録		(昭和 年 月)	
府名	指	致目録数	備考

道知事

昭和 年 月 日

本府に於ける及本府外に於ける者ノ出生死亡	ア		イ		計
	死	出	死	出	

所轄色面致数
色面致目録致数

(注)

(昭和 年 月)

昭和 年 月 日

第八號様式 (縦五寸二分、横三寸一尺)

本府に於ける及本府外に於ける者ノ出生死亡	ア		イ		計
	死	出	死	出	

府色面致目録

(昭和 年 月)

昭和 年 月 日

(注)

本府外

(府外)

8. 朝鮮鑛業資源調查 調查票

調 查 票 第 一 號

登錄 編號 取 樣 區 名	第 _____ 號	自昭和 _____ 年一月一日至昭和 _____ 年十二月三十一日				
	礦 山 名 _____	主 要 水 業 _____ 事業開始年月 _____				
	礦 山 所 在 地 _____					
	礦 區 數 _____	礦 區 總 坪 數 _____				
	礦 區 所 在 地 _____					
	年 作 業 總 日 數 _____ 日 / 作 業 時 間 _____					
年 生 産 地	分 類	細 目	數 量	單 位	額 價	備 考
	價 額 合 計 _____					

昭和 _____ 年 _____ 月 _____ 日提出

文
 書
 所
 在
 地
 代
 表
 者
 印
 名
 氏

9. 朝鮮自動車 資源調査票

(ア) 自動車調査票

車輛番號		年八月末日現在調査	
取 扱 官 廳	所有者ノ住所及氏名又ハ名稱		
	運轉路線又ハ運轉區間	型 式	
	車輛位置	積 載 量	
	最 初 之 使 用 年 月	馬 力 數	
種 類	協 造 製 造 廠		

朝鮮總督府

(イ) 自動自轉車調査票

車輛番號		年八月末日現在調査	
取 扱 官 廳	所有者ノ住所及氏名又ハ名稱		
	型 式		
	氣筒內容積		
協 造 製 造 廠			

朝鮮總督府

(ロ) 自動車運轉手調査票

		何 處		年八月末日現在調査
種 別		三十五歳未満	三十五歳以上	計
兵役關係者 (國民兵役ニ在ル者ヲ除ク)	陸 軍			
	海 軍			
兵 役 二 關 係 ナ キ 者	内地人			
	男 朝鮮人			
	外國人			
	内地人			
	女 朝鮮人			
	外國人			
合 計				

10. 朝鮮 電氣供給事業 資源調査 調査票

(7) 電氣事業従業者報告書

昭和 年十二月末日現在

第一號樣式

發電所、變電所、開閉所又ハ送電線路ノ名稱		所在地										
事業者名												
類 種	員 數	陸軍兵役關係者							海軍兵役關係者	兵役關係者計		
		既 教 育 者										
		飛行兵及氣球兵	砲兵	砲兵	砲兵	砲兵	砲兵	砲兵	砲兵	砲兵	砲兵	補充兵
職 員	事務職員											
	技術職員											
職 工												
備 考												

(4) 發電所燃料報告書

昭和 年十二月末日現在

發電所名		所在地									
事業者名											
既用往々一年間燃ニ料使	種 別	數 量	單位	價 額	既用往々一年間燃ニ料使	種 別	數 量	單位	價 額	備 考	

여 백

11. 官報 貿易 統計(1910年)

官報(日誌) 第四五七八號 民國四年十一月十三日(即舊曆癸亥年十月十四日)

六八

外國貿易概況(民國三年十二月)		輸出之部				輸入之部			
品名	十三年	十二年	十一年	十年	品名	十三年	十二年	十一年	十年
食料	食料
米	米
大豆	大豆
小豆	小豆
海魚	海魚
乾魚及鹽魚	乾魚及鹽魚
其他	其他
生絲及織品	生絲及織品
牛皮	牛皮
鐵及鋼鐵	鐵及鋼鐵
銅及銅器	銅及銅器
錫及錫器	錫及錫器
金及金器	金及金器
銀及銀器	銀及銀器
木材及板	木材及板
紙	紙
肥料	肥料
其他	其他

丙、丙類及雜貨		丙類				丙類			
品名	十三年	十二年	十一年	十年	品名	十三年	十二年	十一年	十年
紙	紙
鐵釘	鐵釘
其他	其他
乙、乙類	乙、乙類
生絲	生絲
其他	其他
甲、甲類	甲、甲類
其他	其他

氣象

氣壓雨量等計(日) 五早氣候中概氏

各地氣象 一月十四日

官報(日誌) 第四五七八號 民國四年十一月十三日(即舊曆癸亥年十月十四日)

六九

韓國統計發展史(Ⅱ)

發行日：1992年 12月 31日

發行處：統計廳

發行人：閔 泰 亨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15

☎ 222-1823~4

印刷：文成印刷株式會社